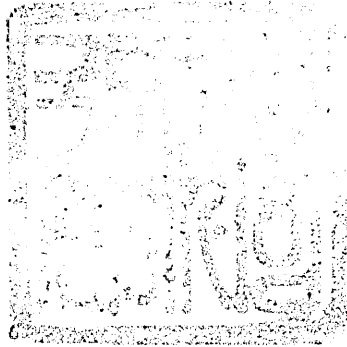


3431

국통비 89-12-110

北 韓 法 令 集

第 I 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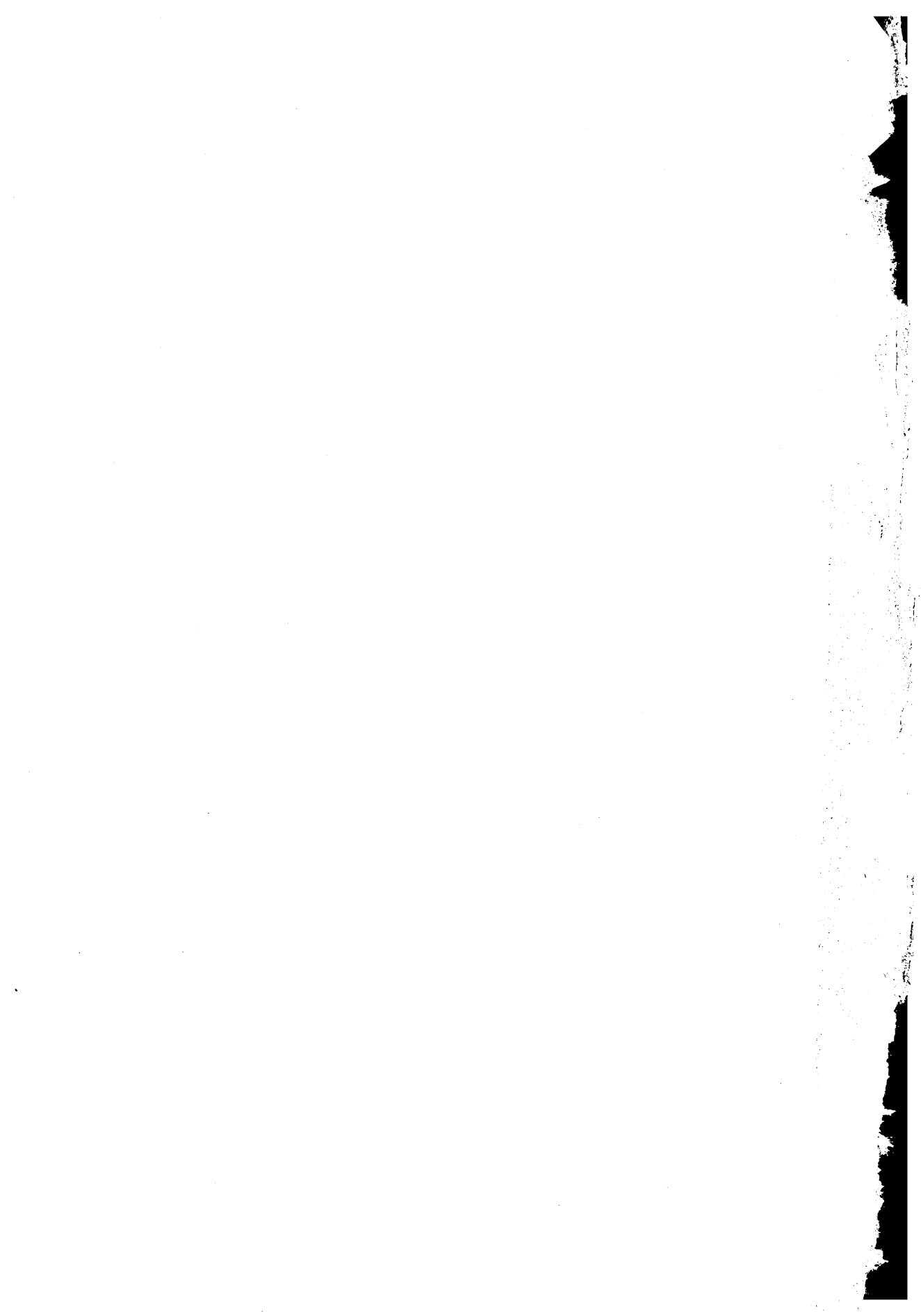


Kiw

{
 1989.12.11
 1989.12.11
 1989.12.11

Handwritten mark

國 土 統 一 院



목 차

제 1 편 : 헌법·선거·정권조직	3
제 1 절 : 헌법·정당·사회단체	5
제 2 절 : 선거·선거구·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65
제 3 절 : 정권조직	89
제 2 편 : 행정일반	95
제 1 절 : 직제	97
제 2 절 : 신분등록	165
제 3 편 : 사법·형사·치안	177
제 1 절 : 사법	179
제 2 절 : 형사법	199
제 3 절 : 치안	289
제 4 편 : 농업·수산·산림	335
제 1 절 : 농정	337
제 2 절 : 토지개혁	373
제 3 절 : 협동농장	397
제 4 절 : 수산	413
제 5 절 : 산림	421
제 5 편 : 상업·공업·광업	463
제 1 절 : 상무행정	465
제 2 절 : 상·공업	471
제 3 절 : 광업·지하자원개발	523
제 6 편 : 건물·토지관리	529

제 1 절 : 건물·토지·도로관리	531
제 2 절 : 상·하수도·하천관리	549
제 7 편 : 보건·위생·노동	557
제 1 절 : 보건행정·사회보장	559
제 2 절 : 의료·약품	585
제 3 절 : 방역·예방	603
제 4 절 : 노동·노력동원	645
제 8 편 : 교통·체신	709
제 1 절 : 철도운수·해운	711
제 2 절 : 체신·전기통신	747

제 1 편 헌법, 선거, 정권조직

제 1 절 헌법, 정당, 사회단체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

(1972. 12. 27改正)

第1章 政 治

第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全體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의인 社會主義國家이다.

第2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基礎한 全體人民의 政治 思想의 統一과 社會主義의 生産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依據한다.

第3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帝國主義 侵略者들을 反對하며 祖國의 光復과 人民의 自由와 幸福을 爲한 榮光스러운 革命鬪爭에서 이룩된 빛나는 傳統을 이어받은 革命的인 政權이다.

第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通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記活動의 指導의 指針으로 삼는다.

第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의 範圍에서 外勢를 물리치고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며 完全한 民族的 獨立을 達成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第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는 階級的 對立과 人間에 依한 人間의 온갖 搾取와 壓迫이 永遠히 없어졌다. 國家는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된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의 利益을 擁護하며 保護한다.

第7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에 있다. 勞動人民은 自己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과 地方 各級人民會議를 通하여 主權을 行使한다.

第8條 郡人民會議로부터 最高人民會議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主權機關은 一般的, 平和的, 直接的 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選舉한다. 各級主權機關의 代議員은 自己事業에 對하여 選舉者들 앞에 責任진다.

第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모든 國家機關들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依하여 組織되며 選舉된다.

第10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實施하며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한다.

第11條 國家는 內外敵對分子의 破壞策動으로부터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며 思想革命을 強化하며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한다.

第12條 國家는 모든 事業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 주고 大家의 意見을 尊重히 하며 政治事業, 사람과의 事業을 앞세워 大家의 自覺的 熱誠을 불러 일으키는 偉大한 靑山里精神, 靑山里

方法을 貫徹한다.

第13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千里馬運動은 社會主義建設의 總路線이다. 國家는 千里馬運動을 끊임없이 深化 發展시켜 社會主義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친다.

第1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全人民的, 全國家의 防衛體系에 依據하며 自衛的의 使命은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利益을 옹호하며 社會主義制度和 革命의 戰取物을 保衛하며 祖國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데 있다.

第1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海外에 있는 朝鮮同胞들의 民主主義的 民族權利와 國際法에서 公認된 合法的 權利를 擁護한다.

第1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對外關係에서 完全한 平等權과 自由權을 行使한다. 國家는 우리나라를 友好的으로 對하는 모든 나라들과 完全한 平等과 自主性, 互相尊重과 內政不干渉, 互惠의 原則에서 國家的 및 政治, 經濟, 文化的 關係를 맺는다. 國家는 맑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서 社會主義 나라들과 團結하고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團結하며 그들의 民族解放鬭爭과 革命鬭爭을 積極 支持 성원한다.

第17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法은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意思와 利益을 反映하고 있으며 모든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및 公民들에 依하여 自覺的으로 遵守된다.

第2章 經 濟

第18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生産 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이다.

第19條 國家所有는 全體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對象에는 制限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富源, 重要工場과 企業所, 港灣, 銀行, 交通運輸 및 遞信機關은 國家만이 所有한다. 國家所有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經濟發展에서 主導的 役割을 한다.

第20條 協同團體所有는 協同經理에 들어 있는 勤勞者들의 集團的 所有이다. 土地, 부림짐승, 農機具, 고기배, 建物 등과 中小工場, 企業所는 協同團體가 所有할 수 있다. 國家는 協同團體所有를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21條 國家는 社會主義的 協同經理 制度를 鞏固 發展시키며 協同團體에 들어 있는 全體成員들의 自願的 意思에 따라 協同團體 所有를 漸次 全人民의 所有로 轉換시킨다.

第22條 個人所有는 勤勞者들의 個人的 消費를 爲한 所有이다. 勤勞者들의 個人所有는 勞動에 依한 社會主義分配와 國家 및 社會의 追加的 惠澤으로 이루어진다. 協同農場員들의 터밭經理를 비롯한 住民의 個人副業經理에서 나오는 生産物도 個人所有에 屬한다. 國家는 勤

勞者들의 個人所有를 法的으로 保護하며 그에 對한 相續權을 保障한다.

第23條 國家는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自己活動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社會의 物質的 富는 全的으로 勞動者들의 福利增進에 돌려진다.

第2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마련된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는 나라의 富強發展과 人民生活向上의 物質的 擔保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는 工業化의 歷史的 課業이 빛나게 實現되었다. 國家는 工業化의 成果를 鞏固發展시키며 社會主義의 物質技術的 土臺를 더욱 튼튼히 하기 爲하여 鬭爭한다.

第25條 國家는 技術革命을 推進하여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 農業勞動과 工業勞動의 差異를 없애고 勞勞者들을 힘든 勞動에서 解放하며 肉體勞動과 精神勞動의 差異를 漸次的으로 줄인다.

第26條 國家는 都市와 農村의 差異, 勞動階級과 農民의 階級的 差異를 없애기 爲하여 郡의 役割을 높이며 農村에 對한 指導와 幫助를 強化한다. 國家는 協同農場들의 生産施設과 農村 文化住宅을 國家負擔으로 建設하여 준다.

第27條 勤勞大衆은 歷史의 創造者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는 數百萬 勤勞大衆의 創造的 勞動에 依하여 建設된다. 우리나라 勞動者들은 모두 다 勞動에 參加하며 祖國과 人民과 自身을 爲하여 自覺的 熱誠과 創發性을 내어 일한다. 國家는 勞動者들의 政治思想意識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勞動의 量과 質에 依한 社會主義分配 原則을 正確히 適用한다.

第28條 勤勞者들의 하루 勞動時間은 8時間이다. 國家는 勞動의 힘든 程度와 特殊한 條件에 따라 하루 勞動時間을 이보다 짧게 適用한다. 國家는 勞動組織을 잘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여 勞動時間을 完全히 利用하도록 한다.

第2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이 勞動하는 나이는 滿16살부터이다.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少年들의 勞動을 禁止한다.

第30條 國家는 生産者 大衆의 集體的 힘에 依據하여 經濟를 科學的으로 合理的으로 管理運營하는 先進的 社會主義 經濟管理形態인 大安의 事業體系와 農村經理를 企業的 方法으로 指導하는 새로운 農業指導體系에 依하여 나라의 經濟를 指導管理한다.

第3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人民經濟는 計劃經濟이다. 國家는 社會主義的 經濟發展法則에 따라 蓄積과 消費의 均衡을 옹계 잡으며 經濟建設을 다그치고 人民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며 國防力을 強化할 수 있도록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여 實行한다. 國家는 計劃의 一元化, 細部化方針을 관철하여 生産成長의 높은 速度와 人民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保障한다.

第32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人民經濟發展計劃에 따르는 國家豫算을 編成하여 執行한

다. 國家는 모든 部門에서 增産과 戰略鬭爭을 強化하고 財政統制를 嚴格히 實施하여 國家 蓄積을 體系的으로 늘이며 社會主義의 所有를 擴大 發展시킨다.

第33條 國家는 낡은 社會의 遺物인 稅金制度를 完全히 없앤다.

第3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對外貿易은 國家 또는 國家의 監督 밑에서 한다. 國家는 完全한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對外貿易을 發展시킨다. 國家는 自立的 民族經濟를 保護하기 爲하여 關稅政策을 實施한다.

第3章 文 化

第3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全體 人民이 다 공부하며 社會主義의 民族文化가 全面的으로 開化發展한다.

第3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文化革命을 徹底히 遂行하여 모든 勞動者들을 自然과 社會에 關한 깊은 知識과 높은 文化技術水準을 가진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者로 만든다.

第37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社會主義 勞動者들을 爲하여 服務하는 참다운 人民의이며 革命的인 文化를 建設한다. 國家는 社會主義의 民族文化 建設에서 帝國主義의 文化的 浸透와 復古主義의 傾向을 反對하며 民族文化遺産을 保護하고 그것을 社會主義 現實에 맞게 繼承發展시킨다.

第38條 國家는 모든 分野에서 낡은 社會의 生活儀式을 없애고 새로운 社會主義의 生活儀式을 全面的으로 確立한다.

第39條 國家는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爲하여 鬭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의 새 人間으로 키운다.

第40條 國家는 人民教育事業과 民族幹部 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教育和 技術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을 密接히 結合시킨다.

第41條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世代들에 對하여 全體的 10年制 高中 義務教育을 實施한다. 國家는 모든 學生들을 無料로 공부시킨다.

第42條 國家는 學業을 專門으로 하는 教育體系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形態의 教育體系를 發展시켜 有能한 技術者, 專門家들을 키워낸다. 大學 및 高等專門學校 學生들에게는 獎學金을 준다.

第43條 國家는 모든 어린이들에 對하여 1年동안 學校前 義務教育을 實施한다. 國家는 모든 學齡前 어린이들을 託兒所, 幼稚園에서 國家와 社會의 負擔으로 키운다.

第44條 國家는 科學研究事業에서 主體를 徹底히 세우며 科學者들과 生産者들의 創造的 協調를 強化하여 나라의 科學技術發展을 促進시킨다.

第45條 國家는 民族의 形式에 社會主義의 內容을 담은 主體의이며 革命的인 文學藝術을 發展시킨다. 國家는 作家, 藝術人들의 創作活動에 널리 參加시킨다.

第46條 國家는 우리말을 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의 民族語 抹殺政策으로부터 지켜내며 現代의 要求에 맞게 發展시킨다.

第47條 國家는 勞動者들의 體力을 끊임 없이 增進시킨다. 國家는 體育을 大衆化하고 國防體育을 發展시켜 全體人民을 勞動과 國防에 튼튼히 準備시킨다.

第48條 國家는 全般的 無償治療制를 더욱 鞏固發展시키며 豫防醫學的 方針을 貫徹하여 사람들의 生命을 保護하며 勞動者들의 健康을 增進시킨다.

第4章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第4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를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基礎한다.

第50條 國家는 모든 公民에게 참다운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 幸福한 物質文化生活을 實質的으로 保障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自由는 社會主義 制度의 鞏固發展과 함께 더욱 擴大된다.

第51條 公民은 政治, 經濟, 文化 等 國家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누구나 다 같은 權利를 가진다.

第52條 滿17歲以上の 모든 公民은 性別, 民族別, 職業居住期間, 財産 및 知識程度, 黨別, 政見, 信仰에 關係없이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진다.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選舉할 權利를 빼앗긴 者, 精神病者는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지지 못한다.

第53條 公民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

第54條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

第55條 公民은 申訴와 請願을 할 수 있다.

第56條 公民은 勞動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勞動能力이 있는 모든 公民은 希望과 才能에 따라 職業을 選擇하며 安定된 일자리와 勞動條件을 保障받는다. 公民은 能力에 따라 일하며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

第57條 公民은 休息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8時間 勞動制, 有給休暇制, 國家費用에 依한 靜休養制, 繼續 늘어나는 여러가지 文化施設 등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58條 公民은 無償으로 治療받을 權利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病 또는 不具로 勞動能力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物質的 幫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無償治療劑, 繼續 늘어나는 病院, 療養所를 비롯한 醫療施設,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59條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先進的인 教育制度和 無料義務教育을 비롯한 國家의 人民的인 教育施策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60條 公民은 科學과 文學藝術 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創意考案者와 發明家들에게 配慮를 돌린다. 著作權과 發明權은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61條 革命鬪士, 革命烈士家族, 愛國烈士家族, 人民軍後方家族, 榮譽軍人들은 國家와 社會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62條 女子는 男子와 똑같은 社會的 地位와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產前 產後 休暇의 保障,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勞動時間의 短縮, 產院, 託兒所 및 幼稚園網의 擴張, 그밖의 施策을 通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特別히 保護한다. 國家는 女性들을 家庭일의 무거운 負擔에서 解放하며 그들이 社會에 進出할 온갖 條件을 保障한다.

第63條 結婚 및 家庭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社會의 細胞인 家庭을 鞏固히 하는데 깊은 配慮를 돌린다.

第64條 公民은 人身 및 住宅의 不可侵과 書信의 秘密을 保障받는다. 法에 根據하지 않고는 公民을 逮捕할 수 없다.

第65條 海外에 있는 모든 朝鮮公民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法的 保護를 받는다.

第6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를 爲하여 科學, 文化의 自由를 爲하여 鬪爭하다가 亡命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保護한다.

第67條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行動遵則을 徹底히 지켜야 한다.

第68條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

第69條 勞動은 公民의 神聖한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勞動에 自覺的으로 誠實히 參加하며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

第70條 公民은 國家財産과 共同財産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食汚, 浪費現象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主人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財産은 神聖不可侵이다.

第71條 公民은 帝國主義者들과 우리나라 社會主義制度를 反對하는 온갖 敵對分子들의 勞動에 對하여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國家秘密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

第72條 祖國保衛는 公民의 最大의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祖國을 保衛하여야 하며 法定한데 따라 軍隊에 服務하여야 한다. 祖國과 人民을 背反하는 것은 가장 큰 罪惡이다. 祖

國과 人民을 背反하는 者는 法에 따라 嚴重히 處罰한다.

第5章 最高人民會議

第73條 最高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主權機關이다. 立法權은 最高人民會議단이 行使한다.

第74條 最高人民會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舉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選出한 代議員들로 構成한다.

第75條 最高人民會議 任期는 4年으로 한다. 最高人民會議 새 選舉는 最高人民會議 任期가 끝나기 前에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에 따라 進行한다. 不可避한 事情으로 選舉를 하지 못할 때에는 選舉를 할 때까지 그 任期를 延長한다.

第76條 最高人民會議는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가진다.

- ① 憲法 및 法令을 採擇 또는 修正한다.
- ② 國家의 對內外 政策의 基本原則을 세운다.
- ③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을 選舉한다.
- ④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書記長, 委員들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⑤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議員들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⑥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政務院 總理를 選舉 및 召喚한다.
- ⑦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⑧ 中央裁判所 所長을 選舉 및 召喚하며 中央檢察所長을 任命 및 解任한다.
- ⑨ 國家의 人民經濟 發展計劃을 承認한다.
- ⑩ 國家豫算을 承認한다.
- ⑪ 戰爭과 平和에 對한 問題를 決定한다.

第77條 最高人民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를 가진다. 定期會議는 1年에 2次,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가 召集한다. 臨時會議는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 全員の 3分の 1 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第78條 最高人民會議는 代議員 全員の 半數 以上이 參席하여야 成立된다.

第79條 最高人民會議는 議長과 副議長을 選舉한다. 議長은 會議를 執行한다.

第80條 最高人民會議에서 討議할 議案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및 政務院이 提出한다. 代議員들도 議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81條 最高人民會議 第1次會議는 代議員資格審査委員會를 選舉하고 그 委員會가 提出한 報告에 根據하여 代議員 資格을 認定하는 決定을 採擇한다.

第82條 最高人民會議 法令, 決定은 舉手 可決의 方法으로 그 會議에 參席한 代議員의 半數 以上이 贊成하여야 採擇된다. 憲法은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全員の 3分の 2 以上이 贊成하여야 修正된다.

第83條 最高人民會議는 豫算審議委員會, 法案審議委員會等 必要한 委員會들을 組織할 수 있다. 最高人民會議委員會들은 最高人民會議事業을 돕는다.

第84條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代議員으로서의 不可侵權을 保障받는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最高人民會議, 그 休會中에는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의 承認없이 逮捕할 수 없다.

第85條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最高人民會議의 常務機關이다.

第86條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議長, 副議長, 事務長, 議員들로 構成한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長, 副議長은 各各 最高人民會議 議長, 副議長이 兼任한다.

第87條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 ①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提起된 法案을 審議 決定하고 다음번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는다.
- ②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現行法令을 修正하고 다음번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는다.
- ③ 現行 法令을 해석한다.
- ④ 最高人民會議를 召集한다.
- 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事業을 實施한다.
- ⑥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의 事業을 한다.
- ⑦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委員들과의 事業을 한다.
- ⑧ 地方人民會議 代議員選舉 事業을 組織한다.
- ⑨ 中央裁判所 判事, 人民參審員을 選舉 및 召喚한다.

第88條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決定을 採擇한다.

第6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主席

第8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主權을 代表한다.

第90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最高人民會議에서 選舉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9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中央人民委員會를 直接 指導한다.

- 第92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必要에 따라 政務院會議를 召集하고 指導한다.
- 第93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 되며 國家의 一切 武力을 指揮 統率한다.
- 第9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最高人民會議法令,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을 公布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命令을 낸다.
- 第9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特赦權을 行使한다.
- 第9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다른 나라와 맺은 條約을 批准 및 廢棄한다.
- 第97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다른 나라 使臣의 信任狀, 召喚狀을 接受한다.
- 第98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自己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 앞에 責任진다.
- 第9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副主席은 主席의 事業을 돕는다.

第7章 中央人民委員會

- 第100條 中央人民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이다.
- 第101條 中央人民委員會 首位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이다.
- 第102條 中央人民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中央人民委員會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第103條 中央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 ① 國家의 對內外 政策을 세운다.
 - ② 政務院과 地方人民會議 및 人民委員會事業을 指導한다.
 - ③ 司法, 檢察機關 事業을 指導한다.
 - ④ 國防 및 國家 政治 保衛事業을 指導한다.
 - ⑤ 憲法, 最高人民會議 法令, 決定, 指示, 執行 政令을 監督하며 그와 어긋나는 國家機關의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 ⑥ 政務院의 部門別 執行機關인 部를 나오거나 없앤다.
 - ⑦ 政務院 總理의 提議에 依하여 副總理, 各部長, 그 밖에 政務院 成員들을 任命 및 解任한다.
 - ⑧ 大使와 公使를 任命 및 召喚한다.
 - ⑨ 重要 軍事幹部를 任命 및 解任하며 將領, 軍事稱號를 授與한다.
 - ⑩ 勳章, 名譽稱號, 軍事稱號 및 外交 職級을 制定하며 勳章, 名譽稱號를 授與한다.
 - ⑪ 大赦를 實施한다.
 - ⑫ 行政區域을 새로 나오거나 고친다.

⑬ 有事時에 戰時狀態와 動員令을 宣布한다.

第104條 中央人民委員會는 政令과 決定을 採擇하며 指示를 낸다.

第105條 中央人民委員會에는 對內政策委員會, 對外政策委員會, 國防委員會, 司法安全委員會 등 中央人民委員會 事業을 돕는 部門別 委員會를 둔다. 中央人民委員會 各委員會 成員은 中央人民委員會가 任命 및 解任한다.

第106條 中央人民委員會는 自己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 앞에 責任진다.

第8章 政 務 院

第107條 政務院은 最高主權機關의 行政의 執行機關이다. 政務院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밑에 事業한다.

第108條 政務院은 總理, 副總理, 部長들과 그 밖에 必要한 成員들로 構成한다.

第109條 政務院은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① 各部, 政務院 直屬機關, 地方行政委員會 事業을 指導한다.

② 政務院 直屬機關을 내오거나 없앤다.

③ 國家의 人民經濟 發展計劃을 作成하며 그 實行對策을 세운다.

④ 國家豫算을 編成하며 그 執行對策을 세운다.

⑤ 工業, 農業, 對內外商業, 建設, 運輸, 遞信, 國土管理, 都市經營, 科學, 教育, 文化, 保健 등의 事業을 組織 執行한다.

⑥ 貨幣 및 銀行制度를 鞏固히 하기 爲한 對策을 세운다.

⑦ 다른 나라와 條約을 맺으며 對外事業을 한다.

⑧ 人民武力建設에 對한 事業을 한다.

⑨ 社會秩序의 維持, 國家의 利益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을 爲한 對策을 세운다.

⑩ 政務院 決定, 指示에 어긋나는 國家管理機關의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第110條 政務院은 全員會議과 常務會議를 가진다. 政務院 全員會議는 政務院 成員 全員으로 構成하며 政務院 常務會議는 總理, 副總理와 그 밖에 總理가 任命하는 政務院 成員들로 構成한다.

第111條 政務院 全員會議는 國家 管理事業에서 나서는 새롭고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한다. 政務院 常務會議는 政務院 全員會議에서 委任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한다.

第112條 政務院은 決定을 採擇하며 指示를 낸다.

第113條 政務院은 自己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앞에 責任진다.

第114條 部는 政務院의 部門別 執行機關이다. 部는 指示를 낸다.

第9章 地方人民會議, 人民委員會 및 行政委員會

第115條 道(直轄市)·市(區域)·郡 人民會議는 地方主權機關이다.

第116條 地方人民會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舉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選出한 代議員들로 構成한다.

第117條 道(直轄市) 人民會議 任期는 4年, 市(區域), 郡 人民會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18條 地方人民會議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 ① 地方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承認한다.
- ② 地方豫算을 承認한다.
- ③ 該當 人民委員會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 委員들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④ 該當 行政委員會 委員長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⑤ 該當 裁判所의 判事, 人民參審員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⑥ 該當 人民委員會와 下級 人民會議 및 人民委員會의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第119條 地方人民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를 가진다. 定期會議는 1年에 1, 2次 該當 人民委員會가 召集한다. 臨時會議는 該當 人民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大會議 全員の 3分の 1 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第120條 地方人民會議는 代議員 全員の 半數 以上이 參席하여야 成立된다.

第121條 地方人民會議는 議長을 選舉한다. 議長은 會議를 執行한다.

第122條 地方人民會議는 決定을 採擇한다. 地方人民會議 決定은 該當 人民委員會 委員長이 公布한다.

第123條 道(直轄市)·市(區域)·郡 人民委員會는 該當 人民會議의 休會中の 地方主權機關이다.

第124條 地方人民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地方人民委員會 任期는 該當 人民會議의 任期와 같다.

第125條 地方人民委員會는 다음의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 ① 人民會議를 召集한다.
- ② 人民會議 代議員 選舉를 爲한 事業을 한다.
- ③ 人民會議 代議員들과의 事業을 한다.
- ④ 該當 人民會議와 上級 人民委員會 決定의 執行을 爲한 對策을 세운다.
- ⑤ 該當 行政委員會 事業을 指導한다.

- ⑥ 下級 人民委員會 事業을 指導한다.
- ⑦ 該當 地域안의 國家機關, 企業所 및 社會協同團體들의 事業을 指導한다.
- ⑧ 該當 行政委員會와 下級人民委員會 및 行政委員會의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止하며 下級人民會議의 그릇된 決定의 執行을 停止시킨다.
- ⑨ 該當 行政委員會 副委員長, 事務長, 委員들을 任命 및 解任한다.

第126條 地方人民委員會는 決定을 採擇하여 指示를 낸다.

第127條 地方人民委員會는 自己事業에 對하여 該當 人民會議와 上級人民委員會 앞에 責任진다.

第128條 道(直轄市)·市(區域)·郡 行政委員會는 地方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이다.

第129條 地方行政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事務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第130條 地方行政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 ① 該當 地方의 모든 行政事業을 組織 執行한다.
- ② 該當 人民會議, 人民委員會 및 上級機關의 決定, 指示를 執行한다.
- ③ 地方의 人民經濟 發展 計劃을 作成하며 그 實行對策을 세운다.
- ④ 地方豫算을 編成하며 그 執行對策을 세운다.
- ⑤ 該當 地方의 社會秩序의 維持, 國家의 利益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을 爲한 對策을 세운다.
- ⑥ 下級 行政委員會 事業을 指導한다.
- ⑦ 下級行政委員會의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第131條 地方 行政委員會는 決定을 採擇하며 指示를 낸다.

第132條 地方行政委員會는 自己事業에 對하여 該當 人民會議와 人民委員會 앞에 責任진다.
地方行政委員會는 上級 行政委員會와 政務院에 服從한다.

第10章 裁判所 및 檢察所

第133條 裁判은 中央裁判所,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 및 特別裁判所가 한다. 判決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이름으로 宣告한다.

第134條 中央裁判所の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에서 選舉한다.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の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該當 人民會議에서 選舉한다. 判事, 人民參審員의 任期는 該當 人民會議의 任期와 같다.

第135條 特別裁判所の 所長과 判事는 中央裁判所가 任命 및 解任한다. 特別裁判所の 人民參審員은 該當 勤務者會議 또는 從業員會議에서 選舉한다.

第136條 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任務를 遂行한다.

- ① 裁判活動을 通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세워진 勞動者, 農民의 主權과 社會主義 制度, 國家, 社會協同團體 財產과 人民의 憲法的 權利 및 生命 財產을 온갖 侵害로부터 保護한다.
- ② 모든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및 公民들이 國家의 法을 正確히 지키고 階級的 怨讐들과 온갖 法 違反者들을 反對하여 積極 鬭爭하도록 한다.
- ③ 財產에 對한 判決, 判定을 執行하며 公證事業을 한다.

第137條 裁判은 判事 1名과 人民參審員 2名으로 構成된 裁判所가 한다. 特別한 境遇에는 判事 3名으로 構成하여 할 수 있다.

第138條 裁判은 公開하며 被訴者의 辯護權을 保障한다. 法이 定한데 따라 裁判을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

第139條 裁判은 朝鮮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裁判에서 自己나라 말을 할 수 있다.

第140條 裁判所는 裁判에서 獨立的이며 裁判活動을 法에 徹底히 依據하여 遂行한다.

第141條 中央裁判所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裁判機關이다. 中央裁判所는 모든 裁判所의 裁判事業을 監督한다.

第142條 中央裁判所는 自己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 및 中央人民委員會앞에 責任진다.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는 自己事業에 對하여 該當 人民會議 앞에 責任진다.

第143條 檢察事業은 中央檢察所, 道(直轄市)·市(區域)·郡檢察所 및 特別檢察所가 한다.

第144條 檢察所는 다음과 같은 任務를 遂行한다.

- ①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및 公民들이 國家의 法을 正確히 지키는가를 監視한다.
- ② 國家機關의 決定, 指示가 憲法, 最高人民會議 法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命令,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決定, 指示,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政務院의 決定, 指示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監視한다.
- ③ 犯罪者와 法 違反者를 摘發하여 法的 責任을 追窮함으로써 勞動者, 農民의 主權과 社會主義 制度를 온갖 侵害로부터 保衛하며 國家, 社會協同團體財產과 人民의 憲法的 權利 및 生命·財產을 保護한다.

第145條 檢察事業은 中央檢察所가 統一的으로 指導하며 모든 檢察所는 上級 檢察所와 中央 檢察所에 服從한다. 檢事는 中央檢察所가 任命 및 解任한다.

第146條 中央檢察所는 自己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 및 中央人民委員會앞에 責任진다.

第11章 國章・國旗 및 首都

第147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章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 올려 감은 벼이삭의 橢圓形 테두리 안에 雄壯한 水力發電所가 있고 그 위에 燦然히
빛나는 붉은 5角별이 있다.

第148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旗는 깃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幅이 있고 그 아래
위에 가는 흰 幅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幅이 있고 붉은 幅의 깃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角별이 있다. 깃발의 세로와 가로의 比는 1:2이다.

第14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首都는 平壤이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법

(1963. 10. 9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
서 본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은 그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은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으로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다.

제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내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

제5조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 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의 국
적은 부모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6조 외국인은 민족별 및 인종별에 관계없이 그의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결혼하여도 그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8조 부모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적에 입적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적으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14세 미만의 자녀들의 국적은 부모를 따라 변경되며 18세 미만의 자녀들의 국적은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 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녀들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에의 입적 또는 그로 부터의 제적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 건

서 기 장 임 춘 추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6. 7. 30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 또는 국가 최고기관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으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여성들은 남자와 동등의 노동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은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곤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와 동등의 자유이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전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이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년령은 여성 만17세, 남성 만18세부터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와 여자들을 처(妻)나 첩(妾)으로 매매하는 여성인권유린의 폐해를 금후 금지한다. 공창(公娼), 사창(私娼) 및 기생제도(기생권법,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전2항에 위반하는 자는 법에 처한다.

제8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의 재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지며 이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 분배의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법령의 발표와 동시에 조선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46年 7月 30日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 일 성

서기장 강 량 욱

◇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

(1946. 9. 14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포한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 원 장 김 일 성

서 기 장 강 량 욱

제 1 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지방(도, 시, 군, 면 리) 및 중앙인민위원회원을 선거하며 또 위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여성은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

제 2 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조 봉건적 유습인 남존여비사상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학대, 폭행 기타 일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제 4 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 여성은 피상속자와 적을 같이 하는 한 남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 6 조 결혼으로 말미암아 타가로 적을 옮길 때에는 여성은 친가에 대하여 북조선토지개혁 법령에 의하여 자기의 분으로 분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결혼전의 부 또는 부의 재산은 각 그 소유에 속한다. 결혼생활중에 부부가 소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 8 조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서를 당사자가 소관 시 면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서에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 당사자의 쌍방의 상대방의 신체상태(정신병, 성병, 호흡기병의 유무 불구여부)를 잘 알고서 결혼한다는 것, 당사자의 결혼희수

및 당사자가 가진 자녀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결혼년령에 달하지 못한 자는 결혼할 수 없다.

동양식(민머느리)과 동양서(테릴사위)는 금지한다.

제10조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의에 의한 이혼서를 소관 시 민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소관 인민재판소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도저히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이혼 판결을 한다.

제13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일시적 감정에 기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히 고려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내에서 일정한 기간 소송수속을 중지한다.

제14조 재판소는 전조의 기간경과후 2주간내에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호출한다.

제15조 전조의 호출에 의하여 출두한 당사자의 일방이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할 때는 이혼판결을 한다.

제16조 제15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쌍방 또는 원고가 출두하지 않은 때는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된다.

제17조 2회이상 이혼하려는 자의 이혼소송의 관할은 도재판소에 속한다. 자진하여 2회이상 이혼하려는 때는 이혼서제출시 혹은 이혼소송제기시에 5천원의 금액을 소관 인민재판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관 도재판소에 결정에 의하여 전항의 금액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이혼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자녀양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소관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전조의 수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남성 혹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양육하는 자녀가 1인 때는 그 수입의 20% 2인인 때는 35% 3인인 때는 50%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동수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의 수입은 납세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의하여 정하되 실시 수입과 차이가 있을 때는 수입의 평정을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18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불한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1년중 적당

한 시기에 1년분을 지불할 수 있다.

제21조 여성은 이혼을 할 때에 있어서 전남편에 대하여 그 결혼중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의 분배와 복조선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자기의 분으로 분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후설의 규정은 등법령에 의하여 분여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동시에 자녀양육자 자녀양육비 재산 및 토지분배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여성의 법률행위능력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 기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 법령과 규칙은 일체 무효로 한다.

제24조 기만 또는 위협적 수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결혼할려는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할 때
2.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하게 한 때
3.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할 때
4. 부부로 하여금 이혼하게 할 때
5. 이혼할려는 부부로 하여금 이혼하지 못하게 할 때
6. 이혼할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하지 못하게 할 때

제25조 부녀의 부모 친족 또는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녀를 출가시킴에 있어서 상대방인 남성 또는 그 부모 친족 혹은 보호자로부터 금전 재물 또는 노력의 제공을 받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 일부일처제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 시행전의 기성사실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제27조 재판소로부터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선고받은 자로서 이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부녀의 하여금 창기영업(공사창기생)을 시킨 자 또는 자진하여 우 영업을 한 부녀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 본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勞動黨 綱領

[解説] 北韓 勞動黨은 1946年 8月, 「北朝鮮共產黨」과 「新民黨」과의 合黨當時, 「北朝鮮共產黨」綱領을 바탕으로 하는 새 綱領을 作成・發表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改正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 理由로서 同綱領이 全國의 範圍에서 實施되지 않고 있다는 詭辯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同綱領은 實質的인 勞動黨 運營과 生理를 달리하고 있고, 實効性이 없는 한낱 空文에 不過하다.

따라서, 北韓은 1956年 4月의 第3次黨大會에서 改正된 黨規約 前文과 第1章에 黨의 性格, 黨員의 資格등 實質的인 黨綱領의 內容을 담아 이를 代用시키고 있다.

朝鮮勞動大衆의 利益을 代表하며 擁護하는 勞動黨은 富強한 民主主義 獨立國家 建設을 目的하고 다음과 같은 課業을 爲하여 鬪爭한다.

1. 民主主義 獨立國家를 建設할 것.
2. 人民共和國의 建設을 爲하여 全朝鮮의 主權을 人民의 政權인 人民委員會에 넘기도록 할 것.
3. 日本人 民族叛逆者 및 地主들의 所有土地를 沒收하여 土地없는 農民, 土地 적은 農民들에게 無償으로 分配하며 北朝鮮의 土地改革의 成果를 더욱 鞏固히 하고 全朝鮮에 土地改革을 實施할 것.
4. 日本國家, 日本人團體와 日本人 個人所有 및 民族叛逆者들의 所有인 工場, 鑛山, 鐵道, 運輸, 通信, 機關, 企業所 및 文化機關들은 國有化할 것.
5. 一切 銀行과 其他 金融機關들은 國有化할 것.
6. 勞動者와 事務員에게 8時間勞動制를 實施하며 그들에게 社會保險을 保障하고 女子들에게 男子와 同等한 賃金を 支拂할 것.
7. 財産의 多少, 知識의 有無, 信仰 및 性別의 如何를 不拘하고 20歲에 達한 朝鮮人民들에게 同等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賦與할 것.
8. 全朝鮮人民에게 言論, 出版, 集會, 演說大會, 示威運動, 黨組織 및 信仰의 自由를 保障할 것.
9. 女子들에게 政治的, 經濟的, 法律的으로 男子들과 同等한 權利를 保障하며 家族 및 風習關係에서 封建的 殘滓를 肅清하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國家的으로 保障할 것.
10. 人民教育의 改革을 實施하며 各種 學校內에서의 教育과 教養事業에서 日本教育制度의 殘滓를 肅清하며 財産形便과 信仰 및 性別을 不問하고 全 朝鮮人民에게 공부할 權利를

保障하는 同時에 朝鮮民族文化・藝術 및 科學의 正常的 發展을 圖謀할 것.

11. 勤勞大衆의 生活을 威脅하던 日本帝國主義 稅金制度의 殘滓를 撤廢하고 새로운 公正한 稅金制度를 實施할 것.
12. 民族軍隊 組織과 義務의 으로 軍事徵兵制度를 實施할 것.
13. 世界의 平和를 爲하여 鬭爭하는 聯邦과 平和를 愛護하는 各國, 各民族들과 튼튼한 親善을 圖謀한다.

◇ 北韓勞動黨 規約

(1980. 10. 13 6次黨大會 改正)

朝鮮勞動黨은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에 의해 創建된 主體型的 革命的 맑스-레닌主義黨이다.

偉대한 首領 金日成 同志는 1926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共產主義的 革命組織으로서 打倒帝國主義同盟을 結成했으며 오랜 抗日革命鬭爭을 통해 黨創建을 위한 組織的, 思想的 基盤을 마련했으며 이에 基礎하여 榮光스러운 朝鮮勞動黨을 創建하였다.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에서 勞動階級과 全體 勞動大衆의 先鋒的, 組織的 部隊이며 全體 勞動大衆의 利益과 社會主義, 共產主義 運動의 勝利를 위하여 獻身의 으로 服務하는 先鋒的 鬭士들로서 組織한다.

朝鮮勞動黨은 오직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지도된다.

朝鮮勞動黨은 抗日革命鬭爭時期에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에 의해 이룩된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 發展시킨다.

朝鮮勞動黨은 資本主義思想과 마찬가지로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勞動階級運動에서 나타난 修正主義, 教條主義를 비롯한 온갖 機會主義를 反對하고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위하여 堅決히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의 範圍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

朝鮮勞動黨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을 黨建設과 黨活動의 基本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主體思想에 基礎한 全黨의 思想意志의 統一團結을 積極 強化한다.

朝鮮勞動黨은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實施하며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의 總路線으로서 千里馬運動과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推進한다.

朝鮮勞動黨은 勞動階級の 領導的 役割을 높임으로써 勞動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

各層 愛國的 民主力量들과의 統一戰線을 強化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人民들의 物質的 및 文化的 水準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最高의 活動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사람과의 事業을 黨事業의 基本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모든 黨事業의 基本原則으로서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한다.

朝鮮勞動黨은 抗日遊擊隊式 事業方法, 靑山里精神 및 靑山里方法을 徹底히 貫徹한다.

朝鮮勞動黨은 온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인테리化를 促進하고 社會主義의 物質, 技術的 土台를 鞏固히 하며 나아가서 社會主義制度를 強化하고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促進시키기 위한 鬭爭에서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活潑히 遂行한다.

朝鮮勞動黨은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 侵略軍隊를 몰아내고 植民地統治를 清算하며 그리고 日本 軍國主義의 再侵企圖를 挫折시키기 위한 鬭爭을 展開하고 南朝鮮人民들의 社會民主化와 生存權鬭爭을 積極支援하고 祖國을 自主的 平和的으로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基礎하여 統一을 이룩하고 나라와 民族의 統一의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自主성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 基礎하여 社會主義 나라들과의 團結과 國際共產主義運動과의 連帶性을 強化하고 世界의 모든 新興勢力나라 人民들과의 親善, 協調關係를 發展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人民들의 反帝民族解放運動과 資本主義 나라들의 勞動階級과 그밖의 人民들의 革命鬭爭을 支持하고 廣範한 聯合戰線을 實現하여 美國을 우두머리로 하는 帝國主義와 支配主義를 反對하며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의 獨立과 社會主義 共同偉業의 勝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第1章 黨 員

1.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과 首領, 祖國과 人民을 위하여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위하여 獻身하는 주체형의 共產主義 革命투사이다.
2.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된 朝鮮公民으로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 貫徹하기 위하여 堅決히 鬭爭하며 黨規約을 遵守하는 勞動者들이 될 수 있다.
3. 朝鮮勞動黨 黨員은 規定된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黨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滿 18歲부터 入黨할 수 있다.

入黨節次는 다음과 같다.

- 1) 候補黨員으로 入黨하려는 사람은 入黨請願書와 黨員 2名의 入黨保證書를 黨 細胞에 提出하여야 한다.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員이 入黨할 때에 市(區域)·郡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委員會의

入黨保證書는 黨員 1名의 保證書를 代身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入黨할 때에는 入黨請願書와 入黨保證書를 黨細胞에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黨細胞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다른 入黨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2) 入黨保證人は 최소한 2年이상의 黨年限을 가져야 한다.

入黨保證人は 被保證人の 社會, 政治生活를 잘 알아야 한다.

入黨保證人は 保證의 眞實性에 대하여 黨앞에 責任을 진다.

- 3) 入黨問題는 個別的으로 審査하며, 黨細胞總會에서 入黨請願者의 參加밑에 討議결정하며 그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入黨保證人は 入黨問題를 討議하는 會議에 參加하지 않아도 된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入黨問題에 대한 黨細胞의 決定을 1個月內에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 4) 特殊한 環境에서 일하는 사람의 入黨問題는 黨 中央委員會에서 特別히 制定한 規定과 節次에 따라 審議한다.

- 5) 他黨에서 黜黨한 사람이 入黨하려면 최소한 3年이상의 黨年限을 가진 黨員 3名의 保證이 있어야 한다.

他黨에서 平黨員으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市(區域)·郡黨委員會가, 市(區域)·郡級の 委員 및 幹部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管轄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道(直轄市), 中央委員會 및 幹部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黨中央委員會가 各各 最終的으로 批准한다.

- 6)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은 1年으로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에게 黨員의 資格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남에 따라 黨員審査總會에서 그의 入黨資格與否를 審議 決定한다.

特別한 경우에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黨員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만일 候補黨員의 入黨 準備程度가 不充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候補期間을 1年을 超過하지 않은 範圍에서 延期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候補期間을 마친 후에도 資格이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候補名簿에서 削除된다.

候補期間을 延期하거나 候補黨員을 名簿에서 削除시키는 黨細胞의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 7) 候補黨員이나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 黨員이 된 자의 入黨日時는 黨細胞總會에서 入黨을 決定한 날로 한다.

4. 黨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가 確固히 서 있어야 한다.

黨員은 黨과 首領에 無한히 忠誠하고 우리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하며 黨의 要求에 따라 생각하고 行動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授受하고 擁護하며 이를 徹底히 貫徹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體得하고 그것을 擁護하며 勞動과 生活에 適用해 나가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 儒敎思想, 修正主義, 敎條主義, 事大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를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固守하여야 한다.

- 2) 黨員은 黨性을 부단히 鍛鍊하기 위한 높은 組織意識을 가지고 黨 生活에 自發的으로 參加하여 自身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會議와 黨學習을 비롯한 黨의 組織 및 思想生活에 充分히 參加하고 黨組織의 決定과 自己에게 부여된 任務를 正確히 遂行하며 自身の 黨生活을 定期的으로 總和하며 批判과 思想鬪爭을 통하여 自己를 革命家로 鍛鍊시켜야 한다.

黨員은 職位와 功勞에 關係없이 全體黨員들에게 다같이 適用되는 黨規律을 自發的으로 遵守하고 規律 違反에 대하여는 堅決히 鬪爭하여야 한다.

- 3) 黨員은 革命的인 學習氣風을 確立하고 自己의 政治, 思想, 文化 및 技術水準을 一向上시키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 4) 黨員은 革命的 群衆路線을 貫徹하며 日常的으로 大衆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黨員은 大衆에게 黨의 路線과 政策을 日常的으로 解說하여 주며 그들을 敎養 改造하여 黨 주위에 굳게 結束시키고 革命課業의 遂行을 위하여 그들을 動員하며, 大衆의 意見을 正確히 授受하여 그들의 要求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어야 한다.

- 5) 黨員은 勞動과 生活에서 大衆의 模範이 되며 모든 事業에서 先鋒的 役割을 하여야 한다.

黨員은 集團의 革命化 鬪爭을 指導하며 自身과 家族의 革命化에 模範을 보여야 한다. 黨員은 勞動을 사랑하고 勞動法律을 自發的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自己가 맡은 事業에 精通하며 맡은바 任務를 模範的으로 遂行하여야 한다.

黨員은 保守主義와 消極性을 反對하며 技術革新運動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勞動生産 能率을 不斷히 提高하고 企業管理運營에 率先 參加하며 國家와 社會財産을 愛護하여 나라의 經濟를 節約해야 한다.

- 6) 黨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性을 所有하고 組織과 集團을 사랑하며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위하여 個人的 利益을 犧牲할 覺悟가 있어야 한다.

黨員은 높은 革命的 自立精神을 發揮하고 모든 隘路에 대하여 果敢히 鬪爭해야 한다.

黨員은 恒常 素朴, 率直, 謙遜하여야 하며 私利와 功名을 탐내지 말고 黨과 함께 率直하며, 人間性이 豊富하고 文化的이어야 하며 國法과 社會秩序 및 公衆道德 遵守에 模範이 되어야 한다.

7) 黨員은 社會主義祖國을 튼튼히 保衛하여야 한다.

黨員은 日常的으로 緊張된 動員 態勢를 갖추고 軍事知識을 배워 敵의 侵略으로부터 戰取物을 튼튼히 保衛하며 祖國統一의 大事變에 對備할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黨員은 革命規律과 秩序를 遵守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安逸과 나태함이 없이 革命的인 警覺性을 높이고, 黨, 國家 및 軍事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9) 黨員은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問題에 대하여 黨組織에 報告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現象뿐만 아니라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모든 缺陷과 否定的인 傾向을 反對하여 鬪爭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 關係 黨委員會에 迅速히 報告하여야 한다.

10) 黨員은 規定된 黨費를 매달 納付하여야 한다.

5. 黨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1) 黨員은 黨會議과 黨出版物을 통하여 黨의 路線과 政策 遂行 및 黨事業 發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

2) 黨員은 黨會議에서 投票權과 各及 黨組織의 指導機關 選舉에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3) 黨員은 黨會議에서 政黨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黨員을 莫論하고 批判할 수 있으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限 어떠한 指示의 遵守도 拒絕할 수 있다.

4) 黨員은 自己의 事業과 生活에 대한 問題를 討議・決定하는 黨 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5) 黨員은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 各及 黨委員會에 어떤 申訴나 請願을 提起하고 그에 대한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6) 候補黨員의 義務는 黨員의 義務와 같다. 候補黨員의 權利는 選舉權과 被選舉權 및 決議權이 없는 以外에는 黨員의 權利와 같다.

7) 黨의 規律을 違反하는 黨員은 黨의 責罰을 받는다.

①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을 反對하여 破壞적행위를 하거나 敵과 妥協하는 등 黨에 嚴重한 損失을 끼친 黨員은 黜黨시킨다.

② 黨員의 稱號를 剝奪하지 않을 程度의 過誤를 犯한 黨員에 대하여는 過誤의 輕重에 따라

譴責, 嚴重警告 또는 權利停止나 候補黨員으로 강등하는 責罰을 適用한다.

- ③ 黨 責罰의 目的은 過誤를 犯한 黨員을 教養하는데 있다.

黨의 責罰은 過誤를 犯한 動機와 原因 및 過誤의 結果를 詳細히 糾明한 후에 신중하게 考
해야 한다.

- ④ 黨 責罰은 本人의 參加下에 그가 屬한 黨 細胞總會에서 討議決定한다. 特別한 境遇에는
本人이 參加하지 않아도 責罰을 討議・決定할 수 있다.

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는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直接責罰
을 내릴 수 있다.

黨員에게 責罰을 適用할데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基準을 받아
야 하고 黨員自格 剝奪에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
다.

黜黨에 대한 黨細胞의 決定이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黨員의 黨證
을 回收하지 못하며 黨生活 參加를 許容해야 한다.

- ⑤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黨中央委員會全體會議에서,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該當
黨委員會의 全體會議에서 決定한다.

黨細胞는 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
員이 黨規律을 違反한 境遇에 違反黨員에 대한 責罰을 該當 黨委員會에 提議할 수 있다.

그러나 黨細胞는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
이 犯한 過誤가 害黨委員會事業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을 때에는 嚴重警告까지의 責罰을
決定할 수 있으며 그 決定은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6. 宗派 및 기타 다른 分派에 參加한 黨員에 대한 黨規律 問題의 審議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의하여 進行된다.

平黨員 또는 市(區域)・郡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道(直轄市) 黨委員會에서,
導(直轄市) 또는 中央黨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審議한다.

7.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請願을
지체없이 審議解決하여야 한다.

8. 黨細胞는 항상 責罰을 받은 黨員을 幫助하여야 하며, 만일 責罰을 받은 黨員이 自己의 過誤
를 깊이 懺悔하고 그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으며 實際로 行動이 改善되고 있는
境遇에는 그 責罰을 解題하는데 대한 問題를 總會에서 討議 決定하여야 한다.

黨員이 받은 責罰을 解除하는데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該當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
准을 받아야 한다.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받은 責罰의 解除는 그 責罰의 適用을 體系的으로 決定한 該當 黨委員會에 의해서 決定된다.

9.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以上 黨生活에 參加하지 않는 黨員에 대하여 黨細胞는 總會에서 除名을 決定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決定은 市(區域)·郡黨 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10. 黨員의 登錄과 移動은 黨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과 節次에 의하여 處理된다.

第2章 黨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1. 黨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의하여 組織한다.

- 1) 各及 黨組織의 指導機關은 民主主義的으로 選舉하고, 選出된 黨指導機關은 選舉한 黨組織에 대해 自己의 事業에 관하여 定期的으로 總和·報告한다.
- 2) 黨員은 黨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 服從하며 모든 黨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絶對服從한다.
- 3) 모든 黨組織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貫徹하며 下級黨 組織은 上級黨組織의 決定을 義務的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黨 組織은 下級黨 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檢閲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게 自己의 事業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12. 各及 黨組織은 地域 또는 生産 및 勞動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地域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대하여 上級黨 組織으로 되며, 어느 한 分野의 全體事業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分野의 一部事業을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대하여 上級黨組織으로 된다.

13. 各及 黨委員會는 各 該當 單位의 最高 指導機關이며 政治的 總參謀部이다.

集團의 指導는 모든 黨委員會의 基本活動指針이다.

各及 黨委員會는 새로운 重要한 問題들을 集團的으로 討議決定하여 그것을 執行하여야 하며 이에 個人的 責任性和 創發性을 嚴密히 結合시켜야 한다.

各及 黨組織은 該當地域 또는 分野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自立的으로 討議 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決定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各及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다음과 같다.

- 1) 全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大會가 없을 때는 黨大會가 選出한 黨中央委員會가 最高指導機關이 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 黨代表會이며, 黨代表會가 없을

때는 黨代表會가 選出한 該當 黨委員會가 最高指導機關이 된다.

- 2) 黨大會 또는 黨代表會의 代表者는 次下級 黨組織의 黨代表會 또는 黨總會에서 選舉한다.

黨大會 代表者의 選出比率는 黨中央委員會가 決定하며, 道(直轄市)·市(區域)·郡黨組織의 黨代表會 代表者의 選出比率는 黨中央委員會가 作成한 規定에 따라 該當 黨委員會가 決定한다.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의 數는 黨大會가 決定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會와 初級黨委員會의 委員數는 黨中央委員會가 規定한 基準에 根據하여 該當 黨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決定한다.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準候補委員은 生産勞動에 直接 參加하는 核心黨員中에서 選出된다.

各及黨組織의 指導機關 選舉는 黨中央委員會가 規定한 選舉細則에 따른다.

15.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準候補委員의 除名 또는 補選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實施된다.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委員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境遇에는 그 缺員된 數만큼 該當 黨委員會 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만약 必要時는 黨委員會 缺員은 委員會의 候補委員이 아닌 다른 黨員으로 補選될 수 있다.

初級黨組織 執行機關委員의 除名 및 補選은 該當 黨總會(黨代表會)에서 施行된다.

初級黨이 下級黨의 規模가 尙大하거나 널리 分散되어 있고 또 業務의 特殊性으로 인해 黨總會(黨代表會)召集이 不可能할 境遇에는 初級黨委員會가 缺員補充을 위한 補選을 實施할 수 있다.

上級黨委員會는 缺員된 下級黨委員會의 責任秘書(秘書) 또는 秘書(副秘書)를 任命할 수 있다.

各及 黨機關의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權만 가진다.

16. 黨會議는 該當 黨組織에 所屬된 黨員(黨委員 또는 代表者)總數의 3分之2 以上이 參加하여야만 成立될 수 있고 提起된 問題의 決定은 該當 黨會議 參加者의 過半數 贊成을 要한다.

17. 各級 黨委員會內에는 必要한 部署를 設置한다.

部署의 設置 및 廢止의 權限은 黨中央委員會가 가진다.

18.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및 그들과 同等한 機能을 遂行하는 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黨中央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初級黨委員會 및 分初級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批准하고 少數黨員을 가진 初級黨委員會 또는 部門黨委員會 및 黨細胞의 組織과 解散은 市(區域)·郡黨委員會가 批准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組織과 解散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報告하여 야 한다.

19. 黨中央委員會는 어떤 黨組織을 莫論하고 黨의 路線과 政策 및 黨規約를 嚴重하게 違反하 거나 實踐을 怠慢이 한 境遇에 그 黨組織을 解散하고 所屬黨員을 個別的으로 審議하며 그 들을 再登錄하여 새로운 黨組織을 組織할 수 있다.

20. 黨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重要的 地域과 部門 및 特殊한 環境에 適合한 黨 組織의 構成, 黨組織의 活動方法과 其他 黨 建設의 諸般問題에 관해 다르게 決定할 수 있 다.

第3章 黨의 中央織組

21. 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大會이다.

黨大會는 5년에 1回 黨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黨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黨大會를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4個月前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黨大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 總和
- 2) 黨綱領과 規約의 採擇 또는 修正補完
- 3) 黨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에 관한 基本問題 決定
- 4)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 選舉

23.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 사이에 모든 黨事業을 組織指導한다.

黨中央委員會는 全黨에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樹立하고 그 遂行을 組織 指導하며 黨과 革命隊列을 鞏固히 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調整하며 革命的 武力을 組織, 그들의 戰鬥能力을 높이고 기타 政黨 및 國內外機關의 活動에서 黨을 代表하며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

24. 黨中央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6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는 該當 時間에 黨이 直面한 重要問題 등을 討議 決定하며 黨中央 委員會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를 選舉하며 黨中央委員會 總祕書와 祕書를 選舉하고

黨中央委員會의 祕書局과 軍事委員會를 組織한다.

黨中央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를 選出한다.

25. 黨中央委員會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과 全員會議 사이에 黨中央委員會 名義로 黨의 모든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26. 黨中央委員會 祕書局은 必要時, 黨人事 및 當面問題 등 黨內問題를 討議, 決定하며 그 決定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27. 黨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人民軍을 包含한 全武裝力強化와 軍需産業發展에 관한 事業을 組織, 指導하며 우리나라의 軍隊를 指揮한다.

28.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 및 其他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 및 規約을 遵守하지 않아 黨 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提議 및 黨員의 申訴를 審議해 결한다.

29. 黨中央檢査委員會는 黨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0.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 사이에 黨代表者會를 召集할 수 있다.

黨代表者會의 代表者 選舉節次와 代表者 選出比率는 黨中央委員會가 決定한다.

黨代表者會는 黨의 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에 관한 緊急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하며 自기의 任務을 遂行하지 못한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또는 準候補委員을 除名하고 그 缺員을 補選한다.

第4章 道(直轄市)의 黨組織

31. 道(直轄市)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道(直轄市) 黨代表會이다. 道(直轄市) 代表會는 3 年에 1回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 代表會는 必要에 따라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道(直轄市)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代表會議 召集日과 議程을 2個月前에 下級黨組織들 에 通知하여야 한다.

32. 道(直轄市) 黨代表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道(直轄市) 黨檢査委員會의 事業 總和
- 2) 道(直轄市) 黨委員會 및 道(直轄市) 黨檢査委員會 選出
- 3) 黨大會에 派遣할 代表者 選出

33.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勞動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黨員과 勞動大衆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굳게 武裝시키고 그들이 黨路線과 政策을 徹底히 擁護遂行하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 儒敎思想, 修正主義, 敎條主義, 盲從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에 대해 堅決히 鬪爭하도록 監督하고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繼續 強化해야 한다.

幹部隊列은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後備隊를 育成하며 黨 力量을 合理的으로 配置하고 黨 生活을 組織, 指導하며 下級黨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의 活動을 監督한다.

黨員 및 勤勞大衆에 대한 主體思想, 黨政策, 革命傳統敎養 및 階級敎養이 主內容인 共產主義 敎養과 社會主義的 愛國敎養을 強化해야 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그들을 黨 두리에 結束시켜야 한다.

勤勞大衆의 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이 自己 基本課業을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도록 指導, 調整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을 적절히 指導하여 革命課業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 戰鬥力 向上을 組織的으로 指導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소관 事業에 관해 黨 中央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34. 道(直轄市)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 全員會議를 4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舉하며, 秘書處를 組織하고,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 黨委員會 名義로 黨內事業을 組織, 執行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會議는 1個月에 2回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秘書는 人事行政 등 黨內問題에 대해 必要時마다 討議 決定하고 그 決定事項을 執行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35. 道(直轄市) 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 또는 反革命的 宗派行爲 등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 路線 및 政策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아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提議 및 黜黨에 對한 決定을 最終的으로 批准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申訴를 解決한다.

第5章 市(區域)·郡의 黨組織

36. 市(區域)·郡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市(區域)·郡 黨 代表會이다.

市(區域)·郡黨 代表會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3年에 1回 召集하고 必要에 따라 市(區域)·郡黨代表會는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市(區域)·郡黨代表會의 召集一字와 議程을 1個月前에 傘下 黨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7. 市(區域)·郡代黨代表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市(區域)·郡黨委員會와 市(區域)·郡黨檢査委員會의 事業總和

2) 市(區域)·郡黨委員會와 市(區域)·郡黨檢査委員會 選舉

3) 道(直轄市) 黨代表會에 派遣할 代表者 選舉

38.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遂行한다.

黨員과 勤勞大衆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武裝시키고 그들이 黨路線과 政策을 徹底히 擁護 遂行하며,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 儒敎思想, 修正主義, 敎條主義, 盲從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를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할 것을 保障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繼續 強化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을 敎養하며 幹部後備隊를 育成하고, 그들을 組織的으로 訓練한다.

黨員의 黨生活를 組織, 指導하며 黨의 核心을 研究 周知시키고 그 隊列을 擴大시키며 黨員 擴大事業을 定期的으로 組織·遂行하며 黨의 力量을 적절히 配置하고 黨員과 候補黨員을 記錄한다.

黨員과 勤勞大衆에 대해 主體思想, 黨政策과 革命傳統敎養 및 階級敎養이 主內容인 共產主義敎養과 社會主義의 愛國敎養을 強化하며 革命化·勞動階級化를 통해 그들을 黨두리에 結束시킨다.

黨 基層組織을 合理的으로 組織하며 初級黨組織의 執行機關을 強化하며 그들의 機能과 役割의 不斷한 向上을 爲하여 매일같이 指導·幫助한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을 強化하고 任務를 正確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그 履行을 監督한다.

行政 및 經濟事業을 正確히 指導하여 革命課業의 成果的 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들의 政治思想敎養과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戰鬪態勢를 完備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自己의 事業에 關해 上級黨委員會에 定期的으

로 報告한다.

39.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全員會議을 3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執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舉하고 秘書處를 組織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名義로 黨內事業을 組織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執行委員會는 1個月에 1回以上 會議을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秘書處는 問題提起時마다 人事行政 等 黨內事業에 關한 問題를 決定하며 그 決定을 執行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執行方法을 討議決定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40. 市(區域)·郡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 等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 및 規約을 遵守하지 않아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申訴를 審議 處理한다.

第6章 黨의 基層組織

41. 黨의 最下 基層組織은 黨細胞이다.

黨 細胞는 黨員生活의 據點이며 黨周圍에 大衆을 集結시키고 大衆속에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直接 遂行하는 黨의 戰鬥單位이다.

42. 黨의 基層組織의 組織方式은 다음과 같다.

1) 黨細胞는 黨員 5名에서 30名까지의 單位에 組織한다.

黨員 5名未滿의 單位에는 黨細胞를 두지 않고, 그 單位의 黨員 또는 候補黨員은 隣接 黨細胞에 所屬시키거나 作業性格과 隣接關係를 考慮하여 2個以上 單位의 黨員을 合併하여 1個의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特殊한 境遇에는 3~4名이 있는 單位 또는 30名 以上の 單位에도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黨員 3名未滿의 單位에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推薦하는 黨員을 責任者로 하는 黨 小組를 組織할 수 있다.

2) 黨員 31名 以上이 있는 單位에는 初級黨組織을 둔다.

3) 初級黨組織과 黨細胞 사이에 黨員 31名 以上이 있는 生産單位나 其他 活動單位에는 部

門(마을) 黨組織을 둘 수 있다.

4) 初級黨, 部門黨 또는 黨細胞의 組織形成만으로는 黨基層 組織構成이 不適當한 境遇에는 初級黨組織과 部門黨組織 사이에 있는 生産單位나 其他 活動單位에 分初級黨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5) 以上の 모든 黨 組織形態가 現實에 符合되지 않는 境遇에는 黨中央委員會의 批准을 얻어 實情에 맞는 다른 黨組織形成을 取할 수 있다.

43. 黨基層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 組織의 總會(代表會)이다.

1) 黨細胞總會는 1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2) 初級黨, 分初級黨, 部門(마을) 黨의 總會(代表會)는 3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初級黨組織이 500名 以上の 黨員 또는 候補黨員으로 構成되어 있거나 그 傘下組織들이 널리 分散되어 있을 境遇에는 初級黨組織의 總會를 1년에 1回以上 召集할 수 있다.

44. 黨의 基層組織은 1年任期의 該當 組織의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1) 黨細胞는 總會에서 秘書와 副秘書를 選舉한다.

2) 初級黨委員會, 分初級委員會, 部門(마을) 黨委員會는 各各 黨總會(代表會)에서 選舉하며 秘書·副秘書는 各各 黨委員會 會議에서 選舉한다.

初級黨 및 分初級黨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各各 執行委員會를 選舉할 수 있다.

初級黨委員會는 1個月에 3回以上, 分初級黨委員會와 部門(마을) 黨委員會는 1個月에 2回以上 會議을 召集하며 執行委員會가 組織된 初級黨 및 分初級黨委員會는 1個月에 1回以上 委員會 會議을 召集하며 執行委員會 會議는 1個月에 2回以上 召集한다.

3) 中央機關의 黨組織은 黨指導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45. 黨基層組織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그들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며 그들이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接受하여 끝까지 擁護貫徹하도록 하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 儒教思想, 修正主義, 教條主義, 盲從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에 對해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끊임없이 強化한다.

2) 下級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組織的으로 訓練시키며, 黨核心을 周知, 教養하며 不斷히 그 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3) 黨員들의 黨生活를 強化하고 그들의 黨性을 鍛鍊한다.

黨員들 속에 黨規約 學習을 定期的으로 組織하며, 그들에게 항상 革命을 위한 思考와 行動을 하도록 하고, 모든 活動에서 先鋒的인 役割을 하도록 黨의 任務를 賦與하며, 높은 政治 思想的 水準에서의 黨會議과 黨生活 總和를 遂行하며 黨員의 黨生活를 徹底히 把握

하고, 그들을 敎養하며, 黨員들을 革命家로 改造하고 批判을 통한 思想鬭爭을 強化한다.

黨員이 過誤를 犯했을 境遇에는 責任을 追窮하고 그 過誤를 是正하도록 그를 幫助한다.

4) 黨員 適任者를 發見 登錄하며 그들을 組織的으로 敎養하여 審査後 資格者를 入黨시키며 候補黨員과 새로 入黨한 黨員들을 敎養訓練시킨다.

5) 黨員들과 勤勞大衆의 思想敎養事業을 強化한다.

黨員들과 勤勞大衆에 對해 主體思想, 黨政策, 革命傳統敎養 및 階級敎養이 主內容인 共產主義 敎育과 社會主義의 愛國敎養을 強化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그들을 黨 두리에 結束시킨다.

6) 勤勞大衆의 要求와 意見을 謙遜히 接受하고 그것을 제때에 解決하여 주며 그들의 物質 文化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며 모든 單位와 職場에서 系統과 秩序를 確立하며 反革命 分子들에 對한 鬭爭을 強化한다.

7) 勤勞大衆의 社會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그들이 자기의 義務를 正確히 遂行하도록 監督한다.

8) 모든 事業活動에서 抗日遊擊隊式 事業方法 및 靑山里 精神과 方法을 適用하고 政治事業을 先行시키며 行政 및 經濟事業에 對한 效果的인 指導를 통해 革命課業을 成果的으로 保障한다.

모든 黨員들과 勤勞大衆이 그들의 革命課業을 忠實히 遂行하고 生産과 建設에서 끊임 없이 革新을 일으키며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과 社會主義 競爭運動에 積極 參加하여 技術革新運動을 促進하며 勞動生産能率을 提高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며 法令을 遵守하고 國家와 社會財産을 愛護 節約하도록 그들을 組織, 鼓舞한다.

9)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들의 政治, 思想, 敎養 및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黨이 부를 때 恒時 動員할 수 있도록 準備한다.

10) 黨員과 候補黨員을 登錄하며 黨費를 釀出하여 自己 事業에 關해 上級 黨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第7章 朝鮮人民軍隊內 黨組織

46. 朝鮮人民軍은 抗日武裝鬭爭의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한 朝鮮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다.

47. 朝鮮人民軍隊內的 各級 單位에 黨組織을 構成하며 朝鮮人民軍의 全體 黨組織을 網羅하는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를 組織한다.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에 直屬하며 그 指導 밑에 事業하고 자기 事業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48.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全軍을 主體思想으로 教養하기 위해 鬭爭한다.

黨員들과 軍人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鞏固히 確立하며 그들이 黨과 首領, 祖國과 人民을 위해 서슴없이 生命을 바칠 수 있는 眞正한 革命戰士가 될 수 있도록 鍛鍊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며 幹部後備隊를 育成하고 그들의 黨性을 끊임없이 鍛鍊하도록 黨員의 黨生活를 組織, 指導하며 黨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黨員과 軍人들에 대해 主體思想, 黨政策 및 革命傳統教養과 階級教養을 主內容으로 하는 共產主義教養과 社會主義的 愛國教養을 強化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他們을 黨두리에 結束시킨다.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의 機能과 役割을 높이도록 指導한다.

黨軍事路線과 主體的 戰略戰術을 遂行하기 위해 軍事事業에 관한 黨委員會의 集團的 指導를 強化하며 人民軍을 一當百의 革命的인 武裝力으로 強化, 發展시키기 위해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과 붉은旗中隊 運動을 積極 展開한다.

黨員과 戰士들이 언제나 遲滯없이 行動할 수 있도록 警戒態勢를 堅持토록 하고 恒常 完壁한 戰鬥態勢를 갖도록 鼓舞한다.

黨員과 戰士들에게 높은 革命的 同志愛 및 軍官과 戰士, 軍隊와 人民間의 高貴한 傳統的 團結精神을 發揮하도록 誘導한다.

49.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朝鮮勞動黨의 規約과 黨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示와 規定에 따라 組織되고 事業을 遂行한다.

50.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地方 黨組織들과 緊密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朝鮮人民軍隊의 黨 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의 批准을 얻어 政治 및 軍事幹部를 駐屯地域의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및 工場 企業所의 初級黨委員會 委員으로 推薦할 수 있다.

第8章 政治機關

51. 黨 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政治, 經濟 및 軍事分野의 重要한 部門에 政治機關들을 組織한다.

中央機關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 및 그들에게 所屬한 政治機關들은 該當 部門에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에게 政治思想教養 事業을 組織 遂行하며, 該當 單位內에 組織된 黨委員會 執行機關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朝鮮人民軍 總政治局과 그 所屬政治機關은 該當 黨委員會의 執行機構로서 黨政治事業을 組織하고 遂行한다.

52. 朝鮮人民軍 總政治局과 中央機關內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은 黨中央委員會 直屬이며 그 指導下에 事業을 遂行하고 擔當 事業에 關해 黨中央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53. 中央機關內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들은 下級政治機關들을 指導함에 있어서 該當 地方 黨委員會들과 緊密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54. 政治機關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遂行함에 있어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을 動員키 위하여 黨熱誠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55. 政治機關들은 勞動黨의 規約과 黨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示와 規定에 따라 組織되고 事業한다.

第9章 黨과 勤勞大衆의 組織

56.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廣範한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이며 抗日革命鬪爭의 榮光스러운 傳統을 繼承하는 黨의 外廓組織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廣大한 大衆의 思想教養組織이며, 黨과 大衆을 連結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忠實한 補助者이다.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의 革命課業을 直接 繼承하는 青年들의 革命的 組織이며 黨의 戰鬪的 後備隊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黨의 指導下에 自己의 事業을 進行한다.

57.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꾸리며 同盟隊列을 強化하며 組織生活과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하고 革命化를 通해 同盟員들을 黨 두리에 結束시키며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과 社會主義競爭運動을 展開하며 同盟員들을 革命과 建設에 積極 動員한다.

58. 各級 黨組織들은 勤勞大衆의 幹部隊列들을 強化하고 勤勞大衆組織의 媒體를 通하여 大衆과의 事業體系를 樹立하며 勤勞大衆의 特性에 맞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正確히 提示하며 그들이 自發的으로 自己 任務를 遂行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

第10章 黨의 財政

59. 黨의 財政은 黨員들의 黨費, 黨이 運營하는 組織들과 企業所들로부터의 收入 및 其他 收入으로 充當된다.

60. 黨員 및 候補黨員의 黨費는 月收入의 2%로 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規約

(46. 1. 16 채택 64. 5. 16(5次 대회) 改正)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나라 青年들의 共產主義의 大衆團體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朝鮮勞動黨의 戰鬪의 後備隊이며 金日成同志의 指導밑에 組織 展開된 抗日武裝 鬪爭의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한 共產主義建設의 交代者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朝鮮勞動黨의 領導 밑에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戰鬪의 範圍에서 反帝反對建의 民主主義 革命課業을 實現하고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은 青年들을 우리黨의 思想體系로 튼튼히 武裝시키고 黨 中央委員會를 목숨으로 지키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하고 貫徹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青年들을 自力更生의 革命的 旗幟를 높이 들고 千里馬運動의 大高潮를 繼續 堅持하며 技術革命, 文化革命, 思想革命을 促進시켜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더 잘 더 빨리 建設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社會主義 建設의 모든 戰線에서 青年들이 어렵고 힘든 重要的 모퉁이를 맡아 나서며 技術革新運動을 廣範히 展開하며 共產主義의 勞動의 模範을 創造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 人民의 革命的 戰取物을 守護하며 社會主義 祖國을 怨讐들의 侵害로부터 튼튼히 保衛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青年들을 黨과 革命에 無限히 忠實하며,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의 새 型의 人間으로 教養한다.

青年들 속에서 學習 氣風을 세우고 그들에게 「맑스 레닌」主義 理論과 우리黨政策 金日成同志의 努力을 깊이 研究體得시키며 先進科學技術과 知識을 배우도록 한다.

青年들을 共產主義 思想과 우리黨의 革命傳統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며 階級的 怨讐를 미워하고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制度를 反對하며 革命的 終局的 勝利를 爲하여 鬪爭하도록 教養한다.

青年들 속에 主體를 세우며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를 反對하고 맑스 레닌主義 純潔性을 固守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靑年들에 依한 共產主義 道德教養을 強化하며 集團 同志를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儉朴하게 사는 革命的 生活氣風을 세우도록 한다.

靑年들이 革命的 樂觀主義와 創造的 精神으로 充滿되고 未來를 사랑하며 革命的 勝利를 굳게 믿고 어떠한 어려운 고비라도 勇敢하게 뚫고 나가는 굳센 革命精神을 가지도록 教養한다.

우리 民族의 悠久한 文化遺産을 繼承發展시키며 靑年들이 文化藝術的 素養을 높이고 豐富한 情緒를 所有하도록 教養한다.

靑年들 속에서 群衆體育와 體育技術을 發展시키며 그들의 體力을 不斷히 鍛鍊하여 勞動과 國防에 믿음직하게 準備시킨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南半部를 美帝國主義侵略者들과 그 앞잡이들의 反動統治에서 解放하고 祖國의 完全한 統一獨立을 達成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共和國 南半部の 勞動靑年 農民靑年 學生靑年을 비롯한 各界各層 靑年들과의 統一戰線을 強化하며 그들의 過去生活과 政治的 見解, 信仰의 如何를 不問하고 우리 民族의 利益을 擁護하며 祖國의 自主性 統一을 念願하는 모든 愛國靑年들과 굳게 團結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靑年들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精神으로 教養한다. 社會主義國家와 모든 나라 勤勞靑年들과의 國際主義的 團結을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의 統一獨立을 支持聲援하는 나라 靑年들과의 親善을 強化하여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民族的 獨立을 爲하여 鬪爭하는 各國靑年들의 鬪爭을 積極 支持聲援하며 亞細亞와 世界의 平和를 鞏固히 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우리 黨의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하며 各界各層 靑年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養 改造하여 黨周圍에 튼튼히 묶어 세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모든 事業에 政治事業을 先行시키며 事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며 同盟員들이 革命的 群衆觀點과 人民的 事業作風을 所有하도록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同盟內 民主主義를 高度로 發揚시키며 鋼鐵같은 規律을 세우고 同盟의 戰鬥力을 強化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朝鮮勞動黨의 指導 밑에 事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中央委員會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의 指導를 받으며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地方組織들은 該當 地方黨組織들의 指導를 받는다.

朝鮮勞動黨에 入黨하는 것은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最高 榮譽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同盟員이 入黨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추도록 教養한다.

第1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員

1.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員으로는 滿 14歲부터 30歲까지의 青年으로서 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承認하고 그것을 實踐하기 爲하여 鬪爭하며 同盟의 一定한 組織에서 熱性的으로 事業하며 規定된 盟費를 바치는 모든 青年들이 될 수 있다.

滿 30歲가 넘게 되는 同盟員이 繼續 同盟員으로 生活할 것을 要求한다면 1~2年 더 할 수 있다.

同盟員이 朝鮮勞動黨에 入黨하면 그가 同盟組織에서 指導의 位置에서 事業하거나 執行機關成員으로 일하고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盟에서 除名된다.

2. 加盟은 個別的으로 하되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가.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에 들어오려는 青年은 加盟請願書와 少年團 團委員會 및 同盟員 1名의 加盟保證書를 該當 初級團體에 提出하여야 한다.

少年團 團委員會의 保證書가 없는 境遇에는 同盟員 2名의 加盟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加盟保證書는 保證한 內容에 對하여 同盟組織앞에 責任진다.

나. 加盟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請願者의 參加 밑에 討議決定한다. 이 總會에서 加盟請願者는 組織과 同志들 앞에 다음과 같은 盟誓를 하여야 한다.

나는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員으로서 恒常 朝鮮勞動黨과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同志에게 無限히 忠直하며 革命先輩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祖國의 統一獨立과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終局的 勝利를 爲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組織과 同志들 앞에 嚴肅히 盟誓합니다.

加盟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는 後에야 効力を 發生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初級團體가 決定한 加盟問題를 1個月 안에 審議하여야 한다.

다. 加盟 年月日은 初級團體總會에서 加盟을 決定한 날로 한다.

3. 어느 한 同盟組織의 同盟員이 다른 同盟組織에 移動하면 그는 移動하여 간 同盟組織의 成員으로 登錄한다.

同盟員의 移動은 同盟 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4. 同盟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가. 同盟員은 祖國의 統一과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을 爲하여 鬪爭한다.

나. 同盟員은 勞動黨의 模範을 따라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하고 決死的으로 貫徹하며 黨政策을 日常的으로 解釋 宣傳하고 黨의 붉은 教養者가 되어야 한다.

다. 同盟員은 우리黨의 革命傳統을 길이 研究 體得하고 恒常 革命先輩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아야 한다.

라. 同盟員은 社會主義建設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國家法令과 勞動規律을 지키고

企業管理運營에 積極 參加하며 國家計劃을 完遂 및 超過完遂하여야 한다.

다. 同盟員은 技術革命 課業 遂行에서 先驅者가 되며 技術技能水準을 높이고 技術革新을 일으켜 勞動生産能率을 不斷히 높여야 한다.

바. 同盟員은 怨讐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祖國을 保衛하며 國家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을 높여야 한다.

사. 同盟員은 政治理論 實務水準을 높이기 爲하여 「맑스 레닌」主義와 黨 政策 金日成同志의 努力을 깊이 研究하며 先進科學技術等 豊富한 知識을 가져야 한다.

아. 同盟員은 勞動階級の 思想으로 武裝하며 美帝와 日帝를 비롯한 帝國主義者들과 地主資本家制度를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여야 한다.

자. 同盟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을 지녀야 하며 組織과 集團과 同志를 사랑하고 禮節이 밝으며 安逸하고 浮華한 現狀들과 온갖 낮은 부르조아 生活習性을 反對排擊하며 勞動에서 模範이 되고 儉朴하게 살아야 한다.

차. 同盟員은 祖國과 人民을 熱烈히 사랑하며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國家와 社會의 共同財産을 所重히 하고 아껴야 한다.

카. 同盟員은 文化 藝術的 素養을 높이며 生活을 文化 衛生的으로 하여야 한다.

타. 同盟員은 體力을 不斷히 鍛鍊하며 體育技術을 發展시키고 勞動과 國防에 믿음직하게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

파. 同盟員은 同盟組織生活을 誠實히 하며 同盟會議에 빠짐없이 參席하여 問題討議에 積極 參加하며 組織이 준 委任과 分工을 徹底히 遂行하며 自己生活을 正常的으로 總和하여야 한다.

하. 同盟員은 同盟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同志들의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缺陷을 批判하며 自己 缺陷을 大膽하게 고쳐야 한다.

거. 同盟員은 少年團員들의 學習과 生活 健康을 日常的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5. 同盟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가. 同盟員은 同盟會議와 同盟出版物을 通하여 同盟決定과 同盟事業에 對한 實務的 討議에 自由롭게 參加할 수 있다.

나. 同盟員은 各級 同盟指導機關選舉에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다. 同盟員은 同盟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同盟員, 어떤 일꾼, 同盟指導(執行)機關이든지 批判할 수 있다.

라. 同盟員은 自己의 活動과 事業에 對한 問題를 討議 決定하는 同盟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마. 同盟員은 同盟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同盟委員會에 申訴와 請願을 할 수 있

으며 그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申訴와 請願을 받은 各級 同盟指導機關은 그것을 迅速 正確히 解決하여야 한다.

6.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社會主義建設과 祖國保衛에서 特出한 功勳을 세우고 同盟生活에서 模範이 된 同盟團體와 同盟員들을 表彰한다. 表彰은 同盟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에 따라 한다.
7. 同盟規律을 어기었거나 過誤를 저지른 同盟員에 對하여는 教養과 同志的 批判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過誤의 程度에 따라 警告, 嚴重警告의 責罰을 줄 수 있으며 黨과 革命에 嚴重한 損失을 준 同盟員은 出盟시킬 수 있다.

특히 出盟에 對한 決定은 저지른 過誤의 根源과 動機를 具體的으로 따져보고 慎重히 하여야 한다.

正確한 理由없이 6個月以上 同盟生活에 參加하지 않거나 盟費를 바치지 않는 同盟員은 自動的으로 同盟隊列에서 除名되는 것으로 認定하며 初級團體는 이에 對한 決定을 採擇하여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8. 責罰은 原則的으로 該當 同盟員이 屬한 初級團體總會에서 本人을 參加시키고 討議 決定한다.

同盟員에게 責罰을 줄데 對한 初級團體의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最終的 批准을 받아야 한다.

同盟員을 出盟이 最終的으로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同盟員의 同盟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그를 同盟生活에 繼續 參加시켜야 한다.

9.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에 對한 責罰은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하며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에 對한 責罰은 該當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10. 出盟 또는 責罰을 받은 同盟員은 그것이 不當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同盟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同盟委員會에 다시 審議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責罰을 받은 同盟員의 提起를 接受한 날부터 1個月 안에 處理하여야 한다.

11. 責罰을 받은 同盟員이 그後 生活에서 過誤를 고쳤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責罰을 벗겨주어야 한다.

責罰을 벗겨줄 데 對한 初級團體總會의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

에게 준 責罰을 벗겨주는 問題는 責罰을 준 該當級 同盟委員會에서 決定한다.

第2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2. 同盟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依하여 組織한다.
 - 가. 各級 同盟 指導機關은 下部에서 上部까지 民主主義의 으로 選舉한다.
 - 나. 各級 同盟 指導機關은 選舉받은 組織앞에 自己의 事業을 定期的으로 總和報告한다.
 - 다. 同盟員은 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同盟組織은 上級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全體同盟組織은 同盟中央委員會에 服從한다.
 - 라. 下級同盟組織은 上級同盟組織의 決定을 義務의 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同盟組織은 下級同盟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檢閱한다.
13. 各級同盟委員會의 活動의 基本은 集體的 指導이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委員들의 役割을 높이며 모든 活動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委員들의 集體的 智慧와 創發性에 依據하여 討議 解決하며 여기에 個人責任制를 密接히 結合시켜야 하며 一段討議決定된 問題는 個別的 일꾼들에 依하여 修正 또는 歪曲하거나 그 執行이 遲延되는 것을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14. 同盟組織은 地域的 또는 生産的 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同盟組織은 그 地域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들에 對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되며 한 部門의 全體事業을 擔當한 同盟組織은 그 部門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들에 對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된다.
15. 各級同盟組織은 該當 地域 또는 部門에서 提起되는 問題를 具體的 實情에 따라 自立的으로 討議 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決定은 同盟規約과 上級同盟委員會의 決定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6. 各級同盟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다음과 같다.

全同盟의 最高指導機關은 大會이며 大會와 大會사이에는 大會가 選舉한 同盟中央委員會이다.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 代表會이며 代表會와 代表會 사이에는 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同盟委員會이다.
17.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數는 大會에서 決定한다.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의 委員 및 候補委員數와 初級同盟組織의 執行機關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基準에 따라 該當 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決定한다.
18. 各級同盟指導機關은 秘密投票로 選舉한다. 立候補者들에 對한 投票는 個別的으로 한다. 各級 同盟指導機關들의 選舉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選舉細則에 따라 한다.

19.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委員들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全員會議에서 缺員된 數만큼 該當 同盟委員會 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境遇에 따라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委員 總數의 3分の 1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缺員된 人員을 候補委員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補選할 權限을 가진다.
- 上級同盟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缺員된 下級同盟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들을 任命하여 派遣할 수 있다.
20.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自己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該當 同盟委員會 委員 또는 候補委員을 同盟指導機關 成員에서 召喚할 權限을 가진다.
21. 同盟大會 惑은 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는 한級 낮은 同盟組織의 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選舉한다.
- 大會 代表者의 選出比率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하며 代表會代表者의 選出比率는 該當 同盟委員會가 規定한다.
22.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 候補委員은 該當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權만 가진다.
23. 同盟會議는 該當 組織에 所屬된 同盟員 또는 代表者 總數의 3分の 2以上の 參加로서 成立되며 提起된 問題의 可決은 該當 會議 參加者들의 半數以上の 贊成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同盟員을 出盟시키는 問題, 各級 同盟委員會 委員 또는 候補委員에게 責罰을 주는 問題, 그를 同盟指導機關으로부터 召喚하거나 候補委員이 아닌 사람들中에서 委員을 補選하는 問題들의 決定은 該當 會議 參加者들의 3分の 2以上の 贊成을 받아야 한다.
24. 道(直轄市), 市(區域), 郡 同盟委員會와 初級委員會는 黨의 決定, 指示와 그의 實踐을 爲한 同盟의 決定 執行을 討議하기 위하여 熱誠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25.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에 必要한 部署를 둔다. 部署를 두는 權限은 同盟中央委員會가 가진다.
26. 同盟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的으로 必要한 部門 또는 地域에 따라 同盟組織의 形式을 規定하고 그에 該當한 權限을 줄 수 있다. 同盟中央委員會는 特殊한 環境에서 同盟組織의 形式과 活動方法 및 其他 諸般問題들을 決定할 수 있다.

第3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中央組織

27. 同盟의 最高機關은 大會이다.

定期大會는 4년에 1回 同盟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同盟臨時大會는 同盟中央委員會의 提議 또는 全體 同盟員 總數의 3分の 1以上이 要求하는 境遇에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大會를 召集하는 날짜와 討議할 問題를 3個月前에 發表해야 한다.

28. 大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同盟中央委員會와 同盟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決算報告를 聽取討議하고 承認한다.

나. 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採擇하거나 修正한다.

다. 同盟앞에 提起되는 重要한 課業들을 討議 決定한다.

라. 同盟中央委員會와 同盟中央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29.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6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同盟中央委員會常務 委員會와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同盟中央委員會의 이름으로 同盟의 모든 事業을 指導한다.

常務委員會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幹部事業 및 當面한 事業을 討議하고 執行하기 爲하여 組織委員會를 選舉한다.

30. 同盟中央委員會는 大會와 大會사이에 全同盟事業을 指導하며 每時期 黨政策과 金日成同志의 敎示를 實踐하기 爲한 對策과 同盟앞에 提起되는 모든 課業을 討議 決定하고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하며 全同盟을 黨의 路線과 政策을 決死的으로 貫徹하는 戰鬥的 部隊로 꾸리고 同盟의 各種 機關을 設置하고 그 活動을 指導하며 幹部들을 配置하고 敎養 育成하며 모든 活動에서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을 代表하며 同盟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31. 同盟中央檢査委員會는 同盟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2. 同盟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大會와 大會 사이에 同盟代表者會를 召集할 수 있다.

同盟代表者會 代表者의 選舉節次와 代表者 選出 比率는 中央委員會가 規定한다.

同盟代表者會는 同盟앞에 提起되는 緊急한 問題들을 討議하며 自己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을 召喚하고 그를 補選하거나 새로 選舉할 權限을 가진다.

同盟代表者會에서 採擇한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들의 召喚, 補選 또는 選舉에 對한 決定 以外の 모든 決定은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全體 同盟 組織들은 그 決定을 義務的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33.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 깃발과 徽章을 制定한다.

第4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道(直轄市)組織

34. 道(直轄市)의 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道(直轄市)同盟 代表會이다. 道(直轄市)同盟 代表會는 2년에 1회 道(直轄市)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同盟 臨時代表會는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傘下 全體 同盟員 3分の 1以上の 要求와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提議 또는 同盟中央委員會의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道(直轄市)同盟代表會를 召集하는 날자와 討議할 問題를 2個月前에 傘下 同盟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5. 道(直轄市)同盟代表會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道(直轄市)同盟委員會와 道(直轄市)同盟檢査委員會 事業決算報告를 聽取討議하고 承認한다.

나. 道(直轄市)同盟委員會와 道(直轄市)同盟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다. 同盟大會에 보낼 代表者를 選舉한다.

36.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全員會議를 4個月에 1회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와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이름으로 事業한다.

37.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道內 同盟組織들의 指導機關으로서의 指導的 機能과 함께 執行機關의 機能을 遂行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黨 政策과 그를 實踐하기 爲한 同盟中央委員會 決定을 貫徹하며 靑年學生들과 少年들을 共產主義思想과 革命傳統으로 敎養하여 黨 周圍에 굳게 묶어 세우며 道內同盟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同盟組織들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하며 社會主義建設에 靑年들을 組織動員하며 自己事業情形을 同盟中央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第5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市(區域), 郡組織

38. 市(區域), 郡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市(區域), 郡同盟代表會이다.

市(區域), 郡同盟代表會는 2년에 1회 市(區域), 郡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 臨時代表會는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傘下 全體 同盟員의 3分の 1以上の 要求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提議 또는 上級同盟委員會의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市(區域) 郡同盟代表會를 召集하는 날자와 討議할 問題를 1個月前에 傘下 同盟 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9. 市(區域) 郡同盟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市(區域) 郡同盟檢査委員會의 事業決算 報告를 聽取 討議하고 承認한다.

나.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市(區域) 郡同盟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다. 道(直轄市) 同盟 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를 選舉한다.

40.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을 3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市(區域) 郡同盟執行 委員會와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이름으로 事業한다.

41.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每時期 黨政策과 그를 貫徹하기 爲한 上級同盟의 決定을 直接 組織 執行하는 同盟의 末端 指導機關이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黨 政策과 그를 實踐하기 爲한 上級同盟의 決定을 正確히 執行하며 靑年들 속에서 共產主義敎養과 革命傳統 敎養을 進行하며 社會主義建設에 靑年들을 組織動員하며 學生 少年事業에 注力하여야 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初級幹部와 核心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政治實務水準을 높이며 初級同盟組織들의 事業과 同盟員들의 同盟生活를 指導하여야 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을 登錄하며 自己의 事業情形을 上級同盟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第6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이 基層組織

42. 同盟의 基層組織은 初級團體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들의 同盟生活의 據點이며 靑年들을 敎養하여 黨 周圍에 묶어 세우며 黨 政策과 上級同盟決定을 直接 執行하는 同盟의 基層組織이며 戰鬪의 單位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 3名以上 있는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國家機關, 教育文化保健機關, 人民軍隊와 其他 모든 單位들에 組織한다.

同盟員 3名이 되지 않는 單位에는 同盟組織을 두지 않고 그 同盟員들을 가까운 同盟組織에서 生活하게 한다.

43. 初級團體의 最高機關은 初級團體總會이다.

初級團體總會는 1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44. 初級同盟組織의 形式은 다음과 같다.

가. 同盟員 100名이 못되는 單位에는 初級團體를 組織한다.

그러나 學校部門에서는 100名以上の 境遇에는 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團體 밑에는 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나. 同盟員 100名以上の 單位에는 初級委員會를 組織한다. 그러나 農村 經理部門에서는 同盟員 50名부터 里委員會 또는 初級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 안에는 執行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의 規模가 크거나 地域的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境遇에는 部門別 單位에 部門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와 部門委員會의 밑에는 部門別로 初級團體와 같은 權限을 가지는 分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分初級團體 밑에는 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다. 以上の 組織形式에 맞지 않는 境遇에는 道(直轄市)同盟委員會 또는 그와 같은 權限을 가진 同盟委員會의 批准밑에 實情에 맞는 組織形式을 取할 수 있다.

45. 分組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의 決定에 依하여 組織하며 初級團體와 分初級團體, 初級委員會와 部門委員會를 組織하거나 헤치는 것은 市(區域)郡同盟委員會 또는 그와 같은 權限을 가진 同盟委員會의 批准를 받아야 한다.

46. 初級同盟組織(初級委員會, 部門委員會, 初級團體, 分初級團體)에서는 1年을 期間으로 하는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同盟員 15名以上이 있는 初級同盟組織에서는 委員會를 選舉하고 그 委員會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同盟員 15名이 못되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에서는 委員會를 選舉하지 않고 初級團體(分初級團體)委員長을 選舉하며 必要에 따라 副委員長들을 選舉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는 總會 또는 代表會에서 選舉하며 그 委員會에서 執行委員會와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47. 初級同盟組織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靑年들을 우리黨의 思想體系와 革命傳統으로 確固히 武裝시키며 黨 政策을 日常的으로 알려주고 그를 徹底히 執行하도록 組織 動員한다.

나. 靑年들을 恒常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세우며 技術革命, 思想革命執行에서 先驅者가 되게 하며 나라의 살림살이에 主人답게 參加시키고 國家財産과 社會財産을 所重히 하며 社會主義 戰取物을 지키도록 組織 動員한다.

다. 同盟의 初級幹部들과 共產主義靑年核心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教養 育成하며 그 隊列을 不斷히 擴大 強化하여야 한다.

라. 靑年群衆들과의 連帶를 強化하며 同盟員들의 同盟生活를 組織하고 分工을 빠짐없이 주어 革命課業과 同盟決定 實踐을 爲하여 恒常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며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여야 한다.

- 마. 靑年들 속에서 階級敎養을 強化하여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를 미워하고 「부르조아」思想과 修正主義의 侵襲을 反對하여 鬪爭하도록 敎養하여야 한다.
- 바. 靑年들 속에서 共產主義 道德敎養을 強化하며 그들의 集團과 組織과 同志를 사랑하며 禮節이 밝고 公衆道德을 지키며 부지런히 일하고 儉朴하게 사는 革命的 生活氣風을 세우도록 한다.
- 사. 靑年들 속에서 學習을 正常的으로 組織하고 「맑스-레닌」主義와 黨 政策, 先進科學技術等 豊富한 知識을 배우도록 指導 幫助한다.
- 아. 同盟員들과 靑年들 속에서 多樣한 群衆文化事業을 組織하고 그들의 文化的 素養을 높이며 體育事業을 強化하여 靑年들의 體力를 鍛鍊시키고 體育技術을 發展시켜야 한다.
- 자. 加盟請願者를 同盟에 받아들이며 規律을 違反한 同盟員들에게 責任을 묻고 敎養을 強化하며 靑年들의 要求와 申訴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며 自己事業을 上級同盟組織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盟費를 받는다.
- 차. 少年團員들의 學習과 生活을 日常的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第7章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組織

- 48.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同盟組織은 該當 黨委員會와 政治機關의 指導 밑에 事業한다.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同盟組織들은 同盟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導書와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의 指示에 따라 事業한다.
- 49. 朝鮮人民軍內 同盟組織들은 該當 地方同盟組織들과 密接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第8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과 朝鮮少年團

- 50.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少年團 團體를 組織하고 그의 活動을 指導한다.
- 51. 少年團 團體들은 少年들에 對한 共產主義敎養과 革命傳統敎養을 強化하며 그들을 黨과 首領께 忠直하고 智 德體를 갖춘 共產主義建設의 後備隊로 敎養 育成한다.
- 52. 少年團 團體들은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中央委員會가 特定한 朝鮮少年團 規定에 依하여 事業한다.
- 53.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各級組織들은 自己地域內의 少年團團體들의 事業을 指導할 義務를 지닌다.

第9章 盟 費

54. 同盟員은 每月 自己의 收入에 따라 다음과 같은 比率로 盟費를 바친다.

月 收入 50원까지 1%

月 收入 50원 1전以上 100원까지 2%

月 收入 100원 1전 以上 3%

協同農場員은 1個月에 30전

55. 同盟에 加盟할 때 加盟金은 月 收入의 2%로 하며 協同農場員은 30전, 學生 其他는 10전으로 한다.

◇ 朝鮮農業勤勞者同盟 規約

(1965. 3.25 批准)

第1章 同 盟

가. 朝鮮農業勤勞者同盟으로는 朝鮮公民은 協同農民들과 國營農場 및 農村經理에 直接 服務하는 工場, 企業所, 機關, 職場內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들로서 同盟의 規約을 承認하고 實踐하기 爲하여 積極 鬭爭하며 同盟의 一定한 組織內에서 熱誠的으로 事業하며 規定된 盟費를 바치는 모든 勤勞者들이 될 수 있다.

나. 加盟은 別個的으로 하되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朝鮮農業勤勞者 同盟에 加盟하려는 農業部門 勤勞者들은 加盟 請願書를 該當 初級團體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加盟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請願書의 參加下에 討議 決定하며 그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은 後에야 效力을 發生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加盟問題에 對한 初級團體의 決定은 1個月內에 審議解決하여야 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加盟問題 取扱에서 本人을 參加시키지 않고 審議 解決할 수 있다.

③ 加盟 年月日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을 決定한 날로 한다.

不可避한 事情으로 同盟에서 除名되었다가 다시 同盟生活을 하게 되거나 職業同盟 組織으로부터 農業勤勞者同盟으로 넘어오는 同盟員은 從前의 同盟年限을 가질 수 있다.

다. 同盟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 ① 同盟員은 祖國의 統一獨立과 우리나라(北韓) 農村에서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을 爲하여 積極 鬭爭하여야 한다.
- ② 同盟員은 黨에 無限히 充實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支持하고 그것을 正確히 貫徹하여야 한다.
- ③ 同盟員은 黨의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 體得하고 革命鬭士들의 模範을 따라 배우며 일하여야 한다.
- ④ 同盟員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黨政策, 金日成의 勞作을 꾸준히 研究하고 自己의 思想 意識水準을 높이기 爲하여 不斷히 共產主義思想으로 든든히 武裝하여야 한다.
- ⑤ 同盟員은 美帝와 日帝를 비롯한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 階級을 憎惡하고 搾取制度를 反對하며 社會主義制度를 堅決히 擁護 發展시키고 自己의 鄉土와 社會主義精神을 所有하여야 한다.
- ⑥ 同盟員은 個人 利己主義와 小所有者의 根性을 清算하고 集團主義 思想으로 武裝하기 爲하여 積極 協力하며 勞動을 사랑하고 共同財産을 愛護하며 消極性和 保守主義를 反對하고 새것에 敏感하며 勝利에 對한 信心을 가지고 未來를 사랑하며 繼續 革新하고 繼續 前進하는 革命的 樂觀主義精神으로 武裝하여야 한다.
- ⑦ 同盟員은 高尚한 共產主義의 道德 品性을 所有하고 眞實하게 生活하여야 하며 同志를 사랑하고 禮節이 바르며 謙遜하고 素朴하며 安逸하고 解弛한 現狀들과 온갖 낡은 習慣을 버리고 日常生活에서 檢討하며 功名과 虛風을 버리고 率直하여야 한다.
- ⑧ 同盟員은 農村에서 水利化, 機械化, 電氣化, 化學化를 더욱 促進시키기 爲하여 相互 協力하여 積極 나서야 하며 農業科學의 成果와 先進營農技術을 廣範히 導入하고 技術革新 運動에 熱誠의으로 參加하며 集約的 營農方法을 繼續 發展시키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 農作物의 單位當 收穫高를 높이며 農業生産을 不斷히 長成시키고 農民들의 生活를 더욱 裕足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勞動에서 解放하기 爲하여 自己의 모든 情熱과 才能을 다 바쳐야 한다.
- ⑨ 同盟員은 一般 知識과 技術, 文化水準을 時急히 높이고 自己의 職場과 마을 家族들을 文化 衛生的으로 꾸리고 各種 文化 衛生施設들을 잘 거두고 모든 文化生活條件을 갖추는데 自覺的으로 動員되어야 하며 온갖 낡은 生活樣式과 因習을 清算하고 文明하게 生活하며 群衆文化事業에 積極 參加하며 體力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⑩ 同盟員은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 作業班 運動에 率先參加하여 높은 革命的 熱意를 發揮하고 集團的 革新을 일으키며 共產主義의으로 일하면서 배우며 生活하기 爲하여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 ⑪ 同盟員은 國家法令 및 各種 規定들과 勞動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自己가 맡은 일에

精通하고 익숙하며 土地와 機械設備, 各種 勞動道具들을 利用하며 勞動生産能率과 生産物의 質을 不斷히 높이고 勞動保護安全事業에서 積極性을 發揮하며 協同農場의 管理運營과 工場, 企業所, 職場의 企業管理 運營에 積極 參加하고 國家計劃을 完遂 및 超過完遂하여야 한다.

- ⑫ 同盟員은 나라와 協同農場의 살림살이를 主人답게 알뜰히 꾸리며 國土와 國家資源을 所重히 여기고 國家社會財産을 極力 節約하여야 한다.
- ⑬ 同盟員은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원수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戰取物을 堅決히 守護하여야 한다.
- ⑭ 同盟員은 同盟生活을 誠實하게 하며 同盟會議에 빠짐없이 參席하여 問題討議에 積極 參加하며 組織이 준 委任과 分工을 徹底히 執行하며 自己生活을 正常的으로 總和하여야 한다.
- ⑮ 同盟員은 同盟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缺陷들에 對하여 때에 批判하고 온갖 否定的 現狀들을 反對하여 堅決히 鬭爭하며 自己의 缺陷을 大膽하게 고쳐야 한다.

라. 同盟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 ① 同盟員은 同盟會議와 出版物을 通하여 同盟決定과 同盟事業에 對한 實務的 討議에 自由롭게 參加할 수 있다.
- ② 同盟員은 各級同盟 指導機關選舉에서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진다.
- ③ 同盟員은 同盟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同盟員을 莫論하고 批判할 수 있다.
- ④ 同盟員은 自己의 行動과 事業에 對한 問題를 討議 決定하는 同盟會議에 參席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 ⑤ 同盟員은 同盟中央委員會에 申訴와 請願을 할 수 있으며 그에 對한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마. 朝鮮農業勞動者同盟은 우리나라 社會主義 農村建設에서 特出한 功勳을 세우고 同盟事業과 生活에서 模範된 同盟團體와 同盟員들을 表彰한다.

表彰은 同盟中央委員會가 特定에 따라 한다.

바. 同盟規律을 어기었거나 過誤를 犯한 同盟員에 對하여서는 教養과 同志의 批判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過誤가 嚴重할 境遇에는 그 程度에 따라 警告, 嚴重警告의 責罰을 줄 수 있으며 黨과 革命에 嚴重한 損失을 준 同盟員들은 黜盟시킬 수 있다.

責罰의 目的은 過誤를 犯한 同盟員들을 教養하는데 있다. 同盟員에 對한 責罰 特히 黜盟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最大限의 慎重性과 同志의 配慮를 돌리며 그가 犯한 過誤의 內容과

根源을 正確히 알아보고 處理하여야 한다.

사.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 以上 同盟組織生活에 參加하지 않았거나 盟費를 바치지 않는 同盟員은 自動的으로 同盟隊列에서 除名되는 것으로 認定하며 初級團體는 이에 對한 決定을 採擇하여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判을 받아야 한다.

아. 責罰은 原則的으로 該當 同盟員이 屬한 初級團體總會에서 本人을 參加시키고 討議 決定한다. 同盟員에게 責罰을 줄데 對한 初級團體의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가 最終的으로 批准한 後에야 效力을 가진다.

同盟員을 黜盟이 最終的으로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同盟員의 同盟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그를 同盟生活에 繼續 參加시켜야 한다.

자.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에 對한 責罰은 同盟大會 또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하며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 委員候補委員에 對한 責罰을 該當 同盟代表會 또는 該當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初級團體는 上級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이 同盟規律을 違反한 境遇에 그에 對한 具體的 資料와 함께 責罰을 適用할데 對한 意見을 該當 上級同盟委員會에 提起할 수 있다.

차. 黜盟 또는 그 以下의 責罰을 받은 同盟員은 그것이 不當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同盟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同盟委員會에 다시 審議해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責罰을 받은 同盟員의 提議를 授受한 날부터 1個月 內에 處理하여야 한다.

카. 責罰을 받은 同盟員이 그後 實踐鬭爭을 通하여 犯한 過誤를 고쳤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責罰을 제때에 벗겨주어야 한다.

責罰을 벗겨줄데 對한 初級團體總會決定은 市(區域)·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委員, 候補委員會에서 준 責罰을 벗겨주는 問題는 責罰을 준 該當級 同盟委員會에서 決定한다.

타. 同盟內의 어느 한 組織의 同盟員이 同盟內의 다른 組織으로 移動하면 그는 移動하여 간 組織의 成員으로 登錄된다.

同盟員의 移動은 同盟 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에 따라 處理된다.

第2章 同盟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가. 同盟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依하여 組織한다.

① 各級 同盟主導機關은 下部로부터 上部에 이르기까지 民主主義的으로 選舉한다.

② 各級同盟 指導機關은 選舉받은 同盟組織 앞에 自己의 事業을 定期的으로 總和 報告한다.

③ 同盟員은 同盟 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同盟組織은 上級 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全體同盟組織은 同盟中央委員會에 服從한다.

④ 下級同盟組織은 上級 同盟의 決定을 義務的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同盟組織은 上級同盟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 檢閱한다.

나. 同盟委員會의 活動의 基本은 集體的 指導이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委員들의 役割을 높이며 同盟의 모든 活動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委員들의 集體的 知慧와 創發性에 依據하여 討議 解決하며 여기에 個人의 責任制를 密接히 結合시켜야 한다.

各級 同盟委員會에서 일단 討議 決定된 問題는 個別的 일꾼에 依하여 修正 또는 歪曲되거나 그의 執行이 遲延되는 것을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다. 同盟組織은 地域的 또는 生産的 單位에 따라 組織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들에 對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되며 한 部分의 全體事業을 擔當한 同盟組織은 그 部分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同盟 組織들에 對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된다.

라. 各級 同盟組織은 該當地域 또는 部門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具體的 實情에 따라 自立的으로 討議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決定은 同盟 規約과 上級同盟의 決定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마. 各級 同盟組織의 最高 指導 機關은 다음과 같다.

① 全同盟의 最高 指導機關은 同盟大會이며 大會와 大會 사이에는 大會가 選舉한 同盟 中央委員會이다.

②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 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 代表會이며 代表會와 代表會 사이에는 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同盟委員會이다.

③ 初級 同盟組織의 最高 指導機關은 同盟總會 또는 同盟 代表會이며 總會와 總會, 代表會와 代表會 사이에는 總會 또는 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同盟員會이다.

바.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數는 同盟大會에서 決定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 委員會委員 및 候補委員數와 初級 同盟組織의 執行機關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基準에 따라 當該 同盟代表會 또는 同盟總會에서 決定한다.

사. 各級 同盟 指導機關은 秘密投票로 選舉하며 同盟 指導機關에 選舉될 候補者들에 對한 投票는 個別的으로 進行한다.

各級 同盟 指導機關들의 選舉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選舉細則에 따라 進行한다.

아.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委員들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全員會議에서 缺員된 數만큼 該當 同盟委員會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경우에 따라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會議는 委員總數의 3分の 1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缺員된 委員을 候補委員이 아닌 同盟員들 가운데서 補選할 수 있다.

必要에 따라 上級同盟委員會는 下級同盟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들을 任命 派遣할 수 있다.

자.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自己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該當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을 同盟 指導機關 成員에서 召喚할 수 있다.

차. 同盟大會, 或은 同盟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는 한級 낮은 同盟組織의 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選舉한다.

同盟大會 代表者 選出 比率은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하며 同盟代表會 代表者選出 比率은 該當 同盟委員會가 規定한다.

카. 同盟 中央委員會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會議 候補委員은 該當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權만 가진다.

타. 同盟會議는 該當 同盟組織에 所屬된 同盟員 또는 代表者 總數의 3分の 2以上の 參加로써 成立되며 提起된 問題의 可決은 該當 同盟會議 參加者들의 半數 以上の 贊成으로서 確定된다.

그러나 同盟員을 黜盟시키는 問題, 各級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에게 責罰을 주거나 그를 同盟指導機關으로부터 召喚하는 問題, 候補委員이 아닌 同盟員들 中에서 委員을 補選하는 問題들의 決定은 該當 會議參席者들의 3分の 2以上の 贊成을 받아야 한다.

파. 郡(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와 初級同盟委員會는 黨의 決定 指示와 그의 實踐을 爲한 上級同盟의 決定執行 對策을 討議하기 爲하여 熱誠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하. 同盟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的으로 必要한 部門 또는 地域에 同盟組織의 形式을 따로 規定하고 그에 該當한 權限을 줄 수 있다.

同盟中央委員會는 特殊한 環境에서 同盟組織의 形式과 活動方法 및 其他 同盟中央委員會는 特殊한 環境에서 同盟組織의 形式과 活動方法 및 其他 諸般問題들을 따로 決定할 수 있다.

第3章 同盟의 中央組織

가. 同盟의 最高機關은 大會이다. 同盟定期大會는 4년에 1回 同盟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同盟臨時大會는 同盟中央委員會의 提議 또는 全體同盟員 總數의 3分の 1以上이 要求하는 경우에 召集한다.

同盟委員會는 同盟大會를 召集하는 날짜와 討議할 問題들을 3個月前에 發表하여야 한다.

나. 同盟大會의 事業을 다음과 같다.

① 同盟中央委員會 同盟 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 決算報告를 聽取 討議한다.

② 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採擇 또는 修正한다.

③ 同盟앞에 提起되는 重要한 課業들을 討議 決定한다.

④ 同盟中央委員會와 同盟中央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1년에 2回以上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同盟中央委員會 常務委員會와 委員長 및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同盟中央委員會의 名義로 同盟의 모든 事業을 指導한다.

常務委員會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內部事業과 提起되는 當面한 事業을 討議하고 執行하기 爲하여 組織委員會를 選舉한다.

라. 同盟中央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大會와 大會 사이에 同盟內에 黨의 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고 黨에 無限히 忠實하며 同盟員들과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黨周圍에 굳게 團結시키며 同盟 앞에 提起되는 모든 課業을 黨政策과 金日成同志의 敎示에 徹底히 立脚하여 그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員들 속에 主體를 세우며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를 反對하고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金日成同志께서 提示한 「우리나라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關한 提제」에 根據하여 思想革命을 先行시키면서 여기에 並行하여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強力히 推進시키며 農業部門에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作業班 運動을 指導하며 農業生產을 保障하기 爲한 實踐方途를 提示하며 그의 成果的 實行으로 同盟組織들과 同盟員들을 組織 動員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共和國北半部에서 社會主義 農村建設과 祖國의 自由統一을 促進시키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旗幟밑에 社會主義 國家와 全世界 農業部門勤勞者들과의 親善團結을 強化하며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民族的 獨立을 爲하여 싸우는 人民들을 熱烈히 支持聲援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원수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戰取物을 堅決히 守護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幹部들을 選拔 配置하고 教養을 育成하며 同盟組織을 革命的인 隊列로 튼튼히 꾸리며 우리나라 革命發展의 該當 時期에 必要한 同盟의 各種 機關들과 部署를 設置하고 그의 活動을 指導하며 同盟內事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며 同盟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모든 活動에서 同盟을 代表한다.

마. 同盟中央委員檢査委員會는 同盟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한다.

바. 同盟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大會와 大會 사이에 同盟 代表者會를 召集할 수 있다.

同盟代表者會는 黨政策을 貫徹하기 爲하여 全同盟 앞에 提起되는 時急한 問題들을 討議하며 自己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을 召喚하고 그를 補選하거나 새로 選舉할 權限을 가진다.

사.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깃발과 휘장을 制定한다.

第4章 道(直轄市)의 同盟組織

道(直轄市)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道(直轄市)同盟代表會이다.

道(直轄市)同盟代表會는 2년에 1回, 道(直轄市)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以上 35條~375條 省略

第5章 市(區域)·郡의 同盟組織

市(區域)·郡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市(區域)·郡同盟代表이다. 同代表會는 2년에 1回 召集한다.

以下 39條~41條 省略

第6章 同盟의 基層組織

가. 同盟의 基層組織은 初級團體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의 同盟生活의 據點이며 農業部門勤勞者들을 共產主義의 으로 教養하여 黨周圍에 묶어 세우며 黨政策과 上級同盟의 決定을 直接 執行하는 戰鬥單位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 3名以上 있는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 및 農村經理에 直接 服務하는

工場, 企業所, 機關, 職場, 農村里에 있는 學校, 診療所, 幼稚園, 託兒所, 商店 및 便宜奉仕部門들에 組織한다.

同盟員 3名이 되지 않는 單位에는 同盟組織을 두지 않고 그 同盟員들을 가까운 同盟組織에서 生活하게 한다.

나. 初級團體의 最高機關은 初級團體 總會이다.

初級團體 總會는 1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다. 初級同盟組織의 形成은 다음과 같다.

① 同盟員 100名이 못되는 單位는 初級團體를 組織한다.

初級團體 밑에는 同盟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同盟委員會의 規模가 크거나 地域적으로 널리 分布되어 있는 境遇에는 傘下の 部門別 單位에 必要에 따라 部門同盟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同盟委員會와 部門同盟委員會 밑에서 部門別로 初級團體와 같은 權限을 가지는 分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② 協同農場作業村에는 同盟員이 100名 以上の 境遇에도 分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分

初級團體 밑에는 同盟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라. 同盟分組의 組織(省略)

마. 初級同盟 組織에서는 1年을 期間으로 하는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바. 初級同盟 組織의 任務(14項으로 되어 있음) 省略

第7章 盟 費

가. 同盟員은 다음과 같이 盟費를 바친다.

協同農場員은 每月 30전(勞動黨員과 社勞靑員은 每月 10전)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은 每月 自己收入의 1%

나. 農業勤勞者 同盟에 加盟할 때 加盟金은 30전으로 한다.

제 2 절 선거, 선거구, 대의원의 권리의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1962. 8. 8 상임위원회 정령)

제1장 선거의 일반적 원칙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전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적이다. 즉, 만 18세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성분, 신앙, 거주기간, 재산, 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조선 인민군(경비대 포함)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만18세이상의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1. 재판소판결에 의하여 선권권을 박탈당한 자
2. 따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정신병자
3. 검찰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평등적이다. 즉, 선거권을 가진 매개 공민은 투표에서 1인 1표이며 평등한 기초에서 선거에 참가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직접적이다. 즉 모든 선거자들이 직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할 때의 투표는 절대비밀이다.

제2장 선거자명부

제9조 선거자명부에는 그를 작성할 당시에 해당 시(구역), 군, 리(읍, 노동자구)의 지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여 선거일에 이르러 선거권을 가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전부 등록된다.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단 한번만 등록된다. 본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제10조 선거자명부는 시(구역), 리(읍, 노동자구)인민위원회가 선거 분구별로 작성하며 조선 인민군부대(경비대 포함)내에서는 해당 군 부대장이 작성한다.

제11조 선거자명부는 중앙선거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인민반별로 작성하고 그를 작성한 인민위원회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제12조 분구 선거위원회는 선거일에 이르기 20일전에 선거자명부를 선거 분구 지역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성명 또는 기타가 오기되었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그릇 등록되는 등 선거자명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선거자들은 그 명부를 작성한 인민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선거자명부에 필요한 정정을 가하거나 그 청원을 거절하는 근거를 5일 이내에 청원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원자는 자기 청원에 대한 인민위원회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민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재판소는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지체없이 판정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인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구역), 리(읍, 노동자구)인민위원회는 선거자가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때로부터 선거일에 이르는 기간내에 등록된 자기주소를 변경하거나 혹은 타지역에 임시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제정한 양식에 의한 <선거권증명서>를 교부하고 선거자명부에 <전출>이라고 기입한다. 전출하는 선거자는 새 거주지인민위원회에 <선거권증명서>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선거자명부에 새로 등록된다.

제16조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선거자가 사망되었을 경우에는 그를 선거자명부에서 제명하고 <사망>이라고 기입한다.

제3장 선거구와 선거분구

제17조 선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인구 3만명에 한개의 비율로 조직한다. 선거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직한다.

제18조 선거자들의 투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 500~3,000명 범위내에서 선거분구를 조직한다. 선거분구는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조선인민군부대(경비대 포함)내 선거분구는 따로 조직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구 500명미만되는 지역에도 선거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환자 25명 이상 있는 병원, 요양소 및 철도의 주요 역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에는 특별선거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위원회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조직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중앙선거위원회
2. 도(직할시)선거위원회
3. 구선거위원회
4. 구선거위원회

제20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들은 제정당, 사회단체 및 협동단체대표로서 구성한다.

1.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에 이르기 60일전에 19~21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2~3명,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2.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55일전에 15~17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1~2명,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3. 구선거위원회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50일전에 13~15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4. 분구선거위원회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40일전에 5~7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21조 중앙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하며 본선거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검열한다.
2. 도(직할시)선거위원회와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소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3. 투표함의 규격, 선거표의 양식,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 회의록양식, 선거자명부, 선거권증명서, 당선증명서양식 및 선거위원회들의 인장을 제정 배포한다.
4. 선거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급 선거위원회에 배정한다.
5. 선거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물자를 각 선거위원회에 분배한다.
6. 구선거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선거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공포한다.

제22조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에서 선거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강조한다.
2.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물자들을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아 도내 각 선거위원회에 배정한다.

4. 구선거위원회의 보고를 종합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 구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선거규정 제5장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등록한다.
2. 분구선거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분구선거위원회회의록에 근거하여 선거구내에 투표수를 계산하며 선거결과를 확정한다.
4.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피선된 당선자에게 당선증명서를 내어준다.

제24조 분구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자명부의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2. 선거자들에게 선거절차를 해설한다.
3. 선거실을 장식하며 투표함을 준비한다.
4. 선거일에 이르기 15일전에 선거일과 선거장소를 공시한다.
5. 선거자들의 투표를 보장하며 매후보자가 받은 투표수를 계산한다.

제25조 각급 선거위원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는 거수방법으로 다수가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후보자추천절차

제2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은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 기관, 기업소종업원회의, 각 협동단체조합원회의, 주민회의 및 군무자회의에서 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추천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한다. 제정당, 사회단체는 공동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후보자가 적당한가, 적당치 못한가에 대하여 자유로 토론할 수 있다. 선거자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 후보자 추천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제28조 본선거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는 선거일에 이르기 30일전에 해당 구선거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단 한개구 선거위원회에만 등록된다. 구 및 분구 선거위원회 위원들은 자기 선거구의 대의원후보로 될 수 없다.

제29조 후보자를 추천한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 기관, 기업소종업원회의, 각 협동단체조합원회의, 주민회의 및 군무자회의는 회의록과 후보자의 승낙서를 구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명칭
2. 후보자 추천지일 및 장소
3. 후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정당 또는 소속단체명 및 직장직위
4. 회의의장 및 서기의 서명

제30조 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등록된 날부터 그들의 성명, 성별, 연령, 정당 또는 소속단체명 및 직장직위를 라디오, 출판물 기타 방법을 통하여 선거자들에게 반드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매개 선거자들은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하여 자유로 선전 선동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일과 투표절차

제32조 선거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60일전에 정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6시부터 24시까지 실시한다.

제33조 선거일 6시에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과 같이 투표함과 선거자명부를 검열하고 투표함을 선거위원회인장으로 봉인한 후 선거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

제34조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선거자들은 선거장소에 가서 자기의 공민증 혹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분구선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한 다음에 선거표를 받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제35조 선거일에 선거자가 질병 또는 노쇠 기타 신체적 불구로 인하여 선거장소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 그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선거표와 투표함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분구선거위원회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각 선거구에서는 다만 1명의 대의원만이 선거되며 매개선거자들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자를 찬성하며 한번만 투표한다. 신체불구로 인하여 자기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는 선거자는 자기 측근자를 선정하여 자기 입회하에 투표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37조 투표가 진행될 때에 투표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전 선동을 금지한다.

제7장 선거결과 확정

제38조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시간이 끝나면 투표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다음 투표한 투표수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수와 대조한 후 그 결

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39조 규정된 양식, 규격 및 색깔과 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정확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들이 거수방법으로 다수가결에 의하여 해결되고 이에 대하여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40조 분구선거위원회가 투표수를 계산하는 장소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정당, 사회단체대표 및 출판보도기관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다.

제41조 분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를 찬성과 반대로서 계산한다.

제42조 분구선거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투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분구선거위원회의 입장을 적는다. 분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 1부는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12시간이내로 특사로서 구선거위원회에 보낸다. 남은 회의록 1부와 일체 선거표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보낸다.

제43조 구선거위원회에서 투표수의 계산은 분구선거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에 관한 회의록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수를 확정된 후 중앙선거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회의록 2부를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구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구선거위원회인장을 찍는다. 작성한 회의록 1부는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도(직할시)선거위원회에 특사로서 보낸다. 남은 회의록의 1부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보낸다.

제44조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구선거위원회들의 회의록을 종합하여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특사로서 보낸다.

제45조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전 선거자의 과반수가 참가하여야만 유효하며 최고찬성투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된 자로 인정하는 바 그 찬성투표수는 해당 선거구의 전선거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6조 만일 본선거규정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의 전선거자의 과반수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보자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과반수의 찬성투표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선거위원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특별히 지적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본선거규정에 의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중 사망, 소환 기타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결정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보충선거는 본규정에 준한다.

제48조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본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제49조 선거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1954. 10.30 최고인민회의법령 제27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

제2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그 관할지역내 공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서 구성한다.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의 대의원수와 선거철차는 선거법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3조 도민회의는 4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2년의 임기로 선거한다.

제4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자기활동에 있어서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보장한다.

제2장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회의

제5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화국의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며 문화 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내에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부문의 모든 활동을 지도한다.
2. 전국적 인민경제계획 및 종합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인민경제계획 및 지방예산을 채택한다.
3.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지역내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을 채택한다.
4. 자기의 인민위원회를 선거 및 소환한다.
5. 자기에게 소속된 기관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6. 지방협동단체들의 사업을 백방으로 방조하여 그들의 발전대책을 강구한다.
7. 자기의 관할지역내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및 협동단체들의 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감시한다.

8. 국가 및 사회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9. 자기의 인민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지시를 폐지 또는 변경한다.

제6조 도, 시, 군, (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하여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가진다.

도, 시, 군(구역), 인민회의 정기회의는 6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차씩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인민회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7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의 소집에 관하여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매 개 대의원 및 상급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출판물 기타 방법으로써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의의 의사일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정한다. 그러나 인민회의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공개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인민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개회하고 매 회의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거한다. 다만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하지 않고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지도한다.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한다.

제9조 도, 시, 군(지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전체 대위원의 반수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모든 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다수결로 채택한다. 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10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부당한 경우에는 상급인민회의는 이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는 자기사업을 협조하는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제12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의 요구와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돌리며 해당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법령 및 국가시책과 해당인민회의의 결정을 해석 침투함으로써 매개 공민들로 하

여금 자각적인 공화국의 성원이 되도록 교양하며 자기사업과 온갖 사회생활에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야 한다.

제13조 도, 시, 군(구역), 리(로동자구)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들 앞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민위원회와 그 부서책임자에게 그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회의와 그 부서 책임자에게 그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위원회와 그 부서책임자는 전항의 질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대답하여야 한다.

제15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의 대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의원이 자기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의 로동 수입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의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제16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의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또는 대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자들에 의하여 소환된다.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당선거구에서 보선한다.

제 3 장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위원회

제17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 행정기관이다.

모든 인민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제18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거한다.

1. 도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들 서기장 및 7명 내지 9명의 위원
2. 시, 군(구역)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들 서기장 및 2명 내지 4명의 위원
3.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2명 내지 4명의 위원

제19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음번 해당 인민회의에서 이를 보선한다.

인민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는다.

제20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은 해당 상급 인민위원회의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

제21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위원회는 자기 관할지역내에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인민회의 결정과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하여 자기에 소속된 부서들과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2. 지방인민경제계획과 지방예산안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3. 농촌경리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선진 영농방법을 도입하며 농업협동단체의 광범한 조직을 장려하며 그 운영을 지도 방조한다.
4. 지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 부원 및 내부원천을 탐구 동원하며 국영 및 협동단체의 산업기업소들을 확장 발전시킬 데 대한 대책을 조직 실시한다.
5. 국가 및 협동단체의 상업망을 확장발전시키며 인민들에 대한 생활필수품의 공급사업을 개선 강화한다.
6. 인민교육기관들을 관리하며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7. 인민보전사업을 조직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 및 물질적 방조사업과 로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국가 사회보장사업을 집행한다.
8. 각종 세금의 정확한 부과 징수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엄격한 절약제도의 실시를 보장한다.
9. 도시경여 국유건물의 관리와 지방의 도로, 교량, 교통 및 공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10. 국가 및 사회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11. 자기 관할지역내에 있는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및 협동단체의 사업을 협조하며 그들이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정확히 집행하는 가를 감시한다.
12. 법령, 정령, 상급기관의 결정지시 및 해당 인민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결정지시를 채택한다.
13. 해당 인민회의의 소집을 준비한다.
14.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5. 해당 인민위원회 부서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22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자기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회의 및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 앞에 책임을 진다.

제23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도, 시, 군(구역),인민위원회의 부서 책임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의하며 문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4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채택한다.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며 지시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도인민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지시의 등본은 당 상급, 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5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부당한 경우에는 상급인민위원회 및 내각이 이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내각 및 상급 인민위원회는 하급 인민회의의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기 관할지역내에 있어서 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 해당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 집행을 보장하며 해당 인민위원회 및 그 부서들의 사업을 통솔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회의를 준비 및 소집하며 그의 진행을 지도한다.

제27조 도, 시, 군(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적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가 경과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29조 도, 시, 군(구역), 인민위원회는 내각이 정한바에 의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30조 도인민위원회의 부서책임자의 임면은 해당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 군(구역) 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의 임면은 상급 인민위원회 동종부서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이 자기의 직속으로 도, 시, 군(구역)에 설치한 지방기관(부서)책임자의 임면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도, 시, 군(구역), 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자기사업활동에 있어서 그가 속하는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와 상급인민위원회의 동종부서 및 해당성에 복종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1967. 9. 26. 상임위원회 정령)

제 1 장 선거의 기본원칙

제 1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이 아래부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이라 한다) 대의원

선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는 일반적이다. 즉 만 열여덟살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성분, 신앙 거주기간, 재산, 지식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만 열여덟살 이상의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 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2. 따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정신병자
3. 검찰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의하여 갇혀있는 자

제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역 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선거할 권리 선거를 가진 모든 공민은 평등한 기초에서 선거에 참가한다.

제8조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을 직접 선거한다.

제9조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투표의 절대비밀을 보장받는다.

제 2 장 선거자 명부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자 명부에는 그를 작성할 때 해당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내에 거주하며 선거날에 이르러 선거할 권리를 가지는 공민들이 모두 등록된다.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단 한번 등록된다.

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자명부는 시(구역), 리(읍, 로동

자구)인민위원회가 인민반 차례에 따라 선거분구 단위로 작성하며 그를 작성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내 선거자들의 선거자 명부는 해당 군부대장이 작성한다.

제12조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에 이르기 20일전에 선거자 명부를 선거분구지역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자 명부에 빠졌거나 잘못 적혀 틀린 것이 있을 경우에 선거자들은 그 선거자 명부를 작성한 인민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을 받은 인민위원회는 곧 심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움과 함께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청원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청원자는 자기의 청원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인민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재판소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판정결과를 제기한 자와 해당 인민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위원회는 선거자가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때로부터 선거날에 이르는 동안에 등록된 자기주소를 바꾸거나 다른곳에 임시로 머무르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권증명서>를 주고 선거자 명부에 <전출>이라고 적어넣는다.

전출하는 선거자는 새 거주지 인민위원회에 <선거권증명서>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선거자 명부에 새로 등록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선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선거자 명부에서 제명하고 <사망>이라고 적어놓는다.

제 3 장 선거구와 선거분구

제1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도(직할시), 시(구역)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선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리(읍, 로동자구, 동)행정구역 단위로 진행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직한다. 선거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인구 3만명에 한개의 비율로 한다.

제1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인민회의의 대의원선출 비율에 근거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가 조직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출 비율은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선거자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 분구를 조직한다.

제22조 선거분구는 인구 300~3천명 범위내에서 해당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인민 위원회가 조직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구 300 명이 못되는 곳에도 선거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환자 25명 이상 있는 병원, 요양소 및 철도의 중요역 기타 이와 비슷한 기관, 기업소에 따로 선거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내에는 선거분구를 따로 조직한다.

제 4 장 선 거 위 원 회

제2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사업은 각급 선거위원회들에서 조직 집행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들은 제 정당, 사회, 협동단체 대표들로 조직하며 위원장, 부위원장들, 서 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2. 도(직할시) 선거위원회
3.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
4. 구 선거위원회
5. 리(읍, 로동자구, 등) 선거위원회
6. 분구 선거위원회

제2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위한 각급 선거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60일전에 17~21명으로 조직한다.
2. 도(직할시) 선거위원회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50일전에 9~13명으로 조직한다.
3.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는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45일전에 7~11

명으로 조직한다.

4.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45일전에 7~11명으로, 도(직할시), 및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는 도(직할시) 및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40일전에 5~7명으로 각각 조직한다.
5.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는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40일전에 5~7명으로 조직한다.
6. 분구선거위원회는 해당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35일전에 5~7명으로 조직한다.

제26조 중앙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하며 이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검열한다.
2. 각급 선거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투표함의 규격과 선거표, 선거위원회의 회의록, 선거자명부, 선거권증명서, 당선증명서등 선거사업에 필요한 양식 및 선거위원회들의 도장을 제정 배포한다.
4. 선거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 각급 선거위원회에 배정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선거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6. 도(직할시) 선거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각급 지방 주권기관 대의원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27조 도(직할시)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직할시) 내에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하며 이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검열한다.
2. 도(직할시)내 선거위원회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표, 선거문건 양식, 선거위원회 도장, 선거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아 관내 선거위원회들에 배정한다.
4.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의 보고를 종합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5.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와 시(구역), 군선거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시(구역), 군내에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하며 이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

도록 지도 검열한다.

2. 시(구역), 군내선거위원회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표, 선거문건 양식, 선거위원회 도장을 도(직할시) 선거위원회로부터 받아 관내 선거위원회들에 배정하며 선거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한다.
4.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와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시(구역), 군 및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도(직할시) 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9조 구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자기선거구에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를 등록한다.
2. 분구선거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자기 선거구내의 투표수를 분구선거위원회의 회의록에 근거하여 계산하며 선거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자기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당선증명서를 준다.

제30조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자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정된 자를 등록한다.
2. 분구선거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표, 선거문건 양식 및 도장을 분구선거위원회에 배포한다.
4. 선거자들에게 선거규정을 해설한다.
5. 자기 리(읍, 로동자구, 동)내의 투표수를 분구선거위원회의 회의록에 근거하여 계산하며 선거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6.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에게 당선증명서를 준다.

제31조 분구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자 명부가 정확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선거자들에게 선거절차를 해설 칩투시킨다.
3. 선거실을 꾸리며 투표함을 준비한다.
4. 선거날에 이르기 15일전에 선거날과 선거장소를 공시한다.
5. 선거표를 접수하여 책임적으로 보관하며 선거자들의 투표를 조장한다.
6. 대의원 후보자가 받은 투표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상급 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각급 선거위원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는 거수방법으로 다수가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장 후보자 추천절차

제3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후보자는 추천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한다.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공동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은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 기업소중업원회의, 협동농장 농장원회의, 협동단체 조합원회의, 주민회의 및 군무자회의에서 하며 추천된 후보자로부터 그 선거구에서 선거받겠다는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 총회에서 하며 추천된 후보자로부터 구두 혹은 서면으로 그 리(읍, 로동자구, 동)에서 선거받겠다는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대의원 후보자 추천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후보자가 적당한가, 적당치 못한가에 대하여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다.

선거자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 후보자 추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 기업소 중업원회의, 협동농장 농장원회의, 협동단체 조합원회의, 주민회의 및 군무자회의는 구선거위원회에 회의록과 후보자의 승낙서를 제출한다.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자 총회는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에 회의록과 승낙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명칭
2. 후보자 추천일시 및 장소
3. 후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정당 또는 소속단체명 및 직장, 직위
4. 후보자 추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5. 회의 의장 및 서기의 서명

제37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은 선거날에 이르기 25일전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은 선거날에 이르기 20일전에 해당 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은 선거날에 이르기 15일 전에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는 한 단위의 주권기관 선거에서 단 한 선거구 또는 리(읍, 로동자구, 동) 및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다.

제38조 구선거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들이 등록된 날부터 그들의 성명, 성별, 연령, 정당 또는 소속단체명, 직장, 직위를 방송, 출판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선거자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39조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매개 선거자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의원 후보자들

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전 선동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날과 투표절차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날에 이르기 60일전에 정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제42조 선거날 8시에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과 같이 투표함과 선거자 명부를 검열하고 선거함을 선거위원회 도장으로 봉인한 다음 선거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

제43조 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선거자들은 선거장소에서 자기의 공민증 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에게 내보이고 선거자 명부와 대조 확인을 받은 다음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아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각급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자들은 상급주권기관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투표로 부터 시작하여 주권기관체계에 따라 각각 투표한다.

그러나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각급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선거표를 한번에 다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제44조 선거날에 질병, 연노 기타 신체불구로 인하여 선거장소에 나오지 못할 선거자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선거표와 투표함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신체불구로 인하여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선거자는 자기의 입회하에 측근자를 통하여 자기의사대로 투표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45조 각 선거구에서는 1명의 대의원이 선거된다.

매개 선거자는 한 선거구에 1명의 후보자를 찬성하며 단 한번 투표한다.

제46조 투표가 진행될 때에 투표장소에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전 선동은 하지 못한다.

제 7 조 선거결과 확정

제47조 분구선거위원회는 투표시간이 끝나면 투표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다음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 수를 대조하고 그 결과를 회의

록에 적는다.

제48조 규정된 양식, 규격 및 색깔과 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유효 또는 무효에 대한 결정은 분구선거위원회위원들이 거수의 방법으로 다수가결로하며 이를 회의록에 적는다.

제49조 분구선거위원회가 투표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 및 출판 보도기관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분구선거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를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51조 분구선거위원회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투표 결과에 관한 회의록을 2부 적는다.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에 관한 회의록 1부는 해당 선거위원회에 리(읍, 로동자구, 등)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에 관한 회의록 1부는 리(읍, 로동자구, 등)선거위원회에 각각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특사로 보낸다.

남은 회의록과 일체 선거표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보낸다.

제52조 구 및 리(읍, 로동자구, 등)선거위원회에서 투표수의 계산은 분구선거위원회가 보낸 투표결과에 관한 회의록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구 및 리(읍, 로동자구, 등)선거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수를 확정하며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해당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그 선거위원회의 도장을 찍는다.

구 및 리(읍, 로동자구, 등)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 1부는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상급선거위원회에 특사로 보낸다.

남은 회의록은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보관한다.

제53조 도(직할시) 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들의 회의록과 각급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 결과를 종합하여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특사로 보낸다.

제5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선거는 해당 선거구 또는 리(읍, 로동자구, 등)전체 선거자의 절반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

제55조 최고인민회의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찬성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로서 그 선거구 전체 선거자의 절반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대의원으로 당선된다.

제56조 리(읍, 로동자구, 등)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는 해당 리(읍, 로동자구, 등) 전체 선거자의 절반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은 후보자 순위로 규정된 대의원 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들

이 대의원으로 당선된다.

제57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규정된 대의원 수 보다 더 많은 후보자를 추천 등록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두사람 이상이 동점의 찬성투표를 받았을 때에는 후보자등록 순위에 따라 당선을 결정한다.

제58조 선거구 또는 리(읍, 로동자구, 동)의 전체 선거자의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후보자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절반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지 못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규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게 당선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 및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밝혀 중앙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5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들 가운데서 사망 또는 소환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각각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보충선거의 실시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60조 공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제61조 선거와 관련한 모든 자금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1948. 9. 9.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제 1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민들이 그를 최고인민회의에 보낸 인민의 대의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다.

제 2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내각 및 각 성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의견을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내각 각성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 경제기관들에 대하여 자기의 임무상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관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회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로부터 대의원증 및 표창을

받는다.

제 5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철도, 기선, 기타 국영, 교통기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무상승차(선)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항상 자기의 선거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들 앞에서 자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지방인민위원회 (도, 시, 군, 면, 리)가 법령 내각의 결정 지시를 집행하는데 대하여 항상 방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에 출석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로부터 맡은 모든 과업을 성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중요한 결정 지시를 잘 알아야 한다.

제 3 절 정 권 조 직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

(1955.3.31 상임위원회정령)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8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에는 다음의 성 및 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족보위성,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국가검열성,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금속공업성, 농업성, 전기성, 경공업성, 화학공업성, 수산성, 교통성, 건설성, 재정성, 대내외상업성, 체신성, 도시경영성, 교육성, 문화선전성, 보건성, 노동성, 기계공업성, 석탄공업성, 수매양정성

제3조 성[위원회]의 신설, 폐지 또는 변화는 최고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동휴회시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며 차회의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수상부수상들 및 위원장들로서 구성한다.

내각상무회의는 수상 및 부수상들로서 구성한다.

제5조 내각은 필요에 따라서 그 직속하에 일정한 국가관리부문을 관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내각은 그에 속하는 일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두 봉

서기장 강 량 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

(1962. 10. 18.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수상, 제1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과

그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3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하며 내각 상무회의는 수상, 제1부수상, 부수상들로 구성한다.

제4조 내각에는 그의 부문적 집행기관인 성 및 위원회를 설치한다.

성 및 위원회의 설치, 폐지 또는 병합, 분리는 최고인민회의가 결정하며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 내각은 필요에 따라 그 직속으로 일정한 국가 관리부문을 관할하는 기관들을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6조 내각은 국가기관, 기업소 및 협동단체들에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결정 지시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지도 통제 감독하며 내각의 일체 사무를 처리하는 자기의 보좌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 건

서기장 박 문 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에 관한 규정

(1952년 4월3일 내각결정 제66호)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64조에 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부분적 집행기관으로서 자기사업활동에 있어서 내각에 복종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의 사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성원인 사법상이 이를 지도하며 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앞에 자기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법상의 지도밑에 부상을 두며 부상은 상을 보좌하고 상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각도 평양시 재판소의 사업(행정)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2. 재판소의 조직 및 재판기관의 사업정형에 대한 검열 및 그들의 사업향상과 조직에 관한 지도적 지시를 준다.

3. 특별재판소(조선 인민국 철도 및 내무재판소)를 조직하며 그 사업정형을 검열하며 그 재판소들의 사업활동을 향상시키는데 관한 지도적 지시를 준다.
4. 도, 시, 군 구역 재판소들의 형사, 민사사건 및 특별재판소의 형사사건 심리에 있어서는 법령적용의 정당성을 검열하고 부당하게 해결된 사건들의 판결 및 판정을 시정하는데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장에게 보낸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각급 재판소들의 재판실무를 연구 총화한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법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제5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각 재판소에 지도적 지시를 줄 때 관한 문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전원 회의에 제기한다.
6. 재판사업의 조직 및 향상에 관한 명령 및 규칙을 공포한다.
7. 법령 정령 내각결정 지시 및 성령규칙에 저촉되는 각도 평양시 재판소장의 지시를 정지 또는 폐지한다.
8. 시, 군 인민재판소 및 도 재판소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의 선거조직 및 실시 에 관한 문제들을 강구한다. 시, 군 인민재판소 및 도 재판소 선거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판사가 만기전에 해임되었을 때에 새로운 선거를 조직 지도한다.
9. 판사들이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사업을 총결 보고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0. 재판소의 집행원의 활동을 조직 지도한다.
11. 재판소의 재판통계 사업체제를 수립하며 이를 조직 지도한다.
12. 사법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 관계되는 법령 정령 및 내각결정 지시의 초안을 작성한다.
13. 사법성의 법률적 결론을 받기 위하여 보내온 법령 정령 및 내각결정 지시의 초안을 심 의하고 해당 결론을 준다.
1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전(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친족법, 상속법, 민사소송법 등)의 정비 및 초안에 대한 준비사업을 한다.
15. 법령 정령 및 내각결정 지시에 관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이를 편찬한다.
1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및 기타 법률 문헌에 대한 출판사업을 지도한다.
17. 공증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증기관의 조직 및 그의 활동을 지도하며 그 사업향상 에 관한 명령 및 규칙을 공포한다.
18.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회의 사업활동을 조직 지도한다.
19.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의 정확한 실시를 검열하며 인민들에게 법률적 방조를 줄 때 대 한 대책을 수립한다.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 재판소 공증소 및 변호사회의 일꾼들의 등록을 조직

한다.

2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간부(사법성 재판소 검찰소 공증소 및 변호사회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법성 직속법률학교를 운영하며 그 졸업생을 배치한다.

22. 재판일꾼들에게 대하여 표창하며 판사 책벌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판사에게 책벌을 규정한다.

23. 도, 시, 군 구역 재판소 공증소 법률학교 및 기타 산하기관의 예산안을 작성하며 그 집행을 감독한다.

24. 도, 시, 군, 구역 재판소 공증소 법률학교 및 산하기관의 공급계획의 작성 및 배당된 예산을 분배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상은 헌법 제66조에 의하여 자기 권한 내에서 현행 법령 정령 및 내각결정 지시에 입각하여 또는 그를 집행하기 위하여 성령 및 규칙을 공포하며 그 집행을 검열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에는 내각의 결정에 의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 각 부서의 사업분장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사법상이 이를 정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상(위원장) 부상 및 지도적 간부들로서 구성된 성 참의회를 조직한다.

참의회 성원은 사업상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이 임명한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 참의회는 정기회의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실제적 지도사업 또는 그 집행의 검열 간부 선발등의 문제를 토의하며 성의 중요한 명령규칙을 심의하며 각 재판소의 사업보고를 청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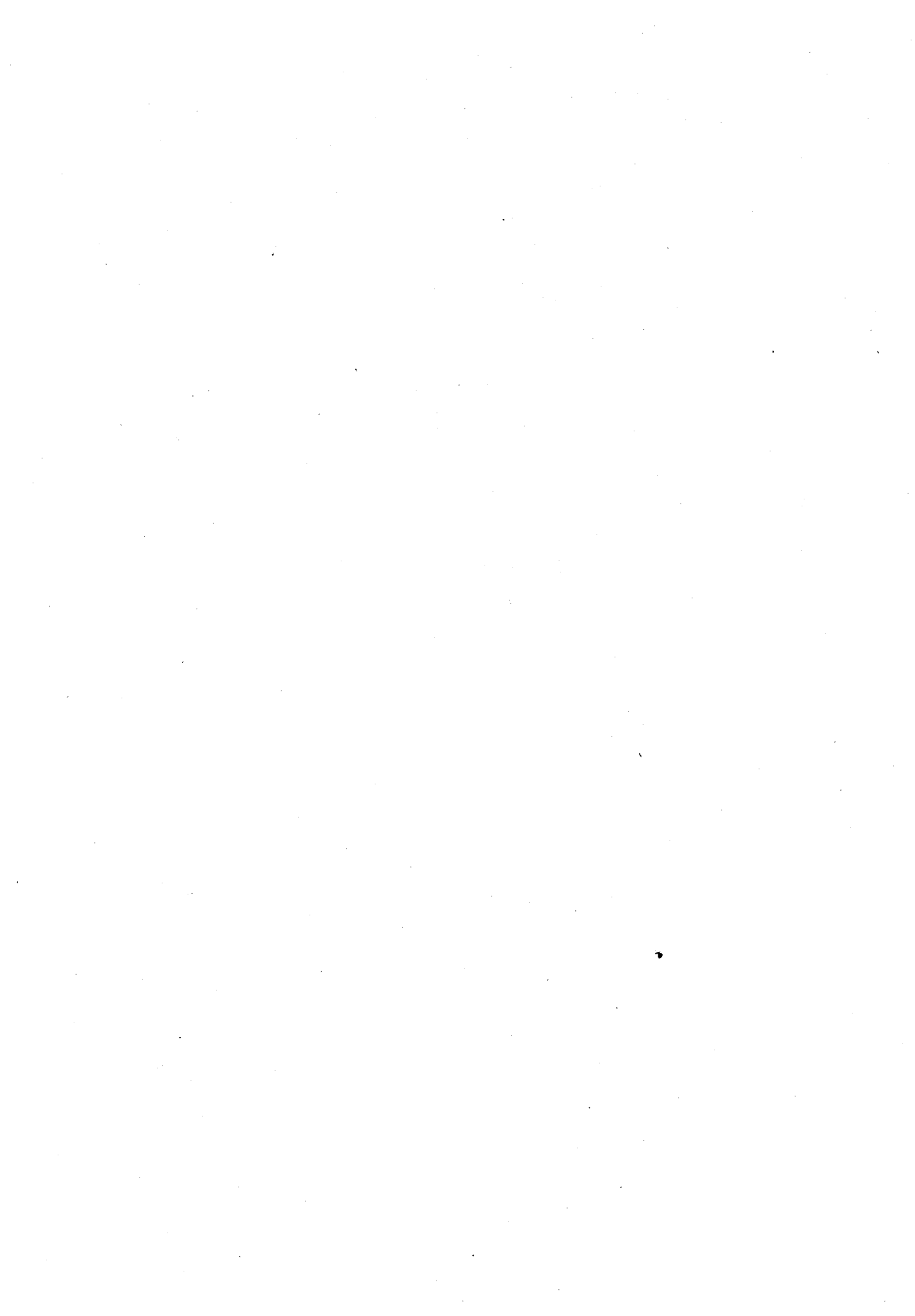
성 참의회 결정은 상의 명령으로써 실시한다.

상의 의견과 성 참의회의 결정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상이 자기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상은 그에 관한 것을 내각에 보고한다.

전항의 경우에 성 참의회는 자기 의견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에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중앙과 지방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교환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법성은 년 2회 이상 사법성 열성자 회의를 소집한다.

제2편 행정 일반



제 1 절 직 제

◇북조선 면, 군, 시 및 도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규정

(1946. 9. 5)

제 1 장 선거의 근본원칙

제 1 조 만 二十세에 달한 북조선의 일체 공민은 정신병자 및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제한 외에 자산상태, 지식정도, 거주지역, 신교의여하를 불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친일분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친일분자에 속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고문 전부
- (2) 도회의원 부회의원의 조선인 전부
- (3)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및 도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조선인 전부
- (4) 일제시대의 경찰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조선인 전부
- (5) 자발적 의사로서 일본을 방조할 목적으로 일본주권에 군수품생산 기타의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
- (6) 친일단체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방조하여 활동한 자

제 2 조 만 二十세에 달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조 인민위원회위원의 선거는 평등한 선거이다. 곧 모든 공민은 각각 투표에 있어 1인1표이며 일체 공민은 평등한 기초에 의하여 선거에 참가한다.

제 4 조 면군시 및 도 인민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인 바 곧 도시 농촌(시면)의 선거자들이 직접 모든 위원들을 선거한다.

제 5 조 면군시 및 도인민위원회위원을 선거하는 때의 투표는 절대 비밀이다.

제 6 조 지방인민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는 북조선에 존재하는 그리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일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및 제집단에 부여된다.

제 7 조 외국국적을 가지고 북조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가치 못하며 또는 인민위원회의 위원으로 피선되지 못한다.

제 8 조 일체 선거 사무비용은 북조선 지방예산에서 지출한다.

제 2 장 선거자명부

제 9 조 선거자의 명부에는 그 작성기에 면 및 시의 지역에 정상적(正常的)으로 혹은 임시적

으로 거주하며 선거일에 이르러 만二十세에 달한 선거권을 가진 공민들은 전부 등록한다.
선거자는 동일한 거주지에서 일차이상 등록될 수 없다.

제10조 친일분자들은 선거자명부에 등록하지 못한다.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들은 재판소선거에 지정한 기간까지 선거자명부에 등록되지 못하며 또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자로 인정된 자도 역시 같다.

비고 : 친일분자들에 대하여는 도 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써 선거권을 박탈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선거자명부는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비준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바 「가나다순」으로 선거자의 성명, 연령, 주소를 쓴 후 그 명부에 면 혹은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제13조 분구 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이르기 二十일전부터 선거자명부를 선거분구지역내에 공시(公示)한다.

제14조 선거자명부에 들어 있는 오류(誤謬)(명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성명이 오기되었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그릇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청원서(請願書)는 그 명부를 작성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인민위원회는五日이내로 그 청원서를 심의한 후 접수 혹은 거절한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청원자에게 서명으로 회답을 내어준다.

청원자가 인민위원회의 결의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급인민위원회에 신고(申告)할 수 있는 바 그 상급인민위원회는三日이내로 그 청원서를 심의한 후 하급인민위원회의 결의를 비준 혹은 부인할 수 있다. 이 상급위원회의 결의가 최후의 결정으로 된다.

제15조 만일 명부작성시기와 선거일 사이에 선거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곳에 임시거류(寄留)하는 경우에는 면시 인민위원회는 그에게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한 「선거권증명서」를 교부하고 선거자명부에는 「전거」(轉居)라고 기입한다. 신거주지(新居住地)(항구적 혹은 임시적인)에서는 그가 제출한 「선거권증명서」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그를 그 지방선거자명부에 등록한다.

제三장 선거구(選舉區) 선거분구(選舉分區)

제16조 면군시 및 도 인민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선거구에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7조 면인민위원을 선거함에는 인구 1,000에 一개 선거구를 조직하며 군인민위원을 선거함에는 인구 3,000에 一개함 선거구를 조직하며 시인민위원을 선거함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 10,000--50,000의 도시에는 인구 2,000에 1개 선거구를 인구 50,000--100,000의 도시에는 인구 3,000에 一개 선거구를 인구 100,000--200,000의 도시에는 인구 5,000에

1개 선거구를 인구 200,000이상의 도시에는 인구 8,000에 1개 선거구를 조직하며 도인민위원을 선거합에는 인구 20,000에 1개 선거구를 조직한다.

제18조 면인민위원의 선거구는 면인민위원회가, 군인민위원회의 선거구는 군인민위원회가, 시인민위원회의 선거구는 시인민위원회가, 도인민위원회의 선거구는 도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제19조 선거표를 접수하기위하여 일체의 인민 거주지역에 선거분구를 조직하되 인구 500명 내지 1,000명에 1개 선거분구를 둔다.

선거분구는 시인민위원회(도시) 면인민위원회(농촌)가 조직한다.

비고 :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는 인구 50명 되는 지역에 선거분구를 조직할 수있다.

제20조 二十五명 이상의 선거자가 있는 병원에 특별한 선거분구를 조직한다.

제21조 선거를 정기에 시행하고 선거공작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가. 지방인민위원회의 선거위원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안에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나. 도선거위원회

다. 시선거위원회

라. 군선거위원회

마. 면선거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안에 十一명의 위원으로써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도인민위원회안에 十一명의 위원으로써 도선거위원회를 조직하며 시인민위원회안에 七명의 위원으로써 시선거위원회를 조직하며 군인민위원회안에 七명의 위원으로써 군선거위원회를 조직하며 면인민위원회안에 五명의 위원으로써 면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은 제민주주의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중에서 지정한다.

제22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안의 중앙선거지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투표함 선거표의 양식(樣式) 및 색(色)구(區) 및 분구(分區) 선거에 관한 회의록양식과 인장양식, 선거권증명서양식과 당선증명서양식등을 지정할 것

나. 전북조선내에서 본 선거「규정」의 엄수(嚴守)와 실행의 여부를 감찰할것

다. 도선거위원회의 사업을 지시하며 검열할것

제23조 도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및 군선거위원회의 사업을 지시하며 검열할 것

나. 그 도내에서 본 선거「규정」의 엄수와 실행의 여부를 감찰할 것

다. 도시 및 군인민위원회의 선거공작을 이행하는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의 회의록에 의지(依支)하여 전도(道)의 선거결과를 확정할 것

제24조 도시군및면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의 사업을 지시할 것

나. 시군 및 면내에서 본 선거「규정」의 엄수와 실행의 여부를 감찰할 것

다.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의 선거문서와 서류의 양식을 공급할 것(회의록, 선거포 및 인장 등)

라. 선거구 및 분구조직의 정기에 이행되는 여부를 감찰할 것

마. 분구선거위원회의 회의록에 의거하여 선거의 결과를 확정할 것

제25조 이상에 지적한 도시군 및 면선거위원회외에 각 선거구 및 각 선거분구위원회를 조직한다. 도인민위원회위원의 선거공작을 수행(遂行)하는 구선거위원회는 七명으로 하되 선거 전 四十日이전에 당해(當該) 도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시군 및 면인민위원회 선거를 시행하는 구선거위원회는 각각 五명으로하되 선거전三十일이전 당해 시군 및 면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는 제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지정한다.

제26조 구선거위원회의 임무

가. 이 선거「규정」에 의하여 자기 선거구에 추천된 후보자를 등록할 것

나. 자기 선거구내의 투표를 계산하며 선거결과를 확정할 것

다.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된 당선자에게 당선증명서를 내어줄 것

제27조 분구선거위원회의임무

가. 각 선거분구의 선거자명부작성의 정확여부를 검열할 것

나. 선거자들에게 비밀투표의 질서(秩序)와 방법을 해석할 것

다. 선거분구의 선거실을 장식(裝飾)할 것

라. 선거표지를 접수하며 각 후보자가 받은후 표를 계산할 것

제28조 선거위원들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기명(記名)투표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결(裁決)한다.

제四장 후보자추천질서

제29조 도시군면 인민위원회의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는 북조선임시위원회에 등록된 일체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및 재집단에 부여된다.

제30조 이 선거「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각 후보는 해당한 구선거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31조 선거후보자를 추천한 제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및 제집단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선거구에 제출한다.

1. 그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의 의회록 그 회의의 의장과 서기의 서명 추천단체의 성명 주소 그 회의의 장소, 시간, 참석자수, 그 후보자의 성명, 연령, 주소, 당(黨) 또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업을 기록할 것
2.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그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투표를 받겠다는 승락서

제32조 도·시·군 및 면인민위원회의 선거구는 이선거「규정」에 의하여 제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선거구는 선거일에 이르기 十五일전부터 라디오,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자들에게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의 성명, 연령, 직업, 당 또는 사회단체소속별을 광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일체 민주주의 정당 또는 사회단체는 신문, 라디오 집회 및 연설을 통하여 자기후보자에 관한 선전선동을 임의로 행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면·군·시 및 도인민위원회 위원후보는 일정한 인민위원에 당선됨에 있어서 한 선거구에서만 투표받을 수 있다.

제36조 제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그 정당과 그 단체의 공동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각 선거구에서는 다만 一명의 후보자만 당선될 수 있다.

제五장 선거절차및선거결과확정

제38조 선거전 二十일전에 면·군·시 및 도선거위원회는 전체선거자에게 선거일과 장소에 대하여 광고할 의무를 가졌다.

제39조 선거위원은 미리 선거장소를 설비하며 각 분구선거위원들은 선거일에 이르기 二十일 이전부터 차례로 매일 숙직하여야 한다.

선거는 선거표를 투표함에 집어 넣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각 선거자가 선거표 두장을 받아서 그 중의 한장은 도위원을 선거하고 다른 한장은 시에서는 시위원선거, 군에서는 군위원선거에 쓴다.

투표함은 후보자 한사람에 대하여 백 흑 두개를 놓아두되 백색함은 후보자를 찬성하는 투표함이고 흑색함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투표함이다.

제40조 선거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선거자들은 선거분구 선거위원실에 들어가서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자기의 신분증명서(공

민증)를 내어보이고 신분증명서(공민증)와 선거자명부의 대조를 마치고 위원장이나 위원이 명부에 표를 한 뒤에 먼저 도인민위원을 선거할 선거표를 받아가지고 투표한다.

선거자는 선거표를 감추어 쥐고 투표함에 접근하여 각함에 손을 넣되 도인민위원회 위원 선거표를 그 후보자를 찬성할 때는 백색함에, 반대할때는 흑색함에 집어넣는다. 선거자는 도인민위원회위원선거투표를 마친 뒤에 다시 선거위원에 접근하여 시 혹은 군위원회위원을 선거할 선거표를 받아가지고 선거위원이 다시 명부에 투표를 한 뒤에 그 선거자는 시 혹은 군인민위원회위원을 선거한다. 두번째에 받은 선거표도 위에 기재한 절차에 따라 투표함에 집어넣는다.

제41조 각개 선거자는 한 정권기관에 대하여 1명의 후보자를 찬성하며 다만 한번 투표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제42조 투표할 때 선거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3조 투표는 선거일 오전七시에 시작하여 오후十二시에 끝마친다. 오후十二시가 지나면 선거분구위원회는 투표함의 개함(開函)에 착수한다.

제44조 분구선거위원회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한 투표수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수와 대조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45조 규정한 양화 및 색깔과 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제46조 선거표의 정확에 의문이 생기는 때는 이 문제를 분구선거위원회가 기명투표로 해결하며 그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각 후보자에게 준 투표지수와 면·군·시·도인민위원회위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의 기록을 각각 따로 낸다.

제48조 투표계산결과에 대하여 분구선거위원회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회의록 삼부를 작성하고 분구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제49조 분구선거위원회가 투표계산을 하는 장소에서 계산이 진행될 동안 다만 구선거위원들과 신문기자와 제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로서 도선거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참가한다.

제50조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한 후 면·군·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대한 회의록의 二부는 四十八시간이내로 해당한 구선거위원회로 특자를 써서 보내고 一부는 시면분구선거위원회에 보관한다.

제51조 정확한 선거표나 정확지 아니한 선거표나를 물론하고 그 전부와 투표에 관한 회의록의 마지막부를 시·면분구선거위원회에 보관한다.

제52조 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분구 선거위원회가 작성한 투표회의록에 근거하여 행한다. 구선거위원회는 각기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수를 결정하여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회의

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두부작성하여 일부는 四十八시간이내로 면인민위원회의 선거에 대한 것은 면선거위원회에, 군인민위원회선거에 관한 것은 군선거위원회로, 시인민위원회선거에 관한 것은 시선거위원회에, 도인민위원회의 선거에 관한 것은 도선거위원회로 특자를 써서 보낸다.

회의록은 구선거위원 전부가 서명날인한다.

제53조 최고투표수를 얻은후보자를 당선된 자로 인정하는 바 그 투표수는 당해 구투표자의 반수이상이어야 유효(有効)하다.

제54조 만일 한사람의 후보자도 第五十三조에 정한 투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구선거위원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특별히 지적하며 면·시·군·도인민위원회내에 있는 당해 상급선거위원회에 통지한다.

새 선거는 이미선거가 있는 후 三주일이내에 행하되 후보자추천은 투표수를 가장 많이 받은 二명으로 한다. 만일 단일명단의 후보자로 투표를 행하였을 때에는 이전 후보자는 제외되고 이 선거규정에 확정된 절차에 의하여 새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55조 면·군·시·도인민위원회 위원의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二개월 이내에 그 위원의 당선한 선거구에서 새선거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56조 선거표를 위조하거나 이중투표를 하려 한 자는 재판에 회부하여 三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위원회위원 및 인민위원회 간부중에서 선거문서를 위조하거나 혹은 투표계산(計算)을 그릇되게 하는 때에는 재판에 회부하여 五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48년9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 일 성

서기장 강 량 옥

◇북조선 면 및 리(동) 인민위원회위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일장 선거의 근본원칙

제일조 만이십세에 달한 북조선의 일체 공민은 정신병자 및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제외한 외에 재산상태, 지식정도, 거주지역, 신교의 여하를 불구하고 선

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친일분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친일분자에 속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참의 고문 전부

(2) 도회의원 부회의원으로 있었던 자

(3)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및 도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자

(4) 일제시대의 경찰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자

(5) 자발적 의사로서 일본을 방조할 목적으로 일본주권에 군수품생산 기타의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

(6)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전에 있는 친일정당과 단체의 당수나 열성적 지도자로 되었던 자

제이조 만이십세에 달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삼조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평등한 선거이다. 곧 모든 공민은 각각 투표에 있어 일인일표이며 일체 공민은 평등한 기초에 의하여 선거에 참가한다.

제사조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의원 선거는 직접선거이다.

곧 선거자들이 직접으로 인민위원회의 위원들을 선거한다.

제오조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위원을 선거하는 때의 투표는 절대 비밀이다.

제육조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는 리(동)선거자들의 총회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일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에 부여된다.

제칠조 외국국적을 가지고 북조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가할 권리와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의 위원으로 피선될 권리가 없다.

제팔조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북조선의 각 도예산에서 지출한다.

제이장 선거자명부

제구조 선거자명부에는 그 작성시기에 면 및 리(동)의 지역내에 항구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거주하며 선거일에 이르러 만이십세에 달한 선거권 가진 공민들은 전부 등록한다. 선거자명부는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위원선거를 위하여 각각 따로 작성한다.

제십조 친일분자들은 선거자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들을 재판소선거에 지정한 기간까지 선거자명부에 등록하지 못하며 또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자로 인정된 자와 二十세 미만된 자도 역시 같다.

비고 : 친일분자들의 선거권 상실에 대하여서는 도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은 친일

분자로 규정된 자의 가족들에게는 관계되지 않는다.

제십일조 선거명부는 중앙선거위원회가 비준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바 가, 나, 다, 순으로 선거자의 성명, 연령, 주소를 쓴 후 그 명부에 면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비고 : 면인민위원회는 선거자명부를 리(동)장 참석하에 작성한다.

제십이조 선거자명부는 리(동)인민위원회위원을 선거하기 위하여서는 리(동)마다 작성하며 면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기 위하여서는 선거구마다 작성한다.

제십삼조 리(동)선거위원회 및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이르기 二十일전부터 선거자명부를 선거위원회 지역내에 공시한다.

제십사조 선거자명부에 들어 있는 오류(명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성명이 오기되었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그릇 등록되었을 경우 기타)에 대한 청원서는 면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면인민위원회는五日내로 그 청원서를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청원자가 면인민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상급인민위원회에 신소할 수 있는 바 그 상급인민위원회는三日내로 그 청원서를 심의한 후 최후 결정을 짓는다.

제삼장 선거자명부

제십오조 면인민위원회위원 선거는 선거구에 구분하여 시행하며 리(동)장이 있는 행정구역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십육조 면인민위원회위원을 선거할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인구 3,000-5,000명 되는 면에서는 인구 300명에 한 선거구
2. 인구 5,000-10,000명 되는 면에서는 인구 500명에 한 선거구
3. 인구 10,000명 이상 되는 면에서는 인구 700명에 한 선거구
4. 인구 2만명 이상 되는 면에서는 인구 700명에 한 선거구

제십칠조 면인민위원회 선거구는 면인민위원회에서 조직하며 군인민위원회가 비준한다. 선거구의 조직은 선거일에 이르기 四十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사장 선거위원회

제십팔조 정한 기간에 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에 중앙선거위원회

2. 도선거위원회
3. 군선거위원회
4. 면선거위원회
5.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
6. 리(동)선거위원회

제십구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의 중앙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 면, 및 (리)동선거위원회의 사업을 지시하며 감독한다.
2. 그 도내에서 이 선거「규정」을 옳게 실행하는 여부를 감시한다.
3. 도선거위원회의 사업을 지시하며 감독한다.
4. 전북조선적으로 선거결과를 총화한다.

제이십조 도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 면, 및 (리)동선거위원회의 사업을 지시하며 감독한다.
2. 그 도내에서 이 선거「규정」을 옳게 실행하는 여부를 감시한다.
3. 군선거위원회에 선거표와 기타 선거에 관한 재료를 공급한다.
4. 군선거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전도의 선거결과를 확정한다.

제이십일조 군, 면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 및 리(동)선거위원회 사업을 지시한다.
2. 군 및 면내에서 이 선거「규정」을 옳게 실행하는 여부를 감시한다.
3. 구 및 리(동)선거위원회에 선거문서의 양식을 공급한다.
4. 선거구 및 리(동)선거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선거의 결과를 확정한다.
5. 구 및 리(동)선거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선거의 결과를 확정한다.

제이십이조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선거「규정」에 의하여 자기선거구에 추천된 후보자를 등록한다.
2. 자기 선거구내의 투표를 계산하며 선거결과를 확정한다.
3.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된 당선자에게 당선증명서를 내어준다.
4. 그 구의 선거자명부가 옳게 작성된 여부를 검열한다.
5. 선거자들에게 선거「규정」과 그 절차를 해설한다.
6. 선거구의 선거장소를 설비장식하며 투표함과 선거표를 준비한다.
7. 선거표를 접수하며 매후보자가 받은 투표를 계산한다.

제이십삼조 리(동)선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리(동)선거위원회의 선거자명부가 옳게 작성된 여부를 검열한다.
2. 선거자들에게 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해설한다.

3. 리(동)선거장소를 장식하며 투표함과 선거표를 준비한다.
4. 선거표를 접수하며 매후보자가 받은 투표를 제산한다.
5. 매당선자에게 당선증명서를 내어준다.

제이십사조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이르기 두개월전에, 도선거위원회는 五十五일전에, 군면선거위원회는 五十一일전에, 구선거위원회는 四十일전에 조직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十一명, 도선거위원회는 七명, 군선거위원회는 九명, 면선거위원회는 七명, 면인민위원회위원선거를 위한 구선거 위원회와 리(동)선거위원회는 각 五명으로 조직한다. 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군인민위원회에서 제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가장 우수한 대표들로서 구성한다. 선거에 이르기 一개월전에 그 리(동) 총회에서 선거한다. 선거위원회의 제반 문제는 보통다수가결에 의하여 제정하되 만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이십오조 리(동)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이르기 一개월전에 그 리(동) 총회에서 선거한다. 선거위원회의 제반 문제는 보통 다수가결에 의하여 제정하되 만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일편 면인민위원회 위원 선거

제오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제이십육조 면인민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는 리(동)선거자들의 총회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일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및 제집단에 부여된다.

제이십칠조 제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그 정당과 그 단체의 공동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비고: 면인민위원회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의 선거위원은 그 구에서 면인민위원회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이십팔조 이 선거「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각 후보자는 선거에 이르기 二十일전에 해당한 구선거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이십구조 후보자들을 추천한 리(동)선거자들의 총회와 제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제집단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그 선거구에 제출한다.

1. 그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록 이 회의록에는 그 회의의 의장과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추천단체의 명칭, 주소, 그 회의 장소, 시간, 참석자수 또 그 회의록에는 그 후보자의 성명, 연령, 주소 당 또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그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투표를 받겠다는 승락서
- 제삼십조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이르기 十五일전부터 라디오, 출판물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자들에게 구선거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의 성명, 연령, 직업, 당 또는 사회단체의 소속별을 반드시 광고하여야 한다.
- 제삼십일조 일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또는 개인선거자들은 신문, 라디오, 대중집회 회의 등을 통하여 자기 후보자에 대하여 선전선동할 자유가 있다.
- 제삼십이조 면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하여서는 한 선거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 제삼십삼조 각 선거구에서는 일명의 후보자만 피선될 수 있다.

제六장 면인민위원회 위원 선거절차

투표방식 및 선거결과 확정

- 제삼십사조 선거에 이르기 二十일 전부터 선거위원회는 매일 선거자들에게 선거일자, 장소를 광고하여 줄 의무가 있다.
- 제삼십오조 선거장소는 미리 준비하며 설비하여야 한다.
구선거위원회 사무소는 특별한 방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삼십육조 선거는 각 선거자가 비밀로 투표함에 선거표를 넣는 것으로 실시된다.
선거자마다 면인민위원회의 후보자를 선거하기 위하여 한번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함은 매후보자를 위하여 백색, 흑색 두함을 설치한다.
백함은 찬성을 의미하며 흑함은 반대를 의미한다.
- 제삼십칠조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선거자들은 선거위원회 위원실에 들어가서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자기의 공민증을 내어보이고 공민증과 선거자명부의 대조를 마치고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자는 선거표를 쥐고 투표함에 접근하여 각 함에 손을 넣되 그 후보자를 찬성할 때에는 백함에 반대할 때에는 흑함에 선거표를 넣는다. 만일 일시에 두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에는 다른 후보자들의 투표함에도 손을 넣는다.
- 제삼십팔조 매선거자는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있어 다만 一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권리가 있다.
- 제삼십구조 투표할 때에 선거장소에서 후보자에게 대한 선전을 금지한다.
- 제사십조 투표는 선거일 오전 七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十二시에 끝마친다.
- 제사십일조 선거가 끝나면 구선거위원회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한 투표수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수와 대조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사십이조 규정한 양식 및 색깔과 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제사십삼조 선거표의 정확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가 기명투표로 해결하며 그것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사십사조 투표계산 결과에 대하여 구선거위원회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회의록 二부를 작성하고 구선거위원회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제사십오조 구선거위원회가 투표를 계산하는 장소에서 계산이 진행될 동안에는 다만 구선거위원들과 면선거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얻은 신문기자와 제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만이 그에 참가한다.

제사십육조 면인민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기 위한 구선거위원회는 투표한 선거표에 의하여 그 구의 투표계산을 진행한다. 매후보자를 위하여 투표한 선거표의 총수를 확정하고 구선거위원회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二부를 작성하는데 그중 첫부는 四十八시간 이내에 특사로서 면선거위원회에 보내며 다음부는 구선거위원회에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선거위원회 전체의원들이 서명날인한다.

제사십칠조 최고 투표수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자로 인정하는 바 그 투표수는 그 구에서 투표에 참가한 자의 과반수가 되어야 유효하다.

제사십팔조 만일 한사람의 후보자도 제사십칠조에 정한 투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구선거위원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특별히 지적하며 면선거위원회에 보고하며 면선거위원회는 도선거위원회에, 도선거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새 선거는 원 선거가 있을 후 일개월이내에 행하되 후보자추천은 투표수를 가장 많이 받은 二명으로 한다.

만일 단 일명의 후보자로 투표를 행하였을 때에는 이전 후보자는 제외되고 이 선거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새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이편 리(동)인민위원회 의원 선거

제 7 장 리(동)인민위원회 선거규정

후보자 추천 투표절차 및 선거결과와 확정

제사십구조 선거에 이르기 十일전부터 리(동)선거위원회는 반드시 매일 선거장소와 선거일을 널리 광고하여야 한다.

제오십조 선거장소는 반드시 미리 설비되어야 하며 선거위원회 사무소로써 사용할 특별한 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오십일조 리(동)인민위원수는 인구 1,000명미만이 되는 리(동)에는 五명, 1,000명 이상 되

는 리(동)에는 七명으로 정한다.

제오십이조 북조선 각 리(동)인민위원선거는二일간에 완료하되 그 일자는 북조선 임시인민 의회에서 결정한다.

제오십삼조 선거 제一일에는 리(동)선거위원장을 오전九시부터 十시까지에 선거자총회를 개최한다. 선거위원장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점명하되 그 명부에 표시한다. 선거자총회에는 다만 본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자 만이 참가한다.

그 선거자총회에는 상급 인민위원회와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도 참가할 수 있다.

리(동)선거위원장은 점명후에 개회를 선포하되 이 총회는 선거자 반수이상의 참가로써 성립된다.

리(동)선거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이 회의는 리(동)장으로로부터 一九四五年八月十五일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총결보고를 듣는다.

그 리(동)장의 보고와 그 보고에 대한 토론이 끝난 후 리(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리(동)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낭독하고 그 규정에 의하여 선거할 리(동)인민위원회위원수를 공포한다.

총회는 후보자 추천을 시작한다. 후보자 추천권은 총회에 참가한 선거자마다 가진다. 후보자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총회가 추천한 후보자수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을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을 중지하는 결정은 보통 공개적 거수의 방법으로써 다수결에 의한다.

후보자추천이 끝난 후 리(동)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자들에게 각 후보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토론할것을 제의한다.

토론이 끝난 이후 리(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기 위한 후보자명부에 들 것인가 또는 취소할 것인가를 거수에 의하여 각각 가부를 물어 다수결로 이를 결정한다.

총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토의가 끝난 후 리선거위원장은 그날 또는 다음날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을 공포한다. 선거위원회 서기장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 토론과 거수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의록에 기입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비고 : 리(동)선거위원회의 선거위원은 리(동)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될 수 없다.

제오십사조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투표를 진행할 특별한 실을 지정하고 그실에 두개의 투표함을 설치한다.

제일함 즉 백함에는 찬성표, 제이함 즉 흑함에는 반대표를 넣는다. 투표하는 동작이 보이

지 않게 하기 위하여 투표함을 평평으로 막는다. 선거자들은 투표실에 들어가서 선거위원장이나 혹은 선거위원에게 공민증을 보이고 선거자명부와 대조를 마치고 추천된 후보자명부의 순차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자들은 선거표를 가지고 투표함에 접근하여 그 후보자를 찬성할 때에는 백함에, 반대할 때에는 흑함에 넣는다.

선거자들은 후보자명부의 순차에 의하여 선거표를 넣고 다시 선거위원장이나 혹은 선거위원에게 가서 다음 후보자에 대한 선거표를 가지고 전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투표함에 넣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타 후보자 전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에 선거자가 문맹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에 투표할 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표를 받을 수 있다.

리(동)선거위원회는 매후보자에게 대한 투표결과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선거표에 미리 각 후보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리선거위원회는 면선거위원회로부터 선거표를 받은 후 그것을 후보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분배하고 거기에 후보자들의 성명을 기입한다.

매후보자에 소요되는 선거표수는 그 리(동)의 선거자수와 동일하며 따라서 그 리(동)에 소요되는 선거표의 총수는 그 리(동)의 선거자수와 후보자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오십오조 선거장소에서 투표할 때에는 립후보자에 대한 선전을 금지한다.

제오십육조 선거일의 투표진행은 오전 六시에 시작하여 오후 十二시에 끝마친다.

제오십칠조 리(동)선거위원회는 선거를 마친 후에 투표한 선거표수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수를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 各道 人民委員會 機構 및 定員 一覽表

各道人民委員會 事務分掌

(1946~1947 推定)

第一條-第十一條(資料없음)

第十二條 人民規定第八條에 規定한 各其行政部는 會規定第十六條의 職務를 施行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

一. 書記長室

書記長室에는 械要課 道行政課 및 地方行政課 三課를 둔다.

가. 械要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委員會 및 書記長室機密에 關한 事項
2. 委員會 및 書記長公職印管守에 關한 事項
3. 公文書類受發 및 保管에 關한 事項
4. 委員會·常務委員會議案 및 會議錄作成에 關한 사항
5. 委員會決定書의 公布 및 原本保存에 關한 事項
6. 委員長 特命에 關한 事項

나. 道行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部에서 提出한 文書審議에 關한 事項
2. 各部間의 事務調整統一에 關한 事項
3. 各部事業計劃 및 報告書檢討綜合에 關한 事項

다. 地方行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市郡行政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 選舉에 關한 事項
3. 市·郡事業計劃 및 報告書檢討綜合에 關한 事項
4. 請願 및 陳情에 關한 사항

二. 企 劃 部

企劃部에는 企劃課 및 調查統計課 二課를 둔다.

가.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人民經濟計劃 및 實施狀況에 關한 事項
2. 物動計劃 및 物價 調整統一에 關한 事項
3. 新規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나. 調查統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調查統計에 關한 事項
2. 國勢調查에 關한 事項
3. 資料蒐集 및 調查統計編策에 關한 事項

三. 商 工 部

商工部에는 商業課, 産業課 및 檢査課, 三課를 둔다.

가. 商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管商店 및 道內商業發展에 關한 事項
2. 消費組合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生活必需品確保 및 供給에 關한 事項

4. 國家收買事業幫助에 관한 事項
5. 個人商店 및 接客業者 指導에 관한 事項
6. 旅館, 飲食店, 料理店, 沐浴湯, 理髮所 및 米客院許可에 관한 事項
7. 商業에 관한 調査統計에 관한 事項

나. 産業課에서는 다음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企業所 및 民營企業所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2. 生産合作社 指導에 관한 事項
3. 生活必需品生産(地方産業)事業裝備에 관한 事項
4. 技術者 技能者 養成에 관한 事項
5. 生産에 對한 發明, 創案 指導에 관한 事項
6. 工業許可 및 工業組合 指導에 관한 事項
7. 國有中小企業所, 賃貸者 및 讓渡에 관한 事項
8. 産業統計에 관한 事項
9. 部內度務에 관한 事項

다. 檢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商店, 消費組合, 民間會社, 個人商店等 商業機關에 對한 檢査에 관한 事項
2. 度量衡에 對한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3. 度量衡器販賣 및 檢査에 관한 事項
4. 物價調整에 관한 事項
5. 市場設置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6. 生産品檢査에 관한 事項

四. 內 務 部

內務部에는 機要課, 監察課, 護安課, 公民證課, 通運檢査課, 情報課, 幹部課, 文化課, 經理課, 消防課, 社會課, 庶務課, 施設課, 十三課를 둔다.

가. 機要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秘文書取扱에 관한 事項
2. 人民委員會 文書保管에 관한 事項
3. 重要會議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 및 報告書에 관한 事項
5. 綜合統計에 관한 事項
6. 人民委員會, 政黨 및 社會團體의 機密文書 委任傳達에 관한 事項
7. 公職印管守에 관한 事項

8. 通信員業務監督에 관한 事項
9. 部內諸證明書發行 및 回收에 관한 事項

나. 監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情報에 관한 事項
2. 被疑者 및 現行犯 또는 證人召喚逮捕에 관한 事項
3. 被疑者 및 現行犯 또는 證人取扱審査에 관한 事項
4. 犯人搜查 및 證據物蒐集에 관한 事項
5. 監察에 對한 諸統計에 관한 事項

다. 護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工場, 企業所, 鑛山等の 原動機取扱 및 團束에 관한 事項
2. 火氣, 引火質物取扱團體에 관한 事項
3. 狩獵, 獵銃團束에 관한 事項
4. 水道, 電氣, 瓦斯團體에 관한 事項
5. 麻藥, 毒藥, 劇藥團束에 관한 事項
6. 自殺團束에 관한 事項
7. 度量衡器團束에 관한 事項
8. 風俗, 風紀團束에 관한 事項
9. 興行關係 團束에 관한 事項
10. 護安諸統計에 관한 事項
11. 清掃 및 汚物團束에 관한 事項
13. 出林保護에 관한 事項
14. 出林保護員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라. 公民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公民證取扱 및 團束에 관한 事項
2. 民籍에 관한 事項
3. 戶口調査에 관한 事項

마. 通運檢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自動車 및 諸車輛檢査團束에 관한 事項
2. 通運整理 및 團束에 관한 事項
3. 交通整理 및 團束에 관한 事項
4. 船舶檢査登錄 및 團束에 관한 事項
5. 船舶技術者 免許에 관한 事項

바. 情報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特務情報連絡에 關한 事項
2. 國內情報連絡에 關한 事項
3. 犯罪搜查, 被疑現行犯 및 證人召喚 逮捕에 關한 事項
4. 事件審査, 查察에 關한 事項
5. 情報統計에 關한 事項

사. 幹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幹部審査 配置에 關한 事項
2. 幹部養成任免에 關한 事項

아. 經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金出納에 關한 事項
2. 武器에 關한 事項
3. 貴金屬保管 및 出納에 關한 사항
4. 一般用度 및 營繕에 關한 事項
5. 豫算 및 決濟에 關한 事項
6. 備品 및 消耗品出納에 關한 事項

자. 消防課에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消化, 防火, 水防事業計劃 및 組織指導檢閱에 關한 사항
2. 消防, 水防의 訓練施設整備에 關한 事項
3. 消防用資材에 關한 事項
4. 消防諸統計에 關한 事項

차. 社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黨, 社會團體에 關한 事項
2. 宗教에 關한 事項
3. 集會에 關한 事項
4.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
5. 民情, 風俗, 習慣等 調查研究에 關한 事項
6. 各種救濟機關 및 社會事業團體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7. 要救濟者의 調查登錄 및 救濟에 關한 事項
8. 行旅病(死) 不具, 發病者 救護에 關한 事項

카.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文書受發에 關한 事項

2. 宿日直에 關한 事項
3. 出勤簿取扱에 關한 事項.
4.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과. 施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漁村建築에 關한 事項
2. 産業施設에 關한 事項
3. 道路, 橋梁, 河川, 堤防 및 港灣에 關한 事項
4. 港灣資料調査에 關한 事項
5. 上下水公用水面に 關한 事項

五. 農 產 部

農産部에는 農政課, 畜産課, 蠶業課, 土地課, 家畜衛生課, 水産課 및 林政課, 八課를 둔다.

가. 農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村文化向上指導에 關한 事項
2. 農村經理發展對策에 關한 事項
3. 農産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4. 農楊, 農業團體에 關한 事項
5.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나. 農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米穀增産指導에 關한 事項
2. 農器具, 農藥 및 肥料에 關한 事項
3. 稿工品 生産指導에 關한 事項
4. 食糧田作物增産指導에 關한 事項
5. 米雜穀生産高調査에 關한 事項
6. 特用作物 및 園藝作物增産指導에 關한 事項

다. 畜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畜牛馬改良指導에 關한 事項
2. 畜牛馬生産獎勵에 關한 事項
3. 酪農에 關한 사항
4. 牛馬籍에 關한 事項
5. 綿羊, 養蜂에 關한 事項
6. 畜産物生産 및 加工에 關한 事項
7. 畜産技術者養成 畜産關係 및 事業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8. 家畜飼料에 關한 事項

라. 蠶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蠶種生産 및 桑苗種 改良指導에 關한 事項
2. 桑田管理 및 檢査 桑苗生産 및 蠶病毒檢査에 關한 사항
3. 桑田擴充에 關한 事項
4. 養蠶普及 및 規模擴充에 關한 事項
5. 改良 飼育法 補給에 關한 事項
6. 苗質改良 및 蠶苗增産에 關한 사항
7. 蠶苗處理 및 副苗糸利用加工處理에 關한 事項
8. 蠶業關係團體 및 事業場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마. 土地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有土地利用管理에 關한 사항
2. 民有地所有權保障에 關한 事項
3. 土地登錄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國有地使用料賦課에 關한 事項
5. 土地測量 및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6. 農民移住에 關한 事項
7. 地籍圖, 林野圖 地籍台帳 및 林野台帳 整理에 關한 事項

바. 家畜衛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家畜防疫衛生에 關한 事項
2. 家畜檢疫所 및 家畜衛生研究所의 指導에 關한 事項
3. 畜產品檢査 및 屠殺場檢査에 關한 事項

사. 水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漁撈에 關한 事項
2. 漁港 및 漁船에 關한 事項
3. 漁業共同施設에 關한 事項
4. 水産物檢査 및 需給에 關한 事項
5. 水産用物資需給調整에 關한 事項
6. 水産物養殖에 關한 事項
7. 水産物加工製造에 關한 事項
8. 水産業者 및 水産團體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아. 林 政 課

林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山林種子에 關한 事項
2. 造林에 關한 事項
3. 山林樹苗에 關한 事項
4. 林業試驗場終管에 關한 事項
5. 薪炭生産에 關한 事項

六. 財 政 部

財政部에는 司計課, 稅務課, 會計課 및 監査課, 四課를 둔다.

가. 司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道·市·郡 豫算編成 및 指導에 關한 事項
2. 豫金計劃 및 調整에 關한 事項
3. 定員登錄 및 經費査定에 關한 事項
4. 貯蓄將勵에 關한 事項
5. 部內度務에 關한 事項

나. 稅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稅, 地方稅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2. 稅外收入에 關한 事項

다. 會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豫算執行 및 決算에 關한 事項
2. 豫算執行以外的 收支에 關한 事項
3. 金錢出納에 關한 事項
4. 國有財産管理統計에 關한 事項

라. 監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道內各級人民委員會及所屬機關會計監査에 關한 事項
2. 道內國營企業所, 消費組合, 會計 監査에 關한 事項

七. 保 健 部

保健部에는 醫藥課 豫防課 및 庶務課, 三課를 두고 衛生檢閱院을 附設한다.

가. 醫藥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治療機關의 設立 및 運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保健일꾼들의 등록 및 免許에 關한 事項
3. 各種保健일꾼 및 醫療統制에 關한 事項
4. 保健일꾼들의 養成 및 資格試驗에 關한 事項

5. 託兒所, 産院 및 簡易産院의 設立運營 및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6. 어린이 및 母性相談所設立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7. 漢方 治療 對策에 關한 事項
8. 藥劑士, 藥種商製藥業者, 其他許可登錄 및 監督에 關한 事項
9. 各種藥品에 關한 事項
10. 道內 國營 및 民營局 製藥工場에 關한 事項
11. 生藥栽培 및 採取에 關한 事項
12. 溫泉 및 光泉에 關한 事項
13. 保健聯盟指導에 關한 事項

나. 豫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傳染病에 關한 事項
2. 衛生試驗所, 消毒所, 檢疫所, 其他防疫機關의 設立 및 運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衛生思想普及에 關한 事項
4. 飲料水 및 水道에 關한 事項
5. 細菌技術者 防疫技術者 養成에 關한 事項
6. 其他衛生豫防에 關한 事項

다.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藥品確保 및 醫療機材供給에 關한 事項
2. 理髮士, 試驗에 關한 事項
3. 病源統計에 關한 事項
4. 部內文書受發에 關한 事項
5.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라. 衛生檢閱院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旅館, 飲食店, 料理店, 食堂, 酒類, 清梁飲料, 獸鳥肉魚介類, 牛乳, 凍조림, 菓子, 果實, 蔬菜等 一切 食料品製造 및 販賣 貯藏運搬에 對한 指導監督 및 團束에 關한 事項
2. 各種 食料品の 營養價 檢査 및 團束에 關한 事項
3. 食料品 從業員의 定期的 및 採用時 新體檢査監視에 關한 事項
4. 食料로 因한 中毒 監督에 關한 事項
5. 食料品製造場, 販賣物貯藏 運搬器具施設의 適否(採光, 換氣, 난방, 照明等)에 關한 事項
6. 工場, 鑛山, 企業所 및 附屬建物の 衛生狀態 또는 衛生施設의 指導檢閱 및 團束에 關한 事項(採鑛, 照明, 換氣, 粉장, 騒音防止, 食堂, 便所, 病源施設, 俱樂部, 理髮所, 合宿

所, 給食, 給水等)

7. 職業病, 職業災害, 調査統計의 其豫防 및 治療與否指導團束에 關한 事項
 8. 從業員新體檢査 施行與否指導團束에 關한 事項
 9. 鐵道, 自動車, 汽船, 驛構內等の 衛生施設 및 衛生狀態指導檢閱團束에 關한 事項
 10. 從業員 定期的 및 採用時 新體檢査施行與否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11. 校舍 및 그 附屬建物の 衛生施設 또는 衛生狀態의 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12. 校具衛生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13. 新體老弱者精神異狀兒의 教育 및 保護에 關한 事項
 14. 體育運動疾病豫防 및 治療, 新體檢査施行의 與否, 學校給食, 學校醫, 看護員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15. 上下水道, 市街地, 住宅, 商店, 理髮所, 美粧院, 劇場, 公衆集合所, 各級病源, 合宿所, 共同便所, 道路, 墓地, 火葬場, 動物墓地, 製草工場, 皮物商, 皮物貯藏 및 施設에 關한 指導檢閱 및 團束에 關한 事項
- 八. 教育部에는 學校教育課, 社會教育課, 幹部課 및 庶務課, 四課를 둔다.
- 가. 學校教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級學校 및 下級行政機關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教員 및 學生의 教養事業 實施 教授의 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3. 國家卒業試驗, 進級試驗 및 實力檢査에 關한 事項
 4. 教育方法研究에 關한 事項
 5. 學校新說, 廢校改編에 關한 事項
 6. 學校教育事業 企劃에 關한 事項
 7. 學校運營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
 8. 學校管理事業 및 學校評議會, 學父兄會, 學校給援會에 關한 事項
 9. 各種教育行事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10. 學校體育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11. 技術教育進興에 關한 事項
 12. 教育文化發展計劃 및 義務教育에 關한 事項
- 나. 社會教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盲退治啓蒙運動에 關한 事項
 2. 成人教育의 刷新振興 및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特殊學校教育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4. 博物館, 圖書館, 古蹟寶物等 寺刹 및 戰勝記念物에 關한 事項

5. 民主宣傳室 演說室, 俱樂部, 經織 및 指導에 關한 事項
6. 迷信打破, 生活改善에 關한 事項
7. 其他 社會教育文化啓蒙에 關한 事項

다. 幹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教職員審査配置에 關한 事項
2. 教員養成 및 檢定試驗에 關한 事項
3. 學校定員에 關한 事項
4. 教職員賞罰 및 再教育에 關한 事項

라.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文書 受發 및 一般庶務에 關한 事項
2. 教科書 學用品(教育, 體育) 物資 斡旋에 關한 事項
3. 成人教育用物資調達에 關한 事項
4. 學校經理事業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5.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九. 勞 動 部

勞動部에는 勞動課 社會保險課, 勞動保護課 三課를 둔다.

가. 勞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勞動法令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3. 工場, 鑛山事務技能者 養成配置에 關한 事項
4. 都給制實施에 關한 事項
5. 勞動生産性에 關한 事項
6. 失業者對策에 關한 事項
7. 勞動檢査員任命 및 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8. 努力動員에 關한 事項
9. 勞働者 및 事務員의 統計에 關한 事項
10. 勞動賃金에 關한 事項

나. 社會保險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社會保險法 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社會保險料徵收에 關한 事項
3. 社會保險事業組職 및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
4. 社會保險料 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5. 保險給付 및 醫療幫助統計에 關한 事項
 6.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
- 다. 勞動保護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安全施設에 關한 事項
 2. 勞動衛生에 關한 事項
 3. 女子勞動 및 少年勞動保護에 關한 事項

十. 司法 部

司法部에는 機要課, 監督課 및 庶務課 三課를 둔다.

가. 機要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機密文書受發 및 保管에 關한 事項

나. 監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裁判所 指揮 監督에 關한 事項
2. 所屬裁判所檢閱에 關한 事項
3. 辯護士, 公證人, 司法書士, 事業監督에 關한 事項

다.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一般文書受發에 關한 事項
2. 事業計劃 및 諸般施設 報告書作成에 關한 事項
3. 判事參審員 推薦에 關한 事項
4. 辯護士 및 公證人, 人選에 關한 事項
5. 司法書士許可에 關한 事項
6. 裁判所 書記任免에 關한 事項
7. 所屬裁判所の 管轄區域設定에 關한 事項
8. 判事 및 參審員 其他 同法人 教養에 關한 事項
9. 司法統計에 關한 事項
10.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十一. 都市經營部

圖示經營部에는 土木課, 建築課, 水道課 및 管理課, 四課를 둔다.

가. 土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道路, 橋梁, 河川, 堤防 및 公園管理에 關한 事項
2. 土木工事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나. 建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建築物許可에 關한 事項

2. 建築物의 施工 및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建築擴張計劃에 關한 事項

4. 建築物의 維持管理 및 統計에 關한 事項

다. 水道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上下水道維持 및 管理에 關한 事項

라. 管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有建物 및 國有垆地의 管理에 關한 事項

2. 資材確保 및 調整에 關한 事項

3. 市道事業所 經理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4. 部內 一般度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

十二. 總 務 部

總務部에는 庶務課, 物資課 및 營繕課, 三課를 둔다.

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職員의 出勤簿整理 및 統計作成에 關한 事項

2. 職員身分證明書 및 一般諸證明書發行, 回敗에 關한 事項

3. 自動車運營 및 修理에 關한 事項

4. 宿日直에 關한 事項

5. 旅館其他一切直營施設에 關한 事項

6. 方舍警備에 關한 事項

7. 僱員에 關한 事項

8. 他部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나. 營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方舍各種施設 및 管理에 關한 事項

2. 職員舍宅修理에 關한 事項

다. 物資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物資購入 및 各部用物品調達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供給所管理에 關한 事項

十三. 幹 部 部

幹部部세는 部員을 두되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行政員審査 및 配置에 關한 事項

2. 道·市·郡 人民委員會 幹部研究 및 內部에 關한 事項

3. 幹部の 簡拔登用に 關한 事項

4. 職員의 進退 및 賞罰에 關한 事項

5. 幹部養成에 關한 事項

6.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

十四. 糧 政 部

糧政部에는 收納課, 配給課, 管理課, 經理課 및 庶務課, 五課를 둔다.

가. 收納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徵收에 關한 事項

2. 糧穀蔬菜 其他 食料品の 貨與徵收에 關한 事項

나. 配給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食糧配給에 關한 事項

2. 配給對象人口調査에 關한 事項

3. 洋曲蔬菜 其他 食料品の 需給 調節 및 價格에 關한 事項

다. 管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糧穀 蔬菜 및 特用作物の 保管에 關한 事項

2. 包裝資材의 回收 및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

3. 穀物 및 蔬菜輸送에 關한 事項

4. 現物稅保管 및 倉庫에 關한 事項

라. 經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糧穀管理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2. 現物稅會計에 關한 事項

3. 現物稅 領收證發行에 關한 事項

4. 備品 및 消耗品の 出納保管에 關한 事項

마.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文書收發에 關한 事項

2. 糧政統計에 關한 事項

3.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十五. 宣 傳 部

宣傳部에는 宣傳·煽動課, 群衆文化課, 檢閱課, 編輯課, 五課를 둔다.

가. 宣傳煽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宣傳煽動事業에 關한 事項

2. 政黨, 社會團體, 宣傳事業指導에 關한 事業

3. 市郡宣傳事業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4. 道內有線放送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5. 宣傳員 養成에 關한 事項
6. 講演事業 組職 및 指導에 關한 事項
7. 宣傳提綱作成에 關한 事業
8. 庶務에 關한 事項

나. 群衆文化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演劇同盟, 專門劇團, 文學同盟, 音樂同盟, 美術同盟, 寫真同盟 經織 및 指導에 關한 事項
2. 移動藝術家, 演劇公演同盟 組職 및 指導에 關한 事項
3. 上映作品, 音樂作品, 小說, 詩, 評論, 兒童文學戲曲 其他作品 指導에 關한 事項
4. 各種展覽會 組職 및 街頭文化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5. 文藝總朝蘇文化協會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6. 農樂隊組職 및 劇場運營指導에 關한 事項
7. 各種文化事業 資料調查 및 文化統計에 關한 事項
8. 劇場公演日程에 對한 指導事業에 關한 事項

다. 檢閱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機關紙 및 出版物發行檢閱에 關한 事項
2. 劇本, 放送原稿檢閱에 關한 事項
3. 劇試演會, 展覽會 作品批評會 其他會合檢閱에 關한 事項
4. 不良圖書 레코-트 檢收에 關한 事項

라. 編輯課에서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機關紙, 通信網 取付網 組職 指導에 關한 事項
2. 各種資料蒐集 發表事業에 關한 事項
3. 出版物計事業에 關한 事項
4. 印刷所, 書店指導事業에 關한 事項
5. 記者團指導事業에 關한 事項
6. 印刷機登錄事業에 關한 事項

마. 敎養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人民委員會任職者, 幹部敎養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傘下機關 從業員 敎養에 關한 事項
3. 學習提綱作成配布에 關한 事項
4. 敎材作成配布에 關한 事項

◇ 平壤特別市 人民委員會機構 및 定員表

平壤特別市 人民委員會 事務分掌

(1946~1947 推定)

一. 書記長室

書記長室에는 機要課, 市行政課 및 區行政課, 三課를 둔다.

가. 機要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委員長 및 書記長室 機密에 關한 事項
2. 委員會 및 書記長 公職印 管守에 關한 事項
3. 委員會의 決定書의 公布 및 原本保存에 關한 事項
4. 委員長의 特命에 關한 事項
5. 委員會, 常務委員會 議案 및 會議錄 作成에 關한 事項
6. 公文書類의 受發 및 保管에 關한 事項

나. 市行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部에서 提出한 文書審議에 關한 事項
2. 各部間의 事務調整統一에 關한 事項
3. 各部 事業計劃 및 報告書 檢討 綜合에 關한 事項

다. 區行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區事務所及 里會(里委員會)에 行政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選舉에 關한 事項
3. 區事業計劃 및 報告書 檢討綜合에 關한 事項
4. 請願 및 陳情에 關한 事項
5. 褒賞에 關한 事項

二. 企劃部

企劃部에는 企劃課 및 調查統計課 二課를 둔다.

가.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人民經濟計劃 및 實施狀況에 關한 事項
2. 物動計劃 및 物價調整統一에 關한 事項
3. 新規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나. 調查統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 調查統計에 關한 事項

2. 國稅調査에 關한 事項
3. 資料蒐集調査統計編에 關한 事項

三. 商工部

商工부에 商業課 産業課 및 檢査課, 二課를 둔다.

가. 商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商店, 消費組合, 民間會社, 個人商店 等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生活必需品 및 其他 物資確保 配定에 關한 事項
3. 國家收買事業 幫助에 關한 事項
4. 商業一般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5. 旅館, 料理店, 飲食店, 沐浴湯, 理髮所, 美容院 許可에 關한 事項
6. 商店 許可에 關한 事項

나. 産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企業所 및 民營企業所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生産에 對한 發明, 創案指導에 關한 事項
3. 國有中小企業所 貸貸借 및 讓渡에 關한 事項
4. 工業許可 및 工業團體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5. 産業統計에 關한 事項
6. 部內 庶務에 關한 事項

다. 檢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商店, 消費組合, 民間會社, 個人商店 等 商業機關에 對한 檢査에 關한 事項
2. 度量衡에 對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度量衡器具 販賣 및 檢査에 關한 事項
4. 物價調整에 關한 事項
5. 市場에 關한 事項
6. 生産品 檢査에 關한 事項

四. 內務部

內務부에서는 機要課, 監察課, 謫安課, 保安課, 公民證課, 通運檢査課, 情報課, 幹部課, 文化課, 經理課, 消防課, 社會課 및 庶務課를 둔다.

가. 機要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機要文書 取扱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 文書保管에 關한 事項
3. 重要會議에 關한 事項

4. 事業計劃 및 報告書에 關한 事項
5. 人民委員會, 政黨 및 社會團體의 機密文書 委任傳達에 關한 事項
6. 公職印管守에 關한 事項

나. 監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情報에 關한 事項
2. 被疑者 및 現行犯 逮捕 또는 證人召喚에 關한 事項
3. 被疑者 및 現行犯 또는 證人 取扱審査에 關한 事項
4. 犯人搜查 및 證據物 蒐集에 關한 事項
5. 監察에 對한 諸統計에 關한 事項

다. 護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工場企業所, 鑛山等の 原動機取扱 및 團束에 關한 事項
2. 火藥, 引火, 質物取扱團束에 關한 事項
3. 狩獵, 獵銃團束에 關한 事項
4. 水道, 電氣瓦斯團束에 關한 事項
5. 麻藥, 毒藥, 劇藥 團束에 關한 事項
6. 屠殺 團束에 關한 事項
7. 度量衡器 團束에 關한 事項
8. 風俗 또는 風紀 團束에 關한 事項
9. 勵行關係 團束에 關한 事項
10. 護安에 關한 諸統計에 關한 事項
11. 清掃 및 汚物 團束에 關한 事項

라. 公民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公民證 取扱 및 團束에 關한 事項
2. 民籍에 關한 事項
3. 戶口調査에 關한 事項

마. 通運檢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自動車 및 諸車輛檢査 團束에 關한 事項
2. 運轉手免許에 關한 事項
3. 交通整理 및 團束에 關한 事項
4. 船舶檢査 및 團束에 關한 事項
5. 船舶技術 免許에 關한 事項

바. 情報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特許情報連結에 관한 事項
2. 國內情報連結에 관한 事項
3. 犯罪搜查 被疑者 現行犯 및 證人召喚 逮捕에 관한 事項
4. 事件審査에 관한 事項
5. 情報統計에 관한 事項

사. 幹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幹部審査配置에 관한 事項
2. 幹部養成任命에 관한 事項

아. 文化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治文化教育에 對한 組職指導 및 檢閱에 관한 事項
2. 政治文化宣傳에 관한 事項
3. 娛樂, 體育 組職指導에 관한 事項
4. 宣傳統計에 관한 事項

자. 經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金出納에 관한 事項
2. 武器에 관한 事項
3. 貴金屬保管 및 出納에 관한 事項
4. 一般用度 및 營繕에 관한 事項
5.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6. 備品 및 消耗品 出納에 관한 事項

차. 消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消火, 防火, 水防事業計劃 및 組職指導檢閱에 관한 事項
2. 消防, 水防의 訓練施設整備에 관한 事項
3. 消防器具에 관한 事項
4. 消防統計에 관한 事項

카. 社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黨, 社會團體에 관한 事項
2. 宗教에 관한 事項
3. 集會에 관한 事項
4. 社會事業에 관한 事項
5. 民情, 風俗, 習慣 等 調査聯句에 관한 事項
6. 各種救濟機關 및 社會事業團體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7. 要救濟者의 調査登錄 및 救濟에 關한 事項
 8. 行旅病(死) 不具 廢疾의 救濟에 關한 事項
- 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文書受發에 關한 事項
2. 宿日直에 關한 事項
3. 出動 取扱에 關한 事項
4.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五. 農産部

農産部에는 農政課, 農産課, 畜産課, 土地課, 家畜衛生課, 五課를 둔다.

가. 農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村文化向上指導에 關한 事項
2. 農村經理發展對策에 關한 事項
3. 農産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4. 農業團體에 關한 事項

나. 農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米雜穀 增産指導에 關한 事項
2. 特用作物 및 園藝作物 增産指導에 關한 事項
3. 副業生産에 關한 事項
4. 蠶子 및 林業에 關한 事項
5. 農藥 肥料 및 農器具에 關한 事項
6. 米, 雜穀生産高 調査에 關한 事項

다. 畜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畜牛馬改良指導에 關한 事項
2. 畜牛馬生産壯麗에 關한 事項
3. 略農에 關한 事項
4. 牛馬籍에 關한 事項
5. 家畜飼料에 關한 事項
6. 畜産團體 및 家畜市場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라. 土地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有土地利用管理에 關한 事項
2. 民有地 所有保章에 關한 事項
3. 土地登錄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國有地 使用料賦課에 關한 事項
5. 土地測量 및 調查統計에 關한 事項
6. 農民移住에 關한 事項
7. 地籍圖, 林野圖, 地籍臺帳, 林野臺帳 整理保管에 關한 事項

마. 家畜衛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家畜防疫衛生에 關한 事項
2. 畜產品檢査 및 屠殺場檢査에 關한 事項
3. 獸肉檢査所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六. 財政部

財政部에는 司計課, 稅務課, 會計課, 監査課, 四課를 둔다.

가. 司繼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特別市 區 事務所 豫算編成 및 指導에 關한 事項
2. 資金計劃 및 經費査定에 關한 事項
3. 定員登錄 및 經費査定에 關한 事項
4. 貯蓄獎勵에 關한 事項
5.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

나. 稅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稅, 地方稅,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2. 稅外收入에 關한 事項

다. 會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豫算執行 및 決算에 關한 事項
2. 豫算執行以外의 收支에 關한 事項
3. 金錢出納에 關한 事項
4. 國有財産管理統計에 關한 事項

라. 監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特別市內 區事務所 및 分所屬機關 會計監査에 關한 事項
2. 特別市內 國營企業所 및 消費組合 會計監査에 關한 事項

七. 保健部

保健部에는 醫藥課, 豫防課 및 庶務課, 三課를 두고 衛生檢閱院을 附設한다.

가. 醫藥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治療氣管의 設立 및 運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保健일꾼들의 登錄 및 免許에 關한 事項

3. 各種保健일꾼 및 醫療統制에 關한 事項
4. 保健일꾼들의 養成 및 資格試驗에 關한 事項
5. 託兒所, 産院 및 簡易産院의 設立運營 및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6. 어린이 및 母性相談所 設立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7. 漢方治療 對策에 關한 事項
8. 藥劑士, 藥種商, 製藥業者 其他許可登錄 및 監督에 關한 事項
9. 各種藥品에 關한 事項
10. 市內國營 및 民營藥局 製藥工場에 關한 事項
11. 生藥栽培 및 採取에 關한 事項
12. 溫泉 및 光泉에 關한 事項
13. 保健聯盟指導에 關한 事項

나. 豫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傳染病에 關한 事項
2. 衛生試驗所, 消毒所, 檢疫所, 其他 防疫機關의 設立 및 運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衛生思想普及에 關한 事項
4. 飲料水 및 水道에 關한 事項
5. 細菌技術者 防疫技術者 養成에 關한 事項
6. 其他衛生豫防에 關한 事項

다.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藥品確保 및 醫料機材 供給에 關한 事項
2. 理髮士試驗에 關한 事項
3. 醫療統計에 關한 事項
4. 部內文書受發에 關한 事項
5.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라. 衛生檢閱院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旅館, 飲食店, 料理店, 食堂, 酒類, 清冷飲料, 獸鳥肉魚介類, 牛亂, 豚조림, 菓子, 果實, 蔬菜等 一切 食料品製造 및 販賣貯藏運搬에 對한 指導檢閱 및 團束에 關한 事項
2. 各種食料品の 營養價檢査 및 團束에 關한 事項
3. 食料品 從業員의 定期的 및 採用時 身體檢査監視에 關한 事項
4. 食料로 因한 中毒監視에 關한 事項
5. 食料品, 製造物, 販賣物貯藏, 運搬器具 施設의 適否(採光, 換氣, 暖房, 照明等)에 關한 事項

6. 工場, 鑛山, 企業所 및 그 附屬建物の 衛生狀態 또는 衛生施設의 指導檢閱 및 團東에 關한 事項(採鑛, 照明, 換氣, 粉塵, 騒音防止, 食堂, 便所, 醫療施設, 俱樂部, 理髮所, 合宿所, 給食, 給衣 等)
7. 職業病, 職業災害調查統計와 其豫防 및 治療與否指導團東에 關한 事項
8. 從業員身體檢査 施行與否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9. 鐵道, 自動車, 汽船, 驛構內 等の 衛生施設 및 衛生狀態指導檢閱團東에 關한 事項
10. 從業員 定期的 및 採用時 身體檢査施行與否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11. 校舍 및 그 附屬物の 衛生施設 또는 衛生狀態의 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12. 校具衛生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身體虛弱者, 精神異狀兒의 教育 및 保護에 關한 事項
14. 體育運動, 疾病豫防 및 治療, 身體檢査施行의 與否, 學校給食, 學校醫, 看護員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15. 上下水道, 市街地, 住宅, 商店, 理髮所, 美粧院, 劇場, 公衆集合所, 各級病院, 合宿所, 共同便所, 道路, 墓地, 火葬場, 動物墓地, 製革工場, 皮物商, 皮物貯藏場, 진개場, 진개 運搬, 沐浴湯, 市場, 埠頭, 公園, 沼水地, 空地 等の 衛生狀態 및 施設에 關한 指導檢閱 및 團東에 關한 事項

八. 教育部

教育部에는 學校教育課, 社會教育課, 幹部課 및 庶務課, 四課를 둔다.

가. 學校教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級 學校教育 振興刷新에 關한 事項
2. 教員學生의 教員教養事業에 關한 事項
3. 教育方法 研究에 關한 書類
4. 國家卒業試驗 進級試驗 및 實力檢査에 關한 事項
5. 學校新設廢校 改編에 關한 事項
6. 學校運營,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
7. 學校教育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8. 各種教育行事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9. 學校管理事項 및 學校評議會, 學父兄會, 學校後援會에 關한 事項
10. 技術教育進興에 關한 事項
11. 教育文化發展計劃 및 義務教育에 關한 事項
12. 體育에 關한 事項

나. 社會教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盲退治啓蒙運動에 關한 事項
2. 成人教育의 刷新振興 및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特殊學校 教育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4. 圖書館, 古蹟, 寶物, 寺刹 및 名勝記念物에 關한 事項
5. 民主宣傳室, 演說室, 俱樂部, 組職 및 指導에 關한 事項
6. 迷信打破生活改善에 關한 事項
7. 其他 社會教育啓蒙에 關한 事項

다. 幹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級學校敎職員審査配置에 關한 事項
2. 敎員養成 및 檢定試驗實施에 關한 事項
3. 學校定員에 關한 事項
4. 敎職員賞罰 및 再教育에 關한 事項

라.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一般庶務 및 文書收發에 關한 事項
2. 敎科書 學用品 物資斡旋에 關한 事項
3. 成人教育用 物資調達에 關한 事項
4. 學校經理事業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九. 勞動部

勞動部에는 勞動課, 社會保險課 및 勞動保護課, 三課를 둔다.

가. 勞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勞動法令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3. 工場, 鑛山事務技能者 養成配置에 關한 事項
4. 都給制 實施에 關한 事項
5. 勞動生産性에 關한 事項
6. 失業者 對策에 關한 事項
7. 勞動檢査員任命 및 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8. 勞力動員에 關한 事項
9. 勞動者 및 事務員의 統計에 關한 事項
10. 勞動賃金에 關한 事項

나. 社會保險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社會保險法 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社會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
3. 社會保險事業組職 및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
4. 社會保險料 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5. 保險納付 및 醫療上幫助統計에 關한 事項
6.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

다. 勞動保護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安全施設에 關한 事項
2. 勞動衛生에 關한 事項
3. 女子勞動 및 少年勞動保護에 關한 事項

一 . 都市經營部

都市經營部에는 計劃課, 土木課, 建築課, 水道課, 管理課, 經理課 및 庶務課 七課를 둔다.

가. 計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都市經營에 對한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2. 都市計劃에 關한 事項

나. 土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道路, 橋梁, 下水道, 公園, 河川 및 堤防의 維持管理에 關한 事項
2. 川砂管理에 關한 事項
3. 土木事業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
4. 他課에 屬하지 않은 土木事業 一切에 關한 事項

다. 建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建築物許可에 關한 事項
2. 都市美化에 關한 事項
3. 建築工事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4. 其他 建築事業一切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라. 水道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上水道 維持 擴張 및 新設에 關한 事項
2. 其他 水道事業 一切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마. 管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有建物管理에 關한 事項
2. 國有貸地管理에 關한 事項
3. 國有建物 및 貸地使用料徵收에 關한 事項

바. 經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經理에 關한 事項
2. 傘下事業所 經理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工事資材에 關한 事項

사.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職印管守에 關한 事項
2.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
3. 他課에 屬하지 않는 事項

十一. 總務部에는 總務課, 營繕課 및 物資課 三課를 둔다.

가. 總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職員의 出勤簿整理 및 統計作成에 關한 事項
2. 直言의 身分 證明書 및 一般 諸證明書 發行回收에 關한 事項
3. 宿日直에 關한 事項
4. 自動車 運營 및 修理에 關한 事項
5. 旅館 其他 一切 直營施設에 關한 事項
6. 傭員에 關한 事項
7. 廳舍警備에 關한 事項
8. 他部 他課에 關한 事項

나. 營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廳舍 各種施設修理 및 管理에 關한 事項
2. 職員舍宅修理 및 管理에 關한 事項

다. 物資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物資購入 및 各部用物品調達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 供給所 管理에 關한 事項

十二. 幹部課는 課員을 두되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行政員 審査 및 配置에 關한 事項
2. 幹部의 簡拔登用に 關한 事項
3. 職員의 進退 및 賞罰에 關한 事項

十三. 糧政部에는 經理課, 需給課, 管理課 및 庶務課 四課를 둔다.

가. 經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會計에 關한 事項
2. 糧穀管理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3. 備品 및 消耗品 出納保管에 關한 事項

나. 需給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配給對象人口調査에 關한 事項
2. 糧穀 및 蔬菜 其他 食料品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
3. 食糧配給에 關한 事項

다. 管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 保管倉庫에 關한 事項
2. 洋曲 및 蔬菜의 輸送에 關한 事項
3. 包裝用資材回收 및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
4. 現物稅 糧穀 蔬菜 및 特用作物의 保管에 關한 事項

라.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部內文書受發에 關한 事項
2. 糧政統計에 關한 事項
3. 部內一般庶務에 關한 事項
4.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十四. 宣傳部에는 宣傳煽動課 群衆文化課 檢閱課 編輯課 教養課 五課를 둔다.

가. 宣傳煽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宣傳煽動隊 事業에 關한 事項
2. 政黨, 社會團體 宣傳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3. 區, 宣傳事業指導檢閱에 關한 事項
4. 市內 宣傳有線放送 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5. 宣傳員養成에 關한 事項
6. 講演 事業組職 및 指導에 關한 事項
7. 宣傳提綱作成에 關한 事項
8. 庶務에 關한 事項

나. 群衆文化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演劇同盟 專門劇團, 文學同盟, 音樂同盟, 美術同盟, 寫眞同盟 組職 및 指導에 關한 事項
2. 移動藝術隊, 演劇公演同盟組職 및 指導에 關한 事項
3. 上映作品, 音樂作品, 小說, 詩, 評論, 兒童文學 戲曲 其他 作品 指導에 關한 事項
4. 各種展覽會 組職 및 街頭文化 事業 指導에 關한 事業
5. 文藝編 朝鮮文化協會事業指導에 關한 事項
6. 農樂隊 組職 및 劇場運營指導에 關한 事項

7. 各種 文化 事業 資料調查 및 文化統計에 關한 事項
 8. 劇場 公演日程에 對한 指導事業에 關한 事項
- 다. 檢閱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 機關編 및 出版物發行檢閱에 關한 事項

平壤特別市 區事務所 事務分掌

一. 總務課에는 總務係, 調查統計係, 豫防係 및 社會教育係를 둔다.

가. 總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

1. 區事務所 公印 管守에 關한 事項
2. 區事務所の 機密에 關한 事項
3. 出勤簿 整理 및 統計作成에 關한 事項
4. 褒賞에 關한 事項
5. 公文書類의 査閱, 進達 接收 發送에 關한 事項
6. 國會運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7. 宿日直에 關한 事項
8. 廳舍警備에 關한 事項
9. 傭員에 關한 事項
10.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나. 調查統計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產業, 經濟統計에 關한 事項
2. 社會文化統計에 關한 事項
3. 國勢調查에 關한 事項
4. 資料 및 調查統計, 編纂에 關한 事項

다. 豫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防疫, 救護에 關한 事項
2.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
3. 飲料水 및 井水에 關한 事項
4. 旅館, 下宿, 料理店, 飲食店, 理髮所, 浴湯 等の 衛生 指導에 關한 事項
5. 墓地, 火葬場 및 旅行 病死인에 關한 事項
6. 衛生思想, 普及에 關한 事項

7. 其他 一切 人民衛生에 關한 事項

라. 社會教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盲退治啓蒙運動에 關한 事項
2. 成人教育의 刷新振興 및 指導에 關한 事項
3. 迷信打破 生活改善에 關한 事項
4. 其他社會教育文化啓蒙에 關한 事項

二. 財政課에는 直稅係 間稅係, 徵收係 및 會計係를 둔다.

가. 直稅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直接稅 및 地籍事務에 關한 事項

나. 間稅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間接稅, 酒類 및 其他에 關한 事項

다. 徵收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稅, 道稅 및 市稅徵收에 關한 事項
2. 使用料, 手數料, 其他 諸稅收入에 關한 事業
3. 納稅 施設에 關한 事項
4. 徵收處分囑託 및 受託에 關한 事項

라. 會計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區事務所財政에 關한 事項
2. 金錢出納에 關한 事項
3. 物品出納에 關한 事項

三. 勞動課에는 勞動係, 社會保險係 및 勞動保護係를 둔다.

가. 勞動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勞動法令 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3. 賃金에 關한 事項
4. 勞動統計에 關한 事項

나. 社會保險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社會保險事業組職에 關한 事項
2. 社會保險料徵收에 關한 事項

다. 勞動保護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全安施設에 關한 事項
2. 勞動衛生에 關한 事項

3. 女子勞動 및 少年勞動保護에 關한 事項

四. 糧政課에는 經理係, 需給係 및 管理係를 둔다.

가.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徵收會計에 關한 事項
2. 現物稅領收證發行에 關한 事項
3. 穀物配給會計에 關한 事項
4. 穀物運搬, 加工, 保管資材 等 一般事業會計에 關한 事項
5. 糧穀管理 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나. 受給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配給對象人口調査에 關한 事項
2. 糧穀 및 蔬菜 其他 食料品 配給 調節에 關한 事項

다. 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2. 劇本, 放送原稿檢閱에 關한 事項
3. 劇試演會, 展覽會 作品 批評會 其他 會合 機關에 關한 事項
4. 不良圖書 레코드 回收에 關한 事項

라. 編輯課에서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機關紙, 通信網取付網, 組職指導에 關한 事項
2. 各種資料蒐集 發表事業에 關한 事項
3. 出版物統計事業에 關한 事項
4. 印刷所 書店 指導 事業에 關한 事項
5. 記者團指導事業에 關한 事項
6. 印刷機登錄 事業에 關한 事業

마. 敎養課에서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人民委員會 在職者, 幹部敎養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 傘下 機關 從業員 敎養에 關한 事項
3. 學習提綱作成 配布에 關한 事項
4. 敎材作成 配布에 關한 事項

바.

1. 現物稅保管倉庫에 關한 事項
2. 包裝用 資材回收 및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
3. 穀物 및 蔬菜 運搬에 關한 事項
4. 稅物稅 糧穀蔬菜 및 特用作物에 關한 事項

五. 宣傳課에는 宣傳煽動係 및 群衆文化係를 둔다.

가. 宣傳煽動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宣傳煽動에 關한 事項
2. 區事務所在職員教養事業에 關한 事項

나. 群衆文化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文學, 藝術에 關한 事項

六. 戶籍課에는 戶籍係 및 寄留係를 둔다.

가. 戶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印鑑, 受付, 抗告, 受理 및 證明에 關한 事項
2. 身分 其他 諸證明에 關한 事項
3. 犯罪人名簿 整理에 關한 事項
4. 戶籍整理에 關한 事項
5. 戶籍謄抄本에 關한 事項

나. 寄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寄留 其他 諸證明에 關한 事項
2. 寄留簿 整理에 關한 事項
3. 寄留謄抄本에 關한 事項

平壤市各區域人民委員會事務室分掌草案

番號	課名	番號	係名	分掌事項	摘要
1.	書記長室	가.	機要係	1. 委員會 및 書記長室 機密에 關한 事項 2. 委員會公印管守에 關한 事項 3. 委員會 및 常務委員會決定書의 公布 및 原本保存에 關한 事項 4. 委員會 常務委員會 準備 및 會議錄 作成에 關한 事項 5. 公文書類受發 및 保管에 關한 事項	
		나.	行政係	1. 各誇同의 財務調整 統一에 關한 事項 2. 各課에서 提出한 文書 3. 各課 및 各里의 事業計劃 및 報告書檢討 綜合에 關한 事項 4. 里行政指導에 關한 事項 5. 訴願 및 陳情에 關한 事項 6. 人民委員會 代議員選舉에 關한 事項	
2.	計劃課	가.	計劃係	1. 人民經濟計劃에 關한 事項 2. 物動計劃 및 物價調整統一에 關한 事項 3. 新規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나.	統計係	1. 各種調查統計에 關한 事項 2. 國勢調查에 關한 事項 3. 計劃資料蒐集 및 調查統計編纂에 關한 事項	
3.	農林課	가.	農林係	1. 農作物增產指導에 關한 事項 2. 農業副產物生產指導에 關한 事項 3. 米雜穀生產高調査에 關한 事項 4. 農村經理發展對策에 關한 事項 5. 農產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6. 雜業 및 林業에 關한 事項 7. 林野圖 및 林野臺帳整理에 關한 事項	

番號	課名	番號	係名	分掌事項	摘要
3.	農林課	나.	畜産係	1. 家畜増殖 및 改良指導에 관한 事項 2. 畜産物生産 및 加工에 관한 事項 3. 家畜防疫衛生에 관한 事項 4. 家畜飼料에 관한 事項 5. 牛馬籍에 관한 事項 6. 畜産團體指導에 관한 事項	
		다.	土地係	1. 國有土地(農耕地)利用管理에 관한 事項 2. 民有地所有權 保障에 관한 事項 3. 土地測量에 관한 事項 4. 農民移住에 관한 事項 5. 地籍圖 地籍臺帳整理에 관한 事項	
4.	商工課	가.	商業係	1. 國營商業機關 消費組合 民間會社 個人商店等 指導에 관한 事項 2. 物價動態調査에 관한 事項 3. 度量衡器에 관한 事項 4. 生活必需品確保 및 配合에 관한 事項 5. 市場에 관한 事項	
		나.	産業係	1. 地方産業 및 民營産業指導에 관한 事項 2. 生産合作社 事業指導에 관한 事項 3. 破古鐵粹集 및 輸送에 관한 事項 4. 産業統計에 관한 事項	
5.	財政課	가.	예산계	1. 區域豫算編成에 관한 事項 2. 資金計劃 및 調整에 관한 事項 3. 傘下機關의 豫算指導에 관한 事項	
		나.	人民租稅係	1. 民營去來稅賦課에 관한 事項 2. 國稅地方稅賦課에 관한 事項(家屋 車輛 賃地 및 不動産 取扱稅 除外) 3. 事業謄錄에 관한 事項	
		다.	企業收入稅	1. 去來稅利益控除金 價格差金 賦課에 관한 事項 (民營去來稅는 除外)	

番號	課名	番號	係名	分掌事項	摘要
5.	財政課	다.	企業收入係	2. 減價償却金回收에 관한 事項 3. 稅外 收入에 관한 事項 4. 沒收財産에 관한 事項 5. 收入印紙帖用檢關에 관한 事項	
		라.	家屋係	1. 家屋稅 車輛稅, 垜地稅, 및 不動産取得稅 賦課徵收에 관한 事項 2. 家屋證明에 관한 事項	
		마.	徵收係	1. 國稅 地方稅 및 稅外收入徵收에 관한 事項 2. 里의 稅入金收納事務指導에 관한 事項	
		바.	機構定員係	1. 定員에 관한 事項 2. 課內庶務에 관한 事項 1. 豫算執行 및 決算에 관한 事項 2. 豫算執行以外 收支에 관한 事項	
		사.	會計係	3. 金錢出納에 관한 事項 4. 消費組合會計調査에 관한 事項 5. 國有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6.	教育課	가.	普通教育係	1. 一般教育에 관한 事項 2. 普通教育에 관한 事項 3. 職場技術教育에 관한 事項 4. 通信講座에 관한 事項 5. 教育方法研究에 관한 事項 6. 教育統計에 관한 事項 7. 人民初中學校 經理事業指導에 관한 事項	
		나.	社會教育係	1. 速成成人 成人中學校 事業指導檢閱에 관한 事項 2. 教前郊外教育에 관한 事項 3. 幼稚園事業指導 檢閱에 관한 事項 4. 少年 劇場設廢 및 事業指導 檢閱에 관한 事項 5. 各級成人中學校 經理事業指導에 관한 事項	
		다.	體育係	1. 群衆體育에 관한 事項 2. 學校體育에 관한 事項	

番號	課名	番號	係名	分掌事項	摘要
		라.	幹部係	1. 人民學校 및 成人學校 敎員審査配置 및 變動에 관한 事項 2. 人民初中學校 및 各級 成人學校 敎員 敎養事業에 관한 事項	
7.	文化 宣傳課	가.	宣傳煽動係	1. 宣傳煽動事業에 관한 事項 2. 宣傳員講習에 관한 事項 3. 謳演事業組職 및 指導에 관한 事項 4. 職員敎養에 관한 事項	
		나.	群衆文化係	1. 民主宣傳室 및 俱樂部 組職 및 運營에 관한 事項 2. 各種 씨-클 組職 運營에 관한 事項 3. 各種展覽會組職 및 街頭文化事業指導에 관한 事項 4. 各種文化事業資料調査 및 文化統計에 관한 事項	
8.	勞動課	가.	努力需給係	1. 努力源泉研究調査에 관한 事項 2. 努力需給計劃에 관한 事項 3. 建國努力動員에 관한 事項	
		나.	勞動係	1. 勞動法令實施指導에 관한 事項 2. 團體契約 및 勞動契約에 관한 事項 3. 勞動手帖에 관한 事項 4. 勞動賃金에 관한 事項 5. 勞動統計에 관한 事項 6. 社會勞動檢査員任免指導 및 敎養에 관한 事項	
		다.	社會保險係	1. 社會保險事業組職에 관한 事項 2. 社會保險法實施指導에 관한 事項 3. 社會保險給付에 관한 事項 4. 社會保險料徵收에 관한 事項 5. 社會保險特別會計에 관한 事項 6. 社會保險統計에 관한 事項	

番號	課名	番號	係名	分掌事項	摘要
		라.	勞動保護 指導員	1. 安全施設에 관한 事項 2. 勞動衛生에 관한 事項 3. 婦女勞動 및 少年勞動保護에 관한 事項 4. 休暇實施에 관한 事項 5. 災害에 관한 事項 6. 努力喪失者救護에 관한 事項	
9.	保健課	가.	醫藥係	1. 各種醫療氣管의 事業指導에 관한 事項 2. 藥品 및 藥種商에 관한 事項 3. 各種藥品에 관한 事項 4. 醫療統計에 관한 事項	
		나.	衛生 防疫係	1. 各種傳染病에 관한 事項 2. 衛生試驗所 消毒所檢疫所 및 其他防護機關의 指導에 관한 事項 3. 衛生思想普及에 관한 事項 4. 飲料水에 관한 事項 5. 其他 衛生豫防에 관한 事項 6. 防疫에 관한 事項 7. 墓地火葬場에 관한 事項	
		다.	衛生 檢閱員	1. 環境衛生指導檢閱團束에 관한 事項 2. 各職場學校 其他 衛生指導 檢閱에 관한 事項 3. 食料品, 飲料水 衛生指導檢閱에 관한 事項	
10.	都市經營課			1. 土砂道路受理에 관한 事項 2. 無許可建築物團束에 관한 事項	
11.	幹部課			1. 行政員審査配置 및 調動에 관한 事項 2. 職員의 進退 및 賞罰에 관한 事項 3. 幹部養成에 관한 事項	

番號	課名	番號	係名	分掌事項	摘要
12.	糧政課	가.	配給係	1. 食糧配給對象人口統計에 관한 事項 2. 食糧配給票(카드包含)發行에 관한 事項 3. 工務出場員 食糧券 發行에 관한 事項 4. 配給回報整理檢討에 관한 事項 5. 食糧 消費 檢閱에 관한 事項 6. 糧穀, 소채 其他食糧品の 配給調節 및 價格에 관한 事項	
		나.	收納係	1. 現物稅賦課徵收에 관한 事項 2. 肉類收買에 관한 事項 3. 現物稅穀物, 果實, 蔬菜 및 特用作物檢査 및 徵收에 관한 事項 4. 搗精製品檢査에 관한 事項 5. 收買糧穀檢査에 관한 事項 6. 在庫糧穀 및 輸入양穀檢査에 관한 事項	
13.	庶務課	가.	庶務係	1. 職員의 出勤簿整理 및 統計에 관한 事項 2. 職員의 身分證明書 및 一般諸證明書發行 및 回收에 관한 事項 3. 宿日直에 관한 事項 4. 物資購入 및 各課用物品調達에 관한 事項 5. 備品, 消耗品 出納 및 補完에 관한 事項 6. 傭員(連絡員, 掃除夫, 打字手)에 관한 事項 7. 廳舍經費에 관한 事項 8. 其他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나.	營繕係	1. 廳舍各種施設修理 및 管理에 관한 事項 2. 職員舍宅修理 및 管理에 관한 事項	

◇ 各市 人民委員會 事務分掌

(1946~1947 推定)

第1條~第15條(資料없음)

第3章 市 行 政

第16條 人民委規定 第3條에 規定한 各其行政府는 規定 第16條의 事務를 施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

一. 書記長室에는 機要係 및 庶務係를 둔다.

가. 機要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委員會 및 書記長室 機密에 관한 事項
2. 委員會 및 書記長室 管守에 관한 事項
3. 公文書類 受發 및 保管에 관한 事項
4. 委員會 및 常務委員會 議案 및 會議錄 作成에 관한 事項
5. 委員會 決定書의 公布 및 原本保存에 관한 事項
6. 委員長 特命에 관한 事項

나.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里事務所 指導에 관한 事項
2. 各課間의 事務調整 統一에 관한 事項
3. 人民委員 選舉에 관한 事項
4. 市 事務計劃 및 報告書 檢討 綜合에 관한 事項
5. 請願 및 陳情에 관한 事項
6. 宿日直에 관한 事項
7. 出勤簿 整理에 관한 事項
8.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

二. 企劃課에는 企劃係, 調查統計係를 둔다.

가.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人民經濟計劃 및 實施狀況에 관한 事項
2. 物動計劃 및 物價調整統一에 관한 事項
3. 新規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나. 調查統計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 調査統計에 관한 事項

2. 國勢調査에 관한 事項

3. 資料蒐集 및 調査統計의 編纂에 관한 事項

三. 幹部課는 課員을 두되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行政員 審査 및 配置에 관한 事項

2. 市·里 人民委員會 幹部 研究 및 內査에 관한 事項

3. 幹部의 簡拔 登用に 관한 事項

4. 職員의 進退 및 賞罰에 관한 事項

四. 戶籍課에는 戶籍係, 寄留係를 둔다.

가. 戶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印鑑交付, 抗告受理 및 證明에 관한 事項

2. 身分 其他 諸證明書에 관한 事項

3. 犯罪人名簿整理에 관한 事項

4. 戶籍整理 및 謄抄本에 관한 事項

나. 寄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寄留 其他 諸證明에 관한 事項

2. 寄留簿整理에 관한 事項

3. 寄留謄抄本에 관한 事項

五. 財政課에는 直稅係, 間稅係, 徵收係, 經理係를 둔다.

가. 直稅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直接國稅, 地方稅 賦課에 관한 事項

나. 間稅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間接國稅인 去來稅, 利益控除金, 價格差金, 其他 歲外收入賦課에 관한 事項

다. 徵收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라.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2. 會計에 관한 事項

3. 國有財產收納處분에 관한 事項

4. 貯蓄獎勵에 관한 事項

5. 傭員에 관한 事項

6. 廳舍警備에 관한 事項

六. 農產課에는 農產係, 畜產季, 土地季, 水產季를 둔다.

가. 農産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産物 増産指導에 관한 事項
2. 灌溉事業指導
3. 農業副産物 生産指導에 관한 事項
4. 米雜穀 生産高 調査에 관한 事項
5. 農村經理發展對策에 관한 事項
6. 農村調査 統計에 관한 事項
7. 蠶業에 관한 事項

나. 畜産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家畜増殖에 관한 事項
2. 畜産物 生産 및 加工에 관한 事項
3. 牛馬籍에 관한 事項
4. 家畜防疫衛生에 관한 事項
5. 屠殺場 및 屠畜에 관한 事項
6. 畜牛 飼料에 관한 事項
7. 酪農에 관한 事項

다. 土地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有土地 利用管理에 관한 事項
2. 民有地 所有權 保陳 保章에 관한 事項
3. 土地登錄 및 處分에 관한 事項
4. 國有地 使用料 賦課에 관한 事項
5. 土地測量 및 各種調査統計에 관한 事項
6. 農民移住에 관한 事項
7. 地籍圖 林野圖 知的台張 林野台張 整理에 관한 事項

라. 水産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水産業에 관한 事項

七. 糧政課에서는 收納係 配給係 管理係를 둔다.

가. 收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 徵收에 관한 事項
2. 糧穀 蔬菜 其他 食料品の 需給調節 및 價格에 관한 事項
3. 配給對象人口 調査에 관한 事項

나. 배급계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장려한다.

1. 食糧配給에 관한 事項
2. 糧穀蔬菜 其他 食料品の 需給調節 및 價格에 관한 事項
3. 配給對象 人口調査에 관한 事項

다.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糧穀管理 特別會計에 관한 事項
2. 現物稅 會計에 관한 事項
3. 現物稅 領收證 發行에 관한 事項
4. 備品 및 消耗品の 出納保管에 관한 事項

라. 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 糧穀 蔬菜 및 特用作物 保管에 관한 事項
2. 包裝資材의 回收 및 需給調節에 관한 事項
3. 穀物 및 蔬菜의 輸送에 관한 事項
4. 現物稅 保管倉庫에 관한 事項

八. 商工課에는 商業係 工業係를 둔다.

가. 工業계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民營生産計劃 및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2. 民營鑛山 生産物 處分指導에 관한 事項
3. 民營工場 倉庫의 檢査에 관한 事項
4. 民營工場 原料 資材에 관한 事項

나. 商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商業, 消費組合, 民間會社, 個人商店의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2. 物資需給 및 物價調整에 관한 事項
3. 物價動態調査에 관한 事項
4. 民間商業機關 檢査에 관한 事項
5. 度量衡器에 관한 事項
6. 市場에 관한 事項

九. 教育課에는 學校教育係, 社會教育係를 둔다.

가. 學校教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及學校 教育의 刷新 進興에 관한 事項
2. 學校行事 및 宣傳事業 計劃, 實施, 檢閱에 관한 事項
3. 學校豫算 및 財政 經理에 관한 事項
4. 學事統計에 관한 事項

5. 教科圖書 및 其他 學用品 幹線에 關한 事項
 6. 教育關係團體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7. 學校教育에 關한 事項
- 나. 社會教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盲退治 啓蒙運動에 關한 事項
 2. 成人教育 刷新 進興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3. 特別學校 教育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4. 博物館, 圖書館, 宣傳室 其他等に 關한 事項
 5. 迷信打破, 生活改善에 關한 事項
- 十. 保健課에는 醫藥係 豫防係 庶務係를 둔다.
- 가. 醫藥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病源 및 各種醫療機關에 關한 事項
 2. 藥事に 關한 事項
 3. 藥品 및 藥種商에 關한 事項
- 나. 豫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 傳染病에 關한 事項
 2. 防疫 救護에 關한 事項
 3. 飲料水, 水道 및 井水에 關한 事項
 4. 旅館, 下宿, 要理店, 飲食店, 理髮所, 沐浴湯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5. 衛生思想 普及에 關한 事項
 6. 其他 衛生豫防에 關한 事項
- 다.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醫療器具, 器材, 衛生材料, 藥品確保 및 配給에 關한 事項
 2. 醫療統計에 關한 事項
 3. 他係에 屬하지 않는 事項
- 十一. 宣傳課에는 宣傳係, 文化係를 둔다.
- 가. 宣傳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宣傳 煽動에 關한 事項
 2. 圖書, 新聞, 雜誌 檢閱에 關한 事項
 3. 人民委員會 任職員 教養事務에 關한 事項
- 나. 文化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學, 藝術에 關한 事項

十二. 勞動係에는 勞動係, 社會保險係, 勞動保護係를 둔다.

가. 勞動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 한다.

1. 勞動法令 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3. 賃金에 關한 事項
4. 勞動時間, 休暇, 勞動種類等 研究指導에 關한 事項

나. 社會保險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 한다.

1. 社會保險法 實施 監督에 關한 事項
2. 社會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
3. 社會保險事業 組職 및 同運營에 關한 事項
4. 保險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다. 勞動保護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 한다.

1. 安全施設에 關한 事項
2. 勞動衛生에 關한 事項
3. 女子勞動 및 少年勞動 保護에 關한 事項

十三. 都市經營課에는 課員을 두되 다음의 事務를 掌理 한다.

1. 都市計劃에 關한 事項
2. 道路, 橋梁, 河川, 堤防 및 公園管理에 關한 事項
3. 建築許可 및 建築工事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4. 都市美化에 關한 事項
5. 水道 및 井水에 關한 事項
6. 住宅, 國有建物 및 國有垆地 管理에 關한 事項
7. 住宅 및 其他 國有建物, 垆地 使用料 徵收에 關한 事項
8. 都市經營事業所 및 施設事業所, 經理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
10. 其他 庶務에 關한 事項

十四. 內務署에는 機要係, 監察係, 謔安係, 公民證係, 情報係, 經理係, 文化係, 社會係 및 施設係 九係를 둔다.

가. 機要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 한다.

1. 機密文書 取扱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 文書保管에 關한 事項
3. 重要會議에 關한 事項
4. 公職印 管守에 關한 事項

나. 監察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情報에 關한 事項
2. 被疑者 및 現行犯 證人 召喚 逮捕에 關한 事項
3. 被疑者 및 現行犯人 取扱 審査에 關한 事項
4. 犯人搜查 및 證據物 蒐集에 關한 事項
5. 監察에 對한 統計에 關한 事項

다. 護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工場, 企業所, 鑛山 等の 原動機 取扱 및 團束에 關한 事項
2. 火藥, 引火物質 및 狩獵銃 取扱 團束에 關한 事項
3. 水道, 電氣, 互斯 團束에 關한 事項
4. 麻藥, 毒藥, 劇藥 團束에 關한 事項
5. 屠殺 團束에 關한 事項
6. 度量衡器 團束에 關한 事項
7. 風俗, 風紀 團束에 關한 事項
8. 興行關係 團束에 關한 事項
9. 護安 諸統計에 關한 事項
10. 其他 護安事業에 關한 事業
11. 都市 清掃 및 汚物에 關한 事項

라. 公民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公民證 取扱 및 團束에 關한 事項
2. 戶口調査 및 民籍에 關한 事項

마. 情報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特別情報 連絡에 關한 事項
2. 犯罪搜查, 被疑者, 現行犯 및 證人召喚 逮捕에 關한 事項
3. 事件審査 査察에 關한 事項
4. 情報統計에 關한 事項

바. 文化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治, 文化, 教育에 對한 組職 指導 및 檢閱에 關한 事項

사.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文書 受發에 關한 事項
2. 經理에 關한 事項
3. 他係에 屬하지 않는 事項

아. 社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黨, 社會團體에 關한 事項
2. 宗教에 關한 事項
3.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
4. 孤兒院, 養老院 等 社會事業, 團體에 關한 事項
5. 避難民, 罹災民 救濟에 關한 事項

자. 施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産業施設에 關한 事項
2. 道路, 橋梁, 河川, 堤防 및 港灣에 關한 事項
3. 港灣資源調査에 關한 事項
4. 上·下水道, 公用水面에 關한 事項

第17條~第19條(資料없음)

第四章 郡 行 政

第20條 人委規定 第十條에 規定한 各其行政部는 令規定 第十六條의 職務를 施行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

書記長室에는 機要係, 行政係 및 庶務係 三係를 둔다.

가. 機要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委員會 및 書記長室 機密에 關한 事項
2. 委員會 및 書記長 公職印 管守에 關한 事項
3. 公文書類 受發 및 保管에 關한 事項
4. 委員會 및 常務委員會議案 및 會議錄 作成에 關한 事項
5. 委員會 및 委員長 特命에 關한 事項

나. 行政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課間의 事務調整 統一에 關한 事項
2. 各課에서 提出한 文書審議에 關한 事項
3. 各課 事業計劃 및 報告書 檢討 綜合에 關한 事項
4. 面 行政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5. 人民委員 選舉에 關한 事項
6. 面 事業計劃 및 報告書 檢討 綜合에 關한 事項
7. 請願 및 陳情에 關한 事項

다.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職員의 出勤簿 整理 및 統計에 關한 事項
2. 職員 身分證明書, 一般 諸證明書 發行 및 回收에 關한 事項
3. 旅館 기타 一切 直營施設에 關한 事項
4. 宿・日直에 關한 事項
5. 廳舍 警備에 關한 事項
6. 傭員에 關한 事項

二. 企劃課에는 企劃係 및 調查統計係 二係를 둔다.

가. 企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人民經濟計劃 및 實施에 關한 事項
2. 物動計劃 및 物價調整에 關한 事項
3. 新規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나. 調查統計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 調查統計에 關한 事項
2. 國勢調查에 關한 事項
3. 資料蒐集 및 調查統計 編纂에 關한 事項

三. 商工課에는 商業係 및 工業係 二係를 둔다.

가. 商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營商業消費組合, 民間會社, 個人商店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物價需給 및 物價調整에 關한 事項
3. 民間商業機關 檢査에 關한 事項
4. 度量衡器에 關한 事項
5. 市場에 關한 事項

나. 工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民營生産計劃 및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2. 民營鑛山 生産物 處分 指導에 關한 事項
3. 民營工業, 倉庫의 檢査에 關한 事項
4. 民營工場 資料, 材料에 關한 事項

四. 農産課에는 農産係, 畜産係, 蠶業係, 土地係, 林政係 및 水産係(海岸地帶郡에 限함) 六係를 둔다.

가. 農産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産作物 增産指導에 關한 事項

2. 農産副産物에 關한 事項
3. 米・雜穀 生産高 調査에 關한 事項
4. 農村 經理 發展對策에 關한 事項
5. 農産 調査 統計에 關한 事項

나. 畜産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家畜増殖 및 改良指導에 關한 事項
2. 畜産物 生産 및 加工에 關한 事項
3. 家畜防疫 衛生에 關한 事項
4. 屠殺場 및 屠畜에 關한 事項
5. 畜産飼料에 關한 事項
6. 牛馬籍에 關한 事項

다. 蠶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蠶業生産 및 蠶品種 改良 및 試驗에 關한 事項
2. 蠶質改良 및 蠶蟲増産에 關한 事項
3. 蠶蟲處理 및 桑苗生産과 檢査에 關한 事項
5. 改良飼育法 普及에 關한 事項

라. 土地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有土地 利用管理에 關한 事項
2. 民有地 所有權 保障에 關한 事項
3. 土地 登錄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國有地 使用料 賦課에 關한 事項
5. 土地測量 및 各種農産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6. 農民移住에 關한 事項
7. 地籍圖, 林野圖, 知的台帳 및 林野台帳에 關한 事項

마. 水産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漁槽에 關한 事項
2. 水産物 檢査 및 需給에 關한 事項
3. 水産物 養殖에 關한 事項
4. 水産物 加工 製造에 關한 事項

바. 林政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山林種子에 關한 事項
2. 造林에 關한 事項

3. 山林樹苗에 관한 事項
 4. 薪炭生産에 관한 事項
- 五. 財政課에는 司計係, 賦課係, 徵收係 및 會計係 四係를 둔다.

가. 司計係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掌理한다.

1. 豫算編成에 관한 事項
2. 面豫算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3. 定員登錄에 관한 事項
4. 貯蓄獎勵에 관한 事項

나. 賦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稅, 地方稅 賦課에 관한 事項
2. 稅外收入 賦課에 관한 事項

다. 徵收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國稅, 地方稅, 其他 稅外收入徵收에 관한 事項

라. 會計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豫算執行 및 決算에 관한 事項
2. 豫算執行 以外の 收支에 관한 事項
3. 面 豫算執行 및 決算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4. 金錢物品出納에 관한 事項
5. 國有財産 管理 統計에 관한 事項
6. 消費組合 會計 監査에 관한 事項

六. 保健課에는 醫藥係 및 豫防係 二係를 둔다.

가. 醫藥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病源 및 各種 醫療機關에 관한 事項
2. 藥事に 관한 事項
3. 藥品 및 藥種商에 관한 事項
4. 醫療器材 確保 및 配給에 관한 事項

나. 豫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種 傳染病에 관한 事項
2. 防疫 救護에 관한 事項
3. 飲料水 井水에 관한 事項
4. 旅館, 下宿, 料理店, 飲食店, 理髮所, 沐浴湯의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5. 衛生思想 普及에 관한 事項

6. 衛生材料, 藥 確保 및 配給에 關한 事項

七. 教育課에는 學校教育係 및 社會教育係 二係를 둔다.

가. 學校教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各及學校 教育의 刷新 進興에 關한 事項
2. 學校行事 및 宣傳事業計劃 實施檢閱에 關한 事項
3. 學校豫算 및 財政經理에 關한 事項
4.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
5. 教科圖書 및 其他 學用品 斡旋에 關한 事項
6. 教育關係團體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
7. 學校 體育에 關한 事項

나. 社會教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盲退治 啓蒙運動에 關한 事項
2. 成人教育 刷新, 進興에 關한 事項
3. 特殊學校 教育의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
4. 圖書館, 讀書室, 宣傳室, 俱樂部에 關한 事項
5. 迷信打破, 生活改善에 關한 事項
6. 其他, 社會教育 文化 啓蒙에 關한 事項

八. 勞動課에는 勞動係, 社會保險係 및 勞動保護係(重要郡에 限함) 三係를 둔다.

가. 勞動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勞動法令 實施監督에 關한 事項
2.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3. 賃金에 關한 事項
4. 勞動時間, 休暇, 勞動種類 等 研究 指導에 關한 事項

나. 社會保險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社會保險法 實施 監督에 關한 事項
2. 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
3. 社會保險事業 組職 및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
4. 保險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다. 勞動保護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安全施設에 關한 事項
2. 勞動衛生에 關한 事項
3. 女子勞動 및 少年勞動保護에 關한 事項

九. 幹部課는 課員을 두되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行政員 審査 및 配置에 關한 事項
2. 郡·面 人民委員會 幹部 研究 및 內査에 關한 事項
3. 幹部의 簡拔 登用에 關한 事項
4. 職員의 進退 및 賞罰에 關한 事項

十. 糧政課에는 收納係, 配給係, 管理係 및 經理係를 둔다.

가. 收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 徵收에 關한 事項
2. 糧穀, 蔬採 其他 食料品の 需給調節 및 價格에 關한 事項
3. 配給對象 人口調査에 關한 事項

다.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糧穀管理 特別會計에 關한 事項
2. 現物稅 會計에 關한 事項
3. 備品 및 消耗品の 出納 保管에 關한 事項
4. 現物稅 領收證 發行에 關한 事項

라. 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現物稅 糧穀 및 蔬菜, 特用作物의 保管에 關한 事項
2. 包裝資料의 回收 및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
3. 糧穀 및 蔬菜의 輸送에 關한 事項
4. 現物稅 保管倉庫에 關한 事項

十一. 宣傳課에는 宣傳係 및 文化係 二係를 둔다.

가. 宣傳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宣傳, 煽動에 關한 事項
2. 圖書, 新聞, 雜誌 檢閱에 關한 事項
3. 人民委員會 任職員 教養事業에 關한 事項

나. 文化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文學, 藝術에 關한 事項

十二. 內務署에는 機要係, 監察係, 公民證係, 情報係, 經理係, 社會係, 文化係, 消防係 및 施設係 10係를 둔다.

가. 機要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機秘文書 取扱에 關한 事項
2. 人民委員會 文書 保管에 關한 事項

3. 重要會議에 관한 事項
4. 公職印 管守에 관한 事項
5. 事業計劃 및 報告書에 관한 事項
6. 人民委員會 政黨 및 社會團體의 機密文書 委任傳達에 관한 事項
7. 通信員 事務 監督에 관한 事項
8. 署內 諸證明書 發行 및 回收에 관한 事項

나. 監察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情報에 관한 事項
2. 被疑者 및 現行犯 證人, 召喚, 逮捕에 관한 事項
3. 被疑者 및 現行犯, 證人, 取扱 審査에 관한 事項
4. 犯人 搜查 및 證據物 蒐集에 관한 事項
5. 監察에 對한 諸統計에 관한 事項

다. 護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工場, 企業所, 鑛山 等の 原動機 取扱 및 對策에 관한 事項
2. 火藥, 引火物質 및 狩獵銃 取扱 團束에 관한 事項
3. 水道, 電氣, 互期 團束에 관한 事項
4. 麻藥, 毒藥, 劇藥 團束에 관한 事項
5. 屠殺團束에 관한 事項
6. 度量衡器 團束에 관한 事項
7. 風俗, 風紀 團束에 관한 事項
8. 興行關係 團束에 관한 事項
9. 護安統計에 관한 事項
10. 清掃 및 汚物 團束에 관한 事項
11. 山林保護에 관한 事項
12. 山林保護 및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13. 其他 護安事業에 관한 事項

라. 公民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公民證 取扱 및 團束에 관한 事項
2. 戶口調査 및 民籍에 관한 事項

마. 情報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特別情報連絡에 관한 事項
2. 犯罪搜查 被疑者, 現行犯 및 證人 召喚 逮捕에 관한 事項

3. 事件審査 査察에 관한 事項
 4. 情報統計에 관한 事項
- 바.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一般文書 受發에 관한 事項
 2. 經理에 관한 事項
 3.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
- 사. 社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黨, 社會團體에 관한 事項
 2. 宗教에 관한 事項
 3. 集會에 관한 事項
 4. 社會事業에 관한 事項
 5. 孤兒院, 養老院 等 社會事業團體에 관한 事項
 6. 避難民, 罹災民 救濟에 관한 事項
 7. 民情, 風俗, 習慣 等 調査 聯句에 관한 事項
 8. 行旅病(死)者, 不具者 및 廢疾救護에 관한 事項
- 아. 文化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政治, 文化, 教育에 對한 組職 및 檢閱에 관한 事項
 2. 娛樂, 體育 組職指導에 관한 事項
 3. 文化 諸統計에 관한 事項
- 자. 消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村消防組職에 관한 事項
 2. 消防訓練 施設 整備에 관한 事項
 3. 消防器具에 관한 事項
 4. 消防統計에 관한 事項
- 차. 施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
1. 農漁村 建築에 관한 事項
 2. 産業施設에 관한 事項
 3. 道路, 橋梁, 河川 堤防 및 港灣에 관한 事項
 4. 上·下水 公用水面에 관한 事項

제 2 절 신 분 등 록

◇ 公民證에 關한 規定

(1948. 10. 30 내무성규칙 제1호)

第一章 總 則

第1條 北朝鮮圈內에 居住하는 18歲以上에 達한 公民은 性別, 信仰別, 出身性分如何를 不問 하고 本規定에 依하여 公民證을 交付받을 義務와 權利를 가진다. 人民軍隊의 軍人으로서 服務하는 者, 犯罪로 拘禁된 者, 精神喪失者等에 對하여서는 別途로 이를 規定한다.

第2條 18歲未滿者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公民證에 登錄한다.

第2章 公民證交付節次

第3條 新規로 公民證의 交付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書類를 添付하여 所管內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1. 公民證交付申請書
2. 身分登錄에 關한 證明書
3. 寫眞(最近6 個月以內에 撮影한 寫眞)
4. 公民證交付科(收入印紙로써 15圓)

第4條 身分登錄에 關한 證明書가 없는 자는 國內機關, 社會團體 또는 個人企業所를 經由하여 市面人民委員會身分登錄所가 認定한 證明書を 添付, 提出하여야 한다.

第5條 前條에 있어서 國家機關 및 社會團體, 個人企業所에서 證明을 拒否하는 때에는 證明 拒否理由書を 添付하여 直接 市面人民委員會身分登錄所에 證明願을 提出할 수 있다.

第6條 前條에 依한 證明願을 接受한 市面人民委員會身分登錄所는 3日以內에 可否를 決定하여 本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7條 身分이 正確히 判明되지 못한 者의 公民證交付에 있어서는 3個月期限公民證을 交付한 後 身分을 該當地區 內務機關에 照會하여 判定하여야 한다.

第8條 公民證에 關한 申請書 및 證明書類는 內務機關에서 制定한 一定한 樣式에 依據하여야 한다.

第9條 公民證을 交付받은 者로서 公民證記載事項에 誤記된 것이 있을 때에는 所管內務署에 交換交付를 要求하여야 한다.

第10條 公民證을 交付받은 者는 交付받을 때에 公民證交付申請書 및 本人의 公民證에 署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第11條 18歲에 達한 者가 처음으로 公民證을 交付申請하는 때에는 第3條에 例記된 書類와 自己가 登錄되어 있는 公民證을 提出하여 그 公民證家族欄에서 削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父母 또는 後見人과의 別居로 因하여 自己가 登錄된 公民證을 提出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居住地內務機關이 證明한 公民證家族欄削除證明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第12條 特殊事情에 依하여 居住地에서 公民證의 交付를 받지 못하고 他地에 移住하여 移住地에서 公民證을 交付받으려는 者는 原居住地所管內務署長에게 公民證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13條 北朝鮮 圈外로부터 轉入한 朝鮮公民은 第3條에 揭記된 書類 및 入國證憑書類를 添付하여 所管內務署長에게 公民證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14條 公民證有効期限이 滿了된 때에는 滿了하기 10日前에 該當 內務署長에게 舊公民證 및 公民證交付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3章 公民證再交付 및 交換交付節次

第15條 公民證을 紛失하거나 또는 身分登錄事項을 訂正變更하거나 汚損磨滅等으로 因하여 公民證을 使用不能에 이르렀을 때에는 15日以內에 그 理由를 添付하여 公民證의 再交付 또는 交換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16條 公民證의 再交付 또는 交換交付申請을 接受한 內務署長은 再交付 또는 交換交付申請의 理由를 嚴密히 審査한 後 交付與否를 決定한다.

第17條 公民證再交付 또는 交換交付申請에 對하여 그 理由가 正當한 境遇에는 5個年期限公民證을 交付하고 그 理由가 不明한 境遇에는 3個月期限公民證을 交付한다.

第18條 公民證의 再交付 또는 交換交付申請에 對하여 3個月期限公民證을 交付하되 申請의 理由를 確認한 後에 5個年期限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19條 公民證再交付申請에 있어서는 第3條에 揭記된 書類(身分登錄에 關한 證明書는 除外) 및 內務機關의 紛失確認證明書를 添付하여 紛失日로부터 7日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第20條 汚損磨滅等으로 因한 公民證 交換 交付申請에 있어서는 第3條에 揭記된 書類(身分登錄에 關한 證明書는 除外) 및 汚損된 公民證을 添付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第21條 身分登錄事項의 訂正 또는 變更으로 因한 公民證交換交付申請에 있어서는 第3條에 揭記된 書類(身分登錄에 關한 證明書는 身分訂正 또는 變更許可證으로 代用한다)를 添付하여 身分登錄事項의 訂正 또는 變更日로부터 7日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第 4 章 出生 死亡 結婚 離婚에 關한 公民證 手續節次

第22條 出生者의 父母 또는 後見人은 出生後 14日以內에 出生證을 添付하여 所管內務機關에 提出하여 出生者의 父母 또는 後見人의 公民證 家族欄에 出生者를 登錄하여야 한다.

第23條 死亡者의 公民證은 死亡者의 家族이 保管하여 死亡日부터 5日以內에 死亡證을 提示하여 居住地域 內務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死亡者의 家族이 없는 境遇에는 護喪者가 前項의 責任을 진다.

第24條 18歲未滿者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死亡日부터 5日以內에 死亡證을 提示하여 死亡者의 父母 또는 後見人의 公民證 家族欄에서 削除하여야 한다.

第25條 身分登錄所에서는 結婚 및 離婚을 登錄하였을 때에는 當事者 兩便의 公民證에도 그 事由를 記載한다.

第 5 章 人民軍隊에 關한 公民證 取扱節次

第26條 人民軍隊는 公民證을 交付하지 않는다.

第27條 公民證을 交付받은 者로서 人民軍隊에 入隊하였을 때에는 隊에서는 公民證을 回收하여 入隊通知와 같이 公民證을 前居住 內務署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28條 前條에 依하여 接受한 內務署長은 公民證을 燒却하여야 한다.

第29條 人民軍隊로부터 除隊되었을 때에는 除隊證明을 添付하여 公民證再交付 또는 新規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內務署長은 公民證再交付에도 公民證交付料만 徵收한다.

第 6 章 犯罪로 因하여 拘禁된 者에 關한 公民證取扱節次

第30條 公民證을 交付받은 者가 犯罪로 因하여 拘禁되었을 때에는 拘禁者의 公民證은 拘禁機關에서 回收하여 事件調査에 添付한다.

第31條 拘禁者가 釋放되었을 때에는 拘禁者의 公民證을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第32條 拘禁者가 有罪判決로 體刑에 處하였을 때에는 裁判所長은 有罪判決確定書와 같이 拘禁者의 公民證을 居住地 內務署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33條 前條에 依하여 接受한 內務署長은 公民證을 燒却한다.

第34條 拘禁者가 教化完了로 因하여 釋放되었을 때에는 教化完了證을 添付하여 居住地 內務署長에게 公民證再交付 또는 新規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新規交付申請에 있어서는 第3條 및 第11條에 準用한다.
그러나 內務署長은 公民證再交付에도 公民證交付料만 徵收한다.

第7章 精神喪失者에 關한 公民證 取扱節次

第35條 精神喪失者에게는 公民證을 交付하지 않는다.
第36條 精神喪失者의 父母 또는 後見人은 精神喪失判決確定書를 添付하여 居住地 內務機關에 精神喪失者申込을 하여야 한다.
第37條 前條에 依하여 接受한 內務機關은 父母 또는 後見人의 公民證 家族欄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38條 精神喪失者가 精神이 回復되었을 때에는 第3條에 例記된 書類와 自己가 登錄되어 있는 公民證을 提出하여 그 公民證 家族欄에서 削除를 받고 公民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그러나 父母 또는 後見人과의 別居로 因하여 自己가 登錄된 公民證을 提出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居住地 內務機關에서 證明한 公民證 家族欄 削除證明을 添付하여야 한다.

第8章 居住, 退去에 關한 節次

第39條 公民證을 交付받은 者는 3日以內에 所管內務機關에 居住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40條 居住 또는 退去登錄申請에는 다음의 書類를 添付 提出하여야 한다.
公 民 證
居住 또는 退去登錄申請書
居住 및 宿泊登錄簿
第41條 居住 또는 退去登錄申請을 接受한 內務機關은 公民證에 該當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42條 居住登錄申請書는 人口統計資料로서 內務署에 保管하되 登錄된 者의 退法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이를 燒却하여야 한다.
第43條 居住登錄申請은 退去登錄日부터 14日以內에 居住하려는 所管內務機關에 申請하여야 한다.
第44條 北朝鮮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에 關하여서는 公民證을 交付하지 않고 外國人居住證을

交付한다.

第9章 旅行者 取扱節次

第45條 固定的으로 自己가 居住하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宿泊하려는 때에는 宿泊地 所管 內務機關에서 宿泊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46條 北朝鮮圈內에 居住하는 者로서 同居家族 以外の 者를 宿泊시키려는 때에는 居住 및 宿泊登錄簿에 宿泊하려는 者를 登錄하여 內務機關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47條 宿泊者가 宿泊地를 出發하려는 때에는 居住 및 宿泊登錄簿에 該當 事項을 記入하여 야 한다.

第48條 宿泊主는 宿泊者가 宿泊地를 出發하여 居住 및 宿泊登錄簿에 登錄하려는 때에 內務 機關의 後閱을 받아야 한다.

第10章 公民證 記載方法

第49條 記載에 있어서는 반드시 墨汁을 使用할 것이며 誤字訂正은 絶對로 禁止한다.

第50條 數字는 아라비아數字를 記入할 것이며 漢字는 姓名地, 域名稱記入에 限하고 其他는 國文을 使用하여야 한다.

第11章 公民證 團束節次

第51條 다음과 같은 公民證을 摘發한 內務機關은 本人에게 回收證을 交付하고 回收日부터 3日以內에 回收副本을 添付하여 回收公民證을 居住地內務署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1. 有効期限이 滿了된 公民證
2. 汚損磨滅로 因하여 使用不能케 된 公民證
3. 不法越境者 또는 越境하려는 者의 公民證

第52條 다음과 같은 公民證을 摘發하였을 때에는 法에 依하여 處罰한다.

1. 公民證을 變造한 者
2. 公民證을 偽造한 者
3. 他人의 公民證을 使用한 者

第53條 理由없이 第1條 當事者로써 公民證交付申請을 履行치 않은 者에 對하여서는 100圓

以上 300圓以下の 過怠金を 徴收한다.

第54條 故意的으로 公民證交付申請 또는 正當한 公民證交付申請을 履行치 않는 者에 對하여서는 法에 依하여 處罰한다.

第55條 公民證紛失者에 對하여서는 第1次에는 100圓以上 300圓以下 第2次에는 300圓以上 500圓以下 第3次에는 500圓以上 1000圓以下の 過怠金を 徴收한다.

第56條 4次以上 公民證紛失者에 限하여서는 法에 依하여 處罰한다.

第57條 公民證紛失理由가 天災(水災 火災) 또는 不可抗力에 依하여 紛失한 者에 限하여서는 第55條에 規定된 過怠金 및 第56條에 規定된 法的處罰을 免除한다. 그러나 公民證交付에 있어서는 公民證交付料는 徴收한다.

第58條 第22條, 第23條, 第43條에 違反하는 者에 對하여서는 100圓의 過怠金を 徴收한다.

第59條 第45條 乃至 第48條에 違反하는 宿泊主와 宿泊者에 對하여서는 各各 過怠金 100圓을 徴收한다

附 則

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이를 實施한다.

內 務 相 朴 一 禹

◇ 公民證 交換交付에 關한 規定

(1948. 10. 30 내무성규칙 제3호)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公民證의 一齊交換交付는 本 規定에 依하여 이를 實施한다.

第 2 條 公民證의 交換交付를 爲하여 各市面에 公民證交換交付所를 設置하고 所長 및 書記를 둔다. 前項의 職員數는 財政相과 協議하여 內務相이 市面別로 決定하되 內務署長의 推薦에 依하여 所管道(平壤特別市를 包含한다)內務部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 3 條 公民證交換交付所의 事業은 所管內務署長이 이를 指導監督한다.

第 4 條 公民證交換交付 期日中에 있어서는 身分登錄事務 및 公民證에 關한 一切事務를 公民證交換交付所에서 取扱하여야 한다.

第 5 條 公民證交換交付所는 1948年 11月 5日부터 事業에 着手하여 1948年 12月 末日까지에 그 事業을 完了하여야 한다.

第2章 公民證交換交付所職員의 任務

第6條 公民證交換交付所長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所管市面內의 公民證交換交付事業을 所定期間內에 完遂할 것
2. 公民證 및 身分登錄에 關한 統計를 作成하여 所管內務署長에게 報告할 것
3. 誤記汚損된 公民證에 對하여서는 廢棄公民證調查書를 作成하고 그 公民證을 添付하여 所管內務署長에게 報告할 것
4. 用紙 및 經費에 對한 經理를 直接 取扱할 것
5. 公民證交換交付를 完了한 後 公民證 및 身分登錄에 關한 書類 및 其他一切簿冊을 整理하여 所管內務署 및 身分登錄署에 移管할 것

第7條 公民證交換交付所의 職員은 責任지고 自己事業을 遂行하되 過失로 因하여 公民證을 誤記汚損한 境遇에는 그 代價를 辨償하여야 한다.

第3章 公民證交換交付의 節次

第8條 公民證의 一齊交換交付는 北朝人委決定 第57號에 依하여 公民證을 交付받은 者에 對하여 이를 實施한다.

第9條 前條에 該當한 者는 1948年 11月 10日부터 1948年 12月 10日까지 다음의 書類等을 添付하여 居住地公民證交換交付所에 公民證交換交付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1. 居住地登錄申請書
2. 居住 및 宿泊登錄簿
3. 寫眞2枚(最近撮影한 것으로서 縱2.2cm 橫1.5cm)
4. 公民證交付料(收入印紙로서 15圓)
5. 公民證家族欄에 登錄할 18歲未滿者의 舊公民證

第10條 公民證交換交付所長이 前條에 書類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申請書接受處理簿에 登錄하고 申請者에게 公民證交付日字(接受日부터 7日以內)를 通知한 後 다음과 같이 處理하여야 한다.

1. 申請書類와 戶籍簿 또는 寄留簿와 對照하여 이를 訂正 또는 整備할 것
2. 18歲未滿者에 對하여는 出生登錄台帳에 登錄하고 出生證을 交付할 것
3. 申請書類와 舊公民證申請書와 對照한 後 所管內務署長의 決定에 依하여 身分이 確實한 者에게는 5個年期限의 公民證을 身分이 確實치 않는 者에게는 3個月期限公民證을 交付하고 舊公民證을 回收할 것.

3個月期限公民證을 交付한 者에 對하여서는 該當地區內務機關에 身分을 照會하여 判定할 것.

4. 居住登錄申請書를 整理하고 居住 및 宿泊登錄簿를 還付할 것.

第11條 公民證에는 所管內務署長 및 公民證交換交付所長이 署名 또는 捺印하여 이를 交付하 여야 한다.

附 則

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이를 實施한다.

北朝鮮人民委員會決定 第5號에 依하여 交付한 舊公民證은 1948年 12月 31日限이를 無 效로 한다.

內 務 相 朴 一 禹

◇ 身分登錄에 關한 規定

(1948. 10. 30. 내무성규칙 제2호)

第1條 身分登錄에 關한 事務는 市面人民委員會身分登錄所 (以下 身分登錄所라고 略稱한다) 에서 管掌한다.

第2條 身分登錄所의 事業上指導監督은 內務相이 이를 統轄한다.

第3條 身分登錄所에서는 申告에 依하여 出生 死亡 結婚에 關한 事項을 登錄證明한다.

第4條 身分登錄台帳의 記載事項을 訂正하거나 姓名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內務相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外國에 居住하는 者의 出生, 死亡, 結婚 및 離婚은 居住地에 駐在하는 朝鮮外交官, 大使, 公使, 領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 身分登錄은 出生, 死亡, 結婚 및 離婚의 種別로 2通을 作成하되 1通은 台帳으로 備置 하고 1通은 證明書로서 申告者에게 交付한다.

第7條 出生申告는 出生後 14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8條 出生申告는 父母가 醫師의 證明書 또는 理(洞)人民委員會委員長의 證明書를 提出하 여 父母의 住所地또는 子女의 出生地의 身分登錄所에 하여야 한다.

父母의 疾病, 死亡 또는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申告할 수 없는 境遇에는 親族 또는 後見人 或은 子女가 出生한 助産員의 管理者로 부터 申告하여야 한다.

第9條 出生申告前에 子女가 死亡할 때에는 出生申告와 同時에 死亡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0條 棄兒의 出生申告는 孤兒院長이 하여야 한다.

第11條 死亡申告는 死亡日부터 3日以內에 醫師의 證明書を 提出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醫師의 證明書を 提出할 수 없는 境遇에는 里(洞)人民委員會委員長의 證明書を 提出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12條 死亡申告는 死亡者와 同居한 者 或은 管理機關이 하여야 한다.

第13條 死亡申告는 死亡者의 住居地 또는 死亡地身分登錄所에 하여야 한다.

第14條 結婚登錄은 當事者의 住居地 또는 其他 地方身分登錄所에 當事者 兩便이 出所하여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第15條 前條의 規定은 離婚에 對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16條 裁判, 離婚을 하였을 때에는 判決確定에 關한 證明書を 居住地 市面人民委員會 身分登錄所에 當事者의 一方 또는 兩便이 判決確定日부터 10日以內로 提出하여 離婚登錄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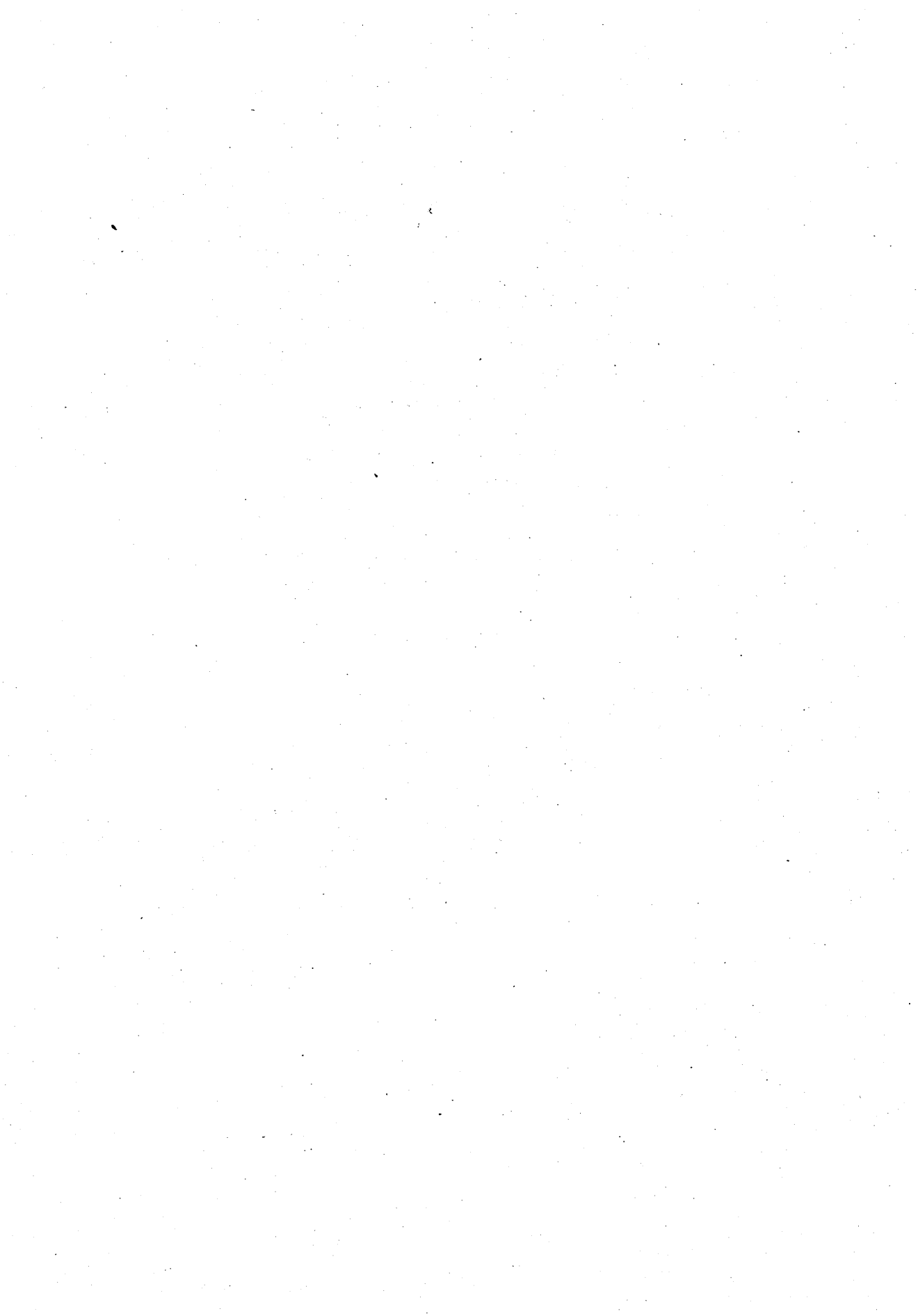
第17條 身分登錄證을 交付받은 者는 반드시 身分登錄台帳에 署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第18條 身分登錄을 申請하였을 때에는 證明書交付料로서 1件 5圓式 收入印紙를 納付하여야 한다.

附 則

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이를 實施한다.

內 務 相 朴 一 禹



제3편 사법, 형사, 치안

제 1 절 사 범

◇北朝鮮의 裁判所 및 檢察所 規定에 關한 法令

(1947. 2. 22)

北朝鮮人民會議는 北朝鮮의 裁判所 및 檢察所에 關한 規定을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第1條 司法局은 北朝鮮의 裁判機關은 다음과 같이 指導監督한다.

1. 判事의 選舉를 爲하여 候補者들은 該當하는 人民委員會에 推薦한다.
2. 北朝鮮裁判機關의 組織과 執務에 關한 指示를 준다.
3. 裁判機關의 事業經驗을 總和한다.
4. 民事法 및 刑事法에 關한 新 法令草案을 作成한다.
5. 辯護 및 公證機關을 指揮監督한다.
6. 裁判檢察機關幹部의 養成과 再教育을 組織한다.

第2條 北朝鮮의 裁判事業은 北朝鮮最高裁判所, 道裁判所, 鐵道裁判所 및 市郡裁判所에서 行한다.

第3條 北朝鮮의 裁判事業은 아래와 같은 事項을 一切의 侵犯으로부터 保護하는 課業을 가진다.

1.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確立된 우리 民主政體와 國家財産
2. 北朝鮮公民들의 政治的 權利, 勞動權, 住宅, 財産 其他의 個人의 所有權 및 利害關係
3. 人民委員會諸機關, 企業所, 消費組合 및 其他 一切 社會團體, 機關의 權利와 法律上 保護 받을 利害關係

北朝鮮의 裁判의 目的은 北朝鮮內의 諸機關, 團體 그의 責任者 및 公民들이 法令을 正確하고 誠實하게 實行함을 保障하는데 있다.

第4條 北朝鮮의 裁判은 各個公民에 對하여 그社會的 地位, 資産, 職位 및 民族別 如何를 가리지 않고 唯一의이며 平等的인 原則에 依하여 行한다.

第5條 判事는 아무데에도 隸屬되지 않고 다만 法律에만 服從한다.

第6條 北朝鮮의 裁判은 朝鮮語로써 한다. 朝鮮語를 使用하지 못하는 者에 對하여서는 通譯을 通하여 記錄文件을 圓滿히 알려주며 또 그들은 公判에서 母國語로 陳述할 權利를 가진다.

第7條 北朝鮮의 裁判은 事件을 審理하는데 있어서 이를 公開하며 被訴者에게 辯護權을 保障한다. 다만 法律이 規定한 特別한 境遇에 限하여 公開를 禁止할 수 있다.

第8條 北朝鮮의 各級裁判所는 選舉에 依하여 構成된다.

北朝鮮最高裁判所는 北朝鮮人民會議에서 그所長, 副所長 및 五名의 裁判員(判事)을 選舉하며 鐵道裁判所 및 道裁判所는 道人民委員會에서 選舉하며 市郡裁判所는 市郡人民委員會

議에서 選舉한다.

第9條 北朝鮮의 法令에 依하여 選舉權을 가지는 一切 公民은 判事 또는 參審員으로 될 수 있다. 1945年 8月 15日 後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判事 또는 參審員으로 選舉될 수 없다. 日本帝國主義統治下에서 判事 또는 檢事로 勤務한 者는 裁判所或은 檢察機關에서 事業할 수 없다. 그러나 萬一 그들이 1945年 8月 15日以後 北朝鮮民主建設에 熱誠의으로 參加活躍하였다면 裁判所, 檢察機關에 登用될 수 있다.

第10條 判事 및 參審員의 解任은 다만 그를 選舉한 人民委員會의 召喚에 依하여서만 實現할 수 있다.

第11條 判事に 對한 刑事事件이 提起되어 그로 因하여 判事を 現職에서 罷免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다만 司法局長의 承認에 依하여서만 이를 行할 수 있다.

第12條 北朝鮮最高裁判所는 北朝鮮의 最高裁判機關이다. 北朝鮮最高裁判所는 北朝鮮에서의 모든 裁判所의 裁判事務를 監視할 責任을 가진다.

第13條 北朝鮮最高裁判所의 各部의 判決 및 決定에 依한 非常上訴를 審理하기 爲하여서는 北朝鮮最高裁判所長, 副所長 및 其他의 裁判員(判事)을 成員으로 하는 委員會를 召集한다.

第14條 北朝鮮의 檢察機關은 民主政體의 원수들과 無慈悲하게 鬪爭하여 民主政體의 公고를 爲하여 鬪爭하며 國家와 社會의 公共財産을 착취하는 者들과 鬪爭하며 民主法令의 正確하고 誠實한 實行과 國家規律強化를 爲하여 鬪爭하며 官僚主義와 鬪爭하며 他人에 對하여 또는 그들의 權利와 利害關係에 對하여 無關心할 傾向과 鬪爭할 義務를 가진다.

檢察機關은 各 機關, 團體 및 그 責任者들의 法令遵守에 關하여 最高監視를 行한다.

第15條 檢察機關은 中央集權制에 依하여 構成되며 다만 北朝鮮檢察所長에 服從한다. 各道檢察所 및 市郡檢察所의 檢事는 自己의 職務를 어떤 地方機關에 從屬되지 않고 履行한다.

第16條 北朝鮮檢察所長은 北朝鮮人民會議에서 任命하여 다만 그에 對하여서만 服從한다.

第17條 鐵道檢察所 檢事 및 道 檢察所 檢事는 北朝鮮檢察所長이 任命하고 市群檢察所 檢事는 道檢察所長의 추천에 依하여 北朝鮮檢察所長이 任命한다.

1947年 2月 22日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議長 金 科 泰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書記長 康 良 煜

(平壤特別市)

◇법의 감정원에 관한 규정

(1950. 2. 20 보건성규칙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법의 감정원은 사망의 원인을 탐구 분석함으로써 치료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기관 또는 개인의 요구에 의한 법의 감정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의 감정원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권한내의 치료기관에서 사망자에 대한 병리해부실시
2. 원인불명의 사망자, 피해자, 자체가해자 및 정신병자등에 대한 법의 감정실시
3. 보건일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사건에 대한 법의 감정실시
4. 치료기관에서 병리해부에 의거한 사인 탐구검토회의 조직 및 그의 지도 검열
5. 각종 외상, 노동능력상실, 불법유산, 치료상의 미신행위, 치료상의 오동에 관한 법의 감정재료의 연구 및 그의 방지대책 수립
6. 법의 감정에 관한 학술적 연구

제3조 법의 감정원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시험실
2. 해부실
3. 심문실

그러나 시, 군 구역법의 감정원에는 해부실만을 시설할 수 있다.

제4조 법의 감정원의 직원임면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법의 감정원 원장은 해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상이 임면한다.
2. 도 법의감정원의 법의 감정의, 화학기술자 및 시, 군구역 법의 감정원 원장은 해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기타 직원은 해당 법의 감정원의 원장이 임면한다.

제5조 각급 법의감정원원장, 법의 감정의는 의사의 자격을 가져야하며 중앙 및 도 법의 감정원의 화학기술자는 약제사 또는 분석화학을 전공한 자에 한하고 중앙 및 도 법의 감정원의 시험조수는 중등보건 일꾼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6조 중앙 법의 감정원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의 법의 감정원 사업에 있어서 일체 기술적 사업을 지도하며 중앙 법의 감정원의 법의 감정의 및 화학기술자는 중앙 법의 감정원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집행한다.

제7조 도 법의 감정원원장은 해당 도 보건부장의 행정적 지도와 중앙 법의 감정원원장의 기술지도에 의하여 해당 구역내에서 소관사무를 집행하며 시, 군 구역 법의 감정원원장은 해당 도 보건부장의 행정적 지도와 해당 도 법의 감정원원장의 기술적 지도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집행한다.

제2장 법 의 감 정

제8조 법의 감정은 내무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기타기관 또는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내무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이외의 기관, 개인등의 요구에 의한 법의 감정은 법의 감정의가 특수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 기관 또는 개인이 제1차 법의 감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급 법의 감정원의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법의 감정원의 법의 감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건상에게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내무기관, 검찰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의 감정은 그 기관 대표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그러나 내무기관, 검찰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입회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입회의 통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의 입회없이 법의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생체, 사체, 물품등의 감정이 끝나면 서론 소견감정결론으로 구성되는 법의 감정결론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서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1) 생체 및 사체 감정에 기초되는 사항

피감정자의 주소, 직업,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감정을 받게 된 근거

감정 목적

사건 및 감정에 관계되는 자료

감정일시 및 장소

입회자의 근무기관명칭 또는 주소, 직위, 성명, 연령

법의 감정의의 성명

(2) 물품감정에 기초되는 사항

사건명 및 물품명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소, 직업,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감정목적

감정실시에 관계되는 자료

감정일시 및 장소

감정자의 성명

2. 소견에는 감정의 진행사항을 기록하며 발견된 사실을 기록한다.
3. 감정결론은 감정결과를 종결하며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이 될 수 있는 사건성질에 적합한 결론을 결정 기입한다.
4. 법의 감정결론서의 서론 및 소견은 감정실시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법의 감정의가 서명 날인한다. 그러나 시험실적, 검사실적은 후에 보충기입할 수 있다.

제12조 법의 감정결론서는 작성후 즉시 법의 감정을 요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법의 감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의 감정을 실시할 때에 있어서 모든 보건기관과 개별적인 보건일꾼들은 각 방면으로 법의 감정사업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4k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법의 감정을 실시하기 위한 출장을 요구할 때에는 감정을 요구한 기관 또는 개인은 승용물의 준비 및 출장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법의 감정료는 다음과 같다.

1. 내무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요구에 의한 감정은 무료
2. 내무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요구에 의한 감정으로서 법의 감정원 이외의 국가치료기관의 의사 또는 전문가가 감정을 실시하였을 때는 1건에 대하여 200원(의사 또는 전문가의 수입으로 한다)
3. 내무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이외의 기관 및 개인등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을 때는 1건에 대하여 500원(그러나 생활형편이 극빈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제3장 법 의 감 정 의

제16조 법의 감정은 법의 감정원만이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감정의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건 행정기관책임자가 국가보건기관의 의사에게 임시 이를 위촉할 수 있으며 물품감정에 관한 법의 화학적 감정은 화학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각급 법의 감정원원장 및 법의 감정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의 감정원은 내무기관, 검찰기관 및 재판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건의 정형을 숙지할 수 있으며 공판정에서 피해자, 피소자 및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2.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감정결론을 내리기 불충분할 때에는 감정결론서 교부불가능을 설명하여 감정에 필요한 보충적 자료를 지적 요구할 수 있다.
3. 법의 감정원은 자기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감정결론 대신에 감정결론서 교부거부의 원인을 명기한 이유서를 작성한다.
4. 법의 감정원은 감정시에 제기된 문제들에 의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상급 법의 감정원원장에게 즉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법의 감정원은 감정에 관계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감정의 목적을 설명하며 판단을 하기 위한 일정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는 범위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절할 수 있다.
6. 감정이 복잡하고 전문적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문가를 감정에 참가시키며 그들을 감정론작성에 참가시킬 것을 감정요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법의 감정원은 그의 의무외의 보건의업위촉을 거절할 수 있다.
8. 치료기관에서의 확진전에 사망한 자, 입원후 24시간전에 사망한 자 및 사인이 명확치 않은 자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병리해부를 실시할 수 있다. 치료기관 책임자는 전향의 사망자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구역내의 법의 감정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의 감정원이 없을 때에는 해당 보건 감정원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의 감정원이 없을 때에는 해당 보건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9. 치료기관에서 사망자에 대한 사체를 검사할 때 법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법의 감정원은 검사를 중단하고 해당 치료기관책임자에게 통고서(양식 제1호)를 교부하든가 또는 해당치료관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전향의 통고서 또는 법의 감정결론서를 받은 치료기관책임자는 즉시로 검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법의 감정의 및 기타 감정에 참가한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건의 자료 및 내용을 발표할 수 없으며 다만 감정의뢰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발표할 수 있다.
11. 법의 감정원은 법의 감정 및 병리해부실시사항을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8조 각급 법의 감정원원장 및 법의 감정원은 임무집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체 및 기타 법의 감정재료를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할 것을 감정을 요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법의 감정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보건기관의 시설 설비 기타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소요비용은 감정을 요구한 기관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3. 법의 감정에 대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보건기관 또는 기술자에게 위촉시킬 수 있다.

4. 자기사업 범위내에서 보건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검열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법의 감정원장은 제2조의 과업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하급 법의 감정원 및 국가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법의 감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검열을 실시하되 내무기관, 검찰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요구한 감정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급 법의 감정원 및 국가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법의 감정결정에 대하여 그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때에는 내무기관, 검찰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대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법의 감정원장은 재감정 요구서 및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의 감정 결론서의 사본을 즉시로 상급 법의 감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치료비규정(1948년 2월 1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보건국 명령 제23호) 제9조 2항을 삭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 건 상 이 병 남

추 가

제19조 각급 법의 감정원 원장, 법의 감정의는 법의 감정의증을 가진다.

◇재판소구성법 채택에 관하여

(1950. 3. 1 최고인민회의 법령)

1. 1950년 3월 1일

채 택

2. 1954년 12월 11일

제25조, 제30조 수정

「제25조 시, 군인민재판소는 2년임기로 해당 시, 군인민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제30조 도재판소는 3년임기로 해당 도인민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은 헌법 제82조에 의하여 최고재판소, 도재판소, 시·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이를 수행한다.

제 2 조 재판소 설치의 수와 그 소재지는 사법상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이 결정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은 다음의 사항을 일체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함을 그 과업으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확립된 인민민주주의 국가제도
2. 법령에 의하여 보장된 공민들의 정치적 권리, 노동, 토지, 주택 및 인격 또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이익
3. 국가기관, 국가기업소, 협동단체 및 제반 권리와 법적 이익

제 4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은 모든 기관, 단체공무원 및 공민이 국가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도록 보장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 5 조 재판소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자를 다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하며 재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소는 그 전체사업을 통하여 공민으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충성, 법령의 정확하고 성실한 실행, 국가재산의 애호, 국가적 사회적 의무에 대한 충실 및 민주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배양하도록 교육한다.

제 6 조 재판소는 본법 제3조에 규정한 과업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현한다.

1. 형사사건을 심리 재판하여 인민의 원수, 테러행위, 해독행위, 국가재산 약취, 강도, 절도, 불량자행위 및 기타의 범죄자들에게 법령이 규정한 형벌의 적용
2. 국가기관, 국가기업소, 협동단체, 사회단체 및 공민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분쟁사건의 심리해결

제 7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1. 재판은 공민의 사회적 지위, 재판 직위 및 민족별여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민에 대하여 유일하며 평등하다.
2. 모든 재판소에 있어서 형법, 민법 및 소송법은 유일하며 의무적이다.

제 8 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부종한다.

제 9 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적 비밀의 보호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이유불인 판정에 의하여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86조에 의하여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체 재판소는 헌법 제83조에 규정한 선거 제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제13조 모든 재판소에는 소장과 필요한 수의 판사 및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참심원을 둔다.

제14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의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한 자는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 참심원은 등록된 명부순에 의하여 1년에 14일이내에 재판에 참여한다. 그러나 사건의 계속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심원은 재판소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노동자 또는 사무원이 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전 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노동임금을 보장받는다.

전항 이외의 자가 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매 노동일에 대하여 당해 재판소 판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제17조 모든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서 구성된 재판소가 수행한다. 그러나 특히 법령으로써 규정된 경우에는 판사 3명의 구성으로써 수행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제1심 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 피소자 변호인 또는 원고, 피고 및 그의 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있다.

상급재판소는 상소 또는 항의를 심리함에 있어서 기록에 있는 자료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심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여 판정한다.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는 상소, 항의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된 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장 또는 검사 총장만이 최고재판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써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21조 판사 또는 참심원은 그 선거한 기관의 소환 또는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서만 해임할 수 있다.

제23조 휴가, 질병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그 부재기간중 다른 재판소 판사로서 그 직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 대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판사는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 사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군인민재판소

제25조 시·군인민재판소는 2년 임기로 해당 시·군인민위원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제26조 시·군인민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 재판한다.

1. 형사사건

국가관리를 침해하는 죄

국가소유 및 협동단체 소유침해에 관한 죄

인신에 대한 죄

개인소유침해에 관한 죄

노동법령위반에 관한 죄

직무에 관한 죄

경제에 관한 죄

사회질서에 관한 죄

인민보전에 관한 죄

2. 민사사건

재판상 분쟁에 관한 소송

노동법령에 관련된 소송

이혼 및 부양료 지불에 관한 소송

상속에 관한 소송

시·군인민재판소는 또한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기타의 형사 및 민사사건도 관할 재판한다.

제27조 시, 군인민재판소는 형사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하기 전에 다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1. 검사가 제출한 기소장을 승인하는 여부에 관하여 기소장을 승인한다면 사건을 공판에 넘기고 승인할 수 없다면 보충예심을 시키기 위하여 반송하거나 또는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2. 피소자에 대한 보전처분을 채택, 존속, 변경, 취소하는 여부에 관하여

3. 사건심리에 변호인 및 검사의 의무적 참가와 감정인, 증인등을 소환하는 여부에 관하여

제28조 판사는 단독으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고 또는 청원을 받았을 때 형사사건을 제기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및 청원을 예심기관에 넘긴다.
3. 사건심리기일을 정한다.
4. 피소자, 증인, 감정인의 소환을 준비하며 원고 및 피고 또는 해당하는 제3자에게 사건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제29조 시·군인민재판소장은 공판에 있어 직접 재판장이 되거나 또는 그 재판소 판사를 재판장으로 지정한다.

제3장 도 재판소

제30조 도 재판소는 3년 임기로 해당 도인민위원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제31조 도 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 재판한다.

1. 형사사건

국가정권에 대한 죄

특히 중대한 인민에 대한 죄

국가소유 및 협동단체 소유침해에 관한 죄

직무에 관한 죄

2. 민사사건

조선공민과 외국인간의 소송

도 재판소는 또한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기타 제1심 형사 및 민사사건과 시, 군인민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도 심리한다.

제32조 도 재판소에는 형사부 및 민사부를 둔다.

1. 형사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과 시·군인민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2. 민사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과 시·군인민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33조 도 재판소 각부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참심원 2명의 구성으로써 제1심 형사 및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제34조 도 재판소 각 부는 판사 3명의 구성으로써 시·군인민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 사건을 심리한다.

제35조 본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는 도재판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특별재판소

제36조 특별재판소라 함은 군사재판소 및 통운재판소를 말한다.

제37조 특별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 재판한다.

1. 군사재판소는 군사상 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기타 범죄사건
2. 통운재판소는 철도, 육운 및 수상운수기관 복무원의 직무상 범죄사건 및 통운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범죄사건

제38조 특별재판소의 소장 및 판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상이 임명한다.

제39조 특별재판소의 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통운기관 복무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40조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 군단 또는 사단(여단) 군부대 및 내무기관에 설치한다.

제41조 군단 군사재판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형관사사건과 사단(여단) 군부대 및 내무기관 군사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42조 통운재판소는 철도, 육운 및 수상운수기관 조직체제에 따라 필요한 관구 또는 지구에 설치한다.

제43조 관구 통운재판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형사사건과 지구통운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44조 특별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참심원 2명으로서 제1심 형사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특히 당해재판소의 판사 3명의 구성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고 법령이 규정한 경우만이 이에서 제외된다.

제45조 군단 군사재판소 및 관구 통운재판소는 판사 3명의 구성으로써 사단(여단) 군부대 및 내무기관 군사재판소 또는 지구 통운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46조 본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는 특별재판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최고재판소

제47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3년 임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제48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든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전항의 감독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1. 확정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
2. 도재판소 및 해당 특별재판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

제49조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는 상소항의할 수 없다.

제50조 최고재판소에는 다음의 부를 둔다.

1. 형 사 부
2. 민 사 부
3. 특 별 부

제51조 최고재판소 형사부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형사사건과 도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52조 최고재판소 민사부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제1심 민사사건과 도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53조 최고재판소 특별부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형사사건과 군단 군사재판소 및 관구 통운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제54조 최고재판소 각 부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참심원 2명으로서 제1심 형사 및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특히 법령으로써 규정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서 사건을 심리한다.

제55조 최고재판소 각 부는 판사 3명의 구성으로써 도재판소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과 최고재판소 이외의 각 재판소의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다.

제56조 본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는 최고재판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재판소의 어떤 부에서 처리하는 건이든지 그 사건심리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제58조 최고재판소장, 검사총장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한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떤 재판소로부터든지 기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 판결 및 판정을 제외한 어떠한 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서든지 그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9조 최고재판소 각 부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서 이를 심리한다.

최고재판소 전원회의는 심리한 사건에 관한 결정에 기초하여 재판실무의 제반 문제에 관한 지도적 지시를 줄 수 있다.

제60조 최고재판소 전원회의는 최고재판소장 및 최고재판소 판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검사총장 및 사법상은 반드시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61조 최고재판소 전원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이를 소집한다.

제 6 장 집 행 원

제62조 민사사건에 관한 판결과 판정의 집행 및 형사사건의 판결과 판정에 있어서의 재산징수의 부문에 관한 집행은 집행원이 한다.

제63조 집행원은 사법상이 임명하며 시·군인민재판소, 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에 둔다.

제64조 집행원이 그 임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구는 모든 기관, 공무원 및 공민에게 의무적이다.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

(1951. 1. 10 내각결정 제203호)

제1조 본 규정에 의한 군중심판회는 <적>에게 임시적으로 강점당하였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내 지역에서 <적>편에 가담하여 <조국>에 반역하고 민족을 배반한 자를 심판한다.

제2조 군중심판회는 농촌 혹은 도시의 리에 조직하는 바 심판장 1명, 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심판에 있어서 그들의 권한은 동등한다.

심판장은 리민중회에서 3개월 임기로 선거하며 심판장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심판장이 질병 기타 원인으로 심판에 참석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심판장을 2명 더 선거할 수 있다. 참심원은 심판회를 소집할 때마다 해당 리사회단체들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리 인민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제3조 군중심판회는 심판을 받을 자가 범행한 곳에서 이를 행한다.

제4조 군중심판회는 해당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군중심판회 소집에 관한 통치는 그 해당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군중심판을 받을 자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그의 범행에 관한 간단한 내용, 군중심판 일시 및 장소를 공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5조 범행에 관한 자료는 <국가> 정부기관 및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군중심판회에 제출한다.

제6조 심판장은 심판을 개시할 시간이 되면 참심원과 서기를 연석시킨 후 심판을 받을 자를 참석시키고 그 사건을 심리할 것을 선언한다.

제7조 군중심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 군중심판회는 제5조에 지적한 대표자가 심판을 받는 자의 범행을 보고함으로써 시작된다.

심판장은 그 보고가 있는 후 심판에 참석한 군중에게 그 보고이외에 더 추가할 범죄사실이 없는가를 물어야 하며 추가할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한 심문은 제5조에 지적한 대표자 군중심판회에 참석한 군중심

판원 및 심판장의 순서로 한다.

제10조 군중심판회에 참석한 군중은 언제든지 증인진술 기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을 받는 자는 언제든지 그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제11조 심판회의 심의가 끝나면 군중토론으로 넘어간다. 군중토론은 심판을 받는 자에게 죄가 있는가 인민재판에 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도로 사회적 제재를 줄 것인가를 언급한다. 그것이 끝나면 제5조에 지적한 대표자가 결론을 한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 자가 변명한다.

제12조 전조의 토론, 결론, 변명이 끝나면 심판장은 심판을 받는 자에게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최후진술이 끝나면 심판원들은 결정하기 위하여 별실로 들어간다. 결정을 하는 별실에는 심판원(심판장 및 2명의 참심원)만이 참석한다.

제13조 군중심판원이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 심판을 받는 자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2. 심판을 받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인민재판에 넘길 것인가
3. 심판을 받는 자가 인민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어떤 정도로 사회적 제재를 줄 것인가

제14조 군중심판에서 내리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인민재판에 회부하는데 대한 결정
2. 사회적 제재를 적용하는 결정
3.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죄에 대한 결정

제15조 사회적 제재로 두문을 적용한다.

두문은 사회적 제재를 받는 자에게 직업상 필요한 외출 또는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소환 등에 의한 외출을 제외한 일체의 자유외출과 주민들과의 왕래를 엄금하며 그 자가 거주하는 가옥의 대문(대문이 없을 때는 그 자가 거주하는 가옥 중 왕래에서 잘 보이는 곳) 전면에 <두문>이라고 쓴 표식을 함으로서 실시한다.

두문 기간은 1개월 내지 6개월로 한다.

제16조 두문의 제재를 받은 자가 그후 개전한 흔적이 현저하고 <공화국>에 충성을 나타냄이 인정되었을 때는 두문이 끝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그 지방 군중심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자는 사회적 제재의 심판회 결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된다.

제17조 군중심판회의 결정서는 심판장이 자필로 쓰고 다른 참심원이 모두 서명 날인한다.

제18조 심판장은 군중심판회에 참석한 군중에게 그 결정서를 낭독한다. 이때 그 심판회에 참석한 군중은 모두 일어서 결정을 듣는다.

제19조 군중심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있다.

제20조 군중심판회의 전적 감시원은 그 지방검찰소 검사에게 있다.

군중심판회의 결정이 부당한 때는 검사의 항의에 의하여 그 지방 인민재판소가 이를 해결한다.

제21조 군중심판회의 회의록(결정서 포함)은 해당 리인민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시효(時効)에 관하여

(1956. 10. 15 상임위원회정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특별히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정령이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2조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 상호간의 채무이행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공급한 제품의 부적당한 품질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 및 벌금, 위약금 또는 연대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운수 또는 채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로 한다.

비고 : 예산제국가기관 상호간의 채무는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그 채무가 발생한 예산년도가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제3조 개인 상호간 또는 개인과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간의 채무의 이행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 본 시효에 이익을 미리 포기하거나 법에 규정된 시효기간과 달리 약정하는 당사자들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5조 시효기간은 다음 시기부터 진행한다.

1. 이행기가 확정된 채무에 관하여서는 이행기가 도래할 때부터
2.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가 발생할 때부터
3.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 상호간에서의 공급한 제품의 부적당한 품질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서는 그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때부터

제6조 시효기간 마지막 6개월 동안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1.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없었을 때
2. 국가에서 지불유예를 결정하였을 때

3. 부부 상호간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후견 또는 보좌관계가 계속되는 때
4. 후견 또는 보좌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그에게 후견인 또는 보좌관계가 계속되는 때
5. 후견 또는 보좌를 요하는 자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그에게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6. 현역 병사 및 하사관 또는 전투상태에 들어간 군관의 청구 및 그에 대한 청구인 때
7.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때

제7조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사유가 소멸되면 시효의 진행은 다시 계속된다.

이 경우에 나머지 시효기간이 다음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시효기간은 다음 기간으로 연장된다.

1.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 상호기간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3개월
2. 개인 상호간 및 개인과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간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6개월

제8조 채권자가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사회단체 상호간의 이행청구권에 대한 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제9조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사유가 끝나면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이 경우에 이미 경과한 기간은 새로 진행되는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10조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채무를 이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채권자가 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조 본 정령은 본 정령 공포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그러나 개인 상호간 또는 개인을 일방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본 정령 공포 당시에 이미 시효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시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다.

제14조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제 2 절 형 사 법

◇北朝鮮의 檢察所豫審及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關한 法令

(1946. 6. 20.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6호)

第一章 事件의 提起

第一條 刑事事件提起의 原因은 다음과 같다.

- (가) 個人 또는 團體의 申告
- (나) 犯人의 自首
- (다) 檢事, 豫審員, 保安機關의 提案
- (라) 裁判所의 直接裁量

第二條 個人의 申告는 書面이나 口頭로 한 申告가 있을 때에는 判事, 檢事, 豫審員, 保安機關은 이것을 調書에 記載하고 申告者에게 署名捺印시킨다. 申告를 受理할 때에는 申告者에게 對하여 誣告에 關한 責任을 말하여야 한다.

第三條 判事, 檢事, 豫審員, 保安機關은 犯罪의 實行 또는 豫備에 關한 申告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受理하여야 하며 비록 自己管轄에 屬하지 않은 事件에 關한 申告라도 受理하여야 된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事件을 그 管轄에 따라 適當히 移送한다.

第四條 신고 그 自體로 보아서 事件이 그 犯罪의 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것이 判明될 때에는 檢察機關과 保安機關은 事件의 調査를 拒否하고 이 뜻을 申告한 個人이나 團體에게 通知한다. 이 拒否處分에 對하여서는 十日內에 上級檢察機關에 抗告할 수 있다.

第五條 第一條의 原因이 있고 또 申告의 內容이 犯罪構成의 要件을 具備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手續을 行한다.

- (가) 保安機關은 搜查에 着手한다. 그리고 二十四時間以內에 事件의 內容을 檢察機關에 報告하여야 된다.
- (나) 檢事は 事件을 檢察하기 爲하여 豫審員에게나 保安機關에게 보낸다.
- (다) 豫審員은 豫審을 始作하며 이것을 二十四時間以內에 檢察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라) 裁判所는 事件을 檢察機關이나 保安機關에 移送하든지 또는 直接 審理한다.

第二章 搜 査

第六條 保安機關은 事件이 豫審員의 豫審을 要할 때와 豫審員의 豫審을 要하지 않고 自己의 處理만으로서 事件을 公判에 붙일 수 있을 때에 따라 그 職務을 달리한다.

第七條 保安機關에서 搜查를 始作한 事件중 豫審員의 豫審을 要하는 事件이 있을 때에는 이에 對하여서는 곧 豫審員에게 報告하고 保安機關은 그 後의 豫審을 保障함에 必要한 搜查를 繼續하여야 하며 事件을 遲滯없이 豫審員에게 넘겨야 한다.

第八條 保安機關이 豫審員의 豫審을 要하는 犯罪의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境遇에 限하여 被疑者의 豫審 또는 公判의 回避를 豫防하는 手段으로서 할 수 있다.

(가) 犯人이 犯罪에 着手하였을 때 또는 犯罪를 實行하는 中에나 實行한 直後에 發見되었을 때

(나) 犯罪의 被害者 또는 目擊者가 被疑者를 犯人이라고 指摘하였을 때

(다) 被疑者의 身體나 居所에서 犯罪의 痕迹을 發見하였을 때

(라) 被疑者가 脫走를 企圖하였을 때 또는 逃走하는 中 犯人이라고하여 追跡되었을 때

(마) 被疑者가 一定한 住所 또는 一定한 勤務處가 없을 때

(바) 被疑者의 身分이 判明되지 않을 때

第九條 保安機關은 豫審員의 豫審을 要하지 않는 事件의 搜查를 行하며 이에 對하여 第十八條, 第二十條, 乃至 第六十條가 適用된다.

第十條 被疑者를 訊問한 後 그 事件이 自由刑을 科할 수 있을 때에는 保安機關은 被疑者에게 對하여 第三十六條에 指摘한 保全處分中의 한가지를 採用할 수 있다. 이 保全處分은 第三十八條, 第四十一條, 第四十二條의 規定이 適用되어 이에 對한 處分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二十四時間以內에 이것을 管轄區域의 豫審員에게 申告하여야 된다. 豫審員은 搜查가 如何한 程度에 있음을 不問하고 保安機關에 對하여 保全處分の 取消 또는 變更을 要求할 수 있다.

第十一條 自由刑을 科하지 못할 犯罪事件에 있어서는 第八條에 指摘한 事由가 있을 때가 아니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때는 被疑者는 裁判所에 出頭하겠다는 誓約書를 提出하여야 된다.

第十二條 保安機關이 第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逮捕할 때에는 二十時間內에 逮捕의 理由를 붙여 그 管轄區域의 豫審員 또는 檢事에게 報告하여야 된다.

保安機關으로부터 逮捕의 報告를 받은 豫審員 또는 檢事は 四十八時間內에 그逮捕를 確認하거나 또는 取消한다. 保安機關으로부터 通告를 받은 後가 아니면 保全處分을 變更할 수 없다.

第十三 搜查手續의 期間은 三十日을 넘을 수 없다. 이 期間을 延長하려면 道檢察所長의 許可가 있어야 된다.

第十四條 保安機關의 搜查에 對한 全體의 監督은 그 管轄地域의 檢事에게 있다.

第三章 豫 審

第十五條 다음에 記載한 事件은 반드시 豫審員이 豫審을 行한다.

- 一. 行政機關의 代表者의 職務를 實行하는데 反對하는 罪(公務執行妨害罪)
- 二. 瀆職罪
- 三. 賂物罪
- 四. 誣告罪
- 五. 行政機關의 職員이 그 職務를 다하지 못하는 罪(怠業)
- 六. 殺人罪
- 七. 重한 傷害罪
- 八. 도덕을 반대하는 죄(強姦 略取 誘拐等)
- 九. 強盜罪
- 十. 恐喝罪
- 十一. 故意로 남의 財産을 없애는 罪(毀棄罪, 橫領背任, 放火罪等)

其他犯罪는 事件이 어려운 때에만 豫審員의 豫審을 行하고 그렇지 않으면 豫審員의 豫審을 行하지 않는다.

檢事는 어떠한 事件을 勿論하고 自己가 豫審을 맡아서 할 權利가 있다.

第十六條 豫審員이 그 受理한 搜查材料가 充分하고 完全하여 事件이 充分히 證明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豫審을 行하지 않든지 또는 特定한 豫審處分만을 制限해야 行할 수 있다. 그러나 各事件에 對하여 다음의 豫審處分만은 完了하여야 된다.

- (가) 被審者에게 對한(立審) 通告
- (나) 被審者의 訊問
- (다) 起訴狀의 作成

第十七條 豫審員은 管轄區域內에서 豫審을 必要로 하는 犯罪가 있다는 情報 또는 材料를 얻었을 때에는 遲滯없이 곧 豫審을 開始하고 이에 對한 決定書를 쓰고 그 決定書의 謄本을 檢事에게 보낸다. 豫審이 始作된 後에는 保安機關은 豫審員의 委任이 없이는 그 事件에 關與할 수 없다.

第十八條 被審者 또는 被害者가 그 事件에 關하여 異意를 가진 事由에 對하여 確定을 申請한 때에는 豫審員은 이에 關한 證人이나 鑑定人의 訊問 또는 證據의 蒐集을 拒否할 수 없다.

豫審의 執行 또는 事由의 確定에 對하여 被害者 또는 被審者가 提出한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 豫審員은 却下의 理由를 붙인 決定書를 作成한다.

第十九條 豫審員은 第十五條에 記載된 事件을 豫審할 때에는 豫審開始後 一箇月內에 豫審을 終結하여야 되며 이 期間을 延長하려면 道檢察所長의 許可가 있어야 된다.

第二十條 數人이 共同하여 一罪 또는 數罪를 犯한 事件 또는 一人이 數罪를 犯한 事件으로서 그것이 同種이든지 또는 同一한 意思에 依하여 서로 牽連된 것은 一箇의 豫審手續에 併合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 檢事는 豫審을 監督한다. 檢事는 豫審의 記錄을 檢閱하며 豫審員에 對하여 豫審의 方向과 追補를 指示할 수 있다.

檢事の 指示는 豫審員에 對하여 命令의이다.

第二十二條 豫審員이 事件調查中 被害者가 犯罪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것을 알게 될 때에는 被害者에게 對하여 私訴를 提起할 權利가 있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調査에 記錄한다.

第二十三條 私訴가 提起되었을 때에는 豫審員은 被害者의 申請을 審査하여 被害者를 私訴原告로서 認可할 與否에 對하여 理由붙인 決定書를 作成한다. 豫審員은 私訴原告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自己의 裁量으로서 私訴請求에 對한 保障處分을 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豫審員은 다음과 같은 境遇에 排除된다.

(가) 豫審員이 事件關係者의 親族일 때

(나) 豫審員 또는 그 親族이 그 事件의 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을 때

(다) 豫審員이 그 事件에 證人, 鑑定人, 搜查人, 判事, 訴追者 또는 辯護人으로서 參加하였을 때

第二十五條 豫審員은 그에게 對한 申請을 二十四時間內에 檢事에게 보낸다. 檢事는 三晝夜內에 排除申請을 解決한다.

第二十六條 豫審을 行하는 豫審員이 다른 豫審區域에서 豫審을 行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豫審에 關한 調査를 그 區域의 豫審員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直接 行할 수 있다.

第四章 立審과 訊問

第二十七條 豫審員은 犯罪에 關하여 立審하는데 充分한 證據材料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被疑者를 被審者로서 召喚하기 爲하여 理由붙인 決定書를 作成하고 豫審員이 被疑者를 被審者로 召喚할 決定書를 作成하였을 때에는 四十八時間內에 立審決定을 한다.

第二十八條 被審者 召喚에 關한 決定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決定書作成者의 姓名, 作成의 日時와 場所, 被審者의 姓名, 豫審員에게 判明된 犯罪의 日時, 場所 및 其他 事由, 召喚의 理由

第二十九條 被審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出頭하지 않을 때에는 拘引한다.

第三十條 豫審員은 被審者가 出頭한 後 또는 그를 拘引한 後 二十四時間內에 訊問한다. 豫審者 逮捕의 通知를 받았을 때에도 이와 같다. 萬若 이 期間內에 訊問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遲延된 理由를 調書에 記載한다.

第三十一條 豫審員은 強制 또는 威脅 其他 類似한 方法으로 被審者를 訊問하여 그 陳述이나 自白을 強要하여서는 안된다.

第三十二條 被審者가 數人이 있을 때에는 豫審員은 被審者를 各別로 訊問하며 同事件의 被審者가 서로 交通하지 못하도록 處한다. 그러나 必要가 있을 때에는 豫審員은 被審者를 서로 또는 被審者와 證人을 對質시킬 수 있다.

第三十三條 調書에는 被審者의 陳述을 第一人稱으로 記載하며 또 될 수 있는 대로 逐次的으로 記載한다.

第三十四條 訊問이 끝났을 때에는 被審者에게 調書를 읽어준다.

被審者는 調書를 自己가 陳述한 것에 依하여 補充 또는 訂正하게 할 수 있다. 被審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被審者에게 그 陳述한 바를 스스로 記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調書에는 豫審員과 被審員과 被審者가 署名除印한다.

第五章 保全處分

第三十五條 豫審員은 被審者의 公判 또는 豫審의 回避를 防止하기 爲하여 保全處分을 行할 수 있다.

第三十六條 保全處分은 다음과 같다.

(가) 不離去의 誓約

(나) 人的 保證

(다) 拘 留

第三十七條 保全處分은 被疑者를 被審者로 決定한 다음에 行할 수 있다. 이 保全處分은 事件審理中 어느 때든지 變更할 수 있다. 特別한 境遇에 立審決定前에 保全處分을 行하였을 때에는 이 處分을 行한 날부터 十四日內에 立審決定을 하여야 되며 이 期間內에 立審決定을 할 수 없으면 保全處分을 取消한다.

第三十八條 豫審員이 保全處分을 行하였을 때에는 理由붙인 決定書를 作成하고 被審者에 對한 立審의 原因이 된 犯罪事實과 그 保全處分을 行하게 된 理由를 記載한다. 保全處分을 行하였을 때에는 곧 被審者에게 通告하고 檢事에게 報告한다.

第三十九條 保全處分을 採用할 때에는 豫審員은 다음의 事項을 考慮하여 保全處分의 必要性과 그 種類를 決定한다.

(가) 被審者가 犯한 犯罪의 必要性

(나) 被審者가 豫審 또는 公判을 回避하든지 또는 事件真相의 發見을 妨害하려 할 可能性

第四十條 檢事は 豫審員에게 對하여 그 採用한 保全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要求하며 또 豫審員이 아직 保全處分을 採用하지 않았을 때 그 採用을 請求할 수 있다.

第四十一條 人的 保證이라는 것은 信任할 만한 者로 하여금 被審者의 出頭를 保證케 하고 被審者를 어느 때든지 要求가 있을 때에는 豫審員에게 出頭시키겠다는 誓約書를 提出하게 함을 말한다. 保證人의 數는 豫審員이 定하나 二人以上이라야 된다. 保證人에게 對하여 誓約書를 提出시킬 때에는 被審者가 豫審 또는 公判을 回避한 境遇에 있어서의 保證人의 責任을 말한다.

被審者를 拘留하는 것은 그 被審者가 自由로 있으면 犯罪真相의 發見을 妨害하든지 또는 裁判이나 豫審을 回避하든지 할 危險性이 보일 때에 限한다.

豫審員이 保全處分으로서 拘留를 採用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檢事에게 報告하고 또 決定書의 謄本을 拘留所에 送致한다.

第四十二條 保全處分의 取消나 變更은 理由불인 決定書에 依하여 하며 그 保全處分이 檢事의 關與한 것일 때에는 檢事の 承認이 있어야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六章 證人鑑定人の 訊問

第四十三條 證人の 訊問은 다른 證人이 없는 곳에서 各別로 行한다. 豫審員은 同事件에 關한 證人을 訊問이 끝날 때까지 서로 交通하지 못하게 處置한다. 그러나 必要할 때에는 豫審員은 證人과 다른 證人을 對質시킬 수 있다. 證人을 訊問할 때에는 먼저 證人에게 陳述을 拒絕하든지 또는 虛僞의 陳述을 하든지 하였을 때의 責任을 말하고 또 이에 關한 誓約書를 提出시킨다. 證人이 陳述한 것은 全部 調書에 第一人稱으로 詳細히 記載한다.

第四十四條 訊問이 끝난 때에는 證人에게 調書를 읽어준다. 證人은 調書를 自己가 陳述한 바에 依하여 補充 또는 訂正시킬 수 있다.

또 證人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證人이 그 陳述한 바를 스스로 記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調書에는 豫審員과 證人이 署名捺印한다.

第四十五條 鑑定人을 訊問할 때에는 豫審員은 먼저 鑑定人에게 虛僞에 對한 責任을 말한다.

第四十六條 鑑定人이 여럿일 때에는 鑑定人의 要求에 依하여 鑑定하기 前에 서로 協議하게 할 수 있다. 數人의 鑑定人은 그 鑑定의 結果를 서로 選舉한 一人으로 하여금 陳述하게 한다.

鑑定이 끝나면 調書를 作成하는데 이에는 第四十四條를 準用한다.

第四十七條 豫審員은 鑑定이 充分히 明確하지 못하든지 不完全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裁量에 依하여 또는 被審者의 申請에 依하여 理由불인 決定으로서 新鑑定手續할 수 있다.

第七章 搜索과 押收

第四十八條 豫審員은 個人이나 團體에게 對하여 그 事件에 異意를 가진 物件이나 文書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萬若 이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理由불인 決定書를 作成하여 強制的으로 差押하든지 또는 搜索하든지 한다.

第四十九條 搜索과 押收는 現場人和 그 建造物의 占有者 그 家族 또는 隣人의 立會下에 行한다. 搜索과 押收를 執行할 때에는 豫審員은 이에 關한 自己의 決定書를 읽어야 된다.

第五十條 文書 其他의 物件을 差押하였을 때에는 調書를 作成한다.

그 調書에는 押收한 物件의 名目을 全部 記載하고 豫審員과 그 建造物의 占有者가 署名捺印한다. 押收와 搜索에 對하여 提出된 여러가지 申請과 請求는 全部 調書에 記載한다. 搜索을 받은 者 또는 家族에게는 調書와 目錄의 謄本을 交付한다.

第八章 檢證과 檢診

第五十一條 搜索과 押收到에 依하여 얻은 文書 其他 物件은 豫審員이 그 搜索한 現場에서나 自己 豫審廷에서 檢證한다.

第五十二條 豫審員은 檢證과 檢診의 結果에 對하여 調書를 作成한다.

第五十三條 屍體의 檢診 또는 解剖, 被害者 또는 被審者의 檢診其他 醫學的 鑑定을 必要로 할 때에는 豫審員은 保健機關에 囑託하여 法醫學의 鑑定人을 쓴다.

第五十四條 屍體解剖와 醫學的 鑑定の 調書는 醫師와 豫審員이 署名捺印한다.

第九章 豫審中止와 終結

第五十五條 豫審은 다음과 같은 때에는 中止한다.

(가) 被審者의 所在를 알지 못할 때

(나) 被審者가 心神을 喪失하였을 때 또는 重患에 걸렸을 때 이 때에는 公職에 있는 醫師의 證明이 必要하다. 豫審員은 犯罪事實과 豫審中止의 理由를 記載한 決定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條 豫審員은 다음과 같은 때에는 事件을 棄却하여야 한다.

- (가) 被審者가 死亡하였을 때
- (나)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起訴할 수 있는 事件에 있어서 被審者와 被害者가 和解하였을 때
- (다)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起訴할 수 있는 事件에 있어서 被害者의 告訴가 없을 때
- (라) 時效가 完成하였을 때
- (마) 被審者의 責任지게 될 行爲가 犯罪의 構成要件을 缺如하였을 때
- (바) 그 犯罪에 對하여 刑事訴追를 免除할 大赦가 있었을 때
- (사) 被審者를 公判에 붙인 證據가 不充分할 때

事件을 棄却하였을 때에는 豫審員은 理由 붙인 決定書를 作成하고 이것을 被審者에 對하여 事件을 일으키도록 告訴한 個人 또는 法人에게 通知한다.

第五十七條 豫審員은 豫審을 끝내고 事件을 公判에 붙이기에 充分한 證據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被審者에게 이것을 通告하고 그 事件에 關한 모든 豫審記錄을 閱覽할 수 있는 것을 알리며 閱覽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그리고 또 追補를 希望하는 與否를 물어 보아야 된다.

第五十八條 豫審을 終結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 起訴狀을 作成한다. 犯罪事實과 責任에 關한 不利 또는 有利한 事由를 認定할 만한 證據의 要約, 犯人의 身元, 犯罪의 場所, 日時, 方法 및 動機의 詳細, 被審者의 狀況, 그 犯罪를 規定한 刑法의 條項, 그리고 事件이 數個의 犯罪에 該當할 때에는 各犯罪를 規定한 條項, 起訴狀에는 公判廷에 召喚할 者의 人名簿, 被審者의 拘留調書, 證據物, 提起된 私訴와 私訴의 判決執行을 爲한 保障處分에 關한 調書를 添附한다. 起訴狀을 作成한 者는 事實上 召喚할 必要있는 者만을 人名簿에 揭記하여야 된다. 이미 人名簿에 揭起된 證人의 陳述 또는 明白한 證據에 依하여 確認된 事實에 對하여서는 다시 이것을 證明하기 爲하여 다른 證人을 人名簿에 揭記할 必要는 없다. 召喚할 者의 人名簿에는 召喚할 者의 住所와 그 陳述을 記載한 書類名을 舉示하여야 된다. 起訴狀의 原本에는 起訴狀에 記載된 事實을 認定할 수 있는 書類名을 舉示하여야 된다.

第五十九條 豫審員은 起訴狀을 豫審記錄과 함께 檢事에게 보낸다.

保安機關은 起訴狀을 그 犯罪가 自由刑에 處할 만한 條項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한 것은 豫審員에게 보내고 其他의 事件에 關한 것은 直接 裁判所에 보낸다.

第十章 豫審員의 處分에 對한 不服申立

第六十條 訴訟關係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立會人 및 被審者의 保證人은 그 權利를 侵害 또는 抑壓하는 豫審員의 處分에 對하여 不服을 申立할 수 있다.

第六十一條 檢事가 不服申立에 關하여 한 決定은 不服申立人에게 通告하고 또는 執行하여야 된다.

第十一章 事件의 棄却과 起訴

第六十二條 豫審員 또는 檢事가 豫審을 한 機關으로부터 事件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處分을 行한다.

(가) 事件을 中止 또는 棄却할 事由가 있을 때에는 中止 또는 棄却한다.

(나) 追加豫審을 할 點을 指摘하여 追加豫審을 하기 爲하여 事件을 返送한다.

(다) 事件을 公判에 붙인다는 簡單한 決定으로서 起訴狀을 承認한다.

第六十三條 事件을 棄却하는 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證據物의 歸屬을 定한다. 犯罪에 쓴 物件은 沒收하며 禁制品은 相當한 機關에 넘겨주든지 없애버리며 其他의 物件은 權利者에게 돌려준다.

第六十四條 事件을 公判에 붙인 後에는 事件에 關한 모든 申請 또는 檢察機關이나 保安機關의 處分에 對한 모든 不服의 申立은 直接 裁判所에 對하여 한다.

附 則

本 法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 北朝鮮司法機關의 刑事裁判에 關한 規程

(1946. 5. 14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十三號)

第一章 總 則

第一條 모든 裁判은 公開한다. 그러나 國家의 秘密을 擁護할 必要가 있는지 또는 風紀를 紊亂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裁判所의 理由를 붙인 決定에 依하여 公衆을 公判廷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다.

第二條 裁判所는 그 管轄區域에 屬한 犯罪를 裁判한다.

第三條 事件이 여러가지 理由에 依하여 여러 裁判所에서 審理할만한 境遇에는 그 事件을 먼저 審理하기 始作한 裁判所에서 審理한다.

第二章 裁判所成分訴訟關係者 및 排除

第四條 서로 親族이 되는 判事는 어떤 事件에 있어서든지 한 裁判所成分이 될 수 없다.

第五條 事件마다 同一한 裁判所成分으로서 審理하여야 되며 萬若 그 裁判所成分中 一部分의 判事が 事故가 있어서 끝까지 審理할 수 없게 되어 다른 判事が 代身하여 그 裁判所成分이 될 때에는 事件의 審理를 更新한다.

第六條 刑事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事件審理에서 排除된다.

가. 判事が 訴訟關係者나 또는 訴訟關係者의 親族이 될 때

나. 判事나 그의 親族이 그 裁判의 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을 때

다. 判事が 그 事件에 檢事豫審員, 辯護人, 證人, 鑑定人, 또는 被害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者로서 參加하였을 때

第七條 第一審으로서 判決의 表決에 參加한 判事는 第二審으로서 이 事件을 裁判하는데 參加할 수 없다.

第八條 第六條와 第七條의 境遇에 있어서 萬若 그 判事와 自發的으로 事件審理를 回避하지 않을 때

또는 判事が 公正한 裁判을 하지 못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訴訟關係者의 申請에 依하여 排除한다. 排除의 決定은 公判廷에서 宣言한다.

第九條 判事를 排除하는 申請에 對하여서는 그 排除받는 判事를 除外한 다른 判事が 決定한다. 萬若可否가 同數일 때에는 그 判事는 排除될 것으로 認定한다.

第十條 排除에 關한 規定은 書記와 鑑定人에게도 準用한다. 그러나 書記나 鑑定人은 前에 同一한 事件에 參加하였다는 理由로는 排除되지 않는다.

第十一條 國家를 代理하여 訴追하는 者는 檢事라야 될 수 있다.

第十二條 다음의 境遇에는 裁判所에서 事件을 審理할 때에 辯護人을 붙여야 한다.

가. 訴追者가 參加할 때

나. 被訴者가 身體에 故障이 있어서 그 意思를 表示하지 못할 때

第十三條 證人으로서 事件에 參加한 者는 그 事件의 訴訟關係者가 될 수 없다.

第三章 證 據

第十四條 證人의 陳述鑑定人의 鑑定한 結論證據物檢證調書類 또는 訴訟關係者의 陳述을 가 르쳐 證據라 한다.

第十五條 裁判所는 다만 形式的證據에만 拘束되지 않고 事件의 性質에 따라서 自由로 證據

를 採擇하며 또는 證據를 第三者에게 要求할 수 있다. 그 第三者는 이 要求에 服從하여야 된다.

第十六條 누구든지 裁判所에서 證人으로 불리운 者는 반드시 出頭하여야 한다.

證人은 그 事件에 對하여서 自己가 아는 것을 全部 裁判所에 말하여야 된다.

第十七條 裁判資料에 調査 또는 事件審理에 科學 醫術 또는 技術의 特別한 解答이 要求될 때에는 裁判所는 鑑定人을 쓸 수 있다.

第十八條 證據物은 全部 書面에 記入하여 裁判所의 決定으로서 訴訟記錄에 添付하며 그 事件을 審理하는 裁判所에 保管한다. 事件이 끝나기 前에 證據物을 그 權利者가 返還하여 달라고 할 때에는 이 要求에 應하여도 事件審理에 別로 支障이 없으면 返還할 수 있다.

第十九條 裁判所에 保管할 수 없는 證據物은 封印하여 그 裁判所의 指令이 있을 때까지 保管하게 한다.

第二十條 한 裁判所에 다른 裁判所에서 事件을 移送할 때에는 證據物은 一切의 訴訟記錄과 함께 넘겨준다.

第二十一條 訴追를 棄却하는 判決과 決定에는 證據物에 對한 處置를 記載한다.

가. 犯罪에 쓴 物件은 沒收한다. 그러나 이것은 被訴者 아닌 者에 屬하지 않는 物件에 限한다.

나. 禁制品이면 返還하지 않고 相當한 機關에 넘겨주거나 그러하지 못하면 없애버린다.

다. 物件이 아무 價値없는 것 또는 쓰지 못하는 것이면 없애버리든지 또는 申請에 依하여 利害關係者에게 준다.

라. 其他에 物件은 權利者에게 돌려준다.

第二十二條 證據物은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또는 事件을 棄却할 때까지 保管하여둔다.

第二十三條 證據物中 速히 못쓰게 되는 것으로써 그 權利者에게 돌려주지 못할 物件은 賣却한다.

第二十四條 裁判所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通譯人을 쓸 수 있다.

第四章 調 書

第二十五條 公判準備와 公判에서는 반드시 調書를 作成한다.

第二十六條 公判準備의 調書에는 다음의 事項은 반드시 記載한다.

1. 公判準備의 場所
2. 日時
3. 裁判所成分

4. 訴訟關係者が 參加하였을 때에는 그 姓名
5. 受理한 申請 및 決定調書에는 裁判長과 書記가 署名捺印한다.

第二十七條 公判의 調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반드시 記載한다.

1. 公判의 場所
2. 日時
3. 裁判所成分
4. 訴訟關係者が 參席하였으면 그 姓名
5. 取調의 事件
6. 進行에 따른 裁判所의 모든 행위
7. 訴訟關係者, 證人, 鑑定人, 其他의 申請과 陳述
8. 每取調가 끝날때마다 被訴者에게 주어야 할 辯護의 權利에 對하여 裁判所가 한 告知
9. 裁判所의 言渡한 決定
10. 被訴者의 最後의 陳述에 關한 摘要
11. 判決에 對한 上訴手續과 期間에 關한 告知
12. 其他 訴訟關係者가 調査에 記載하기를 申請한 事項
13. 訴訟關係者의 辯論은 그 內容을 記載할 必要가 없고 그 順序만 記載하면 된다. 調書에는 裁判長과 書記가 署名捺印한다.

第二十八條 公判에 關與한 訴訟關係者는 調書의 作成과 署名捺印後 三日以內에 裁判所에 對하여 調書의 不正과 不備을 指摘하여서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裁判所는 이 訂正申請을 審理하여 決定을 한다.

第五章 公判前에 裁判所의 할 일

第二十九條 裁判所는 檢察所로부터 事件을 受理하면 다음의 問題를 公判準備에 걸어서 解決한다.

- 가. 檢察機關의 調書가 充分히 되었는가.
- 나. 提起될 訴追事實이 根據있는가.
- 다. 訴追에 對한 法律適用이 옳게 되었는가.
- 라. 豫審은 進行하는 過程에서 거기에 關하여 定한 規定을 遵守하였는가.
- 마. 被訴者의 申請에 對하여
- 바. 訴訟關係者를 參加시킴에 對하여
- 사. 公判에 召喚할 者의 名簿에 對하여

아. 事件審理의 順序의 日時 및 場所에 對하여

第三十條 豫審을 經過하지 아니한 事件에 對하여서는 公判準備에서 審理하지 않아도 無防하다.

第三十一條 公判準備는 裁判長과 陪審員二人으로서 行하며 그 日時를 檢事에게 通知한다. 公判準備에서 한 決定에 不服하는 檢事는 抗議할 수 있다.

第三十二條 公判準備에서 檢察機關의 事件調查가 不充分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追加調查를 하기 爲하여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 檢察機關에 돌려 보낸다. 事件을 棄却할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써 棄却한다.

第三十三條 裁判長은 裁判期日을 訴訟關係者에게 通知하며 被訴者에게 起訴狀의 謄本을 送達한다. 또 그 事件이 公判準備를 經由하였으면 公判準備의 決定書 謄本을 送達한다.

第三十四條 그 審理에 반드시 辯護인이 參加하여야 할 事件에 있어서 被訴者가 스스로 辯護人을 選任하지 않을 때에는 裁判長은 辯護士會를 經由하여 辯護人을 붙이도록 한다.

第三十五條 訴訟關係者가 證人과 鑑定人の 召喚 其他證據의 收集에 對하여 申請할 때에는 어떠한 事項을 證明할려하는가를 밝히어야 한다. 訴訟關係者의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는 그 理由를 붙인다.

第六章 公 判

第三十六條 裁判長은 裁判 全體의 進行을 指揮한다. 裁判長은 裁判所의 取調 및 訴訟關係者의 辯論에서 그 事件에 관계없는 것은 全部 除却하고 審理를 眞相發見에 가장 適合하도록 指導한다. 裁判所의 處置에 對하여 訴訟關係者가 그 권리를 억압 또는 침해당하였다고 항의한 때에는 그 抗議를 調書에 記載한다.

第三十七條 每回の 公判에서는 一定한 휴식時間을 除하고는 事件을 계속하여 審理한다. 이 때 開始된 事件의 審理를 끝내기 까지는 휴식時間中이라도 다른 事件을 審理할 수 있다.

第三十八條 被訴者가 公判廷의 秩序를 紊亂하든지 裁判長의 命令에 服從하지 않을 때에는 裁判長은 被訴者에게 그런 行爲를 거듭하면 公判廷에서 내보내겠다고 警告한다. 被訴者가 이 警告를 無視한 때에는 裁判所의 決定으로써 被訴者를 退廷시키고 審理를 續行한다. 이 때에는 判決을 言渡한 後 곧 被訴者에게 通告한다.

第三十九條 裁判長은 公判開廷의 時間이 되면 먼저 判事와 書記의 列席을 確認한 後 開廷하고 被訴者를 入廷시켜서 被訴事件을 審理할 것을 宣言한다.

第四十條 裁判長은 被訴者가 사람이 틀리지 않은 것을 確認한 後 被訴者에게 對하여 이 起訴狀의 謄本을 받았는가를 묻는다.

第四十一條 裁判長은 訴訟關係者 또는 그 代理人이 在廷하는 것을 確認한 후 召喚한 證人 또는 鑑定人中 出頭한 者와 稔識한 者 및 그 稔識의 理由를 말한다.

召喚한 證人 또는 鑑定人中에 稔識한 者가 있을 때에는 裁判所는 公判을 行할수 있으나 없느냐에 對하여 訴訟關係者의 意見을 묻고 公判의 續行 또는 延期에 對한 決定을 한다.

第四十二條 裁判所는 前條의 決定을 한 後 다시 訴訟關係者에게 對하여 이미 公判廷에 召喚한 者 以外의 새 證人 또는 鑑定人의 召喚, 다른 證據의 수집 또는 訴訟關係者가 規定지고 있는 事由를 申請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묻는다. 裁判所는 相對便訴訟關係者의 意見을 묻고 이 申請에 관한 決定을 한다.

第四十三條 裁判所는 새 證人, 鑑定人의 召喚 또는 새 證據의 提出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判을 延期한다.

第四十四條 裁判所는 出頭한 證人이 在廷하는 것을 確認한 後 證人에게 事件에 關하여 그 知得한 모든 事實을 陳述할 義務가 있음을 說明하고 虛偽의 陳述에 對한 責任에 關하여 警告한다음 그 宣誓書를 提出시키고는 證人을 公判廷에서 別室에 물러나가게 한다.

第四十五條 公判에 出頭한 鑑定人은 늘 在廷하여야 된다. 그러나 裁判所의 裁量 또는 訴訟關係者에 依하여 鑑定人을 公判廷에서 물러나가게 할 수 있다.

第四十六條 裁判長은 裁判所에서 審理를 開始하기 前에 아직 私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被害者에게 私訴를 提起할 權利가 있음을 말한다.

裁判長은 裁判所에서 審理를 開始하기 前에 被訴者에게 被訴者는 證人, 鑑定人 및 共同被訴者에게 對하여 質問을 할 수 있으며 또 事件 全體의 性質 또는 各個의 事件에 對하여 裁判所의 審理中 어느때든지 證明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第四十七條 裁判長은 被害者와 被訴者에게 그 事件에 있어서의 裁判所成分을 알려서 訴訟關係者가 가진 排除의 權利를 말하고 排除를 申請하느냐 안느냐를 묻는다.

第四十八條 裁判所의 審理는 그 事件에 關한 起訴狀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始作한다. 그러나 그 事件이 아직 예심을 경유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裁判長은 被害者의 告訴狀을 낭독하든지 또는 被訴者에 對한 訴追事實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始作한다.

第四十九條 被訴者가 起訴狀에 記載된 事項에 對하여 의의가 없고 訴追가 正當하다고 認定하고 진술을 한 때에는 裁判所는 그 後의 裁判所의 取調를 하지 않고 訴訟關係者의 辯論을 청취할 수 있다.

第五十條 被訴者의 訊問은 裁判長과 判事가 먼저 한 後에 訴追者 私訴原告辯護人 및 그 事件의 다른 被訴者가 할 수 있다.

第五十一條 證人의 訊問은 後에 심문할 다른 證人을 退廷시킨 後 各別로 行한다.

第五十二條 裁判長은 證人의 陳述이 끝난 後 訴訟關係者에게 對하여 證明을 必要하다고 생

각하는 事項에 關하여 證人에게 質問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裁判長은 事件에 關係없는 質問을 制止할 수 있다.

第五十三條 證人에게 對한 質問은 그 證人의 召喚을 申請한 訴訟關係者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相對便訴訟關係者가 한다.

第五十四條 이미 質問한 證人도 다시 다른 證人앞에서 質問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證人과 對面시킬 수 있다.

第五十五條 質問을 받은 證人은 裁判長의 特別한 許可가 없이는 裁判所의 取調가 끝나기 前에 裁判所를 退出할 수 없다. 裁判長은 訴訟關係者의 同意가 없이는 訊問한 證人에게 對하여 裁判所의 取調가 끝나기 前에 裁判所로부터 退出하는 것을 許可할 수 없다.

第五十六條 公判庭에 召喚한 證人이 闕席하였을 때에는 裁判所는 그 裁量 또는 訴訟關係者 一方의 申請에 依하여 檢察機關에 있어서의 證人의 陳述書를 낭독할 수 있다.

第五十七條 鑑定人의 意見은 口頭로 陳述시킨 後 鑑定人으로써 書面으로써 提出시켜서 이것을 訴訟記錄에 添付한다.

第五十八條 鑑定人의 意見은 裁判所에 對하여 拘束力이 없다. 그러나 裁判所가 鑑定人의 意見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判決 또는 決定에서 그 理由를 詳細히 說明하여야 된다.

第五十九條 證據物의 檢證 또는 書類의 열람은 裁判所의 裁量 또는 訴訟關係者의 申請에 依하여 裁判所의 取調中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第六十條 事件이 아직 充分히 證明되지 않았을 境遇에 있어서 裁判所가 새證據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裁判所의 裁量 또는 訴訟關係者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을 延期하고 새證據를 蒐集하든지 또는 追加調査를 하기 爲하여 事件을 檢察機關에 돌려 보낼수 있다.

第六十一條 裁判所는 訴訟記錄에 있는 모든 證據의 調査가 끝난 때에는 訴訟關係者에게 對하여 달리 裁判所의 取調를 補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 訴訟關係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審査한 後 許可하든지 또는 却下하든지 하고 그 後에 裁判所의 取調가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第六十二條 裁判所의 取調가 끝난 後 裁判所는 訴訟關係者의 辯論을 듣는다. 訴訟關係者의 辯論은 먼저 訴追者와 私訴原告가 하고 그런 後에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없을 때에는 被訴者 自身이 한다.

第六十三條 訴訟關係는 辯論에 있어서 裁判所 取調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證據를 採用할 수 없다.

第六十四條 辯護人의 最後辯論이 끝났을 때에는 裁判長은 訴訟關係者의 辯論이 꾸트났다는 것을 말하여 被訴者에게 最後의 陳述을 하게 하고 그런 後에 裁判을 作成하기 爲하여 退廷한다.

第七章 訴追의 變更과 새로운 者의 訴追

第六十五條 裁判所에서 公判할지음에 被訴者가 被訴事件의 對象이 된 犯罪行爲 以外에 被訴事件과 牽連이 없는 다른 犯罪을 犯하였다는 것을 發見한 境遇에 있어서 새 事件에 對하여 檢察을 行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 새 事件이 最初의 訴追事件과 密接한 牽連이 있는 境遇에 있어서 裁判所가 새 事件에 對하여 檢察을 行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訴事件의 審理를 中止하고 一般手續으로써 새로 檢察公判付託 및 公判審理를 行하기 爲하여 모든 訴訟記錄을 移送한다.

第六十六條 裁判所에서 公判할지음에 最初의 訴追樣式을 變更하여야 할 새 事實을 發見한 境遇에 있어서 그 變更에 依하여 被訴者가 더 重한 刑을 받아야 할 때에는 事件의 審理를 中止하고 一般手續으로써 새로 檢察公判付託 및 公判審理를 行하기 爲하여 訴訟記錄을 移送한다.

第六十七條 裁判所에서 公判할지음에 被訴者로 公判에 붙여진 以外의 者가 犯罪을 犯한 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이 者를 起訴하기 爲하여 理由를 붙인 決定을 한다. 裁判所는 이것을 本人에게 通告하고 一般手續으로써 檢察公判付託 및 公判審理를 行하기 爲하여 事件을 移送한다.

第八章 判決言渡

第六十八條 評議室에서 判決의 表決을 할 때에는 그 事件에 對하여 裁判所成分이 된 判事만이 出席할 수 있다.

第六十九條 裁判所는 訴訟記錄에 있고 또 公判에서 審理한 證據에 依하여서만 判決의 表決을 行한다.

第七十條 判決의 表決을 할 때에는 裁判所는 다음의 問題를 裁決한다.

- (가) 被訴者가 責任을 지게 된 行爲 그 自體가 있었느냐
- (나) 前號의 行爲가 犯罪의 構成要件에 該當하느냐
- (다) 被訴者가 前號에 行爲를 行하였느냐
- (라) 被訴者가 行한 行爲에 對하여 刑罰을 科하여야 할 것이냐
- (마) 被訴者에 對하여 어떠한 刑罰을 言渡하여야 할 것이냐 그 刑罰의 執行이 被訴者에게 適合하느냐
- (바) 提起된 私訴를 確認할 것이냐 아직 私訴의 提起가 없을 때에는 將來提起될 수 있는 私訴의 保障處分을 할 것이냐

(사) 證據物은 어떻게 處分할 것이냐

(아) 訴訟費用은 누구에게 負擔시키겠느냐

第七十一條 被訴者 또는 裁判所의 取調가 있어서 被訴者의 責任能力에 關한 問題가 있었을 때에는 그 問題가 이미 公判準備에서 決定된 때라도 裁判所는 判決의 表決을 할때에 스스로 이것을 裁決한다.

第七十二條 檢察所가 責任을 지게 된 行爲를 實行할 時에 責任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었을 때에는 裁判所는 訴追棄却의 決定을 言渡한다.

第七十三條 被訴者가 責任을 지게 된 行爲를 實行한 後에 精神活動의 病的錯亂에 빠졌을 때에는 裁判所는 被訴者가 全快할 때까지 事件審理를 中止하는 決定을 한다.

第七十四條 評議室에서 評議할 때에 裁判長은 最後에 意見을 陳述한다. 모든 問題는 多數決에 依하여 決定한다. 少數側이된 判事는 自己의 特別意見을 書面으로서 開陳할 수 있다. 이 書面은 判決書에 添付하여야 되나 言渡하여서는 안된다.

第七十五條 裁判所는 다음의 事項에 對하여 判決을 言渡한다.

(가) 被訴者에게 對한 刑罰의 適用

(나) 有罪의 言渡를 받은 被訴者에게 對하여 大赦와 時効에 依한 刑罰의 免除

(다) 다음의 境遇에 있어서는 被訴者에게 對하여 無罪의 言渡

1. 犯罪의 事實 自體가 없을 때 또는 被訴者의 行爲가 犯罪의 構成要件을 缺如하였을 때
2. 被訴者에게 對한 訴追의 理由가 不充分할 때

第七十六條 裁判所는 提起된 私訴에 對하여 다음의 處分을 한다.

(가) 被訴者의 行爲가 犯罪의 構成要件을 缺如한 까닭에 被訴者가 無罪의 言渡를 받을 때에는 私訴에 對한 審理를 行하지 않고 取下시킨다.

(나) 犯罪의 事實自體의 立證이 없는 까닭에 被訴者가 無罪의 言渡를 받을 때에는 私訴를 却下한다.

(다) 其他의 境遇에는 請求理由의 明白程度와 請求額의 多*에 應하여 私訴를 確認하거나 또는 却下한다.

第七十八條 裁判所는 모든 問題를 決定한 後 判決書를 作成한다. 判決書는 理由部와 主文部로서 된다.

第七十八條 判決書의 理由部에는 被訴者의 無罪 또는 有罪의 기초가 된 訴追事實의 適要 證據說明 法條適用 被訴者의 姓名, 年齡 및 그 所屬階級과 社會的地位 被害者의 身元 犯罪場所日時 및 方法 其他 事件의 性質에 依하여 있을 수 있는 特別事項을 記載한다.

判決書의 主文部에는 被訴者의 身元無罪 또는 有罪의 認定 및 適用할 刑罰을 記載한다.

第七十九條 判決書에는 主文部를 記載한 後 上訴의 手續과 期間을 明示한다.

第八十條 判決書는 一名의 判事가 手續하고 그 表決에 參加한 判事가 署名捺印한다.

判決은 朝鮮人民의 이름으로서 宣示한다.

裁判所成分은 判決書에 署名한 後 다시 入廷한다. 裁判長은 全員이 들을 수 있게 判決書를 朗讀하며 裁判所成分 其他在廷者는 모두 起立하여 判決의 言渡를 듣는다.

第八十一條 被訴者에게 對하여 無罪 또는 刑罰免除의 判決을 言渡하였을 때에는 裁判所는 宣告後 遲滯 말고 곧 被訴者를 그 事件으로부터 釋放하여야 된다. 또 그 事件에 있어서 被訴者에게 對하여 適用한 保全處分은 遲滯 말고 곧 取消하여야 된다.

第八十二條 被訴者에게 對한 刑罰適用의 判決은 그 確定後에 執行한다. 判決은 다음의 境遇에 確定된다.

(가) 上訴할 수 있는 判決에 對하여 上訴의 提起가 없을 때에는 上訴期間이 經過하였을 때 上訴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第二審 裁判所가 上訴를 却下하였을 때

(나) 上訴할 수 없는 判決을 言渡하였을 때

第八十三條 自由執行의 期間은 검찰기관에서 勾留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九章 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한 上訴

第八十四條 人民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한 抗議와 上訴는 人民裁判所에 提起하여야 하며 抗議와 上訴狀은 原裁判所에 提出한다. 道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한 抗議와 上訴는 그 道裁判所를 經由하여 北朝鮮裁判所에 提起한다.

第八十五條 上訴期間內에 上訴狀을 人民裁判所 代身에 直接 道裁判所에 道裁判所 代身에 直接 北朝鮮裁判所에 提出하였을 때에는 그 上訴를 審理하여도 좋다.

第八十六條 모든 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한 抗議와 上訴는 그 言渡한 날부터 十日內에만 提起할 수 있다.

第八十七條 裁判所가 抗議와 上訴를 受理하였을 때에는 三日內에 上級裁判所에 보낸다.

第八十八條 第二審에서의 事件의 審理는 判事의 報告로부터 始作하고 그런 後에 公判에 參加한 訴訟關係者에게 辯論을 하게한다.

一. 「北朝鮮司法機關의 刑事裁判에 關한 規定」 第八十八條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第八十八條의一 乃至 十七을 追加한다.

第八十八條의一 道裁判所가 第一審으로 事件을 審理할 때에는 以下 各條에 依한다.

道裁判所는 法律上 理由에 依한 上訴 또는 抗議가 있을 때에만 原審判決의 破棄 또는 變更 或은 上訴나 抗議의 棄却에 關한 問題를 審理한다.

被訴者가 여러사람 있는데 不拘하고 그 一部の 被訴者에 對하여서만 上訴 또는 抗議가 提

起되었을 때에는 道裁判所는 그 被訴者에게 對하여서만 審理한다.

그러나 第八十八條의十二에 規定한 境遇에는 이에 屬하지 않는다.

備考: 法律上 理由에 依한 上訴 또는 抗議를 할 때에는 上訴 또는 抗議를 提起한 後 十日 以內에 書面으로서 理由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八十八條의二 道裁判所는 法律上 理由에 依한 上訴 또는 抗議에 提示된 上訴 理由만을 審理하는 데 局限하지 않고 언제든지 記錄審査에 依하여 그 事件에 關한 모든 手續을 全部 審理하여야 한다. 道裁判所가 判決破棄의 理由로 될 法律上 違反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그 判決을 破棄하고 새로운 審理를 시키기 爲하여 事件을 返送한다. 原審判決의 破棄에 對하여서는 本法 第八十八條의十二, 第八十八條의十四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備考: 記錄審査를 한 道裁判所는 特別히 그 必要를 認定하는 때에 限하여 被訴者를 召喚 訊問한다.

第八十八條의三 判決 破棄의 理由로 되는 法律上 違反은 다음과 같다.

1. 不完全 또는 不適當한 審理
2. 裁判手續의 形式에 關한 本質的 違反
3. 法律違反 또는 不當한 法律의 適用
4. 判決의 현저한 不公正

第八十八條의四 不完全 또는 不適當한 審理라 함은 豫審 또는 公判審理에 있어서 判決의 結果에 必然的으로 影響을 미치게 할 程度로 事實의 證明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第八十八條의五 裁判手續이 形式에 關한 本質的 違反이라 함은 本法令의 規定에 關한 違反으로서 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法律으로써 保障된 訴訟關係者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抑壓하거나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事件에 關한 裁判所의 全般的 審理를 調査하여 公正한 判決의 言渡에 影響을 준 또는 줄수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언제든지 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1. 裁判所의 構成이 違法일 때
 2. 法律에 依하여 訴追를 棄却할 事由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北朝鮮의 檢察所豫審 및 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關한 法令 第五十六條)이것을 棄却하지 않았을 때
 3. 法律에 依하여 容許되지 않는데도 不拘하고 被訴者가 闕席한대로 事件을 審理하였을 때
- 備考: 闕席審理할 수 있는 境遇에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限한다.

- (가) 被訴者가 明示的으로 承諾할 때
- (나) 被訴者가 召喚狀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公判을 回避한 것이 明白할 때
- (다) 法律에 依하여 辯護人의 立會를 必要로 하는데도 不拘하고 辯護人을 立會시키지 않고 事件을 審理하였을 때

第八十八條의六 法律違反 또는 不當한 法律의 應用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1. 適用할 法律을 適用하지 않았을 때
2. 適用하지 않을 法律을 適用하였을 때
3. 法律의 正確한 意義 또는 一般的 精神에 違反하여 不當하게 이것을 解釋適用하였을 때
4. 權限없는 機關에 依하여 또는 正當한 手續에 依하지 않고 發布한 或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法令에 違反되는 布告 또는 指示를 適用하였을 때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判決의 破棄는 原審裁判所가 誤謬을 犯함으로써 만일에 法律을 正當하게 適用하였더라면 當然히 量定해진 刑罰과 다른 刑罰을 量定하였을 때에 限하여서만 할 수 있다.

第八十八條의七 判決의 顯著한 不公正이라함은 裁判所가 量定한 刑罰이 法律의 定한 限界를 超過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量刑이 犯罪行爲에 比하여 酷甚하게 符合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第八十八條의八 原審裁判所가 犯罪를 構成하지 않는 行爲에 對하여 被訴者에게 有罪言渡를 하였을 때 또는 訴追棄却의 理由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北朝鮮의 檢察所豫審及保安機關의 刑事事件 審理에 關한 法令第五十六條) 訴追를 棄却하지 않았을 때는 道裁判所는 事件을 人民裁判所에 返送하지 않고서 原判決을 破棄하고 訴追를 棄却한다.

第八十八條의九 道裁判所가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事件을 새로 審理하기 爲하여 人民裁判所에 返送하지 않고 原審裁判所 判決에 필요한 變更을 加할 수 있다.

原審裁判所가 그 判決에 認定한 事實에 對하여 不當한 法律을 適用하고 또는 判決에 定한 刑罰이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의 行爲에 符合하지 않을 때

그러나 道裁判所가 새로 量定하는 刑罰은 人民裁判所가 定한 刑罰보다 重하게 할 수 없으며 適用할 刑事法令條項이 定한 刑罰보다 輕하게 할 수 없다.

第八十八條의十 前二條의 境遇를 除外하고 原審裁判所의 判決을 破棄한 道裁判所는 새로운 審理를 시키기 爲하여 事件을 다른 人民裁判所 또는 그 判決을 한 人民裁判所의 다른 部에 返送하여야 한다.

大赦의 適用이 있을 때 또는 그 適用의 不當한 때 道裁判所는 그 行爲에 相當한 大赦條項을 適用하여 刑罰을 短縮 또는 減輕할 수 있다.

第八十八條의 十一 判決을 破棄할 때에 있어서 道裁判所는 法律上 違反이라고 認定된 法律의 條項 그 違反의 理由 및 그 違反을 本質的이라고 認定한 理由를 그 決定에 明示하여야 한다. 그리고 判決이 顯著한 不公正을 理由로하여 判決을 破棄하는 때에 있어서는 判決을 顯著히 不公正하다고 認定한 理由를 決定에 明示하여야 한다. 道裁判所의 決定에는 前項의 明示 外에 그 事件에 對하여 人民裁判所에 있어서 開始할 새 審理의 段階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八十八條의十二 第八十八條의五, 第二項第一號에 定한 違反을 理由로 하여 判決을 破棄할 때에는 有罪의 言渡를 받은 者 또는 被訴者中 그 判決에 對하여 上訴를 提起하지 않은 者 가 있을 때 또는 그 者에 對하여 檢事가 抗議를 提起하지 않는 때라고 할지라도 道裁判所는 그 모든 者에 對하여 判決을 破棄한다.

第八十八條의七 및 第八十八條의八에 定하여 있는 理由에 依하여 判決을 破棄할 때에 있어서 그 理由가 有罪의 言渡를 받은 者 및 被訴者에게도 다 該當할 때에도 또한 前項과 같이 處理한다.

第八十八條의十三 道裁判所가 새로운 審理를 시키기 爲하여 事件을 返送한 때에 있어서 人民裁判所는 그 事件 審理에 있어서 道裁判所決定에 明示되어있는 指示에 服從할 義務가 있다.

人民裁判所가 새로운 審理를 할 때에는 判決을 破棄함에 있어서 道裁判所의 決定에 明示된 段階로부터 手續을 開始하여야 한다.

第八十八條의十四 有罪의 言渡를 받은 者의 上訴 理由書에 提示된 理由에 依하여 原判決을 破棄할 때에 있어서는 새로 審理를 행할 裁判所는 原審裁判所가 定했던 刑罰보다 重한 刑罰을 決定할 수 없다.

第八十八條의十五 北朝鮮裁判所가 第二審으로 事件을 審理할 때에는 以下各條에 依한다. 北朝鮮裁判所에 있어서의 第二審審理는 公判廷에서 이를 行한다.

北朝鮮裁判所의 判事는 먼저 事件을 報告하고 그 報告가 끝난 後 裁判所는 檢事의 論告 및 訴訟關係者의 辯論을 들어야 한다. 被訴者가 在廷하여 請求를 하는 때에는 그로 하여금 辯論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判에는 被訴者를 召喚하지 않는다. 그러나 被訴者가 在廷하였을 때는 그의 訴訟參加를 許可하여야 한다. 審理할 事件表는 開廷하기 前 二十四時 以內에 公示하여야 한다.

第八十八條의十六 第八十八條의一, 第八十八條의二 및 第八十八條의十一의 規定은 北朝鮮裁判所가 上訴 및 抗議를 審理함에 있어서 이것을 準用한다.

第八十八條의三 乃至 第八十八條의 七에 規定한 理由는 이것을 法律審理에 依한 判決破棄理由로 한다.

第八十八條의十七 原審判決에서 言渡한 刑罰이 被訴者의 犯罪行爲에 비추어 顯著하게 不當할 때에 있어서 北朝鮮裁判所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새로 審理를 시키기 爲하여 事件을 原審裁判所의 다른 部에 返送할 決定을 하거나 原審判決을 變更하고 自己의 裁量에 依하여 該當하는 刑事法令條項에 定하여 있는 範圍 안에서 刑罰을 輕減할 수 있다. 抗議에 對한 審理에 있어서만은 原審裁判所가 量定한 刑罰보다 重한 刑罰을 科할 수 있다.

前項을 除한 外에 北朝鮮裁判所가 原審判決을 破棄할 때에는 第八十八條의八의 規定에 依

하여 訴追를 棄却하거나 또는 새로운 審理를 시키기 爲하여 事件을 原審裁判所의 다른 部에 返送하여야 한다.

第十章 새 事實의 發見에 依한 再審

第八十九條 判決의 破定된 事件의 再審은 새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새事實의 發見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判決의 기초가 된 證據가 거짓이었던 것의 確定

(나) 判決을 表決한 判事의 犯罪가 될 職權濫用

(다) 其他 獨立해서 또는 이미 確定된 事實과 함께 有罪의 言渡를 받은 者의 無罪를 證明할 事實 또는 有罪에 言渡를 받은 者가 그 認定된 犯罪보다 더 輕한 犯罪나 重한 犯罪를 行한 것을 證明할 事實 그리고 또 判決言渡時에 裁判所가 알 수 없었던 事實도 새 事實이다.

第九十條 無罪判決에 對한 再審은 判決이 確定된 날부터 五年內에 限하여 할 수 있다.

第九十一條 再審의 請求는 檢事가 한다. 檢事는 그 檢察調査에 自己의 意見を 붙여서 直接 北朝鮮裁判에 送付한다.

第十一章 非常上訴

第九十二條 北朝鮮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上訴할 수 없다. 다만 非常上訴만은 할 수 있다.

第九十三條 司法局長, 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은 北朝鮮의 모든 裁判所에 對하여 非常上訴로서 監督하기 爲하여 事件을 가져오게 請求할 수 있다.

削除(一九四七. 二. 三. 北臨人委決定 第一七三號로 改正)

第九十四條 「煎條에 依하여 事件을 請求하는 者는 事件을 가져오게 한 後 萬若 그 裁判에 法律的 違反이 없다면 곧 그 裁判所에 돌려보내고 萬若 그 裁判에 法律的 違反이 있다면 北朝鮮裁判所 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를 提出할 수 있다.」(一九四七. 二. 三. 北臨人委決定 第一七三號로 改正)

第九十五條 非常上訴를 하기 爲하여 移送를 請求하는 事件은 判決과 決定이 確定된 後 期間의 制限이 없다.

附 則

本 規程은 公示日부터 施行한다.

◇ 북 한 형 법

(1950. 3.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일반적 규정

제 1 조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

제 2 조 본법은 조선내에서 죄를 범한 조선공민에게 적용한다. 조선 이외의 영역에서 죄를 범하고 조선에 체재하는 조선공민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본법은 조선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특권을 가지는 외국사람의 형사책임은 그 때마다 외교방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제도의 기초와 군사상 위력을 침해하는 죄를 조선 이외의 영역에서 범하고 조선에 체재하는 외국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 5 조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제 6 조 어떤 행위에 대한 형벌적용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경하게 하는 법령은 그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2 장 형사정책의 일반원칙

제 7 조 죄라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

제 8 조 본법 각칙에 규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고 해로운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 9 조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

제 10 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

제 11 조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전조의 형벌을 적용함은 그가 고의 또는 과실로써 행위한 경우에 한한다. 고의의 행위라 함은 자기의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결과를 예견하면서 그 결과를 희망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의 발생을 의식적으로 허용한 행위를 말한다. 과실의 행위라 함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히 기대한 행위를 말한다.

제12조 만성정신병 또는 일시적 정신지장 기타 병적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로서 그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행위당시에는 정상적 상태에 있었으나 판결을 선고하는 당시에 정신병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역시 동일하다.

만취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14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한다.

제14조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14세 이상 18세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는 교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형사법령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라 할지라도 국가주권 또는 자기 혹은 타인의 인신이나 권리에 대한 긴급하고 불법스러운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그 방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형사법령에 규정된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긴급한 위해를 피하고자 그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그로 인한 가해가 방지한 위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행한 범죄행위로서 그 성질상 인민민주주의 조선의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없을 때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예비와 미수

제18조 범죄의 미수라 함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완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19조 범죄의 예비라함은 기구 또는 수단을 탐색하거나 취득하거나 혹은 범죄 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은 것을 말한다.

제20조 범죄의 미수 및 예비는 기수와 동일한 조항에 의하여 처단한다.

미수자 및 예비자에 대한 형벌은 미수자 또는 예비자의 위험성의 정도 범죄적 의사를 실현한 정도 및 기수에 까지 이르지 않은 원인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21조 범죄의 실행을 피한 자가 자발적으로 그 실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가 실지로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제 4 장 공 범

제22조 정범자 교사자 및 방조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적용한다.

제23조 정범자라 함은 범죄행위실행에 직접 참가한 자를 말한다.

교사자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한다. 방조자라 함은 조언 조세

지장의 제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또는 범인이나 죄적을 은폐함으로써 범죄실행을 도와준 자를 말한다.

제24조 방조로 되지 않은 범인 또는 죄적의 은폐 즉 범죄수행당시에는 관계하지 않고 그 후에 범인 또는 죄적을 감추어주는 행위를 한 자는 본법 각칙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한다.

제25조 정범자 교사자 및 방조자에 대한 형벌은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각자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26조 범죄가 수행되었거나 또는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한다.

제5장 형 벌

제27조 형벌을 적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죄를 범한자로 하여금 새로운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 범죄의 일반적 예방을 위하여
3.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조건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의 적용은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인간적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복과 징벌을 자체과업으로 삼지 않는다.

제28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 형
2. 징역
3. 교화로동
4. 벌금
5. 일정한 권리의 박탈
6.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7.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

제29조 사형 징역 교화로동 및 벌금은 죄를 범한자에게 적용하는 기본적 형벌이다.

전조 제5호 제6호의 형벌은 이것을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도 있고 또는 기본적 형벌에 부과하여 선고할 수도 있다.

제30조 판결선고당시 임신중의 여성 및 범죄행위당시 18세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31조 징역은 1년 이상 20년까지로 한다.

징역은 일정한 구금소 또는 특별 로동수용소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32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구류기간은 선고한 징역기간에 통산한다. 교화로동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구류기간의 1일을 교화로동 형기의 3일에 상당한 것으로 쳐서 공제한다.

징역 및 교화로동 이외의 형벌을 선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류기간을 참작하여 형벌을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교화로동 1일 이상 1년까지로 교화로동은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서 또는 자기의 종전 근무직장에서 로동에 종사시키며 로동보수중의 일부를 국가에 납입시킴으로써 집행한다.

국가에 납입시키는 로동보수부분은 그의 보수중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판소가 재량하여 선고한다.

교화로동중의 기간은 일반적 로동년한 및 법령에 의하여 년금 기타의 특전을 받게되는 로동년한을 산입하지 않는다.

교화로동기간중에는 연공에 의한 가봉을 정지한다.

제34조 교화로동의 선고를 받은 자가 고의로 교화로동집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판소판정에 의하여 교화로동을 집행하여야 할 기간을 그에 상당한 기간의 징역으로 바꿀 수 있다.

제35조 벌금은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상태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36조 벌금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원을 1개월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교화로동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임을 물론하고 환산 교화로동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재산몰수를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벌금지수에 있어서도 이를 징수하지 못한다.

제37조 일정한 권리의 박탈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의 박탈
2. 일정한 국가적 지위에 취임하는 권리의 박탈
3. 친권의 박탈
4. 사회적 보장의 절차에 의하는 연금 및 보조금을 받는 권리의 박탈

권리의 박탈은 전항에 열거한 권리중 그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8조 친권의 박탈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친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다.

박탈당한 친권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로써만 이를 회복할 수 있다.

제39조 연금 및 보조금을 받는 권리의 박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다.

1. 국가적 범죄에 대하여서 유죄판결을 할 때
2. 기타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때

제40조 권리의 박탈은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이를 선고할 수 없다. 징역에 부과하여 선고한 권리의 박탈기간은 그 징역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41조 1년 이상의 집행에 처하는 판결을 할 때에 있어서 재판소는 그 판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권리박탈은 집행유예, 교화노동 및 벌금에 부가하여 선고할 수 없다.

제42조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직업상 또는 영업상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명백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을 계속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한다.

이 금지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43조 재산물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재판소가 지정한 일부를 강제무상으로 국가에 넘김으로써 집행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그의 가족과의 일용필수품, 생계수단으로 되는 사소한 수공업용구 및 농업용구는 몰수할 수 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그의 가족과의 식량 및 금전은 그들 매 사람에게 대하여서 당해 지방의 일반생활정도에 비추어 최저 3개월분을 남겨두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생산로동상 필요한 기구는 그에 대하여 해당하는 직업의 금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타인과 공유하거나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의 재산에 그가 차지하는 권리부분도 포함된다.

제44조 재산물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다. 재산물수를 선고하였던 판결의 파기 또는 사건의 기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몰수하였던 재산을 현물로써 종전 소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그 재산을 매각하였다면 매수자에게는 그가 지불하였던 대금을 반환하고 그 현물은 이를 종전소유자에게 반환한다.

현물로써 반환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당시 국정가격에 의하여 종전소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산물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채무로써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의 보장처분이 있는 이후 그 기관의 동의없이 새로 성립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몰수된 재산으로써 충족하여야 할 채무에 관하여서도 몰수한 재산의 범위안에서 민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서만 국가는 책임을 진다.

제6장 형벌의 적용절차

제46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범죄자와 범죄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의 정도와 성질, 범죄자의 개성, 범죄의 동기를 고려하며 또한 해당장소와 시간 등에서 그 범죄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본법 총칙에 규정된 바와 당해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각칙 조항이 규정한 범위를 지침으로 삼는다.

제47조 당해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관한 문제는 매개 범죄사건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적 문제로 삼는다.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중하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려 하거나 제국주의 지배와 지주 자본가 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
2. 집단 또는 작당에 의한 범죄
3. 반복하여 또는 여러번 혹은 직업적으로 범한 죄
4.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에 범한 죄
5. 특히 잔학한 폭행 또는 간악한 위계로써 범한 죄
6. 자기에서 중속되어 있거나 보호밑에 있는 자 또는 연령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무연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범한 죄

반복하여 범한 죄라 함은 전과의 소멸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범한 두번째 죄를 말한다.

첫번째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형벌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두번째의 죄는 반복하여 범한 죄로 된다.

여러번 범한죄라 함은 전과소멸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범한 세번째 및 그 이상의 죄를 말한다.

본조 제3항 후단은 본항에 준용한다.

직업적으로 범한 죄라 함은 범죄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범한 죄를 말한다.

제48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경하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범한 죄
2.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가 없는 죄
3. 위협, 강제 또는 직무상 혹은 물질상 중속에 의하여 범한 죄
4. 강한 정신적 자극에 의하여 범한 죄
5. 일신상 혹은 가정상 딱한 사정에 의하여 범한 죄
6. 무지, 무사려 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범한 죄

7. 18세에 이르지 못한자 또는 임신중의 여성이 범한 죄

8. 자수한 자

9. 국가의 이익, 법률질서 또는 자기 혹은 타인의 인신이나 권리를 방위할 목적에서 한 행위로써 그 방위의 정도를 초과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제49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가 그 범죄에 대하여 본법 각칙 조항에 규정한 형벌의 최저한도 보다 경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최저한도 보다 경한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범죄의 병합

제50조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 또는 판결선고를 받지 않은 수개의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에 상당한 형벌을 결정한 후 그중 가장 중한 형벌을 규정한 조항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형벌에 처한다.

판결 확정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새로운 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형벌을 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 형벌의 남은 형기와 합산하여 해당형벌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제51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한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정한 부가형벌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2조 병합죄에 있어서 징역과 교화로동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화로동형기 3일을 징역형기 1일로 환산한 기간을 징역형기에 부가한다.

제 8 장 집행유예

제53조 교화로동 또는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를 격리 하거나 교화로동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1. 교화로동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유예기간은 5년까지
2. 3년을 초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의 유예기간은 5년 이상 7년까지
3. 5년을 초과하는 징역의 유예기간은 5년 이상 10년까지

제53조집행을 유예한 징역 또는 교화로동에 부가하여 선고한 재산물수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것을 집행한다.

제5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유예기간내에 새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벌에 부과할 수도 있으며 또는 새

범죄에 대한 형벌만을 적용할 수도 있다.

부가하는 경우에 합산한 징역에 있어서는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교화로동에 있어서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55조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내에 새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장 만기전 석방

제56조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과정에서 작업에 성실하고 규율을 지키며 인민민주주의제도에 충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후 남은 징역형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며 또는 보다 경한 다른 형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만기전 석방을 할 수 있다.

만기전 석방을 한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선고하였던 형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권리의 박탈기간 및 기업 또는 영업의 금지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소멸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전 석방의 문제와 따로 이를 해결한다.

제57조 만기전 석방의 기간중 새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채우지 않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벌의 병과한다.

이 경우에 병과한 징역형은 합산하여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8조 만기전 석방에 대한 청원은 징역의 선고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징역형 집행기관 책임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재판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0장 형사소추의 시효

제59조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1. 5년의 징역 또는 그 보다는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 이후 5년을 지났을 때
2.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을 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후 5년을 지났을 때
3. 교화로동 또는 이 보다 경한 종류의 형벌만을 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 이후 2년을 지났을 때
4. 사인의 소추로써만 제기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3개월이 지났을 때

제60조 전조의 기간중에 범죄자가 새로운 동종 또는 그 보다 중한 죄를 범하거나 또는 예심 혹은 공판을 회피하였을 때 또는 사건에 관한 형사수속이 있을 때 시효는 중단된다.

반국가적 범죄 및 친일적 사상을 가지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반대한 행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제11장 사 면

제61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면하는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제12장 전과의 소멸

제62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전과는 소멸된다.

1.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2. 교화로동 및 이 보다 경한 형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2년
3. 3년 이하의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
4. 3년이 넘고 10년 이하의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7년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간은 형벌의 집행이 끝난날 또는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63조 사면 또는 만기전 석방으로 면제받은 부분을 형벌을 표준으로 하여 전조를 적용한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전과소멸기간은 벌금납부시부터 기산한다.

제 2 편 각 칙

제13장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

제64조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을 전복 문란 혹은 약화시킬 목적이거나 또는 공화국의 대외안전 및 정치적 경제적 체도의 기본을 문란 혹은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전체 근로자들이 가지는 이해관계의 국제적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주의 국가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적대할 목적을 가진 행위도 역시 이를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로 인정된다.

제65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무장폭동을 조직하거나 무장부대 또는 도당을 지어 공화국 영토에 침해하거나 또는 중앙이나 지방의 정권을 강점하려는 시도 혹은 공화국 영토의 일부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에 참가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전항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참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 외국 또는 외국에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하여금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 기타의 적대적 행위 특히 봉쇄공화국 국가재산의 강점 외교관계의 단결,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의 파

기 등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67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공화국과 적대국 관계에 있는 외국 또는 대표자와 연락한 자 및 외국이나 외국인 집단에 협조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68조 조국에 대한 반역 즉 간첩행위 군사적 국가적 비밀의 전달, 원수의 편으로 넘어가며 혹은 외국으로 탈주하는 등, 조국의 국가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조국의 군사상 위력과 영토 불가침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공화국 공민으로서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69조 군무자로서 전조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70조 외국으로 탈주하는 군무자의 가족으로서 그 탈주를 협조하였거나 국가기관에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탈주한 군무자의 가족중 그 외의 동거성년 가족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5년간 원격지로 추방한다.

제71조 간첩행위 즉 외국 또는 반국가적 단체에 국가의 중대한 기밀로 되는 정보를 전달하였거나 또는 전달할 목적으로 그를 질취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수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하여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72조 인민주권에 반항할 목적 또는 해방이후에 실시한 민족개혁을 파괴할 목적으로 국가 주권의 대표자 혹은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73조 해독행위, 즉 국가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국가기관 및 국가기업소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그의 정상적 활동을 조해하는 방법으로써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한 자 및 종전의 소유제를 위하여 국가기관, 국가기업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의 정상적 활동을 소해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74조 파괴행위 즉 반국가적 목적으로 철도, 기타의 교통로, 운수수단, 수도, 국가 혹은 사회단체의 참고 기타의 시설 또는 건조물을 폭파하거나 방화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파괴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75조 태업행위 즉 정부 및 국가기관의 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자기에 맡겨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잡하게 이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76조 인민주권을 폭력 또는 반역적 행위로써 전복 문란 혹은 약화시키거나 기타 반국가적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 선전선동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

에 처한다.

군중적 흥분상태 혹은 전투상태 밑에서 또는 민족적 혹은 종교적 편견을 이용하여 전향의 죄를 범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77조 반국가적 서류를 작성보관 또는 산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78조 본장에 규정한 죄를 준비 또는 실행할 목적을 가진 조직활동을 하거나 또는 본장에 규정한 죄를 준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에 참가하는 자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본장 각조에 의하여 처한다.

제79조 일본 기타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책임적 또는 비밀적 직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민족해방운동과 인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박해탄압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80조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군무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1조 반국가적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장 국가관리 침해에 관한 죄

제82조 강도단을 조직하거나 그에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 개인기관 및 공민에 대한 침습강탈에 참가하거나, 철도, 기타의 교통수단과 체신수단을 파괴하는 강도단의 행위에 참가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83조 군중적 소동을 이르게 주권당국의 적법적 요구를 실행하지 않거나 혹은 주권당국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또는 명백히 행위를 그들 대표자에게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방화 체신수단의 파괴 및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군중적 소동을 이끈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차단한다.

1. 피수 및 본항의 행위를 수행한 자 및 무장을 하고 주권당국에 반항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2. 전호 이외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 화폐, 국가유권증권 또는 외국화폐를 위조한 자 및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는 제66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85조 저금증서, 행표, 신용장을 위조한 자 및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6조 차표, 선표, 우표, 집표 등을 위조한 자 및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 영리의 목적으로 외국화폐를 매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 조선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 및 내무기관의 창고 혹은 저장소에서 또는 부대의 항시적 또는 일시적 배치장소에 은밀히 또는 공공연하게 총기, 그 부분품 혹은 탄약을 도취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함에 있어서 그 보관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89조 기차 또는 선박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철도 기타의 교통로, 그 시설 위협표시 차량 및 선박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90조 관개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자 또는 그 파손을 방지함에 필요한 수단을 능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 운수일군이 로동규율을 위반하여(운수규칙의 운반, 차량 및 선로의 불량수리 등) 차량, 선로 및 선로시설을 손상 파괴하게 되며 인명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발생시키며 기타 국가적 수송계획을 파탄시키거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위태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거나 혹은 일으킬 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가 명백히 악의적 성격을 띤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92조 일반항공 운수기관 일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항공기 발항에 관한 규정위반, 책임자의 지시없는 이륙, 항공규칙 위반 등) 항공기를 손상 파괴하거나 인명에 손상을 주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일으켰거나 또는 이룰 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9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국제항공규칙을 위반한 자(허가없이 조선에 비행하여 들어 오거나, 나가거나 지정한 항행로, 착륙지, 비행고도를 준수하지 않은 자 등)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항공기를 몰수할 수 있다.

제94조 현역군무소집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자기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가병을 쓰며, 문서를 위조하며,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기타의 수단을 써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공무원으로서 또는 직업적으로 비법적인 국경통과를 협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 밀수 즉 해당 주권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세관검열을 속여 국경을 넘겨 물건을 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밀수물건을 몰수한다.

제97조 밀수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1. 밀수품의 특별한 은닉장치를 이용할 때
2. 세관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또는 다른 화물에 관한 증명서를 이용한 때
3. 전문적으로 밀수에 종사하는 단체에 참가한 때
4. 무장하고 밀수를 수행한 때
5. 세관공무원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밀수를 할 수 있을 공무원의 밀수행위를 한 때
6. 폭발물, 무기, 아편, 군용품, 무효로 된 유가증권을 밀수한 때
7. 직업적으로 밀수에 종사한 때

제98조 대외무역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99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거나 주권에 대한 불신임을 이르켜 또는 그의 위신을 저락시킬 수 있을 행위 또는 불확실한 풍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00조 국가비밀을 누설한 사인의 행위가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 민족적 또는 종교적 불화나 증오를 이르키게 할 선전선동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내용의 서류를 산포하거나 작성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중적 흥분상태 또는 전투상태에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0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또는 수행된 것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5장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소유 침해에 관한 죄

제103조 사인으로 국가, 사회단체의 창고, 기관, 화차, 선박 및 기타 공공적 이용의 보관장소에서 사소한 재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또는 여러번 혹은 타인과 통모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사회단체, 협동단체의 창고 및 기관에 출입할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를 보호하는 자가 그 창고 또는 기관에서 절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4조 사인으로서 대량의 국가재산 또는 협동단체 재산을 약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05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위임에 의하여 의무를 실행하는 자 또는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점유하고 있는 금전 기타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요하거나 대량의 국가재산에 관하여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06조 국가, 사회단체, 협동단체의 차고, 기관, 기업소에서 또는 철도운수 혹은 수상운수 도중의 화물을 연속적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또는 특히 대량적으로 약취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07조 국가적 사회적인 기관이나 기업소의 주관자가 거래상대자와 통모하여 그 기관 또는 그 기업소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써 국가재산 또는 사회단체 재산을 약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08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손해를 주는 사기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9조 국가재산, 사회단체재산 또는 협동단체재산을 고의로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전항의 죄를 범하여 생산행정을 정지 혹은 중단시키거나 국가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준 자는 8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10조 국가재산 또는 사회단체 재산을 임차한 자가 그 재산을 남용 손상한 경우에는 그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를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1조 농업기계 및 기타의 재산을 혹심할 정도로 조잡하게 취급한 결과에 그를 손상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여러번 전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중대한 손해를 이르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장 인신침해에 관한 죄

제112조 사람을 살해한 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1. 탐욕, 질투 기타 비열한 동기에 범한 때
2. 살인 또는 중상해의 전과를 가진 자가 범한 때
3. 다수의 인명에 위협을 줄 방법 또는 잔악한 수단을 사용한 때
4. 다른 중한 범죄를 감출 목적에서 범한 때
5.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때
6. 피해자를 부양 간호할 의무를 가진 자가 범한 때
7. 피해자의 무언상태를 이용하여 범한 때

제113조 사람을 살해한 자가 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 군무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특히 그 정상이 중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15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인한 발작적 흥분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6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 억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17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사고예방규칙을 의식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과실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8조 물질적으로 혹은 기타의 이유로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를 학대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취급을 하여 자살 또는 자살미수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또는 자기의 행위를 분별 통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자살을 교사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자살 또는 자살미수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9조 상당한 이유없이 또는 충분한 의학상 소양이 없으면서 임부에 대하여 낙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업적으로 또는 임부의 승락없이 전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행위를 인하여 임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0조 임부에 대하여 낙태를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 중상해 즉 시각, 청각 기타의 관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얼굴에 대한 불치의 병을 남겨주며 혹은 정신병을 유발하거나 노동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건강상 타격을 주는 상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써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의 중경을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해를 과한 결과에 중상해를 준 자도 동일하게 처단한다.

제122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하여 중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23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인한 발작적 흥분으로 중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24조 생명상 위험은 없으나 건강에 타격을 주는 경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건강상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의 상태를 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로동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2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2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2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동조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26조 사고예방규칙을 의식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과실로써 상해를 주어 제121조 제1항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과실로써 상해를 주었으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127조 구타 기타의 폭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로동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가 잔학한 성질을 띠는 것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8조 자기가 성병에 걸려 있는 줄 알면서 그 병독을 타인에게 옮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9조 비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0조 생명 또는 건강상 위협한 방법 또는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1조 이욕적 목적 또는 복수 기타의 동기에서 타인의 유아를 탈취하거나 감춘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2조 이욕적 목적 또는 기타의 개인적 동기에서 건강한 자를 고의로 정신병원에 수용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3조 노인 유아 질병 기타 구원을 받을 곳 없는 사정에 의하여 생명상 위협한 처지에 빠져 있거나 생활수단을 상실한 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지 않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4조 생명상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 자를 해당기관 또는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주지 않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는 결과에 그로 하여금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35조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상 방조를 줄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병자에게 방조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1,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병자에 위험한 결과가 생긴 것을 알면서 의료상 방조를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 발육이 충분하지 못한 자와 성교하여 상해를 주거나 변태적 성욕의 목적을 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발육이 충분하지 못한 자와 성교한 자가 전항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7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외잡한 행위를 하여 그를 타락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8조 폭행 협박에 의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한 자, 발육이 충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수인이 공동하여 운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9조 물질적으로 또는 직무상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에게 성교 또는 변태적 성교의 만족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 여성에 대하여 매음을 강요하거나 증개하거나 또는 사창굴을 설치하거나 매음의 목적으로 여성을 모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보호하에 있는자 또는 미성년 여성으로 하여금 매음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1조 금전 기타의 보수를 받고 상습적으로 매음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이미 종전에 동일한 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후견인이 이육적 목적으로 후견을 남용하거나 피후견인을 물질적 기타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 감독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친을 상실한 소년에 대하여 후견인이 그를 보호 교육함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부당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3조 자녀의 양육료를 악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자 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원조도 주지 않고 방임하여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언어, 서면 또는 동작으로 타인을 모욕한 자는 4개월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 출판물 혹은 회화를 전파하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이것을 진열하여 타인을 모욕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 타인을 비방하는 허설인 줄 알면서 그것을 전파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기타 광고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장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

제147조 공민의 재산을 절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 공민의 재산을 특히 대량적으로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면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이 없이 공공연하게 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혹은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0조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탈한 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를 사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51조 노력자의 소말 기타의 대 가치를 절취하거나 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복하여 또는 타인과 통모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2조 노력농민의 적은 가치를 절취 또는 탈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영업 이외의 총포 또는 탄약을 절취하거나 탈취한 자로서 제8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4조 타인을 무의식상태에 이르게 하여 그의 재산을 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피해자의 생명 또는 건강상 위험한 수단을 써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6조 권한 있는 주권기관의 보관으로 넘겨진 재물을 횡령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7조 습득물을 횡령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 기만 또는 신임을 악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권리를 사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59조 공갈행위, 즉 피해자의 인신에 폭행을 가하거나 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항을 공개하거나 재산을 파손할 것으로 협박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0조 지불인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행표를 발행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행표소지자가 금액을 받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떤 다른 수단을 취한 자 및 지불인에게 지불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행표를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 상업이나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악의적 파산 즉 자기 재산을 감추며 혹은 그것을 제3자에 인도하며 또는 허위채무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채권자의 회생필에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채무지불을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심중한 손해를 주게 하거나 다수인에게 손해를 주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 금전 기타 물건을 대여하여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보수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업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 이윤적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 또는 공공적 소비용 물품의 형태나 성질을 변경하거나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4조 개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방화 또는 일수 또는 기타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사회적 재해를 발생케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65조 해상에서 충돌한 선박의 선장으로 자기의 선객 및 선박에 중대한 위험을 받음이 없이 상대편 선박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한 수단을 취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1,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 발명자의 동의없이 발명을 공개한 자 또는 저작권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문학 기타의 예술 과학의 저작을 자의적으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부정경업의 목적으로 타인의 상품, 수예품의 상표, 기호 또는 모형 혹은 타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자의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8장 농업법령 위반에 관한 죄

제168조 국가기관,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업소의 책임자 또는 개인고용주가 노동일, 휴식 휴가 등 노동관계에 관한 법령이나 노동보호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 전조의 책임자 혹은 고용주가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 사무원의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70조 노동보호, 안전시설, 산업위생에 관한 지방주권기관의 결정 또는 노동성 성령 규칙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1조 임신을 이유로 여성의 취직을 거부하거나 그의 임금을 낮춘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복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2조 법령으로써 규정된 광산노동 보호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73조 기술규정, 생산기술기율 또는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작업조건을 위반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을 조성한 자 및 폭발물 공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작업중 잠자거나 술에 취하여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하여 폭발 또는 화재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정한 생산기술기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기술상 규정 또는 작업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하여 폭발 또는 화재를 일으킨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상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75조 고용주가 직업동맹과 체결한 단체계약 또는 임금협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1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6조 직업동맹의 적법적 활동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77조 14세 미만의 유년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그 위반행위가 첫번째인 경우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 위반행위가 두번째인 경우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그 위반행위가 세번째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9장 공 무 상 범 죄

제178조 공무원으로서의 탐욕 기타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한 것을 알면서 그 남용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비고 :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기관, 기업소 및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와 또는 기타 일반국가적 과업을 실현할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은 직업동맹 기타의 단체에 항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179조 월권행위 즉 공무원으로서 명백히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와 권한을 넘는 행위를 수행하여 전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로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0조 직무부집행 즉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무상 실행하여야 할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 직무태만 즉 부과된 직무에 대하여 부주의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써 사업의 수행을 지체 연인시키거나 사업과 보고를 무질서하게 만들거나 기타 직무상 유무를 발생시키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82조 공무원이 직권남용, 월권행위, 직무부집행, 직무태만행위를 한 결과 자기가 지도하는 중앙의 관리생산, 상업, 신용 및 운수관계 국가경제기관을 문란시킨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3조 권위훼손 즉 주권당국의 대표자로서 직무상 관련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인민의 면전

에서 주권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명백히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 탐욕 또는 기타 이기적 동기에서 부당한 판결 또는 판정을 한 재판원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5조 불법구속을 하거나 불법구인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욕적 또는 개인적 동기에서 보전처분으로써 타인을 구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문할 때에 비합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6조 체신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우편물을 횡령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체신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우편물 보관수단을 제때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분실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7조 직무상 문서위조 즉 이욕적 목적으로 공무원이 공문서에 고의로 행위의 사항을 기입하거나 개찬 삭제 첨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 공무원이 발표하여서는 아니될 사항을 공표 전달 교부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 공무원이 국가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한 행위가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 또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0조 공무원이 국가적 비밀을 기재한 문서를 분실한 행위로서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1조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상 할 수 있거나 또는 하여야 할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대가로써 형식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공무원이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인 때
2. 뇌물에 관한 죄로 인한 전과가 있거나 여러번 뇌물을 받은 자인 때
3. 뇌물을 강요한 자인 때

제192조 뇌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을 강요하여 그를 제공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3조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준 죄증을 만들 목적으로 뇌물을 신청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장 경제에 관한 죄

제194조 국가적 또는 사회적 기관, 기업소 혹은 그 전권대표부의 책임자가 그의 사업을 부주의 또는 불성의하게 처리하는 불경제적 행위를 하여 그 기관 또는 기업소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95조 국가협동단체 및 사회단체 기관 또는 기업소와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96조 협동단체를 가장하여 개인기업소를 조직하거나 그에 협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197조 의무적 노동, 사회적 및 국가적과업 또는 전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생산노동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198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토지를 토지개혁법령에 위반하여 은밀히 또는 공공연하게 매매 양도 하거나 전당 잡히거나 또는 소작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토지를 몰수한다.

제199조 정당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한 자 또는 금지되어 있는 원료를 써서 주류를 양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0조 공작제작소 기타 생산기업소에서 국가에서 제정한 규격을 위반하여 불량품 또는 소작한 물품을 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상업기업소에서 불량품은 대량적으로 또는 계속으로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02조 도량형기의 양목을 속인자 부정한 도량형기를 사용한 자 및 국정가격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3조 건설작업에 있어서 법령 또는 주권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규정된 건축 및 위생방화에 관한 규정을 실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04조 시설 및 물자를 비법으로 매매, 교환, 교부,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05조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물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06조 국가전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97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서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고 동조에 의한다.

제207조 간접세, 영업세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08조 특히 금지되었거나 제한되어 있는 물건 및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보관 구입하거나 직업적으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9조 정당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코카인, 모르히네, 기타의 마취제 및 마약을 제조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10조 정당한 허가없이 아편을 재배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며 그것을 몰수한다.

제211조 상업통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그러나 해당 규칙에 행정적 책임에 처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12조 정당한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 혹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어업수렵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며 비법으로 잡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기구, 선박, 기타의 부속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213조 악의적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4조 농업 현물세의 납부를 기피하거나 곡물 기타의 현물중에 흙, 돌 기타의 험잡물을 섞거나 기타 품질이 조악한 것을 속여서 바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 탈세의 목적으로 과세의 목적물을 감추거나 그 수량 또는 품질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납부할 세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6조 탈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추거나 그 재산의 평가액을 허위로 감소한 자는 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제217조 산림보호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금지구역내에서 벌목한 자 및 허가없이 벌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채한 임목은 몰수한다.

제21장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

제218조 정당한 허가없이 총기를 보관하거나 휴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9조 국가기관의 사건의 공정한 해결 또는 기관의 일반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용문서를 탈취하거나 또는 손상하거나 감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문서가 특히 비밀을 요하거나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0조 공민증을 위조 행사하거나 위조한 공민증 또는 타인의 공민증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1조 행사할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권리설정 혹은 의무면제에 관한 증명서 기타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2조 상공법, 주택, 기타 회사등에 관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기타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신청에 거짓사항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23조 주권기관 선거에 있어서 선거문서를 위조하거나 투표를 고의로 그릇되게 계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4조 공화국 국민이 그의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기만 또는 매수의 방법으로써 그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5조 이윤적 목적으로 공문서, 증명서, 도장 및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그것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 주권당국 대표자가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그에게 반항하거나 명백히 비법적인 행위를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고 반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27조 사회단체의 열성자 및 생산돌격대원이 직무 또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때 그에 대하여 구타 기타의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테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법조에 의한다.

제228조 1년 이상의 징역을 과할 수 있는 범인 또는 죄적을 감춘자로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29조 반복하여 공민증 또는 임시증명서 등록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적 책벌을 받은 후 계속하여 공민증 또는 임시증명서 없이 거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 주권기관의 정당한 허가없이 국경을 넘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 국내에서 발명된 것에 관하여 정당한 허가없이 국외에 발표 또는 발명권 신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발명을 정당한 허가없이 국외에 넘겨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32조 공무원 또는 사회단체 일꾼으로 하여금 그의 직무 또는 사회적활동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 건강 재산을 해할 것을 협박 또는 폭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33조 주권당국 대표자가 직무를 집행할 때 공공연하게 이를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 주권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의 표식을 손상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35조 공무원의 칭호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인민주권의 위신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6조 감시중 또는 구금중에 있는 자를 비법적으로 석방시키거나 도주를 협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 감시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상해를 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장하거나 감시자에 대하여 생명에 위험한 중상해를 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7조 감시중 또는 구금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를 쓰거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또는 감시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도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8조 직업 또는 영업을 금지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금지기간중에 금지된 직업이나 영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39조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의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물질적으로 또는 직무상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는 증인 또는 참심원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의 소환을 받은 감정인, 통역, 입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그 의무의 실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물질적으로 또는 직무상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제240조 재판소 또는 예심기관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타인의 범죄에 관한 거짓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 증인 감정인 통역이 예심 또는 공판심리에 있어서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2조 거짓신고 진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인 때
2. 이욕적 동기에서 범한 때

3. 타인으로 하여금 유죄에 빠지게 할 증거를 날조한 때

제243조 검사 예심원 및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허가없이 조사에 착수한 감시, 예심 또는 수사의 자료를 공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44조 인쇄물의 발행 또는 산포 혹은 전람용 사진 및 영화검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의잡한 문서, 작품, 도서 기타의 물건을 작성 출판 산포한 자, 또는 판매 산포할 목적으로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며 그 물품 및 제조 용구를 몰수한다.

제246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거나 또는 부랑타락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7조 불량지적 행위 즉 각종 기관, 기업소, 직장 기타 공개적 장소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8조 실력행위 즉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상대방에 대하여 자의로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49조 장물인 줄 알면서 그것을 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직업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정당한 허가없이 벌채한 임목인 줄 알면서 그것을 산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며 그 임목을 몰수한다.

반복하여 또는 직업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임목을 몰수한다.

제251조 정당한 허가없이 광석, 석탄, 기타의 지하매장물을 발굴 또는 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2조 재물을 절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 청혼한 남자나 그의 부모 및 친척 또는 관계자로서 청혼상대자나 그의 부모 및 친척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를 결혼의 대가로써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54조 여성을 강제하여 결혼시킨 자 및 결혼관계를 계속시킨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55조 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자와 결혼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56조 첩을 거느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비고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전에 성립하여 계속하는 사실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7조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제22장 사회적 안전 및 인민보건 침해에 관한 죄

제259조 정당한 허가없이 극약, 독약을 제조, 보관, 양도, 양수 또는 수송한 자 및 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극약, 독약을 몰수한다.

제260조 면허없는 자가 의료법에 종사하거나 의료업자가 그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직업을 금지한다.

제261조 전염병 예방에 관한 인민보건 규칙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교화노동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 이윤적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 또는 공공적 소비용 물품의 형태나 성질을 변경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또는 변경한 것인 줄 알면서 이를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며 그 영업을 금지한다.

제263조 화약 기타의 폭발물, 가연성물품을 거짓 비용으로 신고하여 철도, 선박,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4조 정당한 허가없이 폭발물을 제조, 보관, 매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장 군사 범죄

제265조 군사상 범죄라 함은 조선인민군대 군무자가 소정의 군무집행 질서를 침해하는 죄를 말한다.

내무성 경비대, 보안대 및 내무원이 그들에게 소정된 직무집행 질서를 침해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본 장을 적용한다.

제266조 부하가 직속상관의 군무상 명령을 또는 하급이 상급의 군무상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죄를 범한다.

1. 집단적으로 범하였거나 또는 군관이 범한 때
2. 특히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시킬 수 있었을 때

전시에 있어서 군무상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투상태에서 전항의 조리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그 정상이 경한 경

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7조 군사상 의무를 집행하는 자에게 반항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 또는 집단적으로 혹은 폭행 협박을 가하여 혹은 무기를 이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항 제2항의 죄를 전투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그러나 그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68조 군무상 의무를 집행하고 있는 자를 강요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단적으로 혹은 폭행 협박을 가하여 또는 무기를 이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항 제2항의 죄를 전시 또는 전투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그러나 그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9조 부하가 직속상관을 또는 하급이 상급을 폭력적 행위로서 모욕한 때에는 그 일방만이 군무집행중이었다 할지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언어 또는 폭력적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상관이 직속부하를 또는 상급이 하급을 동작으로써 모욕한 경우에는 그 일방만이 군무집행중이었다.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1조 직속관계 또는 상급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작으로써 모욕한 경우에는 그 일방만이 군무집행중이었다 할지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전사 및 하사관이 허가없이 6시간을 넘는 기간 외출한 경우 또는 6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두번이상 무허가 외출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3조 24시간을 넘는 무허가 외출은 탈주로 인정하여 1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4조 전시에 있어서 제272조 제27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75조 하급군관, 상급군관 및 고급군관이 2일이 넘는 기간 또는 2일이 넘지 않았더라도 두번 이상 허가없이 부대 또는 복무장소를 이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6조 하급군관, 상급군관 및 고급군관이 탈주하거나 또는 부대 혹은 복무장소를 이탈하여 6일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77조 하급군관, 상급군관 및 고급군관이 전시에 있어서 제275조 제276조의 죄를 범한 경

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78조 임명 또는 전근명령을 받은 자 혹은 출장 또는 휴가중에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한 시간에 취임 또는 귀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72조 내지 제277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279조 재물을 탈취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탈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80조 군무자가 자기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또는 가명을 쓰며 혹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 기타의 수단을 써서 군무의 집행을 기피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 또는 전투상태에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81조 전투장소에서 도주하거나 또는 전투상태에서 부대 또는 복무장소에 허가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그러나 그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82조 군대에서 고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내어 준 피복, 기타 군장품을 위법적으로 양도 전당 또는 대여하거나 고의로 파괴 또는 손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가 무기, 기타 중요한 군용기구에 관하여 범한 것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83조 군대에서 고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내어 준 피복 기타 군장품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가 무기, 기타 중요한 군용기구에 관하여 범한 것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 위병군무규정 및 그 세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요한 국가적 또는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경비를 하는 자가 위병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로 인하여 특히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일한 죄를 전투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85조 위병이외에 부대의 직일 군무를 하는 자가 소정의 내무규정을 위반하여 해로운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 또는 전투상태에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6조 군관이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를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1. 연속적으로 또는 이육 기타 이기적 동기에서 범한 때
2. 자기에게 위임되어 있는 군력 혹은 군무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을 때
3. 전시에 또는 전투상태에서 범한 때

제287조 군관이 그 직무상 수행하여야 할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태만하여 제28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상관이 자기자신이나 자기의 가족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직속 부하를 위법적으로 사역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군사상 칭호 또는 직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조선인민군대의 군위를 훼손시켰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지휘관이 적을 방조할 목적으로 자기에게 위임된 병력을 적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방어진지, 군용창고, 기타 전쟁수행 수단을 파괴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전항의 죄가 적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군사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91조 지휘관이 적을 방조할 목적으로 퇴각시에 제290조에 열거한 전쟁수행수단을 파괴 또는 사용불능하게 할데 대한 적당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전항의 죄가 적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군사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지휘관이 적을 방조할 목적으로 전투진행에 대한 명령을 자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가 적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군사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93조 적에게 포로로 될 환경에 처하지 않은 자가 포로되거나 또는 전투시에 무기를 사용할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적편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294조 함장이 자기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침몰하는 군함을 방기하거나 또는 그

합정의 승무원이 합정의 명령이 없이 전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

제295조 국가적 또는 군사적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기밀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전시에 범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특히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 동일한 죄를 전투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적 또는 군사적 비밀에 속하지 않으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될 군사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기밀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전투수행 임무결과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로 인하여 특히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

제298조 전시에 있어서 서신 기타의 방법으로써 적군에 속하여 있는 자 또는 적의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군사행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을 강탈 탈취하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파괴하거나 주민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군사상 필요를 구실로 주민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징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군사행동지역 이외에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전사자 또는 전상자의 소지품을 도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

제301조 포로병에 대하여 특히 잔혹한 대우를 하거나 또는 병상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실행을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형사소송법

<1954.7.12 상임위원회 정령집>

1. 1950년 3월3일: 채택
2. 1954년 6월15일(정령 공보 제86호로 보충): 8조1항으로서 검사는 수행된 범죄가 어떠한 것임을 가리지 않고 형사소추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보충
3. 1954년 6월 15일(정령 공보 제86호로 변경): 제83조와 제84조로 변경
「제83조 수사기관이 전조에 의하여 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그에 관해서 체포의 이유를 붙여 24시간이내에 소관 검사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그 체포를 승인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검사로부터 체포를 승인 또는 취소하는 통지에 따라 자료와 함께 혐의자를 해당 검사 혹은 예심기관에 넘기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비고>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범죄혐의자에 대한 체포승인절차는 특별히 규정한다」
「제84조는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1장 기 본 원 칙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소 및 예심기관의 형사사건 심리절차는 본법에 의거한다.
- 제2조 본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소, 검찰소 및 예심기관이 형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형사소송원칙의 기본이다.
- 제3조 재판소는 법령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령이 불비불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4조 이미 확정재판을 받은 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본법 제268조 제270조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 제5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
이미 형사소추가 있는 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있어서는 그 형사소송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심판자가 사망한 때
그러나 본법 제243조의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고소가 없을 때
그러나 검사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그 고소가 없더라도 기소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피소자와 피해자간에 화해가 있어 고소를 취소한 때

그러나 검사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그 취소를 승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다.

4. 시효가 완성된 때
5. 피심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6.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때
7. 대사로 인하여 형벌이 면제된 때 또는 피심자에 대한 특사가 있을 때
8. 확정재판이 있을 때

제6조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이는 또 법령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제7조 검사는 자기 관할구역에서 불법체포,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혹은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8조 공소는 검사가 한다.

피해자 또는 그의 소속직업동맹 기타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공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으로써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 형법 제124조, 제127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죄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직접 공소를 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에 피해자와 피소자간에 화해를 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그러나 검사가 공익상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피소자가 화해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사건을 기각할 수 없다.

제1항의 고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형법 제138조, 제166조 제167조의 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를 한 후에는 피해자와 피소자가 화해하였다 할지라도 사건을 기각할 수 없다.

제11조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재판소를 구속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구속받지 않는다.

제12조 범죄로 인하여 손해 또는 불이익을 받은 자는 피소자의 행위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

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소는 그 청구액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당해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이를 심리한다.

제13조 사소는 형사사건의 제기이후 공판심리의 제기이후 공판심리의 개시이전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한 후 화해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사소를 심리하지 않는다.

제14조 사소에 있어서는 소송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소청구의 거부는 공판에서만 할 수 있다.

사소청구가 거부 당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민사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모든 공판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국민들의 개인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재판소의 이유불인 판정에 의하여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17조 공개를 금지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공판의 방청을 금지한다.

제19조 사건의 조사 심리에 있어서는 조선어를 사용한다.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통역을 붙인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진정서 기타 증거서류에 한하여서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1. 특별재판소라 함은 군사재판소, 통운재판소
2. 판사라 함은 각급 재판소장, 부소장, 판사
3. 검사라 함은 검사총장, 부총장, 각급 검사장, 부검사장 및 검사
4. 예심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소예심원, 정치보위기관 및 감찰기관의 심사원
5. 소송당사자라 함은 당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 검사 및 피해자 사소원고 또는 그의 대리인 피소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6.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부모, 후견인 또는 소속기관의 대표자
7. 근친자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8. 판결이라 함은 제1심의 재판소에서 선고하는 유죄 또는 무죄의 재판

9. 판정이라 함은 판결 이외에 제1심 재판소의 재판 및 제2심 재판소의 일체의 재판
10. 결정이라 함은 예심원 또는 검사의 일체의 결정

제2장 재판소의 관할

제21조 시 군 인민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 재판한다.

1. 국가질서침해에 관한 죄
2.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에 관한 죄
3. 인신침해에 관한 죄
4. 국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
5. 로동법령위반에 관한 죄
6. 공무상 범죄
7. 경제에 관한 죄
8.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
9. 사회적 안전 및 인민보건침해에 관한 죄

전항 이외에 시 군인민재판소는 도재판소,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의 제1심관할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죄를 제1심으로 관할재판한다.

제22조 도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재판한다.

1.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
2. 특히 중대한 인신침해에 관한 죄,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침해에 관한 죄 및 공무상 범죄, 도재판소는 도내 시 군인민재판소 제1심재판소에 대한 상소 항의 및 항고사건에 대하여 제2심으로 관할 재판한다.

도재판소는 그 재량에 의하여 시 군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며 또는 도내 다른 시 군인민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23조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대 복무자 및 내무기관 복무원이 범한 일체의 범죄와 기타 군사상 범죄를 관할재판한다.

제24조 통운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재판한다.

1. 철도, 육운 및 수상운송기관 복무원의 규율위반 기타 공무상 범죄
2. 통운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범죄

제25조 최고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재판한다.

1. 특별히 중대한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
2.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내각의 성원, 도인민위원회 대의원 및 각급 재판소 판사의 공무상

범죄

최고 재판소는 도재판소 및 해당 특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 및 항고에 대하여 제2심으로 관할재판한다.

최고재판소는 그 재량에 의하여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 제1심 사건이든지 이를 직접 재판하며 또는 다른 동급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26조 재판소는 그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관할재판한다.

범죄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개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이를 관할재판한다.

제27조 동일사건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여러 동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28조 피소자가 여러 장소에서 죄를 범하여 여러 동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29조 여러개의 범죄 또는 여러 피소자에 대하여 공소가 있는 경우에 그의 어떤 범죄와 다른 범죄 또는 어떤 피소자와 관련있는 다른 피소자가 서로 이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상급 재판소에서 서로 이종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특별재판소에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제30조 사건심리 도중에 다른 동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공판에서 그 사건의 증거조사를 시작하였을 때 또는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진행중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1조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재판소는 그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사건을 이송받은 재판소는 그 사건이 자기 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후 비상상소의 절차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재판소구성 소송당사자 및 배제

제32조 서로 친척이 되는 재판원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든지 한 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3조 동일사건은 동일한 재판소 구성원으로써 공판하여야 한다.

재판소 구성원중 일부의 재판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다른 재판원이 대신하여 그 재판소 구성원이 될 때에는 사건의 심리를 갱신하여야 한다.

공판에 제정하였던 예비 참심원이 사고있는 참심원과 교대한 때에는 사건심리를 갱신하지 않는다.

제34조 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심리에서 배제된다.

1. 재판원이 소송당사자이거나 또는 소송당사자의 친척인 때
2. 재판원 또는 그의 친척이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때
3. 재판원이 증인 감정인으로서 또는 수사를 행한 자, 예심원, 검사, 변호인 및 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한 자로서 혹은 사소원고로서 그 사건에 참가하였을 때

제35조 제1심재판의 표결에 참가한 재판원은 동일사건의 제2심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파기된 사건의 새로운 심리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다.

제36조 재판원이 본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해당 하는 경우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심리를 자퇴하여야 한다. 만약 재판원이 자퇴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그 이유를 붙여 배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 배제의 신청은 공판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배제를 신청하는 이유가 공판심리를 개시한 후에 생기었거나 또는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8조 한 재판원을 배제하는 신청에 대하여서는 그 배제받은 재판원을 제외한 다른 재판원이 판정한다.

만약 판정에 있어서 가부가 동수인 때에는 그 재판원은 배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9조 본법 제34조, 제36조는 재판소 입회서기와 감정인 통역에게도 준용된다.

그러나 재판소 입회서기, 감정인 및 통역은 전에 동일사건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제40조 본법 제34조, 제36조는 검사에게도 준용된다.

그러나 검사가 그 사건의 조사 심리에 참가하였고 또는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는 배제되지 않는다.

검사를 배제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41조 변호사 또는 피소자의 근친자 혹은 피소자의 소속 단체의 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전항 이외의 자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제42조 다음의 경우에는 공판심리에 반드시 변호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1. 검사가 참가한 때
2. 피소자가 병어리, 귀머거리 기타 신체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때

제43조 한 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에 동일한 변호인이 여러 피소자를 변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건의 피소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동일한 변호인이 이해상반되는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없다.

제44조 증인으로서 사건에 참가한 자는 그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또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사소원고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제4장 증 거

제45조 재판소는 형식적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자유로 증거를 채택하며 증거의 제출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전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 증거라 함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 감정의 결과 증거물 검증의 결과 소송서류 및 피소자의 진술을 말한다.

제47조 증거물이라 함은 범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흔적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기타범죄 혹은 범인의 발각에 소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제48조 증거물의 수집, 보관, 검증의 절차는 본법 규정에 의한다.

제49조 증인으로 소환받은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 재판소에 진술하여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50조 신체 또는 정신상 결함이 있어서 그 사건에 관한 사실의 의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거나 진술할 수 없는 자는 증인으로서 심문할 수 없다.

제51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예심원 또는 재판소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제52조 사건의 조사 심리에 전문적 지식을 요할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한다.

1. 변사자의 사망원인 또는 부상자의 상해의 정도
2. 정신병의 혐의가 있는 피소자 및 증인의 정신상태
3.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형법 제136조의 죄의 피해자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성기의 발육상태

제53조 감정인 또는 통역으로 소환받은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양심적으로 감정 또는 통역을 하여야 한다.

본법 제45조 제2항, 제51조는 감정인 및 통역에게도 준용한다.

제54조 증인, 감정인, 통역 및 피해자는 출석하는데 쓰인 여비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감정인 및 통역은 전항의 여비 및 기타 비용외에 감정료 통역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 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증거물은 목록을 붙여서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이를 보관한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관리자가 증거물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 사건조사 심리상 지장이 없다면 그를 반환할 수 있다. 재판소 또는 예심원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재판소 또는 예심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관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다.

제56조 사건을 다른 재판소 또는 예심원에게 이송할 때에는 증거물은 소송기록과 함께 넘겨 준다.

제57조 판결, 파정 또는 검사 예심원의 사건기록 결정에는 반드시 증거물의 귀속 기타의 처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8조 증거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기 쉬우며 관리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한다.

제59조 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입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본법 제49조 제2항, 제51조 및 제54조 제2항은 입회인에게도 준용된다.

제5장 조 서

제60조 예심공판준비 및 공판에서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한다.

제61조 예심조서는 예심원이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 입회인을 필요로 하는 수속의 조서에는 입회인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정정, 삭제 첨가한 개소에는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기전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예심행위의 일시 및 장소
2. 예심원 및 입회인의 성명
3. 심문을 받는 자의 진술, 검증, 수색 또는 압수한 결과
4. 소송당사자 혹은 감정인 기타의 신청
5. 예심원의 처분

제62조 공판준비 조서는 입회서기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공판준비의 일시 및 장소
2. 재판소 구성원
3. 소송당사자가 출석한 때에는 그의 성명
4. 심리한 사건의 표시
5. 수리한 신청 및 판정

조서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제63조 공판조서는 입회서기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공판일 시 및 장소
2. 재판소 구성원
3. 소송당사자가 출석한 때에는 그의 성명
4. 심리한 사건의 표시
5. 진행순에 따라서의 재판소의 모든 행위
6. 소송당사자, 증인, 감정인 기타의 신청과 진술
7. 매 심리가 끝난 때마다 피소자에게 주어야 할 변호의 권리에 대하여 재판소가 한 통고
8. 재판소가 선고한 판정
9. 피소자의 최후 진술의 요지
10.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와 기간에 관한 통고
11. 기타 소송당사자가 조서에 기재하기를 신청한 사실, 소송당사자의 변론은 그 순서만 기재한다. 조서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사형을 선고한 공판조서에는 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특사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 공판에 참여한 소송 당사자는 조서의 작성 및 서명의 날인이 있을 때부터 3일 이내에 재판소에 대하여 조서의 부정확과 불비를 지적하여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장이 그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대로 정정할 수 있으나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재판소가 판정하여 그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6장 기간의 계산 및 소송비용

제65조 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써 계산한다.

기간의 계산은 첫날 및 첫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제66조 날을 표준으로 하는 기간은 마지막날 오후 12시로 끝난다.

재판소 검사 예심원에 있어서는 그 집무시간의 완료로써 끝난다.

제67조 달을 표준으로 하는 기간은 마지막 달중 그 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써 끝난다.

마지막 달중에 그 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마지막 달의 그믐날로써 끝난다.

제68조 기간만료일이 명절일 기타의 휴식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로써 기간이 끝난다.

제69조 상소장, 항의서 기타 기간을 정한 문서를 기한 만료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기간전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0조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건의 예심원 또는 검사 재판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 소송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증인, 감정인, 입회인 또는 통역에게 지불한 금액
2. 증거물의 보관, 수송 또는 사건조사에 쓰인 금액
3. 전2호 이외의 사건심리에 관하여 재판소에서 지불한 금액

제72조 유죄판결을 받은 피소자에게는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피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금액을 정한다.

전항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그 부담할 소송비용의 금액을 정한다.

제73조 사건을 기각하거나 또는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을 부담할 피소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피소자와 피해자의 화해로서 사건을 기각한 때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한편 또는 양편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소자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할 때에도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장 형사사건 제기

제74조 형사사건 제기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고
2. 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고
3. 범인의 자수
4. 검사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재량

제75조 개인의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써 할 수 있다.

말로써 신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검사 또는 예심원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고자에게 서명날인시킨다. 말로써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대하여 무고에 관한 책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

서면 신고에는 신고자의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6조 재판소 검사 또는 예심원은 범죄의 실행 또는 예비에 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비록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관한 신고라도 반드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건을 그 관할에 따라 적당히 이송한다.

제77조 신고 그 자체가 범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재판소, 검사 또는 예심원의 사건의 조사를 거부하고 이 뜻을 신고자에게 통고한다.

이 거부에 대하여서는 10일 이내로 해당하는 상급기관에 항고할 수 있다.

제78조 본법 제74조와 사유가 있고 또 신고의 내용이 범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심원은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예심에 착수하며 24시간 이내에 사건제기 결정서의 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이유불인 결정서로써 사건제기를 취소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그 지시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를 집행한 후에 상급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사건을 예심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직접 예심에 착수하며 혹은 사건을 재판소에 넘긴다.

3. 재판소는 사건을 검사 또는 예심원에게 이송하거나 또는 직접 심리한다.

제8장 수 사

제79조 수사는 권한있는 군관 예심원 이외의 내무원 및 로동, 세무, 상업, 소방등 제 기관의 감찰원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0조 수사기관은 사건의 기초로 되는 범죄사실 자료를 수집한다. 수사기관은 예심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는 방법으로써 전향의 자료를 수집한다.

제81조 수사기관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건에 예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예심원에게 넘기고 예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써 재판소에 직접 넘겨야 한다.

제82조 수상의 권한이 있는 군관 및 내무원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예심 또는 공판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인이 범죄착수 또는 실행도중 혹은 실행직후에 발견된 때
2.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혐의자를 범인이라고 지적한 때
3. 혐의자의 신체 혹은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때
4. 혐의자가 도주를 기도한 때 또는 도주중 범인으로써 추적받고 있을 때

- 5. 혐의자가 일정한 주소 또는 근무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 6. 혐의자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전항 이외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혐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

제83조 수사기관이 전조에 의하여 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이유불인 보고서와 함께 혐의자를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 혹은 예심원에게 넘겨야 한다. 만약 넘길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혐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84조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제85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전반적 감시권은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있다.

제9장 예 심

제86조 검찰소 예심원은 형법 제82조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1조, 제104조, 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10조, 제112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제125조, 제130조, 제131조, 제136조 내지 제140조, 제142조,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64조 3항, 제178조 내지 제196조, 제198조, 제200조 내지 제202조, 제214조,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 내지 제227조, 제236조, 제242조, 제246조, 제265조 내지 제301조의 죄에 관한 사건을 예심한다.

기타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65조 내지 제81조의 죄에 관한 사건을 제외하고 특히 복잡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회적 의의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심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형법 제65조 내지 제81조의 죄에 관한 사건을 제외한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예심할 수 있으며 예심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미 예심중에 있는 사건을 다른 예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치보위기관 심사원은 형법 제65조 내지 제81조의 죄에 관한 사건을 예심한다.

제87조 예심원은 관할구역내에서 예심을 요하는 범죄가 있다는 정보 또는 자료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심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88조 예심원이 자기의 관할구역 이외에서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당구역의 예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9조 예심원이 자기의 관할구역 이외에서 예심을 요하는 범죄가 있다는 정보 또는 자료를 얻은 때에는 유예할 수 없는 예심처분만을 행한 후 사건을 해당 관할구역의 예심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0조 예심원은 예심수속에서 피의자에 관한 범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줄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91조 예심원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그 사건에 관하여 의의를 가진 사유에 대하여 확정

을 신청한 때에는 이에 관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신문 또는 증거의 수집을 거부 할 수 없다.

제92조 예심처분 또는 진조의 사유확정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제출한 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예심원은 이유불인 결정을 한다.

제93조 예심에 있어서 얻은 자료는 예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94조 예심은 예심을 개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도검찰소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1개월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95조 여럿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한개의 예심수속에 병합할 수 있다.

제96조 검사는 예심을 감시한다.

검사는 예심기록을 검열하며 예심원에 대하여 그 예심에 필요한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서면상 지시에 대하여 예심원은 반드시 복종하여야 한다.

제97조 예심원이 예심중에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고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98조 예심원은 사소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자기의 재량으로써 사소청구를 위한 보장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보장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사소원고의 손해가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형법에 의하여 재산물수를 과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예심원은 재산보전의 보장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9조 본법 제34조 제36조는 예심원에게도 준용한다.

예심원은 자기에 대한 배제의 신청을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예심수속은 정지하지 않고 진행시켜야 한다. 검사는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장 입심 및 신문

제100조 예심원이 범죄에 관하여 입심함에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심자로 하는 입심결정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피심자에게 그 결정을 통고한다.

예심원은 전항의 결정서등본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01조 입심결정서에는 작성자의 성명, 작성일시 및 장소, 피심자의 성명 및 예심원에게 판명된 범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입심의 이유를 기재한다.

제102조 구류되어 있지 않는 피심자는 소환장을 피심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수교함으로써 소환한다. 구류중에 있는 피심자는 구류기관의 책임자를 통하여 소환하거나 구류장소에서 신문한다.

제103조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피심자가 예심을 회피하거나 일정한 거처 또는 근무처가 없을 때에는 소환을 하지 않고 곧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의하여 내무원이 집행한다.

제104조 피심자가 도주하거나 그 거처가 불분명한 때에는 예심원은 수색결정서를 작성한다. 결정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나도록 그 피심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전항의 중지는 입심의 자료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며 만약 그 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의 주소, 경력, 성명, 인상을 기입하고 보전처분 결정서를 첨부하여 감찰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05조 피심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는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제106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출석한 후 또는 그를 구인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야 한다.

제107조 예심원이 피심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피심자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할 만한 사항을 신문한 후 그에 대하여 피심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8조 예심원은 강제 또는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피심자를 신문하여 그의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제109조 피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예심원은 피심자를 개별적으로 신문하여 동일사건의 피심자가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심자를 서로 또는 피심자와 증인을 대질시킬 수 있다.

제110조 피심자를 신문할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피심자가 아는 것을 모두 진술하게 하며 그 진술이 끝난후에 질문을 한다. 신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진술을 제1인 칭으로 기재하며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제111조 신문이 끝난 때에는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준다.

피심자는 자기 진술대로 조서의 기재를 보충 또는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심자에게 그 진술한 바를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조서에는 피심자와 예심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12조 병어리, 귀머거리 또는 예심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자를 심문할 때에는 통역 또는 병어리 혹은 귀머거리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여야 한다.

전항의 통역 또는 해석자가 신문에 관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한다.

제113조 공무원을 피심자로 소환할 때에는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그 피심자를 예심기간중에 있어서 그의 직무로부터 떠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그의 근무처에 통고한다.

제11장 보 전 처 분

제114조 예심원은 피심자에 대하여 공판 또는 예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5조 보전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불리거서약
2. 인적 보증 또는 재산적 보증
3. 자택구속

제116조 보전처분을 할 때에 예심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종류를 결정한다.

1. 피심자가 범한 죄의 중대성
2. 피심자가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진상의 발견을 방해할 가능성
3. 피심자의 건강상태, 직업, 가정 기타의 상태

제117조 보전처분은 입심결정이 있는 이후에 한다.

보전처분은 예심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입심결정전에 보전처분을 한 때에는 이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입심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8조 예심원이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불인 결정서를 작성하고 입심원인이 된 범죄 사실과 그 보전처분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한다.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심자에게 통고한다.

제119조 검사는 예심원에게 대하여 그가 채택한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지시하며 또 예심원이 아직 보전처분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채택을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이 전항의 검사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그 지시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를 집행한 후 상급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0조 불리거서약이라 함은 피심자로 하여금 예심원이 지정한 또는 승인한 거처에서 허
가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자가 그 서약을 위반한 때에는 중한 보전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서약서를 제출시킬 때에는 제2항의 변경의 위험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인적 보증이라 함은 친임할 만한 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피심자의 출석을 보증하
게 하고 피심자를 언제든지 요구할 때에 예심기관 및 재판소에 출석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항의 서약서를 제출시킬 때에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재산적 보증이라 함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피심자가 출
석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액을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에 지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3조 자택구속이라 함은 감시를 붙이거나 혹은 붙이지 않고 피심자를 자택에 억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124조 구류는 징역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든지 범죄 진
상의 발견을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예심원이 구류의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심자를 구류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곧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예심원이 구류의 보전처분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구류기관에 보낸다.

제125조 구류의 보전처분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특히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는 도검찰소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126조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은 이유불인 결정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보전처분이 검
사가 관여한 것인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장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제127조 증인 및 감정인을 신문하기 위한 소환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본법 제10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8조 증인의 신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증인을 신문이 끝날 때까지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다른 증인과 대질시킬 수 있다.

제129조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먼저 증인 본인에 틀림없는가를 확인할 만한 사항 및 피심자, 피해자 기타의 소송당사자와의 관계를 심문한 후 진술거절 또는 허위 진술을 한 때의 책임을 통고하고 또 이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시킨다.

증인의 진술은 전부 제1인칭으로써 조서에 자세히 기재한다.

제130조 증인이 신문절차에 관하여서는 본법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31조 유년 또는 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교육기관의 대표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132조 본법 제112조는 증인 신문에 준용한다.

제133조 본법 제111조는 증인신문 조서작성에 준용한다.

제134조 감정인을 신문할 때에는 예심원은 먼저 감정인 본인에 틀림없는가를 확인할 만한 사항을 신문한 후 감정인에 대하여 그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사건의 사정 및 자료에 따라서 엄정한 감정을 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에 예심원은 감정의 거절 또는 허위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예심원은 감정인에 대하여 그 감정사항을 지시한다. 피심자는 서면으로써 감정인의 감정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감정인은 예심원의 허가를 얻어 감정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36조 감정인이 여럿인 때에는 감정인의 요구에 따라 감정하기 전에 서로 협의할 기회를 준다.

제137조 여러 감정인의 결론이 일치하는 때에는 그중 1명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진술하나 결론이 일치하지 못할 때에는 각 감정인이 자기의 감정결과를 진술한다. 각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진술이 끝난 때에는 각 감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감정이 끝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바 이에 관하여서는 본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138조 예심원은 감정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완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불인 결정서로써 그 감정인 또는 다른 감정인으로 하여금 새 감정의 절차를 밟게 할 수 있다.

제13장 수색 및 압수

제139조 예심원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건에 의의를 가진 물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유불인 결정서를 작성하여 강제처분으로써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기관공무원 개인 및 단체는 문서 또는 물건 제출에 관한 예심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1조 수색 및 압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간에 한다.

수색 및 압수는 건물관리인 또는 인근인의 입회하에 한다. 기관내의 물건을 압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표자의 입회하에 한다.

제142조 외국 외교대표단의 관리밑에 있는 건물 및 그 대표자 그이 수원 및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을 수색 또는 압수할 경우에는 그 외교대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검사 또는 지방 외무기관의 대표자가 있다면 그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143조 수색 또는 압수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심원은 먼저 수색과 압수에 관한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내무원 또는 기타 경비원으로써 수색장소를 경비시킬 수 있다.

제144조 수색에 있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때에는 예심원은 잠근 문 및 기타를 필요없이 파손하여서는 안된다.

제145조 수색 및 압수에 있어서 예심원은 사건에 직접 관련있는 문서 및 기타의 물건만을 압수할 수 있다. 사건에 관련없는 물건이라 하여도 금제품을 발견한 때에 이것을 압수한다.

제146조 예심원은 수색에 있어서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의 순서에 따라 그 결과를 기재한다. 문서 기타의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그 조서에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붙이고 예심원과 입회인이 서명 날인한다. 압수 또는 수색을 집행할 때 제기된 청구는 조서에 기재한다.

수색을 받은 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는 조서와 목록을 준다.

제147조 우편 전신등의 신서를 압수할 때에는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14장 검증 및 검진

제148조 압수한 문서 기타의 물건은 그 현장에서 예심원이 검증한다. 그러나 검증이 장시간을 요하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물을 봉인하여 예심정에 옮겨서 검증할 수 있다.

제149조 이상의 검진에 있어서 검진을 받는 자의 나체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검진받는 자와 동성의 성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150조 예심원은 검증한 결과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의 순서를 따라 그 당시의 상태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2조 시체해부와 의학적 검진의 조서는 의사가 작성하고 의사와 예심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장 피심자의 정신상태 감정

제153조 정신병자 혹은 일시적 정신상실상태에 있는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자기의 범죄행위를 분별하지 못한 자 또는 범행후에 정신병자로 된 자에 대한 정신상태는 친척 기타의 증인 및 감정인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제154조 전조에 의하여 명확하게 증명된 때에는 예심원은 의료처분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를 거쳐서 재판소에 넘긴다. 그러나 예심당시 일시적으로 정신상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예심원은 그가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그 사건의 예심을 중지한다.

제16장 예 심 종 결

제155조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기각한다.

1. 본법 제5조, 제104조제3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
2.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때

사건을 기각할 때에는 이유불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피의자 또는 피심자 및 사건을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통지한다.

제156조 예심을 끝내고 그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기에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심자에게 이것을 통고하고 열람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추보를 희망하는 여부를 물어야 한다.

피심자가 그 사건에 의의있는 사항으로써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을 신청한 때에는 예심원은 이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예심원이 전항의 피심자의 후보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불인 결정서로써 이를 거부한다. 피심자의 후보신청을 접수하여 예심기록에 보충한 때에는 그것을 다시 열람시켜야 한다.

제157조 예심을 종결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기소장을 작성한다.

1. 범죄사실 및 책임에 관하여 불리 및 유리한 사유와 그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의 요약
2. 범죄의 장소, 일시, 방법 및 동기
3. 범인의 신분
4. 피심자의 상황
5. 그 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조항

기소장에는 공판에 소환할 자의 명부, 피심자를 구류한 일시, 증거물, 제기된 사소와 사소청구를 위한 보장처분의 유무를 첨부한다.

공판정에 소환할 자의 명부에는 사실상 소환할 필요가 있는 자만을 기재한다.

소환할 자의 명부에는 소환할 자의 주소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명을 기재한다.

제158조 예심원은 기소장을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제159조 소송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 입회인 및 피심장의 보증인은 그의 권리를 침해 또는 억압하는 예심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160조 전조의 항고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그 예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161조 예심원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자가 항고한 때에는 예심원은 24시간 이내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낸다.

제162조 검사가 전조 및 본법 제159조의 항고를 수리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항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장 검사의 처분

제163조 본법 제158조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검사는 5일 이내에 다음의 처분을 한다.

1. 사건을 중지 또는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 또는 기각한다.
2. 추가 보충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추가예심을 하기 위하여 사건을 반송한다.
3. 재판소에 넘길 증거가 충분한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긴다는 간단한 결정으로써 기소장을 승인한다. 검사는 전항의 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예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 검사가 사건을 기각한 때에는 증거물의 귀속에 관하여 범죄에 사용할 물건을 몰수 하며 금제품은 해당기관에 넘겨주든지 또는 항고는 직접 재판소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재판소가 검사로부터 기소된 사건을 수리하면 다음의 문제를 공판준비에서 해결한다.

1. 예심의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법령의 적용이 옳게 되었는가

4. 예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5. 피심자의 신청에 대하여
6. 피심자에 대한 보전처분을 채택, 존속, 변경, 취소하는 여부에 대하여
7. 소송당사자를 참가시킴에 대하여
8. 공판에 소환할 자의 명부에 대하여

제169조 공판준비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참심원 2명으로서 한다. 그러나 참심원의 사정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참심원 대신에 다른 판사를 참가시켜 공판준비를 할 수 있다.

공판준비에 있어서 사건에 관한 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에 참가할 판사가 한다.

공판준비일시는 3일전에 검사에게 통지한다.

제170조 공판준비에서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사건을 기각한다.

예심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예심을 하기 위하여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사건을 반송한다.

예심이 충분하며 공판에 불일만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피심자를 공판에 넘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기소장의 기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의 의견으로 그 기소장을 정정 변경하여 새로운 공판회부장을 작성하고 피심자를 공판에 넘긴다.

제171조 공판준비판정에 대하여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는 상급 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제172조 피소자에게는 공판개정전 72시간 이전에 기소장의 등본을 보낸다.

공판준비에서 기소장을 변경 정정한 때에는 공판회부장의 등본을 보낸다.

제173조 재판소는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한다.

제174조 검사로부터 사건기록이 재판소로 넘어온 이후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에게는 피소자와 협의할 기회를 주며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준다.

제19장 공 판

제175조 재판장은 공판 전체의 진행을 지휘한다.

재판장은 공판 심리 및 소송관계자의 변론을 사건의 진상발전에 가장 적합하도록 지휘한다.

재판장의 처지에 대하여 소송관계자가 그의 권리를 억압 또는 침해당하였다고 신청한 때

에는 그 신청을 조서에 기재한다.

제176조 공판은 일정한 휴계시간을 내어 놓고는 사건을 계속하여 심리한다. 이미 개시한 사건의 심리를 끝내기까지는 휴계시간중이라도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제177조 피소자가 공판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그런 행위를 거듭하면 공판정에 퇴정시킨다는 것을 경고한다. 피소자가 이 경고를 무시한 때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써 피소자를 퇴정시키고 심리를 속행한다. 이 때에는 판결을 선고한 후 곧 피소자에게 통고한다.

제178조 검사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적 처분을 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검사 또는 변호인이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재판장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는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공판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또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검사나 변호인으로 바꾸어 사건을 심리함에 지장이 없다면 공판을 계속할 수 있다.

제179조 전조 이외의 자가 재판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는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공판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또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검사나 변호인으로 바꾸어 사건을 심리함에 지장이 없다면 공판을 계속할 수 있다.

제179조 전조 이외의 자가 재판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공판정에서 퇴거를 명령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0조 재판장은 공판개시의 시간이 되면 먼저 참심원과 입회서기의 열석을 확인한 후 개정하고 피소자를 입장시켜서 피소사건을 심리할 것을 선언한다.

제181조 재판장은 먼저 피소자 본인에 틀림없는가를 확인할 만한 사항을 신문한 후 피소자에 대하여 기소장 또는 공판회부장의 등본을 받았는가를 묻는다.

제182조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소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려준 다음 다시 소송당사자에게 그 재판소 성원을 알리면서 소송당사자가 가진 배제의 권리를 말하고 신청여부에 대하여 묻는다.

제183조 공판에는 반드시 피소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피소자 없이도 공판할 수 있다.

1. 피소자가 명시적으로 권석심리를 승락하였을 때
2. 피소자가 소환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판을 회피한 것이 명백한 때

제184조 피소자가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하고 피소자를 구인하여 공판을 한다.

제185조 변호인이 권석한 때에는 다른 변호인으로 바꿀 것을 피소자가 정당한 이유로써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을 할 수 없다. 검사가 권석한 경우에는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6조 사소원고 또는 그의 대리인이 궐석한 때에는 그 사소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7조 피해자가 소추를 제기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궐석한 때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소자는 공판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공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88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정하는 것을 확인한 후 소환한 증인 또는 감정인 중 출석한 자와 결석한 자 및 그 궐석의 이유를 말한다. 소환한 증인 또는 감정인중에 결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공판을 진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판의 진행 또는 연기에 대한 판정을 한다.

제189조 재판소는 전조에 의하여 공판 진행의 판정을 할 때에는 재판소는 공판을 진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판의 진행 또는 연기에 대한 판정을 한다.

제190조 재판소가 새 증인 혹은 감정인의 소환 또는 새 증거의 제출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을 연기한다. 새 증거의 제출 또는 증인 감정인의 소환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기하지 않고 소송관계자에게 그 기회를 준다.

제191조 재판소는 출정한 증인이 재정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증인에게 사건에 관하여 그가 아는 모든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경고한 다음 서약서를 제출시키고 증인을 공판정에서 퇴정하게 한다.

제192조 공판에 출석한 감정인은 공판정에 재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재량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정시킬 수 있다.

제193조 재판장은 심의개시전에 피해자에게 사소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재판장은 심리개시전에 피소자에 대하여 그는 증인, 감정인 및 공동 피소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또 사건 전체의 성질 또는 각개의 사실에 관하여 재판소의 심리중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94조 재판소의 심리는 입회서기가 기소장 또는 공판회부장을 낭독함으로써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장 또는 공판회부장에 기재한 사실을 승인하는 여부를 묻는다.

제195조 피소자가 기소장 또는 공판회부장 기재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기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소는 그 이후의 심리를 더하지 않고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 성원 또는 소송관계자중 한 사람이라도 그 심리의 진행을 요구한 때에는 재판소는 반드시 심리를 진행한다.

제196조 재판소는 심리에 있어서 사건심리의 순서 즉 피소자 또는 증인중 누구를 먼저 신문할 것인가 또 여러피소자 및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판정한다.

제197조 피소자에 대한 신문은 검사, 사소원고, 변호인 그 사건의 다른 피소자 재판장 및 참심원의 순서로 한다.

제198조 증인은 다음에 신문할 증인을 퇴정시킨 후에 순서로 신문한다.

재판장은 증인 본인에 틀림없는가, 그가 당해사건 및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 신문을 시작한다.

제199조 재판장은 증인의 진술이 끝난 후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건에 관계없는 질문을 제지할 수 있다.

제200조 증인에 대한 질문은 그 증인의 소환을 신청한 소송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소송당사자가 한다. 소송당사자의 질문에 대한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다른 소송당사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제201조 이미 신문한 증인도 다시 다른 증인앞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도는 다른 증인과 대질시킬 수 있다.

제202조 신문을 받은 증인은 재판장의 특별한 허가없이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판소를 퇴거할 수 없다.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동의없이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판소로부터 퇴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제203조 피소자 또는 증인의 예심에 있어서의 진술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다르게 나타날 때에는 예심에 있어서의 피심자 또는 증인이 진술서를 공판에서 낭독할 수 있다.

제204조 공판정에서 사실의 진상이 명백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신문을 종결할 수 있다.

제205조 본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는 공판에 있어서의 감정인 신문에 준용한다.

감정결과는 말로 진술시킨 후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써 제출시켜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제206조 재판소는 감정이 불명확 또는 불완전한 때 또는 여러감정인의 감정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의 재량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감정수속을 밟을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207조 증거물의 검증 또는 서류의 열람은 재판소의 재량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심리중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제208조 검증하기 위하여 범죄형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는 그의

성원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09조 사건이 아직 충분히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가 새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의 재량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을 연기하고 새 증거를 수집하든지 재판소가 직접 수집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하기 위하여 이유불인 판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 보낸다.

제210조 증거의 조사를 끝낸 때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대하여 재판소의 심리에 더 보충할 사항의 유무를 묻고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를 허가 또는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전항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제211조 심리가 끝난후 재판소가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듣는다. 소송당사자의 변론은 먼저 검사와 사소원고가 하고 다음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피소자 자신이 한다.

제212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의 심리에 나타나지 않은 새 증거를 변론에 원용할 수 없다. 그 원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여 그에 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213조 피소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무죄의 변론을 한다. 이 경우엔 도 그 이후의 수속을 계속한다.

제214조 변론이 끝난 후 소송당사자에게 다시 한번씩 서로 상대 당사자의 변론을 반박할 기회를 준다.

제215조 소송당사자의 변론이 그 사건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제지시킬 수 있다.

제216조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변론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피소자에게 최후 진술을 하게 한 후에 표결을 하기 위하여 퇴정한다.

피소자의 최후 진술에 있어서 사건에 관한 본질적 의의를 가진 새로운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량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다.

제217조 기소된 행위를 실행한 후 피소자가 정신이상인 생겼을 때에는 재판소는 피소자가 전과할 때까지 사건심리를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피소자의 그 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기각한다.

제20장 공소의 변경 및 새 피소자에 대한 기소

제218조 공판의 심리는 그 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공판에 회부된 자에게 제기된 공소에 한하여 이를 한다.

제219조 기소된 범죄행위 이외에 그 피소자에게 새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판에서 발견한 경우에 만약 그것이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 새 범죄행위에

대한 것만을 분리하여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검사에게 보낸다.

만약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미 기소된 범죄사건의 심리를 중지하고 일반적 절차로써 새로이 예심 또는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건기록 전체를 검사에게 보낸다.

제220조 재판소는 공판심리의 진행중 공소를 변경할만한 새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변경이 피소자로 하여금 중한 형벌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리를 중지하고 일반적 절차로써 새로이 예심 및 공판심리를 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그 공소의 변경이 중한 형벌을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소는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제221조 공판도중에 피소자 이외의 자가 죄를 범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 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이유불인 판정을 한다.

재판소는 이를 본인에게 통고하고 일반적 절차로써 예심 및 공판심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장 판 결 의 신 고

제222조 판결을 평의표결할 때에는 그 재판소 구성원이 된 재판원만이 참석한다.

제223조 재판소는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고 또 공판에서 심리한 증거에 의하여서만 판결을 평의표결한다.

재판원은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건의 심리에 기인한 자기의 확신에 의거한다.

1. 기소된 행위 그 자체가 있었는가
2. 전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3. 피소자가 전호의 행위를 하였는가
4. 피소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것인가
5. 피소자에 대하여 어떤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을 선고할 것이며 그 형벌의 집행이 피소자에게 적합한가
6. 제기한 사소를 용인할 것인가, 아직 사소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장래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위하여 보장처분을 할 것인가
7. 증거물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8.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9.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에 있어서 보전처분을 변경할 것인가 또는 새로 채택할 것인가

제225조 예심 또는 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 피소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공판 준비에서 판정된 경우라도 재판소는 판결을 표결할 때에 다시 이것을 해결한다.

제226조 재판장은 본법 제224조에 규정한 문제를 그 순서에 따라 재판소의 표결에 붙인다. 표결에 있어서 재판원이 가 또는 부로써 대답할 수 있게 물어야 한다. 판결의 표결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재판원은 표결을 기권할 수 없다.

재판장은 최후로 판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27조 모든 문제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소수측이 된 재판원은 자기의 특별한견서를 작성하여 판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고할 수 없다.

제228조 재판소는 다음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1. 피소자에 대한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의 적용
2. 유죄선고를 받을 피소자에 대하여 대사에 의한 형벌의 면제
3.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의 무죄의 선고
 - ㄱ. 범죄사실 자체가 없을 때
 - ㄴ. 피소자에 대한 공소의 이유가 불충분한 때

제229조 재판소는 사소에 대하여 다음의 판정을 한다.

1.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사소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자체의 입증이 없는 까닭에 피소자에게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사소를 거부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청구이유에 따라서 사소를 용인하거나 또는 거부한다.

제230조 전조 제1호에 의하여 심리하지 않은 사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1조 범죄행위에 있어서 얻었으나 당해 사건의 증거물로 되지 않는 것은 사소제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 물건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232조 재판 선고에 있어서 증거물처분에 관하여서는 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233조 재판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판결서를 작성한다. 판결서는 이유부와 주문부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234조 판결서의 이유부에는 피소자의 성명, 연령 및 그의 사회적 지위, 피소자의 신분, 범죄의 장소, 일시 및 피소자의 무죄 또는 유죄의 기초가 된 기소사실, 증거설명 기타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특수사항을 기재한다.

판결서의 주문부에는 무죄 또는 유죄의 인정 및 적용 법조와 아울러 선고하는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을 기재한다.

판결서에는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언제까지 어디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5조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은 판결집행에 있어서 재판소가 선고한 형벌 의료처분 교정처분의 종류 및 정도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재판소가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을 경감하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결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1. 최초로 정한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
2. 경감한 이유
3. 재판소가 최후로 정한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의 종류 및 정도

피소자에 대하여 여러개의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1. 각 죄에 대하여 재판소가 정한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
2. 재판소가 최후로 정한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

피소자에 대하여 여러개의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서에 피소자는 어떠한 공소에 대하여 무죄 또는 유죄인가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6조 판결서는 1명의 재판원이 수서하고 그 표결에 참가한 재판원이 모두 서명 날인한다.

제237조 재판원은 판결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입장한다. 재판장은 전원에게 들리게 판결서를 낭독하며 기타 재정자는 모두 일어서서 판결의 선고를 듣는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써 선고한다.

제238조 피소자에게 무죄 또는 형벌면제의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소는 선고후 지체없이 피소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장 및 검사총장은 최고재판소판결을 제외한 판결에 대하여 전항의 석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9조 피소자에 대하여 형벌 의료처분 또는 교정처분을 적용한 판결은 그 판결확정 후에 이를 집행한다.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상소기간을 지난 때

상소항의가 있으나 제2심 재판소에서 원심을 지지한 때

2.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을 선고한 때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남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상소

기간이 지나면 이로서 그 부문은 확정된다.

제240조 징역형의 기간은 그 판결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징역형을 받은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을 때에는 구류된 첫날부터 기산한다.

제22장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

제241조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피소자 및 그의 변호인은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있다.

제242조 시 군검찰소 검사는 시 군인민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 도검찰소 검사는 도 및 시 군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최고검찰소 검사는 도 및 시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각각 항의할 수 있다.

제243조 검사는 그가 참여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판결판정에 대하여서도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사의 항의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4조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항고는 판결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상급재판소에 제기한다.

판결서의 등본은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45조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항고의 서면은 원심재판소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그러나 직접 제2심 재판소에 그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를 수리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의 제기는 그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246조 최고재판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상소 또는 항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7조 소송당사자에게 제2심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결석한 때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8조 제2심 심리는 공판정에서 판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한다. 소송당사자가 참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는 상소 또는 항의한 당사자를 먼저 변론하게 한다.

제249조 제2심 재판소는 상소 또는 항의에 제시한 불복이유만을 심리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심리에 의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수속을 전부 심리하여야 한다.

제250조 판결 파기의 이유로 되는 법령상 위반은 다음과 같다.

1. 불완전 또는 부적당한 심리
2. 소송수속의 형식에 관한 본질적 위반

3. 법령위반 또는 부당한 법령의 적용

4. 판결의 현저한 불공정

제251조 불완전 또는 부적당한 심리라 함은 수사, 예심 또는 공판심리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정도로 사실의 증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52조 소송수속의 형식에 관한 본질적 위반이라 함은 본법 규정에 관한 위반으로써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령으로써 보장된 소송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억압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건에 관한 재판소의 전반적 심리를 조해하여 공정한 판결의 선고에 영향을 준 또는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5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소송수속의 형식에 관한 본질적 위반으로 된다.

1. 재판소의 구성이 위법인 때
2.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재판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사건을 기각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하지 않은 때
4.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피소자가 권석한 대로 사건을 심리한 때
5. 법령에 의하여 변호인이 입회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입회없이 사건을 심리한 때

제254조 법령위반 또는 부당한 법령의 적용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적용하여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때
2. 적용하여서는 안 될 법령을 적용한 때
3. 법령의 정확한 의의 또는 일반적 정신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를 해석 적용한 때
4.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포한 혹은 법령에 위반되는 결정 또는 규칙 등을 적용한 때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법령을 정당하게 적용하였다면 당연히 원심양형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판결과기의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제255조 판결의 현저한 불공정이라 함은 재판소가 정한 형벌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양형이 피소자의 범죄에 비하여 흑심하게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56조 원심재판소에 있어서 죄로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피소자에게 유죄판결을 한 때 또는 사건기각의 이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을 때에는 제2심 재판소는 사건을 원심 재판소에 반송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기각한다.

제257조 원심재판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재판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재판소에 이송한다.

제258조 원심재판소가 그 판결에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부당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또는 선고한 형벌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행위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제2심 재판소는 원심재판소에 반송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필요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심 재판소가 새로 정하는 형벌은 원심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적용한 법령 조항이 정한 형벌보다 경하게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보충적 형벌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심 재판소는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그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재판소에 반송할 수도 있다.

대사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적용을 부당하게 한 때에는 제2심 재판소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대사조항을 적용하여 형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제259조 전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제2심 재판소는 새로운 심리를 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재판소의 다른 부 또는 이와 동급 재판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60조 제2심 재판소가 새로운 심리를 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반송한 때에는 원심재판소가 그 사건심리에 있어서 제2심 재판소 판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적에 복종하여야 한다.

파기반송된 사건의 새로운 심리는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명시된 단계에서부터 수속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261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새로운 심리를 하는 재판소는 원심재판소가 정하였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을 정할 수 없다.

검사의 항의에 제시된 원심판결의 양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새로 심리하는 재판소는 원심판결의 양형보다 중하게 정할 수 있다.

제262조 제2심 재판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심재판소가 범한 파기까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심재판소가 범한 파기까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심재판소가 범한 파기까지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법령위반을 판정에 부대하여 지적할 수 있다.

원심재판소는 이 지적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3조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없으며 다만 최고재판소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장 비 상 상 소

제264조 최고재판소장 및 검사총장은 어떠한 사건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도검찰소 검사는 그 관할내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군사 및 통운검찰소 검사는 각각 그 관할내의 사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

다. 전4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65조 최고재판소장 및 검사총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송부를 청구한 사건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하여서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266조 사건송부를 청구한 자가 본질적인 법령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재판소에 발송한다.

제267조 시, 군검찰소 도검찰소, 군사검찰소, 통운검찰소 검사장은 본질적인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을 붙여 최고검찰소에 보낸다.

제268조 최고재판소장 및 검사총장은 비상상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최고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의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서는 최고재판소 형사부 및 특별부에 최고재판소의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서는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9조 최고재판소 전원회의는 최고재판소장 부소장 및 동 재판소 판사로서 구성한다.

검사총장 및 사법상은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4장 재 심

제270조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은 새 사실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새 사실의 발견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판결 또는 판정의 기초로 된 증거가 허위였던 것이 판명된 때
2. 판결 또는 판정을 표결한 재판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범죄를 수행한 것이 판명된 때
3. 기타 독립하여 또는 이미 확정된 사실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무죄를 증명할 사실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그 인정된 것보다 경한 죄나 중한 죄를 범한 것을 증명할 사실이 판명된 때

판결선고 또는 판정당시에 재판소로써 알 수 없었던 사실도 새 사실에 든다.

제271조 무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새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1년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사가 있을 때 또는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있어서도 재심을 할 수 없다.

제272조 판사의 범죄로 될 직권남용, 위증, 허위의 의견제출, 기타의 증거의 허위는 그 사실이 재판소의 다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만 재심의 사유로 된다.

제273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

제274조 재심의 제기청구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검사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동일하다. 최고재판소에서 재심개시 판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재판소에 보낸다.

제25장 판결의 집행

제275조 판결을 선고한 재판소 재판장은 그 판결집행을 지휘한다.

재판장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판결서 등본을 내무기관 및 기타의 집행기관에 보낸다. 판결집행의 감시는 검사가 이를 한다.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있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제276조 징역을 받은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판결집행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질병이 전채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징역을 받은 자가 임신중에 있을 때에는 임신후 6개월부터 산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재난 기타 가정상 딱한 사정이 생겨서 징역을 집행하면 본인 또는 그의 가정에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상당한 기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7조 징역집행중에 있는 자가 정신병 기타의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소에 수용된 때 그 수용기간은 이를 징역기간에 산입한다.

제278조 벌금 및 소송비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에서 재판소 집행원이 이를 징수한다.

제27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벌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지불을 유예하여 주며 또는 분할하여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제280조 판결의 집행정지, 벌금의 지불유예 또는 분할지불 기타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소가 이를 심리 판정한다.

제281조 재판소가 전조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검사 및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다. 사소 판결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전조의 판정을 할 때에도 그 사소 원고에게 통지한다.

전2항의 경우에 통지를 받은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집행할 수 있다.

심리는 판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출석한 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변호인 및 사

소 원고의 순서로 변론을 한다.

전항의 변론이 끝난 후 재판소는 해당하는 판정을 한다.

제 3 절 치 안

◇ 교통질서 단속에 관한 규정

(1949. 12. 5. 내각결정 제180호)

제 1 조 본규정은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3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동차 운전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운전면허증 및 차량검사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
2.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취업장소의 이동 또는 거주지의 변경 및 기타 운전면허증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의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자동차의 통행금지구역 소관 내무기관의 허가없이 통행하였을 때
4.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지할 때 또는 후속차를 선행케 할 때에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않았을 때
5. 상이한 방향의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점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자동차 상호간에 있어서 오른쪽 자동차에게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거나 경사가 심한 도로에서 서로 어길 때에 내려가는 자동차가 도로 우측에 피양(避讓)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6. 도로의 교차점, 곡선(曲線)도로, 경사도로 수도(遂道), 폭이 좁은 교량에서 다른 자동차를 따라 앞섰을 때
7. 사고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내무기관의 허가없이 다음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였을 때
 - (1) 도로의 교차점 또는 곡선도로에서 5m이내의 지점
 - (2) 횡단보도
 - (3) 인도와 착도의 구분있는 도로에서의 인도
 - (4) 수도 및 교량
 - (5)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5m이내의 지점
 - (6) 기타 소관 내무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8. 철도 또는 제도의 횡단점을 통과할 때에 교통정리원의 지휘없이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통과하였을 때
9. 야간에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제정된 등화로 조명하지 않았을 때
10. 자동차 운전사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때

제 3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자동차 사용주에게 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립시운전허가증 및 립시운전번호판의 교부를 받지 않고 립시운전을 하였거나 립시운전 이 끝난 후에 소정기일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2. 차량검사증을 분실 또는 오손한 경우에 재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및 차량검사증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10일 이내에 차량검사증의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소관 도내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외에 전적할 목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4. 다음 경우에 차량검사증을 소관 내무기관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 (1)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 (2) 차량검사 기간이 만료한 때
 - (3) 자동차의 사용금지 혹은 정지를 당한 때
 - (4) 분실한 차량검사증을 찾았을 때
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차고이외 또는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에 두었을 때
6. 차고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험방지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 4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형면허를 받은 자가 보통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또는 조수면허를 받은 자가 보통면허를 받은 운전사의 립회없이 보통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2.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하였을 때
3. 소정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을 때
4. 자동차에 소정의 용적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 또는 소정인원을 초과하여 승차시킨 때
5.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호 및 기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무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제 5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주에게 1,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관내무기관의 허가없이 자동차를 폐차하였을 때
2. 위험품 운반에 있어서 위험방지에 관한 지시에 위반되었을 때
3. 차량검사증의 교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기간 만료후 계속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였을 때
4. 자동차의 구조변경후 그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였을 때
5.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한 때
6. 차량의 구조장치 또는 전조등 및 미등을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지 않았을 때

제 6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차종업원에게 3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별한 리유없이 정류장이외의 장소에서 일반객을 승강시켰을 때

2. 객의 승강이 끝나기 전에 발차신호를 하였거나 발차신호가 있기 전에 발차하였을 때
3. 교통정리원의 지휘 또는 교통정리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였을 때

제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업소 책임자 또는 전차종업원에게 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차에 조명용, 전조등, 후등, 차내등 또는 신호기, 경음기 및 제동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2. 소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을 때
3. 운전면허의 교부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였을 때

제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3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우마차, 하차, 자전거 사용자가 감찰증의 교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때
2. 시가지에서 우마차 또는 하차에 소정의 용적중량을 초과하여 물품을 적재한 때 또는 자전거에 1인 이상 승차하였을 때
3. 시가지에서 우마차종업원이 우마차를 타고 물거나 승용에 사용하지 않는 우마차에 사람을 승차시켰을 때
4. 시가지에서 오물을 소제하기 위한 용기의 준비없이 우마차를 사용한 때
5. 우마차 및 하차의 정차 또는 통행을 금지한 구역에 정차 또는 통행하였을 때
6. 시가지에서 우마차 하차 및 자전거로서 야간통행시에 점등(點燈)하지 않았을 때
7. 도로에 있어서 비산(飛散) 추락(墜落) 또는 누출(漏出)할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운반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하지 않았을 때
8. 자동차에 제동기 경음기를 장치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때
9. 도로통행자 또는 운행제차로서 도로표식신호 및 교통정리원의 지휘에 부종하지 않았을 때
10. 기타 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서 아동들의 유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교통질서유지에 지장준 경우에는 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3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서 승마연습 또는 제차의 운전연습을 할 때
2. 소정의 규격에 위반한 우마차 또는 하차를 사용한 때

제11조 소관 내무기관의 허가없이 건축공사 및 물품운반등으로 일하되 1일 이상 또는 로폭(路幅)의 3분지 1 이상을 사용하여 1시간 이상 교통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5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자동차 단속에 관한 규정

(1949. 9. 13. 내무성규칙 제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규정은 국가운수정책을 정확히 보장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2 조 자동차의 기술행정 및 교통단속은 내무상이 이를 통할한다.

제 3 조 자동차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 구분한다.

본규정에서 보통자동차라 함은 소형자동차가 아닌 차량중량 360kg이상 되는 차를 말하며

소형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차를 말한다.

1. 차량의 길이 2.8m, 넓이 1.2m, 높이 1.8m
2. 내연원동기를 사용하는 차에 있어서 4행정식(行程式)은 기통용적합계 75CC, 2행정식은 기통용적 합계 500CC
3. 전동기를 원동기로 사용하는 것은 정격(定格)출력 4.5KWH

제 2 장 차량의 구조장치

제 4 조 차량은 다음의 구조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길이 7.5m, 넓이 2.2m, 높이 3m를 초과하지 말 것. 그러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 도내무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차량의 최단 회전거리의 반경은 11m 이내로 하되 최외측 차륜중심을 기준으로 할 것
3. 배기관은 적당한 소음(消音)장치를 하여야 할 것
4. 동력 조절장치 조향장치(操向裝置), 제동장치 및 변속(變速)장치는 기능이 확실하고 쉽게 조정되어야 할 것

제 5 조 제동장치는 다음에 의한다.

1. 보통자동차는 2계통
2. 소형자동차(자동자전거 자동3륜차 측차부(側車附) 자동자전거)로서 액체 압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계통
3. 운전사가 없을 때에 차량의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할 것

제 6 조 차량중량 300kg이상의 자동차는 역행(逆行)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자동차는 적당한 경음기 속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형차에 한하여 관할 도내무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속도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자동차의 등화는 다음에 의한다.

1. 전조등(前照燈)은 보통자동차는 2개 소형자동차는 1개로 하되 전방 50m지점의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속광을 가져야 할 것
 2. 미등(尾燈)은 1개로 하되 후방 25m 지점에서 번호판의 문자(文字)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축광을 가져야 할 것
 3. 실내등 1개(빠스 및 하이야는 객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화물차는 운전대에 비치할 것)
 4. 미등 정지신호등 및 방향지시기의 등화외에 적색등을 사용하지 말 것
- 교통이 복잡한 시가지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정지신호등의 비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보통자동차는 완충기(緩衝器)(승용차는 전후면, 화물차는 전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에는 불식기(拂拭器)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이 복잡한 시가지에서 운전하는 자동차는 방향지시기 후사경(後射鏡)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도내무부장은 필요에 의하여 위험물운반에 전용케 할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위험방시상 필요한 구조장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 차체외부는 반드시 정착성있는 도료(塗料)로서 도장(塗裝)하되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소방자동차 및 우편자동차는 적색으로 할 것
2. 구급자동차 및 왕진전용차는 백색으로 도장하고 전면 또는 측면 보기 쉬운 곳에 적십자(赤十字)표식을 할 것

전1호 이외의 자동차는 적색으로 도장할 수 없다.

제14조 자동차의 외관상 또는 안전상에 필요한 장치에 대하여 관할 도내무부장이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차량검사(신규구조변경 계속 사용 또는 폐차)

제15조 자동차는 별도로 제정한 차량검사 세칙에 의하여 차량검사에 합격하고 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이를 운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사 회송(回送)을 위한 일시운전은 제외한다.

제16조 전조의 일시운전허가는 관할 내무서장이 하되 검사후 양식 제1호에 의한 립시운전허가증 및 양식 제2호에 의한 립시운전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하며 립시운전허가증 및 립시운전번호판은 운전이 끝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검사는 사용주의 신청 또는 내무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차량검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차량검사원은 도내무부장이 지정한다.

제18조 신규로 차량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양식 제3호에 의한 신규차량검사신청서를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로 차량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는 양식 제4호에 의한 차량검사증을 교부한다.

제20조 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양식 제6호에 의한 자동차구조변경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원동기를 교환한 때
2. 연료장치를 변경한 때(휘발유장치를 가스장치로 또는 가스장치를 휘발유장치로)
3. 차량의 길이 넓이 높이를 변경할 때
4. 차실 차체의 교환 또는 구조를 변경한 때

제21조 차량검사의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사용코자 할 때에는 양식 제6호에 의한 자동차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기간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자동차를 폐차할 때에는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양식 제7호에 의한 자동차폐차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차량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차량검사의 유효기간은 차체성능을 고려하여 1년이내로 도내무부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 도내무부장은 필요에 의하여 립시차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의 결과 성적여하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사용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5조 차량검사는 도내무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검사대수가 동일한 지역에서 5대이상되는 경우에 사용주는 현지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차량검사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내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7조 차량검사에 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내무상이 이를 제정한다.

제28조 차량검사증은 운행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29조 차량번호는 내무기관이 교부하는 번호판을 다음에 의하여 붙여야 한다.

1. 보통자동차는 양식 제8호에 의한 보통자동차 번호판을 전후면에
 2. 소형자동차는 양식 제9호에 의한 소형자동차 번호판을 전후면에
- 전 1, 2호의 번호는 전국적으로 각각 유일번호로 한다.

제30조 전조의 차량번호판은 임의로 제작 사용 할 수 없다.

제31조 차량검사증을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양식 제10호에 의한 차량검사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자동차의 사용주는 차량검사증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로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신청하여 차량검사증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주의 명의변경은 관할 도내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자동차의 도의 전적은 일체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유가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내무부장이 거부할 수 있다.

제34조 자동차의 사용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검사증을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2. 차량검사 기간이 만료한 때
3. 자동차의 사용금지 혹은 정지를 당한 때
4. 분실한 차량검사증을 찾았을 때

제35조 내무서장은 제출되는 신청서에 차량검사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양식 제11호에 의한 차량검사증 보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차량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 전 면 허

제36조 자동차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하면 운전하지 못한다.

운전사는 자동차 운전중에 반드시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단속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운전면허의 종별은 보통면허, 소형면허, 조수면허로 구분한다.

제38조 보통면허는 취업년한 및 기타 기능에 따라 1급 2급 3급의 급수제로 한다.

제39조 자동차의 운전은 다음 면허종별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통면허를 받은 자는 보통자동차와 소형자동차
2. 소형면허를 받은 자는 소형자동차

3. 조수면허를 받은 자는 보통면허를 받은 운전자 입회하에 보통자동차를 각각 운전할 수 있다.

제40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수험지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도내무부장은 신청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 각각 해당하는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42조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은 내무상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직장이 결정 되었거나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양식 제12호에 의하여 10일이내로 취업지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신고하여 면허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전사는 그 면허증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10일이내로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신고하여 면허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운전면허증을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양식 제13호에 의한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운전면허증을 관할 도내무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당한 때에 그 기간중
2. 운전면허의 취소를 당한 때
3. 분실한 면허증을 찾을 때
4. 조수면허 소유자로서 보통면허를 받게 된 때
5. 운전면허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때(그 가족이 반납한다)

제47조 운전면허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도내무부장은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본단속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상해하였거나 물건을 파손한 때
3. 색맹(色盲) 정신병 또는 불구자로서 운전불가능하게 된 때
4. 운전사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48조 내무서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운전면허가 첨부된 경우에는 양식 제14호에 의한 운전면허증 보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신청서는 반드시 관할 내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동차의 사용 및 제한

제50조 화물자동차로서 여객을 수송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 도내무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51조 자동차는 그 차량폭의 2배반되는 도로 또는 배반이상의 도로로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동차가 서로 어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도로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내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52조 내무서장은 필요에 의하여 도로구역 시간 또는 자동차의 종류를 지정하여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53조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다음에 의한다.

1. 시가지에 있어서 하이야 자동차전차 측차부자동차전차는 시속 20km, 버스 도라크 자동차삼륜차는 시속 15km
2. 시외에 있어서 하이야 자동차전차 측차부자동차전차는 시속 50km, 버스 도라크 자동차삼륜차는 시속 35km
3. 소방자동차 및 구급자동차는 전 1,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속 65km

제54조 운전사는 최고속도 제한내에서 도로 및 교통의 형편에 따라 공중(公衆)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속도 및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5조 운전사는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지할 때 또는 후속차를 선행케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는 손으로서 하거나 방향지시기 및 정지신호등으로 한다.

1. 우로 돌 때

오른손을 우편차체 밖에 수평으로 내거나 왼손을 좌편차체 밖으로 우에 올린다.

2. 좌로 돌 때

왼손을 좌편차체 밖에 수평으로 내거나 오른손을 우편차체 밖으로 우에 올린다.

3. 직행할 때

손을 펴서 앞으로 든다.

4. 정지할 때

손을 펴서 차체밖에 나리운다.

5. 후속차를 선행케 할 때

손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밖에 전후로 흔든다.

제56조 상위한 방향의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점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자동차 상호간에 있어서는 우편(右便)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57조 대도로에서 소도로에 들어가는 차는 소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58조 경사가 심한 도로에 있어서 서로 어길 때에는 내려가는 자동차가 도로우측에 피양(避讓)하여야 한다.

제59조 소방자동차 및 구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60조 다음 장소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선행치 못한다.

1. 도로의 교차점
2. 곡선(曲線)도로
3. 급경사도로
4. 수도(遂道)
5. 폭이좁은 교량

제61조 다음 장소에는 주차 또는 정차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관할 내무서장이 승인할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도로의 교차점 또는 곡선도로에서 5m 이내 지점
2. 횡단보도
3. 일도와 차도의 구분있는 도로에서 인도
4. 수도(遂道) 및 교량
5.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5m 이내
6. 기타 관할 내무부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62조 운전사는 철도 또는 궤도의 횡단점을 통과할 때에는 일단 정차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정리원의 신호 또는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63조 운전사는 정류중의 전차 자동차의 옆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정차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 천천히 통과하여야 한다.

제64조 경음기는 교통안전상 필요이상의 음량(音量)을 내는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방자동차 및 구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제65조 야간에 운행하는 자동차는 체정된 등화로서 조명하여야 한다.

등화를 켜 자동차가 서로 어길 때에는 전조등의 축광을 감하거나 전조등을 일시 소등하고 축등을 켜야 한다.

제66조 운전사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못한다.

제67조 자동차사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적재의 길이와 넓이는 자동차 규격을 초과 못하며 중량은 지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인원승차는 지정한 인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관할 내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때 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제외한다.

제68조 전조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발지 관할 내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양식 제15호에 의한 자동차 제한의 승차적재 증명서를 받아 이를 휴대하여야 하며 운전이 끝나면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9조 화물자동차로서 시가지 또는 일정한 구간(내무서장이 인정하는 구간)내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로동자 3명까지 적재함(積載函)에 승차시킬 수 있다.

제70조 운전사는 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량의 정지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 견인차(牽引車)가 얹인 보통자동차로서 시가지내에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내무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신호원 1명을 앞차에 태워야 하며 속도는 10km이상 내지 못하며 전후 차량의 거리는 4m 내지 5m이내로 한다.

제72조 자동차로서 타인을 상해하였거나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운전사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피해자의 구호 및 기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근내무기관에 신고하여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방 구급 여객 및 우편자동차의 운전사는 승무원기타 종업원으로서 전항의 조치를 대신시키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현장을 보관하여 내무원의 검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양식 제16호에 의한 운행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자체에서 발행하는 운전일보를 휴대할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제 6 장 차량단속 및 단속원의 임무와 권리

제74조 교통단속원은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본규정에 의한 단속사업을 강화하므로써 사용자 및 운전사들의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는 제때에 적발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제75조 사용자 및 운전사는 교통단속원에 대하여 본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76조 교통단속원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의 승차 중량외의 적재 속도위반 및 공중에게 위해를 주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전체내무원이 단속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양식 제17호에 의한 교통단속위반자 보고

서를 현지 관할 내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차체의 성능 및 구조장치 운전면허 차량검사증에 대한 단속 및 검사는 차량검사원 및 교통단속원만이 할 수 있다.
3. 단속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차량검사증 및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차량검사증 및 운전면허증의 현지회수는 차량검사원만이 할 수 있다.

제77조 교통단속원은 양식 제18호에 의한 교통단속원 증명서를 차량검사원은 양식 제19호에 의한 차량검사원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의 사용주 및 운전사에게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명서는 도내무부장이 발급한다.

제78조 교통단속원 및 차량검사원이 전조에 의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정차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여하한 차량을 불문하고 정차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운전사는 교통단속원 및 차량검사원의 임무수행에 대한 사업을 방해할 수 없다.

제79조 교통단속원 및 차량검사원은 자기의 증명서를 차량단속을 위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자동차 사고

제80조 자동차는 사고 이외에는 두지 못한다(소형차는 제외한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관할 내무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한다.

제81조 자동차 사고는 다음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1. 도로의 교차점, 도로의 곡선지점, 철도궤도의 차단차, 수도(遼道), 교량 등으로부터 5m 이내 지점
2. 전면도로에서부터 5m 이내 지점
3. 소방기재 및 소방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지점
4. 기타 도내무부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82조 사고의 구조와 설비에는 다음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지면은 불연질(不燃質) 재료로서 포장할 것
2. 사고내부(천정, 벽)에 가연질 재료가 로출(露出)하지 않게 할 것
3. 소방시설을 충분히 할 것
4. 환기 배수시설을 적절히 할 것

제83조 사고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기(火氣)취급과 흡연을 엄금할 것

2. 자동차 부속품이외의 폭발물질 가연성물질 및 기타 일체물품을 두지 말 것
3. 차고내 보기 쉬운 곳에 격납(格納)대수 및 차고사용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소성명을 표시한 표찰과 간단한 차고내에서의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판을 게시할 것

제 8 장 제 수 수 료

제84조 차량검사 및 운전면허 교부에 관한 신청 기타 재소속에 관한 시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
|-----------------|----------|
| 1. 신규차량검사 | 수수료 250원 |
| 2. 계속 검사 | 수수료 100원 |
| 3. 차량구조변경검사 | 수수료 100원 |
| 4. 폐차 검사 | 수수료 100원 |
| 5. 차량검사증재교부 | 수수료 50원 |
| 6. 차량검사증 기재사항변경 | 수수료 10원 |
| 7. 운전면허증 신규교부 | 수수료 50원 |
| 8. 운전면허증 기재사항변경 | 수수료 10원 |
| 9. 운전면허증 재교부 | 수수료 100원 |
| 10. 운전면허시험 | 수수료 50원 |

부 칙

1. 본규정은 194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북조선 자동차단속규칙」 1947년 8월 20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규칙 제7호 및 「북조선 자동차단속규칙 일부개정에 관하여」(1948년 12월 25일 내무성규칙 제5호)는 이를 폐지한다.

내무상 박 일 우

◇ 월동기 단속에 관한 규정

(1949. 11. 9 내무성규칙 제1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국가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하며 생산직장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

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 원동기에 대한 단속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있어서 원동기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밀폐한 용기로서 대기압 보다 높은 압력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이라
2. 밀폐한 용기로서 그 관수의 온도를 높이어 그 용기외에 급탕(給湯)하는 온수관
3. 밀폐한 용기로서 증기를 발생하며 또는 여기에 증기를 송입하여 직접 물품을 가열하는 증관
4. 보이라에서 발생한 증기의 팽창력으로서 움직이는 증기기관(機關)
5. 타용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수하여 자기통 내에서 연소 폭발한 팽창력으로 움직이는 가스기관
6. 가연소질 유류 연료를 흡수하여 자기통 내에서 연소 폭발한 팽창력으로 움직이는 가스기관

제3조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한압력 0.5kg/cm²이하의 보이라로서 관동의 내경이 300mm이하 길이 600mm이하 또는 전열면적 1m²이하인 것
2. 전열면적 3.5m²이하의 보이라로서 대기에 개방한 증기관(蒸氣管) 또는 수두압 5m이하의 수관을 가지고 그 경이 25mm이상인 것
3. 수두압 10m이하의 온수관으로서 화상면적 0.5m²이하 전열면적 8m²이하인 것
4. 제한압력 0.5kg/cm²이하의 증관으로서 관동의 내경 500mm이하 길이 1,000mm이하 또는 내용적 0.2m³이하인 것
5. 선박 기차(교통성이 관리하는 기차에 한한다)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6. 민족보위성 및 내무성 산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7. 10마력 미만의 기관
8. 취사용(炊事用)으로 사용하는 고압가마

제4조 민족보위성 및 내무성 산하의 원동기는 따로 이를 취급한다.

제2장 원동기 설치자 및 검사

제5조 원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양식 제1호, 양식 제2호의(보이라에 한한다)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내무부장에게 제출하는 일체신청서는 반드시 설치지의 내무서를 경유하여야 한다-이하도 이와 같다). 이동식 원동기에 있어서는 그 사업소 소재지 도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보이라(증관을 포함한다-이하도 이와 같다)는 관체검사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설치 또는 매매하지 못한다.

전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압시험을 한다.

1. 제한압력 4.3 g/cm²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압력의 1.3배의 3kg/cm²를 가한 압력으로 할 것
2. 제한압력 1kg/cm²를 초과하고 4.3kg/cm²이하인 때에는 그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할 것
3. 제한압력 1kg/cm²이하인 때에는 2kg/cm²의 압력으로 할 것
4. 제한압력 이상의 압력을 받을 넘려가 없는 온수관에는 그 제한압력에 1kg/cm²를 가한 압력으로 할 것
5. 이미 사용 또는 개조한 보이라로서 제한압력 7kg/cm²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압력보다 3.5 kg/cm²를 가한 압력으로 하고 7kg/cm²이하일 때에는 그 압력에 1.5배를 가한 압력으로 할 것

제 7 조 관체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이라마다 양식 제3호에 의한 검사 신청서에 양식 2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체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그 관체에다 양식 제4호의 부호로서 양식 제5호의 각인을 친다.

전1항의 보이라 명세서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속히 변경 신청서를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관설치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보이라마다 양식 제6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관도내무부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을 때에는 소관 도내무부장은 양식 제7호의 원동기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이라는 검사증을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검사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설치자는 변경 이유서를 2주일 이내에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며 검사증의 변경에 대한 정정을 받아야 한다.

검사증을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이라 설치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선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양식 제10호에 검사증을 첨부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한압력 또는 수두압
2. 관동 화통 연소실 경판 또는 관판(冠板) 혹은 관판(管板) 및 스테 및 파이프
3. 연소장치
4. 설치기초

제11조 전조의 수선 또는 변경 공사가 준공하였을 때에는 양식 제11호에 의하여 소관 도내 무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선 또는 변경한 보이라는 검사에 협력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보이라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항의 유효기간은 보이라는 구조 또는 관리정형에 의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이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유효기간 완료 후의 보이라는 대하여 계속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에 양식 제12호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갱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관 도내무부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립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전 2항의 검사를 할 경우에는 소관 도내무부장은 양식 제13호에 의한 보이라 검사 통지서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관 도내무부장으로부터 검사기일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수를 배출하고 인공 소제공 연소실 내부장치를 해체하고 관체를 냉각시킨 후 검사에 필요한 부분과 부속기구 기체등을 분해소제하여 두어야 한다.

제15조 원동기를 검사 또는 검열할 때에는 설치자 및 기관장은 이에 립회하여 원동기 검사원의 지도와 문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 검사원의 검사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1. 보이라는 피복물의 1부를 제거하는 것
2. 리벳트 혹은 파이푸를 빼든가 관체에 구멍을 뚫게하는 것
3. 수압시험을 하는 것
4. 주철제 보이라는 있어서는 해체하는 것
5. 기관에 있어서는 뚜껑을 열고 필요한 부분을 분해하는 것
6. 원동기를 이동하는 것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원동기 설치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동기실 기타 원동기 설치장소에는 종업원 이외의 출입을 금지 하고 그 표식을 보기 쉬운 곳에 제시할 것
2. 검사증은 원동기실내 보기 쉬운 곳에다 제시할 것
이동식 원동기에 있어서는 취급 책임자가 휴대할 것
3. 기관장으로부터 보이라는 구조장치에 대한 결함의 예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로 사고방

지에 필요한 장치를 할 것

제1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동기 설치자는 지체없이 검사증 또는 허가증을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동기의 사용을 폐지하려고 할 때
2. 보이라의 사용을 1년이상 중지하려고 할 때
3. 기관의 사용을 3년이상 중지하려고 할 때

전2호 3호의 원동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양식 제14호에 의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의 검사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원동기 설치장소에서 화재 또는 보이라의 폭발 및 이에 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동기 설치자는 즉시로 소관 파출소 또는 분주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로 양식 제15호의 의한 사고발생 보고서를 해당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동기 사고 현장에는 방화 및 구호관계자 이외에는 소관내무원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사고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원동기 설치자는 소관 도내무부장의 승인을 얻어 원동기에 대한 일체 권한을 가진 원동기 관리인을 선임하여 둘 수 있다.

전항의 원동기 관리인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로 인정한다.

제21조 소관 도내무부장은 해당 검사원을 원동기 설치장소에 임검시킬 수 있다.

제22조 소관 도내무부장은 원동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시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에 대하여 예방에 필요한 대책 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3조 소관 도내무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입하였을 때
2. 원동기 설치자가 3개월이상 소재불명이 될 때
3. 원동기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3년이상 중지시켰을 때(기관은 5년 이상)

제24조 원동기사업(제작 수리 설치)을 하려고 하는 자는 양식 제8호에 의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보이라를 제작하려고 할 때에는 양식 제9호에 의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보이라의 규격

제 1 절 안 전 구 조

제26조 보일러 관체에서 사용하는 강관의 두텁이는 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관에는 두텁이 4mm이상의 인발(引拔) 강관을 사용할 수 있다. 스테-를 가진 관판 또는 턱을 가진 화통관 혹은 화실관의 두텁이는 전항에 의하지 않고 8mm 이상으로 할 것

제27조 관동 혹은 턱을 가진 기통의 강관의 두텁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한압력 2.5kg/cm²을 초과할 경우

(2) 관동 또는 기통의 내경이 600mm를 초과할 때에는 강관의 두텁이는 6mm이상으로 할 것

(2) 관동 또는 기통의 내경이 600mm이하일 때에는 강관의 두텁이는 6mm이상으로 할 것

2. 제한압력 2.5kg/cm²이하인 경우

(1) 관동 또는 기통의 내경이 900mm를 초과할 때에는 강관의 두텁이는 8mm이상으로 할 것

(2) 관동 또는 기통의 내경이 90mm이하일 때에는 강관의 두텁이는 6mm이상으로 할 것

제28조 경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텁이는 관동판 기통판 또는 화실판의 두텁이 보다 적게 할 수 없다.

제29조 관동 또는 기통의 종접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편목판 충접으로 하지 말 것

2. 관동 또는 기통의 내경이 1,000mm를 초과하며 제한압력 5kg/cm²이상에 있어서는 류접으로 하지 말 것

3. 관동 또는 기통의 내경이 500mm를 초과하며 제한압력 5kg/cm²이상에 있어서는 1렬병 류접으로 하지 말 것

4. 횡치단관식 보일러의 관동에 있어서는 화염(火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제30조 보일러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망홀 소제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일러(주철제보일러 주철제온수관 및 증관은 제외한다)에는 관동 또는 경판의 적당한 개소에 망홀을 설치할 것

다만 관동의 내경 650mm미만 길이 1,000mm미만의 수형보이라로서 망홀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2이상의 소제공 또는 검사공으로써 이를 대응할 수 있다.

망홀의 크기는 장경 375mm이상 단경 275mm이상의 타원형 또는 내경 375mm이상의 원형으로 할 것

소제공 또는 검사공의 크기는 내경 25mm이하로 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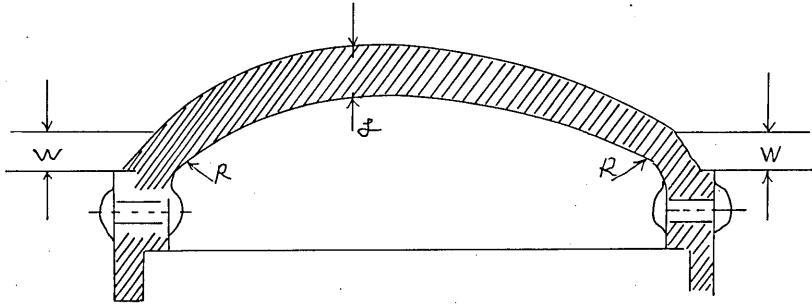
2. 횡치단관식 보일러에 있어서는 전조에 의한 망홀외에 전관판 연관초(煙管焦)의 하부에 망홀을 설치할 것. 다만 관동의 내경 1,200mm미만으로서 망홀을 설치하기 난한 곳 또는

관판의 중중양부의 관렬간에 또는 외방관렬과 관동과의 간에 230mm이상의 간격있는 곳에 대하여는 적당히 큰 소제공으로써 이를 대응할 수 있다.

3. 수형보이라의 관동에는 수각부(水脚部)에 2개이상의 소제공을 설치할 것
4. 수형다관식 보이라에는 전호의 소제공 외에 화실 관판의 높이와 동일한 위치에 2개이상의 소제공을 설치할 것
5. 수관을 가진 수형보이라의 관동에는 수관을 소제할 수 있는 위치에 적당한 수의 소제공을 설치할 것
6. 고류닛슈 보이라의 전경관의 하부에는 소제공을 설치할 것 보이라의 관동 경관 및 관판에 설치하는 망홀 소제공 또는 검사공의 장경이 150mm이상의 것은 그 주위를 보강할 것

제31조 스테-로서 보강치 않은 경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침턱 곡내경(R)은 경관의 두텁이()이 4배이상으로 할 것
2. 부침턱의 만곡기점(彎曲起點)과 동관 끝과의 거리(W)는 6mm이상으로 할 것



제32조 수형 보이라의 화실관판과 관판을 연결하는 염관(焰管)의 내경은 관동내경의 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관기(管寄)의 재료에는 연강 또는 련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작에 결함이 없는 한 재질의 량호한 주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보이라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이라에는 2개이상(온수관 또는 증관에는 1개이상)의 안전변을 설치할 것. 다만 화상면적 0.6㎡ 또는 전열면적 12㎡이하의 보이라에 있어서는 1개로 할 수 있다.
2. 온수관은 일수(逸水)하는 장치로서 전호의 안전변에 대응할 수 있다.
3. 안전변의 경은 25mm이상으로 할 것. 그러나 관동의 내경 500mm이하 관동의 길이 1,000mm이하 전열면적 2㎡이하 및 제한압력 5kg/cm²이하의 소형 보이라에 있어서는 안전변의 경은 19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안전변의 경이 38mm미만일 때에는 이것을 발조식(스프링구식)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호푸)발조식안전변은 사용할 수 있다.

5. 안전변은 그변에 가하는 증기의 전압력 600kg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간(橫杆)식으로 하지 말 것

6. 안전변의 변 및 변좌에는 용이하게 부식되지 않는 유금 또는 포금을 사용할 것

제35조 보이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면측정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이라(온수관 및 증관을 제외한다)에는 2개이상의 초자수면계를 설치할 것. 다만 관동의 내경 750mm미만의 수형보이라 및 관방에 전용하는 주철제 보이라에는 그 1은 초자수면계가 아닌 수면측정장치로 대응할 수 있다.

2. 초자수면계는 초자관의 냉 10mm이상 또는 이에 준한 단면적을 가져야 할 것

3. 초자수면계 기타 수면장치는 그의 최하부가 안전저수면을 지시할 위치에 할 것

제36조 보이라는 안전저수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랑가샤형 및 고류닛슈형 보이라는 화통상부로부터 위로 100mm

2. 수형횡관식 및 기차형 보이라는 화실관판 상부로부터 위로 50mm

3. 수형다관식 보이라는 화실관판 상부로부터 위로 연관의 3분의 1

4. 횡치다관식 보이라는 최고연관상부로부터 위로 75mm

5. 선박용(스곳지) 보이라는 연소실 상부로부터 위로 50mm

6. 다구마식 보이라는 접수기 상부로부터 위로 150mm

7. 히다지 야로-식 보이라는 최고수관으로부터 아래로 100mm

8. 바부곡구식 보이라는 관동저부로부터 위로 170mm

9. 기타 보이라는 허용된 안전저수면

제37조 보이라(증관을 제외한다)에는 수시단독으로 보이라는 최대증발량 이상을 급수할 수 있는 2개이상의 급수장치를 구비하고, 그 1은 증기동력으로 운전하는 급수 펌프 또는 인젝트-크다-래야 한다. 다만 화상면적 0.6㎡ 또는 전열면적 ㎡이하 제한압력 2.5kg/cm²미만의 보이라에는 이를 1개로 할 수 있다.

제38조 보이라는 제한압력보다 20%이상의 수압력으로 급수할 수 있는 저수탱크 또는 제한압력보다 1kg/cm²이상 높은 압력을 가진 수도는 이를 급수장치로 대응할 수 있다.

제39조 근접한 2개이상의 보이라는 결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1대의 급수장치로 공용할 수 있다.

급수장치의 급수관에는 보이라에 근접한 위치에 급수변 및 역지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이라에는 수실최저하부에 직결한 배수관을 설치하여 콕크를 달아야 한다.

그의 단면적은 500mm²(소형보이라 및 증관은 120mm²)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수 콕크는 보기 쉽고 취급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열가스에 접촉되는 급수파이프 배파이프 및 수면측정장치의 통기관은 내열(耐熱)재

료로서 방호하여야 한다.

제42조 보일러에는 제한압력의 1배반 내지 3배의 최고지시도를 가진 압력계를 비치하며 제한압력의 지시도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증관에는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40조 내지 제45조에 의한 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관동 또는 뚜껑의 재료에는 강관을 사용할 것. 다만 관동의 내경 450mm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단면적을 가진 증관의 뚜껑은 주철제로 할 수 있다.
2. 가류관 또는 관판이 심히 부식될 염려가 있는 작업에 사용되는 증관의 강관 두텁이는 9 mm이상으로 할 것
3. 뚜껑좌우는 「보루트」의 직경은 25mm이상으로 할 것
그러나 관동의 내경 450mm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단면적을 가진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증관 송입 파이프중 적당한 개소에다 감압변 또는 감압장치를 할 것
5. 용이하게 내부를 검사할 수 없는 증관에는 적당한 개소에 검사공을 설치할 것
6. 횡치형 증관에는 관동의 중점은 관동의 최저부에서 좌우 약 20도이내의 범위에 이를 배치하지말 것

제44조 보이라는 용접으로 제작 또는 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도내무부장이 승인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보이라는 주철로 제작할 수 없다.

제 2 절 보이라 강도계산

제46조 보이라의 강도계산에 사용할 「항장력」은 소관 도내무부장의 사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7조 동관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사정한 것으로 할 것

$$P = \frac{200fE(t-1)}{C D} \quad \text{또는} \quad t = \frac{C D P}{200fE} + 1 \dots\dots\dots (1)$$

P=제한압력 kg/cni

t=동관의 두텁이 mm

f=동관의 최소 항장력 kg/mm²

D=관동의 최대 내경 mm

E=중점(縱接)부분의 강율로서 다음 산식중 최소를 사용할 것

(1) $E_1 = \frac{p-d}{p}$ 접합(接合)부분의 동관의 강율

(2) $E_2 = \frac{tsA(n_1+1.8^{n_1})}{fpt}$ 접합부분의 교병의 강율

$$(3) E_3 = \frac{p-2d}{p} + \frac{fs A}{fpt}$$

$$(4) E_4 = \frac{p-2d}{p} + \frac{1.8fsA}{fpt}$$

루접(累接) 또는 편목관(片目)이 1열병 적은 양목관 총접(衝接)이고 교병의 수외열에 반수로 되는 때의 교병 및 동관의 연합 강을 목관의 넓이가 동일한 양목관 총접으로 교병의 수외열에 있어서 반수가 되는 때 교병과 동관의 연합 강을

p=의열에 있어서 교병의 중심거리 mm

d=교병공의 내경 mm

A=교병공의 면적 mm²

n₁=P의 중심거리에 있어서 교병으로서 1개소에 「전단력」을 받는 수

n₂=p의 중심거리에 있어서 교병으로서 2개소에 「전단력」을 받는 수

fs=교병의 「항전력」으로서 보이라 용병제의 「항장력」의 85%

C=정수로서 다음표에 의할 것

중첩으로서	류접으로되는때	4.75
중첩으로서	양목관 총첩1열병 또는 편목판이 1열적인 양목관 총첩으로 된 때	4.25
중첩으로서	2열병이상의 양목관 총첩 또는 인발강관(引拔鋼管)으로 되는 때	4.00

전항의(2) (4)호식 이외로 되는 교병 및 동관의 연합강을은 그구조에 따라 산정할 것 제48조 평관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각호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스테-의 배열이 정규적인 때

$$P = \frac{t^2}{C^2(a^2+b^2)} \text{ 또는 } t = C \sqrt{a^2+b^2} P \dots\dots\do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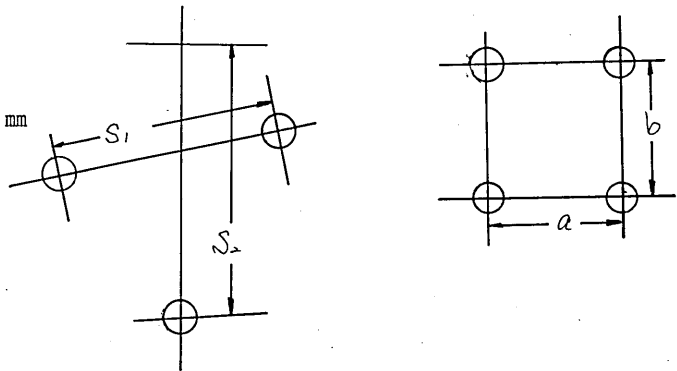
2. 스테-의 배열이 불규칙적인 때

$$P = \frac{4t^2}{C^2(S^2+s^2)2} \text{ 또는 } t = \frac{1}{2} C \sqrt{S^2+S^2} P \dots\dots\dots (3)$$

P=제한압력 kg/cm²

t = 평관의 두텁이 mm

a.b.S'.S²=스테-의 간격 mm



C=정수로서 관의 항장력 34kg/cm로 되는 때의 수는 다음표에 의할 것

스크류스데	두부(頭部)를 교체(交替)한 것	열카스에 접촉되는 때	0.0175
		열카스에 접촉되지 않는 때	0.0155
		열카스에 접촉되는 때	0.0160
		열카스에 접촉되지 않는 때	0.0139
		스데-주부	0.0144
나트 및 와샤가 있는 스테	열카스에 접촉되지 않는 때	외면 와샤의 경이 스테-중심거리의 5분의 2로서 그두텁이가 관의 두텁이의 3분의 2로되는 때	0.034
		외면 와샤의 경이 스테-중심거리의 5분의 3로서 그두텁이가 관의 두텁이의 6분의 5로 되는 때	0.0124
		외면 와샤의 경이 스테-중심거리의 5분의 4로서 그두텁이 관의 두텁이와 동일한 때	0.0113
일면이 열카스에 접촉되며 타면이 증기에 접촉되는 판으로서 열카스에 접촉되는 면에 하등 방호되지 않는 때에는 상기의 정수를 10% 증가할 것			

항장력이 fk/mm^2 로 되는 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C의 수를 상기표에 표시된 수에다

$\frac{3^4}{f}$ 을 승한것으로 할 것

3. 주위에 고정된 구형(矩形)평판으로 되는 때

$$P=356f^2\left(\frac{1}{m^2} + \frac{1}{n^2}\right)t^2$$

$$\text{또는 } t=0.053n \frac{p}{fz\left[1+\left(\frac{n}{m}\right)^2\right]} \dots\dots\dots (4)$$

p=제한압력 kg/cm²

t=평판의 두텁이 mm

fz=재료의 「허용항장내력」 즉 4분의1 「항장력」 kg/mm²

m=구형의 장변 mm

n=구형의 단변 mm

4. 가젯트 스테-로서 보강된 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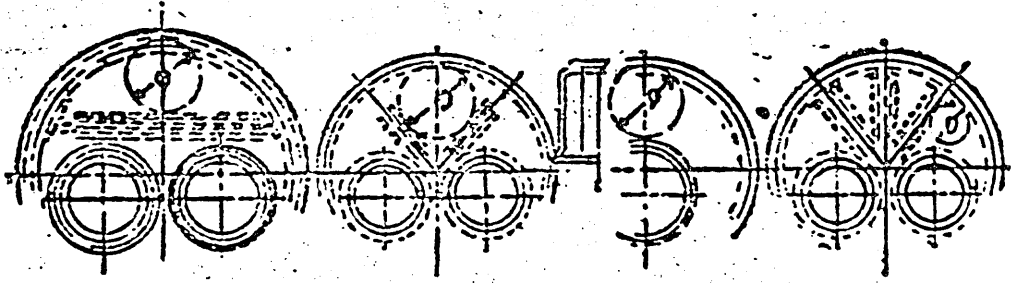
$$p=5.000 \frac{t^2}{d^2} \text{ 또는 } f=0.014d p \dots\dots\dots (5)$$

p=제한압력 kg/cm²

d=평판의 두텁이 mm

t=보강이 없는 구역내의 최대원의 경 mm

정수 0.014 및 5.000은 관의 「항장력」이 34kg/mm²로 되는데에 대한 것으로 관의 「항장력」이 tkg/mm²로 되는데에는 0.014에 대하여서는 $\frac{31}{f}$ 를 승하고 5000에 대하여서는 $\frac{f}{34}$ 를 승하게 되는것임



5. 화염(火焰)에 접촉되지 않는 평판에 그두텁이의 3분의 2보다 얇지 않은 부판(副板)을 적당히 리벳트 교착하였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t의 수를 (2.3.4.5)식에 적용할 것

$$t = \frac{7}{8} (t_1 + t_2) \dots\dots\dots (6)$$

t_1 = 원평판(原平板)의 두텁이 mm

t_2 = 부평판의 두텁이 mm

제49조 턱(鑄)을 가진 경판으로서 스테-기타에 의하여 보강이 되지 않은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각호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평경판으로 되는데

$$p = \frac{800}{3} \left\{ \frac{t}{d - r \left(1 + \frac{2r}{d}\right)} \right\}^2$$

$$\text{또는 } t = 0.0162 \left\{ d - r \left(1 + \frac{2r}{D}\right) \right\} \sqrt{\frac{p}{f}} \dots\dots\dots (7)$$

p = 제한압력 kg/cm²

t = 경판의 두텁이 mm

f = 판의 항장력 kg/cm²

d = 경판의 내경 mm

r = 경판의 끝 원곡부의 반경 mm

2. 오목한(凹)면에 압력을 받는 접시형(皿)경판으로 되는데

$$p = \frac{200tz}{R} \quad \text{또는 } t = \frac{p R}{200fz} \dots\dots\dots (8)$$

p = 제한압력 kg/cm²

t = 판의 두텁이 mm

fz = 판의 「허용항장내력」 kg/cm² 로서 5kg/mm² 이하로 할 것

R = 접시형의 중앙부에 있어 내면의 반경 mm로 하고 판동의 내경보다 크게하지 말 것

시형경판에 「망홀」을 설치하는데 그두텁이는 (8)식으로 산정 한데다 2mm를 가할 것
 3. 뽀죽한(凸)면에 압력을 받는 접시형 경판으로 되는데

$$p = \frac{20tfd}{R} \quad \text{또는} \quad t = \frac{pR}{200fd} \quad \dots\dots\dots (9)$$

p=제한압력 kg/cm²

t=판의 두텁이 mm

fd=판의 「허용압축내력 kg/mm²로서 3.5kg/mm²이하로 할 것

R=접시형 중앙부에 있어서 외면의 반경 mm

제50조 다관식보이라의 관판(管板)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군부(管群部)이외의 평판부의 두텁이에 대하여는 제48조를 적용할 것
2. 관군부에 두텁이가 스테-파이프 또는 기타의 스테-로 되는 경우에는 제24에 의할 것.
 이와 같은 경우에 연관끝을 단순히 확대한 구조로 할 수 있으며 그 관판 두텁이 tmm는 「파이프호-루」의 평 D가 38mm 내지 100mm로 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수보다 적게할 수 없다.

$$t = 5 + \frac{d}{10} \text{ 강제관판(鋼製管板)} \quad \dots\dots\dots (10)$$

t=관판의 두텁이 mm

d=파이프호-루의 경

3. 파이프의 중심거리 pmm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수보다 더 적게 할 수 없다.

$$p = \left(1 + \frac{4.5}{t} d\right) \quad \dots\dots\dots (11)$$

t=관판의 두텁이 mm

d=파이프호-루의경 mm

p=파이프의 중심거리 mm

4. 연소실 상부의 압력이 파이프판에 가하는 때 그두텁이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보다 적게 할 수 없다.

$$t = \frac{p W D}{1900(D-d)} \quad \dots\dots\dots (12)$$

P=제한압력 kg/cm²

t=파이프판의 두텁이 mm

D=「후와야-파이프」수평 중심거리 mm

W=파이프판과 연소실 반대측 판과의 간격 mm

d=「후와야-파이프」의 내경 mm

제51조 수관식보이라의 원통의 일부로 되는 파이프관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함. 그러나 파이프의 시접(施接)에 대한 파이프관의 유효두텁이는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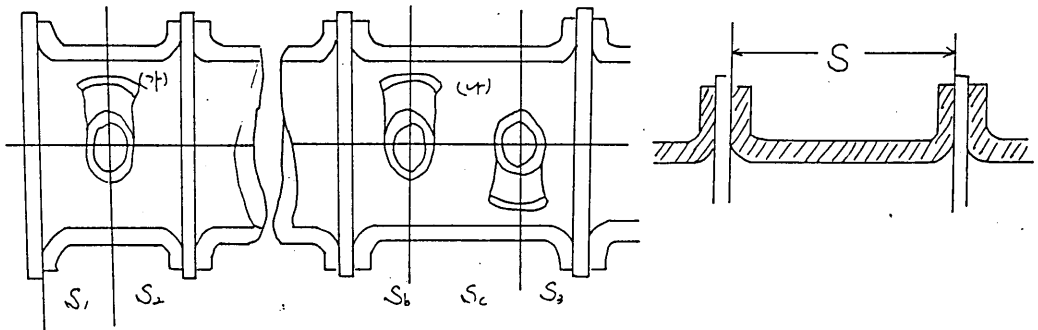
$$p = \frac{100f(f-3)(P-p)}{2.1Dp} \quad \text{또는} \quad t = \frac{2.1DPp}{100f(p-d)} + 3 \dots\dots\dots (13)$$

- P=제한압력 kg/cm²
- t=파이프관의 두텁이 mm
- f=재료의 항장력 kg/mm²
- p=「파이프호-루」의 중심거리 mm
- D=파이프호-루의 경 mm
- d=원통의 내경 mm

제52조 화통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 = \frac{2400(t-2)}{\left\{2 + \frac{a}{2400} \frac{D}{(t-2)} \frac{S}{(S+D)}\right\}} \quad D \quad \text{또는} \quad t = \frac{DP}{2400} \left\{1 + \sqrt{1 + \frac{aS}{p(S+D)}}\right\} + 2 \dots\dots\dots (14)$$

- P=제한압력 kg/cm²
- t=판의 두텁이 mm
- D=화통의 내경 mm
- S=유호 지지부의 간격의 초대거리 mm
- a=정수로서 하기표에 의함



(가) 환(環) $S = S^1 + 0.5S^2$

다만 $S^1 \geq S^2$

(나) 환 $S = S^1 + S^2$ 다만 $S^1 \geq S^2$

$S = S^3 + S^2$ 다만 $S^1 \geq S^2$

중 접 수 의 종 류	횡화통(橫)	종화통(縱)
루 접	100	70
층접 또는 단접	80	50
인발(引拔) 또는 단점으로써 원형의 부정하게 된 차가 경의 1%이내로 되는 때	75	45

제53조 파형(波形)화통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 = \frac{200(t-2)}{D} \quad \text{또는} \quad t = \frac{PD}{1200} \quad 2 \quad \dots\dots\dots (15)$$

P=재합압력 kg/cm²
t=파형화통의 두텁이 mm
D=화통의 최소내경 mm

제54조 스테-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바-스테 및 스그류-스테-

$$P = \frac{75fd^2}{a} \quad \text{또는} \quad b = \frac{a p}{75fz} \quad \dots\dots\dots (16)$$

2. 파이프 스테-

$$p = \frac{95fzAH}{a l} \quad \text{또는} \quad A = \frac{p a}{95fz} \quad \dots\dots\dots (17)$$

3. 경사(傾斜)스테-

$$P = \frac{95fzAH}{a L} \quad \text{또는} \quad A = \frac{PaL}{95fzH} \quad \dots\dots\dots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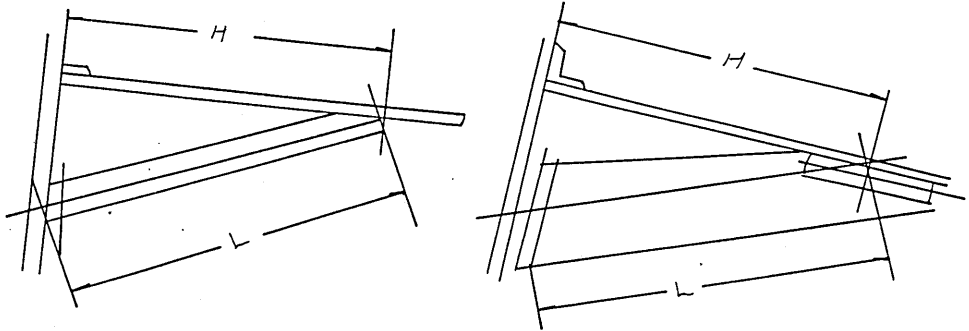
4. 가렛트 스테-

$$P = \frac{85fzAH}{a L} \quad \text{또는} \quad A = \frac{PaL}{85fzH} \quad \dots\dots\dots (19)$$

P=제한압력 kg/cm²
a=본의 스테-가 받아잡는 면적 mm²
d=스테-의 최소단면의경 mm
A=스테-의 최소단면적 mm²
L=경사스테-의 길이 또는 가렛트스테-의 평균길이 mm
H=경사스테-의 1단 또는 가렛트스-데의 1단 중앙부로부터 평판면에 수직으로된 길이 mm
fz=스테-재료의 「허용내력」 kg/mm²로서 다음 표에 의할 것

(JES)

보이라용강재	제 1 종	7.5
"	제 2 종	8.0
" 강판	제 1 종	7.5
" "	제 2 종	8.0
파이프스데-일 때		5.0



제55조 구라운 스테-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 = \frac{cd^2t}{(W - P)DW} \quad \text{또는} \quad t = \frac{P(W - P)}{DW \cdot cd^2} \dots\dots\dots (20)$$

- P=제한압력 kg/cm²
- D=구라운스테-의 중심거리 mm
- t=구라운스테-관 중앙부의 두께 mm
- d=구라운스테-관 중앙부의 높이 mm
- W=구라운스테-량 단지지부의 간격 mm
- p=구라운스테-상부 보루트의 중심거리 mm
- c=정수(재료의 항장력이 39kg/cm²으로 되는 때는 다음 표에 의한다.

스테-보루트	1분	500
" "	2분 또는 3분	750
" "	4분 또는 5분	820
" "	6분 또는 7분	880
" "	8분 이상	900

재료의 「항장력」이 fkg/mm²로 되는 때 C의 정수는 전표에 표시한 수에다

$\frac{f}{39}$ 를 승한 것으로 한다.

제56조 연관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 = \frac{700(t-1.5)}{d} \quad \text{또는} \quad t = \frac{Pd}{700} + 1.5 \quad \dots\dots\dots (21)$$

p=제한압력 kg/cm² 다만 P ≤ 25kg/cm²

t=파이프의 두텁이 mm d=파이프의 외경 mm

이상의 식으로 산정한 보이러용 인발강관(引拔鋼管)의 최고 「허용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JES)

외경mm \ 두텁이mm	2.6	2.9	3.2	3.5	4.0	4.5	5.0
38	20.2	—	—	—	—	—	—
40	19.3	24.5	—	—	—	—	—
45	17.1	21.3	—	—	—	—	—
50	15.4	19.6	—	—	—	—	—
55	—	17.8	21.6	—	—	—	—
60	—	16.3	19.8	23.3	—	—	—
65	—	15.1	18.3	21.5	—	—	—
70	—	14.0	17.0	20.0	25.0	—	—
75	—	—	15.9	18.7	23.4	—	—
80	—	—	14.9	17.5	21.8	—	—
85	—	—	14.0	16.5	20.6	—24.7	—
90	—	—	13.2	15.5	19.4	23.3	—
95	—	—	—	14.7	18.4	22.1	—
100	—	—	—	14.0	17.5	27.0	25.4

제57조 수관(水管)의 강력에 대한 제한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 = \frac{100(t-1.5)}{dj} \quad \text{또는} \quad t = \frac{Pd_j}{100} + 1.5 \quad \dots\dots\dots (22)$$

p=제한압력 kg/cm²

t=파이프의 두텁이 mm

dj=파이프의 내경 mm

두텁이mm 외경mm	2.0	2.3	2.6	2.9	3.2	3.5	4.0	4.5
25	23.8	-	-	-	-	-	-	-
30	19.2	31.6	-	-	-	-	-	-
35	-	26.3	31.6	-	-	-	-	-
40	-	-	27.6	-	-	-	-	-
45	-	-	24.5	-	-	-	-	-
50	-	-	-	31.7	-	-	-	-
55	-	-	-	28.4	35.0	-	-	-
60	-	-	-	25.8	31.7	-	-	-
65	-	-	-	23.6	29.0	-	-	-
70	-	-	-	21.8	26.7	-34.5	-	-
75	-	-	-	-	24.8	31.7	-	-
80	-	-	-	-	23.1	29.4	34.7	-
85	-	-	-	-	21.6	25.6	32.4	-
90	-	-	-	-	20.3	24.1	30.5	-
95	-	-	-	-	-	22.7	28.7	34.9
100	-	-	-	-	-	21.5	27.1	32.9

상기의 산식에 의하여 선정된(JES) 인발강관(引拔鋼管)의 최고허용압력은 상기표와 같다. 화염측(火焰側)에 배치된 2렬의 수관의 두텁이는 산식(22)에 의하여 산정한 두텁이에 0.3mm이상을 가한 것으로 한다.

제58조 안전변의 총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게 할 수 없다. 강관제 보이라(증관은 제외한다)

$$F=15H \sqrt{\frac{1000}{pr}} \dots\dots\dots (23)$$

p=제한압력 kg/cm²

F=안전변의 총면적 mm²

H=전열면적 m²

r=제한압력에 대응하는 증기 1m³의 중량 「kg」

제 4 장 원동기실

제59조 원동기는 전용건물 또는 적당히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일러의 외측과 천정사이에는 12cm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할 것
2. 관채를 로출한 보일러 또는 바-티갈보일러는 전호외에 그 외측과 턱사이에 45cm이상의 거리를 가져야 할 것

다만 관동의 내경 500mm이하 길이 1.000mm이하인 것은 30cm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61조 로출한 보일러의 외측 또는 금속성 연돌에서 12cm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서 피복을 하여야 한다.

보일러 또는 보일러 설치장소에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의 외측에서 12c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방화를 위한 장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로 한다.

제62조 보일러실에는 2개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로 한다.

제63조 제59조 내지 제62조는 이동식 보일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기관사 및 기관장

제64조 기관사 면허증이 없는 자는 보일러를 취급할 수 없으며 기관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관사의 지도밑에 그를 취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5조 기관사는 1.2.3급의 3종으로 구분하되 기관사 면허증은 기관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1. 1급기관사는 3년이상, 2급기관사는 2년이상, 3급기관사는 1년이상 보일러를 취급한 자
2. 18세이상의 조선공민으로서 사상과 신체가 건전한 자
3. 기관사 면허의 취소를 받고 1년이 넘은 자

제66조 기관사 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정 치
2. 기관구조(설계 및 재료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3. 보일러 취급
4. 연료 및 연소
5. 원동기 단속에 관한 법령
6. 신체 검사

제6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관사 시험의 전부 또는 1부를 면제한다.

1. 1급기관사

- (1) 공업전문학교 또는 고등기술원양성소 기계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기관과를 졸업한 자
- (2) 기술자격증(기계)을 소지한 자 및 전호와 동등이상의 학식경험이 있다고 공업기술련맹의 추천을 받아 소관 도내무부장이 인정하는 자
- (3) 2급기관사 면허증을 받고 2년이상 보이라를 취급한 자

2. 2급기관사

- (1) 전호(1)에 규정한 이외에 학교(기능자양성소는 포함하지 않는다)에서 기계 또는 기관과를 졸업한 자
- (2) 본항(1)과 동등이상의 학식경험이 있다고 공업기술련맹의 추천을 받아 소관 도내무부장이 인정하는 자
- (3) 3급기관사 면허증을 받고 2년이상 보이라를 취급한 자

제68조 기관사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양식 제16에 의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관 도내무부장은 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양식 제17호에 의한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양식 제18호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 기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관 도내무부장은 그 면허를 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화재 또는 보이라의 폭발 및 이에 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2. 2년이상 보이라 취급에 종사치 않을 때
3. 제65조제2호에 해당치 않을 때
4. 기관장으로 인정받은 기관사가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전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곧 기관사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당 도내무부장은 기관사면허의 정지기한이 만료한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70조 기관사 면허증을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양식 제19호에 의하여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보이라 설치자는 보이라에 관한 일체책임을 질 기관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 전열면적 합계 25㎡이상 또는 제한압력 7kg/cm²이상의 보이라에는 1급기관사
2. 전열면적 합계 5㎡이상 25㎡미만 또는 제한압력 2kg/cm²이상 7kg/cm²미만의 보이라에는 2급기관사

3. 기타 보이라에는 1급 2급 3급 기관사

보이라 설치자가 본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의 리력서 및 기관사 면허증 사본을 소관 도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면측정장치는 1일에 1회이상 그 기능을 검사할 것
 2. 관수의 오락에 주의하여 자주 배수할 것
 3. 급수장치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할 것
 4. 안전번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끔 시험할 것
 5. 기관검사중에 기재된 「제한압력」을 초과시키지 말 것
 6. 위해방지에 주의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실 안전대책을 할 것
- 기관설치자는 기관장이 전항의 각호를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6 장 수 수 료

제73조 관체검사, 준공검사, 갱신검사, 수선검사, 재사용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표 제 1호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기관사시험 기관사면허증 재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제73조 제74조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서 신청서에 첨부할 것이며 신청자가 소인하지 말 것
기납의 수수료는 환부하지 않는다.

제 7 장 과 태 금

제76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에 위반한 자는 그 원동기의 사용을 3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정지 또는 2,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제77조 제24조 내지 제5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그의 영업을 3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정지 또는 2,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제78조 제76조, 제77조를 적용할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를 법적으로 처단한다.

부 칙

제79조 「원동기단속규정」(1948년 2월 3일 북조선인민위원회내무국명령 제2호)은 이를 폐지

한다.

그러나 검사 신청중에 있는 원동기는 종전대로 취급한다.

제80조 본규정을 공포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본규정 제34조 내지 제42조까지의 안전규격에 대하여는 본규정 공포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규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1조 「원동기단속규정」(1948년 2월 3일 북조선인민위원회내무국 명령 제2호)에 의한 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규정에서 합격한 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

내 무 상 박 일 우

(양식 제1호)갑

도내무부장 앞

보이라 설치신청서

하기보이라를 설치하고자 별지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설치자

성 명

인

1	설치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에 있어서는 그의 명칭 대표자성명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3	설치지명 번지	
×4	설치장 주위의 상황	
×5	보이라 실의구조 및 그 면적	
6	사용의 목적	
7	1일의 최대 사용기간	
8	연료의 종류 및 1일 최대소비개산	
9	분화방법	
×10	보이라의 설치기초 및 연도의 구조	
×11	보이라부속설비의 종류 대수 및 배치	
	(1) 급수장치의 종류능력을 표시하는 표준 및 개수	

◇ 화약류 단속에 관한 규정

(1949. 10. 30 내각결정 제14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인민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화약류에 대한 기술 및 취급 기능 향상을 보장하며 부정취급으로 인한 폭발사고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과 같은 화약, 폭약, 화공품 및 폭발물질품을 말한다.

1. 화약 - 흑색화약 무연화약
2. 폭약 - 기폭제 각종 폭발약
3. 화공품 - 뇌관 완연도화선(1센치 메트로 연소시간 1초 이상을 요하는 것)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4. 폭발물질 - 액 산소, 염소산, 가리, 피크린산 린트로칠 기타 화약류의 원료로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

제3조 전조에 규정한 화약류의 제조 배급 취급사용 운반, 저장 처분은 본규정에 의한다.

제4조 화약류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산업성 직속 제조공장 이외에는 이를 제조 시험 변조하지 못한다.

화약류 제조공장 책임자는 별표 양식 제1조에 의한 화약류 제조 및 배부 명세서를 비치하여 매월말 현재로 그 다음날 10일까지 소관 도(평양시를 포함한다-이하도 이와 같다)내무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화약류의 배급은 따로 규정한 바에 의하여 화약류 배급소에서 이를 취급한다.

화약류 배급소는 별표 양식 제2, 3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부의 매월분 사본을 매월말 현재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관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화약류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종류, 수량, 용도, 소비기간 및 장소, 저장법을 기입한 신청서에 사용 장소의 위치 및 부근 약도를 첨부하여 사용지의 소관 도 내무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지가 그 도 이상에 걸쳤을 경우에는 주로 소비하는 지역의 소관 도 내무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에 있어서 수량은 6개월 이내에 소비할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전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 내무부장은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양식 제4호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화약류에 관한 허가증은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효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허가증을 교부한 도 내무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화약류에 관한 허가증을 상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교부한 도 내무부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야간에 있어서 화약류를 취급하려고 하는 자는 안전대책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 소관 도 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제 조

제10조 화약류 제조공장은 안전시설을 완비한 후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관 도 내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 시험의 목적으로서 소량의 화약류를 제조하려고 하는자는 전항에 준한다.

제11조 화약류 제조공장에는 1급화약류취급면허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12조 화약류 제조공장에는 제조 시험 취급상 필요한 시험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화약류를 수합할 때에는 반드시 별표 양식 제5호에 의한 증별, 수량, 수합, 년월일 및 수합자가 기명 날인한 수합 전표를 넣고 용기 외상의 각각 다른 면에 3개소 이상 봉인 하여야 한다.

제14조 화약류 제조공장에 있어서 화약류의 연료 제품 및 불량품의 운반 저장 처분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양도 양수 운반

제15조 산업성 직속의 화학류 제조 공장 및 배급 기간을 제외한 혹은 단체에서 화학류를 양도 양수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제7조에 의한 허가증을 소관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 제조 공장 및 배급 기관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별표 양식 제6호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산업성 직속의 화학류 배급소는 도 내무부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화약류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 화약류 배급소는 전조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할 때에는 그 허가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화약류 배급소는 화약류 제조 공장에서 접수한 화약류를 입고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의 외상에 제13조에 의한 봉인의 완전여부를 검사하되 운반 도중에 개함 또는 개함한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로 내무기관에 보고하여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해당 배급소장이 새로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 화약류를 자동차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액체 연료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반드시 위험 방지상 특별한 설비를 한 후 소관 도 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화약류를 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휴대할 것.
2. 만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간수인을 세우는 동시에 보안원으로 하여금 호송케 할 것이며 또한 화약이라는 두자를 백지에 적서한 기(중 60센지메트로 이상 횡 70센지메트로 이상)로써 이를 표시할 것.
3. 운반인 및 간수인은 성냥 기타 발화물을 가지거나 화약류에 접근하여 흡연 혹은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4. 화약류는 연화성물, 충격 위험물, 습성물 등과 혼적하지 말 것.
5. 용기는 밀폐한 후 견고히 적재하되 일광이 직사하지 않도록 피복을 하며 마찰, 동요, 충돌, 전도 추락의 염려가 없도록 할 것.
6. 운반도중에는 시행하되 주먹이 조밀하거나 화기있는 장소 또는 인화성물을 축적한 위험한 장소를 통과하지 말 것.
7. 2대 이상의 운반구를 연행시킬 때에는 그 거리를 10메트로 이상으로 할 것.
8. 운반구에 적재하는 화약류는 보통화물 적재량의 3분의 2이내로 할 것.
9. 운반중 정류 휴식 할 때에는 안전한 위치를 선택하고 간수할 것.
10. 운반중에 숙박을 하게 될 때에는 소관 내무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할 것.

제21조 화약류를 변장 또는 가장하여 다른 물건과 혼포 소지운반 탁송을 할 수 없다.

제4장 취급 사용 처분

제22조 화약류를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자는 취급 면허장이 있는 취급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화약류 취급 책임자는 화약류의 출납, 사용, 운반, 저장 기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해당 도 내무부장은 화약류 취급자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속 책임자와 연락하여 조동시킬 수 있다.

제23조 화약류 취급 면허장(별표 양식 제7조)은 1급, 2급, 3급의 3종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

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급은 내무성에서 2, 3급은 해당도 내무부에서 별도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심사한 후 이를 교부한다.

1. 1급

- (1) 공업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약류에 관한 학과를 습득하고 1년 이상 직접 화약류를 취급한 자.
- (2) 전문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약류에 관한 학과를 습득하고 3년 이상 직접 화약류를 취급한 자.
- (3) 2급 면허증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5년 이상 직접 화약류를 취급한 자.
- (4) 이상과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

2. 2급

- (1) 전문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약류에 관한 학과를 습득하고 1년 이상 직접 화약류를 취급한 자.
- (2) 3급 면허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화약류 취급한 자로서 화약류의 성능을 분석하며 발파 작업을 지도할 수 있는 자.
- (3) 이상과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

3. 3급

- (1) 1년 이상 직접 화약류를 취급한 자.
- (2) 해당 도 내무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항에 의한 신청서는 본적, 현주소, 성명, 직업 및 면허장의 종류를 기재하며 이력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화약류 취급 면허장을 교부한 도 내무부장은 교부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장을 반납시킬 수 있다.

제25조 화약류 취급 면허장은 각 도를 통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화약류 취급 면허장을 받은 자가 주소의 변경 또는 개명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한 신청서를 10일 이내로 화약류 취급 면허장을 교부한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약류 취급 면허장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분실, 도난, 훼손된 년월일 및 그 사유를 기입한 신청서를 화약류 취급 면허장을 교부한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화약 취급 면허장을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때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곧 사망 혹은 행방불명이 된 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와 화약류 취급 면허장을 그를 교부한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화약류 취급 책임자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한 자가 그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선임 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력서 및 면허장 부분을 첨부하여 10일 이내로 해당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약류 취급 책임자를 해임시켰거나 또는 해임 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임 년월일 및 사유를 구비한 서류를 해당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간 20,000Kg 이상의 화약 또는 8,000kg 이상의 폭약을 취급하는 화약류 취급 책임자는 2급 이상의 면허장을 가진 자에 한한다.

제28조 화약류 취급 및 소비하는 자는 별표 양식 제8호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출납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9조 화약류를 취급 및 소비하려고 하는 자는 화약류 출납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화약류 출납책임자는 공장 및 배급소에서 접수한 화약류의 용기의 외부에 설치한 봉인은 완전 여부를 검사하여 개함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즉시 해당 내무기관에 보고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화약류 출납 책임자는 일 계속작업 시간중 사용할 분량 이외의 화약류를 발파 책임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발파 책임자는 업무가 끝난 후 즉시로 사용수량을 해당화약류 출납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사용 잔여수량을 별표 양식 제9호의 반납 전표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출납 책임자는 전항의 보고서와 잔여수량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수량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반납 전표에 기명 날인하여 발파 책임자에게 교부한 후 별표 양식 제10호에 의한 화약류 출납부에 매일 출납 상황을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취급 소비하는 자는 매월의 출납 및 소비량을 익월 10일까지 매년의 취급 및 소비량을 익년 1월 10일까지 별표 양식 제11호에 의하여 해당 도 내무부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화약류 취급 및 소비자를 관할하는 내무부장은 화약류 취급 및 소비자가 채용하는 화약류 출납책임자에게 대하여 변경의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속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조동시킬 수 있다.

제30조 화약류를 발파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뇌관 협 목제, 다짐대 목제 휴대상을 비치하여야 하며(동기에 있어서는 용해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발파 작업에 경험이 있는 발파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발파 책임자는 출납 책임자로부터 인수한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별표 양식 제12호에 의한 발파 설계도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약류 취급자 및 소비자를 관할 하는 내무서장은 화약류 취급자 및 소비자가 채용하는 발파 책임자에 대하여 변경의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속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조동시킬 수 있다.

제31조 폭약류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동결한 폭약은 소정한 용해기로서 섭씨 45도 이하의 온도로써 서서히 용해시킬 것.
2. 전호의 용해작업 및 장비(제약준비)는 일정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3. 장전 및 전색은 목재 다짐대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4. 전색용 전입물은 진흙 또는 폭발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발파를 주택지 및 도로가 있는 곳에서 할 때에는 반드시 멍석 가마니 철망 등을 폭발개소에 덮고 기타 위험 방지를 충분히 한 후 실시할 것.
6. 점화할 때에는 미리 폭발지 부근에 경고하여 피난시킨 후 실시할 것.
7. 점화 후에는 폭음에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불발한 것이 있을 때 또는 불발한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전기점화법에 의할 때에는 발파 모선을 점화기에서 분리시킨 후 기타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점화후 20분을 경과한 후에 장전 개소에 가서 검사할 것.
8. 발파 책임자는 폭발후 반드시 폭발 개소를 엄밀히 검사하여 위험 방지상 필요한 처리를 할 것.
9. 불발한 장약 또는 전입물을 굴출하지 말고 발파 책임자의 지도에 의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도록 적당하게 처리할 것.
10.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처치를 하고 소관 내무기관에 보고하여 그의 지도를 받기 전에는 현장을 변경하지 말 것.

제32조 화약류의 불량품을 처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종류 수량 처분할 시일 방법 및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한 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당 도 내무부장은 별표 양식 제13호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화약류 불량품의 처분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초산염을 주로 한 화약류의 불량품은 수중에 방지할 것.
2. 전호 이외의 화약류 불량품은 넓은 장소에서 조금씩 연소할 것.
3. 화약류의 불량품은 종류를 불문하고 해안에서 10키로메트로 이상의 수중에 버릴 수 있다.

제34조 화약류 불량품으로 불량 정도가 경한 것은 다른 화약류와 분리하여 소관 내무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5장 제 장

제35조 화약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이외에는 화약고 또는 창고에 저장하여

야 한다.

1. 토목공사 기타 일시적 사업에 요하는 화약류는 그 사업중 임시 저장소에 저장할 것.
2.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에서 양륙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계류선 또는 창고선에 일시 저장할 때
3. 광업용에 사용하는 화약류의 저장에 대하여서는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소관 도 내무부장이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저장할 때
전 1, 2호에 해당되는 선박 또는 장소에 있어서는 장소설비 또는 선박의 설비 또는 계류의 위치와 저장할 화약류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을 소관 내무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관 내무서장은 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각호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36조 화약류 저장소를 신설하려고 하는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를 신설한 지역을 관할하는 도 내무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자의 주소, 성명, 연령 및 직업
2. 화약류 저장소의 종류
3. 위 치
4. 저장할 화약류의 종류 및 저장소비에서 적재하는 방법
5. 저장소의 설계도 구조 및 부근 4정보내의 약도
6.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기일
7. 간수 방법
8. 임시 저장소에 있어서는 전각호 이외에 화약류를 요하는 사업 및 기간을 기입할 것.

제37조 화약류의 저장소는 소관 도 내무부의 검사를 받기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화약류 저장소의 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전항에 준한다.

제38조 제43조에 규정하는 최대 수량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있어서는(창고를 제외한다) 그 외벽에서 다음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1. 학교 변경, 휴정양소, 중요공장, 중요건물, 공원, 전기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소 및 발화물을 축적한 장소, 철도궤도, 선박의 항로 계류소 또는 시가지에서 400메트르 이상되는 거리
2. 주택지, 1, 2등 도로, 전선가스 전도관 일상적으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기타 해당도 내무부장이 지정한 개소에서 900메트르 이상되는 거리
창고는 그 외벽 주위에 180센치메트로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약류 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에 대하여는 전 1,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 전조의 거리에 있어서 해당 도 내무부장은 지형 또는 설비의 조건에 따라 위험의 염

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에 의한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단축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0조 화약고의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장제, 철근 콘크리트제, 연와제 또는 석조의 단층 건물로 할 것.
2. 지붕의 외면에는 금속판, 석반판, 연와 또는 불연성을 사용 할 것.
3. 고벽을 토장제, 철근콘크리트제의 부분의 두텁이는 15센치메트르 이상으로 하고 연와제 또는 석조의 부분의 두텁이는 21센치메트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창에는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지 말고 방화의 설비를 할 것.
4. 창고의 내면은 돌, 기와 또는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류를 노출시키지 말 것.
5. 피뢰침 또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피뢰침은 그의 첨두에서 옥단의 엄격한 점에 이르기까지의 직선과 45도 이내의 각도를 보유할 것.

피뢰침은 년 1회 이상 우기전에 검사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수선을 할 것.

6. 화약고 주위에는 고벽의 외측면부터 제각까지는 180센치메트르 거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고벽에 접근하여 토제를 만들 것.

화약고가 둘 이상 상접할 때에는 각 고간의 토제는 서로 겸할 수 있다.

토제의 입구는 제외에서 화약고를 드러다 볼 수 없는 정도로 토제의 일단을 곡절 연장하며 또는 입구 전면에 다시 토제를 만들거나 혹은 토제의 입구를 굴식으로 하고 그 양단에는 견고한 문을 만들 것.

토제의 높이는 화약고의 옥상높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부의 두텁이는 90센치메트르 이상으로 하고 제면은 지체로써 덮을 것.

제각은 토제의 높이의 3분의 1에 이르기까지 석축, 연와축 또는 콘크리트제로 할 것.

다만 화약고를 지하 또는 수상에 설치할 때 와지형 또는 부근 조건 및 특별한 설비에 의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 창고의 설비는 전조에 준하되 다만 피뢰침 및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약하고 토제에 대한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벽의 외측면에 접촉하고 높이는 창고의 치마끝 높이와 같이 하고 상부에는 두텁이 60센치메트르 이상으로하여 자갈이 혼입하지 않도록 흙으로 쌓은 외층에 의하여 돌려 쌓고 입구의 토제를 약할 수 없다.
2. 창고의 입구는 위험의 염려가 없는 측면에 설치하고 그 전체가 엄체가 없을 때에는 그 문을 견고하게 할 것.

제42조 임시 저장소의 설비는 화약고의 설비에 준하되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목조 또는 토장의 단층건물로 하고 외면은 불연성물로서 덮을 것.
2. 옥상의 외면은 금속판, 석반판 혹은 기와 또는 경량의 불연성물로서 덮을 것.
3. 저장소의 내면은 돌기와 또는 토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하고 철류를 노출시키지 말 것.
4. 피뢰침 또는 이에 대응하는 장치를 할 것.
5. 주위에는 토제를 만들 것.

제43조 화약류 저장소에 저장하는 화약류는 그 종류별로 1동에 대하여 다음의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종류 \ 수량	화 약 고	창 고	임시저장소
화 약	37,500kg	45kg	18,750kg
폭 약	18,750 "	22.5 "	9,375 "
뇌 관	3,000,000개	10,000개	300,000개

화약류 저장소에 있어서는 21실을 1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화약류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화약류 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1. 화약, 폭약
2. 무연화약
3. 화공품

그러나 창고에서 저장할 수 있는 수량 이내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불연성물로서 만든 격벽에 의하여 차단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하지 않는다.

제45조 화약류를 화약류 저장소에 저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벽에서 30센치메트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고 하부에는 9센치메트르 이상되는 침목을 놓고 용기를 쌓을 것.
2. 각종 다이내마이트류의 약포는 횡으로 놓을 것.
3. 적당하게 환기를 할 것.
4. 화약고에 한난제를 비치하고 온도조절을 하여 화약류의 품질 보존에 주의할 것.

제46조 화약류 저장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경계에는 적당한 울타리를 만들고 경계판을 세우고 간수인을 둘 것.
2. 산림내에 설치한 저장소에 있어서는 그 울타리 외측의 주위를 통하여 넓이 2메트르 이상의 방화지대를 만들 것.
3. 저장소 내에서는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말 것.

4. 저장소내에는 철류 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품을 가지거나 신을 신고 출입하지 말 것.
5. 저장소 내에서는 화약류 이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말 것.
6. 저장소 내에서는 휴대전등 이외의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저장소에서 폭발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하고 즉시로 소관 내무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도를 받기 전에는 현장을 변경시키지 말 것.

제47조 화약류를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약류는 건조성 유지로써 포장하지 말 것.
2. 화약류의 용기의 외상에는 철류를 노출시키지 말 것.

제6장 보 칙

제48조 본 규정에 의하여 내무성 및 내무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관 내무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49조 화약류의 상실 또는 도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해당 내무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화약류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재해 도난 기타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한 다음 즉시 행정 내무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51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법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그러나 그 행위의 위험성이 경할 때에는 형벌 대신에 소관 단속기관은 2,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과할 수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할 때의 그 화약류는 이를 몰수한다.

제4편 농업, 수산, 산림

제 1 절 농 정

◇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관한 규정

(1950. 2. 21 내각결정 제42호 별지)

제1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선진적 농업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노력 농가들에게 생산적 협조를 줌으로서 농업생산량을 더욱 높이기 위한 국영기업소이다.

제2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경지 및 기타 작업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 또는 농가들과의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농림성에 직속하여 농림상에게 복종한다.

제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자기 사업에 있어서 지방인민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져야 하며 이들 기관들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사업에 일상적 원조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제6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트랙틀, 빠-르크로서 노력농가들의 농지기경과 기타의 농촌 경리작업(탈곡, 선종 농기구수리 국가수납장에 농산물운반 등)을 실시하고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임경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받는다.

제7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축력을 소유하지 못한 노력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농지의 면적과 지형에 있어서 트랙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민 상호간의 현의로서 트랙틀로 기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의 경작농민들과 농지 기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한 면적을 종합적으로 기경한다.

제9조 트랙틀 기경전 준비작업(논두렁 마스기, 농경지 트랙틀 통행로 수확물철수 등) 및 트랙틀 기경후 논두렁 작성 등은 농가 자신이 자기의 노력과 경비로서 제때에 실시하여 트랙틀 경지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와 농가간에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경소가 실행한 작업들은 트랙틀 작업반 반장 또는 트랙틀 운전수(혹은 기타 농기계 임경소의 대표자)가 해당 농민에게 약트로서 이를 인계한다.

그러나 실행한 작업이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농민은 해당 임경소에 대하여 다시 기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개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트랙틀 빠-르크 농기계 빠르크 유류창고(유류 및 윤활유창고) 수리공장 및 자동차 빠-르크 등을 가진다.

제1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지도일꾼들은 다음과 같다.

1. 지배인
2. 기사장겸 부지배인
3. 군중문화 부지배인
4. 부기장
5. 유류창고 책임자
6. 수리공장장
7. 계약 및 임경료 수납책임자
8. 순회기계 기수(지구 기계 기수)

제1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자기의 작업실행을 위하여 농기계 임경소의 기본적 생산단위로 되는 트랙틀 작업반을 조직한다.

제15조 매개 트랙틀 작업반을 3~4대의 트랙틀과 그에 해당되는 부속농기구들로써 구성된다.

작업반은 트랙틀 작업반장이 이를 지휘한다.

제16조 트랙틀 작업반의 반장 및 반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트랙틀 빠르크 그의 설비품 기구 및 자재들의 보관에 대하여 물질적 책임을 진다.

제17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들의 토의해결 및 농기계 임경소와 관계되는 지방주민들간에 직접적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국영 농기계임경소에 국영 농기계임경소 협의위원회를 조직한다. 국영 농기계임경소 협의위원회의 성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제18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협의위원회는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위원장), 부지배인(기계 기사), (부위원장), 군중문화부지배인(부위원장), 부기장 계약 및 임경료 수납책임자, 임경소작업지역의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농기계 임경소 작업의 20% 이상이 실시되는 면인민위원회 위원장들로서 구성된다. 이외에 국영 농기계임경소협의위원회에는 농기계임경소 작업이 광범히 실시되는 지역의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모범작업반장, 국영농기계임경소 트랙틀운전수, 그의 일부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도일꾼, 열성농민, 열성노동자들도 참가할 수 있다.

제19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협의위원회의 성원은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의 내신에 의하여 농림상이 이를 비준한다.

제20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협의위원회는 중요한 농사작업전에 소집하여야 하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제의 또는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전체 작업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21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협의위원회는 협의기관이며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의 어떠한 명령 또는 지시든지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지배인은 내각수상이 임면하며 부지배인(기계기사), 군중문화 부 지배인 및 부기장은 농림상이 이를 임면한다.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기타 지도일꾼들은 농림상의 비준을 얻어 지배인이 임면하며 노동자 사무원들은 지배인이 직접 이를 임면한다.

제23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지배인은 그의 유일한 책임자이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모든 생산재정 운영 및 그 계획실행과 농가들과의 체결된 계약에 의한 의무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4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은 직접 농림상에게 복종하며 다만 상 부상 및 농림성 내의 국영 농기계 일꾼들의 명령과 지시만을 수행한다.

제25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은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모든 물질적 제반 시설과 재정을 관할하며 반드시 준비된 생산재정계획과 예산에 의거하여 그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은 농림상의 명령 지시 및 내각결정지시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27조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 농민들과의 체결된 계약에 의한 제반사업을 보장할데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완전히 실행하도록 조직 지도한다.
2.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및 수선자재의 공급을 조직한다.
3. 트랙틀의 올바른 기술적 운영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높은 작업능률을 부단히 보장한다.
4.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며 또 그를 옹계 보관한다.
5. 트랙틀 작업반에 대하여 부단히 사업상 지도를 한다.
6. 국가재산의 최대의 절약 및 트랙틀 작업의 질적보장으로서 그의 원가저하를 위하여 투쟁한다.
7.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생산수리와 작업노동자들 및 기타에 대한 임금지불을 제때에 보장한다.
8.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전체 재산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9. 국영 농기계임경소 노동자 사무원들의 안전기술과 로동보호에 대한 대책들을 실시한다.
10. 국영 농기계임경소 일꾼들의 물질문화 생활상 조건들을 보장한다.
11. 국영 농기계 임경소 노동자 사무원들 및 전문가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2.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생산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3. 지방농민들 속에서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목적과 과업에 대한 광범한 해설사업을 전개한다.

14. 기계 트랙틀 빠르크 및 그의 운영과 통계방법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제28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전체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기술적 지도자이며 트랙틀 빠르크 생산과 기술적 운영문제들에 대한 지배인의 보조자이다.

제29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자기사업에 있어서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의 명령지시, 농림상의 명령지시, 기계와 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과 규정 등에 의하여 지도한다.

제30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지배인과 함께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기술적 상태와 옹바로 운영 및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생산계획 완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 전문적 지식과 선진기계·기구의 도입 사용 및 그 연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2. 트랙틀 농업기계 및 자동차 운전수 등의 기술적 옹바른 운영을 조직한다.
3. 기계 및 트랙틀 빠르크의 기술적 관리와 수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4. 트랙틀 작업반들에게 작업시의 기술적 방조를 조직 보장한다.
5. 트랙틀 빠르크의 기술적 상태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타 시설들에 대한 검열을 정기적으로 자신이 직접 실시한다.
6. 내각 혹은 농림성에서 제정한 기준범위내에서 연료 유효율 예비부속품 및 수리자재들의 소비정량과 한계를 제정하고 그 한계이내로 연료 자재를 절약하며 기계능율을 제고시킴으로서 국가의 수익성을 높임에 부단히 노력한다.
7. 지배인과 함께 트랙틀 작업과 개별적 트랙틀들의 이동배치일람표를 작성하며 그의 실행을 감독한다.
8. 트랙틀 농업기계 및 자동차들의 수리산업 실시를 조직지도하는 동시에 수를 계획 실행을 질적·양적으로 보장한다.
9.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수리공장 또는 기계수리공장에서 수리한 모든 트랙틀 농업기계 및 자동차들을 자신이 직접 검수한다.
10. 기계 트랙틀 빠르크와 기타 비품들을 기술적으로 옹게 보관하도록 조직 지도한다.
11.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매개 기계에 대한 검사증 교부사업을 실시한다.
12.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순회 기계기수(지구 기계기수) 및 수리공장장의 사업을 지도한다.
13. 트랙틀 작업반 반원과 순회 기계기수(지구 기계기수) 및 수리공장장들에게 트랙틀 농기

계 운영 및 그 수리에 대한 방법을 교시한다.

14. 기계기술 일꾼들의 기술학습을 조직 지도하며 또 그들의 기술자격을 검열한다.

제32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군중문화부 지배인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술자 사무원 및 국영 농기계 임경소 명령 구역내 지방농민들 속에서 국가재산 애호(트랙틀 기계) 및 절약(연료 자재등)에 대한 사상을 인식시키며 기타 일반적 군중문화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제3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군중문화부 지배인은 자기의 사업을 국영 농기계임경소 지배인의 명령지시 및 농림상의 명령 지시에 의하여 지도하며 선전 선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선전성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군중문화부 부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일꾼들의 정치적 자각성 제고에 토대하여 그의 생산활동 향상 노동 생산능율의 제고 작업의 질적개선, 농가와 체결된 계약의 엄격한 준수 등을 위하여 투쟁한다.
2. 트랙틀작업반 트랙틀운전수 및 수리공들 속에서 노동경쟁을 조직 지도한다.
3. 트랙틀작업반 트랙틀운전수 및 수리공들 속에서 노동경쟁을 조직 지도한다.
4.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선진적인 트랙틀 작업반장 트랙틀운전수 및 수리공들의 경험을 보급한다.
5.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협조를 받는 농가들은 광범히 망라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국영 농기계 임경소와 체결한 계약조건들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영 농기계 임경소 활동지역내의 농민들에게 국영 농기계임경소의 목적과 임무에 대한 해설사업을 적극 실시한다.
6.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일꾼들과 국영 농기계 임경소 활동지역내의 농민들에게 정부의 결정과 농촌경지의 선구자들의 경험을 소개 선전한다.
7. 자기의 전문지식 수준의 향상과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술 및 생산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제35조 부기장은 농기계 임경소의 부기통계와 결산에 관한 일체 문제들에 대하여 조직지도 및 실행의 책임을 진다.

제36조 부기장은 임경소 전체 부기일꾼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37조 부기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1. 일체 자금과 자재들에 대한 통계를 제때에 정확히 작성한다.
2. 생산 재정활동에 관한 일체 사무와 그의 결과를 제때에 총결한다.
3. 부기결산과 바란스를 제때에 올바르게 분석 작성한다.

4. 트랙틀작업반과 수리공장 및 유류창고에 있어서의 통계와 결산문제들에 대하여 조직 지도 감독한다.
5. 자금 및 자재의 올바른 출납과 생산재정활동에 관한 사업을 일상적으로 엄밀히 감독한다.
6. 트랙틀 작업반 수리공장 및 유류창고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열 분석 종합사정한다.
7. 부기 문서들을 옹계 보관한다.

제38조 부기장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자금 및 자재들의 낭비에 대한 미연에 방지할 대책들을 세운다.

제39조 부기장은 자금 또는 자재출납과 관계되는 일체 발란스를 위한 기타 서류에 서명(지배인 다음)한다.

제40조 부기장은 임경소의 지배인과 함께 재정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1조 부기장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수준 제고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임경소의 다른 일꾼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계와 결산방법을 습득케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 농민 시장 관리 운영에 대한 (림시) 규정

(1964. 2. 12상업성령 제7호)

(1) 농민 시장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1) 대도시에는 필요한 수의 상설시장을 설치 운영하며 규모가 작은 시와 읍, 로동자구 및 오랜 기간 시장이 운영되어 온 지점들에서는 정기시장을 조직 운영한다.
- 2) 농민 시장은 주민들의 리용에 편리하도록 도시 중심거리에서 떨어진 주민지구에 설치한다.
- 3) 농민 시장의 규모는 지방 설정에 따라 해당 시(구역) 인민위원회가 정한다.
농민 시장에는 채소류 매대, 조미료 매대, 과일류 매대, 수산물 매대, 초물류 매대, 가축 및 가금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기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정기 시장 날자는 도(직할 시) 인민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농민 시장 관리 운영은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담당 수행하며 정상적인 보수 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 5) 농민 시장에서는 시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상기 규정 제3조 참조)

(2) 농민 시장에서의 판매 활동은 다음에 의한다.

- 1) 협동 농장원은 자기가 생산한 농부산물과 분배 받은 고구마를 시장 가격으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다.

농민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협동 농장원들은 협동 농장원증(신분을 확인하는 증

명서 포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 관리원이 그것을 보일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보여 주어야 한다.

2) 협동 농장은 직매점 또는 연합 직매점을 설치하고 농장에서 생산한 농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3) 농민 시장 내에는 식료품수매상점, 직매점, 잡화 상점, 식당, 해당 구역 농목장 직매점, 염색 및 수리 수선망을 설치 운영한다.

4) 농민 시장에 수매상점, 직매점에서는 협동농장과 협동농장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위탁판매 또는 수매할 수 있다.(상기 규정 제4조 참조)

(3) 농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종(구역 상업망은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채소류, 조미료, 산채류, 과일류, 산과실류

2) 돼지, 개, 토끼, 염소, 가금류

3) 각종 육류(소고기는 제외),란류, 수산물

4) 각종 초물 제품 기타 농부산물과 부업 산물(상기 규정 제5조 참조)

(4) 량곡(농장원들이 분배받은 고구마는 제외)과 그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식료품은 매매할 수 없으며 개인들이 소지한 일체 공업상품은 수매상점에서만 매매할 수 있고 농민 시장 내에서의 매매 행위는 금한다.(상기 규정 제6조 참조)

(5) 농민 시장 내에서 판매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농민 시장내에서 일체 모리 간상 행위를 금한다.

2) 농민 시장 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들과 상업 도구 등 국가 및 사회재산을 애호 관리하여야 한다.

3) 농민 시장에서 국가 법률들을 철저히 준수하며 일체 비위생적이며 비문화적인 행위와 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4) 농민 시장 내에서 공중 도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상기 규정 제7조 참조)

(6) 시장 관리원의 임무

1) 시장 내에서 모리 간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일체 비위생적이며 불결한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시장 내 질서를 보장하며 판매자들의 요구에 따라 도량형기와 필요한 도구를 알선하여 주며 위탁 판매, 위탁 보관 등 편리를 도모하여 주어야 한다.

3) 시장 내 시설과 도구들을 애호 관리하며 방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 제8조 참조)

(7) 시 (구역), 군 인민위원회와 시장 관리원은 농민 시장 내에서 본 규정을 위반하고 모리 간상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 징수한다. (상기 규정 제9조 참조)

◇ 국가식량배급에관한규정

(1950. 3. 24 내각지시 제156호)

제 1 장 일반적 규정

제 1 조 국가식량배급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2 조 국가식량배급은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및 정당,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실동일수(노동법령 또는 내각결정 지시에 의한 휴식일, 명절일 및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배급한다.

주 :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휴가기간이라 함은 노동법령에 의한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직장책임자의 승인 밑에서 자기의 개인사고로 임금을 받지않는 단기 휴가기간, 병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실동하지 않았으나 이에 해당하는 법규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보장되는 기간 및 기타 국가사업으로 직장 이외에 동원된 기간을 말하며 무단결근한 날은 배급하지 않는다.

제 3 조 국가식량배급은 2중으로 실시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식량배급은 매월 내각 수상이 비준한 한도내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배급펀드를 받지 않거나 또는 배급펀드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 5 조 국가식량배급은 매월 상순, 중순, 하순의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은 21일부터 월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분을 배급한다.

그 기간을 넘어 전회분을 소급하여 배급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적 조동에 의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수배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전수배직장책임자가 발행한 국가식량배급정지증명서(양식 제8호 이하 생략한다)에 의하여 계속 배급할 수 있다.

주 : 1. 소급하여 배급할 수 없다 함은 국가식량을 배급 받을 대상자 해당기간내에 배급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새 직장에서의 작업은 10일부터 실시하였으나 배급수속은 중순 12일에 완필되었을 경우에 그 대상자에게 11일부터는 배급을 줄 수 있으나 상순분 10일분은 배급할 수 없음을 말한다.

주 : 2. 국가 식량배급정지증명서에는 전 수배지 최종월분의 국가식량배급표 부표를 첨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급 대상 및 배급 기준량

제 6 조 국가 식량배급대상은 국가적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된 노력계획 또는 국가기구정원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식량배급대상직장의 해당 중앙기관(해당 상급기관 및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기관이라 약칭한다) 책임자로부터 내각 양정국장에게 제출한 직장별 신청서를 내각 양정국으로 하여금 심의 등록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7 조 국가식량배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권기관, 국영기업소, 국영상점, 국가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보장기관 등 국가기관 협동단체와 그의 상점, 기업소, 조국전선산하의 각 정당, 사회단체, 기타 내각에서 승인한 기관 및 민영기업소들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교원, 의료인, 예술인, 내무원 및 대학생 연구생 간부양성기관 학원들 및 그들의 부양의 의무를 가진 처, 만14세 미만의 직계비속(학교장의 재학증명서가 있는 14세이상의 학생도 포함한다). 남자 만65세, 여자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국가 사회 보장에 관한 규정(1951년 8월 30일 내각결정 제322호 별지)에 의한 증명서 또는 기타 국가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가진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존속,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그들의 제매 또는 무의, 무탁하여 실지 부양하고 있는 형제의 자녀로서 만14세미만에 달한다.
2. 군관과 배급대상자로 있다가 입대한 전사, 하사의 부양가족 또는 「국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1951년 8월 30일 내각결정 제322호 별지)에 의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는자와 부양가족들로서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자(배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1항)에 준한다.
3. 전 1, 2항의 대상자로서 영농하여 식량의 보장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에 한하여 배급하되(농촌 이급기관에서 복무하는 자는 본인에게도 배급하지 않는다)영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양가족들이 따로이 직업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때에는 본인에 한하여 배급하고 그 부양가족들에게는 배급하지 않는다.

제 8 조 국가 식량배급대상자에 대한 급별 부문별 노동종별 분류는 다음표에 의한다.

급 별	부 문 별	노 동 종 별
—	광산탄광 부문	갱내 채탄광 및 채광공 갱내 지주공 굴진공 및 수굴공
급	금속부문	선철공 편로공 대형압연공 증협압연공 후판압연공 박판압연공 단조공 축로공(황철 김책제철 강선제강 성진제강 및 카-바이트 축로공에 한함)제련용광로 공 와사발생로공(황철 김책제철 강선제강에 한함)
	철 도 부 문	증기기관차 기관사, 조사, 연료원
	운 수 부 문	원양항해선 기관사, 조사

급 별	부 문 별	노 동 종 별
	<p>사회보장 부문</p> <p>기 타 부 문</p> <p>각 부 문</p>	<p>영예군인학교학생, 보양소입소자, 정휴요양원, 영예전상자, 병원환자</p> <p>제 역 공</p> <p>엔지니어, 특수트랙크운전공, 운반선 선원, 운반공(1개 50kg이상 중량물을 일상적으로 운반하는 자에 한함), 양곡하조공, 공장제조소, 기업소, 기타 현장 실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사 및 기수(생산 및 기술부서 지도일꾼 포함) 그러나 2급에 해당하는 노동종별에 종사하는 자라도 견습공은 제외한다.</p>
三 급	각 부 문	<p>1급 2급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종별에 종사하는 노동자전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펠셀약제사, 축산수의사, 고급중학교·기술전문학교 이상 교수, 부교수, 교원 및 교학, 시학, 편수, 연구원(교학 시학 편수 연구원은 대학교원이상 자격자에 한함), 간부양성기관, 교원, 내무원, 전화교환수, 전신통신사, 방송원</p>
四 급	각 부 문	<p>각 부문에 종사하는 사무원,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교원, 조제사, 간호원, 간병원, 조산원, 입원환자, 대학생, 전문학교학생, 간부양성기관의 학원 민주선전실장, 판매원, 기관연락원, 잡부, 취사부, 경비원, 사회보장법에 의한 정기보조금 또는 의료상 방조를 받는자, 육아원 보육원과 탁아소의 보모</p>
五 급	각 부 문	<p>국가식량배급대상자 부양가족중 고급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애육원 양로원 양생원의 입소자</p>
六 급	각 부 문	<p>국가식량배급대상자 부양가족중 인민학교 및 초급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p>
七 급	각 부 문	<p>국가식량배급대상자의 부양가족 육아원 원아</p>

급 별	부 문 별	노 동 종 별
	화 학 부 문 전 기 부 문 토 건 부 문 탐 산 부 문	소-다전해소수리공 카-바이트전로공 표백분실 층공 계소철전로공 고압외선공 잠수공 잠함공 별목공 유별공 배미리공
二 급	광산, 탄광 부문 금 속 부 문 철 도 부 문 기 계 부 문 화 학 부 문 건 재 부 문 전 기 부 문 체 신 부 문 토 건 부 문 수 산 부 문 임 산 부 문	갱내의 운반공(전문적으로 갱의운반을 할 때에는 3급에 해당)갱내지도원, 갱내보선공 및 층진공, 박토 공, 갱내차도공(탄광에 한함) 및 샤프나운 전공, 드 라크랭운전공, 삭도, 주유공, 갱내등장공, 갱의승차 공, 채광공, 착암공, 대활공, 광석하조공, 잔도리우운 전공 전기로공, 소형압연공, 조피공합금철전로공 해탄제 조공, 소형압연공 조피공, 합금철전로공, 해탄 제조 공, 노상기증기운전공, 가열공, 분괴공, 소결공(제련 소에 한함)선철원료공, 제강원료공, 반사로공(1,300 도 고열 작업이상) 선로원, 전기기관차, 기관사, 조사 제강공, 주물공, 조선목수 및 조립공 4톤이상 증기 기관사(4톤이상 증기보이라 화부를 포함)단 야공 뜨 락뜰 운전수 수운정류기 수리공(2,500K 이상), 아람담 파쇄공, 석질하조공, 카바이트 분쇄공 비료하조공 초자제판공 외 선 공 체신설로공 방부공 연공(고층작업수) 어로장, 어선기관사, 어로원 소발구 운재공, 편별공, 짐시리공, 까끼침목공, 산 지짐재공(수라운재를 포함), 토장짐재공(케도, 토장 짐재포함), 원목목도공, 관류공, 카소링, 차운전공, 재탄공, 원목투입공, 통혈공, 인거공

제9조 국가식량배급대상 직장중에서 부업경리에 종사하는 일꾼들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이외는 국가식량은 배급하지 않는다.

제10조 국가식량배급대상으로 등록된 정원내라 할지라도 직종을 유용하거나 또는 그가 부당한 노력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국가식량배급 대상인원에서 제외한다.

주: 1. 정원이란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일정한 소관기관의 관리기구 종업원의 전체수 즉 인원정수를 말한다.

2. 직종유용 이란은 노동자 사무원간 또는 유용한 직종이 동일한 노동직종이라 할지라도 생산노력을 비생산노력(부업경리 관계잡부등)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제11조 국가식량배급 기준량은 다음에 의한다.

1급	1인1일당	900그램
2급	"	800 "
3급	"	700 "
4급	"	600 "
5급	"	500 "
6급	"	400 "
7급	"	300 "

제12조 국가식량배급의 전량백미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입원환자
2. 애국열사 유자녀학원 원아
3. 애육원 및 육아원 원아

제 3 장 배급대상 등록절차

제13조 국가식량배급대상의 등록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국가식량배급대상의 중앙기관 책임자는 국가기구 정원위원회 결정 또는 국가적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된 노력계획에 의하여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신청서(도별 평양시를 포함한다 직장별로 각각 2통씩)를 작성하여 내각 양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각양정국장은 이를 심의 확정하고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로 해당도 및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장에게 국가식량배급대상 승인통지서를 시달하는 동시에 그 등본 1통을 관계중앙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에서는 전항의 국가식량 배급대상 승인통지서를 접수한후 5일이내로 해당시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국가 식량배급 대상승인통지서를 발급하

는 동시에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대장(양식 제10호1-이하 생략한다)에 등기하여야 한다.

3. 시, 군, 구역 양정과에서는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로부터 시달받은 국가 식량배급 대상 승인 통지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국가 식량배급대상 등록대장(양식 제10호2-이하 생략한다)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급 수속 절차

제14조 국가식량배급수속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식량배급 대상자가 처음으로 식량배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국가식량배급신청서(양식 제1호-이하 생략한다)에 해당 사실을 정확히 기입한 후 거주 및 숙박등록부와 함께 해당 리인민위원회(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이하 리인민위원회라고 약칭한다)에 제출하여(리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해당 숙박책임자) 그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독신자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복무하는 직장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리인민들의 명부와 거주 및 숙박등록부를 대조하여 부양가족의 해당여부와 겸업관계 토지경작 관계를 실지 조사하여 이를 확인 증명하여야 한다.
3. 직장 책임자는 새로 등록하려고 하는 대상자로 부터 제1항에 의한 국가식량배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정확여부를 재확인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국가식량배급 대상자등록신청서(양식제2호-이하 생략한다) 2통을 작성하여 본인이 제출한 국가식량 배급 신청서와 함께 해당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는 제3항에 의한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신청서를 접수 검토하고 즉시로 국가식량 배급대상등록대장에 등록 정리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이 식량배급신청서에 검인을 하고 이를 직장책임자에게 회송하여야 한다.(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신청서 1통은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비치한다)
5. 국가식량 배급신청서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갱신한다.
6. 직장에 집단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국가식량배급대상자의 부양가족, 군무자, 부양가족「국가사회보장에 관한 규정」(1951년 8월 30일 내각결정 제322호 별지)에 의한 대상자와 그의 부양가족, 영예군인학교 학생, 연구생, 간부양성기관에 입소한 학원의 부양가족 및 기타에 대한 국가식량배급 수속은 각 소관 시, 구역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 각항에 준하여 이를 집행하되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접수하여야 할 증빙문건은 다음과 같다.

㉑. 군무자 부양가족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군무자가 복무하는 부대장이 발행한 복무 증명서

㉒. 배급대상 직장에 복무하는 자의 별거 부양가족은 그의 부양의무를 가진 본인이 복무하는 직장책임자가 발행한 복무 증명서

㉓.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규정」(1951년 8월 30일 내각결정 제322호 별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사회보장과에서 발행한 증명서

㉔. 영예군인학교 학생, 연구생, 간부양성기관에 입소한 학원의 부양가족은 각각 해당 학교 책임자가 발행한 재학증명서

(2) 시,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상 각호 증명서에 의거하여 그의 부양가족이 확실히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전3항에 준한 국가식량수배절차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15조 국가식량배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될 때의 대상정원 증감은 따로이 내각 양정국장의 승인을 받지않고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에 포함된 직장에 한한다)

1. 동일한 도 또는 평양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1) 이동할 직장소재지의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는 이동할 직장책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국가식량배급대상이동통보서(양식 제9호-이하 생략한다)와 해당 직장책임자가 발행한 국가식량배급정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통보하고 그 상황을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2) 대상직장의 이동을 접수한 해당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는 전(1)호의 노고에 의거하여 전입한 국가식량 배급 대상에 대하여 국가식량 배급대상 등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2. 도 평양시간에 이동하는 경우

(1) 이동할 직장소재지의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는 이동할 직장책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그 직장의 이동상황과 식량배급정지증명서를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2)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에서는 전(1)호에 의하여 식량배급대상 이동 통보서와 식량배급 정지증명서를 이동하는 상대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정처에 통보하고 그 상황을 내각 양정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식량배급대상등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3) 내각 양정국장은 전(2)호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국기식량배급대상등록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 (4) 식량배급대상중에서 직장에 복무하는 본인이 이동할 때에는 해당 직장 책임자가 발행한 국가식량배급 정지증명서에 의하여 국가식량을 배급하고 전 1, 2항에 의한 수속을 생략한다.

제 5 장 식량배급표 교부 및 식량배급 절차

제16조 제14조 3항에 의하여 등록된 배급대상 직장에 대한 국가식량배급표 교부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직장책임자는 매월 5일까지 해당직장 복무자중 이미 등록된 국가식량배급대상자를 급별로 종합집계하여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그달분 국가식량배급표 교부신청서(양식 제4호-이하 생략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는 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국가 식량배급표에 교부신청서를 심의검토한 후 해당 수량의 국가식량배급표(양식 제5호-이하 생략한다)에 각각 해당 인민위원회 양정과의 직인을 날인하여 직장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국가 식량배급표 수불대장(양식제7호)에 기입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장책임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 국가식량배급표를 교부받으면 이에 해당사항을 각각 정확히 기입함과 동시에 해당 배급대상자의 전월분 무단결근기간 또는 국가량표 전도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제한 1개월분의 국가 식량배급표의 절취표(이하 절취표라 약칭한다)와 부표를 대상자에게 그의 부양가족분까지 각각 교부하고 본표 해당란에 대상자의 수표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부양가족분까지)에게 교부하는 절취표에는 해당직장책임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국가 식량배급표에서 공제한 절취표는 본교에 첨부하여 자기직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7조에 의한 국가식량배급표의 부표와 절취표를 교부받은 배급대상자는 이를 자기가 희망하는 식량배급소에 등록하고 매순마다 소정의 국가식량을 수배받는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식량배급소는 부표와 절취표에 의하여 소정의 국가식량을 배급하고 부표는 수배자에게 환부한다.

제19조 국가식량배급 실시에 있어서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국가식량을 낭비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한자 또는 해당권한있는 기관의 병결 증명서없이 규정일자(3일간)

를 경과하여 결근한 자에게 배급한 수량을 정기배급에서 공제하지 않았거나 기타 본 규정
에 위반되는 부정수배량을 해당수배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국가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3. 식량배급관계 증빙문건을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식량을 절취 또는 횡령할 조건을
지어줄 경우

제20조 국가식량배급은 본인이 등록한 식량배급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1조 배급대상 직장에 복무하는 자의 부양가족 및 근무자 부양가족이 별거하여 있을 때에
는 직장책임자 또는 해당 부대장은 별거하는 가족의 식량수배를 위하여 제14조5항(1)에
의한 본인의 복무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장책임자와 부대장은 전조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 또는 재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부양가족 거주지 시, 구역, 면 인민위원회 양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집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추궁받는다.

제23조 학생에 대한 국가식량배급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제8조 5급 6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 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부양
가족에 포함시켜 배급하되 재학증명서는 매년 10월 1일, 4월 1일 현재로 두번 갱신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재학증명서를 발행한 학교 교장은 해당학생이 졸업 또는 퇴학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로 해당학생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가진자가 복무하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다.
3.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또는 간부양성 기관의 학원에 대한 배급수속절차는 학교단위로
한다.

제24조 입원환자의 식량배급은 국가식량 배급대상자 및 영예군인에 한하여 배급하되 국가식
량 배급정지 증명서를 접수하고 이를 배급하여야 한다.

입원하기전에 이미 배급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량을 본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식량배급표 및 양표

제25조 국가량표(양식 제3호-이하 생략한다)는 내각 양정국에서 발행하여 시, 군 인민위원
회 양정과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국가 식량배급표는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양정과에서 발
행하여 대상자에 각각 교부한다.

제26조 전조에 의한 국가식량배급표는 등록된 배급소에 한하여 통용하며 국가량표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서 통용한다.

제27조 국가 배급표는 300 g 권, 400 g 권, 500 g 권, 600 g 권, 700 g 권, 800 g 권, 900 g 권의 7

중으로 하며 국가량표는 100 g 권, 200 g 권, 300 g 권의 3종으로 하여 수배대상자의 배급기준량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28조 국가량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사용하며 행당량은 기본식량 배급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

1.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출장지(조동 소환 기타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학생, 학원들이 입학하는 기간과 졸업하고 직장에 돌아가는 기간 배급대상자 및 영예군인으로써의 퇴원환자 또는 정휴 요양원의 입소 또는 귀환기간
3. 내각의 지지에 의하여 내각 양정국장이 지시한 국가식량배급대상직장 이외의 노동자 사무원 및 기타인원

제29조 국가식량배급표와 국가량표의 보관관리는 현금을 보관 관리하는 것과 같이 엄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식량배급표와 국가량표의 정확한 수불을 위하여 내각양정국 도, 시,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부서 및 배급대상 직장에서는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내각양정국 및 도,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부서
 - (1) 국가량표 수불대장(양식 제13호)
 - (2) 국가식량배급표 수불대장
2. 대상직장
국가량표 수불 및 교부대장(양식 제14호)

제 7 장 배급폰드 신청 및 지시 절차

제31조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그달 상순 배급대상 등록인원의 급별 통계와 전달 정기배급 소비실적(정국량) 및 다음달 소요급별 인원을 그달 12일까지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고 전향에 준하여 16일까지 내각 양정국장에게 보고하여 다음달 배급폰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내각 양정국장은 제31조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와 국가적 인민경제계획에 근거하여 다음달 소요식량 수량을 사정하고 18일까지 내각수상의 비준을 받아 19일까지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며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5일까지 관할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에 해당 식량배급폰드를 시달하여야 한다.

제 8 장 식량 배급소

제33조 국가식량배급은 국영상점 및 소비조합 또는 노동물자 공급기관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내각 양정국장이 승인한 대상직장에 대하여는 따로이 자체로 식량배급소를 가질 수 있다.

제34조 식량배급소는 다음의 표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군에 있어서는 매개면에 1개소
2. 시(평양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수배자 2,000세대당 1개소
3. 국영 상점망이 없는 생산 운수직장에 1개소

제35조 식량배급소 책임자는 해당 기일 배급실시 2일전까지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 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배급 소요량을 운반하여 제때에 국가식량배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식량배급에 소요되는 현품의 운반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배급소 소재지에서 4km정도의 거리의 창고에서는 배급소에서 운반할 책임을 진다.
2. 4km 구역내에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양정부서에서 책임지고 식량배급소에 운반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식량배급소는 매일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식량의 수불과 보관 관리를 엄밀히 하는 동시에 배급잉여미는 국가식량에 편입하여야 한다.

1. 국가식량의 장부상 잔고와 현품과의 대사
2. 절취표와 식량배급 실적의 곡종별 수량과의 대사

제38조 식량배급소에는 국가식량수불대장(양식 제11호)을 비치하고 국가식량의 수불실적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식량배급소에서는 절취표에 의거하여 식량배급을 실시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식량배급소는 수배자로 부터 접수한 해당 반기 절취표에 의하여 그 정확을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수량을 국가식량 판매전표(양식 제6호-이하 생략한다)에 의하여 계산정리하고 소정의 식량을 배급하여야 한다.
2. 절취표는 판매전표에 첨부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식량배급소에서는 매일 배급실적을 총화하고 제38조에 의한 문건을 정리하는 동시에 그 날 배급한 절취표와 국가식량 판매전표를 상호 대비하여 그의 정확여부를 검토한후 본 증빙문건을 그달 상순분은 13일까지, 중순분은 23일까지, 하순분은 다음달 3일까지 식량배급실적보고서(양식 제12호)에 첨부하여 소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1통은 해당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구 구역 상업관리소 및 시, 군, 소비조합에서는 전3항에 의한 국가식량배급실적보고서와 절취표를 엄밀히 대조 검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절취표 및 국가량표는 엄격히 보관하여야 한다. 절취표 및 국가량표는 엄

격히 보관하여야 하되 3개월이 경과한 절취표와 국가량표는 양곡검열원의 입회하에서 소각할 수 있다.

5. 수배자가 소지하고 있던 국가 식량배급표 부표는 사용완료와 함께 해당 자기 직장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직장에서는 이를 국가식량 배급표 본표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량표에 대한 배급실시 절차도 전 각 항에 준한다.

제9장 기타 규정

제40조 국가적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된 노력계획에 의하여 분기별로 식량배급 대상 정원을 승인받은 직장으로서 다음 분기 대상인원이 승인되지 못하였거나 지연 되었을 때에는 이미 승인된 대상 정원내의 분기말 실제인원으로써 계승하여 1개월간을 배급할 수 있다.

제41조 생산 및 기본건설에 관련된 직장들의 국가식량배급대상 인원내에 대하여는 해당 직장 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분기 평균정원내에서 월별로 조정하여 배급할 수 있으며 계절노력에 있어서도 해당 중앙기관 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간노력에 있어서도 해당 중앙기관 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간노력 범위내에서 내각양정국장은 분기별 조절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43조 본 규정은 1952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식량 배급대상 등록신청서

(양식 제2호)

○○ 시 군 구역 양정과장 앞

직장에서 시, 군, 구역 양정과
장에게 제출하는 분

배급대상정원		급 별	이미등록 된 인원	새로이 등록하 려는 인원	비 고
직종별	정원수				
노동자		1급			
기술자		2급			
사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계			

직 장 명

직장책임자명

년

월

인

일

국가식량배급표 교부신청서

(양식 제4호)

○○시, 군, 구역 양정과장 앞 (월 순분)

구 분 급 별	이미등록을 완 필한대상인원	배급표교부 신청인원	배급표교부인원 (양정과에서 기입)	비 고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계				

직 장 명

책 임 자 명

인

년 월 일

국 가 식 량 배 급 표

(양식 제5호)

국가식량배급표 본표(500그램)		_____	_____	_____	_____		
대상자성명 및 수표 _____							
부양가족성명 _____							
상	순		중	순		하	순
-----결-----취-----선-----							
배급표 4월 500g권 1	배급표 4월 500g권 10	11	20	21	31 30		
배급표 4월 500g권 2	9	12	19	22	29		
3	8	13	18	23	28		
4	7	14	17	24	27		
5	6	15	16	25	26		
국가식량배급표부표(500그램)		_____	_____	_____	_____		
대상자명 _____		직장명 _____					
부양가족성명 _____		수배배급소명 _____					
_____ 인민위원회 양정과							

국 가 식 량 판 매 전 표

(양식 제6호)

_____년 _____월 _____일

급별	연인원수	수량	목종별	수량	단 가	금 액	
계			계				

국가식량배급표 수불대장

급 별 _____

(양식 제7호)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고	비 고

국 가 식 량 배 급 대 상 이 동 통 보 서

(양식 제19호)

직장명

현주소

이동하는 주소

배 급 대 상				이 동 하 려 는				참 고
승인된 정원		현재배급대상자		대상자(직분별)		대상수배인원		
승인일자 년 월 일	1 급	명		노동자	명	1 급	명	이동하는이유
	2 급					2 급	"	
승인문서번호 No.	3 급			사무원		3 급	"	
	4 급					4 급	"	
대상인원	5 급			기술자		5 급	"	
	6 급					6 급	"	
노동자	명	7 급				7 급	"	
사무원	"							
기술자	"							
	"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상기와 같이 대상직장의 정원 이동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군(도) 인민위원회양정과 (처)장 ○ ○ ○ 인

(양식 제10호1)

도 별 부문별 국가식량배급대상 등록대장(중앙·도)
 시·군·별

대상승인		적요	증감대상정원					누 계				
월 일	문서번호		노동자	사무원			계	노동자	사무원			계

(양식 제11호)

국 가 식 량 수 불 대 장

곡종명

(식량배급소)

년 월 일	적 요	장 부 상 잔 고			현 물 실재고량	잉어미	비 고
		받은것	나간것	현재고			

○ 잉어미는 즉시로 국가양곡에 편입시켜야 한다.

급 별 배 급 량

	배 급 인 원	배 급 연일수	배 급 기준량	배 급 수 량	참고	구분별 배급실적	
						구 분	배급실적
1급						ㄱ. 식량배급포에 의한 정기배급	kg
2급							
3급						ㄴ. 영세농민 및 전재 민 배급	
4급							
5급						ㄷ. 지도서에 의한 수 시배급	
6급							
7급						ㄹ. 국가량포에 의한 배급	
계							

규격 27.2cm × 19.5cm

작성 년월일

식량배급소

책 임 자

인

국 가 량 표 수 불 대 장

(양식 제13호) (국·도·시군에서 사용)

(시군은 본 양식에 준하되 따로히 직장별로
구좌를 가질것)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량			
		100 g 권	200 g 권	300 g 권	계	100 g 권	200 g 권	300 g 권	계	100 g 권	200 g 권	300 g 권	계

제 2 절 토 지 개 혁

◇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 3. 5 북조선 임시인민위)

제 1 조 북조선 토지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의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영에 의거된다.

제 2 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여좌함.

-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 자의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제 3 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여좌함.

- ㄱ. 농호에 5정보이상 소유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지
- ㄴ. 자경치 않고 전부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 ㄷ. 면적에 불관하고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전토지
- ㄹ. 5정보 이상으로 소유한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 4 조 할양되지 않는 토지는 여좌함.

- ㄱ.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소유지
- ㄴ.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반일본침략투쟁에서 공로있는 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조선민족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로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제 5 조 제 2조, 제 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함.

제 6 조

-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자,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 처리에 위임함.
- ㄴ. 자기노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분할치 아니함.
- ㄷ. 자기노력으로 자경할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서 다만 타향에서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제 7 조 토지를 농민소유로 분여하는 식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차를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료됨.

-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부담에서 면제함.
-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할양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자와 농민의 일체의 부채는 취소함.
-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 제11조 지주의 축력, 농업기구, 주택의 일체 건축물, 대지등은 제8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보류됨.
- 제13조 농민들이 소유한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전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소유된 관개시설의 전부는 무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됨.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군·면인민위원회에 부담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없는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부담됨.
-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그 시부터 실행력을 가짐.
- 제17조 토지개혁실행은 1974년 3월 말일전으로 필할 것.
토지소유권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전으로 교부할 것.

북 조 선 임 시 인 민 위 원 회

위원장 김 일 성

서기장 강 량 욱

◇ 土地改革法令에 關한 細則

(1946. 3. 8.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金日成 批准)

一九四六年 三月 五日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決定된 北朝鮮土地改革法令의 實施章程

第一章 土地改革을 實施할 農村委員會의 組織과 그 任務

第一 土地改革法令(以下「土地法令」이라 略稱한다) 第十五條에 依하여 土地改革을 準備하고 土地改革을 實施하기 爲하여 各 農村의 雇傭者, 土地없는 小作人, 土地적은 小作人의 總會에서 舉手의 多數로 그 農村의 人口數에 따라서 五人 乃至 九人의 農村委員會를 選舉하여 農

村委員會를 組織한다.

面人民委員會는 各 農村委員會의 成員을 承認할 것이며 農村委員會는 面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서 工作하여야 한다.

第二 農村委員會의 實行할 任務

一. 土地法令 第三條「ㄱ」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할 地主에게 所屬된 建物農具畜力種穀 灌溉施設及建物 및 果樹園等を 急速히 調査하여 群細히 台帳에 記錄하고 이 모든 것을 沒收하기까지 完全히 保管하겠다는 증서를 받고 그 地主에게 任置할 것. 이와 同時에 沒收될 物件을 損傷하거나 盜取하는 境遇에는 地主가 法的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을 注意 시켜야 한다.

二. 土地法令 第二條, 第三條에 依하여 沒收될 一切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三. 土地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가지게 될 雇傭者, 土地없는 農民 및 土地적은 農民等を 調査하여 統計할 것이며 그들의 所有地 人口數 및 年齡別等を 調査할 것이며 또 그들이 小作하던 地主의 土地面積을 調査하여야 한다.

四. 沒收된 土地를 雇傭者, 土地없는 農民 및 土地적은 農民等에게 分與할 案을 作成하여 面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萬一 面人民委員會의 決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農村委員會는 土地分與案을 郡人民委員會의 審議에 붙일 것이며 萬一 郡人民委員會의 決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道人民委員會의 最後決定을 받아야 한다.

人民委員會는 二日內로 農村委員會代表의 參加下에서 土地分與案을 審議 決定하여야 한다.

五. 人民委員會가 土地分與案을 承認한 後에는 곧 그 案의 實施에 着手할 수 있으며 또 農民에게 土地를 分與할 수 있다.

六. 土地法令 第七條에 依하여 土地所有權에 對한 證明書를 交付하기 爲하여 土地分與를 畢한 後에 土地가진 雇傭者及農民의 名簿를 곧 面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이며 土地改革을 實施한 後 十日以內로 面人民委員會는 郡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이 名簿를 道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二章 沒收될 土地

第三 土地法令 第二條, 第三條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한다.

第四 面人民委員會의 任務

一. 日本飛行場, 射擊場, 倉庫의 一切 所有地 및 其他 日本軍隊管轄에 屬하였던 非耕作地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公有地로 된다.

二. 土地法令 第二條「ㄴ」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할 農戶名簿를 確定하여 道人民委員會의 承認을 얻을 것. 親日派를 暴露하기 爲하여 이 事業에 廣範한 農民群衆을 引入하여야 한다.

第五 土地法令 第三條「ㄱ」項에 依하여 每戶에 五疇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한 朝鮮人地主의 土地는 이것을 一切 沒收한다. 이것은 自己의 土地를 全部 小作주거나 雇傭勞力으로 耕作하는 地主에 限한 것이고 五疇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하더라도 土地의 一部分을 自力으로 耕作하며 一部分을 小作주는 土地所有者에 있어서는 다만 小作을 준 土地만 沒收한다.

〈첫째例 : 八疇步의 土地를 所有한 土地所有者가 三疇步는 自力으로 耕作하고 五疇步는 小作을 주었다면 小作준 土地 五疇步만 沒收한다.〉

〈둘째例 : 七疇步의 土地를 所有한 地主가 自力으로서 耕作하지 않고 寄生蟲的 生活을 하는 卽 三疇步는 小作을 주고 四疇步는 雇傭勞力으로 耕作하는 地主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

〈세째例 : 六疇步의 耕作地와 二疇步의 果樹園을 所有한 土地所有者가 果樹園은 自力으로 經營하고 六疇步의 耕作地는 小作을 주었다면 果樹園은 地主의 所有로 남기고 六疇步의 耕作地는 沒收한다.〉

〈네째例 : 七疇步의 土地를 所有한 者가 小作을 주지 않고 自力으로 耕作하였다면 그 土地全體가 그의 所有로 된다.〉

第六 土地法令 第三條「ㄴ」項에 依하여 自力으로 農業을 經營하지 않고 土地全部를 小作주는 土地所有者의 土地는 沒收된다. 이 項은 土地所有面積에 不關하고 農村經理와 隔離되어 土地를 自己가 耕作하지 않는 所有者에 限한다. 例하면 四疇步의 土地를 所有한 土地所有者가 都市에 居住하면서 土地全部를 小作주었다면 그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

第七 土地法令 第三條「ㄴ」項에 依하여 五疇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한 教會, 僧院 및 其他 宗教團體의 土地는 沒收한다. 이 項은 自記의 土地를 小作주거나 雇傭勞力으로 耕作하는 方法으로써 農民과 雇傭農民을 搾取한 目的으로 利用하는 教會와 僧院에 限한 것이고 自己의 勞力으로 耕作하는 教會, 僧院 및 其他 宗教團體의 土地를 沒收한다는 것은 아니다.

〈첫째例 十二疇步의 土地를 全部 小作주는 教會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

〈둘째例 八疇步의 土地中에서 五疇步는 雇傭勞力으로 耕作하고 三疇步는 小作을 주었던 그 教會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

〈세째例 九疇步의 土地中에서 三疇步는 自力으로 耕作하고 六疇步는 小作주었다면 小作준 六疇步만 沒收한다.〉

第八 外國人の 土地에 對하여서는 朝鮮人の 土地所有者에 對하여서와 같이 土地法令이 實施된다. 따라서 外國人の 土地도 土地改革法令 第二條, 第三條에 指摘한 土地와 같이 되는 境遇에는 沒收된다.

第九 社會團體의 土地도 土地法令 第三條에 指摘한 土地와 같이 되는 境遇에는 沒收될 수 있다.

第十 朝鮮에 入籍하지 않고 主로 都市附近에서 菜園經營하는 外國人에게 小作人 土地는 沒收하여 人民委員會에 財源으로 編入한다.

人民委員會는 契約에 依하여 元小作人에게 耕作權을 許與한다.

第十一 學校, 病院 및 科學研究所의 土地는 割讓치 아니한다. 學校의 土地는 비록 最近까지 繼續的으로 小作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割讓치 아니하나 今後에 있어서는 小作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學校는 그 土地를 學生이나 學父兄의 힘으로 耕作하여 그 收穫을 學校事業에 使用하여야 된다.

萬一 學校가 土地를 耕作할 形便이 못된다면 土地는 人民委員會에 委讓하여야 한다.

第十二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反日本帝國主義鬭爭에서 功勞있는 者와 및 그의 家族 또는 民族文化發展에 特別한 功勞가 있는 者와 및 그 家族의 土地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特別한 決定에 依하여 割讓되지 않는다. 卽 朝鮮解放運動에서 열성으로 鬭爭한 革命者 또 여러 해동안 監獄生活하던 革命者, 武器를 잡고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奮闘하던 遊擊隊員, 現在 民主主義의 새朝鮮의 建設을 爲하여 重大한 國家社會及政治事業을 하는 者, 朝鮮의 民族文化科學藝術의 發展을 爲한 事業에 功이 있는 科學者, 文士, 藝術家, 배우 등이 此에 屬한다.

第十三 土地改革前에 自發的을 自己土地를 農民에게 分與해 준 地主의 建物과 物資는 沒收하지 않는다.

第三章 土地分配

第十四 雇傭者와 土地없는 農民과 土地적은 農民에게 分與하기 爲하여 沒收한 土地를 가장 正當하게 分配할 目的으로써 各 農村에서는 土地再分割을 반드시 實施하여야 한다.

土地法令 第二條에 依하여 沒收한 全土地는 再分割에 붙인다.

農民의 個人所有로 있던 土地는 再分割에 들지 아니한다.

小作人에게 土地를 再分割할 때에는 그 小作人에게 土地를 再分割할 때에는 그 小作人에게 配當된 土地面積에 依하여 그가 以前에 耕作하던 地面을 반드시 그에게 分與하여야 한다.

小作人의 配當面積을 超過하는 土地는 土地를 所有치 못한 農民에게 分與하기 爲하여 반

드시 分割하여야 한다.

第十五 雇傭者와 土地없는 農民과 土地적은 農民에 對한 沒收된 土地의 分配은 「家族數와 그 家族內의 勞働能力을 가진 者의 原則」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例하면 計算方式은 다음과 같다.

男	一八歲—六〇歲	一點
女	一八歲—五十歲	一〃
青年	一五歲—一七歲	〇, 七〃
小兒	一〇歲—一四歲	〇, 四〃
同	九歲以下	〇, 一〃
男	六一歲	〇, 三〃
女	五一歲	〇, 三〃

例하면 한 農戶가 九人의 家族中

男女 二〇歲—四五歲까지의 家族이 三人

男女 一五歲—一七歲까지의 家族이 一人

男女 一一歲—一四歲까지의 家族이 二人

男女 九歲以下の 家族이 一人

男子 六一歲以上の 家族이 二人

이 있다면 土地分配에 있어서 五, 二點의 土地가 配當될 것이다.

第十六 土地分配에 있어서 반드시 土地의 質을 參酌하여야 한다.

第十七 土地를 적게 가진 農民에게 土地를 分配할 때에는 그 農民의 元來土地面積과 合하여 分配定量을 超過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四章 果樹園과 果木

第十八 各 道人民委員會는 土地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面人民委員會로 하여금 十日以內로 果樹園과 果木에 對한 正確한 統計를 作成하여 道人民委員會의 管理에 委任케 하여야 한다.

第十九 各 道人民委員會는 沒收한 果樹園의 保護栽培 및 適當한 經營과 將來의 利用에 對한 方針을 決定하며 此를 細分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五章 山 林

第二十 土地法令 第十三條에 依하여 農民의 所有한 小山林을 除外한 一切 山林은 이것을 沒收하여 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管理한다.

第二十一 日本人地主 및 僧院等の 一切 山林은 沒收한다.

第二十二 墓地에 屬한 山林은 沒收하지 아니한다.

第二十三 各道人民委員會는 各道內의 山林을 接收하여 山林內에 있는 採伐한 木材를 調査 統計하기 爲하여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여야 한다.

이 委員會는 山林의 不法의 採伐과 盜取에 對한 保護策을 實施한다.

第六章 灌溉施設及建物

第二十四 各面人民委員會는 土地法令 第十四條에 依하여 沒收되는 諸般灌溉施設及建物を 接收하여 保護하며 修理하며 適當하게 利用하도록 準備하여야 한다.

一九四六年 三月 八日

北朝鮮臨時委員會

農林局長 李 舜 根

◇ 土地所有權證明書交附에 關한 細則

(1946. 5. 22)

一. 北朝鮮土地改革法令 第七條에 依하여 土地를 農民에게 分與하는 同時에 土地所有權證明書(以下 單히 證明書라 한다)를 該農民에게 交附하여야 한다.

二. 證明書는 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所有한 農民과 土地改革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農民에게만 交附한다.

三. 證明書와 證明書交附에 關한 臺帳(以下 單히 證明書交附臺帳이라 한다) 二通은 面人民委員會가 此를 記錄한다.

四. 證明書及證明書交附臺帳의 樣式

ㄱ.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表紙에 該證明書受領者의 姓名을 記入할 것

ㄴ. 證明書 第一項에 所有者의 現在所及姓名을 詳記하고 또 土地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의 所在地, 地番, 地目, 地籍等을 明記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

ㄷ. 證明書 第二項에는 土地法令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그 所有에 屬한 土地의 所有

- 地, 地番, 地目, 地籍等を 明記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
- ㄹ.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에 番號를 記入하지 말 것
- ㅁ. 證明書交附臺帳은 證明書順序에 依하여 記入하되 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의 土地改革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를 各各 當該所에 記入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
- 五.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記載를 完了한 後에 그 記載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通과 및 該書類를 正確하게 記載하였다고 保證하는 公文을 郡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
- 六. 郡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記載를 嚴密히 調査한 後에 以上書類提出의 先後에 依하여 證明書交附臺帳의 番號를 各 面順으로 定한 다음, 證明書番號를 定하여 證明書交附臺帳에 記入하는 同時에 證明書 表紙에 該番號를 記入하고 同第二項에 該番號와 土地證明書交附臺帳番號와 年月日을 各各當該所에 記入할 것
- 證明書番號는 各 面書類提出의 先後에 依하여 一, 二의 順序로 記入하되 郡人民委員會가 此를 記入할 것
- 七. 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番號를 記入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通을 檢閱한 後에 證明書에 自手로 署名하고 郡人民委員會長印을 捺할 것
- 八. 郡人民委員會는 各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番號와 捺印을 檢査한 後에 此를 道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
-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을 檢閱한 後에 證明書에 自手로 署名하고 道人民委員會委員長捺印을 하여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을 郡人民委員會에 回送할 것
- 九. 郡人民委員會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捺印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와 證明書交附臺帳 二通을 各 面人民委員會에 回送할 것
- 十.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를 土地所有者에게 交附하되 證明書交附臺帳 二通에 그의 捺印을 받아서 一通은 面人民委員會에 保管하고 他一通은 郡人民委員會에 送付할 것
- 十一. 證明書交附臺帳은 此를 重히 保管할 것
- 十二. 모든 餘存한 證明書用紙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回送하되 그에 對한 決算은 嚴重히 할 것
- 十三. 證明書及證明書交附臺帳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印刷한다.
- 十四. 證明書記入은 楷正함을 要하고 楷正이나 摩墨을 不許한다.
- 十五. 證明書交附料金으로써 十五圓을 證明書受領時에 納付할 것
- 十六. 證明書交附料金은 道人民委員會收入으로써 經理하되 그 收入總額과 土地改革에 關한 費用을 記入한 精算書를 七月 二十日까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

十七. 土地改革法令 第十七條第二項에 依하여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日前으로 證明書를 交附
할 것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二日

農林局長 李 舜 根

(樣式一表面)

北朝鮮臨時人民委員

會委員長金日成批准 土地所有權證明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一九四六年三月五日에 決定한 北朝鮮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道 郡
面 里 審地에 居住하는 公民에게 左記 坪의 土地를 永遠所有로 無償分與함

	所在地	地 審	地 目	地 積	備 考
土地改革 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					
	合 計				

(樣式一裏面)

公民 는 土地改革以前에 自己의 所有이던 左記土地 坪은 現在에도 自己의 所有에 關함
 土地改革以前の 所有地로서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

所在地	地 審	地 目	地 積	備 考
合 計				

本土地所有權證明書第 號는 郡土地所有權證明書交附臺帳第 號에 登錄함

一九四六年 月 日

道人民委員會委員長

郡人民委員會委員長

現住所	道 郡 面 里 審地				
審 號			姓 名		
土地改革 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	所在地	地 審	地 目	地 積	備 考
	合 計				

土地改革 以前の 所有로서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	所在地	地 審	地 目	地 積	備 考
	合 計				
土地所有權證明書謄錄年月日			年 月 日		
土地所有權證明書受領者의 記名捺印					

◇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1950. 7. 4 상임위원회 정령)

제 1 조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괴뢰정부의 악독한 통치로부터 해방된 공화국 남반부 농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며 낙후한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여의 원칙에 의거한다.

제 2 조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괴뢰정부 및 그의 기관(회사를 포함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몰수한다.

조선인 지주의 소유 토지와 면적의 다과를 분문하고 계속적으로 소작주는(기관을 포함한다)의 소작주의 토지는 일체 이를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소작주지 않고 자작하는 농민의 토지(자작지)는 5정보 또는 20정보까지 몰수하지 않는다.

제 3 조 몰수한 토지는 자기 트력으로 경작하는 고용농민과 토지없는 농민 및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한다.

토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분여한 토지는 분여받은 농민의 영구한 소유로 된다.

분여받은 농민은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으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할 수 없다.

자작지와 본 법령에 의해서 분여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4 조 몰수한 토지의 분여정량과 방법은 매개 동(리)의 고용 농민과 토지없는 농민 및 토지적은 농민들의 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의 결정은 지방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에 실시한다.

제 5 조 토지에 관계되는 일체 부채는 이를 폐기한다.

연부로 매입한 토지대금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작지으로써 저당한 토지에 대한 부채도 또한 변상하지 않는다.

제 6 조 토지에 대한 종래의 지세 기타 일체 세금과 부담금은 이를 폐기한다.

농민들은 다만 공화국 북반부와 동일한 비율의 현물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나 1950년에 있어서는 피폐한 남반부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시킬 목적으로 이를 현저히 경감할 것을 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제 7 조 현물세를 납부한 나머지의 농작물은 자유처분에 맡긴다.

공출제도는 일체 폐지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노력농민의 이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 8 조 토지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개 동(리)에 농촌위원회를 조직한다.

농촌위원회는 고용농민 토지적은 농민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5명 내지 6명의 성원으로 구성하다.

농촌위원회는 자기 동(리)내의 농민들의 경작하고 있는 제2조에 해당하는 몰수대상 토지를 조사통계하고 토지분여안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과한 후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여를 실시한다.

제 9 조 토지의 분여는 도 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농민에게 교부하며 이를 토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0조 본 법령을 실시할때 대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것을 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제11조 본 정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두 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강 량 육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1977. 4. 29)

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 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 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

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으며 외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 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 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나라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촌을 기계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전망성 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 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 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 밑천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 지 소 유 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10조 국가 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 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관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 리용은 협동농장 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 토 건 설 총 계 획

제14조 국토건설 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고 정리 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으로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 총계획을 세우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 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 총계획의 전망기간을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 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 내며 간석지를 개간 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 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 리용 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여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물의 보호 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 국토건설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 4 장 토 지 보 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유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이용기관은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 경리사업은 큰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 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 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 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 강 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 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 정리는 큰물 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 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등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 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조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 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 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 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별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 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 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뿔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의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여 산림을 잘 보호 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드려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 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 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는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 발전을 인민생활 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와 순환시 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베는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여 필요한 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제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이를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 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촌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 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의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력처리장과 미광칩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캐 때에는 땅이 내려 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력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캐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

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 건설 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제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발판개체제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 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 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높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발취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 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 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높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 조건이 좋고 개간이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 관수체계, 화학적 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물갈아 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 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완공되거나 건설 재료의 채취가 끝나는 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 동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편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 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가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정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양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 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 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 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 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 보호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 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 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 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 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토 지 관 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 없이 묵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 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 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 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지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 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 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국토관리기관의 토지 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남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 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 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 이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 토지에는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문화 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 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 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 이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이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이용하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 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꾼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여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 보호 건설 및 관리 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 3 절 협 동 농 장

◇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

(1949. 12. 13 농림성규칙제28호)

제 1 장 명칭 및 목적

제 1 조 농작물생산의 범위와 성질에 따라서 농산의주되는 것은 국영농산농장 목축의주되는 것은 국영목장 과실생산의주되는 것은 국영과수농장이라고 각각정하여 수종의 생산성질과 2개소이상의 분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경리인것은 이를 국영종합농장이라고 칭한다(국영농산 농장 국영목장 국영과수농장 국영종합농장은 이를 총괄하여 국영농장이라고 략칭한다).

제 2 조 국영농장은 조선농업을 개량발전시키기위하여 우량한질과 높은수확을 위한 선진적 농업과학과 기술을 도입리용함으로써 농업생산분야에 있어서 모범이되어야 하며 국가계획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우량한질의 축산물 곡물 공예작물 및 과실을 제공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축과 다수확우량종 작물 및 묘목생산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국영농장은 이를 농림상이 관할한다.

제 2 장 경 영

제 4 조 국영농장을 개설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완성후의 전망과 기본건설 및 년차별 사업 계획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각의 비준을 받은후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예정된 국영농장구역내의 토지립야는 국영농장의 년차별계획에 의하여 리용된다.

제 5 조 국영농장의 일체생산활동은 국가계획에 의거하여야 하며 생산물단위의 계획원가 및 생산물 가격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생산물은 국가에 제공되되 개인시장에 판매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의 처분도 할 수 없으며 현물세는 부담치않는다.

제 6 조 국영농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 7 조 국영농장은 유일관리제 원칙에 의하여 농장의 유일한 책임자인 지배인에 의하여 운영되며 매개일꾼들은 자기부서활동에 대하여 지배인앞에서 책임을 진다.

제 3 장 기구정원 및 증업원의 권리와 의무

제 8 조 국영농장은 동일한 지역내에 단일한 경영체로 조직한다 그러나 필요한곳에 분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국영농장의 기구정원은 생산의 규모에 따라 각각 결정되나 그의 기본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배인 및 생산부문과 재정경영에 관한 일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인까지의 부지배인을 둘 수 있다. 그외에 전문적 기술자로서 농업기사 기수 축산기사기수 수의 기계기사 기수 건축기사 기수와 재정운영의 책임자인 부기장 및 내부경영집행자를 비롯한 사무원들을 둘 수 있다. 지배인 및 부지배인 중요간부는 농림상이 이를 임명한다.

제10조 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국영농장지배인은 유일관리의 책임자로서 자기사업에 대하여 하부에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승인된 정원포에 의하여 노동자 기술사 사무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지배인이 임명하는 간부의 한계는 농림상이 별도로 이를 지시한다.

2. 국영농장지배인의 생산활동 및 경영경영에 대하여 농림상 이외에는 이를 간섭할 수 없으며 지시하거나 또는 지배인의 명령을 철회시킬 수 없다. 농림성 국가검열성 및 기타 해당 각종양기관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자만이 검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인은 지방기관의 행정관리상 제조치를 리행할 의무가 있다.

3. 국영농장지배인은 생산계획 및 재정계획수행을 보장하고 제때에 사업을 통계총괄하여 정상적으로 농림상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국영농장지배인은 국가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 상부의 명령지시를 수행하고 국가재산의 횡령자 규률위반자 태공분자 및 건달꾼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들의 정치 문화수준 향상과 생산조건 개선에 대하여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농산기사(기수)는 지배인에게 복종하고 기구상 부지배인이 없는 농산농장에서는 부지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국영농장내의 전체농산물재배와 사료작물재배를 조직지도하며 농산에 있어서 파종비배 관리수확등 모든 영농대책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농산 년도별계획 및 기별 월별 계획을 작성하여 그계획실행을 제때에 완전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채종포를 선정하여 제때에 종자를 선택하고 이를 옳게 비배관리하며 수확한 종자를 보관할 책임을 진다.

4. 농산에 대한 통계와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때에 보고자료를 상부기관에 제출보장할 책임을 진다.

5. 농산에 있어서 수확의 손실과 투쟁하며 농작물의 병충해와 투쟁할 대책을 취한다.

제12조 축산기사(기수)는 기구상 부지배인없는 목장에서는 부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축산의 년도별 기별 월별계획(가축 군의동태 각종사료의 수요 축산물의 생산종부와 분만육성 및 기타)을 작성하며 이계획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각가축별로 개별적 통계(혈통 생산성을 작성하여 중부중식 축산물의 생산을 제때에 보장한다)
3. 가축의 사료급여 정량과 관리방법등 사양관리를 지도감독하며 목장내에 옳바른 질서와 축사의 정상적 상태유지에 대하여 책임진다.
4. 종빈축의 적기중부를 감독하여 빈축의 불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5. 하기가축 사육에 있어서는 방목지의 옳은 조직과 리용대책 및 가축의 음료수 급여조직을 감독한다.
6. 종빈목축의 개별적 통계에 의한 생산성과 혈통체격등을 참작하여 우량종을 선택하며 그에대한 옳바른 리용대책과 사육을 지도한다.
7. 통계작성 및 보고의 적시수행을 보장하며 반장 숙련노동자들을 지도하며 축산일꾼들의 기술 향상에 대한 제 대책을 취한다.

제13조 국영농장 수의는 가축의 건강상태와 치료예방을 적시에 실시하며 그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위생상 제반치료 예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2. 가축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며 제 전염병의 예방대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리병된 가축을 격리치료한다.
3. 목장내와 방목지에 있어서 가축의 건강을 위한 제대책을 위하여 병축을 치료한다.
4. 가축위생통계의 작성과 보고자료의 적시제출을 보장한다.

제14조 기계기사(기수)는 트랙돌 기타 농업기계 기구의 상태와 그 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트랙돌 및 농업기계기구의 사용과 수리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트랙돌과 기타 기계에 사용하는 석유 휘발유 및 윤활유등 유류보관 조직과 그의 소비 및 수송지도에 대하여 책임진다.
3. 부속품과 수리재료의 옳바른 보관과 건설소비를 기술적으로 감시한다.
4. 기계일꾼들과 트랙돌반장을 지도하며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대책을 취한다.

제15조 국영농장의 부기장 경리책임자는 재정계획수행과 경리에 관한 제법령 명령 규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부기장은 부지배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재정규률을 엄격히 집행하며 자금의 초과지출과 지정이외의 소비를 용허치않으며 이결과에 대하여 지배인과 함께 국가앞에서 책임을 진다.

2. 부기장은 국영농장의 일체국가재산을 보관한다.
3. 부기장은 각종생산물 단위로 계획원가 및 년도별 기별 월별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4. 부기장은 각종생산물 단위로 또 중요작업 단위로 원가계산을 정확히하여 생산비를 저하시키며 기업의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반 자금지출과 관련되는 시설자재 및 생산자재에 대하여 옳은 소비대책과 정확한 통제조직을 할것이며 로임지불 근거등 검사 또는 감시한다.
5. 경리일꾼들의 국영농업 생산경리 운영에 대한 경리기술향상을 위하여 제반대책을 취한다.

제 4 장 로력조직 및 임금지불

제16조 국영농장 로력조직의 기본적형태는 작업반이며 그 조직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작업반은 임시적 조직이어서는 안이되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시로 이를 재편성하지 못한다.
2. 작업반 편성은 농산에 있어서 농산작업반 트랙들 작업반 축산에 있어서는 각각축의 성장별과 사육목적별 및 그들이 생산성에 따라서 작업반을 편성하고 농산작업반은 파종면적에 기초하여 트랙들작업반은 트랙들 대수에 의하여 축산작업반은 가축 두수에 의하여 각각작업반내 로동자의 수를 결정하며 작업반내에 분조를 조직할 수 있다.
3. 작업반에는 작업반장 1명과 수명의 분조장을 둘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제원 및 기타의 인원을 둘 수 있다. 각 농장내의 작업반수는 각 농장의 사업량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4. 작업반장은 작업반내의 유일한 책임자로서 농장 목장 지배인에게 복종하며 작업반에 부과된 계획수행과 로동규율 강화 및 제반사업의 조직적 집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농장 목장 책임자들이 작업반에 주는 지시는 작업반장을 통하여 이를 주어야 한다.
5. 각 작업반에는 생산대장(토지생산용 가축건물등)과 생산수단(기계 기구 역축)들을 고정시키며 동시에 계획과업을 분조별로 고정시키다.

제17조 국영농장의 농업로동자는 로동에 있어서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로동에 있어서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시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로동자이며 춘기파종 제초수확등의 각시기를 통하여 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국영농장에 있어서의 로동임금은 로동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계획과업을 초과완수함으로써 로동자들의 물질적 리익에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원칙에서 자기가 수행할 로동의량과 질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국영농장의 임금지불형태는 보통임금제 및 보통도급제 루진도급제 단순상급제와 루진상급제를 실시하며 도급제 및 상급제실시에 대한 세칙은 농림상이 이를 별도로 작성지시한다.

농림상 박 문 급

◇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초안

(1958. 11. 24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작성위원회)

총 칙

제 1 조 조합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영도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적 경리이다.

조합은 일체 사업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 2 조 조합의 목적은 로동계급과의 동맹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점차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준비하는데 있다.

제 3 조 조합은 국가인민경제 계획에 입각하여 농업생산을 주로 하면서 부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상품 유통, 신용 및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옹계 관리운영하여 자기의 경리를 부단히 공고 발전시킴으로서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

제 4 조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집단주의적 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토지 및 생산수단

제 5 조 조합은 통합된 모든 토지와 그에 속한 연년생 작물을 공동소유로 한다.

조합은 경지면적을 부단히 확장하며 경지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동 소유토지 중에서 매 농호당 30~50평의 터 밭을 줄 수 있다.

제7조 조합은 각종 생산수단들과 시설 및 설비품들을 공동소유로 하고 그를 계속 증대시키며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조합은 트랙터와 화물자동차를 위시한 현대적인 농기계 및 운수수단들을 소유한다. 조합원농호들은 자기 터 밭을 다루며 가축 가금류를 사양관리함에 필요한 약간의 시설 및 소농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농촌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의 규약을 승인하고 가입금을 내는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과거 지주, 친일파 등 정치적 불순자는 후보조합원으로 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조합과 사회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일정한 기간 노력을 통하여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조합가입금은 매 조합원에 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조합가입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자회(이하 총회 또는 대표회라 약칭함)에서 결정한다.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은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의 결정과 명령들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며 조합의 규약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생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국가 및 조합공동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 그를 침해 손상하는 현상과 투쟁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들은 노동계급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하에 항상 당과 인민정권을 옹호하며 전체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농촌의 온갖 착취적 및 비근로적 현상 등 일체 자본주의적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혀 적들의 온갖 파괴 암해 활동과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를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자체의 정치, 문화 및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도덕을 지켜야 한다.

⑥ 조합원은 문화적인 향토건설 사업과 보건위생사업에서 모범이 되어 자기의 집과 부락을 잘 거두는데 일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경영에서 노동하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다.
- ② 조합원은 조합내에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다.
- ③ 조합원은 조합사업 개선을 위한 건의와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공동소유로된 생산수단과 공동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며 당년에 번 노력일에 대하여는 연말 결산시 또는 전분로 분배를 받는다.

제11조 후보조합원은 조합내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지지 못하며 그 이외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국가의 법령과 조합의 규약 및 제반규정을 계속시키지 않거나 조합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후보조합원으로 내리우거나 제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시, 군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명처분을 받은자가 자기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도 인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조합원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제반규율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의 정도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견책, 경고, 엄중경고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의 기관과 그의 사업

제13조 조합의 최고 기관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이다.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수정
- ② 당과 정부의 결정지시의 정확한 집행대책과 중요한 당면문제의 토의
- ③ 생산, 건설, 분배, 상품유통, 신용, 교육, 문화, 보건사업에 대한 연간 및 전당계획의 비준과 그의 정확한 집행대책의 토의
- ④ 조합의 연간결산과 수입분배안의 비준
- ⑤ 공동축적 사회문화 фонд(기금) 및 원호фон드 규모의 설정, 원호대상자들의 결정
- ⑥ 작업반 편성, 작업반별 생산과제 및 자재소비 기준의 비준

- ⑦등급별 작업정량, 로동보수기준, 노력일을 결상 및 삭감과 의대제 기준의 설정
- ⑧농기계 임경소 및 기타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비준
- ⑨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업의 청취 토의
- ⑩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그 위원장들의 선거 및 소환
- ⑪관리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꾼들에 대한 비준
- ⑫조합원 후보조합원의 가입, 탈퇴, 책벌 및 제명의 결정
- ⑬조합기본자산의 취득과 그의 처분범위의 설정 및 조합재정상태에 대한 보고 청취
- ⑭조합의 기타 기본문제들

제14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는 관리위원회가 월 1회이상 소집하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조합원총수의 반수이상 대표자회는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의 결정은 참가자의 반수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대표자회의 대표자선출비율은 관리위원회가 규정하되 대표자의 총수는 전체 조합원수의 30%를 넘어야하며 그의 선거는 6개월 또는 1년에 1차씩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에서 실시한다.

제16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는 조합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2년을 임기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관리위원의 성원은 15~25명으로 한다.

제17조 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집행기관이며 조합사업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①조합의 규약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조합사업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한다.
- ②총회 또는 대표자회를 소집하며 정기적으로 자기 사업정형을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보고한다.
- ③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거하며 부기장(부기원) 생산지도원, 통계원, 창고원, 작업반장, 분조장, 민주선전실장, 보건일꾼, 고아원, 상점일꾼, 전문가, 기술자 등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8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월 2회이상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조합의 결정을 집행하며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며 조합앞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 처리하며 국가와 사회기관들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제19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위원장의 사업을 도우며 관리위원장이 없을 때에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0조 부기장(부기원)은 규정에 의하여 부기 재산을 진행하며 조합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며 관리위원장의 지시를 집행한다.

조합의 일체 현물화폐의 수입지출에 대하여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기장(부기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21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1~2년을 임기로 하는 5~15명의 감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조합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부기, 창고, 상점 일꾼들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천거될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①조합관리기관들의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준수정형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조합원들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처리한다.

②조합의 국가의무수행 정형과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재정 부기계산, 노력일의 평가, 상품 유통, 신용, 보건, 후생시설 등의 일체 경리활동 정형을 검열하며 국가 및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제때에 처리한다.

③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특히 년간 정형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보고한다.

경 영 조 직

제22조 조합은 경제활동을 국가의 인민 경제적 수요에 상응하게 계획화한다.

조합은 전망계획과 년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경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조합에서 작성한 계획은 시, 군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조합은 년간 계획에 기초하여 작업반 및 기타 단위에 계획과제를 시달한다.

제23조 조합은 자연경제적 조건을 옹계 이용하여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

①조합은 국가적 수요와 지대적 조건에 적응하게 각종 알곡 작물을 위주로 하고 그의 재배를 계속 발전시키며 서류채소 및 목화, 아마, 담배, 호뿌 등 공예작물과 유지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그의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제고한다.

②조합은 공동축산에 기본을 두고 그를 확대 발전시키며 이에 개인부업 축산을 결합시켜 축산물 생산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조합은 사료기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돼지를 대대적으로 사육하여 육류를 많이 생산하며 조선소에서 젖을 짜는 동시에 그를 젖소로 개량하여 우유생산을 증가시키며 가금을 많이

사육하며 민원지를 조성하여 양목을 더욱 발전시킨다.

조합은 조합원 농호들로 하여금 공동경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2~3두까지의 비육돼지와 약간 수의 닭, 오리, 토끼 등을 기를 수 있다.

③조합은 뽕밭 적장림 및 피마주 재배면적을 확장하고 그를 잘 가꾸어 채엽량을 높임으로써 “고치”생산량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④조합은 과수원을 확장하고 비배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의 수확고를 제고한다.

⑤조합은 조합림을 조성하고 그의 보호관리를 잘하여 신체의 응제를 자체로 해결하며 지정된 국가림에 대한 조림보호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⑥조합은 호수, 저수지, 하천 및 논판 등을 이용하여 염수양어를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안지대에서는 어로양식, 가공 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

⑦조합은 농업생산물의 가공 건제생산, 철공소, 목공소 등을 조직 경영하며 기타 부업생산을 광범히 조직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

제24조 조합은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내부예비를 동원이용하며 절약제도를 확립하며 생산물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킨다.

제25조 조합은 현물로 조성된 공동 펀드(기금)와 일체 여유양곡을 국가에 판매하며 공예작물, 유지작물, 축산물, 잠견, 과실, 채소 등 농업생산물들에 대한 국가수매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조합은 국가 및 조합재산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운영한다.

제26조 조합은 상점을 경영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과 수매사업을 수행한다.

제27조 조합은 신용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생활향상과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부사업과 저금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제28조 조합은 학교, 탁아, 유치원, 구락부, 휴양소, 진료소, 민주선전실 등 교육, 문화보건의 설들과 공동식당, 세탁소, 재봉소, 목욕탕, 이발소 등 후생시설들을 관리 운영한다.

제29조 조합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위시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수행한다.

①조합은 농업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높은 수확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판개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치수사업을 강화하는 등 자연개조사업을 수행한다.

②조합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상응하게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의 전기화를 실현한다.

③조합은 국가의 기술적 지도와 방조밀에 트랙터 및 자동차를 위시한 선진 농기계를 적극 도입하여 기계화 작업반을 운영한다.

④조합은 포전작업의 기계화와 경지의 합리적 이용 및 그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건설사업을 진행한다.

⑤조합은 토전의 토양조건에 적응하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며 각종 비료를 다량 시비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인다.

⑥조합은 선진영농기술과 농업과학이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적극 발전시킨다.

조합은 시험 모전을 설치하여 다수확시험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한다.

제30조 조합은 각종 생산시설 등과 교육, 보건, 후생시설 및 문화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을 건설한다.

로동의 조직 보수 및 규율

제31조 조합에서 노력조직의 기본형태는 교정 작업반이다.

①조합은 생산부문의 구성과 그의 규모 조합원들의 기술 기능정도 거주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으로 작업반을 조직하고 모든 작업에서 책임제를 실시한다.

②작업반에서는 일정한 토지 역축, 농기구와 어선, 어구를 위시한 각종 생산도구, 경영건물 및 생산시설을 고착시킨다.

③작업반에는 그 규모와 작업의 범위 모전 및 거주조건에 따라 적당한 성원으로 조직된 몇 개의 분조를 둘 수 있다.

제32조 작업반장은 조합의 결정과 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반 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의 생산수단을 옹계 관리 이용하며 작업반 성원들이 수행한 작업과 생산정형 및 수득한 노력일을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조합은 노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작업을 적기에 보장하기 위하여 년간에 의한 시기별 또는 월별 작업계획을 세운다.

작업반은 년초에 총회 또는 대표자회에서 규정한 노력일수와 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초과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기준을 받아 처리한다.

조합은 계절적으로 부족되는 노력과 특수한 기술기능이 요구되는 때에는 외부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한 외부 노력에 대한 보수는 노력일에 의한 분배 또는 임금으로 지불한다.

제34조 조합의 작업은 작업정량에 의하여 도급제를 실시하여 노동의 결과는 노력일로 평가 계산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준다.

제35조 관리위원회는 등급별 작업정량표를 매년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기준을 받

은 후 이에 근거하여 노력일을 계산한다.

제36조 관리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조합원이 번 노력일을 공시하며 조합원들이 1년에 번 총노력일을 결산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가 있기 전 2주일 전에 공시한다.

제37조 조합관리일꾼들의 보수는 종합 경리에의 규모, 담당한 직무, 사업능력, 사업변한 및 사업성과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가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8조 조합경리에 있어서 노동은 매개 조합원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조합은 1년동안에 남자는 230노력일 여자는 180노력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한다. 임신부와 한뫼미단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은 130노력일 이상을 벌어야 하며 오랜 병이나 기타 사고가 있는 조합들에 대하여서는 경한 부문에서 일하게 하며 그의 의무노력일을 총회 또는 대표회에서 따로 결정한다.

제39조 산모에 대하여서는 산전, 산후 각 1개월간을 작업에서 쉬게하며 그 동안은 그가 지난해에 번 하루 평균 노력일의 70%를 매일 계산하여 준다.

조합은 자기의 노동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여성조합원들에게 그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3일까지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제40조 작업반들에서 작업을 옹게 조직하여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자재를 절약하고 부과된 생산과제를 초과 완수하였을 경우에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비준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노력일을 가산하여 주며 또한 우대한다.

작업조직을 잘못하였거나 작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 부과된 생산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작업반에 대해서는 그 성원들이 번 총노력일의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41조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작업에서 이탈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며 노동규율을 위반하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노력일을 계산하지 않는 제 작업을 시키거나 5노력일까지 삭감할 수 있다.

재산관리 및 수입문제

제42조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에서 비준된 연간 재정계획을 집행하며 부기제도를 확립하고 재정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조합의 모든 공동재산은 해당작업반장 및 창고원과 그의 취급자에 이르기까지 보관 책임제를 실시하며 대장에 정확히 기장 정리하고 이를 수시로 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조합의 현금자산은 거래은행에 예금한다.

제44조 조합수입의 분배는 현물 및 현금 총수입중에서 우선 국가납부, 종자, 사료, 비료, 기

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중 15~30%의 공동축적фон드(기금)3~7%의 사회문화фон드 및 필요한 양의 원호фон드(기금)를 조성하고 그 나머지를 노력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원칙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조합수입이 많아지고 투자가 더 많이 요구될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에 의하여 공동축적фон드 및 사회문화фон드를 더 높은 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 조합의 불분할фон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에게 분할하여 줄 수 없는 조합공동경리의 물질적 기초이다.

불분할фон드는 공동소유로 된 고정재산들과 조합원들의 가입금으로서 형성되며 매년 조성되는 공동축적фон드에 의하여 부단히 증대된다.

공동축적фон드는 조합의 확대재생을 위한 각종 생산수단의 구입과 생산적 건설 및 문화주택건설 등을 쓴다.

제46조 사회문화фон드는 간부 양성, 조합이 운영하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 및 편의시설 등의 경영, 조합원들의 휴양보건위생 및 문화사업, 조합 노동과정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치료 등에 쓴다.

제47조 원호фон드는 노력이 부족한 애국열사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을 위시하여 노동능력 상실자, 연소자 및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자 등의 살림과 그의 자제들의 교육비를 도와주는데 쓴다.

애국열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에 대해서는 조합의 평균생활수준을 반드시 보장한다.

제48조 조합은 조합경제형편과 조합원들의 생활상요구를 고려한 기초위에서 노력일에 의한 현물 및 현물전불제를 실시한다.

현금전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양의 30%까지, 현금 60%까지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제49조 조합의 연간 결산서는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비준을 받는다.

정치 문화사업

제50조 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기 향토와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우리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재능과 충성을 바치며 당과 정부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경각성있게 수호하며 사회주의적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도록 공산주의 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한다.

조합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며 조합원들이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 동원되도록 한다. 조합은 농촌에서 일체 낡은 유습과 개인, 이기주의 착취 및 비근로적 현상,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새로운 것을 적극 지지 발전시킨다.

제51조 조합은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킨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중등이상의 지식수준과 높은 기술, 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등 의무교육과 기술 의무교육의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학교를 운영하며 조합원들속에 과학지식을 보급시킨다. 조합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및 각종 문화씨클을 운영하여 군중문화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조합은 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마을과 향토를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한다.

제52조 조합은 조합내에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함으로서 조합원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한다.

제53조 조합은 사회주의적 증산경쟁을 조직 전개하여 집단적 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킨다.

부 칙

제54조 본조합은 ……조합이라고 부르며……도……군(시)……리에 둔다.

제55조 조합규약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한 후 시, 군인민위원회에 등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절 수 산



◇ 수산 제품 사정에 관한 규정

(1949. 2. 4 농림성규칙제2호)

제 1 조 본 규정은 수산제품(이하 제품이라고 약칭한다)의 증산과 품질개량을 기하며 인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제품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거래 또는 교역하려고 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농림성 수산제품 검사소(이하 검사소라고 약칭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식용 건제품

건명태, 건개명태, 미역, 곤포, 건옥, 근어, 건멸치, 건갈미, 건김, 건대합, 해삼, 건포, 건패주, 건낙지, 건대구, 건조기, 건강달어, 건돌묵, 건하계살, 건굴, 건백어

2. 식용통조림

포통조림, 춘통조림, 하통조림, 파주통조림, 대합통조림, 고등어통조림, 다랑어통조림, 방어통조림, 송어통조림, 고래통조림, 정어리통조림

3. 식용 염장품

염고등어, 염이면수, 염청어, 염송어, 염연어, 염꽂치, 염조기, 염방어, 염다랑어, 염갈치, 염홍어, 염명태, 일절포-치기침, 강침정어리, 염정어리, 염갈달어, 염돌묵, 염멸치, 염낙지, 염해파리

4. 젓갈품

명란젓, 고등어란젓, 명태장젓, 성게젓, 백하젓, 조개젓

5. 간 유

명태간유, 대구간유

6. 비 료

정어리어백, 청어어백, 고등어어백, 돌묵어백, 수산 잡비료

7. 어 유

정어리유, 청어유, 경유, 고등어유

8. 어 분

일체 식용어분, 일체 비식용어분

제 3 조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전조의 검사를 면제한다.

1. 별표 제1호에 의한 제품으로서 결속 1개 미만인 것
2. 시험 조사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상품 견본 또는 전람회에 출품하는 것
4. 자가용 또는 재해 구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 4 조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검사청구인이라고 약칭한다)는 별표 제4호 양식에 의한 검사 청구서를 검사소에 제출하는 동시에 별표 제3호에 의한 검사 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 검사 수수료는 별표 제3호에 소정한 요금의 반액으로 하되 원 미만은 이를 원으로 계상한다.

제 5 조 검사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수산물 가공업자에 한하되 만약 수산물가공업자에 대리인으로서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수산물가공업자의 신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영수산사업소 소장 또는 수산단체 책임자가 각각 소관 구성원을 대리할 때에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재 검사인 경우에는 전항 신임장을 첨부하지 않는다.

제 6 조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제품포장에는 별표 제2호에 의한 제품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검사소를 경유하여 농림성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 제품 보증표를 첨부하지 않는다.

제 7 조 검사청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에 입회하여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재 검사일때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검사소에서의 검사는 포장 1개마다 실시하되 다음 제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방법에 의하여 선출검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식용건제품, 식용염장품, 젓갈품(병에 넣은 성계젓 포장품은 제외한다) 및 비료에 있어서는 포장 20개에 대하여 2개이상의 율로서 그 내용물을 선출검사하여야 한다.
2. 식용 통조림병에 넣은 성계젓에 있어서는 포장 20개에 대하여 2개이상의 율로써 선출개관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3. 간유, 어류 및 어분은 포장 50개에 대하여 5개이상의 율로써 그 내용을 선출 검사하되 품질에 관한 사항중 어분의 검사는 전호의 비례에 의하여 혼합물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 9 조 검사소에서의 검사는 품질단속 포장 중량 제관 분말정도 용량 및 제6조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 후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소에서의 검사표준은 별표 제1호에 의하되 용량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농림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소에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등급을 붙이며 그 등급 표준은 별표 제2호에 의한 선출품의 최저품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명태, 건육근어, 건멸치, 건굴, 해삼, 건포, 건낙지 및 건대구에 대하여는 전항의 등급 표준이외에 그 형태에 따라 대 소를 구분하여 등급을 붙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소에서 검사합격한 제품(건명태 건육근어 건멸치 해삼 건포 건낙지 및 건대구에 한한다)을 날인한 후 검사 등급증표를 첨부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는 불합격증인

을 날인한 후 불합격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포 우편으로 하는 소포장에는 소포장용 검사증인을 한후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소에서 검사에 합격한 건명태 어유 간유 포장 및 독 또는 판에 넣은 짓갈품에 대하여는 검사증표를 첨부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은 어유 및 간유에 대하여는 저유 탱크로부터 그 일부를 채취하여 일정한 용기에 넣어 그 용기에 검사증표를 첨부하며 그 용기 및 저유탱크에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재검사 합격품에 대하여는 그 포장(포장하지 않은 어유 및 간유에 있어서는 저장 탱크 또는 용기)에 재검사증표를 첨부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각종 증인에는 소인을 하여야 하며 검사증표 또는 봉인은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한 증인소인 봉인 검사증표 대소별 증인 및 소포장용 검사 증인은 별표 제6호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소의 검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 청구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검사소의 검사에 합격한 각종 제품의 최하등급품 및 불합격품은 수출할 수 없다.

제18조 제3조에 규정한 제품을 반출하려고 할 때에는 수산물 비매품 증명 신청서를 검사소에 제출하여 별표 제7호에 의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검사품에 대하여 검사청구인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직접 이해를 가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각종 증인을 날인한 포장 재료는 그 인장을 없앤 후에야 비로소 교역용 포장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교역하려고 하는 포장에는 검사증인 검사등급 증인 대소별 증인 소인 및 검사증표에 유사한 상표 또는 기호를 첨부할 수 없다.

제22조 검사소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상표지를 첨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개장할 때 또는 포장하지 않은 어유로서 합격품에 혼합할 때에는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검사원은 합격된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검사소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거래 또는 교역할 수 있다.

1. 포장에 이상이 있는 것
2. 검사증인 검사등급 증인 대 소별증인 봉인 및 검사증표의 파기 또는 식별하기 곤란한

것

3. 충해, 서해 및 기타 원인으로 품질이 변화한 것
4. 검사원이 전조에 의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통고할 때
5.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한 후 식용 건제품(건명태 미역 및 곤포를 제외한다) 식용 염장품 젓갈품 간유 및 어유에 있어서는 2개월을 원유에 있어서는 3개월을 건명태 미역 곤포 및 비료에 있어서는 4개월을 건김 및 식용 통조림에 있어서는 6개월을 각각 경과한 것
그러나 각종제품의 최하 등급품에 있어서는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반일수를 경과한 때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검사장소는 해당검사소 소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26조 검사원은 본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소유한 제품에 대하여는 운반 정지 환적 및 개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본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검사품에 부정 수단을 가하였을 때에는 법적 수속을 밟아 이를 차단한다.

부 칙

본규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수산제품 검사규칙」(1948년 4월 26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농림국 규칙 제24호)은 이를 폐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농 립 상 박 문 규

◇ 어업에 관한 규정

(1949. 12. 22 내각결정 제191호)

제 1 조 본규정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기하며 어업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규정에서 어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내수면(인공호수(人工湖水)를 포함한 소택(沼澤) 하천등을 말함)에서 수산동식물의 체포 또는 양식을 말한다.

제 3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영위(營爲)하려고 하는 자는 농림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용어업(專用漁業) : 일정한 수역을 전용하여 천해(淺海) 수산동식물을 체포하는 어업
2. 양식어업(養殖漁業) : 일정한 수역에서 양식(養殖) 및 체포하는 어업

3. 포경어업(捕鯨漁業) : 경류를 포획(捕獲)하는 어업
4. 공선어업(公船漁業) : 공선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
4. 해수어업(海獸漁業) : 해수(고래는 제외)포획하는 어업
6. 기선홀치망어업(機船忽致網漁業) : 기선으로서 어망(漁網)을 끌며 끌어당겨서 하는 어업
7. 기선건착망어업(機船市着網漁業) : 기선으로써 어군을 어망으로 둘러싸고 그물소매를 조이며 끌어올리는 어업
8.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 잠수기구를 사용하는 어업

제4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영위(營爲)하려고 하는 자는 도(평양시)인민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치어업(定置漁業) : 일정한 수역에서 고정된 어기간 동일한 어구를 고정시켜 하는 어업
2. 정소어업(定所漁業) : 일정한 수역에서 고정된 어기간 동일한 어구를 반복사용하는 어업
3. 부망어업(敷網漁業) : 일정한 수역을 정하지 않고 어망을 부설하여서 하는 어업
4. 조망어업(槽網漁業) : 범선으로서 어망을 끌며 끌어당겨서 또는 이를 끌어올려 하는 어업
5. 건착망어업(巾着網漁業) : 범선으로서 어군을 어망으로 둘러싸고 그물소매를 좁히며 이를 끌어올려 하는 어업
6. 자망어업(刺網漁業) : 자망을 사용하여서 하는 어업
7. 예망어업(曳網漁業) : 일정한 수역을 정하지 않고 어망을 끌며 또는 끌어당겨서 하는 일
8. 라잡어업(裸網漁業) : 잠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라잡하여 하는 어업

본조에 규정된 어구의 범위는 농림상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어업이외에도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농림상이 이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시군 구역인민위원회 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까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

전용어업, 양식어업, 정치어업, 정소어업에 한하여서는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상 및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자기권한내에서 허가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동식물에 번식보호 또는 어업보호 단속상 필요한 때
2. 선박의 항해 제류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3. 본규정 또는 본규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지시에 의할 때

제9조 정치어업, 정소어업의 보호구역은 농림상이 이를 지정한다. 전항 보호구역내에서 해당어업에 장애되는 행위는 이를 금한다.

제10조 해상 또는 내주면에서 유독물 폭발물 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그러나 해수(海獸)를 포획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도(평양시)인민위원회위원장은 수산동식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어획물의 양륙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농림상은 다음 사항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수산동식물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 어구에 관한 제한 또는 사용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상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제거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조치
4. 유독물 또는 유해물의 류입 및 투기(投棄)방지를 위한 조치

제13조 어촌경리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지구내에 거주하는 어민은 농림상의 승인을 얻어 어로를 위한 수산합 적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 본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제 5 절 산 림

◇ 특별보호림에관한규칙

(1949. 12. 30. 농림성규칙 제30호)

제1조 본규칙은 국토보안, 풍수해방지, 수원함양, 보건위생, 학술연구, 황행표식 기타 국가 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산림을 특별보호림으로 설정하여 그 사명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보호림 구역내에서 채벌 개간 토석 수지 수피 수초근의 채취 채굴 및 방목은 농림상의 허가없이는 절대로 이를 엄금한다.

제3조 특별보호림 설정 신청인 또는 지정될 특별보호림 보호책임기관은 해당 특별보호림내의 도벌 산화 침개간 병충해등 일체 산림피해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그 상황을 관할 시 군 인민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 시 군인민위원회산림과장은 반드시 이를 검찰소에 사건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보호림 설정신청인 또는 지정된 특별보호림 보호책임기관은 농림상 또는 도인민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특별보호림에 국토보전상 또는 특별보호림 설정목적달성상 필요한 조림 및 사방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보호림은 제벌 간벌 및 수종개량을 위한 택벌이외는 과속정리기전에는 절대로 채벌을 엄금한다. 그러나 절항의 채벌은 설정신청인 또는 보호책임기관과 합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보호림 설정 및 해제는 관할 도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 농림상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농림상은 본 규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제를 요한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산림을 특별보호림에 편입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농림상은 설정신청이 없이 산림을 특별보호림에 편입하였을 때는 해당 특별보호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진 기관을 특별보호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특별보호림 설정신청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해제신청은 제2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도인민위원회는 특별보호림설정 및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제3호 양식에 의한 특별보호림 설정조사 또는 제4호 양식에 의한 특별보호림 해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림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frac{1}{50,000}$ 위치도와 $\frac{1}{12,000}$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보호림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하여서는 해당 도인민위원회기관지에 게재공시하여야 한다.

1. 특별보호림의 소재지(도 시 군 면 리 립 소반)
2. 특별보호림 종류별 설정 또는 해제면적
3. 특별보호림설정 신청기관명 또는(보호책임 기관명)
4. 설정승인 년월일

제10조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양식 제5호에 의한 특별보호림 대장과 $\frac{1}{50,000}$ 위치도를

비치하고 설정 또는 해제의 사실을 제때에 등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보호림 설정신청인 또는 특별보호림 보호기관은 특별보호림의 구역을 명확히 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 주위에 50m간격으로 표목을 건립하고 립내 요소(입구)에 표식(소재지 면적 특별보호림의 명칭 설정 년월일을 기입할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농림상 박 문 규

(양식 제1호)

농 립 상 앞

특별보호림편입신청서

1. 소재지 도 시군 면 리 산 번지
2. 산림구분 국가림 지방림별
3. 편입신청면적 정 단 묘
4. 신청의 사유

상기와 같이 특별보호림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편입하여 주심을 바랍

년 월 일

주소 도 시군 면 리 번지

신청인 기관명 책임자직성명 인

거리 몇키로미터의 지점에 수력발전을 위한 저수지 또는 토지 물리면적 몇정보를 위한 관계공사등 수원함양의 주요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6. 사업에 대한 의견란에는 앞으로 특별보호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층간벌 수광벌 상층간벌 택벌간벌등 사업의 의견을 명기할 것

7. 본조서에는 $\frac{1}{50,000}$ 위치도 및 $\frac{1}{12,000}$ 실측도를 첨부할 것

(양식 제4호)

특별보호림해제조서

조 사 년 월 일
조사원 직장명 직명 성명 인

소 재 지	도 시군 면 리 지명 번지
특별 보호림의 종류 특별보호림 편입 결 정된년월일 대장번호	년 월 일 편입 결정 대장 번호 제 호
면 적 현특별보호림 요해제지 잔 지	정 정 정 단 단 단 묘 묘 묘(일부 해제를 요할때) 묘
요 해제지의 현상 해제를 요하는 리유	
비 고	

주의 1. 요 해제지의 현상은 편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의 립항지향
을 설명하는 동시에 특별보호림 편입후의 성과를 기입할 것

2. 해제를 요하는 리유란에는 특별보호림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는 리유와 또 그외에
공익상하 공사를 하기 위한 리유를 명기할 것

(양식 제5호)

특별 보호 립 대 장

번 호	편 입		소 재 지						면 적	틀림 종 보 호류	편입당시의림항					비 고
	년 월 일	번 호	도	시 군	면	리	지 명	지 번			추수 요종	주 령	본 수	정낭 본수	재 적	

주의 비교란에 사업종류와 년월일 또는 해제하였을시는 년월일 등을 기입할 것

해제하였을시는 주(朱) 2중선으로써 진행말소할 것

번호는 대장등록 번호로하고 도면에는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대조에 편하도록할 것

◇ 지방림에 관한 규칙

(1949. 12. 30. 농림성규칙 제29호)

제1장 총 칙

- 제1조 지방림의 관리 경영은 본규칙에 의하여야 한다.
- 제2조 본규칙에 있어서 지방림이라 함은 농촌공동리용림과 민유림(묘지 및 집터에 속한 소산림)을 총칭한다.
- 제3조 도(평양시도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인민위원회위원장은 지방림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이며 농림상은 그 관리경영을 항상 지도검열하여야 한다.

제2장 농촌공동리용림

- 제4조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국유산림내의 농민들의 영농상 필요한 신재 특별재료 사료 농기구재등 립산물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공동리용림(이하 단지 공동리용림이라 약칭한다)을 설치한다.
- 공동리용림의 설치 또는 해제에 있어서는 농림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 공동리용림은 리 또는 부락단위로 설치하되 농가 1호당 1정보 기준으로 한다.
- 그러나 산림지대 및 산림무육 사업으로서 생기는 부산물 리용으로서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지방에는 공동리용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 공동리용림은 가급적 리용하는 농촌에서 근거리에서 있는 국유산림내에 설치하되 특별보호림 채벌금지 또는 제한지내에서는 공동리용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 공동리용림의 관리경영은 산림관리위원회의 직접 책임으로서 수행한다.
- 제8조 공동리용림의 작업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림 작업으로 할 것이며 수종은 침활혼합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 공동리용림의 년 채벌량은 당해 공동리용림 구역내의 전 립목의 년최고 생장량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호당 년간채벌 채취량은 자가소비의 정도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동리용림 설치당시의 립목축은 도인민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제11조 공동리용림에서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립산물채벌 또는 채취는 산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지도한다.
- 제12조 공동리용림에서의 당해 산림관리위원회의 자가용이외의 립산물처분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13조 산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리용림주위에 경계선을 설치하여 그 구역을 명확히 하고 립내요소 가급적 입구에 표식 20cm 각 지상고 2.5m의 목주(○○리 공동리용림 면적 ○○정보 ○○산림관리위원회 ○년 ○월 ○일 설치의 사유를 기입할 것)를 건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산림관리위원회는 공동리용림내의 독라 황폐 개소에 사방공사를 시공하며 조림작업을 하기 위한 갱신지 및 무림목지에 조림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리용림의 조림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위원회는 자체 수묘포를 가져야 한다.

자체수묘포는 양묘에 적당한 포지를 선택할 것은 물론 포지주위에 방책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군인민위원회에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공동리용림 대장과 실측도면 $\frac{1}{6000}$ 을 비치하고 공동리용림 관리 경영에 대하여 엄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리용림 관리경영에 있어서 해당산림관리위원회 또는 회원이 본규정에 위반하거나 산림행정기관의 지도방침에 응하지 않으므로서 공동리용림관리 경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농림상은 해당공동리용림을 해체하고 국유림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장 민 유 립

제18조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13조에 규정된 농민들이 소유한 묘지 및 집터에 속한 소산림으로서 되는 민유림(이하단 민유림이라 약칭한다)에서의 소유자의 립목채벌은 관할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묘지에 속한 소산림은 분묘 1기에 대하여 0.15정보 이내의 면적을 말한다(2기 이상 집합되었을 때에는 분묘간 거리만은 확장할 수 있다).

제19조 농민이 소유한 자작지 또는 분여지내에 있는 립목은 그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채벌은 본규칙 제18조에 준하여야 한다.

제20조 민유림 소유자는 자기 소유산림내의 무림목지에는 조림을 실시하여야 하며 독라 황폐지에는 사방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시면인민위원회에 별지 양식 제2호에 의한 민유림대장과 실측도면 $\frac{1}{6000}$ 을 비치하고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본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법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제23조 1947년 7월 8일부 농림국 규칙 제10호 공동리용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농림상박문규

양식 제1호

농촌공동리용림대장

번 호	설정 년 월일	소 재	면 적	결정당시							관리하 는산림 관리위 원장명	비 고
				림상별면적(정)				림황개요				
				림목 지	산생 지	무림 목지	계	수종 및 혼생비율	림령	재적 (㎡)		

양식 제2호

민유림대장

소재				종 별	면 적	소유지		비 고
군	면	리	산번			주소	성명	
						정		

- 주 1. 종별은 묘지림 집터림으로 구분할 것
- 2. 면적은 단위이하 2위까지 기입할 것

◇ 립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1949. 12. 30. 농림성규칙 제31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유림산물처분은 본규칙에 의한다.

제2조 본규칙에서 국유림산물이라 함은 국유림의 립목 벌도목 기타 립산부산물을 총칭한다.

광물을 제외한 토석류는 립산부산물로 취급한다.

제3조 채벌할 립지는 립목채벌금지 및 제한구역 이외의 립지라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농림상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 립목채벌금지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립목채벌 금지구역

(1) 철도연선 쌍방 4km이내(백무선 및 해산선 재덕역 이북은 제외)

(2) 시인민위원회 소재지주위 6km이내와 군인민위원회 소재지 및 이와 동등한 소도시주위 4km이내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한 고적 보존림

(4) 특별보호림

(5) 휴양소 료양소 해안선 부근 4km이내

(6) 수력발전 및 관개용 저수지부근 2km이내

2. 립목채벌 제한구역

(1) 모수림지 침엽수 20년생이하 유명림지

(2) 간선도로(1급도로)쌍방 2km이내

제5조 국유림산물 처분은 인민경제 계획에 의하여 농림상이 승인한 수확예정안에 의하여 각도(평양시 인민위원회위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농민의 자가용재도 인민경제계획에 의하여 농림상이 승인한 수확예정안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다.

제2장 립산물처분절차

제6조 국유림산물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양식 제1호의 원서를 제5조에 규정한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서를 받지 않고서는 채벌 또는 채취에 착수할 수 없다. 그

러나 지방주민이 자가용 또는 부업용으로 식용산채 또는 약초(산삼을 제외)를 채취하는데 대하여서는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7조 도 인민위원회 또는 시 군 인민위원회는 원서수리후 10일이내로 실지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원의가 부적당하거나 산림행정상 견지에서 허가할 수 없는 경우의 원서 각하도 수리후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히 일시에 다수량의 림목처분을 요하는 국영림산사업소는 조사착수후 1개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림목처분조사는 매목조사법과 표준지 조사법으로 한다. 국영림산사업소에 대한 대면적 림목처분지와 특히 림상의 균등으로서 표준지조사의 조건을 구비한 처분지는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고 기타는 매목조사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매목조사는 림목의 흉고 직경 및 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조사한 림목은 근부에 산도장 ㉔인을, 흉고부에 산동장 ㉕인을 타인하여야 한다.

채벌시 산도장 ㉔인은 존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준지조사는 조사할 림지를 충분히 답사하고 림상이 표준될 개소를 선정하여 표준지면적과 표준지내의 처분재적을 실지조사하여 전처분조사구역(주위실측을 요함)내의 재적을 간접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표준지 조사에 있어서 처분림지와 표준지의 구역측량을 정확히 하고 표준지내의 재적은 매목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처분림상이 균일치 못할 때에는 림상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각기 해당 림상을 가진 림지의 재적을 산출하되 표준지면적은 처분림지면적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준지 조사법에 의한 처분조사에 있어서 처분지 경계선은 가급적으로 천연경계(산 등 하천 곡 도로) 등으로 하되 주위에 경계표시목을 선정하고 2-3m간격으로 산동장 ㉕인을 흉고부에 타인하여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경계표시목은 처분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채벌목 기타 림산물의 반출기간 결정은 1년 1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장단은 처분수량 생산시설 로력등 제조건을 참작하여 기간단축의 원칙에서 결정하여 처분허가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13조 도인민위원회 또는 시 군 인민위원회는 처분조사후 10일이내로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허가서를 피허가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시켜야 한다. 림산물 처분단가는 별도 규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준지 조사법에 의한 림목대는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시키고 채벌목의 토장(산지)검척의 결과에 의하여 정산한다. 그러나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납부한 림목대는 반부치 않으며 토장검척의 결과 초과된 재적에 대한 대금은 허가림산물 반출완료전 추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처분한 림목대(제란자제제외)정산은 해당림목의 조제비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분림지내 치유수는 잔존시켜야 하며 또한 잇갈나무 소나무 림지에 있어서는 1정 보당 30주이상의 모수를 균등거리로 안배잔치하여야 하며 간문비 분비 적비 잣나무등의 천 연림지는 경사방향에 직각으로 모수림대를 20m 이상 존지시키고 대상채벌하여야 한다.

제17조 모수림 및 모수대는 림목처분하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잔존 모수림 채벌은 제2차 후계림이 결실수령에 달하였을 때 또는 모수림내의 치유수가 완전히 발육무성한 때에 정리채벌할 수 있다.

제18조 다음 수종은 채벌제한목으로서 그 채벌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1. 송충피해지 및 송충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림지내 또는 그 부근의 활엽수
2. 표준지 조사법에 의한 채벌림지내의 다음 수종 : 가래나무 황경피나무 박달나무 들매나무 물푸레나무 디릅나무 느릅나무 엄나무 옷나무 고향목 주목

제19조 림산물의 근주는 특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물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0조 산림행정 기관은 허가기간중 상시로 처분림지를 순회하여 채벌상황을 지도검열함으로써 오도벌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허가기간 만료 즉시로 허가서를 회수하고 적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용 필요한 토석류(대리석은 제외)와 지방주민 자가용으로 쓰는 운돌석(너와)등을 제외한 토석류는 유상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상처분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채취할 수 없다.

제 3 장 림산물처분피허가인의 준수할 임무

제22조 피허가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림산물처분허가서를 받지 않고서는 채벌 또는 채취에 착수할 수 없으며 허가이의의 림산물은 채벌 또는 채취할 수 없다.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림복처분을 받은 피허가인은 토장검사의 결과에 의한 추증금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제23조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림목처분을 받은 피허가인은 산림행정기관에서 지정한 토장에서 산림행정기관의 토장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채벌한 림산물을 임이의 장소에 반출할 수 없다.

제24조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림목처분을 받은 피허가인은 토장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반을 원목 또는 신탄목을 지정한 토장에 수종별 채종별 재장별로 정연히 퇴적하여 두어야 한다.

제25조 피허가인은 채벌허가된 이상채질불량 운재로협약 가타 생산조건불리를 리유로 채벌 반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생산조건불리로 산지에 유기한 림목 또는 원목을 반출하지 않았다는 리유로서 대금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 피허가인은 림산물처분허가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림산물의 채벌, 채취, 반출을 완료 하여야 한다. 지정기간 경과후 산지에 잔존한 림산물(허가된)은 국가소유에 귀속된다.

제27조 림산물 처분을 받은 피허가인은 림목채벌완료시까지 채벌실적을 월보로서 별지 양식 제3호에 의하여 허가기관인 도인민위원회 또는 시군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피허가인은 채벌채취 구역내의 치유수의 림점림목을 보호할 임무가 있음은 물론 부근림지에 대하여서도 허가일로부터 벌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허가인 또는 그 고용한 종업원이 허가이외의 림목 또는 기타 림산물을 채벌 채취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허가인은 처분기관인 도인민위원회 또는 시군 인민위원회가 사정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피허가인은 산림행정 기관의 필요에 의한 생산품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산림행정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처분허가서 대금영수증 기타 필요 장부서류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피허가인은 벌근고를 벌근단면직경의 2분지1이하로 채벌하여야 한다.

제31조 피허가인은 산림행정기관의 채벌 또는 채취를 허가한 구역내의 산화예방 방지에 관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림목채벌적지의 조재 잔재에 대하여서는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산림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정리할 의무가 있다.

피허가인이 전항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행정기관은 그 의무를 대행하고 그 실비의 3배까지 피허가인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피허가인은 산림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채벌 또는 채취구역내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한 종업원숙사 기타 건물을 반출기간 만료후 2개월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34조 피허가인이 본규칙에 의한 의무와 산림행정기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법적수속을 밟아 이를 처단한다.

농 림 상 박 문 규

양식 제1호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앞
(시군)

국 유 립 산 물 매 각 허가 원

1. 립산물 소재지
2. 채벌 구역면적(단위 정)
3. 립 산 물 종 류
4. 수 량
5. 용 도
6. 생산 계획(첨부 별지와 같음)

상기와 같이 립산물처분을 받으려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바랍

년 월 일

출 원 인

◇ 임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

(1949. 1. 14. 농림성규칙 제1호)

제 1 조 「사업등록에 관한 규정」(1948년 11월 12일 내각 결정 제7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산업을 경영하려고 하는자는 (국가기관협동조합및 개인의 경영의 전부 포함한다) 본규정에 의하여 농림상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목재생산업
2. 신탄생산업
3. 제제업

제 2 조 본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자는 별지 양식에의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 (평양특별시에 있어서는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 군 인민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도 인민 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도 인민위원회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상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한다.

농림상은 이를 접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도 인민위원회 또는 평양특별시 인 민위원회 및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도 인민위원회에서는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에 이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 허가는 사업종류별로 사업장소마다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탄업및 목재업은 시 군

단위로 한다.

제 5 조 이미 허가한 제제업 사업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농림상은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을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2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국가시책에 위반을 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농림상 박 문 규

(양식)

임 산 업 허 가 신 청 서

1. 사업장(또는 공장) 소재지 도 군 면 리 번지
2. 사업장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업종목
4. 자본금
5. 시 설
6. 사업내용

상기와 같이 임산업을 경영하려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농 립 상 앞

(주의) 시설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별지로 기재 첨부할것.

◇ 「림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관하여

(1949. 11. 12. 농림성규칙 제27호)

「림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1949년 1월 14일 농림성규칙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본규정중 제1조 제2호 「신탄생산업」을 「신재생산업」으로 정정하고 제3호 「제재업」을 삭제한다.
2. 제4조중 「신탄업」을 「신재업」으로 정정한다.
3. 제5조는 전문을 삭제한다.
4. 제6조를 제5조라고 정정한다.

농 립 상 박 문 규

◇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1950. 1. 10 내각결정 제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규정은 산림보호와 그 육성의 완벽을 기하여 산림자원의 축적 및 그의 항속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일체 산림은 본규정에 의하여 관리 경영되어야 한다.

제 2 조 본규정에서 산림이라함은 수목과 잡초·관목이 총생한 산야를 총칭한다.

제 3 조 산림은 국가림 및 지방림으로 이를 구분한다. 국가림은 지방림을 제외한 전체산림을 칭하며 지방림은 농림상의 위임에 의하여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림은 농림상이 직접 이를 경영관리하고 지방림은 농림상의 위임에 의하여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관리한다. 그러나 농촌 공동이용림내 판매용 림목처분은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산림보호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은 국가자원인 산림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한다. 인민들 로하여금 국가의 산림보호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조 집행시키기 위하여 각 리별로 산림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 조 전조의 산림관리위원회는 자기담당구역내의 산림에 대하여 다음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1) 산화의 예방 및 소화
- (2) 도람벌 침간 기타 가해행위의 예방 및 방지
- (3) 유해동물의 가해에대하여 예방 및 구제
- (4) 경계표 기타 표식의 보존
- (5) 조림 및 치수의 보육
- (6) 농촌 공동이용림에 대한 경영관리
- (7) 기타 산림보호관리상의 모든 시책의 협조 수행

제 7 조 산림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리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서기장)
2. 위원 약간명

제 3 장 특별보호림

제 8 조 특별보호림은 국토보존 풍수해대책 수원함양 보건위생 학술연구 향해표식 기타 국가 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산림을 칭한다.

제 9 조 특별보호림의 명칭은 편입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2. 토사방지림
3. 교통보호림
4. 학술연구림
5. 어 부 림
6. 방 수 림
7. 방 풍 림
8. 풍 치 림
9. 위 생 림
10. 국 방 림
11. 오 수 림
12. 과 실 림
13. 수렵금지림

제10조 특별보호림의 설정 및 해제의 절차와 보호육성은 농림성규칙(특별보호림에 관한 규

정)에 의하여 한다.

제11조 농림상 및 특별보호림 설정기관의 합의 허가 없이는 특별보호림구역내의 채벌개간 또는 토석, 수지, 수피, 수초, 근의 채취 채굴 및 방목은 이를 엄금한다.

제 4 장 산화방지

제12조 각도(평양시) 시·군·면 인민위원회부위원장 (각 도 및 평양시는 제1부의원장)은 자기행정적 사무분장으로서 산화의 미연방지 및 그 소화에 대처할 책임을 진다 이 산화방지 책임수행을 위하여 내무기관·산림기관 및 기타의 간부 약간명으로서 각급인민위원회 소재지에 산화방지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각급 산화방지대책위원회는 해당 각급인민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화경계반의 조직 지도
2. 산화소방대의 소화훈련
3. 소화기구의 정비검열
4. 소화동원
5. 산화예방 및 소화시책

제 5 장 산림대부

제14조 산림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상의 대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전조의 규정한 산림대부는 농림성규칙 「산림대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산림개간

제16조 농산 증산을 위하여 산림을 개간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상의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임산물처분

제17조 임산물을 채취 또는 채벌하려고 하는 자는 농림성규칙「국유림산물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지방림

제18조 묘지 및 집터에 속한 소산림의 소유자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지시 명명을 얻을 수하여야 한다.

제19조 농민의 생활 및 영농상 필요한 임산물(연료·육비사료 농기구용재등)을 자급자족하여 농촌정리에 급속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이용림을 설치한다.

제20조 농촌 공동이용림은 리를 단위로 설치한다.

그러나 구역이 광대할 때에는 지방 실정에 따라 적절히 이를 조절 설치할 수 있다.

농호의 이용 표준면적은 1정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조의 지방림 관리경영은 농림성규칙「지방림에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장 단속

제22조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산림행정 일꾼은 본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각각 차기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이를 해당 시 군 검찰소에 사전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산림행정 일꾼은 본규정을 위반하고 채취 또는 채벌한 임산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몰수하여 국가소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4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산림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로 한다.

제25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 자는 이를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1. 산림에 방화한 자
2. 허가없이 특별보호림에서 도벌 침간 또는 토석, 수피, 수지, 수초 근의 채취 혹은 채굴 및 방목한 자
3. 산화로 산림에 손해를 끼친 자
4. 산림내에서 그 산물을 도벌 또는 절취한 자
5. 산림을 침간한 자
6. 산림을 훼손한 자
7. 산림 또는 부근에서 허가없이 분화한 자
8.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의하여 허가한 구역 외에서 수목을 채벌하거나 지정수량 이상의 수목을 채벌한 자

9. 산림사업에 관계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자
10. 산림내의 금렵구 또는 금지기절중 산림내에서 수렵한 자
11. 허가없이 산림내에 방목한 자 또는 기타 건물 시설을한 자
12. 산화예방 방지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소화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13. 립산물 배수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 내각 임산국산하 각기관에 관한 규정

(1950. 1. 11. 내각임산국명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임산국직속으로 임산사업소 제재공장 기본건설사무소 물자관리사무소 및 목재판매소를 설치한다.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남도 함흥시 및 자강도 강계시에는 그 지방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림산국 도주채원을 주재시킨다.

제2조 도주채원 임산사업소 국직속제재공장 기본건설사무소 물자관리 및 목재판매소의 소재지소관구역 기구정원 및 급수는 별표 제1, 2, 3호와 같다.

제3조 각기관의 간부 임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내각임산국장이 임명하는 간부

(1) 도주채원 (책임주채원 주채원)

(2) 임산사업소지배인 (2급이상 임산사업소의 지배인을 제외한다), 부지배인, 기사장, 안전기사, 부장, 과장, 3급이상 임산사업소의 1급부원, 간부지도원 기요원, 작업소소장, 부소장, 부속제재공장장, 부공장장

(3) 국직속제재공장

지배인, 부지배인, 기사장, 안전기사, 부장, 과장, 3급이상 제재공장장의 1급부원, 간부지도원, 기요원

(4) 기본건설사무소

소장(2급이상 기본건설사무소 소장을 제외한다)

부소장, 아년기사, 부장, 관장, 3급이상 기본건설사무소의 1급부원, 간부지도원, 기요원

(5) 목재판매소

지배인, 과장

(6) 물자관리소

직속수리공, 직속지배인, 기사장

2. 임산사업소지배인이 임면하는 간부, 2급이하부원, 과원, 작업소 부속제재공장의 과장, 과원, 부속수리공직소직원, 작업소주재원
3. 국직속제재공장 지배인이 임면하는 2급이하 부원, 과원
4. 기본건설사무소 소장이 임면하는 간부 3급이상 기본건설사무소의 2급이하부원, 과원주재원
5. 목재판매소지배인 물자관리소소장이 임면하는 간부과원, 직속수리공작소과장, 과원

제 4 조 임산사업소지배인, 국직속제재공장지배인, 기본건설사무소소장, 물자관리소소장 및 목재판매소소장(이하 각기관 책임자라고 약칭한다)은 내각림산국장의 명을 받아 책임지고 관하의 일체사업을 통괄한다.

부지배인은 지배인을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지배인 또는 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 5 조 각도주재원은 재각임산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구역내의 내각임산국 각기관의 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주재원은 사업상 책임주재원에게 복종한다.

제 6 조 각기관 책임자는 행정규율 또는 내부직장규율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행정적 처벌을 줄수 있다.

그러나 내각임산국장이 임면하는 간부에 대하여는 철직직분을 줄 수 없으며 다만 내각임산국장에게 제의할 수 있다.

제 2 장 임산 사업소

제 7 조 임산사업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원목, 제재, 신목, 목탄 및 임산물가공품의 생산 또는 이에 대한 공급사업 및 생산을위한 시설사업(기본건설을 제외한다)을 실시한다.
2. 생산능률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 시키고 작업방식을 합리화하며 생산시설을 기계화하며 임산사업발전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한다.
3. 노동자들의 노동보호 및 물질문화 생활수준향상을 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한다.
4. 사업운영은 내각임산국장이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유일관리제에 의거한 독립채산제에 의한다.

제 8 조 임산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사장

- (1) 임산물생산에 대한 기계화 발전에 관한 사항
- (2) 임산물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보장에 관한 사항
- (3) 생산물의 규격보장 및 질적향상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사

- (1) 노동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2)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3) 노동위생에 관한 사항

3. 계획부(과)

- (1) 생산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2) 노동 및 자재계획에 관한 사항
- (3) 임산물 수송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
- (5)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6) 보도선전에 관한 사항
- (7) 통계종합에 관한 사항

4. 간부부(간부지도원)

- (1) 간부료해등록배치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2) 내사부작성 및 하부기관 간부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 (3) 기술원 양성에 관한 사항

5. 노동부(과)

- (1) 노력수급 및 노력조직에 관한 사항
- (2) 도급임금제 및 상금제 실시에 관한 사항
- (3) 노동보호 및 문화후생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험법실시 지도에 관한 사항
- (5) 노동임금 조절에 관한 사항
- (6) 증산운동 조직 실시지도에 관한 사항
- (7) 기술적향상 창의고안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6. 경리부(과)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임산물생산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3) 임산물공급 대금 수체에 관한 사항
- (4) 종합발란스 및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 (5)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 (6) 산하기관 경리지도감사에 관한 사항
- (7) 고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재부(과)

- (1) 임산물 생산자재조달 및 수송관리에 관한 사항
- (2) 부속수리 공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유휴자재 조사 및 자재활용에 관한 사항
- (4) 화학취급에 관한 사항

8. 생산부(과)

- (1) 각종원목 및 신목목탄생산(벌목운재 및 유벌등)에 관한 사항
- (2) 제재가공품 및 부산물생산에 관한 사항
- (3) 역우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 (4) 생산원가 저하지도에 관한 사항
- (5) 화물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 (6) 가설물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미성품재하량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8) 작업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철관리부(과)

- (1) 임철제도 및 또락뜯운영에 관한 사항
- (2) 임철제도 및 또락뜯선로보수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3) 기관차 및 대수리에 관한 사항
- (4) 전화선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5) 임철제도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급부(과)

- (1) 임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 (2) 임산물공급 개별계약에 관한 사항
- (3) 임산물 수송에 관한 사항
- (4) 완성품 검수 및 재하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무과(기요원을 포함함)

- (1) 공인관수 신입장 및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항
- (2) 기밀문서보관 및 수발에 관한 사항
- (3) 청사 사택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선에 관한 사항

(5) 일반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6) 사업소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산사업소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내각림산국장의 승인을 얻어, 작업소 또는 부속 제재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작업소 및 부속제재공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소

(1) 노동과

ㄱ. 간부관계 서류정비에 관한 사항

ㄴ. 노력조직 및 증산경쟁운동조직 실시에 관한 사항

ㄷ. 도급임금 및 상급제실시에 관한 사항

ㄹ. 사회보험법 실시에 관한 사항

ㅁ. 노동임금 계산 및 조절에 관한 사항

ㅂ. 기술전수에 관한 사항

ㅅ. 노동보호 및 문화후생에 관한 사항

(2) 경리과

ㄱ. 생산원가 집행에 관한 사항

ㄴ.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

ㄷ.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ㄹ. 노동임금 지불에 관한 사항

ㅁ. 고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산과

ㄱ. 원목, 신목, 목탄 생산에 관한 사항

ㄴ. 역우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ㄷ. 원가저하 지도에 관한 사항

ㄹ. 임산물 재하량 조사에 관한 사항

ㅁ. 임산물생산을 위한 가설물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ㅂ. 각종통계 종합에 관한 사항

ㅅ. 작업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철관리과

ㄱ. 임철케도 트랙틀운영에 관한 사항

ㄴ. 기관차 및 대차수리에 관한 사항

ㄷ. 임철케도 트랙틀 자동차 운재로보수 및 보선에 관한 사항

(5) 자재과

- ㄱ. 생산자재 조달에 관한 사항
- ㄴ. 창고관리 및 자재보관에 관한 사항

(6) 서무과

- ㄱ. 공인관수 신임장 및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항
- ㄴ.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 ㄷ. 기밀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 ㄹ. 청사 사택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ㅁ. 노동자 사무원 식량배급에 관한 사항

2. 부속제재공장

(1) 노동자

- ㄱ. 간부관계 서류정비에 관한 사항
- ㄴ. 노력조직 및 증산경쟁운동조직 실시에 관한 사항
- ㄷ. 도급임금제 상금제실시에 관한 사항
- ㄹ. 사회보험법 실시에 관한 사항
- ㅁ. 노동임금계산 및 조절에 관한 사항
- ㅂ. 기술전습에 관한 사항
- ㅅ. 노동보호 및 문화후생에 관한 사항

(2) 경비과

- ㄱ. 생산원가집행에 관한 사항
- ㄴ.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 ㄷ.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 ㄹ. 고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재과

- ㄱ. 생산자재 조달에 관한 사항
- ㄴ. 창고관리 및 자재보관에 관한 사항

(4) 업무과

- ㄱ. 제품생산에 관한 사항
- ㄴ. 원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 ㄷ. 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 ㄹ. 제품원가 저하에 관한 사항
- ㅁ. 임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 h. 재하량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스. 임산물 수송에 관한 사항
- 오. 각종통계 종합에 관한 사항

(5) 서무과

- ㄱ. 공인관수 신입장 및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항
- ㄴ. 기밀문서보관 및 수발에 관한 사항
- ㄷ. 청사 사택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ㄹ. 일반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 ㅁ. 노동자 사무원 식량배급에 관한 사항

제 3 장 국직속제재공장

제10조 국직속제재공장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인민경제에 의한 제재 및 임산물 가공품생산 또는 이에 대한 공급사업 및 생산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건설을 제외한다)을 실시한다.
2.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시키고 작업방식을 합리화하며 생산시설을 기계화하며 제재사업발전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한다.
3. 노동자들의 노동보호 및 물질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한다.
4. 사업운영은 내각임산국장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유일관리세에 의거한 독립채산제에 의한다.

제11조 국직속제재공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사장
 - (1) 제재 및 가공품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 및 기계화 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격품 생산 보장 및 생산품의 질적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사
 - (1) 노동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2)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3) 노동위생에 관한 사항
3. 계획부(과)
 - (1) 생산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2) 자재계획에 관한 사항
 - (3) 노동계획에 관한 사항

(4) 각종통계 종합에 관한 사항

(5) 보도선전에 관한 사항

4. 노동부(과)

(1) 노력수급 및 노력조직에 관한 사항

(2) 도급임금제 및 상금제 실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험법 실시에 관한 사항

(4) 노동임금계산 및 조절에 관한 사항

(5) 기술전습에 관한 사항

(6) 노동보호 및 문화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7) 증산경재운동 조직실시에 관한 사항

5. 경리부(과)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생산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공급대금 수책에 관한 사항

(4) 발란스 및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5) 현금출납 및 노동임금지불에 관한 사항

(6) 고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재부(과)

(1) 생산기자재 조달 및 수송관리에 관한 사항

(2) 창고 및 재산보관에 관한 사항

(3) 유휴자재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업무부(과)

(1) 제품 및 가공품생산에 관한 사항

(2) 원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3) 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제품원가 저하에 관한 사항

(5)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급 개별계약에 관한 사항

(7) 재하량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수송에 관한 사항

(9) 제재공장 건물 및 기계수리에 관한 사항

8. 간부지도원

- (1) 간부료해 등록배치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2) 내사부작성 및 기술원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무과(기술요원을 포함)
- (1) 공인관수 신입장 및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항
 - (2) 기밀문서 보관 및 수발에 관한 사항
 - (3) 노동자 사무원 식량배급에 관한 사항
 - (4) 청사 사택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5)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제 4 장 기본건설사무소

제12조 기본건설사무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소관구역내의 각임산사업소, 국직숙제제공장, 직속수리공작소등과 긴밀한 연락밑에 임산 사업발전을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기본건설을 실시한다.
- 2. 기본건설사무소의 예산은 기본건설 국고교부금으로써 충당한다.

제13조 기본건설사무소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 기사장
 - 기본건설공사의 설계·시공·준공에 대한 기술적지도에 관한 사항
- 2. 안전기사
 - (1) 노동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2)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3) 노동위생에 관한 사항
- 3. 노동부(과)
 - (1) 노력수급 및 노력조직에 관한 사항
 - (2) 도급임금제 및 상금제 실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험법 실시에 관한 사항
 - (4) 노동임금계산 및 조절에 관한 사항
 - (5) 기술전습에 관한 사항
 - (6) 노동보호 및 문화후생사에 관한 사항
- 4. 경리부(과)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건설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 (3) 바란스 및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 (4)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 (5) 고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6) 노동임금 지불에 관한 사항
5. 자재부(과)
- (1) 건설자재조달 및 공기구수리에 관한 사항
 - (2) 자재수송에 관한 사항
 - (3) 창고관리 및 자재보관에 관한 사항
 - (4) 유희자재조사 및 자재활용에 관한 사항
 - (5) 화물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부(과)
- (1) 공사측량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2) 시공에 관한 사항
 - (3) 공사준공에 관한 사항
 - (4) 화약취급에 관한 사항
 - (5) 운반기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간부지도원
- (1) 간부료해 등록배치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2) 내사부작성 및 기술원 양성에 관한 사항
8. 종합통계과
- (1) 각종 통계종합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서무과(기요원을 포함함)
- (1) 공인관수 신임장 및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항
 - (2) 기밀문서 보관 및 수발에 관한 사항
 - (3) 청사 사택관리에 관한 사항
 - (4) 일반문서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5) 사무소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6) 노동자 사무원 식량배급에 관한 사항

제 5 장 물자관리소

제14조 물자관리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내각임산국 산하기관의 생산건설자재 및 사무용품등을 조달한다.
2. 사업은 내각임산국장이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독립적계산밑에 운영하되 운영자금은 산하기관의 해당한 자재비로서 충당한다.

제15조 물자관리소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경리과
 - (1) 물자구입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2) 물자공급 대급수체에 관한 사항
 - (3) 종합발란스 및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 (4)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 (5) 고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재과
 - (1) 임산물생산자재, 건설자재 및 사무용품 조달에 관한 사항
 - (2) 부속수리공작소 운영에 관한 사무
3. 운창과
 - (1) 자재수송에 관한 사항
 - (2) 창고 및 자재보관에 관한 사항
4. 서무과
 - (1) 공인관수 신입장 및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항
 - (2) 청사 사택관리에 관한 사항
 - (3) 문서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4) 운반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물자관리소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내각임산국장의 승인을 얻어 속수리공작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생산과
 - (1) 제품생산 및 수리에 관한 사항
 - (2) 제품원가 저하에 관한 사항
 - (3) 설계에 관한 사항
 - (4) 제품공급에 관한 사항
 - (5)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재과
 - (1) 제품생산 및 수리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2) 창고관리 및 자재보관에 관한 사항

3. 총무과

(1) 경리에 관한 사항

(2) 노동에 관한 사항

(3) 서무에 관한 사항

(4) 청사 사택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5)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제 6 장 목재판매소

제17조 목재판매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내각임산국산하 임산사업소 및 국직속제재공장에서 생산된 잔여물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2. 사업운영은 내각임산국장이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유일관리제에 의거한 독립채산제에 의한다.

제18조 목재판매소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과

(1) 경리에 관한 사항

(2) 서무에 관한 사항

2. 업무과

잔여물 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본규정은 195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1949년 2월 4일 농림성령 제10호 백두산 산림철도건설사무소규정과 1949년 2월 4일 농림성령 제11호 립산사업소에관한규정은 농림상과 합의밑에 이를 폐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임산국장 한 명 옥

내각임산국산하기관소재지 및 소관구역표

1. 도 주재원

명 칭	소 재 지	소 관 구 역
함 경 북 도 주재원사무소	청 진 시	1. 청진, 회령, 길주, 무산, 연사, 유평, 연암, 각임산사업소 2. 무산, 성진, 직속제재공장 3. 무산, 기본 건설사무소 4. 물자관리소, 직속수리공작소 (청진, 무산)
함 경 남 도 주재원사무소	함 흥 시	1. 함흥, 풍산, 장진, 도안, 남중, 혜산, 각임산사업소 2. 본궁, 위연, 국직속제재공장 3. 백철, 함흥, 혜산, 기본건설사무소 4. 물자관리소, 직속수리공작소 (함흥, 혜산)
자 강 도 주재원사무소	강 계 시	1. 칠평, 강계, 각임산사업소 2. 만포, 중앙 국직속제재공장 3. 강계, 기본건설사무소

2. 임산사업소

명 칭	소 재 지	소 관 구 역
평 양 임 산 사 업 소	평 양 시	1. 령원, 양덕, 덕천, 평원, 룡강, 강동, 개천, 순천 작업소 2. 양덕, 순천, 덕전, 평양 1, 2, 3부속 제재공장
신 의 주 임 산 사 업 소	신 의 주 시	1. 창성, 삭주, 의주, 선천, 구성, 박천, 영변 묘향산 작업소 2. 신의주, 수풍, 부속제재공장

명 칭	소 재 지	소 관 구 역
강 계 임 산 사 업 소	강 계 시	1. 아득포, 창평, 룡림, 화경, 회천, 공북 고장작업소 2. 창평, 아득포, 화경 부속제재공장
철 평 임 산 사 업 소	자 강 도 후 창 군 철 평 면	1. 남사, 동흥, 가산, 후창, 증흥, 이평, 자성, 장토작업소 2. 가산, 철평, 부속제재공장
황 해 임 산 사 업 소	해 주 시	1. 곡산, 수안, 남천, 신막, 사리원, 신천 작업소
원 산 임 산 사 업 소	원 산 시	1. 문천, 안변, 통천, 고성, 양양, 평강, 회양, 금화작업소 2. 고성, 원산, 제1, 제2 칠원 부속제재공장
장 진 임 산 사 업 소	함 경 남 도 장 진 군 중 남 면	1. 상남, 중남, 서한작업소 2. 북동, 부속제재공장
도 안 임 산 사 업 소	함 경 남 도 신 흥 군 동 상 면	1. 신흥, 안수, 원동, 평산작업소 2. 도안 부속제재공장
풍 산 임 산 사 업 소	함 경 남 도 풍 산 군 능 귀 면	1. 흥군, 황수원, 약수리, 숙신, 도상 작업소 2. 흥군, 연두평, 황수원 부속제재공장
함 흥 임 산 사 업 소	함 흥 시	1. 고원, 영흥, 정평, 함주, 북청, 단천 작업소
남 중 임 산 사 업 소	함 경 남 도 혜 산 군 봉 두 면	1. 령하, 수반, 석개, 대화동, 신정수, 룡포, 생장작업소 2. 남중, 생장, 부속제재공장
혜 산 임 산 사 업 소	함 경 남 도 혜 산 군 혜 산 군	1. 백사봉, 최가령, 대평, 의명수, 포태, 삼포, 삼수, 감산작업소 2. 혜산, 부속제재공장

명 칭	소 재 지	소 관 구 역
길주임산 사 업 소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면	1. 백암, 성덕, 명천사업소 2. 길주 부속제재공장
청진임산 사 업 소	청진시	1. 주을, 고무산, 청진작업소 2. 청진(어항), 주을 나남부속제재공장
회령임산 사 업 소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면	1. 아오지, 회령, 종성작업소 2. 회령, 부속제재공장
무산임산 사 업 소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면	1. 심장, 연삼, 어하, 심참, 무산작업소
연사임산 사 업 소	함경북도 무산군 연사면	1. 대리, 대시, 신양, 서안동, 연사작업소
유평임산 사 업 소	함경북도 무산군 삼사면	1. 덕립동, 하황로, 천수, 삼사, 하경 평작업소 2. 유평 부속제재공장
연암임산 사 업 소	함경북도 무산군 삼사면	1. 굴송, 염암, 대박천, 상항토, 서두 작업소 2. 연암, 굴송 부속제재공장

3. 국직속제재공장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만포제재공장	자강도 만포군 만포면	
중암제재공장	자강도 전천군 전천면	
본궁제재공장	함경남도 함흥시 (본궁)	
위연제재공장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면	
성진제재공장	함경북도 성진시	
무산제재공장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면	

4. 기본건설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소 관 구 역
백두산산림철도 기본건설사무소	함경북도혜 산군혜산면	백두산 산림철도 건설구역 일원
혜산기본건설 사무소	함경남도혜 산군혜산면	혜산 남중림산 사업소 및 위 연국직속제재공장 구역 일원
함흥기본건설 사무소	함 흥 시	함흥, 장진, 도안, 풍산, 원산, 각임산산업소 및 본궁 국직속 제재공장 구역 일원
무산기본건설 사무소	함 경 북 도 무 산 군 무 산 면	무산, 연사, 유평, 연암, 청진, 회령, 길주, 각임산사업소 및 무산, 성진, 국직속제재공장 구 역 일원
강계기본건설 사무소	자 장 도 진 천 군 룡 립 면	칠평, 강계 임산사업소 및 만 포, 중암 국직속제재공장 구역 일원
평양기본건설 사무소	평 양 시	평양, 신의주, 황해, 각임산사업 소 구역 일원

5. 물자관리소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물자관리소	평 양 시	
청진수리공작소	청 진 시	
무산수리공작소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면	
혜산수리공작소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면	
함흥수리공작소	함 흥 시	

6. 목재판매소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목재판매소	평 양 시	

◇ 국유산림 대부에 관한 규칙

(1950. 1. 11. 농림성규칙 제 1 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 성 비준

제 1 조 내각결정 제2호(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서) 별지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국유산림(별지)의 대부는 규정에 의하여 농림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립산물적치장(토장) 립산노동자 사택 창고용지등 립업에 직접 부수되는 사업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서는 소황도(평양시 포함-이하도 이와 같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조 국유산림의 대부는 광업용, 목축용, 잠업용, 과수재배용, 철로부지용, 등 국가 또는 공익사업 기타에 필요한 용도에 한한다.

제 3 조 대부허가 받은자(이하 피허가인이라 칭한다)는 대부지 주위선에서 200m까지의 지역내의 도벌산화 침개간등 일체 산림피해방지 대부지내 무림목지에 관한 조림 및 황폐지에 대한 사방공사 시공책임을 져야한다.

전항 피해발생시는 즉시로 그 상황을 소황 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액은 해당 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피허가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조 피허가인은 대부기간이 만료(사용완료)되었을 때에는 만료후 1년 이내에 본 규정 제 8조2,3호에 해당한 립지는 소황 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원상에 회복(사방공사 시공들의 방법을 취할 것)시키고 식수 조림하여야 한다.

제 5 조 피허가인은 대부허가서에 의한 초년도 대부료를 소황 시,군,인민위원회에 납부하고 허가조항을 틀림없이 이행할데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 임시 사용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국유산림의 대부신청은 별지1호 양식에의한 신청서에 제2호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5만분지1 위치도 및 천분지 실측도를 첨부하여 소황 도인민위원회를 경유 농림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인민위원회는 국유산림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용도의 적부를 그용도가 적당하면 현지조사한 결과 산림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제3호 양식에 의한 국유산림대부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림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국유산림대부료는 다음에 의하여 사정하고 그 납기는 매년 2월말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부료는 그 사용목적에 의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사용 완필 후 산림으로서 원상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용도 1정보당 년 대부료 30~120원

3. 주택 사무소 창고등 건물대지 1평당 년 대부료 1~5원 그러나 전 1,2호에 복수되는 건물대지는 주되는 용도의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도인민위원회 및 시,군,인민위원회에 별지 양식 제5호에 의한 국유산림대부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시,군인민위원회 피허가인으로 하여금 대부지의 구역선 명시(구획선 내측을 폭1m내의 벌취 제거하여야 한다)와 대부지 표식(목주의 피허가인의 주소 성명 허가 년월 일 허가번호 용도 대부기한을 기입할 것) 설치하게하여 대부구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부임지내에 입산물처분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광산도로 및 철도시설 건물 기타 구축물등 부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히 입목 채벌 하여야 할 때에는 조정의 처분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양잠,사료용 입목은 산림대부 피허가인에게 유상처분 하여야하며 피허가인이 이입목을 채벌하려할 때에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법적수속을 밟아 이를 처단한다.

부 칙

본 규정 발표전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림국장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농림상의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지사용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농 립 상 박 문 규
평 양 시

(양식 제1호)

농림상 앞

국유산림대부신청서

1. 소재지 도 시군 면 리 산 번지
 2. 면적 정 단 묘

내역

리 산 번지 정 단 묘
 리 산 번지 정 단 묘
 계 정 단 묘

3. 용도

4. 기간 자 년 월 일 년 월 간
 지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사용코저 국유산림 대부규칙 제1조에 의하여 도면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제출 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바람.

 년 월 일
 주 소 도 시군 면 리
 성 명 인

(양식 제2호)

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적
2. 사업경영의 방법(산림사용방법을 포함)
3. 사업경영의 예산 및 설비
 - ㄱ. 자본금 및 원금
 - ㄴ. 시설금 및 원금
 - ㄷ. 자재
4. 사업착수시기 년 월 일
5. 지방인민들과의 관계
6. 기타사항

(양식 제4호)

농림성산 제 호

년 월 일부 제출한 산림대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

년 월 일

농 립 상 박 문 규

1. 소재지 도 군 면 리 산번 립산 소반내

2. 면 적

3. 용 도

4. 대부(사용)기간 자 년 월 일 개 년간
지 년 월 일

5. 피허가인은 대부지 및 대부지 국위로부터 1키로미터까지의 산림에 대하여 소환 시군인민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산림피해(화재, 남도벌 침개간등)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피해를 발견할 때에는 그 즉시로 소환 시군,인민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전항에 지적된 일체 피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피허가인은 대부임지내에서 임목을 채벌 하려고 할 때에는 소정의 수속을 밟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피허가인은 대부허가 임지 사용기간중 농림상의 지시에 의한 조림 및 사방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사용을 완료할 때 또는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그 즉시로 소환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 적지에 대하여 1개년 이내에 그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8. 허가구역 이외의 사용 및 용도 이외의 사용 기타 허가조항 또는 국유산림 대부규칙에 위반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경우에는 따르는 법적수속을 밟아 처벌한다.

9. 본 허가 접수 즉시로 허가조항은 틀림없이 이행할 때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제5호)

국 유 산 림 내 부 대 장

등록번호	허가						용도	면적	대부료	대부기간	대부지반	년월일	적시검사			비고	
	년월일	번호	도	시군	면	리							산번지	년월일	직성명		결과

제 5 편 상 업, 공 업, 광 업



제 1 절 상 무 행 정

◇ 상업검사에 관한 규정

(1949. 8. 12. 상업성규칙 제5호)

제 1 조 상업검사는 상업에 관한 제법규를 정확히 집행시키며 그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민주상업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규정은 국가 및 소비조합 상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 상업검사는 상업성 상업관리국 및 북조선소비조합중앙위원회 또는 그 산하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를 집행한다.

상업성검사부 및 각급인민위원회 상공부(과)에서는 이를 지도 감독한다.

제 4 조 상업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1. 국가 및 소비조합 상업의 상업상 제법규에 대한 집행정형
2. 소비상품과 그 판매규칙의 준수사항
3. 도매 및 기매(忌賣)행위의 유무
4. 상품배정 자체수매등 상업조직에 대한 사항
5. 노(勞) 사(事)용물자 및 노동보호물자 량곡등 배급사항
6. 상품수수(受授) 및 상품관리 운창(運倉)조직에 관한 사항
7. 도량형기의 정확 여부
8. 소정부과(所定賦課)비률의 보장 여부
9. 시장규칙의 준수사항
10. 식당 려관 및 식품점 상점들의 위생시설 및 영업상 제 단속규칙의 준수사항

제 5 조 검사원이 검사를 집행하고 할 때에는 당해 기관 직장책임자에게 자기의 신임장을 제시하고 검사의 목적과 그 범위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검사원은 상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매개상업법규의 의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견지에서 정확하고 치밀하며 구체적인 책임적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실을 적발하는 동시에 그시정방향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 7 조 검사원이 검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 직장책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절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 8 조 검사원이 검사사업상 필요한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기관 책임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검사원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품의 매매 및 이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매장별(賣場別) 또는 전상점을 폐문 정지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 검사원은 검사상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는 담당책임자 또는 최고책임자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제11조 검사원은 검사상 탐지한 비밀사항에 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원은 상업에 관한 제반법규를 위반한 자 및 부정사건에 대하여는 즉시 소속 기관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검찰기관에 그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원은 소기의 검사가 끝난 후 5일 이내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검사를 받은 책임자는 검사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소정기일내에 이를 리행하고 그 전말을 지정기일내에 해당검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를 받은 기관 직장이 검사원의 검사가 부정확 또는 편파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에 대한 반증(反證)을, 첨부하여 상업상에게 진소할 수 있다.

제16조 각 검사기관은 상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월별검사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보고를 각각 해당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사원이 본규정을 위반 또는 월권행위 기타로 인하여 검사기관의 위신을 저락 시켜올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법적처벌을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상업에 관하여도 필요할 경우에는 본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상업검사규정] (1947년 2월 28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상업국 명령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

상업상장시우

◇ 국정가격운임 요금 및 부대비의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1950. 1. 25 내각결정 제22호 별지)

제1조 본 규정은 내각 및 각성에서 제정 또는 변경하는 가격, 운임, 요금 및 각종 부대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국가인민경제계획에 따르는 가격 운임 요금 및 부대비는 내각이 이를 제정 또는

변경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 격

- (1) 작성 산하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판매가격
- (2) 국가계획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
- (3) 국가소유인 임목 및 묘목의 판매가격
- (4) 국가소유인 임목 및 묘목의 판매가격
- (5) 국가양곡의 판매가격

2. 운임 및 요금

- (1) 철도, 육운, 수운 및 항공부문의 운임 및 요금
- (2) 전차 버스 및 택시운임
- (3) 체신부문의 각종요금
- (4) 전기 및 가스요금
- (5) 수도요금
- (6) 국영피복공장의 각종피복 가공료
- (7) 국유건물의 임대료
- (8) 트랙터 및 농기구의 사용료

3. 부대비

- (1) 국영상업상 소비조합 상업부대비
- (2) 내각수매국에서 수매하는 수매품의 수매부대비
- (3) 교통성 산하 연유관리소의 연유공급 부대비
- (4) 산업성 화학공업관리국산하 화약배급소의 화약부대비
- (5) 기타 내각에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부대비

제3조 제2조에 지적한 가격운임 요금 및 부대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가 그 초안을 작성하여 재정성 상업성 및 관제성(내각 직속국을 포함한다-이하도 이와 같다)과 협의한 후 내각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 작성에서는 전항의 가격운임 요금 및 부대비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상이 제정하되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제정하는 것

- (1)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시작품의 잠정적 판매가격
- (2) 국영기업소의 유희자재 처분가격
- (3) 일시적 주문에 의하여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되는 기계부속품 및 기타 제품의 가격
- (4) 국영기업소에서 국가계획 이외에 생산되는 부산물 스크랩 및 기타 비 규격품의 가

격

(5) 국가계획 이외의 국가무역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 또는 배급가격

3. 보건상이 제정하는 것

보건성 산하 국가의료기관들의 의료비(내각의 기준을 받기 전에 재정성과 합의하여야 한다)

4. 문화선전상이 제정하는 것

(1) 교과서류를 제외한 일반출판물의 정가

(2) 국영극장 및 영화관의 입장료

5. 교육상이 제정하는 것

교육성 편찬관리국에서 출판되는 각종 교과서 및 교편물의 정가

별표

국 가 배 정 물 자

1. 광 유 물
2. 식물성유
3. 유지제품
4. 세 멘 트
5. 조면 및 제면
6. 면사 생사 인견사 모사 및 기타서류
7. 면포 견직물, 인견직물 교직물 모직물 및 기타 직물류
8. 메 리 야 스
9. 양지 박엽지 및 기타 지류
10. 자전거 다이아 고무화 및 기타화류
11. 원목 및 제재
12. 석탄·연탄
13. 물엿 및 포도당
14. 곡류 및 전분

(주) 국가계획위원회는 가격조절상 필요에 의하여 내각의 승인을 얻어 품목을 정할수 있다.

제 2 절 상 · 공 업

◇ 事業登錄에關한 規定

(1948. 11.12. 내각결정제67호)

第1條 다음 各號의 事業을 經營하러는 者(國家機關協同團體 및 個人의 經營을 全部 包含한다)는 各各 그事業體 所在地 市郡人民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1. 第1號 事業

- (1) 鑛 業
- (2) 水 產 業
- (3) 林 產 業
- (4) 牧 畜 業
- (5) 製 鍊 業
- (6) 製 造 業
- (7) 倉 庫 業
- (8) 保 險 業
- (9) 劇 場 業
- (10) 映 畫 製 作 業
- (11) 娛 樂 場 業

2. 第2號 事業

- (1) 請 負 業
- (2) 修 理 業
- (3) 運 送 業
- (4) 出 版 印 刷 業
- (5) 委 託 業
- (6) 塗 裝 業 (肖像畫, 부랑카-트 製作을 包含한다)

3. 第3號 事業

- (1) 物 品 販 賣 業
- (2) 飲 食 店 業
- (3) 旅 館 業
- (4) 仲 介 業
- (5) 代 理 業
- (6) 物 品 貸 付 業
- (7) 理 髮 美 容 業

- (8) 寫 眞 業
- (9) 沐 浴 湯 業
- (10) 醫 藥 業

4. 第4號 事業

- (1) 手 工 業 (賃金勞動者를 使用하지 않는 것)
- (2) 修 繕 業 (洋靴 및 其他 小修理)
- (3) 行 商
- (4) 前各號 事業에 該當되지 않는 其他業(印章業, 代書業等)

第2條 前條의 事業中 다음 各號에 該當한 事業에 있어서는 所管機關으로부터 營業에 對한 許可를 얻은 後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 1. 酒類種麴子製造業(商業機關의 許可가 있는 者)
- 2. 漁 業(水産動植物의 採捕 또는 養殖) 林産業(農林機關의 許可가 있는 者)
- 3. 醫 藥 業(所定한 資格이 있는 者)
- 4. 印 章 業(內務機關의 許可가 있는 者)
- 5. 其他 國家的 指導를 要하는 重要事業으로서 內閣이 指定한 事業
(關係者 또는 其他機關의 認可를 얻은 者)

第3條 事業登錄은 事業種類別로 事業場所마다 그 事業體의 名稱, 經營者 또는 그 責任者名, 名事業體의 所在地, 事業種目등을 登錄하여야 한다.

第4條 事業登錄은 이를 登錄한 年度內에 限하여 効力を 가진다. 事業을 繼續하려고 할 때에는 每年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第5條 事業登錄을 하려는 者는 下記期限內에 事業登錄申請書(第1號樣式)를 所管 市郡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1. 새로 事業을 始作하려고 할 때에는 事業開始前 15日까지
- 2. 登錄을 更新하려고 할 때에는 그 前年 12月 15日까지

第6條 市郡人民委員會에서 事業登錄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15日 以內에 그 內容을 審査하고 登錄簿(第1號樣式)에 登錄한 後 登錄票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7條 登錄事項에 異動이 생긴 때에는 그 事實이 發生된 때부터 10日 以內에 그 事實을 所管 市郡人民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8條 國營事業所以外의 事業登錄申請者는 登錄料로서 다음 表에 該當한 金額의 收入印紙를 申請書에 貼付하여야 한다

다만 消費組合, 合作社經營事業所는 半額에 相當한 收入印紙를 貼付하여야 한다

- 1. 第1號事業 2,000圓

2. 第2號事業 1,000圓
3. 第3號事業 500圓
4. 第4號事業 200圓

第9條 登錄票는 事業所에 이를 揭示하여야 한다

行商을 하는者는 行商에 關한 登錄票를 恒常 携帶하여야 한다

第10條 事業登錄者는 다음 各號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恒常 保健衛生上 適切한 注意를 돌려 事業場所를 清潔히 할 것이며 特히 飲食店業 旅館業 理髮業 및 沐浴湯業等에 있어서는 該當 團束規定을 遵守할 것
2. 公安秩序에 背馳됨이 없도록 할 것
3. 勞動保護에 關하여 適當한 施策을 할 것
4. 事業에 關한 帳簿를 備置하고 經理에 關한 記帳을 正確히 履行할 것

第11條 各級財政機關 員근들은 그 所屬責任者의 命令에 依하여 事業經營責任者로부터 事業에 關한 報告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帳簿 및 關係書類를 檢査할 수 있다

第12條 登錄없이 事業한 者에 對하여는 다음에 依하여 過怠金을 徵收한다

1. 違反者가 國家機關 및 協同團體인 境遇에는 그 責任者부터 400圓
2. 違反者가 個人인 境遇에는 該當登錄料의 5倍에 相當한 金額

第13條 事業登錄申請에 있어서 그 內容을 欺瞞한 者 및 第10條 第4號規定을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그가 納付한 登錄料의 同額의 過怠金을 徵收한다

第14條 第10條 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各各 그 關係法令에 依하여 이를 處斷한다

附 則

1. 本規定은 1948年 11月 20日부터 이를 實施한다
2. 現在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者는 一切 1948年 12月 末日까지 1949年度分登錄을 完了하여야 한다
3. 北朝鮮人民委員會法令 第2號「北朝鮮 稅金制度改革에 關한 決定書」別表第3號 登錄稅率中「七. 商工營業 其他 事業에 關한 登錄」및 同法令 第4號 登錄票稅法 第3條中「七. 商工營業 其他 事業에 關한 登錄」은 이를 削除한다
4.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第52號「工業許可令」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 第128號「水産業에 關한 規定 第13條(製造에 對한 許可規定)」“商業國布告 第5號, 財政局布告 第5號, 財政局布告 第27號『商店許可制實施에 關한 布告』, 保健局指令「飲食店營業團束規則 第1條」, 旅館營業團束規則 第1條, 理髮師營業團束規則 第1條 및 沐浴湯營業團束規則 第1條」는 本規定 實施일부터 이를 廢止한다

(第1號樣式)

194 年度

事業登錄申請書

企業所 또는 機關名稱		電番 話號		企業所 所在地 企業者 居所	番地 里 區 班 番地 里 區 班
經營者姓名 또는 企業所責任者姓名	國營市營民管 等 區 分	年 齡		開業年月日	
事業種類		過去一年間 總收入額		事業 等級	第 號事業
事業種目		使 用 勞 動 者 數		登錄料	圓
上記와 같이登錄을 願하오니 登錄하시고, 登錄票를 發給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年 月 日 申請者姓名 _____ 印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 貴下				收 入 印 紙 貼 付	

(第2號樣式)

事業登錄票

1. 番 號
2. 效力期間
3. 企業所 또는
機關名稱
4. 經營者 또는
責任者姓名
5. 所 在 地
6. 事業種類
7. 事業種目
8. 事業等級 第 號事業
9. 登 錄 料

194 年 月 日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 _____ 印

登 錄 番 號		企 業 所 在 地 機 關 名 稱		經 營 者 姓 名 或 是 企 業 所 責 任 者 姓 名	
企 業 所 在 地		事 業 種 類			
企 業 者 居 所		事 業 種 目			
登 年 月 日		更 新 年 月 日	更 新 年 月 日	更 新 年 月 日	更 新 年 月 日
過 去 一 年 間 總 收 入 額		過 去 一 年 間 總 收 入	過 去 一 年 間 總 收 入	過 去 一 年 間 總 收 入	過 去 一 年 間 總 收 入
使 用 勞 動 者 數		使 用 勞 動 者 數	使 用 勞 動 者 數	使 用 勞 動 者 數	使 用 勞 動 者 數
等 級	第 號 事 業				
登 錄 料	圓				
所 得 稅 額					
備 考					

備 考……國家經營 協同團體 個人別로 登錄簿을 備置할것

◇ 事業登錄에 關한 規定施行細則

(1948. 11. 27 재정성령 제1호)

第1條 事業登錄에 關한 規定 (以下 規定이라고 略稱한다) 第1條에 國家機關이라 함은 國營 生産機關 商業機關(貿易을 包含함), 運輸機關(鐵道를 除外함), 保健機關등으로서 一般行政 費豫算에 所屬하지 않은 獨立採算制機關을 總稱한다.

第2條 規定 第1條에 協同團體라 함은 各級 消費組合 및 各種 合作社를 指稱한다.

第3條 規定 第1條各 號事業體의 分類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1. 鑛業이라 함은 鑛物採掘業을 말하나 鑛山現場에서 製鍊까지 하더라도 이는 鑛業으로 取扱한다
2. 水産業이라 함은 漁撈林産業이라 함은 原本 및 火木採伐을 指稱하나 生産과 製造를 一貫作業하는 境遇에는 水産業 또는 林産業으로 取扱한다.
3. 工業生産은 全部 製造業에 包轄한다
4. 加工料만 받는 精米所 製粉所 製油所 洗濯所등은 請負業으로 取扱한다.
5. 製造와 修理를 兼行하는 造船所와 같은 것은 製造業으로 看做하고 洋靴 및 洋服을 製造 販賣하는 것은 物品販賣業으로 한다

6. 販賣와 修理를 兼行하는 時計商 電氣具商같은 것은 修繕業으로 取扱한다.
7. 委託業과 販賣業을 兼行하는 것은 委託業으로 取扱한다.
8. 料理店業은 飲食店業 下宿業은 旅館業으로 各各 取扱한다.
9. 牧畜業에는 農家 其他의 副業을 包含하지 않는다.
10. 第4號事業中 修繕業은 手工業的으로 經營하는 部分에 局限할 것이며 修理業에 該當치 않는 時計 洋服 自轉車 牛馬車 라디오 蓄音機修繕등을 말한다.
11. 合作社中 手工業的 性質인 것은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의 認定에 依하여 手工業으로 登錄할 수 있다.
12. 2種以上の 事業을 兼行하는 境遇에 그 事業內容이 互相 密接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分에 한하여 一種의 事業으로 看做하고 그 中の 最上級事業으로 取扱한다.

第4條 前條特例를 除外하고 同一인이 數種類의 事業을 同一場所에서 經營할 때에는 事業種類마다 登錄한다.

例=物品取賣業과 代理業

旅館業과 仲介業

第5條 規定 第2條에 該當한 許可事業에 對하여는 所管機關에서 發生한 許可證 또는 認證書 등의 寫本을 申請書에 添附하여야 한다. 그러나 規定 公布前의 酒類 種麴 麴子製造業者에 對하여는 財政機關의 許可證寫本으로 한다.

第6條 所定事業의 登錄이 完了된 때에는 即時 各關係機關에 그 登錄事項을 通報하여야 한다.

第7條 市郡人民委員會에서 登錄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그 內容을 書面 또는 實地에 對하여 嚴密히 審査한 後 事實에 適合하도록 登錄하여야 한다.

第8條 規定 第7條에 依한 異動申告 또는 廢業申告에는 반드시 登錄票를 添附시켜야 한다.

第9條 個人事業에 對한 登錄票의 姓名은 반드시 公民證의 姓名과 合致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10條 規定 第12條에 依한 過怠金을 市郡人民委員會에서 別表와 같은 通告書를 發付하여 七日以內에 收入印紙로써 徵收한다.

第11條 國家機關 및 協同團體에 對한 過怠金은 그 事業體責任者로부터 이를 徵收한다.

第12條 過怠金을 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15日以內에 所管檢察機關에 告發하여야 한다.

第13條 規定 第13條에 依한 過怠金徵收도 同第12條에 依한 過怠金과 同一한 方法으로 한다.

第14條 現在 事業하고 있는 國營機關協同團體 및 個人에 對하여는 全部 本年 12月中으로 登錄시켜야 한다.

第15條 去來稅法 第24條 許可事項은 規定 公布와 同時에 廢止되고 今後로는 商業省의 許可

를 받아야 할 것이니 酒類 種麴 麴子製造에 對한 既許可名單 및 未決書類에 意見을 添附하여 急速히 引繼하여야 한다.

第16條 登錄申請書에 記載할 總收入額은 前前年 12月1일부터 前年 11月末日까지의 分을 記載하되 國營事業機關 또는 協同團體에서 自體內部的 去來額은 이를 控除한다.

第17條 新規開業者의 收入豫定額은 開業當時부터 年度末까지의 收入豫定額으로 한다.

第18條 使用勞働者數는 當時 使用者數로 할 것이며 新規開業者に 대하여는 最高使用豫定數로 한다.

第19條 登錄簿는 國營協同團體 및 個人別로 別口座에 區分整理한다.

第21條 事業種類는 第1條에 別舉한 業名을 記入하고 種目에는 物品販賣業中에 布木 食料品 燃料 紙物등과 같이 記入한다.

第22條 事業登錄結果는 別紙樣式에 依하여 다음 期日內에 各各 報告하여야 한다.

1. 12月末日現在 -- 市郡은 道에 翌年1月15日까지, 道는 財政省에 1月20日까지
2. 6月末日現在 -- 市郡은 道에 7月15日까지, 道는 財政省에 7月20日까지

第23號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 過怠金通知書를 發行한 것은 別紙樣式에 依한 臺帳에 登錄하고 그 統計를 別紙樣式에 依하여 前條의 報告와 同時에 提出하여야 한다.

財 政 相 崔 昌 益

1948年11月27日

平壤市

事業登録에 관한 規定違反過怠金 通知書

違反者 住 所

機 關 名

責任者姓名

企 業 所 名 稱

事 業 種 類

事 業 場 所

開 業 年 月 日

上記事業에 대하여 事業登録에 관한 規定第 條違反第 條에 該當함으로 過怠金
圓을 收入印紙에 添附하여 年 月 日까지 市郡人民委員會에
納付할 것이다(萬若 期限內에 履行치 않는 때에는 檢察機關에 告發한다)

年 月 日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 姓 名 印

上記通報를 確認하고 우와 같이 收入印紙로 過怠金を 納付함

年 月 日
納付者 姓 名 印

收入印紙添附欄

事業登錄報告

12月末
現在
6月末

市郡名	區分	第 1 號 事 業										
		1 礦 業				2 何 何 業				計		
		人員	總收入額	勞働者數	登録料	"	"	"	"	"	"	"
	國家機關											
	協同團體											
	個人											
總計	國家機關											
	協同團體											
	個人											

備 考 1. 各號事業을 種類別로 全部 羅列하고 市郡計를 添附할것

2. 物品取賣業에 對하여는 다음 種目別로 區分한 市郡別附表를 本樣式에 準하여 添附할 것

食料品商 服第雜貨 洋品雜貨 布木 金物 紙物 書籍文房具 燃料 建築材料 陶磁器
洋服 洋靴 古物 百花 其他

事業登錄 規定違反者 通告 臺帳

違反者	住所			
	機關名		責任者姓名	
企業巢名稱			事業種類	
事業場所				
開業年月日			通告年月日	
違反條項			該當條項	
過 怠 金				
告發年月日				
裁 判 結 果				
摘 要				

事業登錄 規定違反者 通告狀況表

自1月 至 6月分

自7月 至 12月分

違反者		國家機關		協同團體		個人		計	
		件數	過怠金	件數	過怠金	件數	過怠金	件數	過怠金
同上 內譯	第1號該當								
	第13條 前段該當								
	第13條 後段該當								
	告發								
	裁 判 結 果								
備考 1. 告發하였으나 裁判되지 못한 분으로서 翌期中에 判決된 것은 裁判結果欄에 外書朱書할것									

◇ 電氣需給에 關한 規定

(1948. 12. 29 산업성규칙 제7호)

第 1 章 總 則

第 1 條 電氣의 需給은 本規定에 依한다.

本規定에 供給機關이라 함은 國營配電事業機關을 말한다.

本規定에 需用者라 함은 電氣를 使用하는 一切 機關團體企業所 및 個人등을 말한다.

第 2 條 電氣의 需給은 다음 種別과 標準에 依한다.

但 特別한 境遇에는 다른 標準에 依하여 需給할 수도 있다.

方式 供給種別	電 燈	電 力	電 熱
電 氣 方 式 周 波 數	單相交統二線式 60 『사이클』	三相交統二線式 60 『사이클』 低壓 220 『볼트』 高壓 3.300 『"』 11.000 『"』	單相交統二線式 60 『사이클』
電 壓	100 『볼트』	22.000 『"』 44.000 『"』 66.000 『"』 154.000 『"』 220.000 『"』	100 『볼트』
需 給 時 間	夜間 또는 晝夜間	晝 夜 間	晝 夜 間

但 電壓은 供給地點에 있어서 電燈은 5%, 電力 및 電熱은 10%까지 上下할 수 있다.

供給機關은 每月 2日以內에 限하여 機械電線路等點檢修理가 必要할때에는 晝間供給을 中止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供給機關은 新聞 放送 其他 報道機關 또는 書面 電話 其他로써 需用者에 게 늦어도 24時間前에 豫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電燈需用者에 대하여서는 通知를 省略할 수 있다.

第 3 條 供給機關은 新需用者에게 電氣需給에 關한 規定을 充分히 說明하며 自記事業場에 常時로 揭示하여야 한다

第2章 需給節次

第4條 電氣를 需用할 者는 所定樣式에 그 種別 用途 容量 個數 및 需用場所를 明確히 記入하여 供給機關에 申請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需用의 一部 또는 全部를 廢止 撤廢할 때에는 前項에 依하여 한다.

第5條 供給機關은 前條의 申請에 對하여 接受日부터 10日以內로 그 可否를 需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6條 供給機關은 다음 事項이 具備되고 需用에 應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電氣를 供給하여야 한다

1. 需用者가 法令 其他 電氣需給에 關한 規定을 遵守할 때
2. 需用場所의 電氣工作物 및 電氣機器가 完備되었을 때
3. 50「키로와트」以上の 需用者에 對하여서는 産業省電氣管理局長의 承認이 있을 때

第7條 移轉 讓受 其他로 該當需用場所에 있어서 需用者가 異動 또는 變更되었을 때에는 新 需用者는 前需用者의 電氣使用에 關한 一切 權利義務를 引繼한다.

前項의 경우에 需用者는 迅速히 供給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3章 電氣工作物の 施設 및 補修

第8條 需用場所까지의 配電線路(變壓機를 包含) 및 家入線의 施設 및 維持補修는 供給機關이 負擔한다.

施設地의 狀況 其他 事由로 特殊의 施設 或은 多額의 費用을 要할 때에는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需用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設備는 供給機關의 所有로 된다.

第9條 需用場所內의 電氣工作物 및 電氣機器의 施設 및 維持補修는 需用者의 負擔으로 供給機關이 이를 實施한다.

第10條 需用者는 産業相의 許可를 얻어 自己의 負擔으로 自家用電氣工作物을 施設할 수 있다.

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者는 電氣需給에 支障이 없도록 恒常 自記設備를 補修하여야 한다.

第11條 需用場所內의 積算電力計의 施設 또는 變更等 一切 工事は 供給機關이 이를 實施한다.

積算電力計는 供給種別(電燈 電力 電熱)로 設置하여야 한다.

第12條 需用者는 産業省에서 檢定 또는 承認하지 않은 電氣機器를 使用할 수 없다.

供給기관은 電氣供給開始後라도 隨時로 需用場所의 電氣工作物 및 電氣機器를 檢査할 수 있으며 必要할 때에는 電流制限器의 架設 또는 需用場所의 電氣機器에 封印을 할 수 있다.

第13條 供給機關은 保安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需用者所有의 電氣工作物 및 電氣機器에 對하여 變更 修繕 或은 特別한 施設 또는 그 撤廢를 命令할 수 있다 이 때에 工事費는 需用者가 負擔하여야 한다.

第14條 需用者는 그 電氣工作物에 異狀이 있음을 認定할 때에는 即時 供給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供給機關은 都市에 있어서는 3時間以內로, 其他에 있어서는 12時間以內로 点檢하여야 한다.

第15條 需用者는 電氣工作物에 直接 影響이 있는 物件의 新增設 變更 또는 修繕을 하려고 할 때에는 工事前에 供給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 需用者가 供給機關所有의 電氣工作物 또는 電氣機器를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毀損 또는 喪失하였을 때에는 賠償의 責任을 져야 한다.

第4章 需給方法

第17條 電燈의 需給方法은 다음 3種에 依한다.

1. 定額電燈

同一한 需用場所에 있어서 架設燈數 30燈 未滿에 限하여 需給하되 架設燈數 每個의 燭光을 基礎로 定額制로 需給한다.

2. 從量電燈

同一한 需用場所에 있어서 架設燈數 5燈以上에 限하여 燈數 및 그 使用電力量을 基礎로 하여 從量制로 需給한다. 但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5燈以內라도 從量制로 需給할 수 있다.

3. 臨時燈

繼續 点燈期間 1月未滿의 臨時電燈需給으로써 定額制 또는 從量制로 需給한다.

第18條 照明用 電燈은 使用場所의 條件 또는 作業上 不得已하다고 認定하는 것 以外에는 晝簡需給을 할 수 없다.

第19條 電燈需用者는 供給機關의 許可를 얻어 라디오 電氣時計 및 家庭用아이롱(500W以下)을 使用할 수 있다.

第20條 電力의 需給方法은 다음3種에 依한다

1. 常時電力

繼續使用期間 滿 3月以上에 限하여 需給하되 契約容量을 基礎로 하여 從量制로 需給한다.

2. 臨時電力

繼續使用期間 3月未滿에 限하여 需給하되 需給方法은 常時電力에 準한다.

3. 夏期用電力

灌溉 排水 其他 農事用 및 夏期에 限하여 每年 一定한 期間에 使用하는 것에 限하여 需給하되 需給方法은 常時電力에 準한다.

第21條 電力으로 需給하는 電氣는 照明用이나 電熱用에 使用할 수 없다. 다만 自家用電氣工 作物施設者는 自記의 生産作業場 및 構內事務室에 限하여 照明用으로 使用할 수 있다.

第22條 電力의 契約容量은 需用場所內 電氣設備의 總容量에 依한다. 그러나 專用變壓機를 使用할 때에는 그 變壓機와 使用設備와의 容量이 큰 것에 依한다.

設備機器의 銘記容量이 馬力 또는 「키로볼트암페어」로 表示된 것은 1馬力 또는 1「키로볼트암페어」를 1「키로와트」로 計算한다.

總容量이 1「키로와트」未滿의 數가 發生할 때에는 이를 1「키로와트」로 計算한다.

50 「키로와트」以上의 需給에 있어서는 設備容量에 關係하지 않고 契約最大容量을 協定할 수 있다.

第23條 電熱에 電氣를 需給하는 方法은 契約容量을 基礎로 한 從量制로 한다.

第24條 電熱로 需給하는 電氣는 照明用에 使用할 수 없다.

第25條 電熱의 契約容量은 需用場所內에 있는 電氣使用設備의 總容量을 基準으로 하되 다음에 依하여 決定한다. 그러나 專用變壓機를 使用할 때에는 그 變壓器와 使用設備의 容量이 큰 것에 依한다.

1. 電流制限器

2. 受口1個인 때에는 使用器具의 最大容量

3. 受口2個以上인 때에는 同時に 使用할 수 있는 機器中의 容量 큰 것의 總和

總容量 1「키로와트」未滿의 數가 發生할 때에는 이를 1「키로와트」로 計算한다.

第26條 電力 및 電熱需用者의 實際最大電力은 積算電力計의 每30分 또는 1時間指示로 하되 그 月 또는 그 期間中의 最大인 것을 그 月 또는 그 期間의 最大電力으로 한다.

第27條 電力 및 電熱需用者는 需用場所에 있어서 需用電力 各相間의 負荷를 常時 平衡케 하여야 하며 力率은 85%以上으로 常時 保持하여야 한다.

第28條 自家用電氣工 作物施設者는 所定樣式에 依한 電力需給日誌를 常備하여 電力需給에 關한 必要事項을 明確히 記錄하여야 한다.

전항의 需用者는 供給機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記錄의 제시 或은 寫本을 送付하여

야 한다.

第5章 供給의 制限中止 및 停止

第29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供給機關은 電氣의 供給을 制限 또는 中止할 수 있다.

1. 法令 政令 및 內閣의 決定 指示 또는 產業相의 指示가 있을 때
2.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에 因할 때
3. 電氣工作物에 故障發生 또는 發生할 念慮가 있을 때
또는 電氣工作物의 修繕 變更 點檢 其他 工事上 不得已할 때
4. 其他 保安上 必要할 때

第30條 需用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供給機關은 電氣의 供給을 停止 또는 拒絕한다.

1. 電氣事業에 관한 法令 또는 決定 指示에 違反할 때
2. 擅用(盜電 및 濫用)하였을 때
3. 電氣料金 其他 諸料金의 支拂을 延滯하였을 때
4.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因하여 供給機關所有의 電氣工作物을 毀損 喪失 또는 電氣使用에 關하여 供給機關에 損害를 주었을 때
5. 第12條 및 第32條에 違反하여 電氣를 使用 또는 그 檢査를 拒絕하였을 때
6. 第13條의 명령을 履行하지 않았을 때
7. 第15條에 의한 통지를 怠慢하였을 때
8. 第28條에 의한 記錄을 怠慢 또는 虛偽記錄을 하였을 때

第31條 前2條에 依하여 電氣의 供給을 制限 中止 停止 또는 拒絕함으로 因하여 需用者가 損害를 입을 때라도 供給機關은 賠償의 責任이 없다.

第6章 擅用(盜電 및 濫用) 團束

第32條 供給機關은 電氣의 擅用을 團束하기 위하여 需用者의 電氣需用狀態를 隨時檢閱할 수 있다.

第33條 需用者가 電氣需用에 있어서 無斷으로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擅用으로 認定한다.

1. 無斷新增設 또는 契約容量을 超過使用하였을 때

2. 夜間需用電燈을晝間에 点火하였을 때
3. 承認받은 需用場所 및 承認받은 用途以外에 使用하였을 때
4. 計量器의 裝置를 改變하여 不正使用하였을 때
5. 承認하지 않은 機器를 使用하였을 때

第34條 擅用事實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第30條에 依하여 3個月以下의 供給停止 또는 供給拒絶을 한다.

특히 情狀이 重한 것은 法的 手續을 밟아 이를 處斷한다.

1. 計量器의 裝置를 改變하여 不正使用하였을 때
2. 電動力을 新設 또는 增設하였을 때
3. 電氣溫突을 新設 또는 增設하였을 때
4. 電熱을 新設 또는 增設하였을 때
5. 電燈2燈以上の 新設 또는 3燈以上 增設하였을 때
6. 承認하지 않은 機器를 使用하였을 때
7. 再犯일 때

第35條 擅用하기 爲하여 電氣設備 또는 機器를 破損하였거나 擅用으로 인하여 電氣설비 또는 기기를 喪失하였을 때에는 원상대로 完全復舊함에 必要한 費用을 徵收한다.

第36條 擅用器具는 一切 이를 押收한다.

第7章 料 金

第37條 電氣料金は 國家制定 價格에 依한다.

第38條 需用者는 다음에 依하여 供給機關이 請求한 날에 供給機關이 指定한 場所 또는 指定人에게 料金を 納付하여야 한다.

1. 定額制電氣料金

曆月に 依한 1個月로써 1個月分으로 한 所定料金を 每月 또는 數個月分을 先金으로 徵收한다

2. 從量制電氣料金

曆月に 依한 1個月로써 1個月分으로 한 所定の 基本料金月額과 그 月の 使用電力量料金の 合計額을 그 月分電氣料金屬으로 每月 徵收한다.

그 月の 電力量料金屬은 前月檢針日부터 그 月檢針日까지의 間に 使用한 電力量에 依하여 算出한다.

基本料金屬은 電氣를 使用하지 않을 때라도 納付하여야 한다.

따로 協定하지 않은 限 料金計算은 積算電力計單位로 한다.

3. 臨時供給電氣料金

定額制로 供給하는 때에는 所定料金を 先納하고 從量制로 供給하는 때에는 概算額을 豫納하되 電氣使用完了와 同時에 清算한다.

4. 手數料 및 諸工料는 그 當時에 이를 徵收한다.

第39條 日額으로 料金を 定한 것으로 그 月の 使用日數가 1個月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月の 料金は 다음에 依하여 算出한다.

使用日數 15日까지의 때 月額料金の 半額

使用日數 16日以上の 때 月額料金の 全額

第40條 積算電力計의 故障 其他 原因으로 正確한 檢計이 不可能할 때의 使用電力量은 當該 計算期間前 3個月間의 平均使用電力量과 前年同月實績과의 中 큰 것에 依한다.

그러나 負荷率이 顯著히 不同한 事實이 明白할 때에는 需用場所의 設備 및 需用場所를 參酌하여 算出한다.

第41條 擅用事實을 確認할 때에는 認定하는 그 事實로 因하여 未納된 料金を 다음에 依하여 徵收한다.

1. 擅用電力量

擅用容量에 다음 標準에 依한 使月時間을 乘하여 算出한다

(1) 家庭用

電燈1日標準使用時間14時間

라디오 " 7時間

電熱 " 6時間

溫突 " 24時間

(2) 事業用

作業時間 및 用途等を 參酌하여 使用時間을 算出한다

(3) 計量器의 裝置를 政變하여 不正使用한 것으로 그 使用電力量이 不明할 때에는 1日 24時間 全裝置를 使用한 것으로 認定한다.

(4) 擅用期間이 不明할 때에는 그 期間을 6個月로 한다.

2. 擅用料金

그 情狀에 따라 該當種別 電氣料金最高額의 5부이내의 擅用電力料金を 받는다.

第42條 夏期用電力은 그 使用期間이 3個月未滿일 때라도 基本料金は 3個月分에 該當한 金額을 받는다.

第43條 自家用電氣工作物需用者로서 第21條에 依한 場所以外에 附屬舍宅에 使用하는 電燈 및 電熱 各各 所定料金を 適用한다.

第44條 需用者が 料金納付를 延滯料를 延滯할 때에는 徴收한다.

延滯料는 延滯金額 100圓에 對하여 1日5錢으로 한다. 연체료는 第38條에 依하여 供給機關이 請求한 날부터 起算하여 第5日이 되는 날부터 起算한다.

第45條 第29條에 依한 電氣供給의 中止가 繼續 24時間以上이 될 때에는 定額制電氣料金 및 從量制電氣料金の 그 本料金は 其該當日數分을 日割計算으로 그 月分料金에서 減額한다.

日割計算은 月の 大小를 莫論하고 1個月을 30日로 하여 錢位未滿은 4捨5入한다.

第46條 料金計算後에 料金異動이 發生할 때에는 다음 計算分에서 清算한다.

第47條 供給機關은 必要에 따라 需用者에 對하여 保證金 또는 保證人을 要求할 수 있다.

附 則

本規定은 1949年 1月 1日부터 이를 實施한다.

本規定 實施以前 現在 契約中の 需用者는 本規定에 依한 電氣供給을 申請한 것으로 認定한다.

産 業 相 金 策

◇공작기계 등록에 관한 규정

(1949. 3. 5.)

제 1 조 기계기구(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주물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이의 수리(자가용 수리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작업장을 포함한다)은 「공작기계 등록에 관한 결정서」(1949년 3월 5일 내각결정 제22호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설치한 절삭용, 연마용, 단조용 금속공작기계, 목공공작기계 및 주조설비(이하 공작기계라고 약칭한다)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2 조 등록할 공작기계의 종류와 범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 3 조 공작기계를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는 1949년 3월 10일 현재로서 1949년 4월 15일까지 공작기계 등록신청서(양식 제1호)와 등록표(양식 제2호)를 각각 2통씩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작기계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또는 자가에서 제작 설치하였을 때에는 구입 또는 제작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작기계등록 신청서(양식 제1호)와 등록표(양식 제2호)를 각각 2통씩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작기계를 이동(타처에 이양 또는 매매함을 말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하기 전

에 미리 이동신청서(양식 제3호) 2통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로 이동 완료하여야 한다.

이동 완료 후는 이동완료보고서 2통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등록기관은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수속이 완료한 자에게는 공작기계등록증 (양식 제5호)과 함께 공장 기계등록증 교부서(양식 제4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한 자는 해당 공작기계에 공작기계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작기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공작기계등록에 관한 결정서」(1949년 3월 5일 내각 결정 제22호)에 의하여 내무성에서 관할하되 국영기업소 및 국가기관의 소유는 해당성 (내각직속국을 포함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정당,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소유로 소재지의 도 (평양시를 포함한다)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 8 조 등록 및 이동수속을 하지않는 공작기계는 내무성에서 이를 처분하여야 하며 등록 및 일체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법적수속을 밟아 이를 처단한다.

(별표 제1호)

공 작 기 계 분 류 표

번호	기계부호	부문별	종 류	명 칭	비 고
1	1-1	절삭용공작기계	선 반	보 통 선 반 대 형	스윙 1,000mm 이상
2	1-2		"	" 중 형	스윙 500~1,000mm
3	1-3		"	" 중 형	스윙 500mm 이하
4	1-4		"	타 렛 트 선 반	
5	1-5		"	견 타 렛 트 선 반	
6	1-6		"	자 동 선 반	
7	1-7		"	견 선 반 소 형	스윙 2,000mm 이하
8	1-8		"	견 선 반 대 형	스윙 2,000mm 이상
9	1-9		"	정 면 반	
10	1-10	절 용 공 작 기 계	"	공 구 선 반	
11	1-11		"	탁 상 선 반	
12	1-12		"	차 룬 선 반	
13	1-13		"	2 번 취 선 반	
14	1-14		"	방 선 반	
15	1-15		"	나 사 절 선 반	

번호	기계부호	부문별	종 류	명 칭	비 고
16	1-16		선 반	정밀나사절선반	
17	1-17		"	돌 절 선 반	
18	1-18		"	크 랑 크 축 선 반	
19	1-19		"	롤 선 반	
20	1-20		"	차 축 선 반	
21	1-21		"	캠 축 선 반	
22	1-22		"	기 타 선 반	
23	2-1		볼 반	라 디 알 볼 반	
24	2-2		"	건 형 볼 반	
25	2-3		"	다 축 볼 반	
26	2-4		"	정 밀 다 축 볼 반	
27	2-5		"	탁 상 볼 반	
28	2-6		"	평 가 감 볼 반	
29	2-7		"	이 동 볼 반	
30	2-8		"	침 공 볼 반	
31	2-9		"	횡 볼 반	
32	2-10		"	기 타 볼 트	
33	3-1		보-링	횡형보링반소형	직경 100mm 이하
34	3-2		"	" 대형	" " 이상
35	3-3		"	직 보 - 링 반	
36	3-4		"	정 밀 보 - 링 반	
37	3-5		"	기 타 보 링 반	
38	4-1		후라이스반	횡 후 라 이 스 반	
39	4-2			건 후 라 이 스 반	
40	4-3			만 능 후 라 이 스 반	
41	4-4			평 식 후 라 이 스 반	
42	4-5			나사절후라이스반	
43	4-6			방 후 라 이 스 반	
44	4-7			기 타 후 라 이 스 반	
45	5-1		연마반	횡 연 마 반	프레인그라인다

번호	기계부호	부문별	종 류	명 칭	비 고
46	5- 2		연마반	만 능 연 마 반	싸휘이스그카인다
47	5- 3		"	내 면 연 마 반	
48	5- 4		"	평 면 연 마 반	
49	5- 5		"	공 구 연 마 반	
50	5- 6		"	치 차 "	
51	5- 7		"	내 치 연 마 반	
52	5- 8		"	나 사 절 연 마 반	
53	5- 9		"	심 무 연 마 반	
54	5-10		"	기 타 "	
55	6- 1		치절반	흡 빙 치	
56	6- 2		"	치 차 형 삭 반	
57	6- 3		"	간 치 치 절 반	
58	6- 4		"	기 타 치 절 반	
59	7- 5		평삭반	문 형 평 삭 반 소 형	
60	7- 6		"	" 대 형	
61	7- 7		"	편 지 평 삭 반	
62	7- 4		평삭반	연 삭 반	
63	7- 5		"	기 타 평 삭 반	
64	8- 1		형 형삭반	형 삭 반	
65	8- 2		"	견 형 형 삭 반	
66	8- 3		"	견 삭 반	
67	8- 4		"	기 타 형 삭 반	
68	9- 1		금절 거반	금 절 거 반	
69	9- 2		"	금 절 원 거 반	
70	9- 3		"	금 절 대 거 반	
71	10- 1		기타절삭용기계	부 로 치 반	
72	10- 2		"	심 립 반	
73	10- 3		"	리 - 마 반	
74	10- 4		"	나 사 립 반	
75	10- 5		"	노 반	
76	10- 6		"	귀 - 강 반	

부호	기계부호	부문별	종 류	명 칭	비 고
77	10- 7		기타절삭용기계	형 조 반	
78	10- 8		"	방 형 조 반	
79	10- 9		"	직 선 목 성 기	
80	10-10		"	원 판 목 성 기	
81	10-11		"	치 차 면 취 반	
82	11-12		"	기 타 기 계	
83	11-1	주용공작기계	푸레스	크 랑 그 푸 레 스	
84	11- 2		"	나 사 "	
85	11- 3		"	마 찰 "	
86	11- 4		"	화 조 "	
87	11- 5		"	수 압 "	
88	11- 6		"	기 타 "	
89	12- 1		추 기	증 기 추	
90	12- 2		"	공 기 추	
91	12- 3		"	낙 하 추	
92	12- 4		"	스 프 링 추	
93	12- 5		"	기 타 추	
94	13- 1		전단타관기	판 금 용 전 단 기	
94	13- 2		"	판 금 용 전 단 기	
95	13- 2		"	로 타 리 전 단 기	
96	13- 3		"	기 타 전 단 기	
97	13- 4		"	타 관 기	
98	13- 5		"	정 단 금 타 관 기	
99	14- 1		"	곡 륜	
100	14- 2		물	의 취 륜	
101	15- 1	주조기계	전기로	에 루 로	
102	15- 2		"	유 도 로	
103	16- 3	대공기계	목공거반	대 거 반	
104	16- 2		"	원 거 반	
105	16- 3		"	형 면 거 반	

부호	기계부호	부문별	종 류	명 칭	비 고
106	16- 4		목공거반	사 거 반	
107	16- 5		"	통 거 반	
108	16- 6		"	기 타 거 반	
109	17- 1		목공포반	평 압 거 반	
110	17- 2		"	자 동 차 면 포 반	
111	17- 3		"	자 동 양 면 포 반	
112	17- 4		"	자 동 3 면 "	
113	17- 5		"	자 동 4 면 "	
114	17- 6		"	기 타 포 반	
115	18- 1		목공용천반	목 공 불 반	
116	18- 2		"	흡 천 반	일 명 호 조 혈 반
117	18- 3		"	흡 천 불 반	일 명 호 조 혈 불 반
118	18- 4		"	폐 혈 불 반	
119	19-1		목공쌍물 가공기계	원 거 목 립 반	
120	19- 2		"	대 거 목 립 반	
121	19- 3		"	대 거 교 정 기	
122	19- 4		"	대 거 접 목 연 마 반	
123	19- 5		"	포 검 연 마 반	
124	20- 1		목공기계	목 공 선 반	
125	20- 2		"	소 구 절 반	
126	20- 3		"	목 공 후 리 이 스 반	
127	20- 4		"	층 의 후 리 이 스 반	
128	20- 5		"	기 타 목 공 기 계	

(주) 상기한 명칭은 공업용 슬어 개정시까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명기하였음

양식 제 1 호

공 작 기 계 등 록 신 청 서

소유지 _____

앞 _____

공장명 _____

책임자 _____ 인

아래와 같이 등록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랍.

부문별	종 류	계	조업	휴지	고장	부문별	종 류	계	조업	휴지	고장
절삭연마용금속공작기계	선 반					목공작기계	목공거반				
	불 반						목공포반				
	보링마신						목공공야반				
	후라이스반						목 공 물가공기계				
	연 마 반						목 공 잡 종				
	치 절 반										
	평 삭 반										
	형() 삭반										
	금 절 거 반										
	기 타										
소 계					소 계						
기타금속공작기계	프 레 스					주 조 설 비	전 기 로				
	거 기										
	전단절판기 롤										
	기 타										
소 계					소 계						

신청년월일 년 월 일

양식 제 2 호

공작기계등록표

소재지 _____

공장명 _____

책임자 _____

기계부호		기계명칭		형식		칭호촌수	
기계등록부호		제조소명				설치장소	
주요촌수및성능		소속품촌수및수량			기타사항		
구분		구분				취득년월일	
						설치년월일	
						정도	
비고					소속기관		

이 동 란

이동년월일	이 동 선		이동이유
	도·시·군·리 기업소 및 설치장소		

양식 제 3 호

공 작 기 계 이 동 신 청 서

앞

신청년월일

소재지

기업소명칭

아래와 같이 이동코져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랍.

책임자

등록증번호	기계명칭	형식	칭호촌수	제작소명	현재설치장소	이동하려는장소	이유

이를 승인함

년 월 일

등록 기관명 인

양식 제 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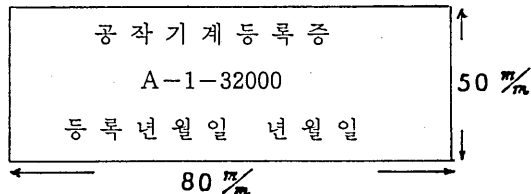
공 작 기 계 등 록 증 교 부 서

앞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공작기계등록증을 교부하니 해당기계에 반드시 첨부할 것

신청년월일	기계명칭	요식	칭호촌수	제작소	설치장소	등록증번호	등록년월일

양식 제 5 호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관한 규정

(1950. 2. 21 내각결정 제42호 별지)

제 1 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선진적 농업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노력 농가들에게 생산적 협조를 줌으로서 농업생산량을 더욱 높이기 위한 국영기업소이다.

제 2 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경지 및 기타 작업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 또는 농가들과의 체

결한 계약에 의하여 모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농림성에 직속하여 농림상에게 복종한다.

제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자기 사업에 있어서 지방인민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져야하며 이들 기관들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사업에 일상적 원조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제6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트랙틀 빠-르크로서 노력농가들의 농지 기경과 기타의 농촌 경리작업(탈곡·선종 농기구수리 국가수납장에 농산물운반 등)을 실시하고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임경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받는다.

제7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축력을 소유하지 못한 노력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농지의 면적과 지형에 있어서 트랙틀 사용이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서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하여 기경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농지면적의 대소와 지형에 의하여 개별적 필지로는 트랙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민 상호간의 협의로서 트랙틀로 기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의 경작농민들과 농지 기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한 면적을 종합적으로 기경한다.

제9조 트랙틀 기경전 준비작업(논두렁 마시기·농경지 트랙틀 통행로 수확물 철수등) 및 트랙틀 기경후 논두렁 작성등은 농가 자신이 자기의 노력과 경비로서 제때에 실시하여 트랙틀 경지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와 농가간에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경소가 실행한 작업들은 트랙틀 작업반 반장 또는 트랙틀 운전수(혹은 기타 농기계 임경소의 대표자)가 해당 농민에게 약트로서 이를 인계한다.

그러나 실행한 작업이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농민은 해당 임경소에 대하여 다시기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개 국영 농기계 임경소들은 트랙틀 빠-르크 농기계 빠르크 유류창고(유류 및 윤활유창고)수리공장 및 자동차 빠-르크 등을 가진다.

제1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지도 일꾼들은 다음과 같다.

1. 지배인
2. 기사장겸 부지배인
3. 군중문화 부지배인
4. 부기장

5. 유류창고책임자
6. 수리공장장
7. 계약 및 임경료 수납 책임자
8. 순회기계 기수(지구기계 기수)

제1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는 자기의 작업실행을 위하여 농기계 임경소의 기본적 생산단위로 되는 트랙틀 작업반을 조직한다.

제15조 매개 트랙틀 작업반을 3~4대의 트랙틀과 그에 해당되는 부속농기구들로서 구성된다.

작업반은 트랙틀 작업반장이 이를 지휘한다.

제16조 트랙틀 작업반의 반장 및 반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트랙틀 빠르크 그의 설비품 기구 및 자재들의 보관에 대하여 물질적 책임을 진다.

제17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들의 토의해결 및 국영 농기계 임경소와 관계되는 지방주민들간에 직접적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국영 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를 조직한다. 국영 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의 성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제18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는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위원장) 부지배인(기계기사)(부위원장), 군중문화부 지배인(부위원장), 부기장, 계약 및 임경료 수납책임자, 임경소 작업지역의 군인민위원회위원장, 농기계 임경소 작업의 20% 이상이 실시되는 면인민위원회위원장들로서 구성된다. 이외에 국영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에는 농기계 임경소 작업이 광범히 실시되는 지역의 리 인민위원회위원장,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모범작업반장, 국영 농기계 임경소 트랙틀운전수, 그의 일부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도일꾼, 열성농민, 열성노동자들도 참가할 수 있다.

제19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의 성원은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의 내신에 의하여 농림상이 이를 비준한다.

제20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는 중요한 농사작업전에 소집하여야 하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제의 또는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전체 작업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21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협의위원회는 협의기관이며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의 어떠한 명령 또는 지시든지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지배인은 내각수상이 임명하며 부지배인(기계기사) 군중문화 부지배인 및 부기장은 농림상이 이를 임명한다.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타 지도일꾼들은 농림상의 비준을 얻어 지배인이 임명하며 노동자

사무원들은 지배인이 직접 이를 임명한다.

제2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지배인은 그의 유일한 책임자이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모든 생산재정 운영 및 그 계획 실행과 농가들과의 체결된 계약에 의한 의무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은 직접 농림상에게 복종하며 다만 상, 부상 및 농림성 내의 국영 농기계 일꾼들의 명령과 지시만을 수행한다.

제25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모든 물질적 제반시설과 재정을 관할하며 반드시 준비된 생산 재정계획과 예산에 의거하여 그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은 농림상의 명령 지시 및 내각결정지시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27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 농민들과의 체결된 계약에 의한 제반사업을 보장할데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완전히 실행하도록 조직 지도한다.
2.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연료 유통유 예비부속품 및 수선자재의 공급을 조직한다.
3. 트랙틀의 올바른 기술적 운영의 기초위에서 그들의 높은 작업능률을 부단히 보장한다.
4. 기계 트랙틀 빠르크의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며 또 그를 옹계 보관한다.
5. 트랙틀 작업반에 대하여 부단히 사업상 지도를 한다.
6. 국가재산의 최대의 절약 및 트랙틀 작업의 질적보장으로로서 그의 원가 저하를 위하여 투쟁한다.
7.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생산수리와 작업노동자들 및 기타에 대한 임금지불을 제때에 보장한다.
8.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전체 재산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9. 국영 농기계 임경소 노동자 사무원들의 안전기술과 노동보호에 대한 대책들을 실시한다.
10. 국영 농기계 임경소 노동자 사무원들 및 전문가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1. 국영 농기계 임경소 노동자 사무원들 및 전문가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2.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생산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3. 지방농민들 속에서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목적과 과업에 대한 광범한 해설사업을 전개한다.
14. 기계 트랙틀 빠르크 및 그의 운영과 통계 방법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전문적 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제28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전체기계 트랙플 빠르크의 기술적 지도자이며 트랙플 빠르크 생산과 기술적 운영문제들에 대한 지배인의 보조자이다.

제29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자기사업에 있어서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의 명령지시 농립상의 명령지시 기계와 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과 규정 등에 의하여 지도한다.

제30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지배인과 함께 기계 트랙플 빠르크의 기술적 상태와 옹바로 운영 및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생산계획 완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사장겸 부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 전문적 지식과 선진기계 기구의 도입 사용 및 그 연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2. 트랙플 농업기계 및 자동차 운수 등의 기술적 옹바른 운영을 조직한다.
3. 기계 및 트랙플 빠르크의 기술적 관리와 수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4. 트랙플 작업인들에게 작업시의 기술적 방조를 조직 보장한다.
5. 트랙플 빠르크의 기술적 상태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타 시설들에 대한 검열을 정기적으로 자신이 직접 실시한다.
6. 내각 혹은 농립성에서 제정한 기준범위내에서 연료, 윤활유, 예비 부품 및 수리자재들의 소비정량과 한계를 제정하고 그 한계 이내로 연료 자재를 절약하며 기계능율을 제고시킴으로서 국가의 수익성을 높임에 부단히 노력한다.
7. 지배인과 함께 트랙플 작업과 개별적 트랙플들의 이동배치일람표를 작성하며 그의 실행을 감독한다.
8. 트랙플 농업기계 및 자동차들의 수리사업 실시를 조직 지도하는 동시에 수리계획 실행을 질적 양적으로 보장한다.
9.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수리공장 또는 기계 수리공장에서 수리한 모든 트랙플 농업기계 및 자동차들을 자신이 직접 검수한다.
10. 기계 트랙플 빠르크와 기타 비품들을 기술적으로 옹게 보관하도록 조직 지도한다.
11. 기계 트랙플 빠르크의 매개 기계에 대한 검사증교부사업을 실시한다.
12.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순회 기계기수(지구 기계기수) 및 수리공장장의 사업을 지도한다.
13. 트랙플 작업반 반원과 순회 기계기수(지구기계기수) 및 수리공장장들에게 트랙플 농기계 운영 및 그 수리에 대한 방법을 교시한다.
14. 기계기술 일꾼들의 기술학습을 조직 지도하며 또 그들의 기술자격을 검열한다.

제32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균중문화 부지배인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술자 노동자 사무원 및 국영 농기계 임경소 구역내 지방농민들 속에서 국가재산애호 (뜨락뿔 기계등) 및 절약(연료 자재등)에 대한 사상을 인식시키며 기타 일반적 균중문화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제33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균중문화 부지배인은 자기의 사업을 국영 농기계 임경소 지배인의 명령지시 및 농림상의 명령 지시에 의하여 지도하며 선전 선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선전성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4조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균중문화 부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 국영 농기계 임경소 일꾼들의 정치적 자각성 제고에 토대하여 그의 생산활동 향상 노동 생산능율의 제고 작업의 질적개선 농가와 체결된 계약의 엄격한 준수등을 위하여 투쟁한다.
2. 뜨락뿔작업반 뜨락뿔운전수 및 수리공들 속에서 노동경쟁을 조직 지도한다.
3. 뜨락뿔작업반 뜨락뿔운전수 및 수리공들 속에서 노동경쟁을 조직 지도한다.
4.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선진적인 뜨락뿔작업반장 뜨락뿔운전수 및 수리공들의 경험을 보급한다.
5.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협조를 받는 농가들을 광범히 망라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국영 농기계 임경소와 체결한 계약조건들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영 농기계 임경소 활동지역내의 농민들에게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목적과 임무에 대한 해설사업을 적극 실시한다.
6.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일꾼들과 국영 농기계 임경소 활동지역내의 농민들에게 정부의 결정과 농촌경지의 선구자들의 경험을 소개 선전한다
7. 자기의 전문지식 수준의 향상과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기술 및 생산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제35조 부기장은 농기계 임경소의 부기통계와 결산에 관한 일체 문제들에 대하여 조직지도 및 실행의 책임을 진다.

제36조 부기장은 임경소 전체 부기일꾼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37조 부기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1. 일체 자금과 자재들에 대한 통계를 제때에 정확히 작성한다.
2. 생산 재정 활동에 관한 일체사무와 그의 결과를 제때에 총결한다.
3. 부기결산과 바란스를 제때에 올바르게 분석 작성한다.
4. 뜨락뿔작업반 수리공장 및 유류창고에 있어서의 통계와 결산문제들에 대하여 조직 지도 감독한다.

5. 자금 및 자재의 올바른 출납과 생산재정활동에 관한 사업을 일상적으로 엄밀히 감독한다.

6. 트럭탈작업반 수리공장 및 유류창고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열 분석 종합사정한다.

7. 부기 문서들을 옹계 보관한다.

제38조 부기장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의 자금 및 자재들의 낭비에 대한 미연에 방지할 대책들을 세운다.

제39조 부기장은 자금 또는 자재출납과 관계되는 일체 발란스를 위한 기타서류에 서명(지배인다음)한다.

제40조 부기장은 임경소의 지배인과 함께 재정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1조 부기장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 수준 제고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임경소의 다른 일꾼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계와 결산방법을 습득케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

(1950. 4. 3 내각결정 제83호)

제 1 조 본 규정은 국영 및 민영기업소(이하 제품생산자라고 약칭한다)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이하 제품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질적향상과 제품 규격의 통일화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품검사는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고 약칭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제품생산자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자체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4 조 내각제품 검사원 각도 및 평양시 제품검사소(이하 검사기관이라고 약칭한다)는 제품생산자의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고 약칭한다)를 검열지도하며 판매자의 판매제품에 대하여서도 검열할 수 있다.

제 5 조 자체검사에 합격된 제품으로서 검사기관의 검열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지정받은 때 또는 품질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서는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판매자는 그 제품을 선별하여 다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자체검사를 한 제품에 표시하는 기호는 그 제품에 적합하며 명확하여야 한다.

제품기호의 양식 또는 표시방법이 부적당할 때에는 검사기관은 이를 개정시킬 수 있다.

제 7 조 자체검사를 재차 실시할 경우에는 전회의 검사표시증 변동된 부분을 명확히 말소하고 그에 새로운 검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체검사(재차로 한 자체검사를 포함한다)결과에 대한 보고를 그 검사가 끝난후 2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하여 해당제품검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판매자는 검사기관에서 파견한 검사지도원이 제품검열에 관하여 필요한 요구를 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검사기관이 제품검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험재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판매자는 무료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기관은 검열한후 그 결과를 검열받은 자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판매자는 검사지도원의 검열에 대한 이의를 검열통지를 받은후 3일 이내에 해당 제품검사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지도원은 소속검사기관 책임자가 발부한 검사지도원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검열 시에는 검열받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기관의 검열을 받는데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생기는 환적개장등의 비용은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판매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5조 제품생산자가 표준규격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할려고 할 때에는 해당 표준규격이 제정될 때까지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은 내각 제품검사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제품생산자 또는 개인제품판매자가 자체검사원을 임명하려고 할 때에는 내각제품검사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각제품검사원장은 자체검사원이 검사사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의 소속책임자에게 제의하여 그를 조동시킬 수 있다.

제17조 제품생산자는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불합격품중 인체에 유해한 제품은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불합격품중 재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다시 생산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불합격품중 본조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소관상 직속국장 또는 중앙제품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 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1950년 4월 15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제20조 본규정실시와 동시에 「수산제품 검사에 관한 규정」(1949년 4월 2일 농림성규칙 제 2호) 「북조선 생활필수품 검사소 규정」(1948년 6월 14일 산업국 명령 제10호) 「고무제품 및 견직물검사 규정」(1948년 6월 14일 산업국명령 제11호)은 이를 폐지한다.

◇산업, 상업 및 기타 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

(1952. 3. 13 내각결정 제41호)

제1장 독립채산제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산업, 상업, 농업, 교통, 운수, 기타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이하 국영기업소라 약칭함)들은 독립채산제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제2조 독립채산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영기업소의 생산, 유통, 개발, 기타 활동을 위한 고정재산 및 유동재산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에서 이를 부여 한다.
2. 국영기업소는 고정재산 및 유동재산의 보관관리 및 그 합리적 이용 또한 그의 재산의 앞으로의 증가를 위하여 국가앞에 책임을 진다.
3. 국영기업소는 그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국영기업소는 그의 경제재정활동에 있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창발성과 관심을 강화 한다.
5. 국영기업소는 결산을 포함한 회계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독립채산제는 국영기업소의 재정 지출과 그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의하여 얻은 수입과의 상호간의 직접적인 의존관계로 부터 출발하며 또한 기업소의 재정상태는 생산 및 판매 계획의 실행, 노동조직의 정확성, 고정재산 및 유동재산의 효과적인 이용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장 재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규정

제4조 독립채산제 기업소 및 기관의 재정계획은 인민경제 계획지표(생산 및 판매계획 원가 저하 과제 및 기타 지표들)에 기초하여 수입 지출 바란스(재정계획 별지양식 제1호)의 형태로써 작성된다.

제5조 기업소의 수입지출 바란스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반영된다.

1. 제품판매 및 우스루-가 제공에 의한 수입
3. 제품생산비 우스루-가 제공을 위한 지출 농산물 기타 상품수매비 및 상품판매비
4. 신규 기본건설 투자 및 고정재산에 대한 대보수비
5. 감가 상각금의 분배

6. 거래세 이윤축척 및 그 분배
7. 기타 수입지출에 관한 지표
8. 국가예산과 기업소와의 호상관계

제6조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의 각 과목별 금액은 직접계산 방법과 분석적 방법(계수 방법)의 두가지 기본계산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 한다.

제7조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의 매개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해당부표가 첨부된다.

1. 생산 및 우스루-가 제공에 대한 지출예산(원가 요소별)
2. 제품별 원가에 관한 자료 및 원가제고, 또는 저하의 요인에 관한 설명을 첨부한 요소별 생산원가 저하계획 (종합재정 계획에는 품종별 또는 중요 제품별로 한다)
3. 상품판매수입(상품 혹은 우스루-가 제공)에 대한 계산서
4. 자체유동재산 조성의 원천을 명기한 자체유동자금 및 은행 차입금의 수요계산서
5. 감가상각금에 대한 계산서
6. 거래세 납부에 대한 계산서
7. 기본건설에 있어서의 내부제원 동원계획
8. 종업원의 수 평균노임 노임폰드에 관한 증빙문건
9. 수입 지출 바란스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지출에 대한 예산서
10. 수입 지출 바란스에 대한 설명서

제3장 생산비지출 제품판매수입(우스루-가 제공에 의한 수입을 포함) 및 이윤 계획

제8조 생산비(계획원가)는 결정된 생산계획량과 원가저하과제를 고려한 기초수익성 (전년도 실적수익성) 또는 실적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제9조 생산비 예산은 다음과 같은 문건에 의하여 작성된다.

1. 제품별 원가 예산서
2. 재호비 및 기업소 일반 관리비 예산서
3. 보조 생산부문에 대한 지출 예산서

제10조 생산비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작성된다.

1. 원료 및 기본자재
2. 보조자재
3. 연 료
4. 전 력
5. 기본노임 및 보충적 노임

- 6. 사회보험료
- 7. 감가 상각금
- 8. 기타지출

제11조 일반관리경비 예산에 있어서는 께호비와 기업소 일반관리비로 구분된다. 께호비에는 관리인원에 대한 노임과 공장 건물유지비, 비품기계 및 설비의 유지비, 소수리비, 공장내 소운반비 및 기타 경비가 포함된다. 기업소 일반관리비에는 행정관리비(이 중에는 공장시험실 및 창고비를 포함함), 노동보호비, 노동력 모집비, 은행차입금이자, 전기기업소적 건물 및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전기기업소적 건물 및 비품 이외의 기타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께호비에 포함된다.

제12조 원재료 연료 전력등의 비용은 국정가격 또는 협정가격으로 계산하되 원자재비 및 연료비에는 운수비 (철도임 육 해운반비 상하차비)와 창고 보관비 (타인창고보관비)가 포함된다.

제13조 생산비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이에 기초하여 기업소의 이윤이 산출된다. 기업소의 이윤은 제품판매수입에서 거래세를 제외하고 생산비와 판매비를 제한 잔액과 동일하다. 판매수입계획은 상품판매계획량과 상품인도가격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장 자체유동자금 보유계획과 그 보충 원천

제14조 기업소의 자체 유동자금은 생산계획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원자재 보조자재 연료 미성품 및 소공구 비품의 예비보유와 완성품 및 상품의 최소한도의 재고량 기타 비용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당된다.

제15조 자체유동자금의 보유기준은 물자재산 형태별로 보유일수와 금액으로 표시된다.

전 계획기간의 형태별 물자에 대한 수요는 생산비 예산에 근거하여 산출된 매1일간의 수요와 설정된 예비보유일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유기준액에 대한 화폐표시는 형태별 물자별 보유기준량과 국정가격(제12조에 의한 운수비 및 창고보관비를 포함함)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6조 국영기업소의 자체유동자금이 충당되는 기본원천은 다음과 같다.

1. 불변채무의 증가
2. 기업소의 이윤

국가예산으로부터의 자금공급

제17조 국영기업소의 자체유동자금의 증가와 감소는 매년 국가예산 초안작성과 함께 재정성에서 이를 설정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제18조 각성 및 내각 직속국에서는 전조에 의하여 내각에서 채택된 해당성 및 직속국의 총괄적 자체유동자금 보유기준액 한도내에서 생산 및 판매계획의 범위와 상품 기타 물자재산의 회전을 재고를 고려하여 각 그 산하 부문별, 기업소별 자체유동자금 보유기준을 설정한다.

제19조 국영기업소는 전조에 의하여 설정된 자체 유동자금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원료자재 완성품등의 계절적 축적에 소요되는 유동자금은 은행차입금으로써 보장된다.

제5장 기본건설 자금의 원천별 자금 공급범위의 결정

제20조 국영기업소의 신규기본건설 및 복구사업에 대한 원천별 자금공급범위는 해당년도 인민경제계획에 승인된 투자액에 근거하여 재정성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기본건설 자금 공급원천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자원동원
2. 기본건설 투자에 예견된 일정한 비율의 감가 상각금
3. 유희재산 처분수입
4. 국가예산 편성에서 연결된 국영기업소의 이윤
5. 국가예산으로 부터의 자금 공급

제22조 인민경제계획에 의하여 예견된 리밋트를 초과하거나 계획 이외의 기본건설을 실시함을 금지한다.

제6장 대보수자금 공급범위의 결정

제23조 국영기업소의 수입지출 바란스(재정 계획)에는 기본건설 투자 이외의 고정자산의 대보수를 위한 자금지출을 예견한다.

제24조 고정재산에 대한 대보수자금 지출범위는 대보수를 위하여 예정된 감가상각금 한도내에서 결정된다.

제7장 지배인 기금

제25조 국영기업소의 수익 성장성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지배인 기금을 설정한다.

제26조 지배인 기금 조성의 원천은 기업이윤이다. 그러나 계획손실을 예견한 기업소에 있어서는 제품원가 저하에 의한 절약금액중에서 보장된다.

제27조 지배인 기금은 생산계획 원가저하계획 축적계획을 원수 또는 초과완수 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납부 의무를 완수한 조건하에서만 이를 적립한다.

제28조 각 부문별 국영기업소의 지배인 기금 적립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 문 별	계획이윤 또는 원가저하 계획에 의한 절약으로부터	초과이윤 또는 원가저하 계획초과 절약분으로부터
1. 광업탄광금속 수산및 임산	3%	40%
2. 기타부문	2%	30%
3. 국내상업	0.5%	10%

제29조 지배인 기금 적립은 매분기별 결산에 의하여 설정하되 바란스에 의한 결산기간의 계획이윤 및 초과 이윤으로부터 설정된 액수의 50%를 전분함으로써 실시된다. 지배인 기금 적립의 총액은 연간결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0조 지배인 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지출된다.

1. 주택건설 보수 및 문화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0%
2. 종업원의 상급 및 구출금으로 50%

제8장 국영기업소의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

제31조 국영기업소와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의 총화는 국가예산에 대한 납부와 국가예산으로 부터의 교부간의 차이로서 결정된다. 이 차이는 반드시 수입의 지출에 대한 초과 또는 지출의 수입에 대한 초과로써 바란스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32조 국영기업소와 국가예산과의 상호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생산확대와 관련되는 제반 지출(기본건설자금 공급 유동자금 증가)은 이윤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하되 이윤의 조성 기간과 사업진행 기간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항 지출과 지배인기금 적립액을 제한 남은 부분의 이윤은 국가예산에 납부된다.

제33조 국영기업소의 국가예산에 대한 납부는 다음과 같다.

1. 거 래 세
2. 이익공제금
3. 잉여 유동자금 납부
4. 계획연도에 있어서 기본건설 및 대보수의 리미트가 설정되지 않은 국영기업소의 감가상각금 납부

제34조 국영기업소의 전체수입 지출의 방향 및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는 싸흐마트 바란스

(별지양식 수입지출 바란스 부표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35조 국영기업소의 국가예산에 대한 이익공제금은 총이윤과 그 이윤으로써 충당되는 지출과의 차액으로써 수입지출 바란스에 계상하여 재정성에서 이를 결정한다.

도영기업소에 대하여서는 도(평양시)인민위원회 재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36조 각성 및 내각직속국은 전조에 의하여 재정성에서 결정한 이익공제금 범위내에서 각각 산하 기업소별 이익공제금을 배분전달하며 그 사본을 재정성에 제출한다.

재정성에서는 전항에 의하여 각성 및 내각직속국에서 제출된 기업소 이익공제액을 각 기업소 소재지 지방 재정기관에 통지한다.

제37조 국영기업소의 국가 예산에 대한 이익공제액은 매분기별로 이를 설정한다. 분기 첫달에는 계획에 예견된 분기공제액의 30%를, 둘째 및 셋째 달에는 각각 분기 공제액의 35%를 공제하되 매월분을 2회에 구분하여 15일과 25일에 각각 동일한 액을 납부한다.

제38조 국영기업소의 이익납부는 매월말, 매분기말 및 연말결산 바란스에 기초하여 실제 이윤에 관한 재계산을 실시한다.

전항 실제이윤 계산에 있어서는 각 그 결산 기간에 있어서 실현된 실제이윤과 국가예산에 납부한 전분 이윤과 대조하고 미납이윤 공제액 또는 이윤과 납액을 결정하여 조절한다.

제39조 이윤 재계산에 있어서는 매월분은 분기초부터 누계로써, 매분기분은 년초부터의 누계로서 실시한다.

제40조 실제이윤에 대한 월별 재계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계획에 의한 분기별 증수율을 적용한다.

제41조 기업소의 초과이윤으로부터 국가예산에 대한 납부는 매분기마다 지배인기금적립을 제한 잔액의 75%를 납부하고 나머지 25%는 연말까지 기업소의 관리에 남겨두고 연말 결산심의회 후 국가예산에 회수된다.

제42조 국가예산에 회수하기로 예견된 국영기업소의 감가상각금은 매분기분을 분기경과후 10일이내에 납부한다.

제43조 국영기업소의 잉여유동재산의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는 매 계별적 기업소들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해당성 또는 해당 내각직속국과의 합의 밑에서 재정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개별적 경우에 국영기업소들이 자체자원(이윤 감가상각 기타)으로써 계획대로 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체자원 조성기간이 계획에 예견된 지출기간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해당 지출을 예견한다.

제45조 국가 예산으로 부터의 자금공급으로써 충당될 비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유동자금 증가

2. 기본 건설투자
3. 간부양성을 위한 지출 (생산과 분리됨)
4. 계획손실 보상
5. 과학 연구사업에 대한 지출
6. 기타 지출

이상 각항 지출의 자금 공급액은 국가예산편성과 동시에 결정한다.

제46조 국가 예산으로 부터의 자금 공급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 지출이며 또한 지정된 목적 (기본건설 유동자금증가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 국가예산으로부터 인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실지 해당사업계획 집행정도에 조응하여 실시한다.

제9장 수입 지출 바란스(재정계획)의 작성심의승인 제출절차 및 그 기간

제48조 기업소의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은 년간계획으로 하되 동시에 분기별 지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49조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계단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첫계단-국가예산 초안작성 시기

둘계단-해당성 직속국 및 도인민위원회(평양시)가 재정성과 재정지표를 합의한 후의 시기

제50조 전조 제1계단에 있어서는 해당성 직속국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부 처들에서 각 그 산하 기업소로 부터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의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인민경제계획 지표 및 결산자료들에 근거하여 개별적 경제부문별 및 성 내각직속국 도 평양시별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재정성과 해당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정부에 제출한다.

제51조 전 제49조에 의한 제2계단에 있어서는 해당성 내각직속국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부 처는 재정성과 재정지표에 대한 합의를 얻은 후 각 그 산하기업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를 심의하고 재정성에서 합의된 리미트 범위내에서 산하 기업소의 재정지표를 결정한다.

제52조 각 성 내각직속국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 부 처에서 제출한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를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성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검열한다.

1. 재정지표와 인민경제 계획지표 및 현행 법규와의 부합여부
2. 국영기업소의 수입계산의 정확성 수익성 결정의 정당성 내부재원 및 예비보유 계산의 정확성여부
3. 생산원가의 저하과제 및 유통비 절약과제의 정확성 비생산적 지출 및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청산에 대한 제대책 또는 물자 및 화폐 재산 지출에 있어서 엄격한 절약 여부
4. 상품 및 물자재산의 회전속도 축진을 위한 계획
5. 국영기업소의 행정관리비 축소를 위한 계획
6. 계획 손실의 축감 및 그의 완전한 청산대책

제53조 재정성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정부는 해당 기업소의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를 심의하고 기업소 이윤 및 거래세의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액과 국가 예산으로 부터의 자금공급액을 결정한다.

제54조 재정성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정부에서 해당 국영기업소의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에 예견된 재정지표는 국가예산 및 각도 평양시 예산의 구성요소로서 내각 또는 해당도 평양시 인민위원회에 제출된다.

제55조 내각에서 국가예산이 채택되고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도 평양시 예산이 채택된 기초 밑에서 작성 내각직속국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부 처는 예산이 통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그 산하 기업소 기관의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56조 작성 내각직속국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부 처에서는 승인된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에 기초하여 매개부문별 또는 성 내각직속국별 도 평양시 해당부 처별 종합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를 작성한다.

천향에 의하여 작성된 종합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에는 각 그 부문별 및 기업소별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를 첨부하여 재정성 또는 해당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정부에 제출한다.

제10장 회계결산 바란스의 작성 제출 및 그 승인 절차

제57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전체 국가경제기관 기업소 및 협동단체기관(독립채산제 국 처 및 기타 기관들을 포함)은 반드시 년도별 분기별 및 월별 회계 결산과 바란스를 작성하여 각 해당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국영기업소에 있어서는 재정성에 도영 공업에 있어서는 해당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정부에 협동단체 기관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

재정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 회계결산 및 바란스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부표가 첨부된다.

1. 년도별 결산 및 분기별 결산에 첨부할 부표는 다음과 같다.

- (1) 시 산 표
- (2) 정부대조표
- (3) 손익계산서
- (4) 품종별 생산 및 판매계획대 실적표 또는 수매 및 판매계획대 실적표
- (5) 품종별 원가 계획대 실적표

2. 월별결산은 매월말 시산표(약식)만을 작성 제출한다.

제58조 회계결산 및 바란스의 양식과 그 작성에 관한 세칙(요령)은 해당 성 내각직속국 및 협동단체 중앙위원회에서 작성하며 재정성은 이를 중앙통계국의 합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59조 회계결산 및 바란스의 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각 국영기업소 기관의 월별시산표(약식)는 매월분을 다음달 22일 전으로 제출한다.
2. 국영기업소 기관의 매분기말 결산 및 바란스는 매분기분을 다음달 30일전으로 작성 제출한다.
3. 작성 내각직속국 및 협동단체 중앙위원회에서 작성한 매분기말 종합 결산 바란스는 매 분기분을 다음 분기 개시후 45일 이내에 재정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영기업소 기관의 년도말 결산 및 바란스는 매년도분을 다음년도 2월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작성 내각직속국 협동단체 중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년도말 종합결산 및 바란스(필요한 부표를 포함)는 매 년도분을 다음년도 개시후 60일 이내에 재정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도말 종합결산 및 바란스에는 반드시 그를 심의한 바란스 위원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재정된 기일까지 회계결산 및 바란스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책임자 및 경리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부서책임자는 규율적 벌을 받는다.

제61조 각 국영기업소 기관의 년도말 회계결산 및 바란스의 승인과 본규정 절차에 따르는 이윤분배는 각 그 소속에 따라 해당성 내각직속국 협동단체 중앙위원회 또는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관계부 처의 권한에 속한다.

제62조 년도말 회계결산 및 바란스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 내각직속국 협동단체 중앙위원회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관계부 처내에 바란스 위원회를 조직한다.

바란스 위원회의 성원은 해당 성 내각직속국장 협동단체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바란스 위원회의 회계결산 및 바란스의 심의는 해당 기업소 또는 기관책임자의 보고와 경리책임자의 보충 보고로써 실시된다.

제63조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회계결산 및 바란스 심의에 참가하며 그에 대한 자기의 제의와 의견을 제출한다.
2. 기업소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 보충적 재료와 결산재료들의 제출을 요구한다.
3. 경제 재정활동에 관한 현지검열을 실시한다.

제64조 재정성 및 재정기관은 각 성 내각직속국 협동단체 중앙위원회와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관계부 처에서 각 그 산하 기업소 기관의 연말 결산 및 바란스의 승인이 옳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결산수정에 필요한 제의를 제출한다. 전항 제의는 반드시 결산승인에 관한 바란스 위원회의 결의서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성 내각직속국 협동단체 중앙위원회 및 각도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 부 처가 재정성 및 재정기관의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의 불찬성에 관한 회보가 없으면 그 제의는 채택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65조 재정기관과 국가 경제기관 및 협동단체들간의 모든 의견차이는 내각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제11장 실 시 절 차

제66조 본 규정은 195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실시한다.

제67조 본 규정 실시에 필요한 제반 세칙과 양식은 재정성 규칙으로서 제정한다.

1952년 3월 13일

[별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결정제 호 부표제1호

성 국또는 기업소명

년도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

년 월 일

번호	구분 과목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그중				
		승인된 계획	9개월 간의실 행실적	4사분 기예정 실적	예정 실적	계획 초안	승인된 계획	1 사 분 기	2 사 분 기	3 사 분 기	4 사 분 기	
		2	3	4	5	6	7	8	9	10	11	
	<u>수입</u>											
1	기업소생산물판매수입											
	<u>그중</u>											
	1. 이윤											
	2. 거래세											
2	소매상 및 사회급양사업(기업)에 있어서의 상품판매수입											
	1. 이윤											
	2. 거래세											
3	주택공영관리수입											
4	청부건설사업의 이윤											
5	자체건설방법에 의한 기본건설사업의 이윤											
6	불변채무의 증가											
7	불요재산 처분수입											
8	자체유동재산의 과잉분											
9	과학연구사업 기타에 대한 타성으로 부터의 계약에 의하여들어오는 수입											

번 호	과 목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그중					
			승인된 계획	9개월 간의실 행실적	4사분 기예정 실적	예정 실적	계획 초안	승인된 계획	1 사 분 기	2 사 분 기	3 사 분 기	4 사 분 기		
	부담금 부입 기타수입													
	수입 합계													
	그 중 1.이윤 2.거래세 수입에 대한 지출의 초과													
	지출 1 생산에 대한 지출(판매비 포함) 그 중 1. 원료 및 기본자재 2. 보조자재 및 기타자재 3. 연 료 4. 전 력 5. 노동임금 6. 사회보험료 7. 감가상각 8. 기타지출 2 전체생산비중 판매상품에 대한 생산비 3 소매망 및 사회급양에 의 한 지출 4 자체유동자금 증가 5 지배인기금, 적립 6 기본건설사업 지출 7 대보수사업 지출													

번 호	구 분 과 목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그중			
		승인된 계획	9개월 간의실 행실적	4사분 기예정 실적	예정 실적	계획 초안	승인된 계획	1 사 분 기	2 사 분 기	3 사 분 기	4 사 분 기
8 9 10	주택경영 경리의 지출 간부양성에 대한 지출 기타지출 지출 합계 지출총액중 다음과 같은 것은 내부경리에 분배되 는 수입으로써 지변된다. 1. 감가상각으로써 충당되 는 기본건설 2. 감가상각으로써 충당되 는 대보수 3. 간부양성비 지출										
	내부경리에 분배되는 수 입 으로써 지변되는 비용을 제한 지출 총계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 1. 예산에 대한납부금 (1) 거래세 (2) 이익공제금 (3) 여유유동자금의 회수 (4) 기본건설 및 대보수에 충당되지 않는 감가상각 금 회수										

번 호	구 분 과 목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그중				
		승인된 계획	9개월 간의실 행실적	4사분 기예정 실적	예정 실적	계획 초안	승인된 계획	1 사 분 기	2 사 분 기	3 사 분 기	4 사 분 기	
	예산에 대한 납부금 총계											
	예산납부금에 대한 예산교부 금 초과액											
	2. 예산으로부터의 교부금											
	(1) 자체유동자금의 증가를 위하여											
	(2) 기본건설											
	(3) 간부양성											
	(4) 기타 교부금											
	예산으로부터의 교부금 총계											
	예산교부액에 대한 예산납부 금 초과											

비 고 1.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는 각 기업소별 부문별 성별 내각 직속국별 및 부·처(도인위)별로 작성한다.

2. 수입지출 바란스(재정계획)에는 산업, 상업 및 기타 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의 독립체산제 재정계획 및 예산과의 호상관계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제계산서들이 첨부된다.

◇개인상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

(1955. 8.)

제1장 일반적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개인 상공업자들이 일용품 생산을 증대하며 그 교류를 원만히 하므로써 생활향상에 기여하며 개인 상공업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선 북반부 지역내에 거주하는 공민으로서 상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본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개인 상공업에서 장려할 업종(품종)과 금지할 업종(품종)은 다음과 같다

(1) 장려할 기업의 업종

목기, 가구, 기류제품, 석조제품, 도자기, 야장간 및 소농기구, 문방구, 운동구, 완구, 미술 공예품, 유리제품, 한지, 기와, 벽돌, 건설용 부속자재, 각종 도료, 기타 지방원료 원천을 이용하는 일용 필수품

(2) 금지할 업종(품종)

- ㉠ 군사위원회 결정 제56호에 의하여 자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품종의 판매
- ㉡ 소금, 술(알콜 성분을 가진 음료 포함)생산 및 연초의 가공
- ㉢ 인삼 판매
- ㉣ 화학제품(유산, 염산, 소다등과 일체 유동성을 가진 제품)의 생산 및 판매
- ㉤ 유색금속의 가공 및 이를 원재로 하는 제조업
- ㉥ 인쇄업(활판, 평판인쇄, 활자 구조, 타이프라이타, 프린트)
- ㉦ 피혁의 제조
- ㉧ 생고무를 원료로 하는 제조 및 판매
- ㉨ 도량형기의 제조 및 판매
- ㉩ 성냥제조
-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일체 기본건설용기자재, 공구원료의 판매
- ㉫ 양곡상
- ㉬ 기타 국가법령, 결정, 명령에 의하여 개인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업종(품종)

제2장 허가 조건

제4조 개인기업에 대한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은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시설되어야 한다.
- (2) 생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원료와 혹은 국가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보장되는 폐잔물 또는 유류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할 경우
- (3)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은 “원동기 단속에 관한 규정” 내무성 규칙 제12호(1949년 11월 9일)에 의하여 해당도(평양시, 개성시) 내무부장의 허가를 받은자

제5조 개인편의 시설업에 대한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발업과 미용업

해당한 영업도구와 위생시설이 구비되고 해당한 자격증을 가진다.

(2) 여관업

객식, 칩구, 기타 비품의 구비

(3) 목욕탕업

해당 편의시설 및 위생 조건의 구비

(4) 기타 위생시설에 대하여는 위생 검열원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6조 개인사업의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업건물은 상업질서의 유지와 도시미화상 저해되지 않은 장소에 있어야 하며 내외부 시설이 문화적으로 정비된 경우

(2) 국가검사에 의하여 합격된 정확한 도량형기의 비치

(3) 기타 일체 위생시설에 대하여는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및 그 세칙에 의한다.

제3장 허 가 질 차

제7조 개인이 상공업을 경영하려 할 때에는 허가 및 납세의무자 등록신청서 1통을 해당 시, 군(구역)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원동기를 사용하거나 해당 위생시설을 하여야 할 각종업원들은 원동기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군(구역)인민위원회는 허가 및 납세의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7일내에 재정, 보건일꾼을 포함한 성원으로서는 제2장 허가조건에 규정된 사항의 실리여부를 답사케 하고 조건에 구비되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10일내에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분점 또는 분공장을 가진 업자는 각각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허가증을 교부할시는 인민소득세에 관한 시행세칙(내각결정 제155호 1953년 9월 5일부)에 규정된 등록요금을 징수한다.

제11조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서 허가사항을 일부(사업종목, 중요생산물, 영업장소)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하기 10일전에 허가사항 1부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역)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영업을 폐지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지하기 15일 전에 해당 시,군(구역)인민위원회에 폐업신청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증은 영업장소에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만일 허가증을 손실, 오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재교부신청서를 소관 시,군(구역)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역)인민위원회는 그를 확인한 다음 허가증을 재교부 한다.

제14조 개인 상공에 대한 허가증은 1년에 1회씩 교부하는데 그 절차는 신규 교부시의 절차와 동일하다.

제4장 벌 칙

제15조 개인 상공업자들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본 규정 제3조에 규정된 금지업종중(3)(4)(5)(6)(7)(9)(10)호에 해당하는 상공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원료, 기자재, 제품은 국가가격으로 매수한다.
- (2) 제3조 (1)(2)(11)(12)호에 해당하는 상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 (3) 허가없이 상공업을 경영한자에 대하여서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 (4) 본 규정에 의하여 상공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과정에서 허가조건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소관기관의 승인없이 사업종목, 중요생산물, 영업장소들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한다.

제5장 기 타

제16조 “민영사업허가제 실시에 관한 규정” 상업성 성령 제4호(1954년 9월 13일)는 폐지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1955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 3 절 광업, 지하자원개발

◇광산위탁경영제(鑛山委託經營制) 및 분광제 (分鑛制)실시에관한 규정

(1949. 9. 7. 산업성 규칙제13호)

제1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로서 개발 할 수 있는 광종은 다음과 같다.

금(金), 은(銀), 동(銅), 아연(亞鉛), 중석(重石), 수연(水鉛), 녹주석(綠主石), 크롬바이트, 모나자이트 및 기타 산업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종

제2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는 제1조에 지정한 광종에 속하는 미개발로두(未開發露頭) 폐항(廢坑) 및 사광(砂鑛)에 한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3조 광산위탁경영자는 광산경영에 필요한 위탁경영구역내에 있는 건물 기계, 기구, 기타 부대시설(附帶施設)일체를 대여(貸與)받을 수 있으며 산업상의 승인을 얻어 현장 작업정황(作業情況)에 따라 이전 또는 개조할 수 있다.

대여받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세정한 감가상각률(減價償却率)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광산위탁경영 및 분광경영자는 광업관리국으로부터 사정받은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 및 그 부양가족(扶養家族)의 양곡(糧穀) 또는 자재(資材)를 알선받는다.

제5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 계약기간은 2개년으로한다.

그러나 산업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광산위탁경영제에의한 지도관리는 유색광업관리국 민영광업부(民營鑛業部)가 담당하며 광산분광제에의한 지도관리는 그 소속 국영광산 지배인이한다.

제7조 광산위탁경영 희망자는 광산위탁경영 신청서 양식(제1호) 및 사업계획(양식 제2호)를 산업상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산업상은 위탁경영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자와 위탁경영에관한 계약(양식 제3호)을 체결하고 허가증(양식 제4호)을 교부한다.

제9조 광산분광제를 희망하는 자는 광산위탁경영제에 준하여 광산분광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그소속 국영광산 지배인을 경유하여 산업상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광산분광제 신청서를 접수한 국영광산 지배인은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상에게 이를 내신(內申)하여야 한다. 산업상은 그 분광제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와 계약(양식 제3호 준용)을 체결하고 허가증(양식제4호 준용)을 교부한다.

제11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에 의하여 채취한 생산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광산위탁경영제에의한 광석(鑛石) 유선(油選) 및 태정광(汰精鑛)은 국가에서 제정한 매광조건(買鑛條件)에 의하여 국가판매가격으로 산업상이 지정한 기업소에 판매하여야 한다.

혼홍(混添) 또는 청화제련(靑化製鍊)에 의하여 채취한 금속 또는 금속함유물(金屬含有物)은 산업상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광산분광제에대하여는 이를 실시하는 광산에대한 산업상지시 계획원가(計劃原價)이내로써 계약하되 생산품은 산업상이 지시한 기업소에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있을 때에는 산업상은 특별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계약기간중이라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 또는 취소(取消)할 수 있다.

- 1 목적광물을 변경(變更) 또는 추가(追加)할 필요가 생길 때
- 2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경영자가 허가취소를 자원(自願)할 때
- 3 본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때

제13조 광산 위탁경영제 및 분광제 계약기간이 만료(滿了)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광산위탁경영자 및 분광제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상의 지시에 의하여 리행하여야 한다.

1. 대여품(貸與品)의 반환(返還)
2. 생산품의 처리(處理)
3. 광업관리국으로부터 알선받은 물자의 처리
4. 허가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제14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경영자는 광산위탁경영 또는 분광제 경영권을 유상(有償) 무상(無償) 또는 상속(相續)등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당(典當)할 수 없으며 재위탁경영(再委託經營)할 수 없다.

제15조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경영자는 그 계약기간중의 제반사업을 보장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보증금을 무리자(無利子)로 산업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종업원을 50명 이하로 채용하는 광구 50,000원
- 2 종업원을 51명이상 100명까지 채용하는 광구 100,000원
- 3 종업원을 101명이상 200명까지 채용하는 광구 200,000원
- 4 종업원을 201명이상 500명까지 채용하는 광구 500,000원
- 5 종업원을 501명이상 1,000명까지 채용하는 광구 1,000,000원
- 6 종업원을 1,001명이상 채용하는 광구 1,500,000원

제16조 산업상은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 경영자가 위약(違約)이 없는 한 보증금(保證金)을 해약후(解約後) 1개월 이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광산위탁경영제에 의한 생산품은 민영광업부문에, 광산분광제에 의한 생산품은 그 소속광산에 계산하여 통계(統計)한다.

산 업 상 김 책

(양식 제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상 앞

광산위탁경영신청서

분 광

하기 광산을 위탁경영하고자 별지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1, 광산소재지
- 2, 채취광종 및 광산명
- 3, 교통순로
- 4, 최단거리소재 국영광산작업장과의 거리
- 5, 광산의 간략한 연혁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양식 제2호)

광산위탁경영사업계획서

분 광

1, 생산(生産)탐광 및 로력계획

년도별	구분	단위	규격 종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	2	3	계	4	5	6	계	7	8	9	계		10	11	12	계
	생 산																			
	굴 진																			
	로 력																			

2, 투자예산액

3, 경비예산

년도별	비목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	2	3	계	4	5	6	계	7	8	9	계	10	11	12	계	

(양식 제3호)

광산위탁경영에관한계약서

분 광

산업상 (이하「甲」이라칭한다)과 (이하「乙」이라칭한다)간에 도시군면리(동)번지 광산위탁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분 광

1. 갑은 상기 광산의 개발 경영을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광산위탁경영제 및 분광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것을 서약하고 이를 수락한다
2. 을은 채취광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상 책임을 진다
 - (1) 생산책임량
 - (2) 로력정원
 - (3) 채굴선광 제련방식
3. 광산위탁 경영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일로 정한다.
4. 을은 광산위탁경영중 사업보증금으로 원을 갑에게 납부한다.
5. 본계약 리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의 보증인 2명이 련서한 본 계약서를 2통씩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일통씩 보존한다.

년 월 일

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산업상

을 주소 성명

을 보증인주소성명

을 보증인주소성명

(양식제4호)

광산위탁경영허가증

분 광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위탁경영을 허가함

- | | |
|--------------------|---------------|
| 1. 위탁경영자 주소성명 생년월일 | 4. 채굴 선광 제련방법 |
| 2. 채취광종 및 광산명 | 5. 위탁경영허가기간 |
| 3. 광산소재지 | |

제6편 건물, 토지관리

제 1 절 건물, 토지, 도로관리

◇국유건물 및 대지관리에 관한 규정

(1950, 3, 25, 내각결정 제71호)

제 1 조 본규정은 국유건물 및 대지를 유지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유건물 및 대지는 도시경영상의 주관하에 각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 및 시·군 구역인민위원회위원장이 그 소관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3 조 본규정에서 국유건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국가소유건물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된산업(지방산업을 포함한다)

농림, 교통, 운수, 체신기관등 국가독립채산 경제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체건물 및 시설물

2. 인민군대, 보안대 및 경비대에서 사용하는 병사 및 군용시설물

3. 중앙은행, 건설자금은행 및 농민은행의 고정재산으로 되어있는 건물 및 시설물

4.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각종전문학교 및 각종대학의교사

5. 로동생산하 휴양소, 정양소, 양로·양생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고있는 일체건물 및 시설물

6. 보건생산하 각종병원, 진료소, 료양소, 산원 등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일체건물 및 시설물

7. 내각 량정국에 소속되어있는 현물세창고 및 비상미 보관창고

8. 기타 내각이 결정하는 건물 및 시설물

제 4 조 본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건물 시설물들의 대지를 제외한 도시 및 농촌의 일체국유대지

2. 기타 내각이 결정하는 대지

제 5 조 국유건물 및 대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관인민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및 국가경제기관이 사용하고있는 국유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그 기관이 소요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시경영성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을 허가한 국유건물 및 대지를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는 소관인민위원회위원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위에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자에게 이축할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축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경영상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건조물 및 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른 국유건축물과 교환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 8 조 국유건물 및 대지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사용료표에 의

- 거하여 해당사용료를 소관인민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사용료 납부자가 소정한 납부기일을 경과하도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체납금에 대하여 기일 경과후 매일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 제10조 소관인민위원회위원장은 국유건물을 유지보존하기위하여 대중수리는 도시경영상의 승인을 받아 국가예산으로 직접 실시하며 소수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 소관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유건물 및 대지사용료중에서 감가상각 및 자가(自家)화 재보험 적립금을 소정절차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제12조 소관인민위원회위원장이 국유건물 및 대지의 교환 자재 전용처분 및 이축등의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경영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물을 신축 또는 매수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국가기관에서 신축 또는 매수한 일체건물 및 시설물은 준공 또는 매수일부터 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14조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물을 제외한 기타국가기관에서 신축 또는 매수한 건물 및 시설물은 건물준공일 또는 매수한 후 30일 이내에 소관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소유가 아닌 국가관리중에있는 건물 및 대지도 본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되 매각 교환 이축 및 자재전용등 처분은 하지 못한다.
- 제16조 소관인민위원회위원장은 국유건물 및 대지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할 때에는 계약을 해약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 국유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현재 근무하고있는 기관으로부터 타기관으로 조동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 「북조선인민위원회 및 도시 도시경영부 과 설치에 관한 결정서」(1947년8월27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65호)
별지중 제4호는 본규정 실시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 제19조 본규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별 표

국유건물 및 국유대지사용료표

1. 국유건물사용료

(1) 로동자 사무원이 사용하는 주택은 다음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세대주 월(月)	수 입	1평방메-트로(m ²)당월사용료
1,000이하		1 원
1,001원이상	3,000원까지	1 원50전
3,001원이상	4,000원까지	2 원
4,001원이상	6,000원까지	3 원
6,001원이상	10,000원까지	4 원
10,000원이상	6 원	

(2) 일반인민이 사용하는 주택건물은 하기 편급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등지 \ 급지	급지									비 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1 등지	10	8	7	6	5	4.5	4	3.5	3	1평방메-트르(m ²)당월사용료단위 원(圓)
2 등지	—	8	7	6	5	4.5	4	3.5	3	
3 등지	—	—	7	6	5	4.5	4	3.5	3	
4 등지	—	—	—	6	5	4.5	4	3.5	3	
5 등지	—	—	—	—	5	4.5	4	3.5	3	
6 등지	—	—	—	—	—	4.5	4	3.5	3	
7 등지	—	—	—	—	—	—	4	3.5	3	

(3) 주택 이외의 국유건물은 하기 편급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하 생략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1977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밭같이하는 땅은 밭같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 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국가는 인민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 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 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 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영체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영체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 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 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발전 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 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 하천, 호, 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 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 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기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 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 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 하천건설을 해당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 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큰강과 중요강, 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 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지대부

더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강, 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 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 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 하천, 호, 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 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 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 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 경사지의 발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지대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뿔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

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 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떨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떨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 증식하는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력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캐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력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캐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 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역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발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방울을 더욱 보장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높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발취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높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 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양 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깎는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국토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 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 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람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 하천, 호, 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 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기관들에서는 토지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 보호, 건설 및 관리 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도로 관리에 관한 규정

(1949. 2. 4 내각 결정 제14호)

제 1 조 본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에 공여되는 육상도로로서 내각이 승인하는 도로 (1,2급)와 내무상 또는 도시경영상이 소관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도로 (3급 4급 급외)를 말한다.

제 2 조 도로의 등급을 구분하여 1급 2급 3급 4급 및 급외로 하되 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도로

- (1) 수부와 도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2) 도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3) 외국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
- (4) 국내 중요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5) 시 행정 구역내 유효폭 30m 이상의 도로

2. 2급도로

- (1) 도 소재지와 시 및 군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2) 시 및 군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3) 도 내의 중요 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4) 시 행정 구역내 유효폭 20m이상의 도로

3. 3급도로

- (1) 시 및 군소재지와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2) 면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3) 군 내의의 중요한 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4) 시 행정구역내 유효폭 12m이상의 도로

4. 4급도로

- (1) 면 소재지와 리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2) 리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3) 중요 부락간을 연결하는 도로
- (4) 시 행정 구역내 유효폭 6m이상의 도로

5. 급외 도로

- (1) 기타 도로
- (2) 시 행정 구역내 유효폭 6m미만의 도로

제3조 도로에 속하는 다음의 시설물은 본규정을 적용한다.

- 1. 도로에 접촉된 교량, 도선장 및 색도
- 2. 도로에 부속한 암랑, 수통록, 구옹벽, 도로수, 울타리, 도로 원표, 거리 표식, 경계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표식 및 도로 보수용 재료 상치장
- 3. 기타 도로 관리 기관이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 도로는 1급 2급 3급 4급 및 급외 도로를 구별 하지 않고 각 시,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도로는 도시경영기관 기타의 도로는 내무기관이 관리한다.

제5조 시, 군 및 면소재지에는 해당 소관기관에서 도로원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도로관리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한 도로(급외 도로를 제외한다)에 거리 표식 및 경계 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도 관리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한 도로의 보수를 매년 춘추 2회에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 재해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 관리기관은 도로를 횡단하거나 또는 접속 되는 다른 공작물을 시설함으로써 도로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실행 시킬 수 있다.

제9조 도로와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진 해당기관 또는 개인은 해당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로공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전조에 의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 및 기관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 (1) 도로의 급별 노선명 및 소재지
- (2) 공사의 목적 및 그 내용
- (3) 공사 금액
- (4) 공사 준공예정 년 월 일
- (5) 시공 방법

2. 설계서 및 설계도

- (1) 평면도
- (2) 종단도
- (3) 공작물도

제11조 다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 및 기관은 사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도로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하려고 할 때
- 2. 도로의 연결되는 지하도 교량 도선장 또는 색도에 관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 3. 도선료를 징수 하려고 할 때

제12조 전조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 및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서

- (1) 도로의 급별 노선명 및 소재지
- (2) 공사의 목적과 그 내용
- (3) 공사 금액
- (4) 공사 준공 예정 년 월 일
- (5) 시공 방법

2. 일반 위치도 및 구조 약조

제13조 제11조에 의한 도선료 징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 및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 (1) 도로의 급별 노선명 및 소재지
- (2) 시설 내용

- (3) 도선료 징수의 구간 및 기간
- (4) 요금액 및 징수 방법
- (5) 수지 예산 명세서

2. 일반 위치도

제14조 도선료를 징수하는 자 및 기관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도선료 징수자명
- 2. 도선료 징수 기관
- 3. 도선료의 금액 징수 방법
- 4. 무료 통행 범위

제15조 도로를 장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가공 시설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내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도로 또는 도로 부근에 시설된 색도 또는 송전선 공작물 관리자 및 점유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위험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도로에 관한 측량공사 및 비상재해방지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 관리 기관은 토지, 건물, 임목 등에 대하여 소관 기관과 합의한 후 사용 변경 또는 제거를 할 수 있다.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을때 부터 30일 이내에 손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 도로에 한하여 다음의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 1.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도로 용지를 경작 하는 것
- 2. 도로수의 남벌 또는 우마차의 계류 및 도로내에 방사 하는 것.
- 3. 거리표식 경계표 기타 도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변경 하는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 일 성

내 무 상 박 일 옥

도시경영상 이 용

제 2 절 상·하수도, 하천관리

◇수도에 관한 규정

(1950. 1. 21 내각결정 제12호 별지)

제1조 자가전용수도 시설을 제외하고 일반급수를 위한 수도시설(이하 수도라고 약칭한다)의 신설확장 보수 및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수도시설이라 함은 인민생활과 생산기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수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일체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수도에 관한 일체 신설확장 보수공사는 도시경영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준공 후에도 도시경영상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30만원 이하의 지방예산으로 실시하는 보수 및 급수공사는 해당 수도관리기관이 자기권한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수원지구역내에는 일체 유해물과 기타 오물을 방류하지 못한다.

제6조 해당 수도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수질의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를 받으려 하는 자는 해당 수도관리기관에 급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수도관리기관은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의 내용변경 수도용구의 위치 변경 개조 수선 또는 철폐 및 급수의 중지를 하려고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이전 양도로 인하여 해당 사용장소에 있어서 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사용자는 전사용자의 수도사용에 관한 일체 권리의무를 계승한다.

제9조 급수는 수선공사는 해당 수도관리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그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수선공사의 특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량은 수량메-트르에 의하여 계량한다.

그러나 수량메-트르의 설치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정한다.

1급지 가족4인까지 1일 400 ℓ

2급지 가족4인까지 1일 360 ℓ

3급지 " " 320 ℓ

4급지 " " 280 ℓ

가족 4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급지는 100 ℓ 2급지는 90 ℓ 3급지는 80 ℓ 4급지는 70 ℓ 씩 가산한다.

제11조 급수의 등급 및 종별은 다음과 같다.

종 별	등 급
음 료 수	1 급지
"	2 급지
"	3 급지
"	4 급지
공 업 용 수	
방 임 수	

제12조 수도요금은 국가제정 가격에 의한다.

제13조 수도사용자는 그 요금을 매월 지정된 기일내에 수도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해당 수도관리기관은 필요할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수도시설의 점검 수도 사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원은 반드시 수도관리기관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도관리기관은 수도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수도사용자에게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체납을 1개월 이상 계속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 수도관리기관은 수도사용자가 수도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시킨다.

이 경우에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시설을 그 손해배상과 함께 몰수 한다.

제17조 수도관리기관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수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수도관리기관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에 그 시일 및 구역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도관리기관은 소정 수도 감가상각비를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도시경영상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도위생에 관하여는 보건성 수도 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1950년 2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하수도에 관한 규정

(1950. 1. 21 내각결정 제12호 별지)

제 1 조 하수도의 신설 확장보수 및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하수도라 함은 주민의 보건문화상 필요에 의하여 오수 유수의 유통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일체 시설물을 말한다.

제 3 조 도시주민의 보건문화상 특히 필요한 하수도의 신설 확장보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경영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후에도 도시경영상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범위는 도시경영상의 지시로 결정한다.

제 4 조 도시경영상이 지정한 이외의 하수도의 신설확장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도 또는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후에도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하수도를 구분하여 공설하수도 및 사설 하수도로 한다. 공설하수도의 유지 관리는 해당하수도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설하수도의 유지관리는 시설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6 조 해당 시·군 구역인민위원회위원장은 사설하수도에 관하여서도 보건문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하수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 공설하수도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7 조 공설하수도에 있어서 암거일 때에는 양척 1m 개거 일 때에는 양척 4m 이내의 지역에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시·군 구역인민위원회에서 기설건물 또는 시설물로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사설하수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 9 조 해당 시·군 구역인민위원회위원장은 보건 문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설하수도의 시설자에 대하여 그 개축 또는 청소 및 배출되는 하수의 소득을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하수도를 손상하거나 하수의 유통에 장애를 준 자에게는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11 조 본 규정은 1950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천 관리에 관한 규정

(1949. 2. 8 내각 결정 제15호)

제1조 본규정에서 하천이라 함은 공공 이익에 공여되는 하천으로서 내각이 승인하는 하천 (1급)과 내무상 또는 도시 경영상이 소관 구역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하천 (2급 급의를 말한다.)

제2조 하천의 등급을 구분하여 1급 2급 및 급외로 하되 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 하천

- (1) 유역 면적 500평방km이상의 지점으로 부터 해면까지의 우수 구간
- (2) 외국과 국경을 이루는 하천

2. 2급 하천

- (1) 유역 면적 평방km 이상의 지점으로 부터 1급 하천 지점까지의 우수 구간
- (2) 도와 도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

3. 급외 하천

- (1) 1.2급 이외의 하천

제3조 하천 수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리된 하천은 제방 용폭으로 부터 2m까지의 구역
2. 정리되지 않은 하천은 매년 보통 홍수 때의 침수 구역

그러나 해당 관리기관은 경우에 따라 전 1호, 2호의 범위 이외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하천에 속하는 다음의 시설물 및 수역에 속하는 자연 방수림은 본규정을 적용한다.

1. 하천에 부속된 제방, 호안, 수제, 수문, 갑문, 잠관, 제언량, 수표, 수로용지, 경계표, 거리표, 경종 시설 및 보수용 재료고
2. 기타 하천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물

제5조 하천은 1급 2급 및 급외를 구별하지 않고 각 시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하천은 도시경영기관 기타의 하천은 내무기관이 관리 한다.

그러나 각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하천은 도시경영기관과 내무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 지방기관에서 이를 관리한다.

제6조 1급 2급 하천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기관에서 하구(해면)을 기점으로 하여 거리표 및 양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하천관리기관은 자기관할에 속한 하천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하천관리기관은 성우기 전후에 걸쳐 자기관할에 속한 하천의 제방 기타 시설물의 보수를 하며 비상, 재해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9조 하천관리기관은 하천을 횡단 하거나 또는 접속되는 다른 공작물을 시설하여 선박의 운행으로써 하천 및 부속물에 유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그 공작물을 시설한 관계자에게 하천에 속한 공사를 실행 시킬 수 있다.

제10조 다음 각항의 목적으로 하천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해당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하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천 수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및 제거하려고 할 때
2. 하천 부근에서 하천에 관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3. 하천에 속하여 있는 소택 수면을 이축하려고 할 때
4. 하천에서 인수 또는 주수 공사를 하려고 할 때
5. 하천에 유별 유목 하려고 할 때
6. 하천 수역을 경작하며 식수 또는 채벌 하려고 할 때
7. 하천에서 석재 자갈 및 토사를 채취하려고 할 때
8. 어업을 목적으로 한 임시적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러나 수력발전업 상수도 및 영구적 제언 시설 하천에 속한 소택 이축이 20정보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전조에 의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 및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하천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서
 - (1) 일반 위치도
 - (2) 하천급별 및 명칭
 - (3) 사용 목적
 - (4) 시설 계획
 - (5) 사용 면적
 - (6) 사용 기관

2. 위치 평면도 및 구조도

제12조 제10조의 하천 사용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전항의 징수방법은 따로 제정한다(하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하천에 관한 측량공사 및 비상재해방지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천관리기관은 토지, 건물, 임목 등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합의한 후 사용 변경 또는 제거를 할 수 있다.

제14조 하천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는 이를 금지 한다.

1. 하천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제방에 식수 또는 농작물 경작 및 건물 등을 건축하는 것
2. 하천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하천 부속물에 선박 및 유별목을 계류하는 것
3. 하천 및 제방에 진계 기타 잡물을 방치 하는 것
4. 제방에 우·마 등을 계류 또는 방사 하는 것
5. 도로를 겸하여 사용하는 이외의 제방위에 우마차를 통행 시키는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	일	성
내	무	상	박	일
도시경영상	이			용

제 7 편 보건, 위생, 노동



제 1 절 보건행정, 사회보장

◇탁아소에 관한 규정

(1949. 2. 1 보건성 규칙 제1호)

제1조 탁아소는 생후 1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를 가진 노동여성으로 하여금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또한 정치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데 봉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탁아소는 국가 및 사회 단체에서 이를 경영한다.

제3조 탁아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건전한 발육과 양육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그의 실시
2. 유아 질병 예방
3. 가정생활에 있어서 유아의 양육사업에 대한 위생적, 문화적 습성의 함양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그의 실시

제4조 탁아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를 개설하기 1개월 전에 보건성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개소 년 월 일
3. 건물의 평면도, 대지, 유원의 평수 및 부근의 약도
4. 설립기관명칭
5. 예산 소속별 및 예산액
6. 계획 침대수
7. 육아 시간표
8. 직원 일람표

제5조 탁아소는 도시(일반 탁아소를 칭한다)에 설치하되 그 명칭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도시명)

(수서)

1. ○ ○ ○

제 ○ 탁아소

(산업기관명)

2. ○ ○ ○ ○ 탁아소

제6조 탁아소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유 폐지 또는 변경할 예정기일 탁아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 신청서를 1개월 전에 보건성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탁아소의 설비는 다음 표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탁아소의 기본시책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접수실 | 2. 목욕실 | 3. 의무실 | 4. 유희실 |
| 5. 침실 | 6. 식당 | 7. 포유실 | 8. 세탁실 |
| 9. 건조실 | 10. 재봉실 | 11. 격리실 | 12. 사무실 |

유희실 및 침실은 유아 1인에 대하여 2.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풀밭, 유희장, 정원 및 마루방 등을 설비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유아 1인에 대하여 4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탁아소에 설치하여야 할 악기, 장난감, 양육용 교재 및 기타 비품 등에 대하여는 보건성에서 따로 이를 제정한다.
4. 탁아소의 위치는 인접지 및 주위환경이 교육 또는 위생상 위해가 없는 지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유아가 탁아소에 입소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모친의 직장증명서 및 해당 직장, 직업, 동맹 추천서 또는 당해 탁아소를 소관하는 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 과의 추천서
2. 유아 상담소 또는 국가치료기관의 보건진단서

제9조 탁아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유아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만 3세가 넘는 유아
2. 다른 유아에게 전염할 질병이 있는 유아
3. 양육상 다른 유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유아

제10조 탁아소는 유아 양육사업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탁아를 연령별로 반을 조직하며 그 반수는 유아의 연령 및 탁아소의 기능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각 반의 유아수는 17명 내지 18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탁아소는 보건성에서 따로 제정한(유아영양표)에 의하여 영양가를 보강하며 이에 준한 식사표를 작성하여 조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탁아소는 일상적으로 의사의 지도밑에 유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제13조 탁아소는 유아에 대하여 자연 모유 영양을 생후 7개월까지는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탁아소는 각 계절에 적응한 보건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며 특히 이유된 유아(생후 15개월 이상)에 한하여는 위생지대에 휴양반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탁아소는 결핵병 구루병 및 전염병의 질병을 경과한 직후의 유아 또는 허약한 유아를 위하여 요양반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6조 탁아소는 등록된 유아가 발병된 경우에는 탁아소에서 영양물을 조리하여 이를 발명한 유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탁아소는 건전한 탁아소 생활을 가정에까지 침투시키기 위하여 탁아의 모친에 영양 위생 방역 및 양육에 대한 위생 선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에 있는 일반탁아소는 유아의 연령을 생후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 취급하며 양육시간은 주간중 1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탁아소 소장을 보좌하며 탁아소사업을 강화 추진시키기 위하여 탁아소 전체 직원 유아의 부모 해당 도시(일반탁아소) 또는 도시내 및 지방에 소재하는 산업기관(산업기관 탁아소)의 사회단체 대표 및 여성동맹 대표로서 탁아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0조 탁아소는 따로 보건성에서 제정한 양식에 의하여 탁아소의 사업상황 유아의 건강상태 재정 경리 및 의료 통계를 소정한 기일내에 이를 소관 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탁아소가 설치된 도(평양특별시를 포함한다-이하도 이와 같다) 시 군 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과는 탁아소의 조직 및 유아 양육등에 대한 지도 검열을 할 수 있다.

제22조 탁아소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직원	소	의	간	방	보	보	서	경	서	경	세	소	간	연	화
침대	장	사	호	문	육	조	무	리	무	리	탁	재	호	락	부
	장	장	원	간	원	원	과	장	원	원	부	부	원	원	부
40	1	0.25	0.5				0.5	0.5			2	2		0.5	3
41-30	1	0.5	1				0.5	1		0.5	3	2.5		1	4
91-120	1	1	1	0.5			1	1	1	0.5	4	4		1	4
120-160	1	1	0.5	1			1	1	1	1	5	5		1	4
161-200	1	0.5	2	1.5			1	1.5	1	1.5	6	5		1	4

주: 간호원 및 보육원, 보조원은 매 개 유아반에 1명씩 배치한다.

제23조 탁아소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의사 펠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보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인민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그러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탁아소 소장 감습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탁아소의 직원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탁아소 소장 및 의사는 소관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면한다.
2. 기타 직원은 소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25조 탁아소의 각 직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탁아소 소장은 소관 시 도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소재 사무를 통괄한다.
2. 의사는 해당 탁아소 소장의 지도를 받아 탁아소의 위생시설을 정확히 조직하며 탁아소 전체사업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소장과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3. 간호원장은 소장 및 의사의 지도를 받아 보육원 및 보조원을 지도 감독한다.
4. 간호원(방문간호원을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 및 보육원은 탁아소의 양육 및 의료 사업을 실시하며 야간에는 간호원 및 보조원만이 복무한다.
5. 과장 및 기타 직원은 소장의 지도를 받아 각각 담당 사무에 종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탁아소규칙」(1947년 6월 1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보건국 명령 제5호)은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현존한 탁아소는 본 규정에 의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건상 이 병 남

◇ 정양소에 관한 규정

(1950. 4. 10. 보건성규칙 제7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정양소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가예방치료기관이다.

제2조 정양소는 국가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설립하되 그 운영경비는 설립기관 또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제3조 정양소의 정양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써 약 30일간에 완치 또는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자
2. 해로운 조건을 가진 지하유해 위험 노동자와 소년일꾼, 시간제한 없는 일꾼, 책임일꾼 및 모범일꾼

제4조 매개 정양소에서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볼 수 있는 질환의 종류는 보건상이 이를 결정한다.

제2장 정양소의 설치 및 시설

제5조 정양소는 의학적 치료효능이 있는 온천 혹은 약수와 자연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또는 이를 구비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 정양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소관기관 책임자는 보건상의 승인을 얻어 그 위치를 결정한다.

제7조 정양소의 명칭은 그의 소관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8조 정양소 소관 기관책임자는 보건상이 제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15㎡이상의 진찰실 및 임상실험실
2. 기본 의료기계 및 기구
3. 물리치료실 및 렌트겐실(이는 필요한 정양소에 한함)
4. 정양자용 목욕실 및 갱의실
5. 정양자용 세면장
6. 정양자용 이발실
7. 정양복 침구 및 침대
8. 세탁실 및 재봉실
9. 취사장 및 식당시설
10. 정양복 침구 및 오물등의 소독장치

제3장 정양소의 사업

제9조 각 요양소에서는 소관기관 책임자가 제정한 운영방침에 의하여 사업하되 치료 예방 사업에 관하여서는 보건상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양소장은 정양의 효과를 제고하며 소내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개 정양소의 특수성에 따라 정양규정을 작성하되 소관기관 책임자와 보건상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한다.

제11조 정양소의 입소기간은 각 소관기관책임자의 운영방침에 의하여 30일 이내로하되 정양소 보건과장의 진단에 의하여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은 소관기관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로 이를 연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정양소장은 정양자의 편의와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대사업으로서 매점 채원 과수원 목장 및 기타 시설을 소관기관책임자의 승인하에 설치 경영할 수 있다.

제13조 정양소장은 치료예방 사업에 관한 보고를 보건상이 소관기관책임자와 합의 밑에 제정한 바에 의하여 보건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양소의 입소 퇴소

제14조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양소에 입소하려는 자는 반드시 정료양 심사위원회 또는 정양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요 정양자라는 결정을 받아야 하며 정양소에 입소할 때에는 소관기관책임자가 발행한 정양권과 국가치료기관에서 발행한 교환병력서를 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양권을 받은 요 정양자는 반드시 지정한 기일에 지정한 정양소에 입소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조에 의거한 입소자라 할지라도 해당 정양소의 의료조건으로서 치료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정양소장은 이를 퇴소시킴과 동시에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양소 소장은 정양자가 퇴소할 때에는 보건상이 따로 제정한 정양 성적표를 정양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정양자는 소속기관 책임자를 경유하여 이를 담당의사(국가 치료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구정원 및 직원임면절차

제17조 정양소의 기구 및 정원은 소관 책임자가 따로 정한 바에 의하되 정원중 보건일꾼은 그 침대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치하여야 한다.

의 사	펠 셀 시 험 보 수	간 호 원
1 ~ 5%	1 ~ 3%	3 ~ 15%

제18조 정양소의 소장, 부소장, 과장(책임지도원을 포함한다)은 각각 소관관책임자가 이를 임면하고 기타 직원(보건일꾼을 제외한다)은 소장이 임면한다.

정양소의 보건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소관기관 책임자가 임면한다.

제19조 정양소의 보건소부장은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 건 상 이 병 남

◇ 어린이保育敎養法

(1976. 4. 29)

제 1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 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 2 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 3 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의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끄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사회주의적 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 8 조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 주고 정치 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복무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균중노선을 관찰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훌륭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부비품 등을 갖추어준다.

제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준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한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국가는 어린이 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국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국가는 혁명열사, 애국열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들린다.

제20조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 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 산후휴가 기간의 노임과 식량, 분배몹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 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험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노동시간 안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응근노임을 준다.

제21조 국가는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다.

한꺼번에 둘 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삼태자에게는 옷과 포단, 1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꾼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제 3 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 보육

제22조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한다.

어린이들을 위생적으로 거두어주고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그들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

제24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인다.

제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무상치료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꾼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닷가, 경치좋은 곳들에 어린이들을 위한 요양시설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 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제 4 장 혁명적인 어린이 교육교양

제29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 교양하는 것은 조국의 융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3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한다.

제34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예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 되도록 교양한다.

제35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 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한다.

제36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 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준다.

국가는 학교전 의무교육기간에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 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등 학교 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제38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육원, 교양원들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에 공로가 있는 양육기관 복무자들에게 명예칭호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39조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 양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제40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농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양육기관의 모든 일꾼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정통하며 해당한 국가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42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43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량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 6 장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양육기관이다.

제45조 어린이보육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 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만 4살~만 5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 교양기관이다.

제46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여성들의 일터 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47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는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통하여 실현한다.

제48조 중앙의 교육 및 보건 행정기관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전반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 어린이 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 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4. 탁아소, 유치원을 운영하는 중앙기관에 대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 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 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 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제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꾼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요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치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지도한다.

제51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 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 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꾼 양성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교육 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등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제54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 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 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젖소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도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1980년 4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되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민중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킨다.

제3조 사회주의 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4조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과 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한다.

제5조 국가는 보건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만든다.

제6조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일군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7조 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항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치료하여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준다.

제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보건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제9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제10조 국가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국가는 특히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여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맡아키운다.

제11조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제12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

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13조 환자 및 산전 산후휴가를 받은 여성들과 그 부양가족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몹을 준다. 그들에게 주는 식량, 보조금, 분배몹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4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림산마을들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15조 국가는 민족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동의치료를 잘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의료망을 늘이며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동의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이도록 한다.

제16조 국가는 온천, 약수지대와 기후가 좋은 지대에 현대적인 료양시설들을 많이 지어 인민들이 자연인자에 의한 료양치료의 혜택을 더 잘 받도록 한다.

제 3 장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제17조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예방에 선차적으로 힘을 넣는다.

제18조 보건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 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생활환경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보호하는 것은 예방의학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보건기관을 비롯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물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건설하며 그 관리를 잘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는다.

공장, 기업소와 해당기관들은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장, 기업소와 해당기관들은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와 위생보호용구를 보장하며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산업성질병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23조 해당 공장, 기업소, 사회급양기관들은 식료품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고 취급하는데

서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4조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잘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학교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전염병의 발생조건을 없애고 소독사업을 강화하며 주민들에 대한 면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기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킨다.

제 4 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제28조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기관들은 기초의학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면서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제29조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들은 동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동의학과 민간료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제30조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의료기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기관들은 의학과학연구사업에 보건일군들을 널리 참가시키며 의학과학자들과 보건일군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의학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준다.

제 5 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제33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중앙 제약, 의료기구 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 제약, 의료기구 공업을 발전시킨다.

제34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인민보건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포장의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동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약초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사업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동약생산기관과 해당기관들은 나라의 풍부한 동약자원을 보호증식하며 계획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제37조 해당 기관, 기업소들은 이름있는 약수터에 약수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약수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 보건일군

제3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일군은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보건일군은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

제39조 보건일군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건일군들은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건일군은 위생지식을 보급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선전교양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보건일군들은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의료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정해진 기술규정과 행동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3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일군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보건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여러가지 배려를 돌린다.

제 7 장 보건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의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사회적활동을 보장하는 인민적 보건 기관이다.

제45조 보건기관에는 병원, 진료소, 료양소, 위생방역소, 검역소를 비롯한 치료예방기관과 의약품공급관리기관, 의약품검정기관 등이 속한다.

제46조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각급 정권기관들과 보건행정기관을 통하여 실현한다.

각급 정권기관들과 보건행정기관은 국가의 인민보건정책과 보건법규법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보건행정기관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결린 문제를 풀어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건일군들이 치료예방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각급 정권기관들과 보건행정기관은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보건일군들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양시키고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의료기자재 및 물자 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49조 인민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우리 나라에 마련된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를 더욱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986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 1 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2 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켜 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의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제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 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 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 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재,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 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낼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어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도시관리기관과 지방 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 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녹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제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국가의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0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 잡이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탱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룬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룬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 가스측정수단을 갖추고 룬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룬전기재의 운해를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나무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 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을 정화하여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며 먹는물을 잘 여과 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 하천, 호, 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 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으로 바다, 강, 하천, 호, 소, 저수지와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채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중에 날리거나 강, 하천, 호, 소,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에는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에는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3조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상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 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짐짐승 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은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은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있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있으며 공해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에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

제40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

로 조사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 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 조건, 해양조건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제44조 준공검사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 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부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 변화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 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제 5 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제47조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경보호질서 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 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50조 항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영토 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 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1조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물건 기재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제52조 나라의 환경을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일군과 책임있는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제 2 절 의 료, 약 품

◇ 北朝鮮醫藥品配給所規程

(1947. 9. 1 保健局命令 第十六號)

第一條 北朝鮮의 國家保健機關에 醫藥品衛生材料 및 醫療器具를 確保하여 圓滿히 配給하기 爲하여 中央 및 各道(以下·特別市를 包含한다)에 醫藥品配給所를 設置한다.

第二條 平壤特別市에 北朝鮮醫藥品配給所(以下 北朝鮮配給所라 略稱한다)를 設置한다.

第三條 北朝鮮配給所에는 다음의 職員을 둔다.

所 長	一人
技 師	一人
事 務 員	二人
倉庫係員	四人
小 分 員	二人
備 員	若干名

第四條 所長 및 技師는 保健局長이 任命하고 其他 職員은 所長이 任命하고 會計 및 倉庫責任者는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五條 所長은 保健局長의 指揮監督下에 所務를 管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六條 各道에는 道醫藥品配給所(以下 道配給所라 略稱한다)를 設置한다.

第七條 道配給所에는 다음의 職員을 둔다.

所 長	一人
事 務 員	二人以內
倉庫係員	二人以內
備 員	若干名

第八條 道配給所는 道人民委員長이 任命하고 其他職員은 所長이 任命하되 會計 및 倉庫責任者는 道人民委員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九條 道配給所長은 道人民委員長의 指揮監督下에 所務를 管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十條 北朝鮮配給所는 다음 方法에 依하여 醫藥品 衛生材料 및 醫療器具를 確保한다.

- 一. 國內에서 生産되는 醫藥品 衛生材料 및 醫療器具
- 二. 商業局을 通하여 輸入되는 것
- 三. 其他 地方으로 購入하는 것

第十一條 道配給所는 다음 方法으로 醫藥品, 衛生材料 및 醫療器具를 確保하여야 한다.

- 一. 北朝鮮配給所에서 남은 것

二. 自體購入하는 것

第二號에 依할 때는 그 道保健部長이 檢閱한 後 承認을 얻어야하며 道配給所長은 其品名 數量, 金額 및 購入處를 直時 北朝鮮配給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二條 北朝鮮配給所는 保健局長이 樹立한 配給計劃에 依하여 道配給所, 局直屬醫療機關 및 保健局長이 指定한 對象에 配給한다.

第十三條 道配給所는 道保健部長이 樹立한 配給計劃에 依하여 道內人民病院 人民藥局 및 道保健部長이 指定한 對象에 配給한다.

第十四條 北朝鮮配給所 및 道配給所는 獨立採算制로 運營한다.

第十五條 醫藥品の 配給價格은 確保原價에 配給實費를 加算하되 다음의 比率을 超過하여서는 안된다.

一. 北朝鮮醫藥品配給所는 10%

二. 道配給所는 10%

前項의 比率은 保健局長의 指示가 있을 때는 이를 加算할 수 있다.

第十六條 北朝鮮配給所長을 每月醫藥品狀況表 配給狀況表, 損益計算表를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道配給所長은 同様の 表를 北朝鮮配給所長 및 道保健部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會計年度는 每年 一月一日부터 十二月末日까지 歷年制로 한다.

第十八條 北朝鮮配給所 및 道配給所는 豫算 및 決算 報告를 保健局長 또는 道人民委員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十九條 北朝鮮配給所 및 道配給所에는 다음 帳簿를 備置한다.

一. 總元簿

二. 金錢出納簿

三. 銀行去來簿

四. 各道 또는 各郡 統計簿

五. 賣買原簿

六. 配給原簿

七. 物品出納簿

第20條 本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 看護員學校規定

(1947. 9. 8 保健局命令 第十七號)

第一條 看護員學校(以下 學校라 略稱)는 看護員人 養成을 目的으로 保健局 및 道(特別市)人民委員會가 國家病院에 附設할 수 있다.

第二條 道特別市人民委員會가 學校를 設立하러 할 때에는 一箇月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具備한 許可 照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一. 學校所在地
- 二. 學校의 建物構造圖
- 三. 實習시킬 病院의 簡單한 施設內容(폴클리니크 또는 病院科別病院寢臺數 實驗室 物理治療設備等의 有無)
- 四. 校長 講師의 履歷書
- 五. 生徒募集定員表
- 六. 維持費概算表
- 七. 生徒寄宿舍 設備의 有無 및 收容能力

第三條 學校를 廢校하러고 할 때에는 그 理由를 詳記한 廢校許可願書를 提出하여 保健局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四條 學校에는 다음과 같은 職員을 둔다.

- | | |
|------|--------|
| 校 長 | 一名 |
| 教務主任 | 一名 |
| 講 師 | 若干名 |
| 書 記 | 一 ~ 二名 |
| 要 員 | 一 ~ 二名 |

職員은 原則적으로 學校設立病院의 職員이 兼務하되 不得已한 境遇에는 專任職員을 둔다.

講師의 資格은 醫師 또는 人民科 國史 數學 理化學等의 中等學校 教員資格을 가진 者

第五條 校長은 教務一切을 統轄指導하며 教務主任은 教授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며 生徒들의 校內外生活을 指導監督한다. 書記는 學校의 庶務, 會計를 掌理하며 要員은 學校의 雜務에 從事한다.

第六條 校長은 保健局長이 任命하며 教務主任講師는 所管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 委員長이 任命하되 保健局直屬인 境遇에는 保健局長이 任命하며 其他 職員은 校長이 任命한다.

第七條 學校의 名稱表示는 다음과 같다.

○○病院附屬看護員學校

第八條 學校의 條業年限은 二個年으로한다.

第九條 在學中履修하여야 할 教科目은 保健局長이 發表한 教程表에 依한다.

第十條 한學年을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第一學年 自 九月一日 至 十二月二十日

第二學年 自 二月一日 至 四月二十四日

第三學年 自 五月一日 至 七月十五日

第十一條 休暇 및 休日은 다음과 같다.

夏期休暇 自 七月十六日 至 八月三十一日

冬期休暇 自 十二月二十一日 至 一月三十一日

春期休暇 自 四月二十五日 至 四月三十日

休日是 北朝鮮人民委員會決定에 依한 休日

第十二條 第一學年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級中學校二學年 修了 以上の 學力을 갖춘 滿十六歲 以上 滿二十五歲 以下の 女子로서 身體健全한 者라야 한다.

第十三條 入學志願者는 入學願書, 卒業證明書(修業證明書) 또는 그 寫本, 戶籍抄本 履歷書, 健康診斷書를 具備하여 學校長에게 所定の 期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入學試驗은 國語, 數學(代數幾何), 理化學(物理化學)의 筆記試驗 및 人民科의 口頭試驗에 對하여 施行한다.

第十五條 退學을 願하는 者는 그 理由를 詳記한 願書를 校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十六條 各學年의 試驗은 學期試驗과 學年末試驗을 施行하며 또는 學科講義가 끝날 때마다 試驗을 實施한다.

第十七條 進級成績은 學期學年末試驗의 平均点으로서 決定하며 全科目二五% 以下 科目에 있어서 落第点을 얻었을 때에는 一回에 限하여 進級試驗을 許한다.

第十八條 所定年限을 修業하여 卒業試驗에 合格된 者에게는 卒業證書를 授與한다.

第十九條 卒業證書 所持者에게는 特別市人民委員會保健部長(以下 保健部長이라 略稱)은 看護員登錄證을 交付하고 登錄後 10일 以內로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二十條 生徒에게 學資金을 給與하되 給與生徒數와 給與額은 保健局長이 이를 決定 指示한다.

第二十一條 卒業生은 保健部長이 指示하는 保健機關에 二個年以上 服務할 義務가 있다.

第二十二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停學 또는 退學을 命한다.

一. 學校의 規律을 違反하였을 때

二. 全科目 二五% 以上 科目에 있어서 落第点을 얻은 者 또는 追後試驗에 있어서도 낙제

한 者

第二十三條 學校의 所要經費(학생에 대한 給여를 包含)는 그 設立機關이 負擔한다.

附 則

一.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二. 本 規程 公布 以前에 許可받은 看護助產學校는 本 規程에 依하여 看護員學校로 認定한다.

◇ 看護員試驗規程

(1947. 8. 11 保健局命令 第十二號)

第一條 看護員 試驗은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保健部長(以下 保健部長이라 略稱)이 每年 二回 以內로 施行한다.

第二條 試驗은 保健部長이 國家病院 醫師中에서 委囑한 三名 乃至 五名으로서 組織된 試驗 委員會 全委員 參加下에 施行한다.

第三條 試驗을 받으려는 者는 受驗願書에 다음의 審類를 具備하여 保健部長에게 所定의 期 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1. 履歷書
2. 寫眞(명함型脫帽半身) 3. 戶籍抄本
4. 健康診斷書(國家病院)

第四條 看護員試驗科目은 다음과 같다.

人民科 生理學 解剖學 衛生學 藥理學 傳染病學 內科學(看護法을 包含)
外科學(看護法 消毒法 救急處置를 包含) 小兒科學(看護法을 包含)
產婦人科學(看護法을 包含)

第五條 試驗은 口頭試問으로 實施하며 內科學 外科學 小兒科學 產婦人科學에 對하여서는 實地試驗을 함께 實施한다.

第六條 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保健部長이 合格證書를 付與한다.

附 則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 약품에 관한 규정

(1949. 2. 12 보건성규칙 제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규정에서 약품이라고 함은 조선 약전 또는 외국 약전에 기재된 약품 및 신약 생약 가정약을 말한다.

제 2 조 약품의 성장 및 성질등은 조선 약전 또는 외국 약전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조선 약전 또는 외국 약전에 기재되지 않은 약품에 대하여는 보건성에서 이를 정한다.

제 2 장 약품의 제조 판매

제 3 조 약제사 또는 약제사를 관리인으로 두는 자가 아니면 약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다.

제 4 조 약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를 해당도(평양시를 포함한다-이하도 이와 같다) 인민위원회 보건부를 경유하여 보건성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조소의 명칭 및 위치
2. 개설 예정 년 월 일
3. 제조소의 평면도 및 시설증명서
4. 제조 약품명, 제조방법, 용법, 사용량, 효능
5. 생산계획서
6. 관리자의 이력서 및 신분등록증 사본

제 5 조 전조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변경 승인 신청서를 해당도 인민위원회 보건부를 경유하여 보건성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약품을 세분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제4조에 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조선 약전 또는 외국 약전에 기재된 약품은 그 용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선약전 또는 ○○국약전
2. 약품명(국문 및 라텐명)
3. 용 량
4. 제조소명 및 소재지

5. 제조 년 월 일

6. 보건성 허가

조선약전 또는 외국 약전에 기재되지 않은 약품은 그 용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항의 1, 2, 3, 4, 5, 6호

2. 성분 또는 조성

3. 용법, 사용량 및 효능

4. 저장법

약품의 포장에는 제조소의 봉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약품의 제제 및 조제 및 판매

제8조 약품의 제제, 조제, 판매 또는 감정은 약국에서 하여야 하며 약국은 약제사 또는 조제사가 아니면 이를 관리할 수 없다.

제9조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인민위원회를 경유하며 보건성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및 위치

2. 개설 예정 년 월 일

3. 약국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4. 관리자의 이력서 및 신분 등록 사본

제10조 전조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변경 승인 신청서를 해당 도인민위원회 보건부를 경유하여 보건성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약국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조합실, 제제실, 약품저장실(냉암실을 포함한다) 및 시험실

2. 별표 제1호에 기재된 약품

3. 별표 제2호의 기재된 기구

4. 극약장, 독약장

5. 극약 수불 대장

제12조 조제는 반드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처방전 기재사항에 불충분한 점 또는 질문되는 점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행자에게 조회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조제한 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그 처방을 명기하여야 하며 조제한 처방전에는 조제 년월일을 기입하고 조제자가 서명 날인하여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약국에서는 약품의 제약, 조제, 판매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장 극약 및 독약

제14조 극약 및 독약의 목적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15조 극약 및 독약은 치료기관 동업자 또는 보건행정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증명된 자 이외에는 판매 또는 증여할 수 없다.

극약 또는 독약을 판매 또는 증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 약품명
2. 수 량
3. 사용의 목적
4. 사용자의 주소, 성명, 직업
5. 년 월 일
6. 서명, 날인

전항의 증명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극약 또는 독약은 각각 극약 수불 대장에 그 출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장의 구입란 및 판매란에는 그 해당자의 주소 성명 및 년 월 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 극약 및 독약은 그 용기에 제7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극약은 백지에 붉은 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 붉은색으로 약품명 및 극자를 쓴 것을 용기에 첨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독약은 흑지에 흰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 흰색으로 약품명 및 독자를 쓴 것을 용기에 첨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약품의 저장

제18조 조선약전 또는 외국약전에 특히 저장법을 규정한 약품은 그에 적합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 극약 및 독약은 보통약과 구별하여 각각 극약장에 독약장에 저장하고 잠을쇠를 잠가

두어야 하며 그 열쇠는 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극약장에는 백지에 붉은 테두리를 하고 극자를 쓴 것을 첨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독약장에는 흑지에 흰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 흰색으로 독자를 쓴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조에 규정한 약품 이외에 공업약품 시약 및 농약등은 별도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야 한다.

제6장 검 사

제21조 각급 보건 행정기관 책임자는 수시로 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경영 책임자로부터 본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경영장소와 약품 및 약품 수불대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각급 보건행정기관 책임자는 무허가약품 변질약품, 불량약품 및 소정의 봉감증이 없는 약품등 부정약품 또는 미상한 약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따로 포장 봉인할 수 있으며 또는 시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당한 분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경영 책임자가 그 사업상 범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보건상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 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경영 책임자가 이유없이 3개월이상 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건상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보 칙

제25조 치료 기관에서 자기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조에 준하여 해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이진료소에 조제실을 두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준하여 해당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조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본 규정 제10조제11조의 제4호 제5호 및 제13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제실에는 조합실과 약품저장실 및 별표 제4호의 약품과 별표 제5호의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건상이 병 남

◇ 「약품에 관한 규정」 일부 추가에 관하여

(1950. 4. 5 보건성규칙 제6호)

「약품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2일 보건성규칙 제2호)중 제27조 다음에 「제28조 가정약에 한하여 보건상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가정약 판매허가를 얻은자도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추가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 건 상 이 병 남

◇ 산원에 관한 규정

(1949. 10. 28 보건성규칙 제9호)

제 1 조 본 규정은 산전 산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적 보호 및 분만에 대한 예방 의학적 방조를 주며 특히 병적 임신분만과 산욕부에 대한 입원치료 및 유산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산원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이병율과 사망을 저하를 위한 사업
2. 여성상담소 간이산원 및 기타 치료기관에서 이송하여 온 분만예정(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1주일전 임부 및 병적 임부에 대한 건강보호와 치료사업
3. 임신부의 분만방조
4. 신생아에 대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대책수립 해당 유아상담소 및 치료기관 책임자에게 신생아 출생 및 건강상태에 대한 연락
5. 임신부의 섭생 및 신생아의 양육에 대한 위생선전
6. 가택방문 간호사업

제 3 조 산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상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원의 명칭 및 위치
2. 설립 기관의 명칭
3. 개설 예정 년 월 일
4. 건물 평면도 대지구조 설명서 및 정원의 평수
5. 임신부 신생아용 의복, 침구 및 침대의 종류와 수량

6. 의료기구 및 약품의 종류와 수량

7. 설립에 관한 예산액과 그의지판 방법

제4조 산원은 도시·농촌·어촌 또는 생산직장에 설치하되 그 명칭은 산원을 설치한 지명 또는 생산직장명을 붙여서 이를 표시한다.

제5조 산원을 폐지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유 폐지 또는 변경예정 기일 그 처리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상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산원은 보건성에서 제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휴게실
2. 접수실
3. 위생통과절차에 관한 시설
4. 진찰실
5. 목욕실
6. 세면장 및 변소
7. 분만실
8. 정상임부실 및 정상산욕부실
9. 병적임부실 및 병적산욕부실
10. 수술실 및 수술준비실
11. 신생아실
12. 시험실
13. 세탁실
14. 건조실
15. 재봉실
16. 취사장
17. 식당
18. 침구 의복 및 식기등의 소독장치

19. 임산부 입퇴원시의 분리된 출입구의 장치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상에 승인을 받아 전항 각호의 시설중 가능한 것은 수개 이를 병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7조 산원은 주위환경이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지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분만할 임부의 입원기간은 산전 산후 각각 일주일로 한다. 그러나 산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분만할 임부가 산원에 입원할 때에는 담당구역 내 여성 상담소 및 국가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부등록증 및 병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원은 분만한 임부가 퇴원할 때에는 병력서의 사본 및 출산증명서를 담당구역 유아 상담소 또는 국가치료기관 의사에게 송부하여 유아를 등록하며 건강에 대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원 원장은 결핵 기타 전염병이 있는 산욕부는 담당치료기관에 이송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원실 조작성은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병적 임신부와 완전히 분류되어야 한다.

제13조 인공유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한 인공유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원은 보건성에서 따로 제정한 임신부 식사표에 의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원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질환의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원은 가정에 있어서 임신부의 보건 및 유아의 건전한 발육에 대한 위생적 습성을 함양하기 위한 선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산원은 간이산원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18조 산원은 담당구역 내 여성상담소 및 국가치료기관에 등록된 임부의 입원 분만을 담당 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원은 따로 보건성에서 제정한 양식에 의하여 산원사업을 월 1차씩 소정한 기한내에 소관한 보건행정기관에 보고하며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산원의 정원은 보건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제21조 산원에는 소아과 의사를 두어야 하며 산원 원장은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침대수 50이하의 산원에는 산과 의사가 소아과 의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 산원의 직원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 인민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산원의 원장 및 의사는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면하며 기타 직원 원장이 이를 임면한다.
2. 시·군·구역 인민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산원의 원장 및 의사는 해당 시·군·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면하며 기타 직원은 원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병원 산과에 이를 준용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 건 상 이 병 남

◇ 마약에 관한 규정

(1949. 11. 2 보건성규칙 제10호)

제1조 본 규정은 마약의 공급관리를 통일적으로 하며 그 수급 및 보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이를 남용함으로써 발행할 수 있는 일체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마약이라함은 다음의 품종을 말한다.

1. 아 편
2. 아편총알카로이드 및 그 염류
3. 모르핀 및 그 염류
4. 모르핀 유도체 및 그 염류
5. 코카인, 코카인염류 및 코카약
6. 에크고닌, 에크고닌유도체 및 그 염류
7. 인도대마초 및 그 수지
8. 상기품종을 포함한 제품
9. 기타 보건상이 지정한 품종

제3조 마약에 대한 공급사업은 보건성의 약품관리처 및 각도(평양시를 포함한다)의 약품관리소에서 이를 집행한다.

제4조 학술연구기관 또는 개인약국 및 개인치료기관에서 소요되는 마약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양도신청서 및 해당 보건행정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의약품 공급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그의 양도를 받아야 한다.

1. 약명 및 그 수량
2. 사용의 목적
3. 신청 년월일
4. 신청자의 주소 직업 및 그의 서명날인

제5조 의약품 공급관리기관 의약품생산관리기관 및 보건상이 이에 준한다고 인증하는 기관 상호간에 또는 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을 수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마약을 제조 판매 소비 또는 보유하는 자는 마약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다음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납 년월일
2. 약 명

3. 제조번호 수입번호 또는 세분번호
4. 수납 수량
5. 양도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6. 출고 또는 소비 년월일
7. 출고 또는 소비수량
8. 양수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9. 현재 보유수량

제7조 마약의 용기에는 「약품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2일 보건성규칙 제2호)(이하 약품에 관한 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제7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기재사항외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조번호 수입번호 또는 세분번호
2. 마

제8조 마약은 「약품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준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극약 또는 독약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9조 마약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건 상 이 병 남

◇ 대학병원에 관한 규정

(1950. 1. 19 보건성규칙 제1호)

제1조 대학병원은 의과대학 임상강좌를 위한 교육기반이며 치료 및 학술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치료기관이다.

제2조 대학병원의 설립 지정 또는 폐지는 보건상이 결정한다.

제3조 보건상은 대학병원시설이 임상강좌의 교수사업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그 지역 내에서 권위있는 국가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교수치료 및 학술연구사업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병원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임상강좌에 필요한 해당과만을 대학임상학과로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는 보건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2개이상 대학의 임상강좌를 위한 교육기반으로 될 수 없다.

제5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학과는 의과대학의 교수사업을 위한 부속진료소 또는 종합진료소를 가져야 한다.

제6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를 전염병 환자의 수용 또는 기타 교수학술연구 및 치료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은 의과대학 학장의 합의를 얻은 후 보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학과 내에서 교수 및 학술 연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의과대학 학장이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과 합의하여 작성하며 대학 병원의 일반 내부 규정은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이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 직원의 휴가는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과 의과대학의 합의로써 조직하되 휴가 조직은 교수사업 및 치료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에서 진행하는 대학생들의 수업은 병원근무개시 시간과 같이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에 근무하는 의과대학 소속직원으로서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대학병원장 또는 임상학과가 있는 병원장이 내부 규정에 의하여 주는 처벌을 의과대학 학장이 감면하지 못한다.

제11조 대학병원은 보건성예산으로 운영하며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은 보건성 또는 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인민위원회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12조 교수 및 학술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에 대한 경비는 의과대학 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에 있어서 각 강좌에 속한 교수사업이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은 의과대학의 재산으로하되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은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은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일체를 관리하여 해당 의과대학의 예산중에서 교수 및 학술연구사업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은 병원의 해당부문에 사용하되 해당 의과대학 학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에서 치료사업을 담당한 대학의 교직원 및 그 보조 일꾼에 대한 봉급은 의과대학 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의 기구 및 정원은 보건성이 따로 정한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의 직원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성 관할의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은 보건성이 임면한다.

2. 도인민위원회 관할의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의 직원임면은 다음과 같다.

3. 대학병원의 각 과장 및 대학임상과장은 보건상이 임면한다.

4. 대학병원 및 대학임상과의 기타 치료의사는 해당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이 임면한다.

제18조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은 병원을 관리운영하여 각 임상강좌의 학술연구 및 교수사업에 필요한 제조건을 지워주어야 한다.

제19조 의과대학의 각 임상강좌장은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에 있어서는 해당 의과과장으로서는 치료사업 학술연구사업 및 과내 모든 사업을 담당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상 대학병원장 또는 대학임상과가 있는 병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각 임상강좌장은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의 해당과 침대수의 20%이내에서 교수 및 학술연구사업을 위한 환자를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에 부속된 진료소 또는 종합진료소를 통하여 수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대학병원 또는 대학임상과의 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치료의사는 치료사업병원의 속직, 당직사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수 부교수는 병원의 속직, 당직사업에서 면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 건 상 이 병 남

제 3 절 방 역, 예 방

◇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1949. 5. 21 내각결정 제59호)

제 1 조 위생검열원은 인민의 건강을 보존하며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향상시키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공중집합소, 공원, 상·하수도 접객업처, 상점, 주택, 묘지, 철도, 공장, 광산, 제조소(製造所), 기타 기업소등의 시설의 위생적 조건과 생활환경을 일상적으로 검열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건성에 국가 위생검열원을 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인민위원회 보건부에 도 위생검열원을 부설하며 시, 군인민위원회 보건과에 시, 군 위생검열원을 배치한다.

교통성 보건처에 교통 위생검열원을 설치하며 교통성 철도국 보건과에 교통 위생검열원을 배치한다.

제 3 조 국가 위생검열원 및 각 위생검열원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 1명

식료 위생검열원 2명

학교 위생검열원 2명

산업 위생검열원 2명

환경 위생검열원 2명

위생검열원중 1명은 책임 위생검열원으로 한다.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은 보건부장이 이를 겸임한다.

2. 도 위생검열원

원장 1명

식료 위생검열원 1명

산업 위생검열원 1명

학교 및 환경 위생검열원 1명

도 위생검열원 원장은 도인민위원회 보건부 부부장이 이를 겸임한다.

3. 시, 군 위생검열원 1명

4. 교통 위생검열원

원장 1명

교통 위생검열원 2명

5. 철도국 교통 위생검열원 1명

제 4 조 국가 위생검열원의 각 국가 위생검열원 도 위생검열원 원장 등 각 위생검열원 및 시, 군 위생검열원은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이 이를 임면한다.

교통 위생검열원 원장 등 교통 위생검열원 및 철도국 교통 위생검열원은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통상이 이를 임면한다.

제 5 조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 등 위생검열원 각 위생검열원 원장 및 검열원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한한다.

제 6 조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 지역의 위생검열원에 관한 일체 사업을 통할하며 국가 위생검열원은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집행한다.

제 7 조 도 위생검열원 원장은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소관사무를 집행하며 시, 군 위생검열원은 해당 도 위생검열원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집행한다.

교통 위생검열원 원장은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관할 내에서 소관사무를 집행하며 교통 위생검열원 및 철도국 교통 위생검열원은 교통 위생검열원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집행한다.

제 8 조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 등 위생검열원 각 위생검열원 원장 및 위생검열원의 임무집행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위생법규 및 명령에 위반한 기관책임자 또는 개인 경영자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과태금(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은 2,000원 이하, 도 위생검열원 원장 및 교통 위생검열원 원장은 1,000원 이하, 시, 군 위생검열원 및 철도국 교통 위생검열원은 500원 이하)에 처하며 2개월 이내의 운영 및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국가기업소내의 운영정지에 대한 명령은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정상이 중할 때에는 법적 수속을 밟아 이를 처단한다. 다만 청소위반에 대하여는 내무기관에서 이를 취급한다.

제 9 조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 및 등 위생검열원 각 위생검열원 원장 및 위생검열원은 임무집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비 위생적인 식료품 기구 기타 물품의 매매 및 접수행위등의 금지 또는 이에 대한 적당한 처분
2. 검사용 목적으로 필요한 분량의 물품 또는 자료의 무상반출, 그러나 경우에 있어서 소요 운반책임은 기업주가 부담하여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열결과에 의한 개선방법 및 처분에 대한 명령서의 발급
4. 기술자 또는 검열기관에 대한 필요사항의 위촉

5. 내무기관에 대한 협조의 요청

6. 검열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서면 또는 영업시간내에 있어서의 수시로 되는 검열

7. 기업소 상점 및接客업소의 책임자에 대하여 위생시설의 지도 검열에 관한 일체 자료의 제출

제10조 과태금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수입인지로써 해당 위생검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문서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상급 위생검열기관에 항의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의장에 대한 상급 위생검열기관의 명령은 최종 결정으로 되며 항의는 1회에 한한다.

그러나 국가 위생검열원 원장의 명령에는 항의할 수 없다.

부 칙

「위생검열원 규정」(1948년 2월 4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112호) 이를 폐지한다.

1949. 5. 2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59호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별지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보건상은 각 위생검열원에게 정치, 교양 및 위생법규에 관한 단기 강습회를 조직하여 위생검열사업의 정확한 실시를 기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 일 성

보 건 상 이 병 남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49. 12. 30 보건성규칙 제1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각 위생검열원은 소관구역내에 한하여 각기 다음의 사항을 검열지도한다.

1. 산업위생검열원

(1) 공장, 광산, 기업소 및 그 부속건물의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 노동보호시설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3) 직업성질환 및 재해의 조사연구와 그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부문 종업원들의 일반위생에 관한 사항

2. 학교위생검열원

(1) 설비위생에 관한 사항

(2) 교수위생에 관한 사항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4) 체육운동의 위생에 관한 사항

(5) 허약자의 양호에 관한 사항

3. 식료위생검열원

(1) 주류, 청량음료, 수조육, 어개, 우류, 통조림, 과자, 실과, 채소등 일체 식료품 및 그 제품등의 수수(授受) 저장 또는 운반에 관한 사항

(2) 식료품에 대한 규격 및 영양가에 관한 사항

(3) 식료품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처치에 관한 사항

(4) 유해식료품 유해기구의 검색 및 처치에 관한 사항

(5) 식당, 음식점, 식료품의 제조장, 판매장, 저장창고 및 도수장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 검열원

(1) 상수도, 하수도, 시가지, 주택, 상점, 이발관, 미장원, 영화관, 극장, 공중집합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정양소, 휴양소, 여관, 합숙소, 목욕탕, 시장, 공동변소, 묘지, 화장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위생검열원 사업에 속하지 않는 위생에 관한 사항

5. 교통위생 검열원

(1) 철도, 전차, 자동차, 선박 및 기타 교통기관의 부속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

(2) 재해방지 및 구급시설에 관한 사항

제2조 공장, 기업소, 학교, 상수도, 하수도(국가시설에 한함), 식당, 음식점, 식료품창고, 여관, 영화관 및 극장, 이발관, 미장원, 목욕탕, 시장, 묘지, 화장장, 공동변소, 정거장, 기관구 및 교통기관, 부속공장등의 신축, 개축, 개수, 이전 또는 신설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위생적 조건에 대하여 소관 위생검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본 세칙에 규정된 기관과 시설 및 그의 상호간의 거리는 기설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 위생검열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동할 수 있다.

제4조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및 본 세칙의 제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은 그 책임자 또는 개인 경영자가 진다.

그러나 위반한 내용과 정형에 따라서는 각개 부문별 책임자 또는 개인 종업원이 책임진다.

제5조 제2조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책임자 및 개인경영자는 위생검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생검열원은 치료 및 예방기관, 과학연구기관 기타 일체 시험실 및 기술자에 대하여 위생검열상 요구되는 특수한 조사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생검열원은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및 본 시행세칙 이외의 일체위생에 관한 법규 및 결정의 집행을 요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생검열원은 임무를 집행하려고 할때 반드시 위생 검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 위생

제9조 공장은 주택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대에 건설하여야 하며 그 유해정도에 따라 주택구역과의 사이에 각각 다음과 같은 거리의 보호지대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유해가스 및 유해매연이 발생하는 공장 1,000메트르이상
2. 유해분진이 발생하는 공장 500메트르이상
3. 소음진동이 심한 공장 300메트르이상
4. 피혁공장 및 유독물이 유출하는 공장 500메트르이상
5. 기타공장 100메트르이상

그러나 생산기술의 개선으로 그 유해정도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소관 위생검열원의 승인을 얻어 그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제10조 보호지대에는 창고, 차고, 영선부문의 건물등 위생상 무해한 공장 부속 건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장의 기지는 건조하고 지표로부터 3m이내에 지하수가 없어야 하며 충분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장건물의 기초면적은 전체기지면적의 10분의 6을 초과치 않아야 한다.

제13조 공장작업실 및 광산의 통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작업실의 통로는 1메트르이상으로 할것
2. 작업실의 바닥은 평탄하고 습기가 없어야 하며 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배수구를 시설할 것
3. 주항도(主抗道)에는 그 일측에 잔도(棧道)를 시설할 것
5. 항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제14조 공장건물의 채광창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창면적은 바닥면적에 대하여 정밀 작업장에서는 5분의1 이상으로 보통작업장에서는 7분의1 이상으로 창고에서는 10분의1 이상으로 할것
2. 창을 한편에만 설치할 때에는 방바닥으로부터 창 상단까지의 높이는 창과 그 대측벽간의 거리의 2분의1 이상 양편에 설치할 때에는 그 4분의1 이상으로 할 것

3. 입사각은 28도이상 개각(開角)은 5도이상으로 할것

제15조 공장 및 광산의 인공조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원(光源)은 시선에서 25도이내의 시야에 두지말며 흔들리지 않게 할것
2. 조명의 균일성을 보장할것
3. 향내용 이동조명기의 광도는 1축광 이상으로 할것
4. 작업장 및 기타의 조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

제16조 공장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작업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2m^2$ 이상 1인당 기적은 $10m^3$ 이상으로 하고 1시간의 환기는 1인당 보통작업장에서는 $30m^3$ 이상 고열 고습 및 유해성의 가스 증기 분진등이 있는 비위생적 작업장에서는 $100m^3$ 이상으로 할것
2. 환기창면적은 보통작업장에서는 바닥면적의 16분지1 이상 비위생적 작업장에서는 그의 6분지1 이상으로 할것
3. 실내기류속도는 동기에는 $1.25m/Sec$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7조 공장에서 인공환기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공기는 신선하며 유해성가스 증기 및 분진이 혼입치 않게 할것
2. 송기관개구부는 방바닥으로부터 $2.5m$ 이상에 둘것
3. 배기구는 주요도로 또는 타작업장에 영향이 미치는 곳에 둘것

제18조 향내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향내 환기량은 가스발생이 없는 곳에서는 1인당 1분간 $1m^3$ 이상으로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는 $3m^3$ 이상으로 하되 산소 20%이상 탄산가스 1%이하 가연성가스 2%이하 산화질소 $0.005mg/l$ 이하 유화수소 $0.01mg/l$ 이하 비화수소 $0.0003mg/l$ 이하가 되도록 할것
2. 향내의 기류속도는 $7m/Sec$ 를 초과하지 않을것

제19조 일정한 작업장소에 소요되는 환기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내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입기도와 배기도를 따로히 할것
2. 입기도에서 주맥과 지맥의 분기점에는 통기량을 조절하는 분별을 설치할것
3. 입기도와 배기도간의 향도에는 풍문을 설치할것
4. 유해가스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맹단으로 된 작업장에는 이동식 국부환기장치를 할것

제20조 고온작업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구한난계시도 섭씨35도를 초과치 않을것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2. 건구한난계시도 섭씨30도 이상되는 작업장에서는 1시간이상의 계속작업을 금지하며 일

련작업간에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둘것

3. 용광로 배소로 가열로등 계속적으로 고열을 발생하는 장소, 가열한 액체 및 고체를 직접 취급하는 장소, 가스 증기 기타 발열물로 인하여 건구한난계시도 섭씨30도를 초과하는 장소 등에는 환기장치, 국부청량장치, 방열장치등을 할것

제21조 저온작업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구한난계시도 섭씨 영하15도 이하되는 작업장에서는 적당한 방한구를 사용할것
2. 건구한난계시도 섭씨 영하30도 이하되는 작업장에는 난방장치가 있는 휴게실을 설치할 것
3. 건구한난계시도 섭씨 영하 40도를 초과하지 않을것

제22조 작업장의 습도는 습구한난계시도 27도를 초과치 않아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23조 고압작업에서는 적용압 1기압 이상일 때에는 1회 4시간, 1.5기압이상일 때에는 1회 3시간, 2기압 이상일 때에는 1회 2시간 이상 재함할 수 없다.

제24조 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할 때에는 음향이 건물 기타에 직접 전도되지 않게 기계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방음피복 또는 소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기 1m³중에 규산(硅酸)을 함유하지 않은 분진이 15mg 70%이상의 계산을 함유한 분진이 4mg을 초과하는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를 격리하거나 또는 방진장치를 할것
2. 충분한 환기장치를 할것
3. 종업원은 「방진마스크」를 사용케 할것

제26조 유해광선이 방사되는 작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사용케 하여야 한다.

1. 자외선 적외선 및 강한 가시광선에 대하여서는 보호 안경을 사용케 할것
2. 「렌트겐」선에 대하여서는 연판앞치마를 사용케 할것

제27조 유해성의 가스 및 증기가 용인한계농도를 초과하거나 유독물질을 직접취급하는 작업 장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유독물의 저장조, 반응조, 용해조 및 도관등은 유독물이 유출 또는 방산치 않도록 할것
2. 충분한 환기시설을 할것
3. 유해물이 일국부에서 발생할 때에는 국부배기장치를 할것
4. 종업원에게는 유해물질의 성질에 따라 「방독마스크」 「방독작업복」 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화등을 사용케 할것

제28조 작업장의 공기 1ℓ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농도는 다음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아크로페인	0.002(단위mg)
2. 암모니아	0.02
3. 아세톤	0.3
4. 아니린 토루이진 크시라민	0.005
5. 벤지진 디아닌진(알화) 및 (베타)나푸틸아민	0.001
6. 벤졸 톨을 카시롤 솔벤트 나프타 I 및 II	0.1
7. 벤진 리그로인	0.3
8. 비소 및 그 화합물	0.0003
9. 비화수소	0.0003
10. 망강 및 그 화합물	0.0003
11. 벤졸의 「니트로」화합물	0.005
12. 벤졸의 디니트로 및 트리니트로 화합물	0.002
13. 벤졸의 니트로 및 디니트로 크로 화합물	0.001
14. 아밀알콜	0.001
15. 오기시에치렌	0.001
16. 일산화탄소	0.02
17. 질소화합물	0.005
18. 수 은	0.00001
19. 연 및 그 무기화합물	0.00001
20. 테레빈유	0.3
21. 아류산가스	0.02
22. 유화수소	0.01
23. 이유화탄소	0.01
24. 유산 및 무수아류산	0.003
25. 메틸 알콜	0.05
26. 에틸 알콜	0.1
27. 부틸 알콜	0.01
28. 휘 놀	0.005
29. 포름알데히드	0.005
30. 호 스 겐	0.0001
31. 불화수소	0.001

32. 에틸에텔	0.3
33. 프로필초산	0.2
34. 부틸초산	0.2
35. 아밀초산	0.1
36. 에틸초산	0.2
37. 메틸초산	0.1
38. 크 룰	0.001
39. 불 화 염	0.001
40. 염화수소 및 염산	0.01
41. 크롤화 탄산수소	0.15
42. 무수크롬산 크롬염 중크롬염	0.0001
43. 치안수소	0.0001

제29조 작업장에서는 목욕장을 설치하되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유해직장과 분진이 심히 발산하는 작업장에는 전용목욕장을 설치할것
2. 탈의실 및 욕실을 각각 별실로 할것
3. 고습 직장에서는 의복 건조장치를 부설할것

제30조 작업장에는 휴게실 및 식당을 설치하되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 100m이내에 설치할것
2. 직장유해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할것
3.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할것
4. 물 끓이는 장치를 할것
5. 휴게실과 식당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겸용하지 않을것

제31조 고온, 고습 또는 유해성가스, 증기, 분진이 발산하거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갱의실을 설치하고 전 작업인원에 해당한 수의 갱이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의 변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변소는 작업장에서 50m이내에 설치할것
2. 변소는 남녀별로 따로 설치하되 대변간의 수는 남자 50명에 1칸 여자 30명에 1칸에 비례로 설치할것
3. 출입구에는 손씻는 장치를 할것

제33조 향내에는 현장별로 이동식변소를 설치하고 매일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제34조 작업장에는 음료용 수도를 시설하여야 하며 수도가 없을 때에는 1일 1인당 3ℓ 이상의 비레로 음료에 적합한 정수를 공급하되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뚜껑과 급수전이 있는 수통을 사용할것
2. 음수기는 청결한 곳에 보관할것
3. 수통 및 음수기는 매일 깨끗이 소독할것
4. 수통에는 매일 새물을 갈아 넣을것

제35조 작업장에는 구급처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제, 붕대, 요도탱크, 마키롬액, 과산화수소수, 알콜, 요도호름, 멸균오, 가제오레브유 또는 멸균진유, 지혈대, 부목, 면봉, 핀셋트, 전도, 의자, 탁자, 침대등

제36조 공장 및 광산에서 폐기하는 유해물은 보건상 해독을 끼치지 않도록 소독 또는 제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장, 광산 및 기업소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온도, 습도, 풍속, 조명, 소음, 분진 및 개스농도를 수시로 측정할것
2. 항내의 환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환기계통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환기량을 측정할것
3. 유해작업에 사용되는 개인보호구의 성능을 수시로 검사할것
4. 검사 및 측정년월일, 부서 및 그의 성명을 기입한 성적표를 비치할 것
5. 매월 1회이상 전 작업장의 대청소를 실시할것

제38조 소년노동자에게 중량물 운반작업을 시킬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 형	운 반 방 법	성 별	년 령	최 고 운 반 물 중 량(kg)
	전혀 손으로 할때	남자	15세까지	6
	"	여자	"	5
	"	남자	16세까지	10
	"	여자	"	8
	"	남자	17세까지	16
	"	여자	"	13
	"	남자	18세까지	23
	"	여자	"	16
경사 0.01이하	레드위에서 소형차로 이송할때	남자	16세부터 18세까지	400
"	"	여자	"	300

지 형	운 반 방 법	성 별	년 령	최 고 운 반 물 중 량(kg)
평 활 한 지 면 에 서 경 사 0.02 이 하	손 으 로 미 는 일 료 차 로 이 송 할 때	남 자	"	40
"	"	여 자	"	금 지
"	손 으 로 미 는 이 료 차 로 이 송 할 때	남 자	"	90
"	"	여 자	"	금 지
"	손 으 로 미 는 3~4 료 차 로 이 송 할 때	남 자	"	100
"	"	여 자	"	50

(경사라 함은 경사거리에 대한 수직고의 비율을 말한다)

제39조 18세이상의 부녀노동자에게 중량물 운반작업을 시킬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치 않아야 한다.

1. 운반도구없이 도수로 할때 중량 20kg
2. 손으로 미는 일륜차를 사용할때 50kg 경사 0.02이내
손으로 미는 이륜차 내지 4륜차를 사용할때 100kg로면이, 평활할 때에는 경사 0.02노면
이, 평활치 않을 때에는 경사 0.01이내
4. 케도위에는 운반차를 사용할때 600kg

제40조 임신 4개월이상의 부녀노동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15kg이상의 중량을 계속운반하는 작업
2. 상시로 보행 또는 서서하는 작업

제41조 여자 및 소년 노동자를 야간노동 또는 유해직장에 취업시키려고 할 때에는 위생검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여자종업원이 있는 직장에는 여자위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여자노동자 50명이상이 있을 때에는 탁아소를, 그 이하일 때에는 급유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학 교 위 생

제44조 학교기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토질의 습기가 적고 배수가 용이하며 고조한 곳일것
2. 유해한 가스, 매연, 진애, 소음을 발생하는 공장과 질병의 매개 또는 전염의 위험이 있는

전염병원, 목장, 기타 위생상 유해한 장소에서 500m이상의 거리를 가질것

3. 상수도 및 음용에 적당한 정수의 시설이 가능할 것
4. 학교지의 주위 및 내부에 배수시설을 할것
5. 인민학교에 있어서는 1인당 5m²이상의 운동장을 가져야 하되 그의 최소한도의 총면적이 4,000m²를 넘도록 할것

제45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보통교실의 길이는 8m내지 9m 넓이는 6m내지 7m 높이는 3.5m내지 4m로 할것
2. 각교실에는 2개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것
3. 복도는 반드시 교실의 한쪽에 설치하되 그 넓이는 2m이상으로 할것
4. 승강구에는 청식장치와 배수구를 설치할것
5. 계단의 경사는 35도 이하로 할것
6. 채광창은 좌석원편에 설치하되 그의 총면적은 바닥면적의 5분의 1이상이 되며 직사광선과 섬광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를 할것
입사각을 28도이상으로 할것
7. 환기창은 채광창의 상부 및 천정의 일부에 설치하되 바닥면적의 40분의 1이상이 되며 각창의 크기는 0.5m² 이상으로 할것
8. 학생들의 1인당면적은 1.5m²이상 1인당기적은 4m²이상으로 할것
실내공기중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0.1%를 초과치 않을 것
9. 야간교수를 하는 학교에서는 보통교실내의 조명도를 「50룩스」이상으로 할것
10. 실온은 동절에 있어서는 섭씨 15도내지 20도, 하절에 있어서는 외기온도보다 섭씨5도를 초과치 않도록 할것 난방은 전기, 증기 및 공기를 이용하는 장치와 난로를 사용하되 화로는 사용하지 말것

제46조 위생실(보건실)에는 책상, 의자 및 침대등의 비품과 구급용 약품 및 위생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 변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세장치가 없는 변소는 교실에서 8m이상 상거된 변동으로 하며 복도로서 연결할것
2. 대변간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남자는 40명에 1간, 여자는 20명에 1간의 비례로 하며 소변간(또는 소변대)는 40명에 1간씩 사용케 할것

제48조 기숙사 침실과 식당이 별실로 구분되며 난방환기 채광 및 조명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49조 음료수는 제5장 제1절 제154조에 준한다.

제50조 책상과 의자는 2인용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 책상의 상면은 12도내지 15도의 경사를 가져야 한다.

제52조 책상 및 의자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책상 및 의자의 기준표

호수 교구	1	2	3	4	5	6	7	8	9
적용의자	11cm	111cm~	118cm~	125cm~	132cm~	139cm~	146cm~	153cm~	160cm
표준신장	이하	117cm	124cm	131cm	138cm	145cm	152cm	159cm	이상
책상높이	48.8	51.5	54.5	58.0	61.0	64.5	67.5	71.5	14.0
책상폭	36.0	36.0	38.0	38.0	38.0	40.0	40.0	40.0	40.0
책상길이	55.0	55.0	55.0	55.0	55.0	60.0	60.0	60.0	60.0
서가의거리	13.0	13.0	14.5	14.5	14.5	16.0	16.0	18.0	18.0
의자높이	26.0	28.0	30.5	32.5	34.5	36.5	38.5	41.0	43.0
의자폭	26.0	28.0	30.0	32.0	34.0	36.0	36.0	38.0	38.0
의자길이	32.0	32.0	34.0	34.0	34.0	36.0	36.0	38.0	38.0
의고의높이	30.0	30.0	30.0	35.0	35.0	35.0	45.0	45.0	45.0

제53조 칠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색깔은 순흑색 또는 암록색으로 할것
2. 칠판에서 오돌(凹凸)과 섬광이 없도록 할것
3. 칠판 지우개는 분필가루를 잘 흡수하는 것을 사용할것
4. 칠판과 학생들과의 거리는 2.5m이상 9m이하로 할것

제54조 교과용 도서에 있어서 인민학교는 4호이상 초급중학교는 5호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에 있어서는 45분 초급중학교에 있어서는 50분을 초과치 않아야 한다.

인민학교에 있어서 휴게시간은 5분이상으로 하되 총휴게시간이 매시간당 10분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수업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학년에는 40분이상의 점심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57조 수업시간중 학생들의 탈화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건물의 구조 또는 기타 특수조건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 학교장은 일상적으로 다음 사항의 실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수업중에 학생들이 바른자세를 가지게 하며 서면과 안구간의 거리는 30cm내지 35cm로 할것
 2. 학생들의 신체 특히 피부, 머리, 구강, 손과 의복을 깨끗이 하도록 할것
 3. 휴게시간에는 교실의 전창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할것
- 제59조 학교의는 학생위생에 대한 지도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60조 간호원은 학교의를 방조하며 학교위생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도포 세안(洗眼) 및 간이한 구급치리를 하여야 한다.
- 제61조 입학 또는 전학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건강에 대한 국가기관의사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전향의 건강에 대한 의사의 증명은 교직원의 취임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62조 매학기의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3조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중두 및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4조 매년 1회 내지 2회씩 학생들의 회충, 촌충 및 십이지장충등의 장내기생충의 기생상태를 조사하며 그의 구제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5조 「도라코마」 전염성피부병 {개선, 백선, 완선, 농포진} 및 악취가 있는 분필물을 배설하는자는 좌석을 격리하거나 또는 취학을 유예하여야 한다.
- 제66조 학생 및 교직원중에 개방성폐결핵 또는 「레푸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의 교수 및 취학을 중지시켜야 하며 타인에 만연되지 않도록 처치하여야 한다.
- 제67조 학교장은 지정전염병환장(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티프테리아, 홍역, 백일해, 유행성뇌염, 유행성뇌척수막염, 천연두, 성홍열, 소아척수마비, 코레라, 페스트, 적리, 재귀열, 유행성이하선염, 마제우스, 안트락스 및 그의 유사증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격리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곧 소관보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8조 지정전염병환자 및 그의 동거자를 취학시키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의사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제69조 매일 1회이상 학교내외를 청소하며 매주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0조 허약 또는 일정한 운동에 부적당하다는 국가기관 의사의 증명이 있는자에게는 체육운동의 실시를 면제하여야 한다.
- 제73조 체조교실 기타 실내에서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실내의 환기조명 및 온도등의 위생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74조 학교장은 허약자 명부를 비치하고 그에 대하여 매월 1회씩 학교의 또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식료 위생

제1절 식료품위생

제75조 식료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 수조육, 어개류, 란유, 우유, 통조림, 과자, 건면곡물, 채소, 과일, 조미료, 주류 및 청량음료등 일체 식용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76조 식료품제조장, 식료품저장장 및 식료품취급장은 바닥이 건조하고 곤충 또는 서족들의 침해를 방지할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청량음료, 식초, 통조림, 주류 및 유제품등을 제조 판매하려는 자는 국가위생검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제품에는 제조년월일 및 제조소의 소재지를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제78조 식료품을 운반할 때에는 불결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은 뚜껑 또는 포류로 씌울것
2. 완성품은 견고하고 청결한 용기에 넣을것
3. 운반용구 및 피포는 수시로 소독할것
4. 식료품을 오염시킬 일체행위를 하지 말것

제79조 식료품을 취급하는 자에게는 제4장 제2절 제128조 제129조를 준용한다.

1. 완성된 식료품은 청결한 용기에 보관하고 뚜껑 또는 마개를 할 것이며 그를 옮길때에는 수저등의 기구를 사용할것
2. 음식물의 진열대는 수시 열탕으로 깨끗이 씻을것

제81조 식료품이 변질, 부패 또는 병원균 및 유독물에 오염되었을 때에는 그를 판매할 수 없다.

제82조 식료품을 제조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부제 및 그의 화합물을 사용할 수 없다.

붕산, 아류산, 차아류산, 아질산, 의산, 안식향산, 살철산, 포름알데히트, 나후도루, 치모루, 레졸핑, 하노조루, 후루오루수소승홍

제83조 식료품에는 다음과 같은 유해착색료 및 그의 화합물을 사용할 수 없다.

비소, 바류르, 가도미늄, 크로무, 동, 수은, 주석, 안치모늄, 아연, 등황, 디니트로그레졸, 미크린산, 고라린, 토리늄

제84조 식료품에 사카린 및 그의 유사품을 인공감미질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를 포기하여

야 한다.

제85조 소, 도야지, 양, 말 등의 가축과 야수의 육류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류별(소, 돼지, 양, 말)로 정육 지육별로 각각 별개의 판매대를 사용할것
2. 하절에는 냉장시설을 할것

제86조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는 육류는 판매 또는 수수할 수 없다.

1. 도수(屠獸)로써 수의의 검인이 없는것
2. 중독 또는 전염성질병, 유역, 탄저, 전염성홍막, 폐염, 두창, 황달, 방사장균병, 기종저, 적리, 농독증 및 패혈증, 티프스, 페스트, 우노마, 안트락스 등에 걸린 수조육류
3. 검육(檢肉)중 「암모니아」 0.02% 이상 또는 유화수소 「푸토마인」 등이 검출되는것

제87조 어개류의 취급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선류는 배수장치가 있는 불산화철판, 목판, 세멘트등의 대(台)위에 진열할것
2. 하절에는 냉장시설 또는 어름을 사용할것
3. 내장 및 기타 불결물은 소독한후 처치할것
4. 유독한 어류는 그의 독있는 곳을 제거할것

제88조 어개류로서 제86조 제 3 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를 판매 또는 수수할 수 없다.

제89조 어란(魚卵)이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1. 담즙과 같이 고미(苦味)가 있는것
2. 「알카리 반응」이 있는것
3. 담백, 지방 및 전분을 혼입할것

제90조 조란(鳥卵)이 부화 또는 변질, 부패된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제91조 통조림 용관은 공기의 유통할 간격이 없어야 한다.

제92조 통조림 용관은 불산화철판 제품을 사용하되 5% 이상의 연을 함유한 합금으로 랍착할 수 없다.

제93조 주류라 함은 소주, 맥주, 청주, 탁주, 포도주, 양주 등의 「에틸알콜」을 함유한 음료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1. 혼탁 및 침전물이 있는것

그러나 탁주는 예외로 하며 맥주에 있어서는 완전히 청등(淸澄)치 않을 때에도 그 원인이 담백질(구루진), 호정(糊精), 호푸, 수지, 식출, 효모 {효모로서 혼탁한 맥주는 48% 이상의 발효도를 가진때에 한함} 에 기인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불쾌한 추미, 광미, 산미가 있는것
3. 메틸알콜을 함유한것

4. 후제류유 0.3% 이상을 함유한것
5. 알데히드 함유량이 음료에 부적당한것
6. 유산이 0.092% 이상 함유한것
7. 아류산총량이 원주 1ℓ 중 200mg 이상 함유한것
8. 유리청산이 0.004 이상 함유한것
9. 부패균 또는 유해균이 있는것
10. 동, 연 기타 유해 금속을 함유한것
11. 총산량이 다음량 이상 함유된것
 - (1) 청주 및 탁주의 총산량 호백산 0.2g
 - (2) 맥주의 총산량 유산 0.27g
 - (3) 포도주의 주석산 0.8g

제94조 청량음료라 함은 탄산을 함유한 음료수, 박하수, 계피수, 과일즙, 과일밀 등으로 만든 음료수, 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산성음료수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1. 혼탁 또는 침전이 있는 것
2. 험잡물이 함유한 것
3. 염산, 질산, 유산등의 광산을 함유한 것
4. 유해성방향질(有害性芳香質)을 함유한 것

제95조 식초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판매할 수 없다.

1. 초산 함유량이 4%를 초과한것
2. 알데히트 함유량이 음료에 부적당한 것
3. 유해금속, 테루성분, 유리광산, 기타 유독물을 함유한것
4. 침전물이 있으며 청등치 않는 것

제96조 간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1. 고미 또는 산미가 있는 것
2. 붕산, 베다나후호루, 후루아쿠리루, 살질산등의 방부제를 사용한것
3. 유해곤충 및 그의 유충이 발생한 것

제97조 된장, 고추장은 전 제96조를 준용한다.

제98조 당과류의 원료분류(粉類)란(卵)지방배분(炫粉)은 불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99조 당과류를 제조할때 「니트로벤졸」 또는 청산을 함유한 고편도유(苦扁桃油)와 「자포니」를 함유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00조 전유(全乳)는 신선하고 산도가 4도이하가 되어야 하며 다른물질의 혼입 또는 이차

잡미(異臭雜味)가 없어야 한다.

제101조 우유의 비중과 지방량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비 중:진 유	섭씨 15도에서	1.028-1.034
탈지유	" "	1.032-1.038
지방량:진 유	" "	2.7% 이상
탈지유	" "	0.5% 이상

제102조 우유의 냉각은 빙고, 빙괴 또는 섭씨 7도이하의 정수를 사용하되 반드시 착유한 후 30분 이내에 섭씨 8도이하로 저하시켜야 한다.

제103조 착유할때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는 미온수를 사용하며 솔로 닦은 후 섭씨 50도 이하의 증조수 2% 또 초회수 물 100ℓ 초회 1kg으로 씻어야 하며 그 후 크로루수(1%)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104조 유제품공장 및 우유취급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유취급자는 접수후 30분 이내에 맛과 냄새를 검사할것
2. 신구유를 혼합하지 않을것
3. 수시로 세균, 산도 또는 증조등의 혼합유무를 검사할것
4. 전용수도나 전용우물을 가질것
5. 영업이 필한후는 열탕으로 우유취급장소의 바닥을 씻고 벽하단과 배수구를 「크로루칼 키」로 소독할것

제105조 다음에 해당되는 우유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산독(産讀)후 1주일 이내의 우유
2. 안트락스, 칼봉겔, 광견병, 페스트, 전염성황달, 결핵, 방사장균병, 우노마등의 병우에서 짠것
3. 우유중에 이행할 우려가 있는 극독약을 먹인 우유에서 짠것
4. 부르질로스(波狀熱)에 걸린 염소의 유즙

제106조 다음에 해당되는 우유는 각각 별기에 저장하여야 하며 각기 아래와 같은 처치를 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진단이 확정치 못한때에는 섭씨 65도에 30분간 가열 소독을 한후 식료에 제공할것
2. 「트벨크링」반응이 있는 우유의 유즙은 섭씨 65도에 30분간 가열 소독을 한후 「치즈, 빵다, 아이스크림」제조용으로 제조할것
3. 부르질로스(波狀熱)에 걸릴 우려가 있는 염소의 유즙은 섭씨 70도에 30분간 가열 소독을 한후 사용할 수 있되 「치즈」를 제조할때에는 염수(2%)를 혼입하여 사용할 것
4. 알수병(動物性口腔炎)에 걸린 우유에서 짠 우유는 80도에 30분간 가열 소독하여 사용할

것

제107조 분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온탕에 완전히 용해되며 그 용액은 장시간 방치하여도 불용성물질이 석출되지 않는 것
2. 용액(분유 12.5g 물 87.5cm³)은 냉온에 의하여 맛이 변치 않을 것
3. 수분량을 4%로 초과치 않을 것
4. 지방량이 25%이상 될 것
5. 사탕의 가입 유무, 탈지유 또는 탈지유와 전유와의 혼합물로 제조한 것 등을 명시할 것
6. 산도는 7.5도를 초과치 않을 것
7. 「가다라제」를 함유치 않을 것

제108조 연유(練乳)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지방량이 8%이상될 것
2. 사탕량은 유탕(乳糖)과의 함량이 55%이하일 것(탈지연유를 포함)
3. 전연유 또는 탈지연유를 표기할 것

제109조 다음에 해당되는 빠다(또는 인조빠다)는 판매 할 수 없다.

1. 8%이하의 지방량과 이하의 수분 또는 2%이상의 식염을 함유한 것
2. 이중지방을 함유한 것(인조빠다는 제외)
3. 식염이외의 광물, 곡분, 마령서분, 기타 협잡물을 혼합할 것
4. 산도가 8도이상 되는 것

제110조 「치즈」 또는 「인조치즈」는 수분이 25-60% 단백질이 10-40% {건조피로 계산하여 20-80%} 지방량이 60%(건조피로 계산하여 50-80% 식염이 6%를 초과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제111조 「아이스크림」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1. 진애 기타 협작물이 있는 것
2. 광미, 산미, 부패성, 추미가 있는 것
3. 지방함유량이 7%이하 되는 것
4. 당분이 12%이하 되는 것
5. 유해 금속을 함유한 것
6. 산도가 12도이상 되는것
7. 세균취락수가 0.1% 그람중 10,000이상 또는 병원균을 함유한 것

제 2 절 식당 및 음식점 위생

제112조 식당 및 음식점은 유해 또는 불결한 장소(피혁공장, 오물사장 등)로부터 500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제113조 식당 및 음식점은 식사장, 조리장, 취사장 및 원료저장장등이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

제114조 식사장에는 채광, 환기 및 조명의 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동절에는 난방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15조 식당 및 음식점에는 다음의 물품을 각각 따로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1. 미곡, 맥분, 사탕 기타 건조한 물품
2. 채소와 청과류
3. 소조육류와 어개류

제116조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식당에는 육류조리장, 채소조리장, 자비장이 각각 따로 있어야 한다.

제117조 조리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뚜껑있는 오물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8조 식당 및 음식점에는 상수도를 시설하여야 하며 이 시설이 없는 지방에서는 정수를 사용하되 제5장 제1절 제154조에 준하여야 한다.

강물 또는 고인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소관위생 검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 변소는 조리장, 식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며 대변간은 객 40명에 1개씩 남녀별로, 소변간은 남자 25명에 1개의 비레로 설치하며 손씻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 식당출입구에는 손씻는 장치와 신발청식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 기구 및 비품은 일상 청결히 하되 다음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구는 작업개시전에 100도이상의 열탕에 자비소독을 한후 사용할 것
그러나 자비소독이 불가능한 기구는 「크로루칼키」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도마」판면은 오돌(凹凸)이 없어야 하며 매각업전후에 열탕으로 씻을 것
3. 식기, 수저는 일상적으로 끓이며 사용후마다 씻을 것
4. 가마는 깨끗이 솔로 닦을 것이며 솔과 행주는 사용한 후 반드시 세탁하여 열탕에 끓일 것

제122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용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동, 연, 강철, 주철, 아연제의 용기
2. 10%이상의 연을 함유한 합금제의 용기
3. 식기의 파손된 부분을 연 20%이상 포함한 합금으로 납착하거나 5%이상을 포함한 주석 합금으로써 도금한 것
4. 유해색소로 표면에 채색한 용기

제123조 음식물 및 그 원료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음식을 다른 물품과 같이 두지 말것

2. 신선한 음식물을 변질 또는 악취있는 음식물과 같이 저장하지 말것
3. 마른 식료는 습기없는 실내의 저장장에 변질하기 쉬운것은 냉장고에 보관할 것
4. 음료수는 깨끗한 급수용구를 사용하며 반드시 뚜껑있는 통에 저장할 것

제124조 음식물의 조리 및 공급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익은 육류와 생육류 또는 조리한 채소와 생채소를 동일한 대위에서 조리하지 말것
2. 전일에 조리한 물품과 새로 조리한 물품을 혼합치 않을 것
3. 식료품을 분배할 때에는 깨끗이 씻은 수저등을 사용할 것

제125조 식사장은 침실로 사용하지 말것이며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26조 조리장에는 해당한 종업원이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출입할 때에는 위생복 및 비치된 조리장 전용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27조 청소 및 소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수시로 청소와 환기를 실시하며 창문을 닦을 것
2. 정원은 분진이 비산치 않도록 수시로 청소와 살수를 할 것
3. 식사장 및 조리장은 1주 1차씩 대청소를 실시할 것
4. 변소, 쓰레기통, 조리장내의 오물통 및 하수구는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것
5. 유해곤충을 막기위하여 창문에 철망 또는 포망장치를 하며 살충제를 사용할 것

제128조 전종업원은 몸을 특히 손발, 얼굴, 머리등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29조 전종업원은 작업할 때 반드시 깨끗한 위생복에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환 경 위 생

제 1 절 상수도위생

제130조 상수도를 시설하려는 지대에는 원수(原水)의 수질 및 수원지보호에 적당한 위생조 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131조 상수도의 수원지정수장 및 배소지 등 각 구역 경계선에는 명확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

제132조 상수도의 각 구역에는 공장, 광산, 기업소, 주택등의 건축 및 도로 또는 철도의 시 설 벌목, 농경, 목축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수도사업에 필요한 건물(주택을 포함한다) 및 도시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33조 상수도 각 구역내에는 매장, 화장, 진애 및 동물시체의 방기(放棄) 또는 수렵, 유 명, 세탁등 수질을 오염시킬 일체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134조 상수도 각 구역내에는 종업원 이외에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증명서를 가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35조 상수도 관리자는 상수도에 독물, 병원균 및 기타 유해물이 투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를 정지하고 곧 이를 소관위생검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 상수도 각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2회이상의 검변 및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특히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제137조 정수장에는 수질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 원수(原水) 濾과수(濾過水) 및 급수전(給水栓)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물리학적검사(온도, 탁도, 색도, 추미 등)
2. 화학적 검사(반응, 유기물, 암모니아, 기타 염류, 아질산, 질산, 크로루류산, 철, 경도 등)
3. 세균학적 검사(세균취락수 대장균 및 기타 병원균)

제139조 여사가 위생상 유해 또는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삭사(削砂), 보사(補砂) 및 세사를 실시하여야 하되 보사를 타구역에서 반입하려고 할 때에는 소관위생 검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0조 삭사 및 보사에 종사하는 자는 검변소독후 지정된 의복 및 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1조 배수지는 다음과 같은 위생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침투성이 없으며 수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재료로 할 것
2. 유출구와 유입구를 반대측에 설치할 것
3. 물이 정체되지 않고 항상 유통케 할 것
4. 매년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에 의하여서는 임시청소를 실시할 것
5. 우수와 오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부에 60cm이상 두텁이의 흙을 덮고 표면에는 잔디를 심을 것
6. 수면면적 10평방키로메타 내지 15km² 1개의 비례로 15cm 내지 30cm 직경의 환기공을 설치하되 그 상부에 방진, 방문장치를 할 것

제142조 도관 또는 급수관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연결할 것이며 그의 매물은 하수관의 상위 또는 이와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3조 지관에 있어서 맹단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단에 배수장치를 하고 매년 4회이상 관내의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44조 물은 항상 정체없이 송수하여야 한다.

제145조 정수에는 백만분지 0.2내지 0.3의 염소량이 보존되도록 크로루칼키를 계속 가입하여야 한다.

제146조 다음과 같은 물은 이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다.

1. 탁도 1도를 초과하는 것
2. 색도 1도를 초과하는 것
3. 이상한 추미가 있는 것
4. 반응이 중성 약알칼리성 또는 미약산성이 아닌것
5. 아질산성질소가 정성시험에 검출되는 것
6. 암모니아성 질소가 정성시험에 검출되는 것
7. 1ℓ 중 0.3g이상의 철을 함유하는 것
8. 동 및 연이 정성시험에 검출되는 것
9. 1ℓ 중 30mg이상의 「염소이온」을 함유하는 것
10. 1ℓ 중 10mg이상의 「과망간산가리」를 소비하는 것
11. 1ℓ 중에 5mg이상의 질산성 질소를 함유하는 것
12. 경도 18도를 초과하는 것
13. 1ℓ 중 500mg이상의 증발잔사를 남기는 것
14. 한천배양기를 사용하여 섭씨 20도 내지 22도로 48시간 배양에 1cm³중 100개 섭씨 37도로 24시간 배양에 1cm³중 50개이상의 세균취락을 발생하는 것
15. 10cm³이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

제147조 우물은 변소, 가축사 및 기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25m이상의 거리를 가져야 한다.

제148조 대수지층(帶水地層)이상의 정벽은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축조하여야 한다.

제149조 우물상부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써 지표면에서 높이 1m이상을 축조하고 뚜껑을 덮어야 한다.

제150조 우물주위의 지표면은 우수 및 기타 오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경사를 두어야 한다.

제151조 정수의 취급에는 「펌프」 또는 공동 드리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2조 우물주위 8m이내에서는 오수의 방류, 세탁 및 기타 정수를 오염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53조 우물은 봄과 여름에는 매월 1회 가을에는 2월에 1회씩 청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마다 즉시로 청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로 인하여 수질이 혼탁하였을 때
2. 인근지방에 장티부스, 적리 및 콜레라등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유행할 때
3. 지정전염병환자의 가정에서 사용하였을 때
4. 독물, 병원균 기타 위생상 유해물이 투입된 우려가 있을 때

제154조 음용할 수 있는 정수는 제146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자비 또는 여과 기타방법으로 정화한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하수도 위생

제155조 토지 건물의 사용관리자는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일체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 하수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6조 주택부근 및 시가지에 하수도를 시설할 때에는 그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157조 공장, 광산, 기업소,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상수도의 각 구역 어개(魚介)의 양식 및 채취장 또는 유영장구역내에 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158조 해당 하수도 관리자는 수시로 준침 또는 수리를 하며 오수의 누설 및 일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소와 준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물은 지정한 오물사장으로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제 3 절 영화관 및 극장위생

제160조 기지는 토질이 건조하고 습기가 적으며 배수가 용이한 지대여야 한다.

제161조 건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천정의 높이는 3.5m이상으로 할 것
2. 바닥은 세멘트, 마루, 타이루등을 깔며 반드시 경사를 두되 그가 1대 12를 초과치 않게 할 것
3. 환기구는 바닥면적의 50분지 1이상으로 할 것 그러나 인공환기장치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1인당 점유면적은 0.5m²이상 1인당 기적은 3.5m³를 넘도록 할 것
5. 탄소고장등 영사기를 장치할 영사실 면적은 2.5×3.5m²이상이 되어야 하며 천정의 높이는 3m이상으로 하고 영사기에는 반드시 가스배출장치를 할 것
6. 실온은 동기에 있어서는 15°C 하기에 있어서는 외기온도보다 높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 계단담면의 경사는 45° 이하로 할 것
8. 휴게시간중의 조명을 20럭스이상으로 보장할 시설을 할 것

제162조 관람석은 매개별로 의자를 비치하되 의자의 높이와 넓이는 40cm이상으로 하며 각 의자의 전후열의 간격은 38cm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3조 3층이상의 관람장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곳에는 관람석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1. 양각이 화면의 중심과 25° 이상 화면의 상단과 35° 이상 되는 것
2. 횡각이 45° 이상 되는 곳
3. 영사막면의 수평선으로부터 화면폭 1.5배이내의 평행선성의 장소
4. 화면 상하양단의 길이의 12배이상 되는곳(화면의 상하양단과 관개의 안구와 결합되는 것으로 되는 각이 5° 이하의 곳)

제164조 관내의 1층, 2층 및 3층에 각각 휴게실을 설치하되 의자, 채터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5조 변소에 있어서는 대변간은 객 50명에 1개씩 설치하되 그 간수 배정은 남잔 4, 여자 6의 비례로 하며 소변간은 남자 40명에 1개의 비례로 하여야 한다.

제166조 정원(좌석수)이상의 입장을 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정원이상 입장시킬 때에는 정원초과 인원수가 정원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167조 영화에 있어서는 3시간이상, 극에 있어서는 4시간이상 계속 상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68조 관람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9조 장내의 요소마다 쓰레기통과 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0조 매상연전에 장내의 환기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월 2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절 시 장 위 생

제171조 시장은 건조한 지대로서 오물처리장에서 1km이상, 분진 및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기업소에는 500m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

제172조 시장내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장치를 할 것
2. 출입구의 넓이는 4m, 점포간의 통로는 2m, 중앙통로는 6m이상으로 할 것
3. 점포는 다음과 같은 업종별로 일정한 구역에 배치할 것
 - (1) 음식물 매장
 - (2) 어개류 매장
 - (3) 과자 및 과실류 매장
 - (4) 수조육류 매장
 - (5) 면포류 잡화류 매장
 - (6) 곡물 매장
 - (7) 조류 매장
 - (8) 소채류 매장

(9) 정차장

4. 수도 및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그러나 수도가 없는 곳은 전용우물이 있어야 한다.

5. 변소는 시장밖에 두되 남녀별로 대소변간을 설치할 것이며 위생적 조건은 제5장 제8절에 준할 것

6. 50m이상 거리되는 곳에 우마의 분뇨 기타 오물을 수집처리할 오물통을 비치할 것

제173조 시장통로에는 상품을 진열하거나 오물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74조 시장의 청소 및 소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업후에는 장내를 청소하며 오물 및 쓰레기통을 처리할 것
3. 월 2회씩 정기적으로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제175조 시장관리자는 쥐, 파리등의 유해곤충을 예방하며 박멸하여야 한다.

제 5 절 여 관 위 생

제176조 불결한 장소 또는 소음, 유해가스, 악취등을 방산하는 공장, 광산, 기업소로부터 500m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제177조 객실(침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방의 면적은 객 1인당 3m²이상으로 하며 한방의 최소한도의 면적은 4.5m²이상으로 할것
2. 채광면적은 실내면적의 1/6이상으로 하며 적당한 환기장치를 할것
3. 실내의 천정, 벽, 바닥은 지류, 석회등으로 깨끗이 할것
4. 실내는 일상적으로 17°C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것
5. 하절에는 철망 또는 포망등으로 곤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것

제178조 침구는 매객별로 세탁한 백포를 씌운 이불, 요, 버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9조 출입구에는 손씻는 장치, 신발의 청식장치를 하며 신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0조 휴게실, 복도, 변소 및 기타 요소에는 소독수를 넣은 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1조 세면장을 설치하되 냉수 및 열탕의 저장기와 세면기, 양치그릇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3조 취사장에 대한 위생적 조건은 제 4 장 제 2 절 식당 및 음식점 위생에 준한다.

제184조 변소는 취사장으로부터 8m이상의 거리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그의 위생적 조건은 제5장 제8절에 준한다.

제185조 정원에 석탄 및 기타 오물을 방치하지 말것이며 뚜껑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수시로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86조 관내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객실은 조석 2회씩 청소를 할것

2. 월 1회이상 대청소를 할것
3. 침구는 일상적으로 일광소독을 하며 파리, 이, 빈대등의 곤충을 퇴치할것
4. 객실을 종업원실로 대응하지 않을 것
5. 객실에 불결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할것
6. 쓰레기통, 변소, 기타 불결한 곳은 일상적으로 소독을 할것

제187조 여관에는 전염병환자를 유숙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188조 종업원은 전신을 항상 깨끗이 하며 취업중에는 반드시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6 절 이발관 및 미장원위생

제189조 이발관 및 미장원(이하 이발소라 약칭한다)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90조 이발실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실내면적은 13m²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발용 의자 1대당 면적은 4m²이상으로 할것
2. 채광면적은 실내면적의 1/4이상으로 할것
3. 환기면적은 채광면적의 1/4이상으로 할것
4. 바닥은 세멘트, 타이루, 널마루등으로 틈이 없도록 할것
5. 세발, 세면장치를 할것
6. 이발기구 및 비품의 소독장치를 설치할것
7. 열탕과 냉수를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할것
8. 실내온도는 17℃내지 20℃를 보존할 수 있는 난방 및 청량장치를 할것
9. 모발 및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장치를 할것

제191조 이발용의자가 간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이발용의자의 상호간의 거리는 1m이상으로 할것
2. 벽과 이발용의자의 거리는 0.7m이상으로 할것
3. 휴게용의자와 이발용의자간의 거리는 1.5m이상으로 할것

제192조 이발소에는 다음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객용수건의 이발용의자 1대당 20매이상
2. 객용건포는 이발용 의자 1대당 20매이상
3. 객용 앞장은 이발용 의자 1대당 3매이상
4. 종업원용 위생복 및 마스크는 1인당 2매이상
5. 기구장 기구소독기

6. 분칠용 정면
7. 소독수를 넣은 타기
8. 소독용 약품 및 오키시홀, 요도링크등

제193조 이발용 기구는 1회사용 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소독하여야 한다.

1. 이발기는 알콜등화에 소독할것
2. 수건은 씻은후 자비 소독할것
3. 면도, 가위, 빗 등은 70% 알콜에 30분이상 담글것

제194조 종업원은 작업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깨끗한 위생복을 입고 마스크를 할것
2. 경포와 수건은 매객마다 깨끗이 소독한 것을 사용할것
3. 매객에 대한 이발이 필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것
4. 앞장을 실내에서 흔들어 털지 말것
5. 분칠용 정면 및 면도용 비누물은 1회이상 사용하지 말것
6. 면도를 한후에는 「베르쯔수」등을 발라주되 불량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것
7. 머리를 깨끗이 씻어줄것
9. 전염성 피부병자의 이발을 하지 말것

제195조 이발실 내외를 항상 청결히 할것이며 월 2회 이상 반드시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절 목욕탕 위생

제196조 목욕탕은 탈의실, 욕실이 각각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제197조 욕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욕실의 1인당 평균면적은 1m²이상, 기적은 1인당 3.5m²이상으로 할것
2. 욕조의 깊이는 1m이상으로 할것이며 욕조면적은 욕실면적의 30%를 넘지 말것
3. 천정의 높이는 2.5m이상으로 하며 바닥과 벽은 석재, 세멘트 및 타이루 등을 내수성재료를 사용할것
4. 욕실의 배기구는 바닥면적의 1/50이상으로 하며 천정중앙에 설치할것
5. 욕실에는 열탕전과 냉수전을 각각 따로히 설치할것
6. 욕실에는 반드시 「샤와」를 설치할것
7. 욕실에는 욕용의자 및 세면기를 비치할것
8. 욕실의 채광은 자연광선을 이용할 수 있게 장치하며 야간조명은 20럭스이상으로 할것

제198조 욕수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욕수는 상수도 또는 청결한 전용정수를 사용하되 욕객 1인당 60ℓ 이상의 수량을 공급하

며 탕수온도는 38℃내지 40℃로 할것

2. 욕수를 항상 깨끗이 할것

제199조 탈의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냉기와 증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바닥과 벽은 널마루, 세멘트, 타이루 등으로 하되 그가 세멘트, 타이루인 때에는 반드시 포류를 깔것
2. 탈의장과 신장을 설치할것
3. 탈의용 의자를 비치할것
4. 탈의실의 온도는 동기에 있어서 20℃이상으로 할것
5. 탈의실과 욕실사이에는 포류로 발딛는 장치를 할것

제200조 목욕탕의 출입구에는 신발청식장치를 하며 요소마다 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1조 대변소는 정원 35명에 남녀별로 1개씩, 소변소는 남자 25명에 1개의 비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2조 배수도는 철판 또는 세멘트관등을 사용하며 그로부터 유해 또는 추기있는 가스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03조 목욕탕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욕객이 준수하여야 할 위생사항을 제시할것
2. 피부병자, 만취자, 등반자 없는 노쇠자 및 6세이하의 아동을 입욕시키지 말것
3. 전신을 깨끗이 씻기전에는 욕조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것
4. 욕조내에서 수건과 비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것
5. 목욕탕내에서의 복약 또는 도약을 하지 않게 할것
6. 욕실내에서 세탁을 못하게 할것
7. 면도, 염발 또는 손톱을 깎지 못하게 할것
8. 욕객에게 빗, 수건등을 대여하지 말것
9. 정원수이상 입욕시키지 말것

제204조 목욕탕은 개탕전과 폐탕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5조 욕실 및 그의 비품은 폐탕후 반드시 씻어야 하며 탈의실 및 그의 비품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206조 월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되 일체비품은 약물소독 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207조 목욕탕의 배수는 하수도에 주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청정장에서 소독을 실시한후 방류하여야 한다.

제 8 절 공동변소 위생

- 제208조 공동변소(이하 변소라고 약칭한다)라 함은 공원, 도로부근,接客업처, 공장, 광산, 기업소, 학교, 합숙소 및 기타 공중집합소에 있어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9조 인구 10,000명이상되는 도시에는 도로부근에 공동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10조 변소를 공원 및 도로부근에 설치할 때에는 주택 및 기타 건물로부터 20m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
- 제211조 변소의 구조는 수세식 또는 개량식으로 하되 남녀별로 대소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12조 수세식변소에 있어서 소독하지 않은 오물을 하수도에 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 제213조 대변간의 천정의 높이는 바닥에서 2m이상, 바닥면적은 1m²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14조 변소에는 충분한 환기창 및 채광창을 설치하며 하절에는 방승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6조 분뇨의 급취구는 도로면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뚜껑을 하여야 한다.
- 제217조 변소의 조명은 10룩스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18조 수세식변소에는 1일 1인당 27ℓ의 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219조 도로 및 공원의 변소입구에는 높이 1.5m이상의 장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20조 변소의 출입구에는 손씻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제221조 변소의 내외를 항상 청소소독하여 1주일에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2조 수세식 변소의 부폐조는 1년에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며 침전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제6장 교 통 위 생

제1절 철 도 위 생

- 제223조 철도위생이라 함은 기차정거장 기관구 및 그의 부속시설에 대한 위생을 말한다.
- 제224조 객차 및 식당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채광 창에는 방진 및 차일의 장치를 할 것
 2. 1인당 1시간 28m³이상의 환기를 보장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할 것
 3. 매차량마다 1인당 1일 2.5ℓ 이상의 음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4. 매차량마다 1개이상의 온수전과 냉수전이 있는 세면장을 설치할 것
 5. 매차량마다 1개이상의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것.
- 제225조 침대차량에는 침구장을 설비하여야 하며 침구는 매 객차마다 청세한 백포로 싸운 이불 요 각1매와 버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6조 정거장의 대합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채광면적은 바닥면적의 1/5이상으로 할 것
2. 환기면적은 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할 것
3. 대합실 또는 그의 25m 이내에 제 5 장 제 1 절 제154조에 해당한 음료수를 비치할 것.

제227조 정거장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세식이 아닌 변소는 역사 정수등에서 10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대변간은 일시최대승객수를 기준으로 하여 25명에 1개의 비레로 남녀별로 설치할 것
3. 소변간은 남자대변간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제228조 조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객차량 식당차량 및 대합실은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
2. 침대차량은 5럭스 이하로 할 것
3. 승강장 도선교 및 지하도는 10럭스 이상으로 할 것
4. 변소는 5럭스 이상으로 할 것

제229조 실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대합실은 10℃이상으로 할 것
2. 객차량 및 식당차량은 15℃이상으로 할 것
3. 하절에는 외기온도보다 높지않게 할 것

제230조 여객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각항을 지켜야 한다.

1. 정원이상을 승차시키지 말것
2.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역구내 출입 또는 승차를 금할것
 - (1) 객차내 또는 역구내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자
 - (2) 전염성 질환의 우려가 있는자
 - (3) 악취있고 습윤한 불결한 물품 또는 시체를 휴대한 자
3. 정거장과 역구내 및 도시통과중에 용변하지 않게 할것
4. 대합실에서 숙박하지 않게 할 것

제231조 화물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염병이 만염된 지방의 물품과 전염병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송치 않게 할 것.
2. 포장의 불비로 인하여 악취 및 액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시체 및 유골은 수송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사용한 차량은 완전히 소독할 것
2. 의자 기타 등 비품의 소독을 실시할 것.
3. 물탱크와 음료수통을 깨끗이 씻을것

4. 침구의 일광소독을 실시할 것

5. 유해곤충을 구제할 것

제234조 열차운행중에는 객차량 및 식당차량내에 수시로 살수청수 및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5조 정거장은 일상적으로 청소하되 대합실은 수시로 살수하며 화물적 치장의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매몰·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제236조 기관차 승무원은 방진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하여야 한다.

제237조 작업도중 또는 열차운행중 종업원 및 여객의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자는 곧 소관 위생 검열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8조 각 철도국에는 철도재해로 인한 사상자구호 및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구호차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및 전차의 위생

제239조 여객취급에 있어서는 제6장 제1절 제231조에 준한다.

제240조 소관 위생검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류장에는 대합실과 변소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241조 자동차 및 전차의 청소 소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는 발차전 그의 바닥, 의자, 손잡이 및 창문등을 청소 소독할 것
2. 전차는 1일 1회이상 바닥, 의자, 손잡이 및 창문등을 청소 소독할 것

제3절 선박 및 부두위생

제242조 평수보다 먼구역울 8시간이상 항행하는 여객선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여객실은 연료유조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 그러나 유조와의 사이에 강철제의 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통풍이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관실의 주위에 방열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60cm이상의 거리를 두고 여객실을 설치할 것
3. 근해이상을 항행하는 선박의 상*관 이하의 여객실의 환기구는 정원1인당 16cm²의 비레로 기관실의 양측에 있는 여객실에 대하여는 21cm²의 비레로 통풍관을 설치할 것 그러나 특수한 환기장치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조명 및 실온은 제6장 제1절 제228조 및 제229조에 준할 것
5. 1일정원 1인당 3.6ℓ의 음료수를 비치할 것
6. 온수전과 냉수전을 장치한 세면장을 설치할 것

7.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침구위생은 제6장 제1절 제225조에 준할 것

8. 여객 50명에 1개의 비레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것

제243조 기관실에는 유성가스, 암모니아가스와 기타 유해가스의 유출 및 정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24조 항행중 장내전염병(콜레라, 장티부스, 적리등) 및 그의 유사증의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체를 수장할 수 없으며 여객 및 선원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45조 대합실 및 여객실에는 타기 쓰레기통을 비치하며 여객실의 타기는 정원 10인당 1개의 비레로 하여야 한다.

제246조 선박의 청소는 제6장 제1절 제233조 및 제234조에 준한다.

제247조 선박의 구호실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위생재료와 구급약을 넣은 구급함을 비치할 것
2. 근해이상의 구역을 항행하는 여객선에는 전임의사가 있어야 하며 진찰실 및 약국을 설치할 것
3. 여객실 및 선원실과 떨어진 곳에 병실을 설치하되 담재인원 200명까지는 40명에대 200명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인원 60명마다 1개의 비레로 침대를 설치할 것.
4. 병실에는 목욕탕 및 전용변소등을 설치할 것

제248조 부두위생은 제6장 제1절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235조에 준한다.

제7장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제249조 기업소 책임자(식품공장을 제외)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종업원의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개인별로 신체검사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할 때 또는 직종을 변경할 때
2. 전체 남자종업원에 대하여는 년1회
3. 유해직장 노동자 및 부녀 소년 노동자에 대하여는 년2회
4. 임신중에 있는 부녀종업원은 1개월에 1회
5. 임신6개월 이후는 필요에 따라 수시
6. 요주의자에 대하여는 4개월에 1회

제250조 각 직종에 대한 비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1. 중량물 운반작업-근육박약 탈장 갑장선종 심장변막증
2. 서서하는 작업-각기, 내장하수증, 심한빈혈
3. 보행작업-각기, 관절염

4. 고온고습작업-심한고혈압, 심근질환, 대동맥류, 동맥경화증, 심한빈혈, 심한하지의 정맥류, 혈전 성정맥염, 신장염, 니프로-제, 폐결핵, 폐기종, 기관지천식, 전간, 당뇨병, 바세도씨병
5. 한냉작업-심한고혈압, 알콜중독, 신장병, 심장변막증
6. 고압하작업-고혈압, 알콜중독, 신장병, 심장변막증
7. 저압하작업-빈혈, 내이질환
8. 청각작업-난청
9. 집단작업-전염성질환
10. 시각작업-약시, 난시, 색약, 색맹
11. 고립작업-전간
12. 소음작업-이경화증
13. 발진성작업-폐결핵, 폐기종, 현저한 만성기관지염, 심장 변막증, 결막염, 피부염, 습진
14. 유해물 유독물을 사용하는 작업
 - (1) 연 폐결핵, 신장염, 심한빈혈, 중한영양불량, 고혈압, 동맥경화증, 만성폐질환, 중추신경의 기질적질환, 내분비질환
 - (2) 수은-심한빈혈, 폐결핵, 인환티리증, 중한영양불량
 - (3) 아연-호흡기질환
 - (4) 망강-중추신경의 기질적질환
 - (5) 비화수소-상기도의 심한카달, 습진피부염, 신경염, 심한빈혈, 신장염
 - (6) 비소-간질환, 습진피부염
 - (7) 크롬-상기도카달, 비중격만곡, 비출혈
 - (8) 인-치아결손, 치조농루, 치유되기전의 구강질환, 빈혈, 위장병, 간질환, 골막염
 - (9) 불소-칼슘내장장애, 골질환, 상기도카달, 결막염, 만성 피부염
 - (10) 크롬-기도질환, 특히 폐결핵
 - (11) 이류화탄소-신경염, 다발성신경염, 중추신경의 중한기능장애와 기질적 질환
 - (12) 벤졸-빈혈, 출혈성소질 고도의 간 기능장애와 기질적 질환
 - (13) 암원적 작용을 하는 방향족 아민 빈혈 폐결핵 간신노로의 만성질환 내분비 질환

제251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종업원은 다음과 같다.

1. 통조림공장, 제과공장, 두부공장, 우유공장, 제면공장, 제탕공장, 장유 및 양조공장 등의 종업원은 채용당시에 시행하고 그 후는 매2개월에 1회씩 할것
그러나 운반부문의 종업원은 채용당시에 한한다.
2. 식당 및 음식점의 종업원은 채용당시에 시행하고 그 후는 매월 1회씩 할것

3. 여관 목욕탕 이발관 및 미장원의 종업원은 채용당시에 시행하고 그 후는 매3개월에 1회씩할 것
4. 상수도의 종업원은 채용당시에 시행하고 그 후는 년2회씩 실시하되 반드시 「장티부스균」의 보관여부를 검사할 것

제252조 제251조에 의하여 종업을 금하는 병명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성결핵
2. 전간, 테프리
3. 장티부스, 발진티부스, 파라티부스, 재귀열, 디프테리아, 콜레라, 적리, 페스트 및 그의 보존자
4. 매독, 임질, 급성 임독성임질, 연성하감
5. 악성폐양, 악성비염
6. 폐폐저, 변주, 전염성안질, 개선 및 기타 전염성피부염

제253조 종업원의 가족이 제252조 제2항 제3항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의 종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54조 건강진당은 종합진료소 진료소 간이진료소등의 국가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제255조 영업책임자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수첩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6조 소관위생검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개선 또는 처분명령서 벌금 영업정지 및 항의절차

제258조 검열의결과 위반정도가 경하거나 또는 부분적인 결함으로서 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 처분명령서(별지양식 제1호를 발송하되 반드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위반한 해당기관책임자 또는 개인경영자(이하 위반자라 약칭한다)에 발급하고 1통은 소관위생검열원에 보관한다.

제259조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또는 제258조의 개선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서 벌금 또는 영업정지에 처한다.

1. 위반의 정도와 이유를 상세히 조사한 위반조서(별지양식 제2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위반자에게 발급하고 1통은 소관위생검열원에 보관한다.
위반자는 본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조서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벌금납입명령서(별표양식 제3호 또는 영업정지명

령서(별표양식 제4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위반자에게 발급하고 1통은 소관위생검열원에 보관한다.

위반자는 본 명령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3. 각 위생검열원은 보관한 벌금납입 명령서에 납입된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이에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60조 산업성 교통성 상업성 농림성 기타 각성(국) 및 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 인민위원회에서 직접운영하는 국가기업소는 국가위생검열원만이 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시 군인민위원회 또는 지방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생산기업소는 해당 위생검열원장이 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1조 도 및 시 군 위생검열원은 각성 및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직속국과 생산기업소의 운영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반조서 및 의견서를 국가위생검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중독 직업성중독 전염병 등의 위험한 정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 및 시군 위생검열원은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2조 위생검열원이 「위생검열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비위생적인 식료품의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별표양식 제5호의 명령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용 목적으로 필요한 분량의 물품 또는 재료를 반출시킬 때에는 별표양식 제7호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3조 음식물중독 직업성중독 전염병발생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사실을 잘 아는자를 증인으로 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64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위생검열원과 하급위생검열원이 각각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상급위생검열원만이 자기조서에 의하여 약정기일내에 벌금납입명령서 또는 영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5조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하여 항의장을 받은 상급검열원은 그 사실을 심의하여 변경 또는 기각하되 반드시 결정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항의자에게 교부하고 2통은 관계상 하급검열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6조 항의장 사본을 받을 소관위생검열원은 위반조서 명령서등 위반사실에 대한 일체문서를 3일 이내에 상급위생검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7조 명령서에 대한 항의상 사본을 받은 관계위생검열원은 명령서 이면에 「명령서집행유예」라고 기입하고 서명날인한 후 상급위생검열원의 최종결정이 있을때까지 그의 집행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268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항의장을 수리할 수 있다.

제269조 각 위생검열원은 별지 제8, 9, 10, 11, 12호 양식의 각종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70조 위생검열원 규정 시행세칙 1948년 5월 20일 보건국명령 제29호 음식점영업단속규칙, 여관 영업단속규칙, 이발사영업단속규칙, 목욕탕영업단속규칙(1946년 6월 4일 보건국지령)은 이를 폐지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건상이 병 남

1949년 12월 30일

(양식 생략)

◇ 방역위원회에 관한 규정

(1949. 9. 14 내각결정 제132호)

제1조 방역위원회는 급성 전염병 유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필요한 긴급방역 대책을 수립하며 그를 강력히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직속으로 중앙방역 위원회를 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 도 이와같다)시, 군 구역, 면리(동)에 각각 해당방역 위원회를 설치하며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는 공장 광산 기업소 및 교통기관 등에는 직장 방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중앙방역 위원회는 내각에 복종하며 각급 방역 위원회를 지도 감독하고 도, 시, 군, 구역 면방역 위원회는 각각 해당관내의 방역위원회를 지도 감독한다.

직장 방역위원회는 해당 시, 군, 구역, 방역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 방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 중앙방역위원회위원은 내각에서 도, 시, 군, 구역, 면, 리(동)방역 위원회 위원은 해당인민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며 직장방역위원회 위원은 해당직장 책임자가 이를 결정한다.

제6조 각급 방역위원회 직원은 각각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체사업을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3. 사무장은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위원회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4. 위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을 담당한다.

제7조 각급 방역위원회는 년2회의 정기회의를 갖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각급방위원회에는 약간명의 전임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각급방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급성 전염병 유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 이에대한 긴급 방역대책의 수립 및 그의 집행
2. 방역정보수집 및 그의 연락
3. 방역대 조직
4. 위생방역 선전사업조직

제10조 중앙 및 도 방역위원회는 해당관내에서 있어서 전염병의 만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방역에 소요되는 인원 시설 및 자동차 선박등의 동원
2. 소독기재 약품의 동원
3. 교통차단 및 제한구역지정
4. 기타방역상 필요한 명령공포

◇ 검역소에 관한 규정

(1949.11.5 보건성규칙제11호)

제1조 검역소는 국외로부터 페스트, 코레라, 천연두등 악성전염병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국경해안 또는 비행장에 이를 설치한다.

제2조 검역소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외로부터 입국하는 선박 기차 비행기 자동차 우마차 및 그의 승무원 여객 화물 또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검역실시
2. 검역소 소재지역에 있어서 포서구홍등 방역상 필요한 사업의 조직 및 실시
3. 방역 정보 수집

제3조 검역소는 1급검역소 2급검역소 및 임시검역소로 나누되 1급검역소는 보건성에서 관할하고 2급검역소 및 임시검역소는 도(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 인민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 검역소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설립허가원서를 보건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및 위치
2. 개소 예정 년월일
3.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성명
4. 주위환경의 약도 및 주위환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

5. 설립에 관한 예산액과 그의 지판 방법

제5조 검역소를 신축 개축 또는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검역소를 폐지하고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직원 설비등의 처리방법 및 폐지기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상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검역소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용실
2. 격리병동
3. 위생통과실
4. 시험실
5. 취사실
6. 식사중개실
7. 세탁실
8. 선박정류장
9. 오물소각장
10. 시체실
11. 화장장
12. 동물실
13. 파리 모기 쥐를 방지하는 장치

제8조 수용실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침대를 1급검역소에서는 50대이상 2급검역소에서는 20대이상 임시검역소에는 10대이상 설치하되 실의 침대수는 6대 이하로 할것.
2. 매실에 전용변소를 설치할 것.

제9조 격리병동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진찰실, 조제실, 입원실, 소독실을 설치할 것.
2. 입원실의 침대수는 수용실 침대수의 10% 이상으로 할 것.

제10조 식사중개실에는 식기 소독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역소 기구는 별표와 같으며 그 정원은 보건상이 따로 제정한 정원표에 의한다.

제12조 검역소의 직원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검역소를 대표하며 소내 전체사업을 통괄한다.
2. 검역치료과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검역사업 세균검사 및 치료사업을 담당 집행한다.
3. 소독과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독사업을 담당 집행한다.
4. 서무과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서무 회계 영선 자재 수급 사업을 담당 처리한다.

제13조 검역소의 직원 임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급검역소 소장 및 과장은 보건상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2. 2급검역소 및 임시검역소의 소장 및 과장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제14조 검역소장 및 검역의는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검역소에서는 두모,코레라, 장티부스, 혼합웍진등 각종 왕진을 경상적으로 비치하며 검역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역소는 국외에 출항 또는 여행하는 선박, 기차, 비행기, 선원여객, 도보여행자 등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건전증명서 또는 검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역소는 일방적으로 국외 국내의 전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건상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보건상 이 병 남

제 4 절 노 동, 노 력 동 원

◇ 北韓鮮勞動者 및 事務員에 對한 勞動法令

(1946.3.5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29호)

三十六年 日本帝國主義가 朝鮮에 對하여 노예的으로 통치하여 온 동안 勞動者 및 事務員들의 노력은 잔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朝鮮로동者들의 勞動時間은 十二時間 乃至 十四時間에 達하였다.

특히 少年들의 노력과 여자들의 노력이 광범히 사용되었고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므로 그들은 대대로 육체적 불구(不具)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한 노동보호와 사회보험은 전혀 없었다.

붉은軍隊가 북조선을 해방시킨 날부터 위대한 民主主義의 개혁을 실시하여 勞動者와 事務員들의 勞動을 根本的으로 改善하고 利用할 수 있으며 物質的 生活水準을 向上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植民地的 榨取의 殘滓를 淸掃하고 勞動者와 事務員들의 物質的 形便을 根本的으로 改善시킬 目的으로 北朝鮮 臨時 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第一條 모든 國家 社會團體 消費組合 및 개인의 모든 企業所와 事務機關의 勞動者와 事務員들에게 八時間로동일을 制定한다.

第二條 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에서 로동하는 로동자들에게는 로동일을 七時間으로 定한다.

〈備考 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로동에 對한 職業種目を 産業局과 職業總同盟에서 規定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이를 批准한다.〉

第三條 生産企業所와 事務所에서 일하는 十四세로부터 十六세까지의 少年들에게는 로동일을 六時間으로 制定한다.

해로운 勞動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로동에 있어서는 少年로동을 禁止한다.

〈備考 해로운 條件을 가진 少年로동에 對하여서는 그 로동種目を 産業局과 職業總同盟에서 規定하고 人民委員會에서 이를 비준한다.〉

第四條 모든 生産部門에서 十四세 未滿者의 로동을 금지한다.〉

第五條 制定한 로동시간外의 로동은 原則的으로 이를 許諾하지 않는다.

〈備考 企業所와 事務所에서의 時間外의 勞動은 特別한 경우에 限하여 허용하되 반드시 職業同盟團體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各勞動者와 事務員들의 制定한 時間外의 로동은 1年 동안 二五〇時間을 넘지 못한다.〉

第六條 보수금의 限度는 일꾼들의 職業, 職位 및 技術에 의하여 規定한다.

ㄱ. 國家企業所 및 사무소의 賃金은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에서 規定한다.

ㄴ. 個人所有의 企業所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보수금은 단체 또는 勞動契約으로

規定한다.

第七條 同一한 노동과 同一한 技術을 가진 勞動者에게는 그 年齡과 性別을 不關하고 同一한 賃金を 支拂한다.

第八條 등급제로 하는 勞動賃金은 規格品을 產出하는 量에 의하여 規定한다. 주문格품의 標準生産量은 企業主와 직업동맹단체에서 協議하여 決定한다.

第十二條 日本國家 日本人及 日本人 一切團體의 果樹園 其他 果木들은 沒收하여 道人民委員會에 맡김 本法令 第三條, 「ㄱ」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한 朝鮮人 地主의 所有인 果樹園 其他 果木들은 沒收하여 道人民委員會에 保留됨.

第十三條 農民들이 所有한적은 山林을 除外하고 全 山林은 沒收하여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의 處理에 委任함.

第十四條 本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한 所有者에게 所有된 灌溉施設의 全部는 無償으로 北朝鮮 臨時委員會의 處理에 委任함.

第十五條 土地改革은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서 實施될 地方에서 土地改革을 實施할 責任은 道, 郡, 面 人民委員會에 負擔하며 農村에서는 雇傭者, 土地없는 小作人, 土地적은 小作人들의 總會에서 選舉된 農村委員會에 負擔됨.

第十六條 本法令은 公布한 期日부터 實行力을 가진.

第十七條 土地改革實行은 一九四六年 三月 末日以前으로 할 것.

土地所有權證明書는 今年 六月 二十日以前으로 交付할 것.

一九四六年 三月 五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 金 日 成
書記長 康 良 煜

◇ 勞動保護物資 및 作業必需品無償貸給與에 關한 規定

(1948.12.29 국가계획위원회 규칙제5호)

第1條 內閣決定 제 27號 「勞動者 事務員들의 生活向上對策에 關한 決定書」中 「二」에 依한 勞動保護物資 作業服 및 勞動靴의 無償貸給與는 本規定에 依한다.

第2條 本規定을 適用할 職種 等級 勤續期間 給與物資의 種目 및 數量은 別表 第1.2.3號와 같이 한다.

第3條 貸給與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1. 勞働保護物資貸給與範圍는 危險作業 有害作業 高熱作業 및 地下作業에 從事하는 勞働者로서 別表 第1號에 指定된 職種에 該當한 現場勞働者에게 適用한다.
2. 作業服 및 勞働靴 給與範圍는 別表 第2號에 規定된 職種으로서 各級에 該當한 現場勞働者에게 適用한다.
3. 營養劑의 給與範圍는 別表 第3號에 指定된 職種에 該當한 現場勞働者에게 適用한다.

第4條 貸給與 節次는 다음과 같다.

1. 勞働保護物資貸與는 前條 第1項에 該當한 勞働者에게 該當作業時에 限하여 無償으로 使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作業服 및 勞働靴給與는 前條 第2項에 該當한 勞働者에게 別表 第2號의 等級에 該當한 物資를 每勤續期間이 完了된 後부터 給與하여야 한다.
但 指定된 作業服 및 勞働靴를 不得已하여 給與할 수 없는 境遇에는 所管相의 承認을 받아 이에 適合한 代用品 또는 金錢으로써 給與할 수 있다.
3. 營養劑의 給與는 前條 第3項에 該當한 勞働者에게 別表 第3號에 指定된 等級에 該當한 數量을 每翌月中으로 前月分을 給與하여야 한다.
4. 本規定에 依한 給與物資中 作業服 및 靴類에 限하여서는 반드시 前期에 給與한 該當物資와 交換하여 給與하여야 한다.
但 新規로 給與할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않는다.
5. 本規定에 依한 作業必需物資를 給與받은 勞働者로서 繼續勤務하지 않거나 또는 任意로 他職場에 移動할 때에는 無償給與한 物資中 作業服과 靴類(이에 該當한 代用物資 및 金錢을 包含한다)는 一切 이를 回收한다.
但 調動에 依하여 職場을 移動할 境遇에는 이를 回收하지 않으며 勤續期間도 繼續되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5條 勞働者에게 給食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企業所에 있어서는 所管者의 承認을 받아 實費로 給食할 수 있다.

第6條 國營企業所에서는 勞働者가 使用할 수 있는 便利한 食事場所를 各職場에 設置하여야 한다.

第7條 國營企業所에서는 本規定에 依한 必需物資의 數量 및 該當하는 對象人員數를 所管省에 登錄하여야 한다.

附 則

本 規定은 1949年 1月1日부터 이를 實施한다.

別表 第1號

保護物資品名	職 種
防毒面	<p>隔離式</p> <p>煤燒爐工(煤燒工原鑛投入工)</p> <p>漂白粉製造工(漂白粉造作室出工 修理工)</p> <p>鹽素製造工(曹達灰硝石灰塔解鹽素精製電解槽分析電解槽修理工液體鹽素製造工)</p> <p>直結式</p> <p>煤燒工(爐上原鑛投入工 煤燒工 製鍊所煤燒工)</p> <p>酸工(硫酸塔分析工 罌單運轉工 瓦斯淨却工 發煙硫酸製造工 脫 초工 암모니아酸化工直屬修理工 硝酸製造工 鹽酸製造工 混酸製造工) 尿酸암모니아製造工(汽和機運轉工 排氣瓦斯運轉工 암모니아回收工 中和曹運轉工 直屬修理工)</p> <p>암모니아合成工(循環機合成塔操作工 高壓回收工 암모니아分析工 合成塔修理工 酸化鐵塔解工 直屬修理工 쇠-크카봉製造工(멕기工弗化세물製造工)</p> <p>蓄電池製造工(鉛鑄物工 페스트工)</p> <p>아미노酸製造工(直接製造工)</p> <p>구리골製造工(鹽化機合成工)</p> <p>鹽化암모니아製造工(反應槽工 反應塔工)</p> <p>아세찌린製造工(瓦斯清淨工)</p> <p>鹽化바륨製造工(鹽化바륨製造工 鹽化바륨電爐工) 水銀工(水銀整流工 度量衡器製造工 其他水銀을 直接取扱하는 勞動者) 아니링製造工(直接아니링製造工) 다이 나 마이 트製造工(棉火藥混合工 捏和工壓伸工)</p> <p>棉火藥製造工(滑酸工)</p> <p>過鹽素酸바륨製造工(食鹽電解工)</p> <p>窒化曹達製造工(直接窒化曹達製造工)</p> <p>나후타링製造工(製造工 지니도르니후타링製造工 精製工)</p> <p>染料製造工(原料混合工 乾燥工 節粉工)</p> <p>亞硫酸가스製造工(硫黃硫酸 生石灰를 直接 取扱하는 勞動者)</p> <p>製鍊工(고발트, 니켈, 亞鉛, 鉛, 金, 銀, 銅電解工)</p> <p>石灰乾溜工</p> <p>瓦斯壓縮工(콕스製造工)</p> <p>다-루蒸溜工</p>

	平爐工
	瓦斯發生爐工(瓦斯發生爐에서 일하는 勞動者)
	鑛石燒結工(鑛石燒結爐에서 일하는 勞動者)
	瓦斯清淨工
	人絹酸洛工(뽀뿌사루기 加熱管運轉工 蒸發機通轉工芒硝濃縮工)
	人絹紡系工(紡系機運轉士 清淨工 直屬修理工 直屬電工)
	人絹系工(直接人絹조工 물레앞에서 일하는 勞動者)
	二硫化炭素製造(調製工 精製工)
	비스코스製造工(탱크掃除工 硫化槽修理作業時)
金綱式	배燒爐工(배爐工 原鑛投入工 燒滓運搬工 製鍊所배燒工)
또는通	酸工(硫化鐵粉碎工 鐵道機關士 및 助手 존넬보선工)
氣管式	硫石灰製造工(消石灰排出工 直接運搬工)
	石室工(原料호이스트工 카바이트粉碎工 投入工 室化槽工 排出工 石室粉碎工 工場內運搬工 製造탱크工 製品計量工 石室荷造工機重機運搬工)
	電極製造工(原料粉碎工 混和機運轉工 브레스運轉工 電爐工 器重機運轉工)
	硫酸암모니아製造工(飽和製造作工 遠心分離機造作工 汽和機運轉工 排氣가스運轉士)
	암모니아回收工(中和曹運轉工 直屬修理工)
	水素電解工(電解取替工 瓦斯防止工 소-다取落工)
	窒素製造工(製炭機運轉工 曹達回收工 分離機修理工)
	磷酸製造工(가롱運轉工 原料投入工 電爐工 延燒爐工 加水塔工 磷酸液輸送工 빠스트工 直屬修理工)
	磷酸암모니아製造工(地下룸페아工 곳도레-루運轉工 中和工 磷安仕込工)
	아-크카봉製造工
	(電氣燒成工 불하세룸製造工) 乾電製造工)
	(二酸化망강紛工) 鉛工(酸化鉛製造工 光明圖製造工) 硅酸소다製造工(硅酸熔解電氣爐工) 카-바이트製造工(原料投入工 製品流出工 電極接合工 原料配合工 給油粉碎工) 아람담製造工(電爐工 築爐工 粉碎工) 아세롱製造工(觸媒造工) 초酸製造工(일레히-드分類工 망강粉碎工 水銀觸媒工 回收工)

保護衣

水銀工 니도로구리세린製造工(硝化工) 다이나마이트製造工(棉火藥混合工
挿和工 壓伸工 包裝工) 棉火藥製造工(節粉工 硝化工) 過鹽素酸바름製造
工(食鹽電解工 酸化鐵熔解工 渡金工) 漂白工(구로루까스와漂白粉을 直接
取扱하는 勞動者)

製銃工(直接製銃하는 勞動者) 鐵鋼鑄鋼鎔解工 製鍊工(鋼 고발트니셀 亞
鉛 鉛 金 銀 電解) 瓦斯壓縮工(곡스製造工) 디-루蒸溜工(直接 디-루蒸
溜하는 勞動者)

輕油蒸溜 벤조루蒸溜工 平爐工(直接 平爐에서 作業하는 勞動者) 瓦斯發
生爐工 瓦斯清淨工 鑛石燒結工 人絹酸溶工(뽀무사루기 加熱官運轉工 蒸
發機運轉工 芒硝濃縮工) 人絹紡糸工(直屬修理工 直屬電工 케-크檢閱工)
石綿製造工 硫黃粉碎工 築爐工(高熱有害가스作業場에 限함)

煉炭工(粉塵이 飛散하는 場所) 착암공(坑內) 坑內採炭工 세멘트박기공粉
碎工(石炭 鑛石)

카-제 精糸工(작액運轉工 사리시工 漂白工) 撰別工 精粉工 製綿 및 打棉工 截
마스크 刻工(煙草截刻工) 류면工 밧도工 其他粉塵이 많은 職場

고무衣 酸工(뽀뽀運轉工 直接修理工)

毛衣 酸工(硫酸塔分析工 가스法令工 硫化鐵分碎工 發煙硫酸製造工 팁초工 암
모니아酸化工 직속修理工 硝酸製造工 鹽酸製造工 混酸製造工) 漂白粉製
造工(漂白粉操作工 室出工 直屬修理工) 鹽素製造工(食鹽電解알칼製機操
作 電解초分析電解초修理工 水銀정제 電極加工工 液體鹽소製造工) 硫酸암
모니아製造工(배기가스運轉工 포하기제조소 遠心分離機操作工 中和機運
轉工 암모니아修理工 中和槽運轉工 直屬修理工) 磷酸製造工(연소爐工 加
水塔工 磷酸液輸送工 直屬修理工 過鹽素酸바름製造工(食鹽電解工 度金
工) 아루산가스제조工(硫黃硫酸生石灰를 直接 取扱하는 勞動者) 人絹酸
溶工(뽀무 사루기加熱管運轉工 蒸發가스運轉工 芝硝濃縮工) 人絹紡絲工
(紡絲機運轉工 清掃工 直屬修理工) 비스코스製造工(탱크掃除工)

大 麻 築爐工(高熱作業에 限함) 燒爐工 爐上原鑛投入工 燒工 掃除運搬工
作業服 製鍊所 燒工) 石室工(排出工 石室粉碎 工場內 運搬 製品탱크 製品계량
石室荷造工) 電極製造工(電爐工器重機運轉工) 암모니아合成工(酸化鐵熔
解工) 酸製造工(原料投入工 電爐工) 磷酸암모니아製造工(地下콰페야곳
도레 루) 아크가봉製造工(電氣燒成工) 鉛工(酸化鉛 製造工 光明圖製造
工 鉛製品加工工) 水銀工(水銀整流工) 製銃工(熔解爐에서 일하는 勞動者)

		에 限함) 주철주양용해소(5屯以上爐熔解工 石乾溜工(直接乾溜) 瓦斯壓縮工(곡스製造工) 平爐工(平爐앞에서 일하는 勞動者) 아비산공(爐前工 세멘트박카공(直接 박카하는 勞動者) 瓦斯發生工(直接爐에서 일하는 勞動者) 造魂工 鑛石燒結工(燒結爐에서 作業하는 勞動者) 壓延伸張工(加熱工 壓延工) 緞冶工(電氣蒸氣에 이야한마를 製造工(原料投入工 製品流出工 電極接合工 給油工 粉碎工)
고 무 앞치마	大 麻 앞거리	熔接工(電氣熔接 瓦斯熔接 카봉熔接) 漁撈(水產下陸工 鹽 工 貫台工 電池工 酸工(뽀뽀工 酸硫를 運搬하는 工 消石灰製造工(消石灰排出工 直接運搬工 水素電解工(소다取落工 電池製造工 鉛鑄物工 페스트工 和成工 整成工 硅酸소다製造工 硅酸熔解 電氣爐工) 아란담製造工(築爐工) 니도로 구리 세팅製造工(硝化工) 다이나마이트製造工(棉火藥混合工 捏和工 壓伸工 包裝工 硝爆製造工(填藥工 混合工 節粉工 導火線黑線工(黑線工) 染料製造工(原料混合工 漂白工 구로루가스와 漂白粉을 直接 取扱하는 勞動者) 人絹紡絲工 紡絲機運轉工 直屬修理工 直屬電工 人絹紡絲工 直接操糸工 鉛版工(연관작업을 직접하는 勞動者) 皮靴니기는 工(랑크에서 直接니키는 工) 製材工(腹押工 테블工)
마다리	들메리	들메리工(常時 들메리하는 工)
保 護 帽	安全帽	坑內에서 作業하는 勞動者
保 護 裝 甲	고 무 장 갑	전치工 電氣電力工 漁撈工 漁량工 皮靴니기는工 過鹽素酸바름製造工(食鹽電解工 渡金工) 電池製造工(페스트工 化成工 整成工) 酸工(直屬修理工) 漂白粉製造工 室出工 直屬修理工 鹽素製造工 電解爐修理 電解爐分析) 燒爐工(原鑛投入工 燒工 燒滓運搬工 鍊製工 燒工) 카바이트製造工 原料投入工 製品流出工 電極接合工 原料配合工 粉碎工
크로스 장 갑	製銃	製銃工(爐에서 直接 일하는 勞動者 鑄鐵 鑄鐵熔解工(熔解工 砂落工(5屯 爐以上에 限함 石灰乾溜工 直接乾溜工) 瓦斯壓縮工(곡스製造工 다루蒸溜工 輕油蒸溜工 平爐工 瓦斯發生工 造魂工 壓延伸張工(加熱工 壓延工 鍛造工(2屯 以上 電氣蒸氣에 이야함마를 使用하는데 限함 築爐工 高熱에 限함)
保 護 靴	고 무 삭 구 무	紡絲工(방사기 運轉工) 酸工 漂白粉製造工 室出工 直屬管理工

保 護 眼 鏡	長 靴	鹽素製造工(直屬修理工) 過鹽素酸바름製造工(食鹽電解工) 간사로工 皮革 니기는工 漁撈工 漁량工 허로工 鹽漬工 貫太工 硫黃磨碎工 下水道掃除工 客貨車整備員 電鐵機關士
	素外綜	카바이트製造工(原料投入工 製品流出工) 아람담製造工(電爐工) 鑄鐵 鑄
	眼 鏡	鋼熔解工(熔解工) 製鍊工 熔接工
	가시光 綜眼鏡	電極製造工(電爐工 암모니아合成工 磷酸製造工 製銑工(爐에서 直接일하 는 勞動者) 壓延伸張工
	防 塵 眼 鏡	水素電解工(曹解取替工 소다取落工) 室素製造工(製炭機運轉工) 硝酸製造 工(만강粉碎工) 紡絲工(紡絲機運轉工 直接修理工 直屬運轉工) 석량製造 工(硫黃 取扱하는 工) 苛性曹達製造工 苛性曹達熔解工(直接 熔解에서 일 하는 工)
紡絲衣 및 兩衣	必要한 職種에 對하여 備置할 것	

別表 第2號

作業 必需品 無償給與 等級別表

級別	品 名	數量	勤 績 및 給與期間	職 種
1級	作業服 勞動靴 또는 고무靴	2着 5足	6개월에1着 2.4개월에1足	採炭工 採鑛工 掘進工 支柱工 代水工 坑內運搬工 鐵道機 關士 및 同助手
2級	作業服 勞動靴 또는 고무靴	1着 4足	1년에1着 3個月1足	粉工 鹽電解工 人絹紡絲工 酸工(直接製造部門에 屬하 는 勞動者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製鍊工(爐前工 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索道工(注油에 限함 其他 는 3級에 適用함) 鍛造工(에이야스침함마 1/4以上 使用 者에 限함 其他는 4級에 適用함) 壓延伸張工 製銑工 製 銅工 船舶木手 電爐工 鑄物工 大企業所에 限함 其他는 4 級에 適用함) 製罐工 瓦斯發生爐工 電氣電力工 流筏工 漁撈工 造魂工 投入工(爐上投入工 電爐工 完成工 機械修 理及制作完成工 5級以上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化學肥料工 보이라工(10 以上 動力使用 勞動者에 限함 其他 및 電動力은 3級에 適用함 硝子窯業工 石窯荷造工

				<p>硫化曹達工 鐵道線路手 船舶機關士 汽船舶長 蔴工 運材工 枕木工 無線工 有線加設工 電極製造工(電氣爐用電極製造工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p> <p>熱處理工 爐上 起重機工엔진공6(完成工에 準함)</p> <p>石灰乾溜工 坑內車道工 坑內配車工 築爐工 消石灰工 水銀整流機修理工 酸溶工 熔接工(電氣瓦斯카-봉熔接6級以上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平爐工 骸炭爐工 坑內充填工 原石採石工 石灰爐工 燒結工 燒成爐工 製炭工 製材工(배밀기와밧는 勞動者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配管工(地下配管工에 限함) 坑內發破工 木手(木手6級以上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旋盤工(7級以上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反射爐工 콩크리트工 煉炭工 아미노산工(直接取扱하는 勞動者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鉛工(鉛製造加工 酸化光明圖製造工에 限함 其他는 3級에 適用함) 潛函工 有機合成工 燒爐工</p>
3級	作業服 勞動靴 또는 고무靴	1着 3足	1년에1着 4個月에1足	<p>消水工 粉碎 및 破碎工(카바이트아람담 石灰鑄石粉碎工) 電煉工 콤파운트工 人絹洗條工 電工 發電機運轉工 配管修理工 帆船員 自動電話機械工·自動車運轉手 및 同助手 目立工 石工 벽돌工 鐵筋工 捲線工 重荷運搬工 보-루반工 平削工 製釘工 坑內우인지工 型削工 研磨工 齒切工 후라이스工 坑內運搬工 躉獎工 製鹽工 製油工 裁刻工 石綿製造工 庫內手 麻로-부製造工 고무工 人絹原液工 호루아링工 計器修理製造工 베-크라이트工 漂白工 打工 靑化電煉工 染色工 試錐工 淨遊선광工 爐過工 亞麻浸水工 著工 亞麻제선工 亞麻 莖工 坑內車道工 剝土工 曹達工(可性)鉛版工 가소링카運轉工 瓦斯清淨工 汽車檢車員 電車修理工 蓄電池工(電信動力工包含함) 油脂工 輪轉機工 活版機械工 變流機運轉工 니트루구리세린製造工 石油蒸溜工 構內手 鐵道輕機機關士 프레스工 세멘트肥料荷造工 編筏工 抄造工 士役工 玄米精米工 水銀整流機運轉工 트럭트르運轉手 및 同助手 이미 酸工 水柱工 아스팔트工 팔프工 팔프薪才工 鐵道燃料工 木型工(鑄物水型에</p>

				限함 其他는 4級에 適用함) 電解工 콘크리트工 坑夫 坑外發破工
4級	作業服 勞動靴 또는 고무靴	1着 2足	1년에1着 6個月에1足	車道工 洗鐵工 塗裝工 鍛冶工 鋸引工 注油工 水產物下陸工 貫太工 뽕뽕工 普通荷造工 電車運轉手 窯業工 包裝工 撰別工 洗條工 打線工 고무製造工 먹기工 鈹金工 銅版工 乾電池工 肥料配合工 火藥製造工 酸素製造工 鐵道倦楊工 上架工 織布工 操絲工 前紡工 精紡工 編織工 手織工 織造完成工 通信員 製鋼工 高壓充電工 成型工 굿도레-루工 製粉工 간드라工 蒸溜工 푸로링구工 精米工 蒸解工 잉크製造工 白黑製造工 黑線工 叩解工 鐵道信號員 전세트工 坑外유인저工 冷凍工 팔프갈각刻草工 合板工 牧夫 農業勞動者 組成驛轉徹工 구-렌運轉工 람푸처리工 皮革工 鐵道땀또工 鐵道保安手

別表第3號

營養劑無償給與等級別表

等級	品種別	1個月1人當 基準量	職 種 別
1級	食 油	600 g	採炭工 採鑛工 支柱工 掘進工
	葡萄糖	400 g	
	澱 粉	1,200 g	
	水	400 g	
	食 鹽	75 g	
	肝 油	100 g	
2級	食 油	500 g	坑內運搬工 潛函工 潛水工 간射爐工 人絹燥絲工
	葡萄糖	350 g	아니린製造工 水銀工 漂白粉製造工 鹽素製造工
	澱 粉	1,000 g	鉛工 燒爐工 카바이트平爐工 壓延伸張工 造魂工
	水	400 g	제선工 鍛冶工(에이야함바5噸以上 使用者에 限함)
	食 鹽	125 g	가스發生爐工 鐵道機關士 및 同助手

◇ 로력수급 및 정착에 관한 규정

(1949. 8. 2. 내각결정 제107호)

제1조 본규정은 모든 국가기업소(이하 기업소라고 약칭한다) 들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요구되는 로력을 수급하며 수급된 로력을 정착시켜 그들의 기술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로동상 및 각도(평양시를 포함한다-이하도 이와같다) 인민위원회위원장은 로력원천조사(勞力源泉調査)를 정확히 할 것이며 기업소 책임자는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의 협조를 받아 전체소요로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시, 구역, 면, 인민위원회위원장은 매4분기마다 로동성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소관구역내의 산간(山間)지대에서 전직하여야할 화전민 기타 농촌 도시 및 생산직장 부근의 유희(遊休) 남녀로력을 완전히 조사하여 해당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모든 기업소들의 로력수급사업을 조절하기 위하여 로력을 요구하는 각성(내각직속국을 포함한다-이하도 이와같다)은 매분기마다 소요부족로력수를 로동성에 등록하여야하며 각기업소에서는 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해당시·군·구역인민위원회에 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전항의 부족로력이란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있으며 또는 계획에의 하여 장차 수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제5조 로력의 수급은 모든 기업소 책임자의 명의로서 등록된 소요로력등록(이하구인(求人)등록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되는 로력동원에 대하여서는 로동행정기관 및 로동소개소는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

제6조 로력을 수급받은 기업소에서는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에 채용의 여부를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로동소개소 또는 기업소에서 타도(他道)의 로력을 모집하여 오려고 할때에는 로동상 또는 소관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증명서를 지참(持參)하여야 하며 해당도에서는 이상증명서지참자의 수급사업을 방조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소에서 타도의 로력을 모집하고 인술하여 가려고 할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모집한 정형과 인원수를 해당도 인민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소속한자기도 로동소개소를 경유하여 그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소에서 로력을 직접모집하려고 할때에는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같은 경우에는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의 허가없이 로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로력을 채용한 후에는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간부 및 기술자를 채용할 때
2. 기업소에서 직접 구직하여온 로력을 채용한 때

제10조 다음과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며 소관로동행정기관책임자는 로력모집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로력모집허가서를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委託)한 때
2. 타기업소에 고용되고 있는 자를 유인(誘引)하여 이를 모집한 때
3. 응모자를 로력모집허가서에 기재한 기업소책임자 이외의 타인에게 주선한 때

제11조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에서 로력을 모집하여주는 경우에 비용은 로력을 수급 받는 기업소에서 선불로 부담한다.

제1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응모자의 청구에 따라 기업소 책임자의 부담으로서 응모자의 귀향에 필요한 모든 조치(措置)를 하여야 한다.

1. 로동계약사항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상당히 상위될 때
2. 일단 응모한 후 또는 시험기간(試驗期間)을 통하여 직장책임자의 사정(事情)에 의하여 응모자를 채용하지 않을 때

제13조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가 로력을 수급하여 주었으나 기업소 책임자가 주택 기타 조건을 제때에 지어주지 않기때문에 로동자들이 이동(移動)하였을 때는 이동된 부족수에 한하여 로동행정기관 또는 로동소개소에 그 수급을 의뢰할 수 없다.

제14조 기업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1. 구인등록에 있어서 로동 및 고용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2. 고용조건을 리행하지 않을 때
3. 수급한 로력을 불법하게 이를 거절할 때

제15조 기업소에서 로력을 채용할때에는 전직장증명서 또는 이동수속이 완비된 로동수첩(勞動手帖) 및 로동수첩대장 또는 리(동) 인민위원회위원장이 증명한 무적증명서(농민은 전직 증명서)와 전체 수속이 완비된 공민증 또는 출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채용하되 시험기간이 끝난후 5일 이내에 로동수첩을 교부 또는 필요한 수속을 완필하고 공민증과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소에서 새로 채용하는 로력들에 대하여 로동수첩 및 로동수첩대장 이동란(異動欄)에 전직장 책임자가 확인한 이동증명등을 검토 또는 접수함이 없이 함부로 류동하는 타기업소의 로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해당기업소 책임자는 채용인원 1인당 1,000원 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

제17조 전직장 증명서 발급책임자 또는 노동수첩 및 노동수첩대장관계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증명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處罰)한다.

제18조 리(동)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무직증명서 발행을 거절 또는 태만하였을 때에는 법적책임을 진다.

제19조 노동소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적책임을 진다.

1. 노동소개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위반되는 광고를 하였을 때
2. 로동을 소개할때 구직자의 성행(性行) 기능(技能) 건강상태(健康狀態) 가정상황(家庭狀況) 로동 및 고용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소개하든지 또는 엄폐한 때
3. 고용중에 있는자를 유인하여 이를 다른곳에 소개한 때
4. 노동소개에 관하여 고용당사자간에 재물(財物) 기타 리익을 받고 주는데 관계하였을 때
5. 정당한 리유없이 구직등록을 거부할 때
6. 정당한 리유없이 구직등록에 의하여 로동을 소개하지 않을 때

제20조 직장 이동에 관한 일체증명 또는 무직증명서를 부정취득한 자 또는 이를 위조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1조 구직자는 노동행정기관 또는 노동소개소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되 자기의 성능 기능 기술 및 건강상태 또는 로동경력 기타 소정기제시항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구직자가 전항을 허위로 조작 또는 엄폐등록하여 취직되었을 때에는 기업소 책임자는 이를 해직시킬 수 있다.

부 칙

「로동소개소 설치규칙」 1947년 3월 10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로동국 규칙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

◇ 로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

(1949. 12. 27. 내각결정 제196호)

제1조 산업 운수 체신 건설직장 및 기타기관(이하 직장이라고 략칭한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의 임금은 본 규정 및 별지 「로동자임금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직장 책임자는 본 규정 및 별지 로동자 임금표에 의한 로동임금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행정측 직업동맹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기술자 모범로동자로서 공장 기업소 및 직장(체호)단위로 로동임금 사정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조 로동임금 사정위원회는 로동자의 직종을 규정하며 로동자의 기능과 작업경험과 작업

조건을 정확히 고려하여 매개노동자의 임금등급을 공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책임자는 로동임금 사정위원회의 사업보고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매개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것이며 정확한 임금적용실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직장 책임자는 매개노동자의 「로동임금등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성명 임금 채용년월 일 임금개정 년월일 로동경력 직종 및 임금등급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책임자는 매개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임금액을 즉시 로동수첩에 기입하여 주어야하며 동시에 해당직종 임금등 급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각성 내각직속국에서는 본규정에 의한 임금적용에 있어서 산하직장의 임금적용사업과 직장간의 직종별 임금적용상 균형을 보장하는 사업을 지도하여야하며 로동성은 각성 내각 직속국간의 임금적용상 균형을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책임자는 본규정에 의한 임금적용사업을 실시한후 계속적으로 이를 정확히 보장 하기 위하여 직장실정에 따라 상반기 하반년에 건별사업을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책임자는 로동자의 기능수준이 향상된 경우에는 이를 제때에 사정하여 해당임금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로동자의 실책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제품이 소정요구에는 만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리용할 수 있는 부분적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그 일꾼의 기본임금의 반액 이내에서 평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로동자가 생산제품이 불합격품이 될 것을 예견하고도 상급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상급책임자의 작업의 정지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지시를 받고 계속한 이후의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기업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게 지급하는 매달임금의 50% 이내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상시킨다.

제12조 로동자의 실책이 없이 불합격품을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기본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 기술적 검사기관에서 제품접수이후에 발견한 로동자의 실책으로 되지않는 불합격품은 합격품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새로운 생산습득 기간에 로동자의 실책으로 되지않는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그 기본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 로동자의 실책으로 생산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로동자가 규정된 휴전률을 초과하여 생산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하여 상급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이미 생산 정지된 것을 즉시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 노동자가 생산정지로 인하여 다른 작업에 배치되는 것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절할 때에는 그 휴업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노동자에게 책임이없이 생산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중의 임금은 기본임금의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9조 새로운 생산습득 기간에 있어서 노동자의 실책으로 되지 않은 생산 정지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을 지급한다.

제20조 노동자의 실책으로 인하여 그에게 지정된 최저의무인 생산정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최소임금(기본임금)도 그에게 보장함이 없이 그가 생산한 제품의 수량과 질에 따라서 해당임금을 지급한다.

제21조 노동자의 실책이 없이 생산정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기본임금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서 기본임금이라 함은 별지 노동자임금표의 보통노동자 임금을 말한다.

제23조 도급임금제는 도급제에 관한 법규에 의거하여 정확한 도급기준량과 단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문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도급제 노동자가 보통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노동자 임금표」의 보통노동자 임금을 적용한다.

제25조 별지 노동자임금표에 포함되지 않는 신직종 및 그 임금등급은 본 규정 및 별지 노동자 임금표에 의거하여 관계기관 및 직업총동맹의 합의를 얻어 노동상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본 규정 및 별지 노동자 임금표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거나 동급제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진다.

제27조 본 규정 및 별지 노동자 임금표 실시와 동시에 1948년 5월 27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39호(산업 운수 체신 노동자 봉급개정에 관한 결정)는 이를 폐지한다.

노동자임금등급표

구 분	임금계수		임금등급							
	부문별	임금별	1	2	3	4	5	6	7	8
보 통 로 부 문	경 로 동	시간임금	2.40	2.64	2.89	3.41	4.03	4.85	5.70	6.87
		일 임 금	19.23	21.15	23.07	27.30	32.69	38.84	46.15	55.00
		월 임 금	500.00	550.00	600.00	710.00	850.00	1,010.00	1,200.00	1,430.00
동 자 임 부 문	중 로 동	시간임금	2.50	2.74	3.12	3.70	4.42	5.28	6.25	7.45
		일 임 금	20.00	21.92	25.00	29.61	35.38	42.30	50.00	59.61
		월 임 금	520.00	570.00	650.00	770.00	920.00	1,100.00	1,350.00	1,550.00

금

	(7시간)	2.96	3.24	3.90	4.61	5.49	6.53	7.69	9.17	
	시간임금									
(지 하 유 해)	(8시간)	2.59	2.83	3.41	4.03	4.80	5.72	6.73	8.02	
	시간임금									
로동부문	일 임금	20.76	22.69	27.30	32.30	38.46	45.76	53.84	64.23	
	월 임금	540.00	590.00	710.00	840.00	1000.00	1,190.00	1,400.00	1,670.00	
도 급 로 부 문	경 로 동	시간임금	2.45	2.69	3.17	3.79	4.51	5.38	6.39	7.59
		일 임금	19.61	21.53	25.38	30.38	36.15	43.07	51.15	60.76
		월 임금	510.00	560.00	660.00	790.00	940.00	1,120.00	1,330.00	1,580.00
중 로 동 부 문	중 로 동	시간임금	2.64	2.88	3.41	4.08	4.85	5.81	6.87	8.17
		일 임금	21.15	23.07	27.30	32.69	38.84	46.53	55.00	65.38
		월 임금	550.00	600.00	710.00	850.00	1,010.00	1,210.00	1,430.00	1,700.00
자 입 부 문	(지 하 유 해)	(7시간)	3.24	3.51	4.23	5.05	5.98	7.14	8.40	10.05
		시간임금								
	로동부문	(8시간)	2.83	3.07	3.70	4.42	5.24	6.25	7.35	8.79
		시간임금								
		일 임금	22.69	24.61	29.61	35.30	41.92	50.00	58.84	70.38
	월 임금	640.00	640.00	770.00	920.00	1,090.00	1,300.00	1,530.00	1,830.00	

비고 1. 일임금산출은 월임금을 26일로 제한.

2. 시간임금산출은 월임금을 208시간으로 제한 “단 7시간 임금산출은 182시간으로 제한”

3. 본표 보통로동자의 임금은 임금계수에 의할때에는 경로동 부문임금 1급 460원 2급 510원 중로동 부문임금 1급 500원 2급 550원으로 되나 현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1급임금 500원 2급임금 550원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동 부문의 1급을 500원 2급을 550원으로 중로동부문의 1급을 520원 2급을 570원으로 정한다.

임금 등급	임금	(경로동부분)			경 공 업 부 문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430	1	형기제조수리공	8-4	2	제압기수리공	8-3
		3	인삼재배공	8-3			
		7	1,200	4	면방롤푸공	7-2	5
		6	면방로-라공	7-3	7	직포공	7-2
		8	직포보전공	7-3	9	견직공	7-2
		10	편직기계수리공	7-3	11	금망직조공	7-2
		12	스-프기계수리공	7-4	13	샷돌제작공	7-2
		14	시-루공	7-2	15	제유공	7-3
		16	특수고무공	7-2	17	자전차다이아제조공	7-3
		18	신분기계수리공	7-3	19	초지공	7-3
		20	화학천평수리공	7-2	21	분석공	7-2
		22	옷칠공	7-2	23	냉동공	7-2
		24	양복재단공	7-5	25	인삼가공공	7-2
		26	피혁형입재단공	7-2	27	무기유기합성제약공	7-2
0	1,000	28	면방정공	6-2	29	인견성련공	6-2
		30	조달조제공	6-3	31	모방카트공	6-2
		32	염색공	6-2	33	인견선반공	6-2
		34	인견표백공	6-3	35	자견공	6-2
		36	견조사공	6-1	37	메리야스직조공	6-2
		38	알새루회쇄공	6-2	39	호인기운전공	6-2
		40	바리제작공	6-2	41	타올직조공	6-1
		42	비스코-스속성공	6-3	43	조달회수공	6-2
		44	광포기직공	6-1	45	장감직조공	6-1
		46	조은공	6-2	47	구직공	6-1
		48	봉조공	6-1	49	팔프침적공	6-2
		50	전분제조공	6-2	51	랑화공	6-2
		52	전구배기공	6-2	53	전구절소정제공	6-2
		54	고해공	6-3	55	팔프원료중해공	6-3
		56	아마침수공	6-3	57	팔프원료표백해공	6-3

58	팔프제자조주공	6-2	59	전구초자용해공	6-3
60	전구초자원료조합공	6-2	61	전구초자취공	6-2
62	고무로-라공	6-1	63	고무배합공	6-1
64	단영용해공	6-2	65	보이루제조공	6-2
66	간유제조공	6-2	67	제침공	6-1
68	양복재봉공	6-1	69	귀금속제공	6-2
70	성양통일기공	6-1	71	구물마쇄공	6-2
72	연초권상공	6-2	73	모자제조공	6-1

임금 등급	임금	(경로동부문) 경 공 업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작 종	등급		
6	1,010	74	택쓰제조공	6-1	75	빼인트제조공	6-3		
		76	피혁태고공	6-3	77	주사약공	6-1		
		78	피혁재봉공	6-1	79	피혁가공공	6-1		
		80	식피공	6-3	81	수제화공	6-1		
		82	란디스공	6-1	83	아리안쓰공	6-1		
		84	보통제약공	6-2	85	재봉기수리공	6-2		
		5	850	86	저잠공	5-1	87	람처리공	5-2
				88	보방치즈공	5-1	89	모방칼코마공	5-1
				90	노-즐세조공	5-2	91	모방전방공	5-1
				92	모방조방공	5-1	93	바디수리공	5-2
				94	세모공	5-2	95	혼타면공	5-2
				96	인견건조공	5-1	97	견작태공	5-2
				98	견연견공	5-1	99	해사공	5-1
				100	견제공	5-1	101	양모선별공	5-1
102	로포세탁공			5-3	103	정밀공	5-2		
104	방사기아뽀뽀공			5-2	105	스프정령건조공	5-1		
106	합사공	5-1	107	견실타래공	5-1				
108	호부공	5-1	109	아마쇄경공	5-2				
110	위권공	5-1	111	전분류세공	5-2				
112	제저쇄목공	5-1	113	견화기운전공	5-2				
114	발효공	5-1	115	팔프방공	5-2				

116	삼로-프제조공	5-2	117	아마제섬공	5-2
118	팔프원료제조선별공	5-2	119	전구스탐공	5-1
120	전구봉지공	5-1	121	신인피복공	5-1
122	곡물침적공	5-2	123	포도탕제조공	5-2
124	정제유공	5-2	125	초자기공공	5-1
126	아미노산장유공	5-2	127	재생고무제조공	5-3
128	제과공	5-1	129	성양약배합공	5-2
130	액쓰제조공	5-2	131	가세잉제조공	5-2
132	장유공	5-2	133	약염제조공	5-2
134	제각공	5-1	135	통조림공	5-1
136	고무화밋포화제조공	5-1	137	제방공	5-1
138	면방류면공	5-2	139	휘구제조공	5-2
140	오바로구재봉공	5-1	141	구레제조공	5-1
142	제승공	5-1	143	하무제조공	5-2
144	와니쓰제조공	5-1	145	피혁석회공	5-3
146	탈회공	5-3	147	마삭공	5-2
148	피혁신장공	5-3	149	모발공	5-2
150	리타공	5-2	151	탈지면공	5-1
152	생약제조공	5-2	153	침결제공	5-2
154	효모공	5-1	155	엠패이아크로스공	5-2
156	건설숙공	4-1	157	령통공	4-1
158	잠전공	4-1	159	직물사상공	4-1
160	선잡공	4-1	161	면선별공	4-1
162	팔프선별공	4-1	163	축목제조공	4-2
164	안카공	4-1	165	전구계선공	4-1
166	전구도입선공	4-1	167	전구완성공	4-1
168	시롭푸공	4-1	169	연필제조공	4-1
170	백목제조공	4-1	171	치분제조공	4-1
172	포감지공	4-1	173	연초조화공	4-2
174	술제조공	4-1	175	고무중부공	4-1
176	엽전공	4-1	177	연초입감공	4-1
178	크림제조공	4-1	179	화장수제조공	4-1

3	600	180	포바트제조공	4-1	181	들죽제조공	4-1
		182	크레용제조공	4-1	183	단추제조공	4-1
		184	연초건초냉각공	4-1	185	잉크제조공	4-1
		186	등사잉크제조공	4-2	187	피복완성공	4-1
		188	제분공	4-1	189	지테프공	4-1
		190	지롱공	4-1	191	세효공	4-1
		192	성냥입각공	4-1	193	연초해포공	4-2
		194	애플공	4-1	195	제약포장공	4-1
		196	피혁주유공	4-1	197	피복대림공	4-1
		198	초지원성공	4-1	199	연사공	4-1
		200	마카나의트공	4-1			
		201	양말작속공	3-1	202	종자선별공	3-1
		203	조목선별공	3-1	204	전구초자관절공	3-1
		205	전구관제공	3-1	206	직물검흡공	3-1

임금 등급	임금	(경로동부문) 일 반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200	215	요리사	7-2			
6	1,010	216	리발공	6-1	217	시계수리공	6-2
		218	원형목통제조공	6-2	219	토기제조공	6-3
		220	오물청소공	6-3	221	도살공	6-3
		222	장위공	6-2	223	현미공	6-2
		224	목기제조공	6-1	225	한지제조공	6-3
		226	조각공	6-1	227	석기제조공	6-2
		228	안경공	6-1	229	미용사	6-1
		230	정미기계수리공	6-3	231	곡물하조공	6-3
5	850	232	인장공	6-2	233	죽세공	5-1
		234	판매원	5-1	235	창고원	5-1

4	710	236	두부공	5-1	237	세탁공	5-1
		238	식 모	5-1	239	동사원지제조공	5-1
		240	소세지제조공	5-2	241	수 위	5-1
		242	정미공	5-2			
		243	당면공	4-1	244	소채가공공	4-1
		245	질산제조공	4-1	246	벽지제조공	4-1
		247	식당위생원	4-1	248	잡 공	4-1
3	600	249	승강기운전수	3-1			
2	550	250	련락원	2-1			

등급	임금	(경로동부문)			출 판 부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430	251	화 공	8-4			
7	1,200	252	옵셋트기계공	7-3	253	코로타이프공	7-3
		254	자모제조공	7-2	255	평판제판공	7-3
		256	륄전기운전공	7-3			
6	1,010	257	문선공	6-2	258	식자공	6-2
		250	활판기계공	6-2	260	석판기계공	6-3
		261	교정원	6-4	262	지형공	6-2
		263	제본공	6-2	264	프린트공	6-4
5	850	265	제본완성기계공	5-1	266	제본재단기계공	5-1
		267	해판공	5-2			
4	710	268	집지공	4-1	269	종합공	4-1
		270	표지공	4-1	271	해지공	4-1
		272	로라공	4-1	273	교식공	4-3
3	600	274	계산공	3-1			

등급	임금	(경로동부문)			철 도 부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500	1	기관사	8-6	2	기법선화물선기관사	8-6
		3	기법선화물선운전사	8-6	4	검사원	8-6
7	1,300	5	엔진공	7-5	6	선로원	7-4
		7	연료원	7-4	8	전기기관사	7-5
		9	특수트럭운전공	7-5			

6	1,100	10	자동차운전사	6-4	11	렬차차장	6-4	
		12	검차원	6-4	13	기관조사	6-3	
5	920	14	수송공	6-3	16	렬차화물원	5-4	
		15	경기사	5-4		18	운반공	5-2
		17	선원	5-3		20	기관차조사견습공	5-2
		19	우마차원	5-4		22	신호보안원	5-4
		21	선호원	5-3		24	모-타카운전사	5-4
		23	권양사	5-3		26	화물자동차조수	5-3
		26	차전원	5-4		28	순회원	5-3
		27	련결원	5-3		30	일반화조공	5-2
		29	전철원	5-4		33	잉크라인신호원	4-1
		31	전기기관조사	4-1				
4	770	32	전차자동차차장	4-1	35	역무원	4-2	
		34	렬차수	4-2				
		36	도륵공	3-1				
3	650	37	선로간수					

입금 등급	입금	(중로동부문) 기 계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550	38	제관공	8-3	39	주물공	8-3
		40	조선특공	8-4	41	조립공	8-3
		42	특형공	8-3	43	일반기계수리공	8-3
		44	증기기관사	8-3	45	단야공	8-6
7	1,300	46	배관공	7-4	47	상가공	7-4
		48	벌타공	7-5	49	전기용접공	7-3
		50	가스용접공	7-3	51	선반공	7-3
		52	제서공	7-3			
6	1,100	53	줄칼단조공	6-3	54	줄칼완성공	6-3
		55	의장공	6-2	56	치절공	6-3
		57	판금공	6-2	58	줄칼소입공	6-3
		59	프레스공	6-3	60	구라인다선반공	6-2
		61	형삭공	6-3	62	후라이스공	6-3

5	920	63	진극공	6-3	64	형삭공	6-3
		65	줄칼목립공	5-3	66	연마공	6-3
		67	불방공	5-3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전 기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500	68	발전기운전공	8-4	69	배전반공	8-4
7		70	애선공	5-4			
6	1,300	71	전동기변압기제작수리공	7-3	72	전기내선공	7-3
5	1,100	73	전 공	6-2	74	전차검사원	6-4
	920	75	전차운전수	5-4	76	집금원	5-4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건 재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300	77	내화연와요적요출공	7-5	78	내연와연료공	7-4
		79	내화연와소성공	7-4			
6	1,100	80	세멘트박카공	6-4	81	세멘트적차공	6-4
		82	원석적차공	6-4	83	초자원료공	6-4
		84	도자기성형공	6-2	85	내화연와성형공	6-3
		86	세멘트원료공	6-4	87	세멘트미-투운전공	6-4
		88	미분탄공	6-3	89	스레트제조공	6-3
	920	90	결단공	5-3	91	도자기제감공	5-3
		92	도자기사유공	5-1	93	적연와성형공	5-3
		94	다이르성형공	5-3	95	도자기입감요적요술공	5-2
		96	도자기원료공	5-2	97	초자포장공	5-3
	770	98	세멘트지대공	4-2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출 판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550	99	무선통신사	8-4			
7	1,300	100	무선공	7-3	101	체신선로공	7-2
		102	반송전화공	7-2	103	자동전화기계공	7-2
		104	유선통신사	7-4			
6	1,100	105	체신시험공	6-2	106	전신기계공	6-2
		107	전화기계공	6-2			

5	920	109	방부공	5-2	110	전화통신사	5-1
		111	통신원	5-3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토 건 부 문 직 중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550	112	연 공	8-4			
7	1,300	113	목 공	7-3	114	석 공	7-3
		115	미장공	7-3	116	축석공	7-4
		117	철근공	7-3	118	준첩전기관사	7-5
		119	준첩선운전사	7-5			
6	1,100	120	포장로-타운전공	6-4	121	전기삽운전공	6-3
		122	원석제석공	6-3	123	남빙위생공	6-3
		124	도장공	6-3	125	원예공	6-3
		126	아스팔트포장공	6-3	127	콩크리트공	6-3
		128	난방공	6-3	129	하수도준첩공	6-4
	920	130	벽돌공	6-3	131	아스팔트용해공	6-3
5		132	기와공	5-3	133	토공	5-3
		134	세멘트가공공	5-3	135	방수공	5-3
		136	스테-트공	5-3	137	스테-트가공공	5-3
		138	잔디공	5-3	139	투석공	5-4
		140	차도공	5-3	141	까소링차운전공	4-3
	770	142	펄룬운전공	5-1	143	노과공	5-4
4		144	표구공	4-2	145	유리공	4-2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립 산 부 문 직 중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300	146	벌목공	7-4	147	류별공	7-4
		148	소발구운제공	7-5	149	대차승차공	7-5
		150	산지집제공	7-5	151	목립공	7-3
6	1,100	152	립사원목목두공	6-4	153	관류공	6-4
		154	천조공	6-4	155	립산까소링차운전공	6-2
		156	신목공	6-4	157	대차점시리공	6-4
		158	제탄공	6-4	159	침목공	6-4

5	920	160	편발공	6-4	161	레-부르공	6-3
		162	제재반도공	6-4	163	베미리공	6-4
		164	원목투입공	5-4	165	통혈공	5-3
		166	양륙공	5-3	167	베니아로-타리공	5-3
		168	합판공	5-3	169	선재공	5-3
		170	인만수거공	5-3	171	갓도소-공	5-3
		172	그로링그공	5-3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수 산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500	173	어선선장	8-6	174	어로장	8-6
7	1,300	175	어선기관사	7-4			
6	1,100	176	어로원	6-4			
5	920	177	하륙공	5-4	178	작태공	5-2
		179	활복공	5-2	180	엽침공	5-2
		181	관태공	5-2	182	개덕공	5-2
		183	한첩공	5-2	184	어분공	5-2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출 판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300	185	뜨락들운전공	7-4	186	조교원	7-4
		187	잠종공	7-3			
6	1,100	188	농업로동자	6-2	189	과수로동자	6-2
		190	과수양묘공	6-2	191	장제원	6-4
		192	작잠공	6-3	193	말관리공	6-3
		194	로초애취공	6-5	195	약초제배로동자	6-3
5	920	196	사방공	6-4			
		197	차유공	5-3	198	종양공	5-3
		199	양돈공	5-2	200	가축시험공	5-1
		201	유우관리공	5-2	202	잠종검사공	5-3
4	770	203	조립공	5-2	204	양모공	4-1
		205	사료조리공	5-2	206	양로동	4-1
		207	양계공	4-1	208	육추공	4-2

임금 등급	임금	(중로동부문) 제 염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300	209	제염공	7-4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탄 광 광 산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670	1	항내채탄공	8-5	2	항내채광공	8-5
		3	항내지주공	8-6	4	항내굴진공	8-6
7	1,400	5	항내승차공	7-5	6	탄광광산항내보전공	7-4
		7	항내수굴공	7-4	8	항태의시추공	7-3
		9	화약취급공	7-5	10	측량공	7-3
6	1,190	11	항내충전공	6-4	12	항내기계운전공	6-3
		13	분쇄공	6-2	14	항내차도공	6-4
		15	런탄제조공	6-2	16	항내가스링차운전공	6-4
		17	항내의압축기운전공	6-2	18	도라이크팅운전공	6-3
		19	삭도주유공	6-4	20	항내등장공	6-4
		21	광산미루운전공	6-2	22	분의선강공	6-2
		23	샤르나운전공	6-2	24	청화제련공	6-2
		25	대활공	6-4	26	항내운반공	6-4
5	1,000	27	항내잡부	5-4	28	탄광광산정운반공	5-3
		29	박토공	5-4	30	탄광광산항의소관차 운전공	5-2
		31	광산테블공	5-2	32	수선광공	5-2
		33	도렛샤운전공	5-2	34	삭도운전공	5-2
4	840	35	삭도반기공	4-2	36	배차공	4-1

화 학 부 문							
8	1,670	37	유산제조공	8-5	38	접촉류산공	8-5
		39	류화석분쇄공	8-6	40	류산기계수리공	8-6
		41	스은정유기수리공	8-5	42	연 공	8-5
		43	적질제조공	8-6	44	카-바이트전로공	8-4
		45	카-바이트수리공	8-6	46	수-다전해조수리공	8-6
		47	표백분제조공	8-6	48	표백분실출공	8-6

		49	위잉크라운전공	8-6	50	고압압축기수리공	8-6
		51	질소분리기수리공	8-5	52	고압공기압축기수리공	8-6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화 학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670	53	고압공기(30,004) 압축기수리공	8-6	54	류린안비료제조공	8-6
7	1,400	56	수은정류기운전공	7-5	57	류산송산탈초공	7-6
		58	암모니아기계운전공	7-5	59	린산전기로공	7-6
		60	질소분리기운전공	7-5	61	공기압축기운전공	7-5
		62	암모니아합성탄수리공	7-5	63	제탄기회수수리공	7-6
		64	수소변송공	7-4	65	회전변류기수리공	7-5
		66	합성탄조작공	7-4	67	알데히드제조공	7-5
		68	진해장치수리공	7-6	69	초산제조공	7-6
		70	염전해공	7-4	71	아란담전로공	7-5
		72	액체염소제조공	7-5	73	염화석회제조공	7-5
		74	아란담전로수리공	7-5	75	암모니아합성축매공	7-5
		76	농류산흡수탑운전공	7-6	77	산소제조공	7-6
		78	에-텔제조공	7-5	79	동판극탄도금공	7-5
		80	류산비료제조공	7-6	81	초안제조공	7-4
		82	비누검화혼화공	7-4	83	연구시험공	7-5
		84	아세통반응탑조작공	7-5	85	아란담터쇄공	7-5
		86	석질하조공	7-5	87	메다놀합성공	7-5
		88	메다놀기계수리공	7-5	89	산소제조공	7-5
		90	홀미링공	7-5	91	연주물공	7-5
		92	소-다전해조와사방지공	7-6	93	염산제조공	7-5
		94	게소침전로공	7-5	95	제-산소-다전기로공	7-5
		96	게-타소-다용해공	7-5	97	아세지링발생공	7-5
		98	아세지링부택크제조공	7-5	99	전극성형공	7-5
		100	전극소성로공	7-5	101	전극흑연로공	7-5
		102	산화물제조공	7-6			
		103	염안제조공	6-4	104	류산소재운반공	6-5

105	린산원료투입공	6-5	106	린산탐조작공	6-4
107	카-바이트분쇄공	6-5	108	카-바이트제품처리공	6-4
109	카-바이트하조공	6-3	110	아세지링청쟁공	6-4
111	비료하조공	6-4	112	린광원료투입공	6-5
113	아세지링부택크하조공	6-4	114	질소재탄기운전공	6-4
115	회전벗류기운전공	6-4	116	수은정제공	6-4
117	페스트제조공	6-3	118	아세통화조공	6-4
119	염화바륨제조공	6-4	120	산화수은공	6-4
121	전해장치운전공	6-4	122	가스혼화공	6-5
123	아세통정유탐운전공	6-5	124	전극원료전기로공	6-5
125	식염전해공	6-5	126	고체가성소다공	6-5
127	조-탈회제조공	6-4	128	합금촉매제조공	6-5
129	염수정쟁공	6-4	130	알루미늄제조공	6-4
131	구라인다제조공	6-3	132	전극원료분쇄공	6-5
133	경화유공	6-4	134	유지촉매공	6-3
135	우지분해공	6-4	136	구리세링제조공	6-4
137	전극원료혼합공	6-4	138	전극접합공	6-4
139	연탄압출신장공	6-4	140	메디투공	6-4
141	레-진압착공	6-4	142	우루도로방제공	6-4
143	세로로이드제조공	6-4	144	류화광석운반공	6-4
145	증기기관수리공	6-4	146	석고제조공	6-4
147	생석회제조공	6-4	148	소석회제조공	6-4
149	화학주조제조공	6-2	150	레-징공	6-4
151	동분쇄자제조공	6-2	152	린광석소결로공	6-4
153	과린산석질제조공	6-4	154	산화기운전공	6-4
155	질화소-다제조공	6-4	156	초안폭약혼화공	6-4
157	면조화공	6-4	158	지니도로구리세링초화공	6-4
159	백색조하공	6-3	160	석면제조공	6-4
161	혼산제조공	6-2	162	염소산바륨제조공	6-4
163	류산보이라공	6-4	164	류산마구비습제조공	6-2
165	류산비료수입공	6-5			

5	1,000	166	카-봉가공공	5-2	167	전극원료선별공	5-3		
		168	전극수압운전공	5-3	169	아-모카-봉제공	5-3		
		170	카-봉부라시제조공	5-2	171	전극선반공	5-3		
		172	운활유청정공	5-3	173	아린담분쇄공	5-2		
		174	호이스트운전공	5-3	175	니도로구리세링제조공	5-3		
		176	산소충신공	5-3	177	비누절단공	5-4		
		178	초자면제조공	5-2	179	류산반도체제조공	5-3		
		180	다란담제품처리공	5-2	181	중조공	5-1		
		182	파라핑제조공	5-2	183	다-류중류공	5-3		
		184	큼파운전공	5-3	185	베-크라이트공	5-2		
		186	로-도유제조공	5-3	187	도람관제조공	5-2		
		188	자병제조공	5-2	189	축전지제조공	5-2		
		190	부라와운전공	5-2	191	절연와니스제조공	5-2		
		192	타화공	5-2	193	이미혼화공	5-3		
		194	화전공	5-3	195	도화선공	5-1		
		196	산화철전극제조공	5-3	197	연화공	5-2		
		198	화약에열화공	5-2	199	중화공	5-2		
		200	사입공	5-2	201	화약질분공	5-2		
		202	면화약초축전압공	5-2	203	면화약정제조공	5-2		
		204	연통화약제조공	5-2	205	배출싱공	5-3		
		206	레줄싱초화공	5-3	207	지니도로나후다링제조공	5-3		
		208	면정제조공	5-1	209	초안절분공	5-2		
		210	면화약전조사분공	5-3	211	흑색화약제조공	5-3		
		212	흑선공	5-4	213	조립공	5-2		
		214	백색화약제조공	5-2	215	퇴관압신공	5-2		
		216	지나도로구리세팅공	5-2					
		4	840	217	전전지공	4-2	218	양초제조공	4-1
				219	전동차운전공	4-1	220	축전차운전공	4-1
				221	화장비누제조공	4-1	222	제빙공	4-1
				223	유리하조공	4-1	224	초장공	4-2
				225	관체제조공	4-1	226	도화선초장공	4-1

3	710	227	초안폭약하조공	4-2	228	선별공	4-2
		229	화약압신공	4-2			
		230	비누형타공	3-1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금 속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670	231	선철공	8-5	232	평로공	8-5
		233	전기로공	8-5	234	대형압연공	8-6
		235	중형압연공	8-6	236	소형압연공	8-5
		237	후판압연공	8-5	238	박판압연공	8-6
		239	단조공	8-5	240	축로공	8-5
		241	제련용광로공	8-5			
7	1,400	242	조괴공	7-5	243	합금철전로공	7-5
		244	해탄제조공	7-5	245	로상기중기운전공	7-5
		246	가열공	7-5	247	분쇄공	7-5
		248	소결공	7-5	249	카-봉용접공	7-5
		250	콤빠타공	7-5	251	아연배소로공	7-5
		252	꽃트공	7-5	253	아연전해공	7-5
		254	특수강배합공	7-4	255	립철회전로공	7-5
		256	와사발생로공	7-5	257	류주공	7-5
6	1,190	258	평로장입기운전공	6-4	259	핏치제조공	6-4
		260	경유제조공	6-4	261	벤줄제조공	6-4
		262	열처리공	6-4	263	열풍공	6-4
		264	유도로공	6-4	265	구리나와루투스결공	6-5
		266	선철원료공	6-5	267	제강원료공	6-5
		268	후판절단공	6-4	269	강판제조공	6-5
		270	회전로원료장입공	6-4	271	립철선별공	6-4
		272	구리나와루트배압공	6-4	273	배소로공	6-4
		274	골도레-투공	6-4	275	신철공	6-5
		276	카도늄제조공	6-4			
5	1,000	277	파철공	5-4	278	수선광공	5-3
		279	사탁공	5-2	280	콤빠다라스라구반출공	5-4

		281	구라나와루트소기운반공	5-4	282	아비산하조공	5-2
		283	박관절단공	5-2	284	반사로공	5-4
		285	철선공	5-3	286	기중기운전공	5-2
		287	아연류주공	5-3	288	교정공	5-3
		289	조강선단공	5-3	290	아연화제조공	5-2
		291	곡스세탄공	5-3	292	아연말하조공	5-2
		293	구라인다자취공	5-2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경 공 업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400	294	스프망사공	7-4	295	인견방사공	7-4
		296	방사기계수리공	7-4	297	이류회탄소공	7-4
		298	류화조달제조공	7-4			
6	1,190	299	아루세루류화공	6-3	300	산욕공	6-2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토 건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8	1,670	301	잡수공	8-4	302	잠항공	8-4
		303	용해로공	8-5	304	초자제관공	8-5
7	1,400	305	세멘트회전로소성공	7-3			
6	1,190	306	석회로공	6-5	307	경소마구네샤소성공	6-5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출 가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400	308	사진동판공	7-3			
6	1,190	309	활자주조공	6-2			
5	1,100	310	연관공	5-2			

임금 등급	임금	(지하유해로동) 철 도 부 문 직 종					
		번호	직 종	등급	번호	직 종	등급
7	1,400	311	기관차보이라수리공	7-5			

◇ 휴가허여 절차에 관한 규정

(1949. 11. 노동성규칙 제1호)

제1조 본규정은 모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노동법령에 의한 정확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가는 11개월이상 계속 노동한 자에 한하여 1차식 허여하며 그 기간 산정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휴가는 계속하여 노동한 기간이 11개월 미만인 때에도 허여할 수 있다.

1. 모범일꾼은 제1회 휴가에 있어서 10개월이상 노동한 때
2. 제2회 부터의 휴가를 동일한 직장에서 받은자로서 전회(前回) 휴가권리기간 완료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자 이 경우에 모범노동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조 직장책임자는 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직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할 때에는 해당 직업동맹과 합의하여 계속 노동이 11개월 미만이 된 일꾼에게도 그 기간을 리용하여 휴가를 허여할 수 있다.

제5조 노동자 사무원이 조동되었을 때에는 전직장의 노동기간을 현직장의 노동기간에 통산한다.

제6조 소년일꾼이 성년일꾼으로 넘거간 때에는 소년로동에 대한 휴가비율이 넘어간 후에는 성년로동에 대한 휴가비율로 그 일수를 산출합산하여 휴가를 허여한다.

전항의 합산한 일수의 단수가 1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 보충적휴가를 받는 직종에 해당하는 일꾼이 일반직종으로 또는 일반직종에 해당하는 일꾼이 보충적 휴가를 받는 직종으로 전환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에 해당한 비율로서 산출합산하여 그 휴가를 허여한다.

전항 합산한 일수의 단수가 1일 미만이 될때에는 제5조2항에 준한다.

제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무단결근한 기간
2. 범죄혐의로 구금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자의 구금기간
3.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가 계속 결근한 때의 1개월을 넘는 기간
4. 계절적인 일꾼이 계절관계로 휴업하는 기간

제9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로동으로 인정한다.

1. 참심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2. 증인 감정인으로서 사법기관에 소환된 기간

3. 최고인민회의의 각급인민위원회의 대의원으로 출석한 기간
4. 정당 사회단체의 대회협의회 위원회에 대표로서 출석한 기간
5. 천재, 전염병등의 발생으로 출근하지 못한 1개월까지의 기간
6. 국가기관 정당사회단체의 1개월 미만의 특별강습회에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리유로서 결근하는 기간
7. 국가적 요청에 의하여 본신사업 이외에 동원된 기간
9. 산전, 산후 휴가를 받은 기간
10. 개인사고로 인한 5일이내의 단기휴가를 받은 기간

제1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는 그 해의 휴가권리를 상실한다.

1. 계속 5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2. 1년에 10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3. 강제노동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제11조 직장책임자는 휴가실시계획을 년2회로 구분하여(상반년 하반기) 이를 소관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휴가권리 발생자에게는 그 년도내에 휴가를 허여하여야 하며 휴가허여는 권리발생 순서로 한다. 그러나 직장 사정에 따라서는 해당 직업동맹과 합의하여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3조 직장책임자는 노동행정기관이 제정한 양식에 의하여 종업원들의 휴가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충적 휴가는 정기적 휴가에 연속하여

그러나 직장 사정에 의하여 보충적 휴가를 정기적 휴가와 연속하여 허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직업동맹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소년일꾼의 휴가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허여하여야 한다.

제16조 겸업하는 일꾼의 휴가는 기본직장에서만 허여한다.

제17조 계절적 작업에 종사하는 일꾼의 휴가는 계절작업 시기가 지난때에 허여할 수 있다.

제18조 직장책임자는 휴가를 허여 할 때에는 휴가에 들어가기 10일전에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제4조의 특별사고로 인한 휴가를 허여할 때에는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연기하여 허여할 수 있다.

1. 휴가가 시작되는 10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지 못하여 사업인계를 하지 못한 때
2. 휴가기간의 임금을 휴가가 시작되기전에 지불하지 못한 때
3. 허여한 휴가기간중 제9조 각호에 해당한 사실이 발생한 때

제20조 휴가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는 각각 일요일을 포함한 14일간
2. 소년의 1개월 휴가는 포함한 30일간
3. 휴가기간중 명절일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명간일분을 더 연기하여 하여한다.

제21조 휴가중 질병 부상으로 사회보험 일시적 보조금을 받을때 또는 제9조 각호에 의하여 휴가가 중단 되었을때에도 나머지 휴가의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

제22조 제3조에 해당한 일꾼으로서 그 휴가 해당 년도내에 해고 당할 경우에는 이미 지불하였든 휴가임금을 반환시킨다.

제23조 휴가권리 발생자로서 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될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휴가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4조 겸임 임금을 받는자의 휴가임금은 겸임직장에서도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단체 기타일반 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 표준규정

(1950. 1. 31. 내각결정 제27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0조에 의하여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로 되었으며 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로 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중요산업 운수기관들이 인민에게 속하여 있음으로 매개인의 로력은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하고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 일꾼은 자각적으로 고상한 로동규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본규정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단체, 기타일반기업소와 사무기관(이하 직장이라고 약칭한다)에서 고상한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력을 옹계 조직하며 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완전히 리용하며 로동생산물의 제고와 우량한 제품의 생산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규정은 직장의 로동자 사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제 2 장 로동자사무원의 채용 및 해고절차

제 4 조 로동자 사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직장책임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증서를 제출시켜야 한다.

1. 공민증 또는 출생증(외국인에 관하여서는 거주증명서)
2. 로동수첩(처음으로 취직하는 자는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증명하는 무직증명서 또는 전

업증명서)

직장 책임자는 이상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 5 조 로동자 사무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또는 다른 작업으로 옮길 때에는 직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1. 작업하는 절차와 기계기구등의 취급방법
2. 안전시설 로동위생 직감방화보위
3. 직장로동 내부질서 규정

제 6 조 직장책임자가 새로 로동자 사무원을 정식으로 채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임금을 정하여주며 로동수첩을 5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로동자 사무원이 퇴직 또는 전직하려고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직장책임자에게 제의하여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 8 조 직장책임자가 로동자 사무원을 로동법령에 의거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의 로동수첩에 해고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어야한다.

제 9 조 로동자 사무원이 퇴직 또는 전직할 때에는 전직장에서의 직책을 증명하는 증명서 대여받은 기구, 공구, 로동보호용구, 피복류, 사택비품, 사무용품 및 해당사무에 관한 사항을 인계서에 기록하여 소속책임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장책임자 및 로동자사무원의 기본적인 의무

제10조 직장책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매개로동자 사무원이 자기의 기능과 창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노력조직을 정확히하며 제때에 구체적인 작업지시(과업)를 줄 것.
2. 원료자재공구 및 부속품등을 제때에 계속적으로 보장하여 줄 것.
3. 매개로동자 사무원에게 적응한 작업장 작업대 및 기계등 설비를 정비할 것.
4. 로동규률을 공고히 하며 철저한 유일관리제를 실시할 것.
5. 모범로동자 사무원의 우수한 작업경험을 널리 보급시키며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
6. 로동보호에 관한 국가법규를 정확히 준수할 것.
7. 임금, 상금 및 기타 물자배급에 관한 국가법규를 정확히 실행할 것.

제11조 로동자 사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맡은 과업을 제때에 완수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
2.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책임자의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수행할 것.

3. 정시에 출근하여 제정한 작업시간을 어김없이 준수하며 작업시간내에 자기에 관계없는 사업과 잡담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없이 직장을 돌아다니지 말며 다른 일꾼들의 작업을 방해함이 없이 노동시간을 생산에 완전히 리용할 것.
4. 지시된 생산책임량을 완수하며 또 초과완수하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어 불합격품을 내지 않을 것.
5. 작업상 사용하는 원료 자재 기계공구 등을 애호절약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이며 이를 대여하거나 다른데 사용하거나 사사에 사용하지 말 것.
6. 모든 작업은 소속책임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할 것이며 임의로 다른 작업 또는 다른 작업장에 옮기지 말 것.
7. 안전시설 노동위생 직장방화보위에 관한 국가법규를 준수하며 지급된 보호구와 예방적 시설을 반드시 리용할 것.
8. 작업에 부적당한 원료 자재를 받았을 때 및 시설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소속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에대한 지시를 받을 것.
9. 자기일터의 청소와 정돈을 제때에 할 것이며 교대할 경우에는 원료자재 기계공구 및 작업정형등을 정확히 인계할 것.
10. 직장의 비밀을 지킬 것.

제 4 장 로동시간의 리용

제12조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근 무 시 간 표			
	제 1 교 대	제 2 교 대	제 3 교 대	
출 근 시 간				
점심 및 휴식시간				
퇴 근 시 간				

제13조 교대작업을 하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교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장에는 시계를 비치하고 싸이렌 벨 기타 방법으로 출근 퇴근시간 및 휴식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노동자, 사무원은 출근, 퇴근시에는 출근부, 퇴근부 또는 시간등록기로서 자기의 출근 또는 퇴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있어서 직장 외로 나가거나 직장으로 돌아올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자기의 출근상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출근부, 퇴근부 또는 시간등록기엿에는 출근 및 외출을 정리하는 출근정리원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교대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무원은 다음 교대자에게 인계하기 전에는 일터에서 떠나지 못한다.

만일 다음 교대자가 교대시간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정된 노동시간 내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금지한다.

1. 노동자 사무원에게 정당사회단체등 본신사업이 아닌 사업을 시키거나 협의하거나 직장에서 불러내거나 회의를 소집하는 일.
2. 임금을 지불하거나 배급물자를 주는 일.

제19조 노동시간내에 술을 마시거나 또는 술에 취하여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장 책 별

제20조 온갖 노동규률의 위반은 행정적 책벌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제21조 노동규률을 위반한 자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적 책벌을 받는다.

1. 주 의
2. 경 고
3. 엄중경고
4. 감급 또는 강직
5. 철 직

제22조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결근하든가 시간전에 점심먹으러 가든가 점심시간후에 늦어오는 등으로 노동시간에 일하지 않고 태만하는 노동자 사무원에게는 행정적 책벌을 적용한다.

제23조 직장책임자는 노동규률 위반자의 설명을 듣고 행정적 처벌을 결정하거나 또는 제외한다. 그러나 노동규률 위반자가 소재불명 또는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설명을 듣지 않고 행정적 처벌을 결정하거나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직장책임자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책벌을 결정 또는 제외할 수 없다.

그러나 직장책임자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당시 본인이 출장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나온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제24조 행정적 책벌은 문서로서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소재불명 또는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수표를 받아야 받아야 한다.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어야 한다.

제25조 철직을 제외한 행정적 책벌을 받은 노동자 사무원이 그후 6개월간 새로히 노동규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장책임자는 그 책벌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적 책벌을 받은 노동자 사무원이 다시 노동규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으로 사업함으로써 모범적인 성적을 낸 경우에는 6개월에도 그 책벌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하든가 시간전에 점심먹으러 가든가 점심시간후에 늦게 오든가 노동시간내에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여 30분 이상의 노동시간을 손실한 경우에는 결국으로 인정하고 국가식량배급을 감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30분 이하의 노동시간을 손실케한 노동규률 위반이 한달에 3회일 때 또는 2개월 연속하여 4회일 때에는 결국 1일로 인정한다.

제27조 직장책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지각, 조퇴등을 허여할 수 있다.

제28조 노동자 사무원이 그 작업에서 불합격품을 만든 경우에는 책벌에는 관계없이 국가법규에 의하여 물질적 책임을 진다.

제29조 직장책임자는 그 직장의 노동내부질서 규정을 직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단체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서

(1950. 3. 15. 내각결정-제56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기업소 및 사무기관에서 단체계약을 새로히 체결함으로써 국가생산계획의 실행 및 초과실행을 보장하고 노동자 사무원의 물질적 생활조건을 향상시킬데 대한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의 관리측과 직업동맹단체의 책임성을 일층 제고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단체계약에는 생산계획의 실행 및 초과실행 생산원가의 저하 노동생산물의 제고 노력조직의 개선 기술기능의 향상 생산기술규률 및 노동규률의 강화 노동자 사무원의 노동조건 및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의 관리측과 직업동맹단체간의 상호관계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관계각상(내각직속국장)의 합의를 얻어 1950년 3월 25일까지 「표준단체계약서」에 기초한 「산별표준단체계약서」 및 「산별단체계약체결에 관한 지도서」를 작성하여 단체계약체결사업을 지도할 것을 북조선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한다.
3. 매개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에서는 1959년 4월 1일부터 1950년 6월 1일까지 종래의 단체계약실행정형을 총화하는 동시에 「산별표준단체계약서」 및 「산별단체계약체결에 관한 지도서」에 의거하여 대중적으로 광범히 로의를 전개한 후 그들의 제의를 접수하고 관리측과 직업동맹단체의 책임자간에 새로히 단체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4. 단체계약은 이를 체결한 해당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사무원에게 적용한다.
5. 단체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기업소관리측과 노동자 사무원간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에는 내각의 결정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노동성대표의 참가밑에 북조선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와 해당각성(내각직속국)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것이다.
6. 새로히 체결한 단체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7. 노동성에서 북조선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한 별지 「표준단체계약서」를 승인한다.

로 동 상 허 성 택

표 준 단 체 계 약 서

1950년 월 일 〇〇〇기업소(또는 사무기관이하 기업소라고 략칭한다)를 대표하는 책임자 〇〇〇와 노동자 사무원을 대표하는 북조선 〇〇〇 노동자 직업동맹공장(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위원회 (이하 공장위원회라고 략칭한다)의 책임자 〇〇〇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 및 초과실행하며 로력조직을 개선하며 노동규률을 강화하고 선진노동자의 창발적 제의를 온갖 방법으로 원조하여 그를 보급시키고 노동자 사무원의 기술기능을 높이어 노동생산물을 더욱 제고하며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킬데 대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아래와같이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국 가 적 생 산 계 획 의 실 행 및 초 과 실 행

제 1 조 기업소관리측과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이하 계약당사자라고 략칭한다)는 국가적 생산

계획을 실행 및 초과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산량을 19 년도에 비하여 %로 높여야 한다.

작업부문별 작업반별 생산계획량(품종별 규격별)은 별표와 같다.

2. 로동생산률을 19 년도에 비하여 %로 향상시켜야 한다. 작업부문별 작업반별 로동생산률 지표는 별표와 같다.

3. 원가를 19 년도에 비하여 %로 저하시켜야 한다.

작업부문별, 작업반별, 생산품종별 원가저하지표는 별표와 같다.

4. 생산설비리용률을 19 년도에 비하여 %로 높여야 한다.

작업부문별, 작업반별, 생산설비 리용률 지표는 별표와 같다.

5. 로동규율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경험을 보급시키어 생산과정의 결점과 불합격품생산을 없애며 원료자재의 소모를 절약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업소 책임자는 매분기초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의 단체계약실행 정형을중업원 총회에서 총화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기업소 책임자는 로동자 사무원이 책임생산량을 실행 및 초과실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별표와 같이 제때에 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업소 책임자는 로력을 절약하며 작업 및 생산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인된 예산내에서 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작업부문별, 작업반별, 기계화시설계획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기업소 책임자는 계획로력을 제때에 확보할 것이며 로동자 사무원의 기술기능정도 체질 및 능력을 정확히 심사하여 적당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국가생산계획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업소 책임자는 대중적 발명과 생산합리화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참가하는 일꾼에게 다음과 같은 기술적 물질적 방조를 주는 동시에 그들의 제안과 생산협의회의 결정을 생산에 널리 보급시켜야 하며 또한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그 실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당사자는 기업소에 조직된 증산경쟁위원회로 하여금 매개로동자가 생산책임량을 실행 및 초과실행하도록 증산경쟁운동을 조직전개케하여 그들의 매달 생산책임량실행정형을 다음달 5일 이내로 총결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8 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기업소 책임자와 협력하여 매달초에 전달의 증산경쟁운동결과를 발표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로동자 사무원을 기업소 내에서 널리 찬양하며 선전하여야 한다.

제 9 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로동자 사무원이 로력조직 및 생산조직의 합리화에 관한 제안

또는 발명에 대하여 제때에 물질적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임 금

제10조 기업소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업 직위 기술 및 작업경험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가법규에 의하여 노동자 사무원의 기본임금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직종별 임금표는 별표와 같다.

제11조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도급제에 관한 국가법규에 의하여 정확한 도급기준과 단가를 제정하여야 한다.

작업부문별, 작업반별, 직종별, 도급기준 및 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12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실행기간등에 대한 일정한 작업지시표를 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 사무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에는 적당한 노동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정식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즉시로 그 기술 기능을 검토하여 해당한 임금등급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노동자의 기술기능이 향상된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국가법규에 의하여 임금등급을 올려주어야 한다.

제15조 기업소 책임자는 생산 및 직업조건에 개선된 경우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성(내각직속국)의 승인을 받아 낡은 도급기준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 실시 3일 이전에 발표해설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소 책임자는 국가법규에 의하여 우대하기로 결정된 특수기능공 또는 노동자 사무원에게 정확히 우대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상금해당자를 선정하되 규정된 절차를 밟아 매개 일꾼의 성적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 종 별	상금지급조건	1개월노동임금에 대한 상금비율

제18조 노동자 사무원에게 주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계산에 관한 국가법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9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구손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업소 책임자는 임금을 1개월에 2회씩 정한기일(상순임금은 일 하순 임금은)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2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채용한 노동자 사무원에게는 작업이 끝나는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가 실책으로 인하여 생산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의 책임이 없이 생산이 정지된 기간중의 임금은 기본임금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22조 기업소 책임자는 생산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부문의 노동자를 다른 부문에 옮길 수 있으며 이동후 2주일까지는 그전 등급의 임금을 지급하며(이동후 그 직종등급이 그 전등급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은 등급에 의하여 지급한다) 급속히 그의 기능에 적당한 작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가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실책으로 인하여 불합격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노동자가 생산제품이 불합격품이 될 것을 예견하고도 소속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작업정지에 대한 소속책임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지시를 받고 계속한 이후의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치 않는 동시에 기업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게 지급하는 매달임금의 5% 이내에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상시킨다.
3. 노동자의 실책이 없이 불합격품을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기본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4조 노동자의 실책으로 인하여 그에게 지정된 최저의무인 생산정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기본임금)에는 상관없이 그가 생산한 제품의 수량과 질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다.

제25조 노동자의 실책이 없이 생산정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게 임금 상금 및 도급제 특배미를 국가법규 및 본단체계약에 의하여 공정히 지급하고 있는가를 일상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제37조 노동자 사무원은 자기의 작업장소를 항상 깨끗이 정돈할 것이며 기업소 시설과 물자를 애호하여 기계기구등의 고장 파손분실 화재등 사고를 미리방지하며 태공분자와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38조 노동자 사무원은 항상 자기 작업에 있어서 창발력을 발휘하여 생산과정의 결점을 없애고 생산품의 량과 질을 높이는 동시에 뒤떨어진 일꾼을 이끌어 울리어 노동생산물을 높이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일상적으로 노동규률에 대한 해설사업을 전개하여 노동자 사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완전히 생산에 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시간내에 회의 및 일체행사를 진행함을 엄금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택 및 물질문화생활

제40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 사무원의 주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승인된 예산내에서 별표와 같은 주택시설 계획에 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신축 또는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 사무원의 교양 및 휴식오락을 위한 특별한 시설(민주선전실 도서실 휴게실 구락부 또는 영화 무용 운동등 오락시설)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업소 책임자는 기업소에서 입대한 군무원 내무원의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가법규에 의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 노동자 사무원은 자기주택을 일방적으로 깨끗이 할 것이며 소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5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 사무원의 영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소 실정에 따라 세운 별지 공급표에 의한 공급사업을 조직하여 영양식료를 기업소 식당에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 사무원에게 실비로 그를 배급하여야 한다.

제46조 기업소 책임자는 일상적으로 식당의 비품 및 식기를 정비하여야 하며 식사시간에 노동자 사무원이 따뜻한 음식을 3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도록 작업장별 교대식사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7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공급사업을 개선시키며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사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원조하여야 한다.

제48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기업소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노동자 사무원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오락(연극, 영화, 음악회, 운동회, 야유회 등)을 조직실시하여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9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택기타문화

오락시설의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기업소 책임자와 협의하여 국가법규에 의한 문화사업비를 문화사업 이외에 류용함이 없이 다음계획표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되 매4분기마다 그 내용을 종업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의 정치적교양을 제고시킬 것이며 그들의 가정과 일상적으로 밀접한 련결을 가져 생활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로동보호

제52조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로동보호에 관한 국가법규에 의하여 작성된 별표와 같은 로동안전 및 로동위생시설계획을 제때에 실시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 사무원이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의료시설을 정비할 것이며 방역사업을 제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소 책임자는 별지계획표에 의하여 기업소의 생산 및 로동보호에 대한 월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기업소 책임자는 위생에 적당한 물통을 비치하고 노동자 사무원에게 끓인 물을 항상 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기업소 책임자는 기업소 실정에 따라 부녀노동자를 위하여 별지계획표와 같이 수유소(授乳所) 탁아소(託兒所)를 시설정비할 것이며 개별위생실(個別衛生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 기업소 책임자는 작업내에 일에 관계없는 자를 출입시키지 말것이며 노동자 사무원이 자기 작업장 이외에 필요없이 출입함을 금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기업소 책임자는 작업안전에 관한 표식 포스터-등을 적당한 장소마다 게시할 것이며 기술일꾼으로 하여금 안전기술 로동위생에 관한 담화회 강습회를 조직 실시케 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업소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식일을 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정기적 휴식일에 휴식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다음 휴식일 이내로 휴식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기업소 책임자는 별지 휴가조직표에 의하여 매월 휴가권리발생자의 8% 내지 9%에 대하여 순서대로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받는자에게는 휴가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진적 모범일꾼을 우선적으로 정휴양소 또는 요양소에 파송하여야 한다.

제62조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 사무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3조 노동자 사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종전의 작업은 할수 없으나 정상적인 치료에 지장이 없이 다른 경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소 책임자는 직업동맹공장위원회와 협의하여 10일이내로 그를 다른 경한 작업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 직업동맹공장위원회는 노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상황을 검열하여야 한다.

1. 노동보호법규의 준수정형
2. 노동보호물자의 공급정형
3. 소년 및 여성노동보호법규 준수정형
4. 휴거하여 실시정형

제 7 장 단체계약의 변경 해약(解約) 및 의견차이의 해결

제65조 본단체 계약은 등록일부터 계산하여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본단체 계약의 유효기간중 이를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해산하였을 때.
2. 원료소재 기타 조건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작업이 정지되었을 때.
3. 노동자 사무원의 반수이상이 요청할 때.

제67조 단체계약 조인당사자가 이동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해당단체계약 등록기관에 명의(名義)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68조 계약당사자는 단체계약기간내에도 일부계약의 개정추가 삭제에 관한 제의를 할수 있으며 기업소의 소유관계가 이동되었을때에는 단체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69조 단체계약을 일부개정추가 삭제하려할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2주일전에 제의하여야 하며 해약하거나 다시 체결하려 할때에는 1개월 전에 제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 체결된 계약이 등록될 때까지는 전계약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70조 계약당사자는 단체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단체계약의 해약 또는 계속에 관한 제의를 하여야 한다.

단체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제의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해약에 대한 제의를 하였을 때에는 단체 계약기간은 제의한 날부터 1개월간 더 연장된다. 단체계약 해약에 대한 제의가 없을 때에는 단체계약은 무기한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

제71조 계약등록후 계약당사자간에 본단체계약에 관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합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쌍방을 대표하는 동일한 인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해결하여야하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 구역인민위원회 로동과 또는 인민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1950년 월 일

계약자 북조선○○로동자 직업동맹

○○공장위원회

대 표 ○ ○ ○ 인

계약자 ○○○○○ 기업소

대 표 ○ ○ ○ 인

◇ 의무노력동원에 관한 규정

(1950. 3. 25. 내각결정제72호)

제1조 본 규정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한 중요한 건설사업 및 재해방지사업에 공민들의 노력을 동원시킴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 매개공민은 제1조에 있어서 도(평양시를 포함한다-이하도 이와 같다) 시 군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무노동에 동원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년 최고 20일로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정당사회단체 및 협동단체에 근무하는 사무원은 년최고 10일로 하며 그 동원은 노동일수 중에서 한다.

제3조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동원에도 이를 적용하며 그 동원 기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는 년 최고 10일로 한다.

본호에서 우마차와 같이 동원된자(우마차주)는 제2조의 기간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우마 또는 차가 각각 개별적으로 동원될 때에는 년최고 15일로 한다.

본호에서 우마 또는 차와 같이 동원된자(우마차주를 말함)는 제2조의 기간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조 도인민위원회위원장은 제반건설사업 및 재해방지사업에 공민들의 노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종합조절하여 노력의 계획적 동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노력동원을 면제한다.

1. 18세미만자 및 55세 이상의 남자, 50세이상의 여자.
2. 불구자, 질병자 및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 임신 4개월을 넘은 여자 및 산후 2개월을 넘지 않은 여자.
4. 따로 양호할 자가 없는 5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단 국가기관의 노동자 사무원 가정으로써 단 부부간만 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5. 특수한 직무를 가진 공무원.
6. 중요한 생산기관의 기술자 및 노동자.
7. 학생.
8.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우마차부 포함).

본조 제5호에 있어서 성의국장(도인민위원회위원장 포함)

이상은 의무 노력동원에서 면제되며 그 이하 공무원 및 제6호, 제8호에 해당되는 범위 규정은 도인민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6 조 도, 시, 군인민위원회에서 의무노력동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동원의 목적, 장소,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동원해당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정당사회단체 및 협동단체의 노동자 사무원을 동원시킬 때에는 그 근무직장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제 7 조 자기집에서 통근할 수 없는 원거리지역에 동원되는 자에 대한 그의 승차운임 및 숙박하는 그 동원받는 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회보험료 및 원천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의무 노력동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직장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그 직장에서 의무노력동원 기간에 해당한 평균임금을 지불한다.

제 9 조 사회보험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로써 의무노력 동원에 의한 작업도중에 질병, 부상 및 사망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급부와 의료상 방조를 그 근무직장에서 준다.

사회보험의 급부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로써 전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원받는 기관에서 그에 상당한 보조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의무노력동원의 노동시간은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의하여 노동시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및 건강에 대한 유해조건에 대하여는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의무노력동원에 관한 사무는 도, 시, 군, 면인민위원회에서 이를 정리하며 면인민위원회는 노력대상자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노력동원에 응하지 않는자 및 이를 기피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 도급노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

(1954. 3. 20 내각결정 제56호)

제 1 장 일반적 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질과 양을 옳게 평가하여 그에 의거한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도급노동임금제를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노동 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시키며 제품 단위성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며 노동자들의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계속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기업소 및 사업소(이하 기업소라고 약칭한다)에 적용하며 도급노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제 3 조 도급노동 임금제를 적용 실시하려는 기업소 책임자는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자재, 원료, 동력, 연료, 공구, 기구 등(규격품)을 제때에 공급하여 작업이 중단됨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노동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의 성질과 노동자들의 기능의 소유 정도를 고려한 기초에서 작업 공정별로 합리적인 노력조직을 하여야 한다.
3. 작업 및 시간기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계속적인 작업으로써 노동결과를 숫자적으로 타산할 수 있어야 한다.
4. 도급노동에 참가하는 개별적 노동자 또는 작업반은 독자적으로 해당작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야 한다.
5. 도급노동은 생산량과 시간단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동 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시킬 수 있는 작업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도급노동에 참가한 매개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임금을 사정하되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과의 차이를 정확히 두며 평균주의적 임금조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7. 도급노동 임금제를 실시하는 부문에서는 설비의 생산능률표, 기계의 성능표, 생산공정표, 노력조직표, 도급노동자들의 임금조직표, 설비 및 기계의 이용율 통계 등을 계통적으로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8. 도급노동에 참가하는 매개 노동자들의 노력기준량 및 도급단가와 생산 혁신자들의 노동 방법을 작업 착수전에 중업원회의 및 실습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해석 요해시켜야 한다.

제 4 조 도급노동 임금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장임금 사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장임금 사정위원회는 작업기준량 도급단가의 결정이 정확히 제정되도록 직장 책임자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방조하여야 한다.
2. 직장임금 사정위원회는 행정측이 제의한 노력기준량 및 도급단가의 제정안을 심의하고 그에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장임금 사정위원회는 도급노동자들의 신소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고 직장 책임자 또는 해당 상급기관에 제의하여 제때에 해결하도록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5 조 도급노동 임금제를 적용 실시할 때 기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노동 임금제를 실시하기 전에 작업조건의 준비상태를 과학적으로 판정하며 생산적 제 가능성(공급되는 원료, 연료의 질에 대한 규격, 기계설비의 종류 및 회전수, 공구 도구의 규격 수송수단의 종류 등)을 다 이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규격, 원자재의 소비기준 표준조작법을 작성하여 이들로 동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한다.
3.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조건의 변동여부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생산 기술협의 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에 적용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조 도급노동 임금제를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음으로 국가재산의 낭비 및 노동자들의 이해가 무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소 책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 7 장 도급노동 임금제 종류 및 조직

제 7 조 도급노동 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일 도급노동 임금제
2. 누진 도급노동 임금제
3. 공수 도급노동 임금제

이상 도급노동 임금제는 작업의 성질에 따라 개인 및 반 또는 단체도급제로 조직한다.

제 8 조 도급노동 임금제의 조직은 개인 별로 노동 생산능률을 타산할 수 있는 노동부문에서

는 개인 도급노동 임금제를 적용 실시하며 노동 생산능률을 개인별로는 계산할 수 없으나 반 또는 단체 도급노동 임금제를 적용 실시한다.

제9조 도급노동 임금제는 본 규정 제3조의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그 어느 작업을 막론하고 적용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누진노동 임금제는 중요한 생산부문의 핵심적인 작업 공정으로써 다른 생산공정의 노동 생산능률제고에 자극을 주며 제품단위당 생산원가를 계획원가 이하로 저하시키는 조건에서 다음의 노동부문에 실시할 수 있다.

1. 탄광 광산의 지하 유해노동 부문의 노동
2. 중요한 화학금속부문의 고열 유해노동으로써 그 생산공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문의 노동
3. 철도공장의 극히 중요한 부문의 노동
4. 국가적 긴급을 요하는 기본건설의 핵심이 되는 부문의 노동 기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노동상의 합의를 얻어 소속장 또는 내각 직속 국장의 승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공수 도급노동 임금제는 작업의 전량을 기한부로 주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부문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 및 보수부문의 노동
2. 임업(재개 부문 제외) 부문의 노동
3. 철도의 공무 및 적하부문과 육해운의 적하부문의 노동
4. 어로부문의 노동
5. 기계수리부문의 노동
6. 제염부문의 노동

제3장 노력기준량의 제정 절차

제12조 노력기준량의 제정은 기술 기준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방법으로 제정한다.

1. 작업장의 생산적 제 가능성의 엄격한 검열에 기초하여 생산 설비 및 기계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되는 기능수준(임금등급)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 자재원료의 규격 및 원단위 소비규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4. 해당 작업에 적용한 표준작업 규정(작업질서)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5. 노동과정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제품단위당 노동시간 소비발란스를 확증한 기초에

서 단위당 소비시간 기준을 계산한다.

6. 해당 작업에서 전체 노동자들 중 100% 이상의 노동 생산능률을 종합 평균한 지수보다 능가하는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의 것을 노력 기준량으로 한다.

7. 노력 기준량은 기능수준에 관계없이 단일한 기준량으로 한다.

제13조 노력 기준량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

1. 새로운 생산설비를 인입하거나 미숙한 작업을 새로 실시할 경우에는 생산 습득기간에 대한 일시적 노력 기준량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량은 그 기능 습득정도의 발전에 따라 즉시 정상적인 기준량으로 개정할 때

2. 기업소 관리측에서 작업조건을 개선하였을 때

제14조 노동자들이 자신의 창의 또는 합리화 방법에 의하여 노동 생산능률이 현저히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후에도 합리화 방법이 일반화 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전 국가적 표준으로 되는 노력 기준량에 대하여서는 노동상이 소관 상(국장) 기타 중앙기관 책임자 및 조선직업총 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하에 내각의 비준을 받아 제정실시케 하며 기타의 노력 기준량에 대하여는 소관 상(국장)의 승인을 얻어 기업소 책임자가 제정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도급노동 임금제를 실시하는 부문에는 노력조직표와 노력기준량표를 작성하여 소관 상(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노력 조직 및 작업조건 변동으로 노력 기준량 및 도급단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전말을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도급단가의 제정 절차

제17조 단일 도급노동 임금제 및 공수 도급노동 임금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단위당 도급단가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일 도급노동 임금제 및 공수 도급노동 임금제의 도급단가 제정은 해당 작업에 참가하는 노동자의 기준 기능 급수(임금등급) 노동자의 일정한 시간 단위(1일 또는 1시간)의 도급노동자 임금을 동일한 시간단위의 노력 기준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9조 누진 도급노동 임금제에는 일정한 기준량 이상 초과 실행한 작업량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도급기준 초과비율에 따르는 누진 도급비율을 기준으로 단위당 누진적 증가로서 그 단위를 제정한다.

가. 탄광 광산의 지하굴진과 채광부문 제강, 제철, 제련 고열부문

도급기준초과비율	누진도급비율
101·부터 105% 까지	50%
106%부터 110% 까지	100%
111% 이상	200%

나. 탄광 광산의 지하운반 지주(지하기본 건설의 굴진, 채광, 지주, 운반 부분을 포함) 부문
과 화학 유해부문

도급기준초과비율	누진도급비율
101%부터 110% 까지	100%
111%부터 120% 까지	200%
121%부터	

다. 중요 수송 부문

도급기준초과비율	누진도급비율
101%부터 115% 까지	50%
116%부터 130% 까지	100%
131% 이상	200%

라. 기타 성(국)에서 누진 도급제를 승인한 부문(기타 중요한 생산부문)

도급기준초과비율	누진도급비율
101%부터 120% 까지	30%
121%부터 140% 까지	50%
141% 이상	100%

제5장 작업 지시표의 작성 및 그 내용

제20조 작업 지시표는 소속 직장(부서)명, 직종, 성명, 임금등급, 노력 기준량 도급단가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 지시기간, 합격품 수량 및 그 총액, 불합격품 수량 및 그 총액 작업 정지 상황 불합격품에 대한 공제 비율 등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21조 작업 지시표는 개인 또는 반별로 1매씩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노동자들에게 교부 하여 주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관리측이 회수하여 보관하며 임금계산의 기초 문건이 되어야 한다.

제22조 작업 지시표는 매일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 및 작업 정지의 원인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작업 완료시에는 노동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간에 확인이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197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 1 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제 2 조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 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된다.

제 3 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 4 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

제 5 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 6 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서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 7 조 로동의 존질적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간다.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9조 노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노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12조 노동과 휴식을 옹게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 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장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노동규율은 자각적규율이며 사회주의노동규율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노동규율과 노동시산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노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있게 지키며 노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지위는 노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제3장 사회주의노동조직

제25조 사회적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

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으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찰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근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 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사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로력자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등에 맞게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량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쉬고 8시간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옹계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작업에 대한 임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일에 동원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꾼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급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도록 생활비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자,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계획 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

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자로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

제46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

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 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기술기능학습체제와 기능전습체제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의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국가과학기술기관과 노동행정기관은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노동보호

제53조 노동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안전교양사업체제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노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노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해당부문의 노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시킬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 조직에 앞서 노동안전상태를 구체적

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 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 감독 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노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노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노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7장 노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 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35일, 산후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낮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낮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해제,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

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벗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제8편 교 통, 체 신

제 1 절 철 도 운 수, 해 운

◇電車團束에 關한 規定

(1948. 12. 25. 내무성 규칙 제6호)

- 第1條 本規定에서 電車라함은 電力으로써 一定한 軌道 (電化된 鐵道를 除外한다)에 依하여 運轉하는 客車 및 貨車를 말한다.
- 第2條 本 規定에서 電車從業員이라 함은 指導員 運轉士 車掌 信號員 및 乘客의 遵守 事項을 指示하여야 한다.
- 第3條 客車內는 보기 쉬운 곳에 運轉 系統 圖定員 標識 및 乘客의 滿員을 表示하는 裝置를 하여야 한다.
- 第4條 客車에는 適當한 場所에 運轉士 및 車掌의 姓名 또는 乘客의 滿員을 表示하는 裝置를 하여야 한다.
- 第5條 電車에는 照明用前後燈信號機警音機 및 制動機를 設置하며 특히 客車에 車內燈을 設置하여야 한다.
- 第6條 電車는 前面 또는 側面에 行先地를 明示하는 裝置가 있어야 하며 특히 夜間에도 分別할 수 있는 程度의 觸光을 裝置하여야 한다.
- 第7條 電車從業員은 理由없이 自記의 責任을 他人에게 지울 수 없으며 또는 任意로 自己 맡은 場所를 떠날 수 없다.
- 第8條 電車從業員은 飲酒하고 就業할 수 없으며 就業中喫煙 또는 雜談할 수 없다.
- 第9條 電車從業員은 電車を 理由없이 停留場以外의 場所에서 停車시키거나 또는 一般客의 昇降을 시킬 수 없다.
- 第10條 車掌은 電車が 停留所에 到着하기 前에 該當停留所名을 明確히 呼報하며 下車客의 有無를 살피어야 한다.
- 第11條 電車從業員은 電車が 完全히 停車하기 前에 客을 乘降시킬 수 없다.
- 第12條 車掌은 客의 乘降이 끝나고 閉門한 後에 發車信號를 하여야 하며 運轉士는 이 信號에 依하여 비로소 發車시켜야 한다.
- 第13條 運轉士는 交通整理員의 指揮 또는 交通整理指揮標識의 信號에 依하여 運轉하여야 하며 消防車 救急車 및 軍隊 學生 其他 群衆行列이 있을 때에는 徐行 또는 停車시켜야 한다.
- 第14條 電車從業員은 定員以上の 客을 乘車시킬 수 없으며 滿員일 때에는 電車前後面에 滿員標를 揭示하여야 하며 運轉台 및 乘降台에는 貨物을 積載하거나 또는 人員을 태울 수 없다.
- 第15條 電車從業員은 電車が 人畜을 傷害하거나 또는 物件을 破壞하였을 때에는 即時 運轉

을 停止하고 被害者에 對하여 救護 또는 應急措置를 할 것이며 遲滯없이 이를 內務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 電車從業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電車에 乘車시킬 수 없다.

1. 酒醉하여 他人에게 妨害를 줄 憂慮가 있는 者
2. 傳染病 其他 疾病患者로서 他人에게 傳染 또는 不決한 感을 줄 憂慮가 있는 者
3. 不潔한 容裝으로써 他人에게 妨害를 줄 憂慮가 있는 者
3. 手荷物 또는 禽獸를 所持한 者로서 他人에게 妨害를 줄 憂慮가 있는 者
5. 火藥類 引火質物 爆發物 性質 其他 惡臭나는 物質을 携帶한 者

第17條 電車乘客은 다음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運轉機 制禦機 其他 必要없는 곳에 손을 대지 않을 것
2. 車內에서 喫煙 放歌 其他 非衛生的 行動을 取하지 않을 것
3. 運轉台 및 乘車台에서 操車上妨害를 하지 않을 것
4. 電車進行中乘車 또는 下車하지 말 것
5. 滿員標를 揭示한 車에 乘車하지 말 것
6. 停留場에서 電車を 特機할 때에는 所定한 場所以외의 地点에서 特機하지 않을 것

電車從業員은 前各項을 違反한 者에 對하여 乘車を 拒絶하거나 또는 下車를 要求할 수 있으며 이에 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內務機關에 申告하여 處理할 수 있다.

第18條 市內에서 電車最高速度는 16km로 하여야 한다.

第19條 電車는 所定한 運轉免許證을 所持한 者만이 이를 運轉할 수 있다.

第20條 內務機關은 必要에 따라 電車 및 軌道 또는 이에 附屬하는 機械氣球類에 對하여 現場電車職員의 立會下에 試驗 또는 檢閱을 實施할 수 있다.

第21條 電車事務所에서는 電車の 運轉系統 運轉時間의 制定 또는 이를 變更하였을 때에는 所管內 事務部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22條 電車軌道 電車前線및 이에 附屬한 器具를 破損할 憂慮가 있는 行動 또는 電車運行에 妨害를 주는 一切行爲는 이를 禁止한다.

第23條 本 規定에 違反한 者는 이를 該當法令에 依하여 處罰한다.

附 則

本 規定은 1949年 1月 1日 부터 이를 實施한다.

內 務 相 朴 一 禹

◇외국통상을하는항에관한규정

(1949. 10. 3. 내각결정제143호)

- 제1조 선박의 외국통상을 하는항(이하 항이라고 약칭한다)을 출입할 때 또는 항계내를 통과할 때에는 그 소속 국기 및 신호부자(信號符字)를 게양하여야 한다.
입항하는 선박은 입항신청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전항의 신호부자 또는 선주기(船主旗)를 내리울 수 없다.
- 제2조 입항신청은 입항후 24시간 이내에 출항신청은 출항전 12시간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3조 외국선박은 허가를 받지않고는 다른 선박 또는 룩지와외의 통행을 할 수 없다.
- 제4조 항장은 선박이 입항할 때에는 그 정박소 또는 계류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
항장의 허가없이 그 정박소 또는 계류 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천후 기타 불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선박은 항계내에서 항로에 투묘(投錨)하거나 또는 항계내 및 그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항행 또는 정박을 방해 할 수 없다.
- 제6조 항계내 혹은 그부근에 정박하였거나 또는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시(日沒時)부터 일출시(日出時)까지 해상충돌 예방법에 의한 각종의 선등을 게양하여야 한다.
- 제7조 기선이 항계내 및 항계부근을 항행할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속(減速)하여야 하며 범선(帆船) 감범(感帆)하던가 또는 예선(曳船)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정(汽艇)은 예외로 한다.
- 제8조 항계내에서 기정 또는 로도(櫓櫂)로써 운전하는 소주(小舟)는 항행하는 기선 및 범선의 항로를 피하여야 한다.
- 제9조 항계내에 있어서 항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이외에는 부선(浮船) 또는 기타-선박을 5척이상 예선(曳船)할 수 없다.
- 제10조 항계내에서 2척이상의 선박이 연속 항행할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또는 2척이상 병렬(並列)하여 항행하거나 항로내에서 다른선박의 앞길을 횡단(橫斷) 또는 따라 앞서갈 수 없다.
- 제11조 항계내에서 부두 방파제 또는 정박선의 일단(一端)을 회항(回航)하는 선박은 이를 우현(右舷)으로 보고 항행할 때에는 가깝게 도라야하며 좌현(左舷)으로보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도라야 한다.
- 제12조 기선이 방파제 입구에서 서로 맞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제13조 항장은 필요에 의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항계내에서 쌍묘박(雙

錨泊)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항계내에 있는 선박은 폭풍우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예비묘(豫備錨)를 투하할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는 기선은 언제든지 기관을 시동(始動)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 항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항장의 승인을 받은 선박을 제외하고는 항로내에 정박 또는 정선할 수 없다.

1. 항내 공사에 종사하는 선박
2. 장애물, 또는 침몰품 인양에 종사하는 선박
3. 조난선박 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4. 운전자유를 잃은 선박

전항의 선박은 항로내에 정박 또는 정선중에는 해상충돌예방법에 의한 운전자유를 잃은 선박의 표식을 게양하여야 한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선박은 다음장소에 정박 또는 정선할 수 없다.

1. 부두(埠頭) 잔교(棧橋) 또는 선거(船渠)의 부근
2. 기타 항장이 지정한 장소

제17조 항계내 및 그 부근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의 의장수리 또는 휴선하려고 할 때
2. 연소(燃燒) 하기쉬운 물품을 운반하려고 할 때
3. 장애물 또는 침몰품의 인양을 하려고 할 때
4. 5톤 이상의 선박을 진수하려고 할 때

제18조 화약류 및 연소하기 쉬운 물품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항장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항계선에서 장두(檣頭) 기타 보기쉬운 곳에 주간에는 국제신호의 「B」기 야간에는 홍등을 게양하고 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호기 및 홍등을 비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기 및 적색안 전등으로써 이를 대용할 수 있다.

제19조 선박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화약류 및 연소하기쉬운 물품을 적재하려고 할 때에는 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물품을 적재한 선박은 항장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면 정박 또는 정류할 수 없다.

제20조 항계내 또는 그 부근에서 조난한 선박은 그전말을 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조의 선박이 다른 선박 또는 률지로 부터 구조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해상충돌 예방법에 의한 난선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대가 올때까지 기적 또는 호종(號鍾)을 울리는 동시에

주간에는 국제신호의 「NM」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계속적으로 홍등을 상하로 흔들러야 한다.

전항이의의 경우에 있어서 내무기관의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주간은 국제신호의 「S T」기를 게양하고 야간은 람화(藍火) 또는 섬화(閃火)로 표시하여야한다.

제22조 선박은 전조의 비상신호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계내 또는 그 부근에서 총포 혹은 연화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폭발물을 사용 할 수 없다.

선박이 본 규정 또는 해상충돌 예방법및 관례(慣例)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적 기각(汽角)등을 취명(吹鳴)할 수 없으며 선타항행에 방해가 되는 탐조등 기타 이에 유사한 등화를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전염병 또는 류행병이 있는 지방으로부터 래항하였거나 또는 항행중에 그 병이 발생한 선박은 항계외에서 주간에는 국제신호의 「Q」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장두(檣頭)보기 쉬운 곳에 홍백 2등을 게양하여야하며 자유통행의 허가를 받기전에는 이를 내리울 수 없다.

전항의 선박은 관계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또는 해당기관의 허가없이 상륙하거나 다른 선박과 래왕 할 수 없다.

우양(牛羊)등의 정염병이 있는 지방으로부터 래착하였거나 또는 항행중 그 병이 발생한 선박은 해당기관의 허가없이 (牛羊) 또는 그 사체등을 양륙(揚陸)하거나 또는 다른 선박에 옮길 수 없다.

제24조 선박이 부표 립표 부두 또는 기타의 구축물(構築物)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규정 또는 따로 제정한 규칙에 의한 과태금 사용료 제비용등을 완납할때 까지 항장은 그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령에 의하여 처단한다.

◇철도 운수에 관한 규정

(1949. 10. 7. 내각결정제 15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인민경제계획에 의거한 려객화물운송의 안전을 도모하며 운송의 신속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철도의 운임기라 운송조건에 관하여는 내각에서 따로 규정한바에 의한다.

제3조 화약류 폭발물 위험품의 운송은 화약류 단속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며 전염병화자 레푸라환자의 운송은 따로 정하는 환자운송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거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역명을 명시하여야하며 운송상 필요한 제포 규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철도운수기관(이하철도라고 략칭한다)은 다음경우에는 그 운송을 취급하지 않는다.

1. 화송인 및 려객이 국가법령 및 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화물이 현존선로 차량으로서 운송에 부적당 할 때
3. 천재 기타 부득히한 사유로 인하여 운 상지장이 있을 때

제6조 철도는 경우에 따라 20km 미만의 거리에서 수송하는 물자 및 그 물자 수요지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타지방으로 부터 반입하기위한 물자에 대하여는 그 수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 및 군용품은 레외로 한다.

제2장 화 물 운 송

제1절 통 제

제7조 화물운송은 그 접수한 순서에 의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레외로 한다.

제8조 화송인은 운송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 운송상 자타에 손해가 없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종류 성질을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화물의 품명 중량 기타운송신청서의 내용을 허위신고하여 운임의 감소를 가져왔을 때에는 철도는 정당한 운임의 10배이내의 가중금(加重金)을 징수한다.

화송인이 화약을 기타 위험품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탁송하였을 때에는 철도는 그중량 1kg에 대하여 100원이내의 가중금을 징수하며 이로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화수인 및 화송인을 알 수 없는 운송품은 이를 공시한후 3개월이내에 그 권리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철도는 그 소득권을 취득한다.

제11조 화수인을 알 수 없거나 운송품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철도는 화송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운송품 처분에 대한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화송인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도는 그 운송품을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운송품에 대한 운송기간은 다음각호의 기간을 합한것으로한다.

1. 발송기간

운송하기 위하여 인수한날부터 2일

2. 수송기간

수화물및 소화물은 수송거리 배 200km까지 1일

화물은 수송거리 500km까지 배 100km까지 1일

501km이상 배 100km까지 1,5일

3. 접속기간

(軌間)을 달리하는 선로를 통하여 운송할(화물에 한하다) 경우에는 그 접속역마다 각2일

4. 인도기간(引渡期間) 각1일

철도의 책임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품이 지착(遲着)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는 운송 기간에 가산한다.

전2항의 운송기간을 경과한후 운송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연착으로한다.

제13조 철도가 운송기간만료후 30일이내에 운송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멸실(滅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물의 소재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그러나 화물의 소재를 알 수 있을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4조 철도의 책임은 화수인이 운임기타비용을 지불하고 운송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면제된다

제2절 대화물운송(大貨物運送)

제15조 철도의 차급화물(車扱貨物)은 국가종합계획의 년도및 매4분기계획을 기본으로 월간 및 일간계획을 수립 실시 하여야 한다.

제16조 월간 및 일간계획의 실행은 철도 및 수송요구자에게 의무적이며 일간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화차 표기(標記)수수 1천에 대하여 5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약금은 현차(現車)가 있을 때에는 당해화차 표기수수에 의하고 현차가 없을 때에는 광케선은 30천 협케선은 15천으로 계산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배차하기 2일전에 수송요구자로부터 탁송취소를 한때 및 제23조에 의하여 2일분 화차를 배차하였을때에 당일분을 제외한 화차에 상치하지 못한 위약금은 반액을 징수한다.

제17조 다음 경우에는 전조의 위약금을 면제한다.

1. 수송 요구자의 책임을 면제할 경우

(1) 천재 또는 공장 탄광 기업소의 사고로 3일이상전체작업을 중지하여 화물격제가 불가

능하다고 철도가 인정할 때

(2) 내각지시 및 특명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위약하였을 때

(3) 전용선(專用線) 화물측선(貨物側線)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철도가 인정할 때

2. 철도의 책임을 면제할 경우

(1) 천재 선로불통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배차못하였을 때

(2) 내각지시 및 특명에 의한 긴급 수송으로 인하여 배차못하였을 때

(3) 도차 영차(盈車)를 배차충당한 경우에 화주의 하차지연으로 인하여 화차를 사용못하였을 때

(4) 제23조에 의하여 당일분을 익일에 배차하였을 때

제18조 위약시의 분쟁은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상호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서」(1948년2월29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120호) 및 교통상이정한 배차위약금 수불절차에 의한다.

제19조 철도는 수송계획의 내용변경(품목변경은 제외한다) 및 임시수송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상이 특히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며 철도가 자기책임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현장·역장·화주간의 확인증이 있는것) 익월수송계획에 추가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철도는 수송계획의 내용변경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한다.

제20조 화송인은 화물을 탁송할 때에는 그 운임료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철도의 화물운임은 철도가 책임질 사유를 제외하고 기수운임(既收運賃)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21조 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에 의하여 봉합 수송을 요하거나 또는 유손(濡損) 인화(引火)의 우려가 있는 것은 유개화차로 운송하여야 하며 부패 변질 동상(凍傷)의 우려가 있는 것은 냉장차 보온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면책특약(免責特約)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21조 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에 의하여 봉합 수송을 요하거나 또는 유손(濡損) 인화(引火)의 우려가 있는 것은 유개화차로 운송하여야 하며 부패 변질 동상(凍傷)의 우려가 있는 것은 냉장차 보온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면책특약(免責特約)을 조건으로 대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화물의 상차 및 하차(이하 상하차라고 약칭한다)는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시제 동물 및 특약으로서 운송하는 광대품(廣大品)을 제외한 소급화물(小扱貨物)의 상하차는 철도가 부담한다.

화주가 상하차를 할 경우에 철도는 그 상하차에 대하여 화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철도는 배차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배차 형편에 따라 일간계획의 2일분까지 일시에 배차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철도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차시간이 17시이후인 때에는 화차도착 3시간전 2일분 화차를 일시에 배차할 때에는 6시간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철도의 통지지연으로 상하차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연시간에 대하여 화차류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24조 철도의 차급화물(車扱貨物)에 대한 상하차 시간은 그 통지를 발송한때부터 계산하여 4시간(화약류 및 협케차는 2시간)으로 한다.

정항 시간내에 화물의 상하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한 시간에 대하여 화차류치료를 징수한다.

화물전용선에서 화차도착후 광케선은 12시간(왕복중일방이 공차인때에는 그의 3분의2) 협케선은 8시간을 경과할때(기관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소의 전용선에 있어서는 그 전용선 관리역에 화차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한 시간에 대하여 화차류치료를 징수한다.

제25조 철도는 화주가 5일 이내(화차운용상 필요한때에는 레외로한다)에 하차하지 않을 때에는 화주의 비용으로 대리하차 할 수 있으며 10일을 경과한 후에도 화주로부터 인도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화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할 수 있다.

제26조 화물이 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철도는 지체없이 도착통지를 내어야 한다.

화주가 철도에서 정한 시간내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철도는 경화한 시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한다.

제27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화송인은 발역환송(發驛還送) 또는 착역변경(着驛變更)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철도는 자기가 책임질 경우를 제외하고 실지 운송구간의 운임과 기수운임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본조의 규정은 수소화물운송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28조 시체는 보건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관곽(棺槨)에 밀색(密塞)하지 않고는 운송할 수 없다.

화주는 시체 동물 기타 특수관리를 요하는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호송인을 부쳐야 한다.

제29조 호송인이 관리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철도는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철도는 운송하기위하여 인수한 동물에 대하여는 사양(飼養)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30조 화약류의 화송인은 발차시간24시간전 발송역에 운송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화송인은 화약류 단속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의 운반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화약류는 유개화차로서 운송하여야 하며 그 전체중량은 화차적재중량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화약류는 타화물과 동일화차에 혼재(混載)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중량을 초과중량을 초과하지않는 화약류는 레외로 한다.

1. 화 약 45KG이하
2. 폭 약 11KG이하
3. 화공품 화약을 원료로 한것은 45KG이하 폭약을 원료로한 것은 11KG이하

제3절 수소화물운송(手小貨物運送)

제33조 려객은 그 려행에 필요한 물품을 수화물로서 탁송할 수 있다. 철도는 려객의 수화물로서 탁송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중량 용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 수화물차로서 운송에 적합한 화물은 소화물로서 려객렬차로 운송한다.

그러나 화약류 위험품 및 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악취를 발하여 불결한 물품은 소화물로서 탁송할 수 없다.

제35조 수화물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려객과 동일렬차로써 운송하여야 한다.

려객은 수화물을 탁송하려고 할 때에는 려차 출발시간 10분전까지 승차권을 제시하고 탁송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화수인이 수소화물의 도착후 그 익일중으로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후 시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한다.

제37조 려객은 수화물을 탁송할때에 따로 정한 료금을 지불하고 가격표시(價格表示)를 할 수 있다.

제3장 려객운송(旅客運送)

제38조 려객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는 승차할 수 없다.

철도는 7세이상 12세이하의 소인은 대인운임의 반액으로 운송 한다. 철도는 려객이 동반하는 6세이하의 소아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제39조 려객은 철도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또는 승차권을 집표(集標)할때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자

에 대하여 철도는 그 려객의 승차한구간에 상당한 운임 및 3배의 가중금을 징수한다.
이경우의 가중금은 그 승차 련차의 시발역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그 전도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음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40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련차운전을 중단 하였을때에는 철도는 려객에 대하여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려객을 환송할 때에는 철도가 책임질 경우를 제외하고 기수운임과 실지운송구간에 대한 운임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제41조 려객은 련차의 출발신호가 있은후에는 승차하지 못하며 련차가 역에 정차한 후가 아니면 하차하지 못한다.

제42조 려객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질서를 물란시키고 공안을 해하는 행위
2. 보건위생상 유해한 행위
3. 차량 기구 기타 철도의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3조 려객은 용적 0.036립방매-트로 중량 15KG 이내의 물품을 차내내에 휴대할수 있다.
그러나 위험품 동물 또는 좌석을 물거나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을 줄 물품을 객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려객이 전항의 물품을 객차내에 휴대하였거나 또는 휴대하려고 할 때에는 철도직원은 그 려객을 하차시킬수 있으며 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제4장 손해보상

제44조 철도는 운송품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45조 운송품에 대한 손해보상은 다음에 의한다.

1. 멸실 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멸실 손상부분에 대하여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국정판매가격으로 하되 국정가격이 없는 것은 국가상업기관의 평가에 의한다.
2. 연착으로 인한 손해(계획 의림시 수송은 제외한다)는 운임액을 한도로하되 연착기간 1일마다 운임액의 5%

제46조 철도는 다음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1.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손해
2. 화송인의 부정신고 또는 포장불완전으로 인한손해
3. 자연풍화(自然風化) 자연별질 자연건조로 인한 손해

4. 호송인이 동승한 화물의 내용품 멸실 또는 기타로 인한 손해
5. 유개화차의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및 기타화차로서 상하차 화주부담 화물에 대한 내용품 감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
6. 면책 특약으로 인한 손해(운송품연착으로 인하여 부패한 경우에는 운송기간과 연착기간에 의하여 화주 및 철도가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47조 수화물의 손상으로 인한 보상액은 가격표시 수화물은 그 표시액을 한도로 하며 기타 수화물은 1개에 대하여 3,000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그러나 표시액이 실제 가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액은 무효로 한다.

제48조 운임상환 및 손해보상의 청구기간은 그 권리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전 용 선

제49조 국영공장 탄광 광산 및 기업소(이하 기업소라고 약칭한다)는 교통상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화물전용선을 부설 할 수 있다.

전항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교통상의 지시 감도가를 받아야한다.

제50조 화물전용선은 기업소가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소의 요구에 의하여 보수비를 기업소의 부담으로 하고 철도가 그 보수를 담당할 수 있다.

제51조 화물전용선 사용에 관하여 기업소는 철도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4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철도운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하여

(1949. 11. 2 교통성령 제1호)

「철도운전에 관한 규칙」(1947년 8월 12일 교통국명령 제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관차 및 동차의 견인정수(牽引定數)는 그 성능 및 열차의 종류에 의하여 정하되 열차를 조성할 때에는 그 견인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통상이 특히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교통상대리부상 박 의 완

◇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규정

(1949. 12. 2 교통성규칙 제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철도화물운송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 있어서 다음 약어를 사용한다.

1. 광궤선이라함은 1,435m 궤간의 선로
2. 협궤선이라함은 0.762m 궤간의 선로
3. 광대품(廣大品)이라함은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운임의 가산(加算)을 요하는 요물
4. 갑(甲)종 철도차량이라함은 자기의 차륜(車輪)에 의하여 수송되는 철도차량

제 3 조 화물의 취급종별은 소급(小扱) 및 차급(車扱)으로 한다.

제 4 조 화물의 취급종별은 화송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화물등급표에 소급(小扱)에 대한 등급이 정하여 있지 않는 화물은 소습(小汲)으로 할 수 없다.

제 5 조 1건으로 할 수 있는 화물은 다음 조건을 가추어야 한다.

1. 화송인 화수인 발역 착역 락송시간 취급종별 및 운임료금 지불방법이 동일 할 것
2. 소급(小汲)으로 하는 화약류는 다음 중량 이내로 할 것

(내용품의 실중량)

화 약 45KG

폭 약 11KG

화공품 화약을 원료로 한것은 45KG

폭약을 원료로 한것은 11KG

3. 화약류 시체 동물 감중철도차량은 다른화물과 혼합하지 않을것

(1) 1차에 적재 할 수 있는 수량

(2) 궤간(軌間)이 다른 선로를 통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광궤선 발송은 광궤선의 화차1차 협궤선 발송은 표기화중(標記貨重)30¹화차에 적재 할 수 있는 수량

(3) 전(1)(2)호에 의하는 외에 2차이상에 걸쳐 적재하는 광대품(중간에 유차를 사용하여 그 전후화차에 적재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다른 화물을 같이 탁송할 때에는 그 사용차에 적재 할 수 있는 수량

제 6 조 화물표준 중량표에 있는 화물의중량은 검량하지 않고 그 일정한 중량에 의하여 취급한다.

제7조 다음 화물은 철도 운수기관(이하 철도라 약칭한다)에서 특히 승인한 때에 한하여 운송한다.

1. 광케선 발착 소급화물로서 1개의 거리 5.5m 중량 1톤 용적 15㎡ 차급화물로서 1개의 거리 2km 중량 30톤 용적 50㎡를 초과하는 것
2. 협궤선발착 소급화물로서 1개의 거리 4.5m 중량 1톤 용적 3㎡ 차급화물로서 1개의 거리 10m 중량 5톤 용적 10㎡를 초과하는 것
3. 화물1개의 높이 또는 넓이가 제19조의 적재제한을 초과하는 것
4. 갑(甲)중철도차량
5. 화약류 시체 용기에 넣지 않은 동물로서 간이역에 발착하는 것
전항의 화물을 운송할때에 특히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화물의 취급

제1절 수 탁

제8조 국가계획물자 수송의 접수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수송요구자는 철도화물 수송규정에 정한 양식에 의하여 년도계획 범위내에서 작성한 때 4분기 수송요구서를 그분기 전월8일까지 교통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송요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2. 교통성은 전호의 요구서를 종합하여 수송협의회를 경유하여 월간수송계획을 결정수립한 후 발착역 품종별 화차수를 계획실시 전월20일까지 수송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화송인은 발역 역장에게 일별적재 계획서를 실시 전월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철도관리국장은 전호의 일별계획서를 종합하여 각역별 일간적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시 전월말일까지 발역경유 화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화물의 운송신청 접수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교통상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소급화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접수시간내라도 당일 발송할 열차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의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화약류 시체 동물 기타 운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접수할 시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화물의 인수는 상하차 화주부담의 화물은 상차완료후 기타화물은 수탁완료후 인수한다.

제11조 다음화물을 탁송할때에 화송인은 1건마다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운임료금 후불 청구화물 | 후불증 |
| 2. 운임할인 청구화물 | 확인증 |
| 3. 화 약 류 | 화약류운반허가증 |
| 4. 시 체 | 사망증서 |

제12조 화물을 탁송할때에 화송인은 1건마다 다음사항을 기재한 화물 운송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발역 및 착역명 (잘못알기쉬운 역명은 그소속 선명까지) 전용선 또는 화물지선에 발착 하는것은 그전용선 또는 화물 지선명
2. 화송인 화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기업소명
3. 화물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및 필요한 때에는 그 성질 또는 기호
4. 화물의 명칭 마다 개수(또는 산적) 및 실중량(시체 용기에 넣지 않은 가측을 제외한다)
5. 취급종별
6. 운임료금의 지불방법
7. 광대품에 있어서는 운임가산(運賃加算)의 기초가 되는 거리 중량 용적
8. 화약 특약에 있어서는 품목별 포장을 제외한 집중량화공품은 품목별 포장내의 실개수 및 원료인 화약 폭약별중량
9. 호송인이 침송할 때에는 그 인원
10. 인도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요지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 의하여 면책 특약을 하였을 때 또는 화물의 손상 기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신청서에 화송인이 특약조건 또는 화물의 현상을 기재하고 그 조건마다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주 1. 품명의 신고방법은 화물의 고유명칭(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되 화물등급표 등급적용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화물1개의 중량 1톤이상(포장하지 않은 목재 석재 철재기타 이에 류사한것을 제외한다)되는것을 발송하는 화송인은 포장외면에 그중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화물의 포장은 화물등급표에 명시한바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다.

1. 시체는 관(棺) 곽(槨)에 밀색(密塞)하여야 하며 맹수(猛獸)는 탈주 또는 위험방지에 충분한 조치(措置)를 할것
2. 전호이외의 화물은 그 성질 규격 중량 운송거리 및 환적회수등 운송중의 감량 또는 파손을 방지 하기에 충분한 포장을 할 것

제14조 소급 화물 및 궤간이 다른선으로 통하여 운송하는 차급화물에 대하여서는 특히 철도

에서 승인하였을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꼬리표를 매개(每個)량다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꼬리표를 부착기 어려운 것은 보기쉬운곳에 페인트류로써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꼬리표에 대신할 수 있다

1. 발착역명 및 착역 소속선명
2. 화송인 및 화수의 주소 성명 또는 기업소명
3. 품명 1건2품이상 일때에는 「무엇(주화물(主貨物)의 품명)」라고 기입할것
4. 개 수

주·꼬리표는 백색지 또는 목찰(木札)로하고 강한철선 또는 삼노끈으로 부친것을 표준으로 한다.

제15조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화송인에게 화물통지서 갑(甲)편 을 교부한다.

제16조 다음화물의 손해에 대하여선은 철도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화 물 의 종 류	손 해 의 종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에의하여 1차에 2건 이상을 잃은 화물 2.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차문(車門)을 전부 또는 일부 개문(開門)하고 운송할 때 	<p>공재(共載)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p> <p>개문(開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p>
<p>다음 경우에는 화송인이 면책 특약의 조건을 승락하였을 때에 한하여 운송을 접수한다.</p>	
면 책 특 약 할 경 우	면 책 특 약 조 건 (그 의 약 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개화차에 적재할 화물을 무개화차에 적재할 때 및 냉장차 통풍차 보온차 또는 가축차에 적재할 화물을 그의 해당하지 않은 하차에 적재할 때 2. 천재 또는 선로불통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송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p>무개화차 또는 냉장차 통풍차 보온차 가축차 이외의 화차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는 화주의 부담으로한다 (화차특약)</p> <p>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는 화주의 부담으로한다. (지연특약)</p>

3. 화물의 감량 손상등을 방지 하기에 불충분한 포장이지만 취급상 저장에 없다고 인정 하는 때	포장불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는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 특약)
--	---

주·유개화차라 함은 유개차 냉장차 보온차 가축차 통풍차 협궤 유개차 협궤차장차 무개화차라함은 무개차 무축차 석탄차 광석차 협궤 무개차협궤 무축차 협궤광석차를 말한다.

제17조 탁송전의 화물을 화주가 자기책임으로 역구내에 류치 하려고 할 때에는 철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화물에 대하여 탁송 또는 반출을 독촉하여도 상당한 시간내에 이를 리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후시간에 대하여 화물류치료를 징수한다.

제2절 운 송

제18조 화차에 적재할 화물의 중량은 화차표기 화중톤수(화약류에 있어서는 그의3분의2)를 초과할수 없다.

제19조 무개화차에 화물을 적재 할때에는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2차이상 사용할때 및 제7조에 의하여 철도에서 특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물의 기리 넓이는 화차의 측판(側板) 및 단판(端板)의 내측(內側)(측연이 없는 것은 차체) 직립면(直立面)부터 그의 방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
2. 화물의 높이는 화차 상면(床面)부터 다음 제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종 별		높 이 의 제 한	
		화 차 중 양 부	화 차 량 측
광궤선화차	라다형 석탄차	2.2m	2. 0 m
	라두형 광석차	2. 6 m	2. 4 m
	기 타		
합 궤 선 화 차		2.1m	1.8m

주. 티유형 무축차를 사용할때 본조의 화차상면 이라함은 차축상(車軸上)의 상면을 말한다.

제20조 광대품으로서 그 거리가 전조의제한을 초과하는 것은 무개화차 2차이상을 사용하여 다음각호에 의하여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3차이상에 화중을 부담 시킬수 없다.

1. 화물의 넓이는 다음표의 제한(화차내측의 넓이가 이에 달하지 못할때에는 그 넓이)을 초과 할 수 없다.

화중을 부담시키는 화차가 1차인 경우

화중을 부담시키는 화차			협궤선		광궤선			
			50 티타형 톤 화차 60 티유형 50톤 화차	기타 화차	포기화중15톤 화차		포5 기톤 화차 중	
					협티서 협티너 형화차	협티다 형 화차		
화중부 담차의 차체에서 나오는 화물의 부분	돌출부가	0.5m	까지의부분	2.9m	2.8	1.9	1.8	1.7
	"	1m	"	2.8m	2.8	1.9	1.6	1.7
	"	1.5m	"	2.6m	2.8	1.8	1.5	1.7
	"	2m	"	2.5m	2.8	1.6	1.3	1.7
	"	2.5m	"	2.4m	2.8	1.5	1.2	-
	"	3m	"	2.3m	2.8	-	1.0	-
	"	3.5m	"	2.1m	2.7	-	0.8	-
	"	4m	"	2.0m	2.6	-	0.6	-
	"	4.5m	"	1.9m	-	-	-	-
	"	5m	"	1.7m	-	-	-	-
"	5.5m	"	1.6m	-	-	-	-	
"	6m	"	1.4m	-	-	-	-	

화중을 부담시키는 화차가 2차인 경우

화중을 부담시 키는 화차	광 궤 선			협 궤 선		
	티타형60 50톤화차	포기화중 22톤 또는 30톤 화차		협티다형 15톤화차	티 다 의 15톤화차	포기화중 5톤 화차
		2차인 때	2차인 때			
화물의 거리 13m 미만인때	-	-	-	-	-	1.7m
" 18m "	-	-	-	-	1.7m	-
" 20m "	-	2.8m	-	-	1.4m	-
" 22m "	-	2.6m	-	-	-	-
" 28m "	-	-	-	0.7m	-	-
" 33m "	-	-	1.9m	-	-	-
" 37m "	1.6m	-	-	-	-	-
" 39m "	1.3m	-	-	-	-	-
" 41m "	0.9m	-	-	-	-	-

2. 화물은 화중부담차의 차체에서 앞 또는 뒤에 다음의 제한을 넘어서 내실을수 없다 이 경우에 내실은 부분에는 유차(遊車) (화중을 부담시키지 않는 화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 중 부 담 차		내실는 부분의 거리
광궤선	티다형 50ㄴ60ㄴ화차	6m
	기타화차(티너 티유형 50ㄴ화차를 제외한다	4 m
협궤선	협티다형 15ㄴ화차	4m
	기타의 15ㄴ화차	3m
	표기화중 5ㄴ화차	2m

3. 1차에 화중을 부담시키는 화물의 침목(枕木)은 뽀기-센타-의 위에 또 그차에 화중을 부담시키는 때에는 차체중앙에 두고 표기 화중 ㄴ수의 비례에 의하여 화중을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호에 의하여 화물을 내 실을 때에는 그내 실은 부분의 화중을 부담하는 화차에 실은 화물의 중량은 다음의 제한을 초과 할 수 없다.

돌출부의 하중을 부담시키는 화차	광 궤 선				협 궤 선		
	표기화 중22ㄴ 화 차	" 30ㄴ 화 차	" 50ㄴ 화 차	" 60ㄴ 화 차	표기화중 15ㄴ화차		표기화 중15ㄴ 화 차
					협티다형	협티서형 협티너형	
돌출부 0.5m 미만인때	20ㄴ	28ㄴ	48ㄴ	58ㄴ	14ㄴ	14ㄴ	4.5ㄴ
" 1m "	19	26	46	56	14	13	4.1
" 1.5m "	18	25	45	55	13	12	3.7
" 2m "	17	24	43	53	13	12	3.4
" 2.5m "	16	22	42	52	12	11	-
" 3m "	15	21	40	50	12	11	-
" 3.5m "	15	20	39	49	12	-	-
" 4m "	14	19	38	48	11	-	-
" 4.5m "	-	-	37	47	-	-	-
" 5m "	-	-	36	46	-	-	-
" 5.5m "	-	-	34	44	-	-	-
" 6m "	-	-	33	43	-	-	-

4. 2차에 화중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물을 침목. 밖에 나오게하여야 한다.

(2) 중간에 류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 화물이 침목에 닿는부분 금속물인때에는 75cm이상 기타는 45cm이상

(2) 중간에 류차를 사용하는 때에 있어서 화물이 침목에 닿는 부분이 금속물인 때에는 100cm 기타는 75cm이상

5. 화중 부담차 및 류차의 상면(단관 축관이 있는 것은 슷줄기)과 화물의 하면과는 화중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150cm 이상의 간격(間隔)을 둘것
 광대품과 다른화물을 1건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따로 정한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다른화물을 광대품의 중량을 부담하지 않는 화차에 적재 할 수 있다.

주1. 제1항제1호의 화중부담차의 차체에서 나오는 화물의 제한 넓이는 나온부분에 대하여 각각 제한한것이고 화물전체의 넓이를 제한한것은 아니다.

주3. 2차에 화중을 부담 시키는 때에는 화물을 화중부담차의 차체로부터 앞 또는 뒤에 나오게 할 수 없다.

주3. 제1항제2호표에 의한 화물을 나오게 하는 것은 차체의 앞 또는 뒤 어느한편만에 한한다.

제21조 화물은 그 중량을 화차 상면에 고르게 부담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량의 화물을 광케 빠기-화차의 중앙에 적재할때 화차 상면에 있어서 화중 부담면의 거리는 화차에 대하여 세로(縱) 다음 제한 이하로 할 수 없다.

1개 또는 1 건의중량	화 중 부 담 면 의 거 리				
	티 너 형	티 다 형	티 유 형	도 두 형	기 타
15톤 이하	-	-	-	제한없음	-
20 " "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5m 이상	제한없음
25 " "	2m 이상	3m 이상	1m 이상	7m 이상	5m 이상
30 " "	3m "	5m "	2m "	-	7m "
35 " "	4m "	8m "	3m "	-	-
40 " "	5m "	11m "	4m "	-	-
45 " "	6m "	14m "	5m "	-	-
50 " "	7m "	16m "	6m "	-	-
60 " "	-	18m "	-	-	-

주1. 2개 이상의 침목을 가로(橫) 놓고 이에 중량을 부담 시킬 때에는 침목간의 거리를 화중부담 면의 거리로 한다.

화중부담면의 거리가 제2항의 제한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침목류를 세로(縱) 사용하여 이에 충분히 화중을 부담시켜 그 부담면의 거리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이 때에 가장 긴 침목류(2개 이상을 련접한것을 포함한다)의 거리를 화중부담면의 거리로 한다.

주2. 제2항의 제한은 1건중의 각부분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중량품을 중앙에 경량품을 그 전후에 적재 하는데 있어서 1건 전체의 화물의 중량에 대한 화중 부담면의 거리는

제한 이하가 되지 않아도 각부분 중량의 화중부담면의 거리가 본제한에 달하지 않는 적재방법 등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22조 다음 화물로서 화송인 및 발역을 같이하는것은 천도의 승인을 받아 2건이상을 1차에 적재 할 수 있다.

1.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가축으로서 도중 역착인 경우
2. 차급화물과 착역 및 화수인을 같이하는 소급화물.

제23조 차급화물 시체 동물 광대품 및 전조에 의하여 적재하는 소급화물의 발착역에서의 상하차 및 화차에 설비하지 않은 화차 적재용품(시-트 로프 측주 전환침목 적미용구등)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유개화차에 적재할 화물을 무개화차에 적재할 때에 사용하는 측주 한하여는 철도의 부담으로 한다.

차급화물을 궤간이 다른선을 통하여 운송하는 때의 접속역에서의 화물 환적은 철도에서 접속료를 징수하고 이를 대행한다.

제2항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서는 철도에서 그의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상하차를 한다.

제24조 상하차 화주부담 화물의 상하차 시간은 그 통지를 한때 또는 통지에 대신하는 계시를 한때부터 가산하여 4시간(화약류 및 협궤차는 2시간)으로 한다.

전항의 시간내에 상하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후 시간에 대하여 화차류치료를 징수한다.

주1. 궤간이 다른선을 통하여 운송하는 때와 같이 1건의 화물을 2차 이상에 분재(分載)한 일부가 선착한 때의 하차시간은 화차도착별 각차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0조제1항의 인수기간에 대하여서도 역시 같다.

주2. 화약류의 하차통지를 한후 5시간을 경과하여도 화수인이 하차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화차를 가급적 안전한 선로에 옮기어 위험방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하차 화주부담 화물을 발역에서 유개화차에 적재 완료 하였을때 또는 착역에서 하차에 착수하려할 때에는 화주는 당해 역에 봉합 또는 개봉을 청구하고 이에 립회하여야 한다.

1. 호송인이 첨승하는 화물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 동물 또는 이에 준하는 화물
2. 전호 이외의 화물로서 그 성질상 봉합할필요가 없을때

제26조 취급종별이 같은 화물은 다음순위(順位)에 의하여 일간계획 또는 인수한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1. 위험품
2. 시 체
3. 동 물

4.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

5. 전각호 이외의 화물

운수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또는 국가적 전지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항에 의하지 않을수 있다

(주) 취급종별을 달리하는 화물은 수송렬차 수송방법등을 달리함으로 그 운송 순위를 인정하기 곤란할것나 인수 할때 또는 당시의 수송사항 기타를 참작하고 본조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7조 화송인은 다음 화물에 대하여서는 관수(管守)또는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인원의 호송인(護送人)을 첨승 시켜야 한다.

화 물 의 종 류	호 송 인 의 인 수
1. 말	1건 또는 1차에대하여 1인
2. 운송도중 환적을 요하는 동물로서 용기를 사용 하지 않는것	1건 또는 1차에 대하여 1인
3. 시 체	1건에 대하여 1인
4. 갑(甲)종철도 차량	1차에 대하여 1인
5. 전각호 이외의 화물로서 운송상 특수한 관리를 요함으로 철도에서 호송인을 청구할것	1건 또는 1차에 대하여 1인

제1항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호송인을 첨승 시킬때 또는 본조 소정 이상의 호송인을 첨승 시키려고 할 때에는 철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송인은특히 철도에서 승차할차량을 지정한 이외에는 그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승차하여야 한다.

제28조 호송인에 대하여서는 호송인료를 징수한다. 철도의 승인없는자가 호송인으로 승차하였을 때에는 전항료금 이외에 3배의 가중금을 징수 한다.

제3절 인도(引渡)

제29조 도착화물은 화물통지서 을편(乙片)에 화수인의 날인(捺印)으로써 인도한다.

제30조 착역에서 인도할 화물의 인수시간(引受時間)은 도착통지를 내였을때 또는 도착 통지 불능의 제시를 한때부터 기산하여 다음시간 이내로 한다.

1. 소급화물

(1) 화약류 2시간

(2) 기타 화물 12시간

2. 차 급 화 물

제24조의 하차시간에 상당한 시간

인수시간내에 화물의 인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후 시간에 대하여 화물보관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호송인이 침송한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 보관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 화약류 및 시체를 5시간 이내에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내무기관에 그 사유를 신고 하여야 한다.

제31조 각역에서 인도할 화물 또는 탁송을 취소한 화물을 화주가 역구외에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차급화물에 있어서는 하차완료후(탁송업소의 경우로서 상하전인 때에는 인도후)소급 화물에 있어서는 인도후 12시간을 경과한 때부터 반출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화물류치료를 징수한다.

제32조 철도는 차급화물의 도착통지를 낸때부터 5일(화차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을 경과하여도 화주가 하차하지 않을 때에는 화주의 비용으로 대리하차 할 수 있으며 10 경과하여도 인도요구가 없을 때에는 화물의 환가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금은 화차류치료 화물보관료 및 기타 비용에 충당하고 차액을 추정 또는 환불한다.

제33조 다음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화송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도착화물의 화수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착통지를 한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인도청구가 없는 때
3. 화수인이 화물의 인수를 거부하는 때
4.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전항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이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때에는 화주의 비용으로 환가 처분을 할 수 있다.

화물의 성질상 일의 경과로 인하여 부패 변질할 우려가 있음으로 화송인의 지시를 받을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라도 환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환가처분을 하는 때에 징수하는 화차류치료 및 화물보관료 계산시간은 화차류치료에 있어서는 철도에서 하차하였을 때 화물보관료에 있어서는 환가처분을 한때까지로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환가대금은 운임요금 립체급 기타비용을 공제하고 간역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환불하고 부족액은 추정한다.

제34조 발역 또는 착역에서 화물을 화수인에게 인도한 증명을 화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인도증명료를 징수하고 이에 응한다.

제4절 운송변경

제35조 화송인이 화물탁송후 다음의 운송변경을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화물통지서(화물통지서를 발행하기전 또는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운송변경청구서를 발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탁송취소

2. 발역송환(운송 도중의 화물로서 천재기타 불가항력인 때에 한한다)

3. 착역변경 운송도중의 화물로서 천재기타 불가항력인때에 한한다) 운수상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운송변경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철도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및 탁송취소를 한때의 배차 위약금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 화물의 탁송취소의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다음 시간에 대하여 화차류치료 및 화물 보관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철도의 책임으로 인하여 경과한 시간은 이를 공제한다.

1. 화차류치료

(1) 화물상차전일때에는 상차통지 발신시간부터 탁송취소청구를 받은시간까지

(2) 화물상차 후일때에는 상차통지 발신 시간 부터 하차 완료 한때 까지

2. 화물보관료

화물을 인수한때부터 화주에인도한때까지

제5절 사고 및 착오(錯誤)

제37조 화물의 품명, 성질, 개수 중량, 기리등이 화송인의 신고와 상이한때에는 다음구별에 의하여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그요지를 화송인 및 화수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발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운임 요금 기타 운송조건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화송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중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품명수량 규격등에 의하여 (換積) 분송(分送)취급 중별의 정정등을 요할때에는 그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원취급 중별에 의하기 어려운때에는 이에 해당한 취급중별로 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히 소요된 비용은 화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 화물의 별실 손상 기타의 손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손해가 더커지지 않도록 조치(措置)하는 동시에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 발착역을 통하여 화송인 회수인에게 그 개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에 있어서 사고의 정도 성질등에 의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을 중지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고 화송인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화송인의 지시를 받을 사이가 없는데 또는 철도에서 정한 기간내에 화송인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도에서 상당한 조치를 한후 그 요지를 화송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본조의 사고가 화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을때의 화물의 응급조치 기타에 소요된 비용은 화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운임 및 요금의 계산

제1절 통 제

제39조 운임 및 요금 계산에 있어서 그거리의 산출은 다음 경유를 제외하고 최단경로에 의한다.

소 급 화 물

1. 경의선 력포(力浦)이남 각역과 평덕선 동평양 이북각역 상호간 발착 평양경유
2. 평원 룡성(龍城) 원 각역과 경의선 간리(間里)이북각역 및 평남선(普通江)이원 각역 상호간발착 평양 경유
3. 경원선 남산(南山)이남 각역과 동해선 오계(梧溪)이남 각역 상호간 발착 원산 경유
4. 원라선라남(羅南)이남 각역과 석막(石幕)이북 각역 상호간발착 청진 경유

차 급 화 물

1. 경의선 력포(力浦)이남 각역과 평덕선 동평양 이북 각역 상호간 발착 평양 경유
2. 평원선 룡성(龍城)이원 각역과 경의선 간리(間里)이북 각역 상호간 발착 평양조차장 경유
3. 경의선 방면 각역과 사해선 신원(新院)이남 각역 상호간 발착 광석류 목재류 금속류 석탄류 석재류 신탄류 묘목 및 요업품에 한한다. 신하성 경유
4. 협계선 경유와 광계선 경유와의 2경로가 있는 때에는 광계선경유

운임 및 요금계산상 발생하는 1km미만의 단수(端數)는 최후에 1km로 인상 한다.

제40조 운임 및 요금 계산에 있어서 화물의 중량은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실중량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중량은 화물 1건마다 계산하고 1kg미만을 1kg로 일상한다.

주. 특히 정한것이라 함은 화물 등급표에 정한것을 말한다.

제41조 운임 및 요금계산에 있어서 1원미만의 단수(端數)는 운임 및 요금을 각각 1건마다 최후에 1원으로 인상한다.

제2절 운임의 계산

제42조 운임은 화물의 취급 종별 등급 수량 및 운송 구간의 거리를 기초로 1건마다 화물임률표(貨物賃率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3조 화물의 등급 임률 및 그 적용방법은 따로 정한 화물 등급표에 의한다.

제44조 소급화물의 운임은 10kg단위로 계산하고 10kg미만의 중량은 10kg으로 인상하여 그 운임계산 중량의 최저를 50kg으로 한다.

제45조 차급화물의 운임은 1톤단위로 계산하고 1톤미만의 중량은 1톤으로 인상한다.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잡품(雜品)으로 취급하는 화물 및 화물등급표의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화물은 사용차의 표기화중 \$ 수로하고 기타 화물은 다음과 같다.

1. 광케선내 할차인때

사 용 화 차		최 저 \$ 수
표기화중	30\$차 (조차제외)	화물등급표에 정한 최저\$수
"	18\$ 또는 22 화차	{ 상기와 같음(최저 \$수가 표기화중 \$ 수를 초과 할 때는 표기화중 \$수)
"	40\$ 화차	{ 표기화중 30\$화차에 대한 최저\$ 수의
"	45\$ 화차	133%
"	50\$ { 티너형 무측차 제외 }	" 150%
"	60\$ "	" 166%
"	65\$ "	" 200%
티너형	무측차	" 216%
	조 차	35\$
		표기화중 \$수

2. 협케선 내 발착한때

화물등급표의 최저\$수	최 저 톤 수			
	표 기 화 중 5\$ 화 차	" 10\$ 화 차	" 15\$ 화 차	" 20\$ 화 차
5\$의 의 화물	1\$	5\$	5	-
8\$의 의 "	2	7	8	-
18\$의 의 "	5	8	11	16
21.24. 27\$의 "	5	9	13	18
30\$의 의 "	5	10	15	20

1. 궤간이 다른선을 통하여 운송하는때

(1) 광케선발

광케선 내 사용화차의 구별에 따라 제1호에 의한 \$ 수

(2) 협계선발

표기화중차30톤 화차에 대한 최저톤수

2차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차급화물의 운임계산 최저톤수는 각사용 화차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를 합산 한다 운임계산 최저톤수를 달리하는 화물을 1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중 최저톤수가 많은 품목에 의한다.

그러나 주물(主物)과 그의 부속품과를 1건으로 하는 때에는 주물에 대한 최저톤수에 의한다.

제46조 다음 화물의 운임은 1건마다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하기(下記)비율로써 가산(加算)한다.

1. 소급화물(1개에 대하여)

거리 5.5m 중량 300kg 용적 15m³를 초과하는것 30%

거리 10m 중량 1톤 용적 5m³를 초과하는것 50%

거리 21m 중량 3톤 용적 15톤을 초과하는것 100%

2. 차급화물(1개에 대하여)

거리 10m 중량 3톤 용적 15m³를 초과하는것 20%

거리 21m 중량5톤 용적 25m³를 초과하는것 50%

넓이 또는 높이에 있어서 제19조의 적재 제한을 초과 하는것 또는 거리33m 중량 30톤 용적 50m³를 초과하는것 100% 전항에 가산률을 달리하는것 또는 전항의 화물과 기타화물을 1건으로 하였을 때에는 최고률에 의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제47조 화물 냉각용으로 회차 빙조(氷槽)에 넣은 어름 및 무개화차에 사용한 화차-적재용품(화물의 일부를 이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를 제외한다)의 중량은 운임계산 중량에 가산하지 않는다.

제3절 요금의 계산

제48조 화물의 요금 및 그 계산방법은 따로 정한 화물 등급표에 의한다.

제4장 운임요금의 추징 또는 환불

제1절 운송변경

제49조 운송변경에 응하였을 때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1. 탁송취소

(1) 철도의 책임으로 인하여 탁송취소의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기수운임 및 요금의 전

액을 환불 한다.

-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기수운임 및 요금과 이미 소요된 요금 또는 비용과의 차액을 추정 또는 환불한다.
- (3) 화주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수운임 및 요금과 이미 소요된 요금 또는 비용과의 차액을 추정하고 환불하지 않는다

2. 발역송환

- (1) 철도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역송환의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무임으로 송환하고 기수운임 및 요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 (2) (1)이외의 경우에는 발역화물 소재역간의 거리를 왕복 각각 구분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운임 및 요금과 기수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을 추정 또는 환불한다.

그러나 소급 화물로서 화주의 책임으로 인하여 송환할때 에는 환불은 하지않는다.

3. 착역변경

- (1) 철도의 책임으로 인하여 착역변경의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발역 변경 착역 간의 거리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 및 요금과 기수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을 추정 또는 환불한다.
-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발역 화물 소재역 간의 거리와 화물소재역 변경착역 간의 거리를 각각 구분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운임 및 요금과 기수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을 추정 또는 환불한다.

제2절 사고 및 착오

제50조 화물의 품명 성질 중량 용적 기리 개수 기타 운임및 요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화물인수당시의 화송인의 신고와 상이(相異)한때에는 정당운임 및 요금과 기수운임 및 요금의 차액을 추정하고 환불은 하지않는다.

그러나 취급상 착오로 인한때는 과잉액(過剩額)을 환불한다. 전항의 정당운임 및 요금은 원취급중별(원취급 중별에 의할 수 있을 때는 현품에 상당한 취급중별로정정)에 의한원발역과 사고발견 당시의 착역간에 대하여 다음 구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1건으로서 취급할수 있는 화물인 때에는 그 전수량에 대한현품에 상당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2. 1건으로써 취급할 수 없는 화물을 혼합하였을 때에는 1건으로서 취급할수있는 화물마다 별건으로 하고 각건 마다 현품에 상당한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차급화물로서 혼합한 부분이 소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때에는 소급에 의하여 정당운임 및 요금을 계산한다.

제51조 철도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화송인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이 전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보다 부족될 때에는 제53조 및 제54조에 정한바를 제외하고 부족운임외에 정당운임의 3배에 상당한 가중운임을 징수한다.

제52조 화송인이 위험품을 다른품명으로 탁송 하였을 때(화약류 이외의 위험품으로서 정당한 품명이 동일품류(品類)에 속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실중량에 대하여 11g 마다 화약류에 대하여는 100원 기타에 대하여서는 50원의 비율에 의하여 가중금을 징수한다.

주 「실중량」이라함은 운임계산중량 또는 화물통지서면 기재 중량과는 관계없이 현실의 화물중량을 말한다. 이때에 포장의 중량은 실중량에 가산한다.

제53조 다음경우에 있어서는 51조의 가중운임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소급 화물의 중량이운임계산 중량보다 많거나 또는 운임가산의 기초가 되는 거리 중량용적이 초과할때
2. 차급 화물의 중량이 운임계산 톤수를 넘어도 그 초과 중량이운임계산 톤수 $\frac{5}{100}$ 미 만인 때

제54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가중운임은 탁송취소에 응하였을때 또는 품명 기타의 상이(相異)에 대하여 철도에서 발견하기전에 화송인으로부터 정정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55조 상하차 화주부담의 화물을 제19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적재제한을 초과하여 적재할때 또는 2차에 걸쳐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을 화중부담차의 포기화중 톤수를 초과하여 부담시켰을때에는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원발역과 사고발견당시의 착역간에 대한 정당운임의 20%에 상당하는 적재제한의 과중운임을 징수한다. 전항의 적재제한의 가중운임은 전조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주」 본조의 적재제한의 가중운임은 동일화물에 대하여 본조의 제한에 위반하는 사실이 2건이상 병발(併發)한 경우라도 이를 병과(併果)하지 않는다.

제3절 징수 또는 환불의 대상 및 시기

제56조 운임및 요금은 따로정한바를 제외하고 발역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에 화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57조 운송변경에 응하였을때에 운임및 요금은 운송변경 신청자에게 대하여 추정 또는 환불한다.

제58조 화중운임은 화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59조 화물보관료는 화물을 인도할때에 화수인 또는 운송변경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0조 화물류치료는 발역에 있어서는 류치를 요구한자 또는 운송변경을 신청한자로부터 또 착역에 있어서는 화수인으로부터 화물의탁송 또는 반출을 완료하였을때에 징수한다.

제61조 철도의 특수한 시설을 사용하였 때에는 시용자로부터 설비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2조 화차류치료는 제24조 제2항에 있어서 상차 또는 하차하였을 때 화송인 또는 화수인 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6조의 경우에는 운송변경에 응하였을 때 또 하차완료한 때 운송변경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3조 제19조의 적재제한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광대품 또는 갑종철도 차량을 운송한 때에 철도직원이 침승호송할 경우의 침승료는 화송인 으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5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교통상대리 부상 박의완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

(1949. 12. 23 교통성규칙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항만부두에서 화물의 상하선(上下船)작업 보관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사업은 본규정에 의하면 실시한다.

제2조 본규정에 있어서 항이라 함은 교통성 산하 항사무소 또는 해운사무소를 항장이라 함은 교통성 산하 항사무소장 또는 해운사무소장을 각각 말한다.

제3조 항만부두 사업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항만부두 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관리
2. 상하선작업 및 화물의 보관 및 구내작업
3. 선박의 입출항취급 및 수로 안내
4. 기타 항만부두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사업

제4조 항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의 입출항 또는 부두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화주가 국가의 법령 또는 항만부두사업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선박이 부두시설 및 항내구축물을 파손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3. 항의 현존한 설비로서 작업할 수 없을 때

제2장 항 만 부 두 관 리

제5조 제5조 항은 선박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담수 또는 연료탄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 항은 선박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로안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선박의 착부(着埠)순서는 검역을 요하는 선박은 검역완료 순서에 의하며 검역을 요하지 않는 선박은 입항계의 제출순서에의한다.

제8조 선박이 화물 또는 부두시설 및 항내 구축물에 손해를 주었을때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7항장은 항만부두 지역내에 선박운항 또는 부두작업의 장애물이 있을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제거요구를 할수있으며 이요구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서 제거할수있다.

제10조 항이 관리하는 부두구내의 창고는 상하선에 필요한 화물에 한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계약으로서 이를 임대(賃貸)할 수 있다. 항은 임대한 창고의 화물에 대하여는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항장은 사업상 필요한때에는 임대계약중의 창고에 대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15일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창고의 반환을 요구한기간 또는 임대기간만료후 창고를 반환하지 않을때에는 재고화물에 대하여 기간만료 익일부터 부두보관료와 동일한료금을 징수한다.

제13조 항장은 부두구내의 시설 및 화물의 보호와 질서를 보장하기위하여 부두구내의 출입을 단속한다.

제3장 화 물 취 급

제14조 선박 또는 화주는 수출입 기타의 허가를 요하는 화물의 작업을 신청할때에는 당해기관의 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선 화물에 대하여서는 화물인 도시에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 화물을 해장(海葬)하려고 할때에는 화주는 해장신청서를 항에제출하는동시에 당해화물에 대한 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수속 미완료의 화물인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전항의 해장은 포장의 이상이 있을때를 제외하고 항사업의 지장 없을때에 한하여 이에 응한다.

제16조 화물을 해장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에 해장년월일 화인번호(貨印番號)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장하였든 포장에 대하여는 쌍방이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화물의 하선을 요하는 선박은 입항계를 제출할때에 적화목록(積貨目錄) 화물적재도(貨物積載圖) 선창별(船艙別) 화물적재명세서(貨物積載明細書)(위험품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할것)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귀중품 위험품이라함은 해운화물등급표에 규정한것을 말한다.

제18조 화물은 포장에 이상이 없는한 포장현상대로 인수인도한다.

제19조 항과 외국선박간의 화물의 인수인도는 화주의립회하에 적화목록선창별 화물명세서(사고화물에대하여는 사고화물조서)에 의하여 다음장소에서 이를 집행한다.

1. 하선할때에는 선박
2. 상선할때에는 부두(해상작업을 할때에는 부선)

제20조 화물을 부두구내에 반입할때에는 항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1조 통상을 통하여 구내에서반출 또는 구내에 반입하는 화물의 인수인도는 화차인 경우에는 화차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창고 또는 로적장소에서 항과 화주간의 보관의뢰서 또는 출고의뢰서(사과화물에 대하여는 사고화물조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22조 항에 보관화물 기간은 화약류폭발물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하선화물-하선완료일부터 30일간
2. 상선화물-반입일부터 60일간

제23조 항장은 전조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화물에대하여 부두구역의로반출 할것을 화주에게 요구할수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화주의비용으로 구내적당한 장소에 의적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 화약류 폭발물은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의이하에 취급하되 상선화물에 있어서는 상선전 8시간보다 빨리 구내에 반입할수 없으며 하선화물에 있어서는 하선후 8시간이내에 구내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제25조 항은 보관중의 동물에 대한 사양의 책임을 지지않으며 화주는 동물의사양 및 보호를 위하여 감시인을 부쳐야한다.

제26조 화주가화물을 인수하려고 할때에는 출고의뢰서를 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부두 작업의신청은 로동시간내에 한하여 접수한다.

전항의 작업을 신청할때에는 부두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조의 부두작업 신청을접수 하였을때에는 다음시간내에 작업에착수 하여야 한다.

1. 12시까지에 접수한것은 당일중

2. 12시후에 접수한것은 그익일중

제29조 상선작업을 신청할때에는 상선작업신청서를 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각항 선박에대한 1일간 1선창의 상하선작업표준량 (천세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중량품 위험품 파손하기쉬운 화물등에 대하여는 립시약속에 의한다.

- 1. 산적화물 (散積貨物) 180
- 2. 포장화물 (包裝貨物) 160
- 3. 잡 품 (雜 品) 100

해상작업을 할때에는 전항 작업표준량의 70%로한다.

전각항의 작업일수계산은 최고적사선창 (最高積卸船艙)을 표준으로한다.

제31조 본선작업에 있어서 작업상 부득히한 경우에는 부선으로서 상하선작업을 할수있다.

전항에 의하여 부선작업을 한 경우에는 소정의 부선료를 징수한다.

제32조 선박 또는 화주의사정에 의하여 작업하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작업대기료를 징수한다.

제4장 료 금 계 산

제33조 각료금계산에 있어서 100kg미만의 단수는 100kg로 인상한다.

제34조 보관료는 용적 또는 중량 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작업료는 중량 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용적 수는 1.11m³를 1 으로 한다.

제35조 제료금의 계산에 있어서 취급상 오산이있었을 때에는 과잉액은 환불하고 부족액은 추정한다.

전항의 료금의 추정 또는 환불은 그로금 징수일부터 3개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6조 화물보관료의 일수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 1. 하선화물-하선작업 완료일부터 출고일까지
- 2. 상선화물-부두구내 반입일부터 상선작업 완료일까지
- 3. 기타화물-구내반입일 부터 반출일까지

제37조 작업기구를 임대하였을 때에는 임대한시간에 대하여 소정의료금을 징수한다.

제33조 제료금은 해운부두료금표에 정한바에 의한다.

제5장 화 물 사 고

제39조 항은 화물의 인수한때로부터 인도한때까지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경우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1.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2. 방역 기타 단속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
3. 자연 감량 자연풍화 자연변질로 인한 손해
4. 산적품의 감량으로서 항의책임없는 것이 확인된때의 손해
5. 면책 특약을 한때의 손해
6. 선박 또는 화주의 부정신고 또는 포장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제40조 화물의 손해보상은 멸실손상 부분에 대하여 인도할날의 국정판매가격으로하되 국정가격이 없는 것은 국가상업기관의 평가에 의한다.

제41조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의 청구기간은 그권리발생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제42조 손해보상청구는 손해보상청구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증명서
2. 손해품명세서
3. 당해화물증권

제43조 본규정은 195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제44조 본규정 실시와 동시에 「해운처에 관한 임시규칙」(1948. 9. 2 교통국 규칙 제4호)

「해운처관하 상항에관한 임시규칙」(1943. 9. 2 교통국 규칙 제5호)

「북조선 항만 부두에서의 선박작업의 표준」(1948. 9. 2 교통국 규칙 제6호)

「북조선 상항에서의 근본 저항세징수에 관한 규칙」(1948. 9. 2 교통국 규칙 제7호)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교통상대리부상 박 의 완

제 2 절 체 신, 전 기 통 신

◇ 전기통신사 (電氣通信士) 자격심사 (資格審査)에 관한 규정

(1949. 7. 15 체신성규칙 제3호)

제 1 조 전기통신사 (이하통신사하고 략칭한다)의 자격심사를 받으려고 하는자는 본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통신사의 자격심사를 하기위하여 체신성내에 전기통신사 자격심사위원회 (이하심사위원회라고 략칭한다)를 설치하며 그심사위원회 구성은11명으로하고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서기장1명 및 위원8명으로하되 체신상이 이를 임명한다.

제 3 조 심사위원회는 필요에따라 도 (평양시를 포함한다 이하도 이와같다)심사위원회 또는 부문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조직할수있다.

제 4 조 심사위원회는 그사업활동에 있어서 체신상에게 복종한다.

제 5 조 통신사의 구분 및 등급은 다음과같다.

1. 무선통신사 1.2.3급
2. 전신통신사 1.2.3급
3. 전화통신사 1.2.3급

제 6 조 다음각호에 해당하는자로서 해당도체신부장의 추천이있는자에 한하여 통신사 자격사정을 받을수있다.

1. 무선통신사

(1) 1 급

- ㄱ 체신기술원양성소 무선통신과 1년이상을 졸업후 실무년간 3년이상되는자
- ㄴ 체신기술원양성소 1년미만을 수료 (修了)한자로서 실무년간 5년이상되는자
- ㄷ 이상과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는자

(2) 2 급

- ㄱ 체신기술원양성소 무선통신과 1년이상 졸업후 실무년간 2년이상되는자
- ㄴ 체신기술원양성소 무선통신과 1년미만을 수료한자로서 실무년간 4년이상되는자
- ㄷ 이상과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3) 3 급

- ㄱ 체신기술원양성소 무선통신과 1년이상 졸업후 실무년간 1년이상되는자
- ㄴ 체신기술원양성소 1년미만을 수료한자로서 실무년간 3년이상되는자

ㄷ 이상과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2. 전신통신사

(1) 1 급

ㄱ 체신기술원양성소 전신과 6개월이상을 졸업한자로서 실무년간 3년이상되는자

ㄴ 체신기술원양성소 전신과 6개월미만을 수료한자로서 실무년간 5년이상되는자

ㄷ 이상과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2) 2 급

ㄱ 체신기술원양성소 전신과 6개월이상을 졸업한자로서 실무년간 2년이상되는자

ㄴ 체신기술원양성소 전신과 6개월미만을 수료한자로서 실무년간 4년이상되는자

ㄷ 이상과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3) 3 급

ㄱ 체신기술원양성소 전신과 6개월이상을 졸업한자로서 실무년간 1년이상되는자

ㄴ 체신기술원양성소 전신과 6개월미만을 수료한자로서 실무년간 3년이상되는자

ㄷ 이상과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3. 전화통신사

(1) 1 급

초급중학교 졸업정도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전화교환 실무년간 3년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2) 2 급

초급중학교 졸업정도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전화교환실무년간 2년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3) 3 급

초급중학교 졸업정도이상의 학력을가지고 전화교환실무년간 1년이상되는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있는자.

제 7 조 다음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통신사 자격검정을 받을수있다.

1. 무선통신사

1.2.3급은 제6조의 1에준하여 그와동등이상의 실력을가진자

2. 전신통신사

1.2.3급은 제6조의 2에준하여 그와동등이상의 실력을가진자

3. 전화통신사

1.2.3급은 제6조의 3에준하여 그와동등이상의 실력을가진자

제 8 조 심사는 매년2회 이를 실시한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실시할수있다.

제9조 검정시험 과목과 심사의 시험장소 및 기일은 심사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0조 통신사 자격심사를 받으려고하는자는 소정기일내에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도체
신부장을경유하며 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정 또는 검정에합격된자에게 통신사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
다.

제12조 사정 또는 검정의과정에서 부정한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때는 심사위원회위원장
은 그자격을 취소한다.

부 칙

[통신사자격심사규정] (1947년 9월 1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체신국규칙 제1호)은 이를 폐지
한다

체 신 상 김 정 주

◇ 체신성산하 전신전화 선로공사부문 도급임 금제상급제및 식량특별 배급제에 관한 규정

(1949. 9. 14 체신성령 제4호)

제1조 「도급임금제상급제 및 식량특별배급제에 관한 결정서」(1948년 6월 8일 북조선인민
위원회 결정 제147호)에 의한 체신성산하 전신전화 선로공사부문 도급임금제 상급제 및
식량특별배급제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도급임금제는 보통도급제로하되 도급방식은 반도급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도급임금제를 실시할 범위는 사회전신전화 선로시설증설 및 보수공사를 담당할 유선
공에 한 한다.

제4조 도급정량은 별표 「도급기준량표」(생략)에의거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도급단가의 산출은 1일간 로동임금을 당일도급기준량으로 제하여 결정하되 이는 설
계서에 의한 로력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로되어야하며 결정된 도급단가는 작업능력
또는 실제작업량의 다소를 불구하고 동일하게 임금산출의 단위가 된다.

제6조 도급임금제 작업에 있어서 공사원료 자재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였거나 천재(天災)

기타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원인으로 당일도급 임금액이 기본임금에 달하지 못하며 더다른 작업을 할수없는 경우에는 기본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신전화 선로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약칭한다)은 작업지시표를 반별로 1매씩 작성하여 작업개시하기 5일전까지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반 작업성과에 대한 질적평가는 소장 또는 소장이 지정한 기술책임자가 정확한 과학적근거로서 이를 결정하며 이에따르는 임금지불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체 신 장 김 정 주

◇ 우편 및 우편송금에 관한 규정

(1949. 9. 14 내각결정 제134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규정은 우편 및 우편송금사업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인민들의 요구를 정확신속히 충족시킴으로써 국가활동과 인민들의 생활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우편 및 우편송금에 관한 요금은 내각에서 따로 규정함바에 의한다.

제 3 조 우편 및 우편송금에 관한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제 4 조 우편 및 우편송금에 관한 요금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요금을 과납하였을때 그 과납요금
 2. 특별취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특별취급을 하지못한 경우의 그요금
 3. 등기 또는 가격표시 우편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손해배상을할 경우의 그요금
- 그러나 송금을 령수한 경우에는 보통송금에 해당한 요금은 이를 징수한다.

제 5 조 전조의 규정예의한 요금반환의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2.4호에 있어서는 요금납부일부터 2개월간
2. 제3호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결정통지가 권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간

제 6 조 우편물의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우편물은 분실한 때에는 해당우편요금의 10배 이내의 금액
2. 소포우편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에는 분실훼손부분에 대한 도착지의 국정판매가격으로

하되 최고 2,000원을 초과할수없다.

3. 가격표시 우편물을 분실한때에는 그표시 금액

4. 가격표시 우편물을 일부 분실한때에는 그표시금액과 잔존금액과의 차액(差額)

제7조 우편기관은 다음경우의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1.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때

2. 발신인 또는 수취인의 허물로 인한때

제8조 우편물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우편물 발신일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교통운수기관은 우편기관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거절할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기관은 따로 정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통운수기관 이외의 차마 선박등을 소지한자는 정기체송차(定期遞送車)의 운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우편물 체송을 하지못하게된 경우에 있어서 우편기관으로부터 그 각자의 소유인 차마 선박등으로써 우편물을 체송할때대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거절할수없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기관은 따로 정하는 체송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우편 전용차마 선박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수송 이외에 이를 동원하지 않는다.

제12조 우편기관은 그취급중에있는 우편물로서 우편금제품을 봉입하거나 또는 규정에 위반한것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발신 또는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수있다.

제13조 우편기관은 우편금제품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이를 법외의하여 몰수 또는 처단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하는우표 기타 우편료금을 표증하는 증표를 위조 변조 또는 사용의 흔적을 제거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제2장 우 편

제15조 우편물은 보통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2종으로 구분한다.

신서는 소포우편물로 하거나 또는 소포우편물에 봉입하지 못한다.

제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내각수상 부수상 민족보위상 내무상 및 각상 또는 내각직속국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우편물은 정부우편물로서 그의 접수 및 배달을 우선취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부우편물에는 우편물표면에 「정부」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부우편물의 포장 중량 규격 요금등은 일반우편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수취인은 우편료금을 완납한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할수 없으며 발신인은 반환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9조 우편료금이 미납 또는 요금부족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그미납 또는 부족액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고 이를 수취할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전항의 요금납부를 거절할때에는 발신인에게 그우편물을 반환하고 발신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불명(不明)하거나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이를 발신인에게 반환할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0조 우편물(소포우편물을 제외한다)은 당해우편물에 표기한 지정장소에 배달한다.

지정한 장소에 배달할수없는 우편물 또는 수취인에게 교부할수없는 우편물은 발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신인에게 반환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권기관이 지정한 우편기관에서 이를 개봉하여 발신인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조 제2항에 의하여 개봉한 우편물로서 배달 또는 교부할수 없는것은 당해 우편기관에서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전항에 의하여 보관한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 아닌 경우에 그보관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자가 없을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유가물인 경우에는 그물건이 멸실(滅失)훼손(毀損)될 우려가 있는것 또는 보관에 그우편물 가격이상의 비용을 요할것인때에는 이를 매각하여 그대금을 보관하되 매각에 요한 비용은 매각금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유가물 및 매각대금은 우편물의 보관일부터 1개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지 않는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2조 우편물 발신인은 우편기관에 대하여 아직배달 또는 교부되지않은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성명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청구할수있다.

제3장 우 편 송 금

제23조 우편송금은 보통송금 전신송금 간이송금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24조 우편송금은 보통송금증서 및 전신송금증서에 대한 우편송금을 지불완료전에 있어서 지불정지 또는 환拂(還拂)청구를 할수있다.

제25조 우편송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발행일부터 2개월간으로 한다.

제26조 우편송금증서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우편송금증서를 분실 오손하였을때에

는 송금인 또는 령수인은 재교부증서를 청구할수있다.

재교부증서를 발행하였을때에는 원증서는 무효로한다.

제27조 우편송금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날날부터 1개년이내에 증서의 재교부청구를 하지않는 때에는 그송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우 편 송 금 에 관 한 규 정

(1949. 10. 11 체신성규칙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우편송금에 관하여는 따로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본규정에 의한다.

제2조 우편송금 1매의 금액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송금 10.000원
2. 전신송금 10.000원
3. 간이송금 1.000

그러나 보통송금 간이송금은 1원미만 전신송금은 10원미만의 단수를 부칠수없다.

제3조 체신사무에 관하여 체신기관상호간 또는 체신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자간의 송금은 무료로 할수있으며 제2조의 제한을 받지않는다.

제4조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들의 단체에서 본규정에의한 각종청구를 하려고할때에는 그청구서 및 증서등에 해당기관책임자 또는 금전출납책임자가 그의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우편기관은 송금령수인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제증명을 령수인에게 요구할수있다.

제6조 송금인이 송금령수증서를 제출하여야할경우에 분실로인하여 이를 제출하지못할때에는 우편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에 상당한 보증인을 가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발 송

제 1 절 보통송금

제7조 보통송금은 송금인에게서 보통송금청구서와 그 금액 및 송금료금을 받은후 송금증서

및 송금령수증서를 교부한다.

제 8 조 보통송금은 발송우편국에서 보통송금청구서를 우편으로써 지불우편국에 부송한다.

제 9 조 보통송금이 송금을 발송한후 보통송금청구서에 자기 또는 령수인의 주소성명을 오기(誤記)한것을 알았을때에는 발송우편국에 우편 또는 전신에의한 정정청구를 할수있다.

전항의 청구를 하려고 할때에는 당해송금령수증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우편 또는 전신에 해당한료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10조 발송우편국에 있어서 전조의 청구를 접수한후 지불우편국에서 이미 송금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그사유를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전 신 송 금

제11조 전신송금은 송금인에게서 전신송금청구서와 그 금액 및 송금료금을 받은후 송금령수증서를 교부한다.

제12조 전신송금은 발송우편국에서 전신으로 령수인의 주소 성명 금액 및 송금인의성명 기타 필요한사항을 령수인 거주지의 전보배달 또는 우편집배를 담당하는 우편국에 이를 통지한다.

전신을 취급하지않는 우편국간에 있어서의 통지는 우편접속방법에 의한다.

제13조 우편국에있어서 전조의 송금전보를 받았을때에는 곧 전신송금증서를 작성하여 령수인의 주소가 전보 직배구역(直配區域)내인때에는 전보배달의 례에의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령수인에게 송달한다.

제14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은 전신송금발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간 이 송 금

제15조 간이송금은 송금인에게서 그금액 및 송금료금을 받은후 송금증서 및 송금령수증서를 교부한다.

제16조 간이송금은 그 송금증서 지참인에게 송금의 지불을 받게 하려고할때 또는 임의의 우편국에서 그지불을 받게하려고 할때에는 령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지불우편국명의 기입을 생략할수있다.

제17조 간이송금인이 지정한 지불우편국 또는 령수인의 주소성명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고 할때에는 발송우편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장 지 불

제1절 보통송금

제18조 지불우편국은 령수인에게 다음의사항에 대하여 보통송금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부

합함을 확인한후 송금을지불한다.

1. 송금인 및 령수인의주소 성명
2. 공민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대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우편국은 보통송금증서로서 다음사항이 분명하지않은 것은 훼손 오손증서로 인정하고 그지불을 보류한다.

1. 금 액
2. 송금증서의 기호 번호

그러나 절단된 송금증서라 할지라도 전각호의 금액 및 기타기호 번호가 확실한때에는 이를 지불할수있다.

제20조 지불우편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금의 지불을 정지 또는 연기한다.

1. 보통송금증서 및 보통송금청구서가 소정양식과 다를때
2. 보통송금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았을때
3. 보통송금증서와 보통송금청구서와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때

그러나 령수인은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어느편의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송금의 가불을 청구할수있다.

제21조 지불우편국에서 전조에 의하여 송금의 지불을 정지 또는 연기하게되는 경우에는 보통송금증서 리면에 그리우 및 정지 또는 연기일수를 기재하여 이를 령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0조에 의하여 지불정지 또는 연기된송금은 정지 또는 연기한기한내에 그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곧 령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전 신 송 금

제23조 우편국은 령수인의 주소가 전보직배구역내에 있을때의 전신송금에 대하여서는 발송 시각부터 48시간이내에 송금을 령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전신선로 및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에는 레의로하되 그사유를 령수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 전신송금령수인 및 주소불명으로 증서를 송달하지 못할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 하여야한다.

제25조 제18조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전신송금지불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간 이 송 금

제26조 제18조내지 제22조의 규정은 간이송금지불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환 불 (還拂)

제27조 송금인은 발송우편국에 우편송금의 환불을 청구할수있다.

제28조 송금인이 전조의 청구를 하려고 할때에는 송금증서 및 송금령수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9조 송금인이 송금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경과 또는 훼손 오손된증서로써 환불 청구를 하려고할때에는 제38조에 의하여 증서의 재교부를 받은후 이를 청구하여야한다.

제30조 제3장 제1절의 규정은 우편송금환불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지 불 정 지

제31조 송금인은 임의의 우편국에 보통송금 및 전신송금의 지불정지 또는 해제에 대한청구를 할수있다.

제32조 송금인이 전조의 청구를 하려고 할때에는 그의 청구서와 송금령수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3조 제31조의 청구를 접수한 우편국에서는 지불우편국에 통지를 요할경우에 있어서 우편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되 이에 해당한 요금을 징수하여야한다.

제34조 우편국에서 제31조의 청구를 접수한후 지불우편국에서 이미 송금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그사유를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6장 지불또는환불우편국의 변경

제35조 송금인 또는 령수인은 임의의 우편국에 보통송금 및 전신송금의 지불 또는 환불우편국의 변경을 청구할수있다.

제36조 전조의 청구를 하려고 할때에는 청구서와함께 그의료금으로 우편송금 1건에 대하여 해당한 우편 또는 전신료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37조 제35조의 청구를 접수한 우편국에서는 지불 또는 환불우편국의 변경을 승인할때 및 이미송금을 지불 또는 환불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7장 재 교 부 증 서

제38조 송금인 또는 령수인이 송금증서의 유효기간경과 및 훼손 오손으로인하여 재교부증서를 청구하려고 할때에는 청구서 및 송금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9조 송금인 또는 령수인이 송금증서본실로 인하여 재교부증서를 청구하려할때에는 송금인은 청구서 및 송금령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령수인은 상당한 보증인을 세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0조 재교부증서청구에 대하여는 우편송금관리국에서 그송금의 지불 또는 환불되지않았음을 확인한후 재교부증서를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이를 청구자에게 부송한다.

제8장 특 별 취 급

제41조 전신송금인은 송금할때에 전신송금지급 취급을 청구할수있다.

제42조 전신송금인은 송금할때에 지불우편국에 송금증서 류치청구를 할수있다.

전항의 청구를 할때에는 송금청구서에 지불우편국명을 기재하여야한다.

제43조 류치송금증서는 지불우편국에서 령수인의 청구에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류치송금의 지불을 청구할때에는 그송금증서에 반드시 자기의 본거주지를 기재하여야한다.

제44조 류치송금증서의 류치기간은 증서발행일부터 15일간으로하되 이기간내에 령수하지않은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송금증서를 반환한다.

제45조 송금인은 송금할때에 우편 또는 전신에의한 송금지불 완료통지를 청구할수있다.

전항의 청구를 하려고할때에는 그료금으로 우편송금 1건에대하여 우편 또는 전신에 해당한 료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46조 지불우편국에서 지불완료통지를 요하는 우편송금을 지불할때에는 청구의 구별에의하여 우편 또는 전신으로서 그사항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47조 송금인 또는 령수인은 송금지불 여부의조사를 청구할수있다.

전항의청구를 하려고할때에는 그료금으로 우편 또는 전신에 해당한 료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48조 전조의 청구를 접수한 우편국에서는 지불우편국 또는 송금관리국에 송금지불여부의 조회를하여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체 신 상 김 정 주

◇ 우 편 물 에 관 한 규 정

(1949. 11. 2 체신성규칙 제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우편에 관한 사업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본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우편물을 집배할지역을 우편구라고하며 우편구는 시내 및 시외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편물의 집배사무를 취급하는 우편기관의소재지 및 그의린집지로서 체신상이 이를 지정하며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것으로 한다.

제 3 조 우편에관한 요금으로서 납부된 우표류는 해당우편기관에서 이를 소인하여야한다.
우편물에 첨부된 우표가 정한로금을 초과하였을때에는 이를 정당한 요금액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제 4 조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의 취급한계는 다음과같다.

제 5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우편금지품으로 한다.

1. 반국가적 반인민적 문건 서적 및 물품

그러나 범죄수색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에 수발하는 것으로서 봉합하고 등기 또는 소포우편물로 한것은 이를 제외한다.

2. 물품의 성질상 다른 우편물을 오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물품

3. 폭발 발화 인화성있는 위험품 및 유해악취(有害惡臭)의 물품

4.아편 「모루히네」 「고카잉」기타 마취제물품 및 생병원균(生病原菌)또는 병원균의 포함(包含)혹은 부착(附着)의 혐의있는 물품

5. 독극약(毒劇藥)독극물

그러나 국가기관 상호간수발하는 것은제외한다.

6. 외설(猥褻)또는 비도덕적인 물품

7. 생동물

그러나 병아리 및 양봉은 따로정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급한다.

제 6 조 우편기관은 그 취급중에있는 우편물로서 우편금지품 또는 규정에 위반된것이 있다고 인정할때 발신 또는 수취인이 개봉을 거부하거나 또는 개봉을 요구할수없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우편기관에서 개봉할수있다.

제 7 조 용적 또는 중량의 제한을 초과하는 우편물 및 통화 귀금속 보석 기타 귀중품을 보통 우편물로 발신한것 또는 기타 규정에 위반된 우편물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신인에게 이를 반환하되 다음의 요금을 징수한다.

1. 우편요금 미납 또는 부족인 때에는 그 불납액의 2배
2. 통화를 가격표시로 하지않고 발신한것은 가격표시요금의 5배

제 8 조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신인은 등기가격표시우편물 혹은 소포우편물의 배달교부를 할때 또는 반환에있어서 우편물에 손해가있다고 인정하여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그사유를 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 우편물을 수취한후에는 이의 (異義)를 제기할수없다.

제 2 장 보 통 우 편 물

제1절 봉 함 서 신

제 9 조 밀봉한봉투 또는 포장에넣은 서면통신물을 봉함서신이라고한다.

봉함서신은 규정한용적 및 포장의 범위내에서 그형태와 봉함에대하여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절 엽 서

제10조 우편엽서의 표면에는 통신문을 기재할수없다.

우편엽서의 리면전부 또는 대부분을 회화 사진 인영(印影)등을 나타낼수있다.

제11조 보통엽서는 다음에 의하여 사제(私製)로하여 발신할수있다.

1. 규격 및 지질은 정부가 발생하는것은 표준으로할것
2. 중량은 3g을 표준으로할것
3. 색채는 백색 또는 담색으로 할것
4. 표면의 상부중앙에 「우편엽서」의문자를 기재할것.

제12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여 발신하였을 때에는 봉함서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3절 정 기 간 행 물

제13조 정기간행물로서 발송특별취급을 함에있어 다음조건을 구비한것은 해당도 체신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간행물 제1류 또는 제2류로 이를 발신할수있다.

1. 매일 또는 월1회이상 축호(逐號)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것
2. 서적의 성질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기타 공공(公共)의 성질을 가진사항을 보도 또는 논술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국가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위하여 복무할 목적으로 발간하며 광범히 발매하는것

제14조 정기간행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1류 일간 또는 주간신문지

제2류 월1회이상 발간하는 잡지

제15조 정기간행물의 발송특별취급승인을 받으려고하는 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에 최근 발행한 간행물의 견본 5부를 첨부하여 발신우편기관을 경유하여 해당 도체신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정기간행물의 명칭
2. 게재사항의 종류
3. 정기간행물의 분류별
4. 발행소명 및 그주소
5. 발행자의 성명
6. 승인신청의 최초의 호수 (號數)
7. 발신우편기관명

제16조 승인받은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변경 휴간 또는 폐간을 하려고 할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를 발신 우편기관 경유하여 해당도 체신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 명칭
2. 발신우편 기관명
3. 발행소명 및 그주소
4. 변경휴간 또는 폐간에 대한리유 전3호의 발행소의 변경은 승인을 받은해당도 체신부관내에한 한다.

제17조 정기간행물에는 본지(本紙)의 중량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본지와 동일한 성질의 기사 및 사진 서화등을 게재한것을 부록으로 첨부할수있으며 부록에는 「본지의 명칭 축차번호 발행년월일 및 부록」의 문자를 기재하여야한다.

전항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것을 첨부한때에는 보통 우편물로서 취급한다.

긴급시사의 보도를위하여 임시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호외(號外)에는 그1면(面)상부에 「본지의 명칭 발행년월일 및 호외」의 문자를 기재하여야한다.

정기간행물을 증간(增刊)한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표시하되 「증간」의 문자를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제2류의 증간에 있어서는 2면 이하에 기재할 문자는 생략(省略)할수있다.

본조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것은 보통인쇄물로 취급한다.

제18조 정기간행물을 매회 발행한때에는 발행자는 곧 그 견본1부를 해당도 체신부장 및 발신우편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절 대봉(帶封)우편물

제19조 다음에 해당하는 종류로서 포장을열지 않고도 내용을 검사할수있도록 공개적으로 포장된 우편물은 대봉우편물로 발신할수있다. 사진양식을 인쇄한 용지류 팜플렛트 포스타- 멩인용접자 월보류 신문잡지 (개인상호간에 수발하는것)서적 지도 리력서 원고결정서 증명서 각종사본 상품견본 농산물 종자등

제20조 상품견본은 다만 그상품의 견본으로 되어야하며 그 견본자체가 그상품의 실제적가치를 잃어야한다.

제21조 대봉우편물의 내용에 다음과같은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며 또는 첨부할수있다. 년월 일 수표 내용품목록 상품의 규격 중량 가격등

제22조 다음의 물건은 대봉우편물로 취급하지않는다.

1. 우표 및 정부가발행하는 우편엽서
2. 은행권행표 우편수금증서 수입인지 기타 이와 동류의 증권 또는 증서

제3장 소 포 우 편 물

제23조 소포우편물은 등기로 취급하고 발신인에게 우편물 령수증을 교부한다. 소포우편물에는 발신인이 그표면에 품명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한다.

제4장 우편물의 발신

제24조 특별취급을 요하지 않는 보통우편물은 우편함에 넣어야 한다.

다만 용적이큰것 또는 수량이 많음으로써 우편함에 넣기곤란한 경우에는 우편기관에 맡겨 이를 발신하여야한다.

제25조 종류 및 요금액이 동일한 우편물로서 한사람이 동시에 50통이상 발신 하는것은 그 통수에 해당되는 요금액을 첨부하여 요금별납우편으로써 우편기관에 제출할수있다.

제5장 우편물의 배달

제1절 통 칙

제26조 동일건물내에 동일한기관 또는 단체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를 지정한 주소로 하는 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그기관의 책임자에게 이를 배달하며 또는 반환우편물의 인도를 할수있다.

2명이상을 수취인으로한 우편물은 그중 1명에게 배달 또는 교부할수있다.

제27조 심산(深山)고도(孤島)에 보내는 우편물은 소관우편기관에 류치하여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전항의 우편물 류치기관은 도착일부터 3개월간으로한다.

제1항에 해당한 지역에 거주하는자는 미리일정한 정소(시내 또는 시외우편국)를 지정하고 자기우편물의 배달을 소관우편국에 청구할수있다.

제28조 우편기관은 사무상 필요있을때에 한하여 우편물수취인에게 그우편물의 봉투(소포우편물에 있어서는 포장)또는 우편엽서의 제출을 요구할수있으며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정형을 조사할수있다.

제29조 우편기관은 우편물의 교부 또는 배달에있어서 수취인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수취인에대하여 필요한 증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할수있다.

제2절 우편물의 류치(留置)

제30조 우편국류치의 표시가있는 보통우편물은 도착일부터 7일간지정된 우편기관에 류치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소포우편물로서 시외우편구에 가는것은 도착일일부터 7일간 시내우편구에 가는것은 도착일일부터 3일간 도착우편기관에 류치하고수취인의 청구에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그러나 류치기간이 경과한때에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되 소포우편물에 한하여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한다.

제3절 우편물의 반송

제31조 소포우편물을 발신인에게 반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반송요금(가액표시로 한것에 대하여는 가격표시 요금을 포함한다)은 발신인으로부터 징수한다.

그러나 발신인 및 수취인의 주소가 동일우편구내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않는다.

소포우편물의 발신인은 발신할때에 당해우편물이 반송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우편기관에 이를 폐기(廢棄)할것을 청구할수있다.

제4절 우편물 수위인의 주소 성명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전송(轉送)

제32조 우편물 발신인은 우편기관에 대하여 아직 배달 또는 교부되지않은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 성명변경과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청구할수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금을 납부하여야한다.

1. 우편물이 발송전인때 및 발신을 접수한 우편기관에서 배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인이 출발전인 때에는 봉합서신에 상당한요금

2. 발송후 우편에의한 청구 (류치 우편물에대한 것에 한한다)인때에는 봉합서신 상당료금의 2배

그러나 류치우편이 아니라도 발신한 우편기관에서 발송한 시일을보아 전보로 청구할수 있을때의 료금은 전보료실액 제33조 우편기관은 우편물을 배달할 경우에 수취인의 이전처 (移轉處)가 분당함때에는 그우편물은 이전처에 전송한다. 전항에 의하여 전송한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는 전송 소포우편료금 (가격표시로 한것에대하여 가격표시 료금을 포함한다)을 수취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하되 수취인이 그료금을 납부하지 않는때에는 발신인으로 부터 이를징수한다.

다만 전송처가 동일우편구내인때에는 징수하지않는다.

보통우편물에 대하여 배달 또는 교부후라 할지라도 이를 받는자가 수취인이 없인때에는 그 수취인의 이전처를 기재한 부전을 첨부하여 배달 또는 교부를 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료금을납부함이 없이 이를 발신할수 있으나 그기간 경과후 발신한것은 새로 발신한것으로 인정한다.

제5절 우 편 사 서 함

제34조 우편사서함을 사용하고저 하는자는 그신청서를 우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우편사서함의 사용을 폐지하고저 하는때에는 폐지의 리유 및 기일을 기재하여 우편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우편기관은 우편사서함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때 또는 우편기관에서 지장이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우편사서함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수있다.

제6장 우편물의 특별취급

제1절 등 기

제36조 소포 및 가격표시 우편물이외의 보통우편물은 등기로 취급할수있다.

등기우편물을 접수한때에는 발신인에게 우편물 령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등기우편물에는 발신인이 우편물표면에 「등기」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가 격 표 시

제37조 통화는 반드시 가격표시로서 발신하여야 한다. 귀금속 보석 중요물건 및 물품은 가격표시로 발신할수있다.

가격표시금액의 최고한도는 통화에있어서 5.000원까지 통화이외의물품에 있어서 30.000원까지로하되 그물품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제38조 가격표시 우편물을 발신할 때에는 우편기관의 립회하에 봉입한후 그봉함개소에 발신인이 날인(捺印)하여야한다.

제3절 배 달 증 명

제39조 등기 또는 가격표시 우편물은 이를 배달증명으로 할수있다.

배달증명 우편물을배달 또는 교부한때에는 발신인에게 그배달증명서를 부송하여야한다.

배달증명 우편물에는 발신인이 그표면에 「배달증명」이라고 표시하여야한다.

제40조 등기 또는 가격표시 우편물의 발신인은 발송우편기관에 우편물령수증을 제시하고 그 우편물에 배달증명을 청구할수있으며 그청구기간은 우편물 발신일부터 3개월 이내로한다.

제4절 소송서류우편물

제4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기관에서 발신하는 재판에 관한서류를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 우편물로 발신할수있다.

발신재판기관은 소송서류 우편물의 표면에 「소송서류」라고 표시하여야한다. 전항의 소송서류 우편물을 송달한때에는 발신재판 기관에 우편송달보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부송한다.

제5절 대 금 환 체 (代金換替)

제42조 등기 소포 또는 가격표시 우편물은 대금환체로 할수있다.

대금환체우편물의 환체금액은 30.000원 이하로 하며 그금액은 원미만의 단수(端數)를 부칠수없다.

제43조 대금환체 우편물은 우편기관에 류치하고 그도착 통지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수취인의 청구에의하여 대금과 환체로 이를 교부한다.

전항의 환체기간은 시내우편구는 도착익일부터 3일간 시외우편구는 도착익일부터 7일간으로한다.

제1항의 환체대금은 「우편송금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발신인에게 송금한다.

부 칙

1. 본규정을 실시전의 정기간행물 발송특별취급 및 우편사서함 사용에대한 인가는 본규정에 의하여 인가한것으로 간주한다.
2. 본규정 실시전에 발신한 우편물과 또는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체 신 상 김 정 주

北韓法令集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국 토 통 일 원

인쇄처 휘 문 인 쇄(주)

국통비 89-12-110

(비매품)

